

해남윤씨 녹우당 문서



해남 윤씨가의 소장 문서 중 1910년 이전 관계진출과 관련된 고문서를 번역하여 해당 인물들의 구체적인 활동을 기술하였다.

해남윤씨
녹우당
문서

범례

- 1) 해남윤씨 고문서 중에서 주제에 따라 장절을 구분하여 탈초, 역주, 해설을 하였다. 이 고문서 ‘선집’은 1천 여 건이 넘는 해남윤씨 고문서의 일부만을 발췌하였다.
- 2) 각 자료는 장 별로 먼저 자료에 대한 종합적인 해설을 싣고 이어서 각 자료의 제목, 간략 해제, 역주, 원문 정서본 순으로 수록하였다.
 - 2-1) 역주는 문장을 이해하는 데에 꼭 필요한 수준의 것으로 최소한 줄였다.
 - 2-2) 원문 정서본은 제1장의 경우, 원래의 모습대로 수록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문서는 간자間字나 대두擡頭, 개행改行을 없애고, 읽는데 도움이 되도록 반 칸을 떼어 구두를 대신하고 이두에는 밑줄을 그어줌으로써 이해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표시로 개행을 보인 부분도 있다.
- 3) 본 선집은 해남윤씨의 세계世系와 관력官歷(1장), 가계 계승과 가훈(2장), 재산 상속과 노비(3장), 신분 이동과 노비(4장), 연해전 개간과 도서島嶼 지배(5장), 토지 쟁송과 부역 면제 소송(6장), 분산墳山 수호와 산송(7장) 등 7개 장으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연구참여자는 김현영(5장), 김경숙(7장), 문숙자(3장), 박경(2, 4장), 박한남(6장), 양진석(1장) 등 6인이다.
- 4) 탈초와 역주는 10여 년 전부터 연구팀이 축적해온 자료를 중심으로 하여 기존 사이트에 공개된 탈초와 역주도 참고하였다.

해남윤씨 녹우당 문서



해남윤씨 녹우당 문서 중에서 주요인물의 세계와 관력, 가계계승, 재산 상속, 연해진 개간, 쟁송 등에 관련된 주요 자료들을 선정하여, 번역하고 해설을 하였다.

발간사

(재)한국학호남진흥원은 호남권 한국학 진흥과 민족문화 균형 발전을 위하여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공동 출연한 학술기관입니다. 개원 1년의 성과를 상재합니다.

본원은 그동안 고문서 수집 집성, 근대 문집의 표점 영인, 고문서·일기·선현 문집 국역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상의 과제는 두 범주로 요약됩니다.

하나, 호남한국학 기초자료 발굴
둘, 호남 사상·생활문헌 국역

이상의 연구사업은 서세동점 이후 구학(舊學)·구습(舊習)으로 폄하되었던 전통적 학술사조와 생활세계를 탈근대 차원에서 재구성한다는 목표 아래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지난 위망과 극단의 세월에 덧씌워진 ‘소국 트라우마’ ‘문명 콤플렉스’와 같은 문화심리의 질곡을 걷어내고자 합니다. 또한 호혜 공존의 생활지혜 나아가 법고창신(法古創新) 연구혁신(沿舊革新)의 사유 역정이야말로 당당한 새로운 미래 설계의 자양임을 웅변하고 싶습니다.

2019년 1월

한국학호남진흥원 원장 이종범

차례

발간사 05

제1장 세계世系와 관력官歷

해설

세계世系	13
관직 진출과 관련 고문서의 실제	17
개인별 문서	19

자료

1. 교지教旨	35
2. 교첩教牒	73
3. 차첩差帖	82
4. 전령傳令	84
5. 유지有旨	85
6. 전교傳敎	86
7. 녹패祿牌와 녹표祿標	87
8. 은사장恩賜狀	93

제2장 가계家系 계승과 가훈家訓

해설

호구 기록	151
입후立後	152
문중 운영과 통문通文	155
가훈家訓	155

자료

1. 호구 기록	157
2. 입후	172
3. 문중 운영과 통문	181
4. 가훈	187

제3장 재산 상속과 노비

해설

노비와 노비 관련 고문서	197
재산상속과 노비 확보	198
노비 매득과 증식	204
노비 방매放賣와 관리	205

자료

1. 분재기	209
2. 노비매매문기	278
3. 노비 명단과 각종 내역	288

제4장 신분 이동과 노비

해설

사노비의 속량贖良	307
노비의 추심推尋	310
노비의 처지	315

자료

1. 노비의 속량	316
2. 노비의 추심	322
3. 노비의 처지	359

제5장 연해전 개간과 도서島嶼 지배

해설	367
----	-----

자료

1. 입지立地, 입안立案과 연해전沿海田 개발	372
2. 개간지 소유권 쟁송	405
3. 맹골도 지배	437

제6장 토지 쟁송과 부역 면제 소송

해설

토지 쟁송	463
부역 면제 소송	467

자료

1. 토지 소유권 쟁송	469
2. 조세, 잡역 면제 소송	533

제7장 분산墳山 수호와 산송山訟

해설

유교식 상장례喪葬禮와 분묘	563
분산 수호와 묘위전답墓位田畓	564
해남 백련동 산송	566
강진 덕정동 산송	568
19세기 분산 수호와 묘위전답 운영	573

자료

1. 분산 수호와 묘위전답	575
2. 해남 백련동 산송	585
3. 강진 덕정동 산송 I	597
4. 강진 덕정동 산송 II	614
5. 19세기 분산 수호와 위선爲先 사업	636

제1장 세계世系와 관력官歷

해설

자료

1. 교지教旨
2. 교첩教牒
3. 차첩差帖
4. 전령傳令
5. 유지有旨
6. 전교傳教
7. 녹패祿牌와 녹표祿標
8. 은사장懇賜狀

세계世系

해남 윤씨는 호남에서 가장 대표적인 가문 중 하나이다. 해남 윤씨 중 일반에 널리 알려져 있는 인물로는 윤선도와 윤두서를 가장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이들은 정치,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알려져 있다. 특히 윤선도는 정치적인 활동에서도 두각을 나타냈다고 할 수 있지만, 그의 면모를 잘 드러낸 것은 그의 문학작품들이다. 그는 어부사시사 및 오우가 등을 비롯한 국문학에서 백미라고 일컬어지는 다수의 작품들을 지어 시조작가로서 출중한 재능을 드러낸 인물로 국문학사에서는 그를 빼고서는 언급할 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리고 윤두서는 뚜렷한 관직을 지니지 않았지만, 겸재 정선鄭敼 및 현재 심사정沈師正과 더불어 조선 후기 삼재三齋로 일컬어지는 인물 중 하나로 그림에서 특출한 재능을 보인 인물로서 국보인 ‘자화상’을 그린 인물이다. 윤두서는 미술 외에도 서예를 비롯한 예술 분야뿐만 아니라, 지도 천문학 수학 등과 같은 분야에서의 활동도 주목받는 인물이기도 하다.

해남 윤씨가는 이들 외에도 많은 인물들을 배출하였지만, 외손 중에도 유명한 인물을 배출하였다. 조선후기 대표적인 학자로 알려져 있는 인물인 정약용이다. 정약용은 윤두서의 외증손이면서, 윤덕렬의 딸이 그의 어머니이다. 정약용은 조선후기의 실학적인 학문을 집대성하였다는 점에서 학문 분야에서 조명을 받고 있는 인물이다. 대표적인 인물 몇 사람만 들었지만, 해남 윤씨가 조선후기에 끼친 영향은 다방면에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들 집안에 대한 세세한 내용들을 모두 살필 수는 없지만, 대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해남 윤씨의 시조는 윤존부尹存富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관직과 관련하여 당대의 상황을 알 수 있는 것은 8대 윤광전尹光典 이후의 기록들이다. 윤광전은 7대 윤록화의 아들로 문서에는 ‘직장 동정 윤광전’으로 표기되고 있어서 그의 관련의 일부를 살필 수 있다. 이 문서에는 1354년 윤광전이 아들 단학에게 노비 1구를 허여하는 내용이 실려 있다.

이후 해남 윤씨가는 당대의 부호라고 할 수 있는 집안으로 성장하였다. 해남 윤씨를 일으킨 인물로는 윤효정尹孝貞(1746~1543)을 들 수 있다. 그는 해남 정씨鄭氏의 사위가 되었으며, 이로써 탐진 최

씨, 선산 유씨柳氏, 선산 임씨林氏 등과 혼맥이 연계되어 재부를 모을 수 있었다. 게다가 학적인 측면에서도 윤희정은 최부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는데, 이로써 김종직과 연계되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해남 윤씨기는 혼맥과 학맥 그리고 재부를 함께 갖추게 되었고, 윤희정 이후 호남에서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가문으로 성장할 기반을 마련하였다.

윤희정에게는 윤구尹衢를 비롯하여 윤향尹衡, 윤행尹行, 윤복尹復 등의 아들이 있었다. 그 중에 윤구는 시관으로 내려온 남곤南袞과 친교를 맺었다고 절교하였으며, 박상朴祥을 비롯하여 최산두崔山斗 등과 교유하다가 기묘사회에 연계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윤향은 을사사회로 진도에 유배되어 있던 노수신盧守愼과 친교를 맺을 수 있었다. 그리고 윤복尹復은 안동부사 시절에 퇴계 이황李滉을 자주 찾았는데, 이로써 윤복의 아들들은 퇴계의 문하에서 수학하는 기회를 얻었다.

그리고 윤구 다음 대에는 윤의중尹毅中이 중앙에 진출하여 호조 참판, 대사간, 대사헌 등을 거쳤으며, 형조판서에 이르렀다. 윤의중이 형조판서에 이른 것은 노수신의 천거에 따른 것이었다. 실록의 기록에 의하면, 그는 호남에서 제일의 부를 지니고 있었다고 한다. 그는 동서의 분당 이후 서인의 공격을 받았으며, 정여립과 친하고 동인의 영수인 이발李瀾의 외숙이라 하여 삭출되기도 하였다. 게다가 종통宗統과 관련하여 비난을 받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들과 관련한 고문서들은 현재 해남 윤씨 집안에 남아 있지 않다. 우리가 고문서로 남아 있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윤구尹衢와 관련한 것들이 아니라 윤복尹復 이후의 문서들이다. 따라서 이들과 관련된 고문서들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해남 윤씨의 세계를 정리한 족보를 참고하면서 상호 관계를 살필 수밖에 없다.

해남 윤씨의 세계를 알 수 있는 것으로는 해남 윤씨의 족보들을 들 수 있다. 그 중에서 윤두서가 1705년에 작성한 가승과 윤규상이 편한 『문헌록』과 윤복의 행장과, 윤선도의 연보인 『충헌공연보』, 『고산연보』를 들 수 있다. 이들 기록은 해남 윤씨의 가계 중에서 어초은파 윤희정(1476~1543)으로 이어지는 후손들을 중심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해남 윤씨 집안에 내려오는 문서 중에서도 관직 및 그와 관련하여 작성된 문서들을 중심으로 소개하려 하는데, 문서들을 살펴보기 전에 간략한 해남 윤씨의 가계를 살펴보려 한다. 이는 해남 윤씨 집안에 속한 인물들이 어떠한 위치에서 있는가를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해남 윤씨의 가계도는 『고문서집성 3 : 해남윤씨편 정서본』의 해제에 소개된 것을 참고하였다. 그러나 그대로 제시하지 않고 관련된 인물을 중심으로 제시하되, 일부 계보는 새로이 추가하여 작성하였다. 기존에 제시된 계보 중에 일부 계보가 누락되어 있어서 해남 윤씨가에 소장된 문서들을 설명할 수 없는 인물의 문서가 있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윤취서尹就緒와 관련된 고문서들이 있지만, 그와 관련된 계보가 제시되지 않아서 그가 해남 윤씨가에서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고 다른 인물들과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 지를 파악할 수 없었다. 따라서 그와 관련한 계보는 『만가보』에 제시된 내용을 참고하여 새로 덧붙여서 다시 제시하였다.

해남 윤씨가에 소장된 고문서들과 연계하여 인물간 상호관계는 아래에 제시하는 바와 같다.

윤경尹耕



윤효정尹孝貞



구衢 항衡 행行

복復 (이하 생략)



여 홍중弘中

의중毅中

강중剛中

흠중欽中



(系)

사회思悔

유기唯幾

유심唯深

유기(出) (이하 생략)

유겸唯謙

유익唯益



(系)

선도善道

선언善言

선도(出) (이하 생략)

선각善覺 (이하 생략)



인미仁美

의미義美(出)

예미禮美 (이하 생략)

의미義美

진미晉美



(系)

이석爾錫

이후爾厚(出) (이하 생략)

이후爾厚

경敞



(系)

두서斗緒 두서(出)

취서就緒

덕희德熙

덕겸德謙

덕훈德熏

중棕 (이하 생략)

운輝 (이하 생략)

지정持貞 (이하 생략)

규응奎應

(系)

중경鐘慶

종구鐘壽

광호光浩

명호命浩

(系)

주흥柱興

주흥(出)

관하觀夏 (이하 생략)

재형在衡 (이하 생략)

정현定鉉 (이하 생략)

영선泳善

관직 진출과 관련 고문서의 실제

1) 관직관련 고문서 개관

관직임명과 관련된 고문서는 ‘고신’이라 하는데, 대표적인 것으로 ‘교지’와 ‘교첩’을 들 수 있다. 이들 고문서는 해당 인물이 어떠한 관직활동을 하였는가를 살피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교지 및 교첩 등 일부 고문서에 한정하여 인물들의 생애와 관직을 다루는 방식은 제한된 문서를 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언급해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때문에 고문서가 지니는 부족한 내용을 채워가는 방법으로 실록이나 『승정원일기』, 『일성록』 등 자세한 사실을 기록한 일록류 등 다양한 기록들을 참고하거나 혹은 『정사록』과 같은 인사 관련 기록을 이용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 글은 해남 윤씨가에 소장되어 있는 고문서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해남 윤씨가의 많은 인물들과 관련하여 다양한 내용의 활동들이 실록을 비롯한 다른 기록들에 나타나고 있지만, 아쉽게도 그와 관련하여 근거로 제시할 만한 현재 남아 있는 고문서가 생각보다 그리 많은 편은 아니다. 게다가 몇몇 인물에 한정되어 있어서, 해당 인물들의 활동과 관련하여 다양한 모습들을 충분히 이야기하기에는 부족한 감이 없지 않다. 따라서 개별 인물에 대해 알려진 사실을 모두 모았다 하더라도 자세하고 다양한 이야기를 전개하지 못한 아쉬움이 남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고문서가 갖는 장점은 때로는 개별 고문서가 말하고자 하는 또 다른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이다.

남아 있는 고문서를 위주로 개별 인물들의 구체적인 활동을 살펴볼 수 있지만, 관직 임명과 관련된 개별 고문서들이 지니는 내용이 그것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이들 고문서 중에는 개인의 관계진출과 관련된 내용을 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조선시대 관직의 다양한 특징들을 살펴볼 수 있는 독특한 구성과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있다. 즉 조선시대 관직 제도의 운영 방식을 살필 수 있으며, 그것을 통하여 양반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독특한 장치로 어떠한 것들이 있었는지를 아울러 확인할 수 있다.

이들 고문서 중에는 단순히 관직 임명과 관련된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양반가문으로서의 품격을 유지하고 나아가 신분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장치가 관직과 함께 연계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들도 있다. 고문서의 구체적인 내용과 함께 그것의 특징을 현장에서 살피면서 조선시대의 관직들이 갖는 의미를 알게 된다면 그 또한 매우 흥미로운 것이다. 실록과 같이 잘 알려진 기록들에 실리지 않지만 고문서에는 독특하면서도 매우 구체적인 내용들이 기술되어 있는 예들이 종종 있다. 그러한 점에서 고문서는 일반적인 서술에서 보이지 않는 새롭고 유용한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아울러 이는 많은 사람들의 호기심을 유발하는 계기로 작용하기도 한다. 교지도 그러한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 해남 윤씨가의 고문서 중에도 그러한 내용을 포함한 것들이 다수 있어서

주목된다.

우선 고신 즉 교지나 교첩 등으로 불리고 있는 것을 포함하여, 그외의 고문서들에 대한 간단한 개괄과 함께 구체적인 문서들을 대상으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하겠다.

(1) 고신(告身) 지급

국가가 국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조직을 규정하고 그 조직에 필요한 인원을 공식적으로 확보해야 했다. 그에 따라 국가를 관리할 기구를 만들고 해당 기구에 다양한 관직들을 설치하였으며, 일을 수행할 관리들을 임명하였다. 관리의 임명은 국가운영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적인 것이다.

국가가 해당 관직에 관리를 임명하면서 수여하는 증서를 '임명장' 혹은 '사령장'이라 할 수 있는데, 조선시대에는 이를 법적으로는 '고신'이라 하였다. 조선시대 관리로 임명된 자에게 주었던 임명장인 고신은 등급에 따라 내용과 명칭을 달리하였다. 각각의 등급에 따른 고신은 경국대전(經國大典)에 규정되어 있었는데, 흔히 우리가 교지, 교첩으로 부르고 있는 것들이 그것이다. 문서의 명칭을 달리하였던 것은 관리들에 대해 등급을 달리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들에 대한 대우도 달리하였기 때문이다.

조선 초에 임명과 관련된 문서로 왕지(王旨)가 쓰이기도 하였지만, 일정 시기이후부터 교지(敎旨)로 표현되었다. 이후 이들 고신은 법제적으로 정비되어 『경국대전(經國大典)』의 예전(禮典)에 서식으로 정리되어 있다. 교지는 4품 이상의 관리 및 당상관의 부인(堂上官妻)들에게 지급된 것을 일컬으며, 그리고 문무관 5품 이하의 관리 및 3품 이하의 처들에게 발급된 것은 교첩(敎牒)이라 하였다.

관련 법적규정을 살펴보면, 교지는 국왕이 직접 임명하는 형식을 띠었다. 관직의 수여를 포함하여 가자(加資)·자격·시호·토지·노비 등을 내릴 때에도 교지가 지급되었다. 그에 비하여 낮은 관직에게 주어졌던 교첩은 인사를 담당한 이조나 병조에서 지급하였던 것인데, 승지를 통하여 전달된 국왕의 명령을 받아 시행하는 형식을 갖추었다.

임명과 관련한 구체적인 서식은 각종 법전에 실려 있다. 『경국대전』을 비롯하여 『대전통편』, 『대전회통』 등의 예전(禮典)에 실려 있으며, 『전율통보』에는 서식을 따로 정리하여 실고 있다. 시기에 따라 고신의 서식 규정이 일부 변하거나 추가된 것이 있지만, 큰 변동은 없다고 할 수 있다.

교지나 교첩 외에도 다른 형태로 직무를 수행하는 관리에게 주었던 것이 있는데, 차첩과 전령을 들 수 있다. 차첩은 지방의 하급 행정을 담당하는 관리 내지 이서들을 임명하는 것으로 이용되었으며, 때로는 지방의 주요한 행사에 필요한 인원들을 확보하는데 사용되기도 하였다. 그 외에도 해당자에게 관련된 일을 하도록 관청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같은 것들 외에도 관직에 임명하여 지급하였던 문서로는 전령이 있다.

고종이 대한제국을 세운 이후 관리들을 임명하면서 주었던 것은 '칙명'이다. 대한제국기는 황제의 자격으로 통치하는 시기로 국가의 조직을 재편하였고 그에 적합한 명칭의 관직을 설치하여 관리들을 임명하였다. 따라서 앞서의 고신들과는 다른 형태의 것을 관리들에게 수여하여야 했다. 조선의 왕

은 제후에 해당하였지만, 그에 비해 대한제국기에는 통치자이면서 임명권자인 황제로서 등급과 명칭을 달리하는 임명장을 주었던 것이다.

(2) 고신 외에 지급되었던 문서들

관직에 임명되면서 해당 관리가 국가로부터 받게 되는 문서는 이러한 고신 외에도 관직에 따른 일을 하도록 부르거나 혹은 잘 수행할 것을 당부하는 유지有旨가 있으며, 국왕이 해당자에게 명을 내린 '전교'가 있다.

그 외에도 관리들은 관직 수행에 따른 급여를 받아야 했으므로 급여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녹패'와 '녹표'가 주어졌다. 이들 문서들은 해당자의 관직의 등급과 그에 따라 주어지는 곡물의 액수가 기록되어 있어서, 급여의 구체적인 내용과 수량을 살필 수 있는 문서라고 하겠다.

(3) 고신을 이용한 연구의 한계

고신은 단지 임명장이라는 측면만을 담고 있기 때문에 임명된 사실만을 증명해주는 것에 한정되었다. 해당 인물이 어떠한 활동을 하였으며, 얼마나 근무하였는지, 그리고 언제 어떠한 사유로 그만두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는 점이다.

이와 같이 고신만을 토대로 하는 작업은 그 자체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 작업 또한 고신과 관련된 문서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개개인이 관리로서의 개별적 활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접근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다. 다른 자료와의 연계가 필요하지만, 이 작업은 소장 문서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다른 자료와 보다 밀접하게 연계시키면서 다룰 수 없다는 점에서는 아쉬움이 남는다.

개인별 문서

앞서 윤희정 이후의 가계를 간략하게 제시하였다. 윤희정은 생원에 합격한 후 관계로의 진출을 포기하였지만, 그의 아들 대에 이르러 관직에 적극적으로 진출하였다고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그와 관련한 고문서 자료는 남아 있지 않다. 장남인 윤구가 문과에 급제하여 언관직에 종사하였다고 하는데, 그와 관련된 기록은 해남 윤씨가에 남아 있지 않다.

참고로 해남 윤씨들 중에서도 관직을 중심으로 택호로 불리고 있는 인물들이 있다. 윤유기는 감사택監司宅, 윤선도는 참의택參議宅, 윤인미는 정자택正字宅, 윤이석은 전부택典簿宅, 윤두서는 진사택進士宅, 윤주흥은 감역택監役宅 등으로 불렸다. 이러한 호칭은 해당 인물이 거쳐 간 관직과 관련을 지니

면서 붙여진 것들이다. 그 중에는 과거시험을 본 후에 합격한 것과 관련하여 붙여진 명칭도 있고, 나머지는 임명된 관직과 연계하여 부르는 이름들이라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명칭과 관련한 것들 중에는 관련 문서가 없는 것들도 있다.

현재 관직과 관련하여 남아 있는 문서로는 교지, 교첩, 차첩, 전령, 유지, 전교, 녹패, 녹표, 은사장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해남 윤씨가에서 윤희정을 이어 윤구尹衢의 계통을 잇는 후손들로 집안의 계보가 정리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남아 있는 문서들은 그 동생인 윤복의 계통을 잇는 문서들이 많이 남아 있다. 이와 같은 고문서들의 소장과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추적해보아야 하겠지만, 잦은 출계와 집안 내부의 사정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해남 윤씨가 소장하고 있는 문서들은 많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1910년 이전의 관계진출과 관련된 고문서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현재 남아 있는 고문서들을 대상으로 해당 인물들의 관력을 추적하려 한다.

인사 관련 고문서만 살펴본다면 윤구의 동생인 윤복尹復과 관련된 것과 그 후손들의 것으로 이어지다가 중간 대에 이르러서야 출계에 따른 교지들이 남아 있는 모습을 띠고 있다.

해남 윤씨가에 보존되어 있는 교지는 윤복에 이어 윤강중, 윤유겸, 윤선도, 윤진미, 윤인미, 윤이석, 윤두서, 윤덕희, 윤취서, 윤관하 등의 것들을 들 수 있다. 그리고 교첩으로는 윤복, 윤강중, 윤인미, 윤이석, 윤두서, 윤덕희의 것이 있으며, 차첩으로는 윤인미와 윤이석의 것이 남아 있다. 그 외에 관직과 관련하여 살필 수 있는 문서로 윤선도에게 내린 유지와 전교가 있으며, 그와 관련하여 내려진 녹패와 녹표가 있다. 윤선도와 관련한 교지나 교첩은 없지만 그가 관직을 거쳤으며 그의 활동을 살필 수 있는 것으로 은사장을 들 수 있다. 그리고 관원의 역할을 부여할 수 있는 전령이 있는데, 이는 윤관하에게 내려진 것이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개인과 관련된 문서들을 구별하여 각각의 인물을 살펴보는 것에 포함시켜 언급하려 한다.

(1) 윤복尹復

해남 윤씨가에 관직과 관련하여 현재 실물로 남아 있는 인사관련 문서는 윤복(1512, 중종 7~1577, 선조 10) 이후의 것들이다. 자는 원레이며, 호는 석문 또는 행당이다. 그의 관력을 살펴보면, 1534년(중종 29) 생원, 1538년 별시 문과에 을과로 급제, 1547년(명종 2) 부안 현감으로 부임하였으며, 전라도도사를 거쳐 1552년 낙안 군수가 되었다. 이후 한산 군수, 광주 목사光州牧使, 선공감 부정繼工監副正 등을 역임하고, 1565년 안동 대도호부사, 1573년 승정원 좌·우부승지를 거쳐 충청도 관찰사를 지냈다.

이와 같은 내용들에 대한 자세한 사항들은 고문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앞서 언급한 교첩과 교지 등의 고문서들에서 개인의 개별적인 행적 및 그와 관련한 조치들을 보다 자세하게 살필 수 있다.

윤복은 어초은 윤희정尹孝貞의 아들이다. 그가 생원시에 합격한 내용을 증명하는 백패는 해남 윤씨 집안에 현재 남아 있는 가장 오래된 인사 관련 문서이다.[교지 1-1-1] 참조] 1534년(중종 29) 윤2월에 유학幼學으로 생원시 2등 제 1인으로 입격한 것이다. 이 백패는 윤복이 관직 생활을 시작하기 위한 발판이 되었다고 하겠다.

백패白牌는 소과 즉 생원과나 진사과에 합격한 사람에게 주던 증서인데, 소과에 합격한 것에 대해 ‘입격入格’이라 표현하였다. 한편 대과에 합격하면 ‘급제及第’로 표현하였다. 과거시험을 치르면, 결과에 대하여 점검하고 논의를 거친 후 합격자를 성적순으로 종이에 적어 국왕에게 올린 후, 합격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발표하였다. 합격자의 명단은 길일吉日을 택하여 대궐 뜰에서 방방의放榜儀과 하여 발표하였고, 그와 함께 합격자를 발표하는 의식을 베풀었다. 의식 과정에서 그들의 배치를 보면, 생원은 동쪽을 향하고, 진사는 서쪽을 향하였다. 그들은 국왕에게 네 번 절하면, 국왕은 백패와 술과 과일들을 내렸다. 백패는 흰 종이를 사용하였으며, 먹으로 관직명, 성명, 시험과목, 성적등급 등을 적은 후 어보를 찍었다. 어서에 새긴 도장의 내용은 ‘과거지보科擧之寶’이다.

소과 시험의 경우 합격자는 모두 100명으로 1등이 5명, 2등이 25명, 3등이 70명이었다. 윤복은 2등 제 1인이었으므로, 합격등수는 전체 6등에 해당하였다. 윤복은 생원시에 합격한 후 4년 후에는 문과에 응시하였다. 윤복은 1538년(중종 33) 9월 문과 을과 제1인으로 급제함으로써, 관직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문과시험에서 합격자가 갑과 3명, 을과 7명, 병과 23명이었으므로 윤복은 전체 4등으로 합격한 것이다. 조선시대에는 문무과의 전시 급제자에게만 홍패를 주었는데, 그 양식은 홍색의 종이에 성명과 갑과·을과·병과 및 각 등급에서의 순위 등을 기입하고, 연·월·일의 연도 밑에 어보를 찍었다. 이때 사용한 어보는 백패에 사용하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과거지보’이다.

이후 그의 관직과 관련된 문서는 없으나, 1547(명종 2)년에는 부안 현감을 지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같은 해 윤9월에 작성된 교첩에 의하면 그는 부안 현감이었지만, 누군가로부터 대가代加之 조치를 받아 품계의 승급이라는 혜택을 누렸다. 이로써 그의 자급은 정6품 상위에 해당하는 승의랑에서 종5품 하위에 해당하는 봉훈랑으로 1단계 상승하였다. 윤복이 대가의 조치를 받게 된 구체적인 내용은 이 문서만으로는 알 수 없다. 대가가 아버지가 아들에게 혹은 아우나 조카 혹은 사위에게까지도 대상이라는 점에서 이중 어느 것에 해당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1551년(명종 6) 4월에 전 현감 봉직랑을 예조 좌랑에 임명하는 교첩이 있는 것으로 보아, 그보다 앞서 윤복에게 봉훈랑에서 종5품 중에서 상급인 봉직랑으로 승급하는 1차례 가자加資의 조치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1달 후 5월에는 윤복은 예조 좌랑으로서 겸 춘추관 기사관에 임명되었다.

같은 해 8월에는 통선랑 행 전라도 도사 겸 춘추관 기주관에 임명된 문서가 있다. 그는 예조 좌랑에서 종5품의 새로운 관직으로 옮겼을 뿐만 아니라, 자급은 정 5품 하급에 해당하는 통선랑의 품계로 1단계 올랐고 아울러 춘추관 기사관에서 정5품에 준하는 춘추관 기주관으로 겸직의 등급도 오른 것이다. 1552년(명종 7) 4월에는 통선랑에서 자급이 1단계 오른 통덕랑이 되었다. 이는 근무한 기한이

지나 가지해준 조치 즉 ‘사가仕加’에 따른 것이었다.

윤복은 1555년(명종 10) 8월 2일에 사가를 이유로 교지를 받았으며, 1555년 12월 21일에는 봉정대부 행 낙안 군수에 임명되었다. 이 교지는 동일한 내용으로 사가의 여부에 따른 차이가 있을 뿐이다. 봉정대부는 정4품 상급에 속하며 낙안 군수는 종4품직이다. 윤복은 그간에 조산대부와 조봉대부, 봉열대부 등의 지급을 어떠한 형태로든 거친 것으로 보인다. 그 후 5년 정도 지난 후인 1560년(명종 원) 4월 충청도의 한산 군수 겸 춘추관 편수관을 역임하는데, 이때에는 춘추관 편수관이 더해지고 있다. 1562년(명종 17) 9월에는 통훈대부 광주 목사光州牧使로 임명되었다.

지방관을 마친 윤복은 1564년(명종 19) 2월 25일 통훈대부 행 중부시 첨정에 임명되어 중앙의 관직으로 다시 진출하게 되었으나, 다음 해인 1565년(명종 20) 6월에는 통훈대부 안동 대도호부사에 임명되어 정3품에 해당하는 관직을 지니게 되었다. 이후 2년간 달리 문서가 없어서 관직과 관련한 변동이 어떠한지 알 수 없지만, 1567년(명종 22) 5월에도 그를 통훈대부 안동대도호부사에 임명하는 교지가 있다. 품계와 관직의 변화도 없이 같은 내용의 교지가 시간적으로 달리 작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관직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아닌가 한다. [교지 8 및 교지 9 참조]

선조대에 이르러 1568년(선조 원) 8월에 윤복은 통훈대부 중부시 정의 벼슬에 임명되었다. 이후 3년간 어떠한 자리에 있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1571년의 기록인 선조실록 선조 4년 9월 10일에는 윤복이 성균관 사성에 임명되어 종3품에 해당하는 자리에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직접적인 교지가 현재 남아 있지 않다. 다만 1572년 9월 4일 사성인 윤복 대신에 그의 아들 윤강중에게 품계가 주어지고 있는 교첩이 있다. 학생 윤강중을 장사랑에 임명함으로써 대가가 시행된 것이다. [교첩 6 참조]

다음 해인 1572년부터 그는 언론기관으로 불리던 홍문관과 사헌부를 떠나지 않고 활동하고 있다. 그의 활동이 주로 언론 내지 경연을 위주로 이루어졌으며, 때로 춘추관에서 기사관 내지 기주관으로서의 활동이 더해졌다. 1572년(선조 5) 윤2월 4일에 홍문관 부수찬 지제교 겸 경연 검토관 춘추관 기사관에 임명되었으며, 얼마 되지 않아 3월 9일에는 사헌부 지평에 임명되었다. 그리고 4월 21일에는 홍문관 수찬 지제교 겸 경연 검토관 춘추관 기사관에 임명되었으며, 5월 2일에는 홍문관 수찬 지제교 겸 경연 검토관에 임명되었다. 5월 12일에는 홍문관 수찬 지제교 겸 경연 검토관 춘추관 기사관에 임명하였다.

윤복은 1572년(선조 5) 5월 22일에는 통훈대부 행 사헌부 장령 겸 춘추관 편수관에 임명되었다. 그는 홍문관에서 다시 사헌부로 옮기고 있다. 그러나 이것도 며칠 가지 않았다. 5월 26일에 윤복을 통훈대부 행 홍문관 교리 지제교 겸 경연 시독관 춘추관 기주관에 임명되었다. 6월 5일에는 윤복은 통훈대부 행 홍문관 교리 지제교 겸 경연 시독관의 직무는 그대로 지낸 채 춘추관 기주관에서 벗어났으며, 7월 24일에는 통훈대부 행 홍문관 부교리 지제교 겸 경연 시독관으로 홍문관 교리에서 부교리로 직위가 바뀌는 모습을 보였다.

윤복은 1572년(선조 5) 8월 22일에는 다시 사헌부로 옮겼다. 그에게 주어진 교지에 따르면 통훈대부 행 사헌부 장령에 임명되었다. 그러나 이것도 잠시였고, 10월 7일에는 몇 달 전에 그가 하던 통훈대부 행 홍문관 부교리 지제교 겸 경연 시독관의 직무를 다시 수행하였다. 같은 해 10월 26일에는 통훈대부 행 사헌부 장령에 다시 임명되었다가, 12월 8일에는 사복시로 자리를 옮겼다. 통훈대부 사복시 정의 벼슬을 지냈으나, 며칠 지나지 않은 12월 13일에 통훈대부 행 사헌부 장령에 또다시 임명되었다. 1573년(선조 6) 1월 11일에 그는 통훈대부 행 홍문관 교리 지제교 겸 경연 시독관에 임명되어 기존에 교리를 지내다 부교리가 되었지만, 다시 기존의 교리의 자리를 회복하게 되었다. 그에게 주어진 교지에 의거한다면 그는 1572년에서 1573년 초까지는 홍문관 사헌부 사복시를 짧은 기간에 계속 번갈아가면서 순환 근무를 한 것이다.

그는 1573년(선조 6) 1월 22일에는 통훈대부 행 시간원 사간에 임명되었는데, 이로써 그는 언론 3사회를 모두 거치게 되었다. 윤복은 2월 25일에 통훈대부 행 사헌부 집의에 임명되었다. 윤복이 지낸 시간과 집의는 종3품에 해당하는 자급이었다.

1573년(선조 6) 3월 22일에 그는 통훈대부 행 홍문관 부수찬 지제교 겸 경연 검토관에 임명됨으로써 부수찬 자격으로 홍문관에서 근무하게 되었다. 그런데 부수찬은 종6품인데 교리가 정5품인 것을 감안하면, 그의 직책은 등급이 크게 떨어진 것이었다. 앞서 지낸 종3품인 시간과 집의와 비교하면 그 차이가 더욱 큰 것이기도 했다. 이 무렵 그에 대한 평가를 둘러싸고 새로운 움직임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5월 후인 3월 27일에 통훈대부 행 사헌부 집의에 임명되었음을 보여주는 교지가 있기 때문에, 그의 자급은 다시 회복되었음을 살필 수 있다. 실록에서는 이러한 미세한 변동들은 기록되지 않고 있어서, 단기간의 변동은 고문서만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하다.

윤복이 관직생활 중에서 하나의 중요한 기점이 되었던 것은 1573년(선조 6) 4월 18일의 관직임명을 들 수 있다. 그는 이날 통정대부 승정원 동부승지 겸 경연 참찬관 춘추관 수찬관에 임명된 것이다. 당상관에 해당하는 정3품 상급에 해당하는 통정대부의 자급을 지니게 되었으며, 동부승지의 직과 함께 경연 참찬관 및 춘추관 수찬관 등 명실 공히 정3품직에 해당하는 관련된 직들을 모두 지니게 된 것이다. 그는 5월 4일에는 우부승지가 되었다.

그가 우부승지가 되자 그에 따른 부수적인 조치들이 뒤따랐다. 그의 처인 윤씨尹氏에게도 법전의 규정에 의거하여 자급이 주어졌다. 법전에 따르면 ‘남편의 관직에 따른다(從夫職)’라고 되어 있다. 윤씨에게 주어진 증직교지를 보면, ‘통정대부 승정원 우부승지 겸 경연 참찬관 춘추관 수찬관 윤복의 처를 대전大典에 의거하여 남편의 직을 따라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다. 이때 주어진 것은 숙부인淑夫人이다. 이는 외명부의 문무관의 처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정3품 당상관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국가의 관직체계에 부부가 함께 들어가게 된 것이다. 윤복은 6월 22일에 다시 승정원의 좌부승지로 자리를 옮겼으며, 7월 11일에도 똑 같은 내용의 승정원 좌부승지에 임명하는 교지가 발급되었다.

윤복의 관직생활 중에 또 하나의 중요한 기점이 된 것은 1573년(선조 6) 9월 19일에 내려진 관직이었다. 통정대부 수·수 충청도 관찰사에 임명되었고, 품계는 정3품 상급에 해당하는 통정대부를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러나 관직은 종2품에 해당하는 관찰사직이어서, 같은 날 ‘수 충청도 관찰사 겸 병마수군절도사’의 내용으로 교지가 내려졌다. 국왕으로부터 관찰사로서 행정과 군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것이다.

관찰사의 직을 맡게 되면서, 관직을 본인에게만 주는 것에 그치지 않았다. 법전에 의거한 관련된 규정들이 적용되어 그의 부인 및 부모와 조부모 그리고 증조부모에게 증직 내지 추증교지가 내려졌다. 우선 그의 처인 숙부인 윤씨에게는 ‘종부직’의 규정에 의거하여 새로운 교지가 내려져야 했다. 그러나 현재 그와 관련된 교지가 남아 있지 않다. 이는 윤씨가 이미 정3품에 해당하는 숙부인인 상태였기 때문에 증복을 이유로 교지를 새로 지급하지 않은 것인지는 알 수 없다. 보다 자세한 사정은 알 수가 없다.

윤복의 부모들에게도 교지가 내려졌다. 1573년(선조 6) 9월 29일 ‘통정대부 수 충청도 관찰사 윤복의 돌아가신 아버지를 대전大典에 의거하여 추증함’이라 하여 그의 아버지인 윤희정에게 새로운 관직이 증직된 것이다. 이전에 윤희정에게 통정대부 승정원 좌승지 겸 경연 참찬관 춘추관 수찬관이 증직되었지만, 이번에는 가선대부 호조참판 겸 동지의금부사의 직이 증직된 것이다. 이전에 이미 ‘숙부인’에 증직된 어머니 정씨鄭氏에게도 같은 날에 윤복의 아버지 윤희정과 함께 추증되었다. ‘통정대부 수 충청도 관찰사 윤복의 돌아가신 어머니를 대전大典에 의거하여 추증함’이라고 하여 정부인眞夫人에 추증되었다.

윤복의 할아버지인 윤경과 할머니인 이씨李氏와 정씨鄭氏 2인에게도 증직의 조치가 있었다. 윤경은 ‘통훈대부 통례원 좌통례’에서 ‘통정대부 병조 참의’로 자급이 높아졌고 병조 참의에 추증되었으며, 그의 할머니 이씨와 정씨도 각각 숙인淑人에서 숙부인淑夫人에 증직되었다.

윤복의 증조할아버지인 윤사보와 증조할머니인 송씨宋氏에게도 증직의 조치가 따랐다. 증조할아버지인 학생 윤사보는 ‘통정대부 수 충청도 관찰사 윤복의 증조할아버지를 대전大典에 의거하여 추증함’이라 하여 통훈대부 통례원 좌통례에 증직되었고, 그의 증조할머니 송씨는 ‘통정대부 수 충청도 관찰사 윤복의 증조할머니를 대전에 의거하여 추증함’이라 하여 3품에 해당하는 숙인에 증직되었다.

1577년(선조 10) 12월 28일에 그의 처 윤씨가 정2품에 해당하는 정부인眞夫人에 봉작되었다. 이 교지에는 그의 관직 임용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다. 다만 그의 부인 윤씨가 ‘통정대부 전前 수 충청도 관찰사 윤복의 처로서 대전大典에 의거하여 남편의 직을 따름’이라고 하여 정부인에 봉작된 것이다. 남편이 전 충청도 관찰사라는 것 외에 이때 윤복의 처를 봉작하게 된 구체적인 상황은 알 수 없다.

1573년 9월에 윤씨가 앞서 숙부인을 증직 받은 교지가 남아 있지 않지만, 같은 해 6월 2일에 받은 숙부인 교지가 있으며 또한 1577년의 교지로서도 이미 숙부인의 작위를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1577년에는 윤복이 충청도 관찰사의 직을 그만 두었음을 알 수 있다.

증직과 관련하여 알 수 있는 사실은 본인의 부모에게는 그와 동일한 품계, 그의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는 1단계 낮은 품계, 증조할아버지와 증조할머니에게는 2단계 낮은 품계가 주어졌다는 것이다. 윤복이 관찰사직을 맡게 됨으로써 그의 처를 비롯하여 부모, 할아버지와 할머니 및 증조할아버지와 증조할머니 모두가 증직을 받게 된 것이다.

개인이 높은 관직에 오르게 되면서, 소위 입신양명立身揚名을 이루었다고 하겠다. 본인이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아 세상에 이름을 크게 알리게 된 것뿐만 아니라, 부모를 영광스럽게 하는 일이 된 것이다. 이는 흔히 유교에서 내세우는 이념을 실현하는 장면이라 하겠다. 고문서가 아니면 이러한 법제적인 제도의 시행은 법전을 통해 알고 있다 하더라도, 제도와 관련된 내용을 실제로 확인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러한 것은 고문서에서만 볼 수 있는 묘미라고 하겠다.

(2) 윤강중尹剛中

윤강중은 윤복의 아들이다. 그의 처는 만가보에 안씨安氏로 알려져 있으며, 아들은 윤유겸·윤유익 등이다. 해남 윤씨가에는 그와 관련된 교첩이 2건 있다. 하나는 1572년(선조 5) 9월 4일 무렵에 학생 윤강중을 장사랑에 임명하면서 발급한 교첩이다. 이는 아버지 윤복이 성균관 사성인 때인 그해 임신년 2월에 별대가의 조치가 취해지면서 이루어진 것이다. [교지 78 참조]

또 하나는 다음해 인 1573년(선조 6) 10월 4일에 윤강중에게 효력부위의 자급이 주어졌다. 이 교첩도 충청도 관찰사였던 윤복이 부호군인 그해 9월에 받은 별가를 아들인 윤강중에게 적용한 것이었다. [교지 79 참조]

(3) 윤유겸尹唯謙

윤유겸은 윤복의 손자이며, 윤강중의 아들이다. 그의 동생은 윤유익이다. 윤유겸은 해남군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관직에 나아가지 못하였지만 유생으로서 언론을 막는 기사헌을 처벌해달라는 상소문을 올렸다. 1618년에 윤유겸은 당시에 권력을 행사하던 이이첨을 공격하는데 참여하였고, 대론大論을 담당할 허균 등과 연계되어 공초를 받았고 위리안치되었다.

그는 이 사건 1년 전인 1617년(광해군 9) 12월 16일에 유학으로 진사시 3등 제 6인으로 입격하여 백패를 받았다. 그가 합격한 시험은 증광시로, 소과의 합격인원이 1등 5명, 2등 25명, 3등 70인이 원칙이었으므로 그는 전국 36등으로 합격한 셈이다. 이로써 그는 소과 입격자로서 자격을 획득하였으며, 백색 종이에 입격등급을 상세히 기입한 뒤 어보를 찍은 증서인 백패를 발급받을 수 있었다.

(4) 윤선도尹善道

윤선도는 예빈시 부정副正을 지낸 윤유심의 아들로 서울 연화방에서 태어났으며, 8살에는 강원도관찰사를 지낸 숙부 윤유기에게 입양되어 종통을 이었다. 그는 18세에 진사 초시에 합격하고, 20

세에 성균관 유생에게 시행하던 시험인 승보시에 1등을 했으며 향시와 진사시에 연이어 합격했다. 1616년(광해군 8) 성균관유생인 때에 최고의 권력자라고 할 수 있던 이이첨·박승중·유희분 등의 횡포 등을 거론하면서 격렬하게 규탄하는 내용의 「병진소」를 올렸다. 그로 말미암아 윤선도는 함경도 경원慶源과 경상도 기장機張에 유배되었다. 그의 정치적인 활동은 이후 관직 임명과 함께 유배가 점철되는 파란만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보다 앞서 그의 선조 대에 이미 정치적인 어려움들은 예고되어 있었다. 그의 조부 윤의중은 정여립사건으로 기축옥사를 겪게 되어 향리로 방출되어 노상에서 임종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으며, 동서분당 이후 그의 외숙인 이발李潑이 동인의 영수가 되자 정철鄭澈에게 종통의 문제로 비난을 받기도 했다. 이처럼 윤선도의 정치적인 입장은 그의 조부 때에 이미 결정되어 있었다.

윤선도는 정치적으로는 허목許穆과 윤후尹鑣 등의 남인과 입장을 같이 하였다. 그의 정치적인 입장을 보여주는 것으로 71세인 1657년 동부승지로 서인 송시열宋時烈일파와 맞서 「시무팔조소時務八條疏」와 「논원두포소論元斗杓疏」를 올려 왕권을 확립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였으며, 1659년 효종이 죽자 예론문제禮論問題로 대비의 상복喪服을 3년설三年說로 시행할 것을 주장하여 송시열宋時烈과 송준길宋浚吉 등이 제기한 기년설基年說에 반대한 것을 들 수 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삼수에 유배되었다가 1667년 풀려났으며, 부용동에서 살다가 그곳 낙서재에서 85세로 죽었다. 그의 정치적인 행보는 관직에의 진출과 함께 20여 년의 유배생활로 이어졌다고 하겠다.

윤선도는 그 과정에서 그는 국문학사에서 길이 남을 문학작품들을 남기기도 하였다. 그의 문학은 그의 정치적인 행보와 함께 이루어졌다고 하겠다. 유배를 당한 곳에서 한국문학사에 우뚝 솟을 대표적인 작품들을 남겼다. 아울러 19년 동안의 그의 은거생활 또한 그가 작품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기가 되었다.

그는 유배지인 함경도 경원에서 「견회요遺懷謠」와 「우후요兩後謠」 등 시조 6수를 지었으며, 병자호란 때 왕이 항복하고 적과 화의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이를 욕되게 생각하여 제주도로 가던 중 보길도甫吉島의 수려한 경치에 이끌려서 그곳에 정착하여 일대를 ‘부용동芙蓉洞’이라 이름하고 낙서재樂書齋를 비롯한 건물들을 지어 풍류를 즐겼다. 이후 난이 끝난 후에 왕에게 문안드리지 않았다는 죄목으로 그는 경상북도 영덕으로 귀양 갔다가 이후 풀려났고, 그로부터 10년 동안 정치와는 관계없이 보길도의 부용동과 금쇄동金鎖洞의 산수와 한가한 생활을 즐기면서 보냈다. 이때 연시조인 「오우가」가 실려 있는 「산중신곡山中新曲」을 비롯하여 「산중속신곡山中續新曲」 등을 지었다. 1651년(효종 2)에는 보길도를 배경으로 「어부사시사漁父四時詞」를 지었다.

이후 예조참의가 되었으나 서인의 모략으로 사직하여 경기도 양주 땅 고산孤山에 은거하였으며, 「몽천요夢天謠」를 지었다. 그의 작품 활동에는 그의 문학적 역량과 함께 조상으로 물려받은 유산을 이용하여 은거생활을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다는 점도 나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윤선도의 정치적 행보와 문학작품 활동을 보면, 그와 시기를 달리하면서 정치적인 입장이 달랐던

정철鄭澈의 행보와 유사한 모습을 보인다. 정철이 관동별곡 사미인곡 등 가사문학이 한국문학을 대표하는 작품으로 거론되고 있고, 정치적으로도 선명성을 내세웠다는 점에서 양인이 궤를 같이 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그의 관직 행보만을 살펴보면 1623년 인조반정 후 의금부도사에 제수되었고, 이후 찰방 등에 임명됐으나 사양했다. 1628년(인조 6) 별시別試 문과 초시에 장원으로 합격해 봉림대군과 인평대군의 스승으로 사부師傳의 관직을 맡았으며, 공조좌랑·형조정랑·한성부서윤 등을 역임했다. 1633년(인조 11) 증광 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고, 예조정랑·사헌부지평 등을 지냈다. 1634년(인조 12) 성산臺山 현감으로 좌천된 뒤, 이듬해 파직되었으며, 1652년(효종 3) 국왕의 부름을 받아 예조참의가 됐으며, 1657년(효종 8) 동부승지에 이르렀다.

윤선도의 다양한 관직생활은 국왕의 사부로 활동한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왕실은 그를 중요한 인물로 여겼으며, 그와 관련하여 상당한 정도의 경력을 갖추는데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 그와 관련된 교지나 교첩들은 남아 있는 것이 없어서 구체적인 문서들을 살필 수 없다는 점이 아쉽다.

한편 그에게 부여된 관직들 중에는 그가 획득한 문학적 명성과 걸맞은 직이라 할 만한 것은 찾기가 힘들다. 다만 나중에 국왕이 된 효종이 그에게 많은 감사를 표시한 문서들이 남아 있는 정도이다. 이들 문서를 통해 효종이 세자 시절에 윤선도로부터 배운 것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해 자신의 정성을 지속적으로 표현하였음을 알 수 있다.

뒤에 제시된 문서들은 왕과 왕실이 그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는 과정에 지급된 것들임과 동시에 교지와 같은 구체적인 관직생활의 증거가 남아 있지 않더라도 그나마 윤선도가 정치적 활동의 흔적과 함께 관직을 거치면서 이루어낸 행적을 살필 수 있는 것이라 하겠다.

1628년(인조 6) 4월에 그에게 지급된 녹패에 ‘건공장군 행 충무위 부사맹’의 표현이 담겨 있어서 그가 충무위 부사맹의 직으로 종8품의 관직을 지니고 있었음을 알 수 있으며[녹패 10 참조], 다른 녹패에서 ‘통정대부 예조 참의’의 표현[녹패 2 참조] 등으로 교지와 교첩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 외에도 1652년(효종 3) 1월 23일에 국왕이 해남에 낙향해 있는 윤선도를 성균관의 사예로 임명하여 부르면서 자신을 깨우쳐 주었음을 언급하고 빨리 올라오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유지有旨가 있는 정도이다.[유지 1참조] 이는 국왕이 윤선도에게 내린 은사장恩賜狀들과 함께 편집한 『은사첩恩賜帖』 제 1책에 포함되어 있다.

같은 해 4월에 윤선도는 국왕으로부터 전교傳敎를 받았다. 앞서 국왕의 부름을 받아 상경한 윤선도가 참혹한 모함을 받아 몇 개월 뒤인 4월에 낙향하려고 하자, 국왕인 효종이 그에게 낙향하지 말고 머물러 있도록 당부하는 내용으로 내린 것이다.

윤선도 관련 문서는 은사장이 압도적으로 많다. 윤선도는 효종이 봉림대군인 때 3년 간 사부의 직을 지냈는데, 효종은 대군시절에도 윤선도에게 수많은 하사품들을 보냈다. 뿐만아니라 효종이 국왕

이 된 이후에도 윤선도의 집에 많은 물품들을 내려준 문서들이 많다.

윤선도는 봉림대군의 사부로서 인조에 이어 효종, 현종 대에 왕실로부터 많은 예우를 받은 것으로 보이며, 그에 따라 하사된 물품들도 다양하면서 많았다. 이러한 것들의 구체적인 내용은 은사장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해남 윤씨가에 있는 은사장은 『은사첩』이라는 이름으로 건과 곤 2책으로 정리되었으며, 녹우당에 소장되어 있다. 이 책은 1628년(인조 6)부터 1660년(현종 원)까지 국왕을 비롯하여 왕실에서 윤선도에게 내린 은사장 외에도 유지와 전교들을 합하여 만든 것이다. 그 중에서도 은사장은 왕을 비롯한 왕실로부터 주어진 것들인데, 직접적인 명령에 의하여 관부를 통하여 주어졌으며, 보낸 주체에 따라 문서양식이 다르다.

윤선도는 인조대에 봉림대군과 인평대군의 사부였다. 그가 국왕이나 왕실과 맺은 인연으로 다양한 물품들을 받았으며, 은사장은 그때 주어진 것들을 기록한 문서이다.

윤선도에게 은사장을 지급한 주체들은 다양하였다. 대전·내전·대군방을 들 수 있다. 우선 문서에서 ‘대전’으로 표기되는 국왕은 구체적으로는 인조와 효종을 가리킨다. 인조가 내린 것은 윤선도에게 1628년(인조 6)에서 1633년(인조 11)까지의 문서가 있으며, 효종이 국왕으로서 내린 것은 1652년(효종 3)과 1658년(효종 9) 사이에 지급한 것들을 들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1628년(인조 6) 8월 2일에 윤선도에게 지급한 은사장으로 예로 들면, ‘윤선도가 사송’이라 하여 제일 앞부분에 발송처를 밝히고 나서 문어·대구어·전복·송어·광어 등의 건어물을 비롯하여 평·생선·장인복·편포·жат·홍소주 등의 물품들이 기록되어 있으며, 인조가 보냈음을 알 수 있는 ‘봉사지인’이 찍혀 있다.

국왕인 인조가 직접 보낸 물품은 매우 다양하였다. 위에 기록한 물품 외에도 굴의 일종인 감자(柑子), 사슴고기, 노루고기, 표피, 웅어, 포, 후추 등이었다. 그러나 효종이 왕에 오른 후 윤선도에게 보낸 물품은 그보다 더 다양하였다고 할 수 있다. 전세로 거둔 쌀, 전세로 거둔 콩, 소금, 미역, 말린 돼지고기, 멧돼지, 생노루, 전복, 쾌포(快脯), 추복, 장인복, 말린 문어, 말린 대구어, 말린 광어, 생치, 건치, 말린 송어, 생선, 생웅어, 조기, 잣, 홍소주, 향온주, 당유자, 감굴, 동정굴, 유감(乳柑), 칠변선, 유별선, 4장부유석 등 쌀과 육류를 비롯하여 생선류 및 말린 어물, 소금, 술, 꿀, 부채, 깔자리 등 다양한 형태의 물건들을 윤선도에게 사정에 따라 직접 내려주었음을 알 수 있다.

채소에 해당하는 것은 궁정에서 설치된 채소밭이라 할 수 있는 농포에서 직접 보냈다. 1630년(인조 8) 10월 14일에 향청 즉 무를 보내면서 농포의 담당자가 직접 확인을 하여 보내고 있으며, ‘봉사지인’이 찍혀 있다.

1628년(인조 6) 8월 2일에 내수사를 통해 보낸 것이 있는데, 국왕의 명에 의해 소금 1석을 보낸 것임을 밝히고 있다. 그 외에도 1630년(인조 8) 12월 21일의 문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내수사를 통해 보내는 물품 중에는 공미 혹은 공태, 붉은 콩 등이 지급되고 있다. 내수사를 통해 보낸 것은 소금이

많았으며, 그 외의 것은 곡물에 한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효종 대에는 공미, 전세미, 전세태, 소금, 미역, 조기 등을 보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629년(인조 7) 5월 6일 상고廡에서 부채를 보내도록 한 적이 있는데, 이때 보낸 부채의 종류는 백첩선, 칠별선, 유별선 들이다. 효종 대에는 은립모, 대홍광다회, 공작우, 벌월을우, 궁대통개, 향환도, 흑각궁, 장전 등이 지급되었다.

내전이라 함은 인열왕후·인선왕후·명성왕후·장열왕후 등으로 상황에 따라 달랐다. 인열왕후가 보낸 물품들은 감자, 청어, 생선, 준치, 웅어, 생홍어, 문어, 말린 광어, 대구어, 말린 송어, 단인복, 생송어, 생전복, 편포, 꿩고기, 공미, 꿩, 사지, 붓, 떡, 향온주 등 다양하다.

그 외에도 비단 종류 중 하나인 초록색 토주, 보라색 토주를 들 수 있으며, 자전이 명하여 대군방에서 보라색 도련주, 남색 도련주를 내려주도록 한 예도 있다. 이들 내전에서 발급한 은사장은 한글로 이루어진 것들이 많이 보이고 있어서 작성 주체가 여성이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으며, 한편으로는 한글 문서로서의 특징을 살필 수 있다. 인열왕후가 보낸 것 외에도 내전에서 보낸 것으로 1660년(현종 원)에 인선왕후, 명성왕후, 장열왕후가 각각 표리를 내린 것이 있다.

대군방인 경우는 봉림대군을 직접 지칭하거나, 혹은 ‘양대군兩大君’이라 할 경우는 봉림대군과 인평대군 모두를 일컫기도 하였으며,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대군’이라 지칭하는 경우도 있다. 발급 주체가 대군인 경우가 가장 많으며, 봉림대군방에서 대군방의 담당자에게 발송하도록 한 경우는 담당자를 명확하게 밝히기도 하였다. 그 외에도 대군이 보낸 경우 혹은 ‘대군것’, ‘자가自家 내지 자계’, ‘즈계’ 등으로 표현하여 물건을 보낸 주체를 따로 기록하였는데, 때로는 윤선도가 나중에 관련된 기록을 따로 표기하기도 하였다. 발송 주체가 기록되지 않은 것도 있으나 ‘사부댁師傳宅’과 같이 표기된 것은 대군방에서 보낸 것으로 보인다.

봉림대군의 명으로 봉림대군방에서 시행한 것으로는, 녹미, 종이, 붓, 떡, 모자, 생문어, 말린 문어, 생복, 말린 대구, 건치, 생치, 편포, 말린 송어, 생선, 감굴, 전약煎藥, 홍소주, 역서曆書, 서피鼠皮, 사모紗帽, 귀마개, 공목眞木, 육군자탕의 약재료 등이 있다.

대군으로 표기된 문서에는 녹미, 녹태, 공목, 증편, 절육切肉, 소육, 추복탕槌卜湯, 어만두, 생선전유, 전복숙, 해삼초, 홍합초, 꿩고기, 연계, 각종 절육, 오리알, 생선, 생복, 은구어, 건연어, 청어, 말린 연어, 연어알, 연어알젓, 말린 송어, 세린석수어洗鱗石首魚, 대구어 알, 분, 산삼, 정과, 서진과, 능금, 자두, 오미자, 황감, 서진과, 기죽피회, 기자피 흑화자청구, 청간해울탕의 약재료, 후추, 백첩선, 칠별선, 유별선, 벼루, 종이, 떡, 붓, 홍소주, 모자, 사지, 황모필, 참떡 등 다양한 물품들이 보인다.

이들 왕실의 구성원들이 명령을 내렸을 때, 직접적으로 내려지는 물품이 따로 있는 반면, 구체적인 물품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내수사, 농포, 대군방 등이 있다.

국왕이 직접 내린 문서에는 ‘봉사지인’, ‘상고지인’, ‘내수사’, ‘농포’ 등의 글자가 새겨진 도장이 보낸 주체에 따라 달리 찍혀 있다. 이들 물품은 내린 주체에 따라 구분할 수 있는데, 왕실에서 내린 것중에

‘봉사지인’이 찍혀 있는 것은 국왕이 직접 내린 것으로 보이며, ‘내수사인’이 찍힌 것은 국왕의 전교에 의하여 내린 것이다. 그 외에도 내전에서 사부인 윤선도에게 내리거나, 윤선도 집에 봉림대군이 직접 보냈거나 내교에 따라 봉림대군방에서 물품을 따로 보낸 것도 있는데, 이러한 것들에는 달리 인장을 찍지 않았다. 봉림대군방에서 보낸 문서에는 봉림대군방의 담당자가 착압한 것도 있다.

(5) 윤진미 尹晉美

윤진미는 조부가 윤유익, 부는 윤선각이며 윤경이 아들이다. 그와 관련된 고문서는 1676년(숙종 2) 3월 21일 한량 윤진미가 무과에서 을과 제153인에 급제하여 발급받은 홍패가 유일하게 남아있다. 족보에는 현감을 지냈다고 한다. 보다 자세한 기록은 알 수 없다.

(6) 윤인미 尹仁美

윤인미(1607~1675)는 고산 윤선도의 장남이며, 자는 자수이다. 유영길의 손녀이자 유영경의 종손녀인 문화 유씨와 결혼하였다. 1630년(인조 8) 생원시에 합격하여 생원이 되고 성균관에서 수학하였다고 하며, 음서로 출사하여 별감을 지냈다. 1662년(현종 3) 증광문과에 병과로 급제, 권지 성균관 학유가 되었으나, 예송 논쟁으로 윤선도에 연좌되어 등용되지 못하였다. 1675년 숙종 즉위 후 조봉대부의 품계를 받았으나 곧 사망하였다. 1678년 ‘조봉대부 사간원 헌납 지제교 겸 춘추관 기주관’에 추증되고, 1774년 증손 윤덕희가 종2품인 가의대부에 오르게 되자 ‘증 통훈대부 사간원사간’에 추서되었다.

그와 관련하여 그가 생전에 받은 것으로는 1651년(효종 2) 10월 30일에 통덕랑 행 사직서 참봉에 임명하는 교첩과 1652년(효종 3) 7월에 전설사 별감에 임명하는 차첩 및 1662년(현종 3) 7월에 권지 성균관 학유에 임명된 차첩이 있다.

사후에 받은 교지로는 1678년(숙종 4) 8월 11월에 조봉대부 사간원 헌납 지제교 겸 춘추관 기주관에 추증된 교지가 있다. 이후 1774년(영조 50) 9월에 증손인 윤덕희가 가의대부 동지중추부사가 되면서, 증조할아버지인 윤인미에게 추증 교지가 더해 졌다. 윤인미는 이로써 조봉대부 사간원 헌납 지제교 겸 춘추관 기주관에 추증되었다. 생전에는 성균관 학유를 지냈던 그가 추증을 통해 이후에는 통훈대부 사간원사간직에까지 추증되었다.

(7) 윤이석 尹爾錫

윤이석은 윤인미의 아들이다. 그와 관련된 문서들을 살펴보면, 1677년(숙종 3) 10월에 선공감 가감역관에 임명되었다. 전임자인 조면 趙沔이 다른 자리로 가게 되자, 그 자리에 임명된 것이다. 가감역관은 종9품의 자리였다. 윤이석은 1678년(숙종 4) 1월에 국왕의 명에 따라 병조에서 과의교위 행 충무위 사용에 임명되었다.

이어서 1678년(숙종 4) 3월에 별가의 조치에 따라 그에게 조봉대부의 품계가 주어졌다. 1678년(숙종 4) 8월 3일에는 조봉대부 행 니산 현감에 임명되었으며, 1679년(숙종 5) 2월 15일에 윤이석을 조산대부 행 니산 현감에 임명되어 품계가 1등급 높아졌다. 이는 같은 해 2월에 내려진 별가의 조치에 따른 것이었다. 1679년(숙종 5) 5월 15일에는 같은 해 5월에 내려진 별가의 조치에 따라 봉렬대부 행 니산 현감에 임명하는 교지가 주어졌다. 봉렬대부는 정4품 하에 해당하는 직위이고, 현감은 종6품에 해당하는 직위이다. 이후 10년 동안 윤이석과 관련된 교지는 보이지 않는다. 다만 1689년(숙종 15) 2월 15일에 이르러 통훈대부 행 사복시 주부에 임명하는 교지가 있다. 통훈대부는 정3품 하에 해당되며, 사복시 주부는 종6품에 해당하는 직책이다. 이로써 그 과정에 봉렬대부 이후 4차례의 가자의 조치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사복시 주부로 이동하는 교지가 또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는 남아 있지 않다.

윤이석은 사복시 주부가 된 이후 얼마 되지 않아 승급되었다. 1689년(숙종 15) 4월 9일에 통훈대부 행 한성부 판관에 임명되어 종5품직에 제수되었다. 같은 해 5월 9일에는 윤이석이 통훈대부 행 중추부 전부에 임명되어 정5품직을 받았다. 그가 살아 있을 때 받은 관직은 이에 그쳤다.

그는 1689년 2월과 5월에 받은 별가의 혜택을 자신의 아들인 윤두서가 대신 받도록 하였다. 윤이석은 이미 통훈대부로 가자를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상태인 자궁(資窮)에 해당한 품계를 지녔기 때문에, 자신이 받을 자격을 아들이 대신하도록 한 것이다. 윤두서는 아버지 덕택에 종 5품 상에 해당하는 봉직량에서 종4품 상인 통덕량으로 2단계를 뛰어 넘는 초자(超資)의 조치를 받은 것이다.

윤이석 자신도 사후에 자신의 손자인 가의대부 동지충추부사 윤덕희로 말미암아 통정대부 승정원 좌승지 겸 경연 참찬관에 증직되었다.

(8) 윤두서 尹斗緒

윤두서(1668~1715)는 생부가 윤이후이고 윤이석에게 출계하였다. 윤이후는 윤의중-윤유심-윤선언-윤의미(양자) 등으로 이어지지만 윤예미에게 양자로 갔으며, 그의 아들 중 윤두서를 윤이석에게 양자로 보냈다. 이는 양자제도의 복잡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기도 하다. 윤선도는 윤선언의 친형제여서 가까운 친족 내에서 출계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윤두서는 윤선도의 증손이 되었고, 한편 정약용의 외증조이기도 하였다.

그는 집안의 종손으로서 막대한 경제적 부를 소유하였고 진사시에 합격하는 등 학문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과 윤선도의 후손이라는 탄탄한 배경이 있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는 남인계열에 속하여 벼슬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1712년 이후 그는 고향 해남 연동(蓮洞)으로 돌아와 은거하면서 남은 일생을 학문과 시서화로 보냈다.

특히 그는 조선 후기 대표적인 화가로 새로운 회화 경향을 선도하였으며, 산수화, 도석인물화, 풍속화, 동물화, 화조화 등 다양한 화목의 작품을 제작하였다. 그는 그 중에서도 특히 인물화와 말을 잘

그였으며, 예리한 관찰력과 뛰어난 필력을 바탕으로 정확하게 묘사하는 사실성이 그의 작품의 특징이다.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자화상自畫像」이 있는데, 심성과 인간상을 그리는 전신사조의 이념을 구현한 작품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의 그림인 자화상에는 현실과 괴리감에서 나오는 지식인의 내면적 갈등이 잘 표현되고 있다. 아울러 그의 말 그림 또한 돋보이는 그의 관찰력을 잘 드러내고 있으며, 게다가 나물 캐는 여인을 그린 「채애도採艾圖」를 비롯한 농민들의 노동을 주제로 삼은 풍속화는 새로운 사상과 새로운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특히 18세기 김홍도金弘道, 신윤복申潤福 등에 의하여 크게 보급된 18세기 풍속화에 선구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하겠다. 윤두서는 이 외에도 『동국여지도東國輿地圖』, 『일본 지도日本地圖』, 천문학과 수학에 관한 서적, 서예 분야에서의 새로운 입론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학문적 소양을 보였다.

윤두서의 자는 효언, 호는 공재이다. 윤두서는 1693년(숙종 19) 진사시에 합격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현재는 그가 받은 백패가 남아 있지 않다. 그 외에도 그의 관력의 흔적을 살필 수 있는 것으로는 1774년(영조 50) 9월에 내려진 교지에 성균진사 윤두서를 가선대부 호조 참판 겸 지의금부사 오위도총부 부총관에 증직하는 내용이 있다. 이는 윤덕희가 가의대부 동지중추부사가 되면서 윤두서를 추증하는 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이보다 앞서 그에게 대가代加가 이루어진 흔적도 살필 수 있다. 앞서 윤이석을 다루면서 언급하였지만, 1689년 2월과 5월에 받은 별가의 혜택을 자신의 아들인 윤두서가 대신 받도록 한 것을 들 수 있다. 윤이석이 자궁貧窮인 상태에서 아들인 윤두서에게 종 5품 상에 해당하는 봉직량에서 종4품 상인 통덕량으로 2단계를 뛰어 넘는 초자超資의 조치를 부여한 사실이 있다. 아들인 윤덕희로 인하여 받은 1774년 윤두서의 추증 교지에는 이와 같은 품계가 반영되었지만, 그 교지에서는 여전히 성균진사로 표시되었음은 물론이다.

윤두서는 앞서 이야기 하였듯이 남인계열의 정치적인 성향 때문에 관직에 오르는 것을 접고 고향에서 은둔 생활을 하였기에, 그의 명성에 비해 실질적인 관직과 관련된 활동은 없었다. 따라서 그의 관직생활과 관련된 고문서로 남아 있는 것은 없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는 1715년 48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9) 윤덕희尹德熙

윤덕희(1685~1776)는 자는 경백, 호는 낙서, 연웅, 연포, 현웅이다. 윤선도의 현손이며, 윤두서의 맏아들이다. 그의 관력과 관련하여 남아 있는 문서 중 앞선 것으로 1748년(영조 24) 1월 22일에 유학에서 종 9품에 해당하는 과의교위 행 용양위 부사용의 직책을 맡은 교첩을 들 수 있다. 과의교위는 서반 정5품 상에 해당하는 자급이며, 용양위는 5위 중 좌위에 해당하는 군사기구였다. 그는 그해 2월 14일에 통덕량 행 사용원 주부에 임명되었다. 통덕량은 정5품의 문관 품계이고, 사용원은 조선시대 궁중의 음식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관청이며, 주부는 종6품에 해당하였다. 그가 6품으로 올라가게

된 것은 어진이 완성되어 국왕이 명을 내렸기 때문인데, 어진을 모사할 때 조영석과 함께 용상 제작과 관련된 일을 맡아 인정을 받았다. 이보다 앞서 그들은 영정이모에도 함께 참여하였다.

1748년(영조 24) 2월 27일에는 통덕랑 행 사옹원 주부 윤덕희를 통덕랑 행 동부 도사(東部都事)의 교첩을 받는다. 이어 같은 해 11월 5일에 조봉대부 행 사포서 별제에 임명하는 교지를 받았다. 조봉대부는 종4품 하에 해당하는 직이다. 이 해에 그는 조영석(趙榮祿)과 함께 삼성진전모사중수도감(三聖眞殿模寫重修都監)에 참여하여 각자 역할을 담당하였고, 다음 해에는 정5품에 해당하는 정릉(貞陵) 영수에 임명되었다.

이후 14년 정도 그의 관력과 관련한 교지들이 보이지 않다가, 1763년(영조 39) 1월에 절충장군 첨지중추부사에 임명되고 있다. 그간의 구체적인 사정을 교지로서는 살피기 힘들다고 하겠다. 나이가 많아지들면서 소위 노직(老職) 명목으로 비로소 그의 품계가 높아졌다. 1763년(영조 39) 1월 1일자로 윤덕희에게 80세의 나이를 들어서 추은(推恩)의 명목으로 노직을 가자하는 교지가 있기 때문이다. 그가 절충장군 첨지중추부사에 오르게 되면서 1764년(영조 40)에 그의 처 유인(孺人) 안씨(安氏)와 처 유인 심씨(沈氏)에게도 정3품에 해당하는 숙부인에 증직되었다.

윤덕희에게는 1766년(영조 42) 9월에 82세의 나이임을 들어 추은(推恩)의 명목 하에 가자되어 종2품 가선대부의 자급이 주어졌다. 아울러 그에게는 가선대부 행 용양위 부호군의 군직이 주어졌다.

다음 해인 1767년(영조 43) 1월에는 83세임을 들어 다시 종2품 상에 해당하는 가의대부의 자급이 주어졌다. 그리고 그는 1767년(영조 43) 5월에 가의대부 동지중추부사에 임명되었다. 한편 이와 같은 변동에 따라 1774년(영조 50) 9월에는 윤덕희 처 숙부인 심씨(沈氏)와 숙부인 안씨도 모두 정부인에 증직되었다.

증직의 조치는 그에 머물지 않고 윤덕희 아버지 윤두서에게도 미쳤다. 윤두서를 가선대부에 추증하는 조치가 이어졌다. 성균 진사 윤두서를 가선대부 호조 참판 겸 지의금부사 오위도총부 부총관에 증직한 것이다. 아울러 그의 어머니 공인(恭人) 이씨(李氏)도 정부인에 증직되었다.

그리고 할아버지인 통훈대부행 종친부 전부 윤이석은 통정대부 승정원 좌승지 겸 경연 참찬관에 증직되었고, 할머니 숙인 심씨(沈氏) 또한 숙부인에 증직되었다.

윤덕희의 증조부 윤인미는 조봉대부 사간원헌납 지제교 겸 춘추관기주관으로 증직되고 생전에 권지 성균관학유 조봉대부를 지냈는데, 통훈대부 사간원사간으로 추증되었다. 다만 그의 증조모의 추증교지가 남아 있지 않다.

윤덕희는 이 집안의 예술적 재능을 이은 인물이기도 하다. 그는 ‘독서하는 여인’, ‘오누이’, ‘마상부인도’ 등을 그린 문인화가이기도 하다. 아버지 윤두서의 영향을 받아 화풍을 이었으며, 전통적이고 중국적인 소재의 도석 인물(道釋人物), 산수 인물, 말을 잘 그렸다. 그의 아들 윤용(尹溶)도 화업을 이어서 윤두서와 함께 3대가 화가로 알려져 있다. 윤두서의 작품 『해남윤씨 가전고화첩』은 윤덕희가 정리해 둔 것이다.

(10) 윤취서尹就緒

윤취서(1688~1766)의 자는 여삼이다. 아버지는 윤경, 조부는 윤진미이고, 윤유서가 형제이다. 윤두서 등이 윤구尹衢의 계보를 이었음에 비하여, 그는 윤구의 동생인 윤복의 계보를 잇고 있는 인물이다. 관련된 문서로는 1723년 2월 15일에 유학 윤취서가 진사시에 3등 제23인으로 입격하여 받은 백패가 있다. 이때 그가 진사에 합격한 시험은 증광시였으며, 당시 36세의 나이로 강진康津에 거주하고 있었다. 그는 강진 굴동마을의 입향조로 알려져 있으며, 이후 다산 정약용이 이후 강진에 다산초당에서 활동은 그의 후손들과 연계되어 잘 알려진 사실이다.

(11) 윤관하尹觀夏

1894년(고종 31) 12월에 유학 윤관하를 본진本陣의 별군관으로 임명하고 그에게 즉시 임무를 보도록 명한 양호순무좌선봉의 전령이 있다. 이는 상급 관원이 하급 관원이나 백성들에게 발급한 명령서이다. 고종에게 어사로 명을 받아 마패인 2개와 관인 1개가 찍혀 있다. 1894년 농민군 진압을 위해 조선 정부는 양호순무영을 설치하였으며, 도순무사에 신정희申正熙를 임명하고, 양호순무좌선봉장은 통위영 영관이던 이규태李圭泰이며, 양호순무우선봉장은 이두황李斗璜이었다. 지역 내에 농민군의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에 윤관하는 이규태의 휘하에 속하여 농민군 진압에 참여하였음을 보여주는 문서이다.

참고문헌

- 유지영, 2007, 「조선시대 임명관련 교지의 문서형식」 『古文書研究』 30.
金奉佐, 2006, 「해남 녹우당 소장 『恩賜帖』 고찰」 『서지학연구』 33.
이종범, 2004, 「孤山 尹善道の 出處觀과 政論」, 대구사학 74.
송일기 외, 2003, 『海南線雨堂의 古文獻』, 전라남도·문헌정보연구소.
崔承熙, 1989, 『增補版 韓國古文書研究』, 지식산업사.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6, 『古文書集成 3 : 海南尹氏篇 正書本』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3, 『古文書集成 3 : 海南尹氏篇 影印本』

1. 교지

1-1-1) 1534년(중종 29) 윤2월에 유학 윤복이 생원시에 합격하여 받은 백패白牌

[1534년(중종 29) 윤2월에 유학 윤복이 생원시에 2등 제1인으로 합격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한 증서인 백패]

교지

유학 윤복이 생원 2등 제1인으로 합격入格함.
가정 13년 윤2월

教旨

幼學尹復生員二等第一人[入]
格者
嘉靖十三年[寶]閏二月 日

1-1-2) 1538년(중종 33) 9월에 생원 윤복이 문과에 급제하였음을 증명하는 홍패紅牌

[1538년 9월에 생원 윤복이 문과 을과 제1인으로 급제하여 발급받은 증서]

교지

생원인 윤복이 문과 을과乙科 제1인으로 급제하여 출신出身 함.
가정 17년 9월

教旨

生員尹復文科乙科第一人
及第出身者
嘉靖十七年[寶]九月 日

1-1-3) 1555년(명종 10) 8월 2일에 윤복을 봉정대부 행 낙안 군수에게 사가仕加를 시행함에 따라 발급해준 교지

[1555년(명종 10) 8월 22일에 윤복이 봉정대부 행 낙안 군수로서 봉정대부를 임기가 차서 품계를 올려 받으면서 발급받은 문서]

교지

윤복을 봉정대부 행 낙안 군수로 임명함.
가정 34년 8월 초2일
사가仕加함

教旨

尹復爲奉
正大夫行
樂安郡守
者
嘉靖三十四年[寶]八月初二日
仕加

1-1-4) 1555년(명종 10) 12월 21일에 윤복을 봉정대부 행 낙안 군수에 임명하는 교지

[1555년(명종 10) 12월 21일에 윤복이 봉정대부 행 낙안 군수에 임명하는 내용으로 발급받은 문서]

교지

윤복을 봉정대부 행 낙안 군수로 임명함.

가정 34년 12월 21일

教旨

尹復爲奉正大夫行

樂安郡守

者

嘉靖三十四年[寶]十二月二十一日

1-1-5) 1560년(명종 15) 윤복을 통훈대부 행 한산 군수 겸 춘추관 편수관으로 임명하는 교지

[1560년(명종 15) 4월 23일에 윤복을 통훈대부 행 한산 군수 겸 춘추관 편수관에 임명하는 문서]

교지

윤복을 통훈대부 행 한산 군수 겸 춘추관 편수관에 임명함.

가정 34년 12월 21일

教旨

尹復爲通訓大夫

行韓山郡守兼春

秋館編修官者

嘉靖三十九年[寶]四月二十三日

1-1-6) 1562년(명종 17) 윤복을 광주 목사光州牧使로 임명하는 교지

[1562년(명종 17) 9월 18일에 윤복을 통훈대부 광주 목사에 임명하는 문서]

윤복을 통훈대부 광주 목사光州牧使로 임명함.

가정 41년 9월 18일

教旨

尹復爲通訓

大夫光州牧

使者

嘉靖四十一年[寶]九月十八日

1-1-7) 1564년(명종 19) 윤복을 행 종부시 첨정에 임명하는 교지

[1564년(명종 19) 2월 25일에 윤복을 통훈대부 행 종부시 첨정에 임명하는 문서]

교지

윤복을 통훈대부 행 종부시 첨정에 임명함.

가정 43년 2월 25일

教旨

尹復爲通訓

大夫行宗簿

寺僉正者

嘉靖四十三年[寶]二月二十五日

1-1-8) 1565년(명종 20) 윤복을 안동 대도호부사에 임명하는 교지

[1565년(명종 20) 6월 15일에 윤복을 통훈대부 안동 대도호부사에 임명하는 문서]

교지

윤복을 통훈대부 안동 대도호부사에 임명함.

가정 44년 6월 15일

教旨

尹復爲通

訓大夫安東

大都護府

使者

嘉靖四十四年[寶]六月十五日

1-1-9) 1567년(명종 22) 윤복을 안동 대도호부사로 임명하는 교지

[1567년(명종 22) 5월 14일에 윤복을 통훈대부 안동 대도호부사에 임명하는 문서]

교지

윤복을 통훈대부 안동 대도호부사에 임명함.

융경 원년 5월 14일

教旨

尹復爲通訓

大夫安東大

都護府使者

隆慶元年[寶]五月十四日

1-1-10) 1568년(선조 원) 윤복을 종부시 정에 임명하는 교지

[1568년(선조 1) 8월 6일에 윤복을 통훈대부 종부시 정에 임명하는 문서]

교지

윤복을 통훈대부 종부시 정에 임명함.

융경 2년 8월 6일

教旨

尹復爲通

訓大夫宗

簿寺正者

隆慶二年[寶]八月初六日

1-1-11) 1572년(선조 5) 윤복을 홍문관 부수찬 지제교에 임명하는 교지

[1572년(선조 5) 윤2월 4일에 윤복을 통훈대부 행 홍문관 부수찬 지제교 겸 경연 검토관 춘추관 기사관에 임명하는 문서]

교지

윤복을 통훈대부 행 홍문관 부수찬 지제교 겸 경연 검토관 춘추관 기사관에 임명함.

용경 6년 윤2월 4일

教旨

尹復爲通訓大夫

行弘文館副修撰

知製教兼經筵檢

討官春秋館記事

官者

隆慶六年[寶]閏二月初四日

1-1-12) 1572년(선조 5) 윤복을 사헌부 지평에 임명하는 교지

[1572년(선조 5) 3월 9일에 국왕이 윤복을 통훈대부 행 사헌부 지평에 임명한 문서]

교지

윤복을 통훈대부 행 사헌부 지평에 임명함.

용경 6년 3월 9일

教旨

尹復爲通訓

大夫行司憲
府持平者
隆慶六年[寶]三月初九日

1-1-13) 1572년(선조 5) 윤복을 홍문관 수찬 지제교 겸 경연 검토관 춘추관 기사관에 임명하는 교지

[1572년(선조 5) 4월 21일에 윤복을 통훈대부 행 홍문관 수찬 지제교 겸 경연 검토관 춘추관 기사관에 임명하는 문서]

교지
윤복을 통훈대부 행 홍문관 수찬 지제교 겸 경연 검토관 춘추관 기사관에 임명함.
융경 6년 4월 21일

教旨
尹復爲通訓大夫
行弘文館修撰知
製教兼經筵檢討
官春秋館記事官
者
隆慶六年[寶]四月二十一日

1-1-14) 1572년(선조 5) 윤복을 행 홍문관 수찬 지제교 겸 경연 검토관에 임명하는 교지

[1572년(선조 5) 5월 2일에 윤복을 통훈대부 행 홍문관 수찬 지제교 겸 경연 검토관에 임명하는 문서]

교지
윤복을 통훈대부 행 홍문관 수찬 지제교 겸 경연 검토관에 임명함.
융경 6년 5월 2일

▣(教旨)

尹復爲通訓

大夫行弘文館

修撰知製教兼

經筵檢討官者

隆慶六年[寶]五月初二日

1-1-15) 1572년(선조 5) 윤복을 행 홍문관 수찬 지제교 겸 경연 검토관 춘추관기사관에 임명하는 교지

[1572년(선조 5) 5월 12일에 윤복을 통훈대부 행 홍문관 수찬 지제교 겸 경연 검토관 춘추관기사관에 임명하는 문서]

교지

윤복을 통훈대부 행 홍문관 수찬 지제교 겸 경연 검토관 춘추관 기사관에 임명함.

용경 6년 5월 12일

▣(教)旨

尹復爲通訓大

夫行弘文館修撰

知製教兼經筵檢

討官春秋館記事

官者

隆慶六年[寶]五月十二日

1-1-16) 1572년(선조 5) 행 사헌부 장령 겸 춘추관 편수관에 임명하는 교지

[1572년(선조 5) 5월 22일에 윤복을 통훈대부 행 사헌부 장령 겸 춘추관 편수관에 임명하는 문서]

교지

윤복을 통훈대부 행 사헌부 장령 겸 춘추관 편수관에 임명함.

융경 6년 5월 22일

教旨

尹復爲通訓

大夫行司憲

府掌令兼春

秋館編修官

者

隆慶六年[寶]五月二十二日

1-1-17) 1572년(선조 5) 윤복을 행 홍문관 교리 지제교 겸 경연 시독관 춘추관 기주관에 임명하는 교지

[1572년(선조 5) 5월 26일에 윤복을 통훈대부 행 홍문관 교리 지제교 겸 경연 시독관 춘추관 기주관에 임명하는 문서]

교지

윤복을 통훈대부 행 홍문관 교리 지제교 겸 경연 시독관 춘추관 기주관에 임명함.

융경 6년 5월 26일

教旨

尹復爲通訓

大夫行弘文館

校理知製教兼經

筵侍讀官春秋

館記注官者

隆慶六年[寶]五月二十六日

1-1-18) 1572년(선조 5) 윤복을 행 홍문관 교리 지제교 겸 경연 시독관에 임명하면서 발급한 교지

[1572년(선조 5) 6월 5일에 윤복을 통훈대부 행 홍문관 교리 지제교 겸 경연 시독관에 임명하는

문서]

교지

윤복을 통훈대부 행 홍문관 교리 지제교 겸 경연 시독관에 임명함.

융경 6년 6월 5일

▣(教)旨

尹復爲通訓

大夫行弘文館

校理知製教

兼經筵侍讀官

者

隆慶六年[寶]六月初五日

1-1-19) 1572년(선조 5) 윤복을 홍문관 부교리 지제교 겸 경연 시독관에 임명하면서 발급한 교지

[1572년(선조 5) 7월 24일에 윤복을 통훈대부 행 홍문관 부교리 지제교 겸 경연 시독관에 임명하는 문서]

교지

윤복을 통훈대부 행 홍문관 부교리 지제교 겸 경연 시독관에 임명함.

융경 6년 7월 24일

教旨

尹復爲通訓大夫

行弘文館副校理

知製教兼經筵侍

讀官者

隆慶六年[寶]七月二十四日

1-1-20) 1572년(선조 5) 윤복을 행 사헌부 장령으로 임명하면서 발급한 교지

[1572년(선조 5) 8월 22일에 윤복을 통훈대부 행 사헌부 장령에 임명하는 문서]

교지

윤복을 통훈대부 행 사헌부 장령에 임명함.

융경 6년 8월 22일

▣(教)旨

尹復爲通訓

大夫行司憲

府掌令者

隆慶六年[寶]八月二十二日

1-1-21) 1572년(선조 5) 윤복을 행 홍문관 부교리 지제교로 임명하면서 발급한 교지

[1572년(선조 5) 10월 7일에 윤복을 통훈대부 행 홍문관 부교리 지제교 겸 경연 시독관에 임명한 문서]

교지

윤복을 통훈대부 행 홍문관 부교리 지제교 겸 경연 시독관에 임명함.

융경 6년 10월 7일

教旨

尹復爲通訓大夫行

弘文館副校理知製教

兼經筵侍讀官者

隆慶六年[寶]十月初七日

1-1-22) 1572년(선조 5) 윤복을 사복시 정에 임명하면서 발급한 교지

[1572년(선조 5) 12월 8일에 윤복을 통훈대부 사복시 정에 임명한 문서]

교지

윤복을 통훈대부 사복시 정에 임명함.

융경 6년 12월 8일

教旨

尹復爲通訓

大夫通訓大夫司僕寺正

者

隆慶六年[寶]十二月初八日

1-1-23) 1572년(선조 5) 윤복을 행 사헌부 장령에 임명하면서 발급한 교지

[1572년(선조 5) 10월 26일에 윤복을 통훈대부 행 사헌부 장령에 임명한 문서]

교지

윤복을 통훈대부 행 사헌부 장령에 임명함.

융경 6년 10월 26일

教旨

尹復爲通訓

大夫行司憲

府掌令者

隆慶六年[寶]十月二十六日

1-1-24) 1572년(선조 5) 윤복을 행 사헌부 장령에 임명하면서 발급한 교지

[1572년(선조 5) 12월 13일에 윤복을 통훈대부 행 사헌부 장령에 임명한 문서]

교지

윤복을 통훈대부 행 사헌부 장령에 임명함.

융경 6년 12월 13일

教旨

尹復爲通訓

大夫行司憲府

掌令者

隆慶六年[寶]十二月十三日

1-1-25) 1573년(선조 6) 윤복을 홍문관 교리 지제교 겸 경연 시독관에 임명하면서 발급한 교지

[1573년(선조 6) 1월 11일에 윤복을 통훈대부 행 홍문관 교리 지제교 겸 경연 시독관에 임명하는 문서]

교지

윤복을 통훈대부 행 홍문관 교리 지제교 겸 경연 시독관에 임명함.

만력 1년 1월 11일

教旨

尹復爲通訓大夫

行弘文館校理知製

教兼經筵侍讀官

者

萬曆元年[寶]正月十一日

1-1-26) 1573년(선조 6) 윤복을 행 사간원 사간에 임명하면서 발급한 교지

[1573년(선조 6) 1월 22일에 윤복을 통훈대부 행 사헌부 사간에 임명하는 문서]

교지

윤복을 통훈대부 행 사간원 사간에 임명함.

만력 1년 1월 22일

教旨

尹復爲通訓大

夫行司諫院司諫

者

萬曆元年[寶]正月二十二日

1-1-27) 1573년(선조 6) 윤복을 행 사헌부 집의에 임명하면서 발급한 교지

[1573년(선조 6) 2월 25일에 윤복을 통훈대부 행 사헌부 집의에 임명하는 문서]

교지

윤복을 통훈대부 행 사헌부 집의에 임명함.

만력 1년 2월 25일

教旨

尹復爲通訓

大夫行司憲

府執義者

萬曆元年[寶]二月二十五日

1-1-28) 1573년(선조 6) 윤복을 행 홍문관 부수찬 지제교 겸 경연 검토관에 임명하면서 발급한 교지

[1573년(선조 6) 3월 22일에 윤복을 통훈대부 행 홍문관 부수찬 지제교 겸 경연 검토관에 임명하는 문서]

교지

윤복을 통훈대부 행 홍문관 부수찬 지제교 겸 경연 검토관에 임명함.
만력 1년 3월 22일

教旨

尹復爲通訓大
夫行弘文館副修
撰知製教兼經筵
檢討官者
萬曆元年[寶]三月二十二日

1-1-29) 1573년(선조 6) 윤복을 행 사헌부 집의에 임명하면서 발급한 교지

[1573년(선조 6) 3월 27일에 윤복을 통훈대부 행 사헌부 집의에 임명하는 문서]

교지

윤복을 통훈대부 행 사헌부 집의에 임명함.
만력 1년 3월 27일

教旨

尹復爲通訓大
夫行司憲府執
義者
萬曆元年[寶]三月二十七日

1-1-30) 1573년(선조 6) 윤복을 통정대부 승정원 동부승지에 임명하면서 발급한 교지

[1573년(선조 6) 4월 18일에 윤복을 통정대부 승정원 동부승지 겸 경연참찬관 춘추관수찬관에 임명하는 문서]

교지

윤복을 통정대부 승정원 동부승지 겸 경연 참찬관 춘추관 수찬관에 임명함.
만력 1년 4월 18일

教旨

尹復爲通政大夫
承政院同副承旨兼經
筵參贊官春秋館修
撰官者
萬曆元年[寶]四月十八日

1-1-31) 1573년(선조 6) 윤복을 승정원 우부승지에 임명하면서 발급한 교지

[1573년(선조 6) 5월 4일에 윤복을 통정대부 승정원 우부승지 겸 경연 참찬관 춘추관 수찬관에 임명하는 문서]

教旨

尹復爲通政大夫
承政院右副承旨
兼經筵參贊官春
秋館修撰官者
萬曆元年[寶]五月初四日

교지

윤복을 통정대부 승정원 우부승지 겸 경연 참찬관 춘추관 수찬관에 임명함.
만력 1년 5월 4일

1-1-32) 1573년(선조 6) 윤복의 처 윤씨를 숙부인에 증직한 교지.

[1573년(선조 6) 6월 2일에 윤복 처 윤씨를 숙부인에 증직하는 문서]

教旨

尹氏贈淑

夫人者

萬曆元年[寶]六月初二日

通政大夫承政院右副承旨兼經筵參贊

官春秋館修撰官尹復妻依大典從夫職

교지

윤씨를 숙부인에 증직함.

만력 1년 6월 2일

통정대부 승정원 우부승지 겸 경연 참찬관 춘추관 수찬관 윤복의 처로서 대전에 의거하여 남편의 직을 따름.

1-1-33) 1573년(선조 6) 윤복을 승정원 좌부승지에 임명하면서 발급한 교지

[1573년(선조 6) 6월 22일에 윤복을 통정대부 승정원좌부승지 겸 경연참찬관 춘추관수찬관에 임명하는 문서]

교지

윤복을 통정대부 승정원 좌부승지 겸 경연 참찬관 춘추관 수찬관에 임명함.

만력 1년 6월 22일

教旨

尹復爲通政大夫承政院左

副承旨兼經筵參贊官春秋

館修撰官者

萬曆元年[寶]六月二十二日

1-1-34) 1573년(선조 6) 윤복을 승정원 좌부승지 겸 경연 참찬관 춘추관 수찬관에 임명하면서 발급한 교지

[1573년(선조 6) 7월 11일에 윤복을 통정대부 승정원 좌부승지 겸 경연 참찬관 춘추관 수찬관에 임명하는 문서]

교지

윤복을 통정대부 승정원 좌부승지 겸 경연 참찬관 춘추관 수찬관에 임명함.
만력 1년 7월 11일

教旨

尹復爲通政大
夫承政院左副
承旨兼經筵參贊
官春秋館修撰
官者

萬曆元年[寶]七月十一日

1-1-35) 1573년(선조 6) 윤복을 충청도 관찰사에 임명하면서 발급한 교지

[1573년(선조 6) 9월 19일 윤복을 충청도 관찰사에 임명하면서 발급한 교지]

교지

윤복을 통정대부 수 충청도 관찰사에 임명함.
만력 1년 9월 19일

教旨

尹復爲通政
大夫守忠清
道觀察使
者

萬曆元年[寶]九月十九日

1-1-36) 1573년(선조 6) 윤복을 충청 감사의 보직에 임명하면서 발급한 교지

[1573년(선조 6) 9월 19일에 윤복을 수 충청도 겸 병마수군절도사에 임명하는 문서]

교지

윤복을 수 충청도 관찰사 겸 병마수군절도사에 임명함.

만력 1년 9월 19일

教旨

尹復爲守忠清

道兼兵馬水軍

節度使者

萬曆元年[寶]九月十九日

1-1-37) 1573년(선조 6) 윤복의 아버지 윤효정을 가선대부에 추증하는 추증교지

[1573년(선조 6) 9월 29일 윤복의 아버지 윤효정을 가선대부에 추증하는 추증교지]

교지

통정대부 승정원 좌승지 겸 경연 참찬관 춘추관 수찬관으로 증직된 윤효정을 가선대부 호조 참판 겸 동지의금부사에 증직함.

만력 1년 9월 29일

통정대부 수부 충청도 관찰사 윤복의 돌아가신 아버지로서 대전에 의거하여 추증함.

教旨

贈通政大夫承政

院左承旨兼經筵

叅贊官春秋館修

撰官尹孝貞贈嘉

善大夫戶曹叅判

兼同知義禁府事

者

萬曆元年[寶]九月二十九日
通政大夫忠淸道觀察使尹復考依大典追贈

1-1-38) 1573년(선조 6) 윤복의 어머니 정씨鄭氏를 정부인에 봉작하면서 발급한 추증교지

[1573년(선조 6)에 숙부인 정씨가 아들 윤복이 충청도 관찰사가 된 덕택에 정부인에 추증된 문서]

교지

숙부인淑夫人에 증직된 정씨를 정부인으로 증직함.

만력 1년 9월 29일

통정대부 수_守 충청도 관찰사 윤복의 돌아가신 어머니로서 대전에 의거하여 추증함.

教旨

贈淑夫人鄭氏

贈貞夫人者

萬曆元年[寶]九月二十九日

通政大夫守忠淸道觀察使尹復妣依

大典追贈

1-1-39) 1573년(선조 6) 윤복의 할아버지 윤경을 통정대부로 증직하면서 발급한 추증교지

[1573년(선조 6) 9월 29일에 윤복 할아버지 윤경을 통훈대부 통례원 좌통례에서 통정대부 병조 참의로 추증하는 문서]

교지

통훈대부 통례원 좌통례로 증직되었던 윤경을 통정대부 병조 참의로 증직함.

만력 1년 9월 29일

통정대부 수_守 충청도 관찰사 윤복의 돌아가신 할아버지로서 대전에 의거하여 추증함.

教旨

贈通訓大夫通
禮院左通禮尹耕
贈通政大夫兵曹
參議者

萬曆元年[寶]九月二十九日

通政大夫守忠清道觀察使尹復祖考依
大典追贈

1-1-40) 1573년(선조 6) 윤복의 할머니 이씨(李氏)를 숙부인에 봉작하면서 발급한 추증교지

[1573년(선조 6)에 숙인이씨가 손자 윤복이 충청도 관찰사가 된 덕택에 숙부인에 추증된 문서]

교지

숙인淑人으로 증직하였던 이씨를 숙부인에 증직함.

만력 1년 9월 29일

통정대부 수 충청도 관찰사 윤복의 돌아가신 할머니로서 대전에 의거하여 추증함.

教旨

贈淑人李氏
贈淑夫人者

萬曆元年[寶]九月二十九日

通政大夫守忠清道觀察使尹復祖妣
依大典追贈

1-1-41) 1573년(선조 6) 윤복의 할머니 정씨(鄭氏)를 숙부인에 봉작하는 추증교지

[1573년(선조 6) 9월 29일에 윤복 할머니 정씨를 숙인에서 숙부인으로 추증하는 문서]

교지

숙인으로 증직하였던 정씨를 숙부인에 증직함.

만력 1년 9월 29일

통정대부 수 충청도 관찰사 윤복의 돌아가신 할머니로서 대전에 의거하여 추증함.

教旨

贈淑人鄭氏

贈淑夫人者

萬曆元年[寶]九月二十九日

通政大夫守忠清道觀察使尹復祖妣依

大典追贈

1-1-42) 1573년(선조 6) 윤복의 증조할아버지 윤사보를 통훈대부로 증직하면서 발급한 추증교지

[1573년(선조 6) 9월 29일에 윤복의 증조할아버지 윤사보를 통훈대부 통례원 좌통례로 추증하는 문서]

교지

학생 윤사보를 통훈대부 통례원 좌통례에 증직함.

만력 1년 9월 29일

통정대부 수 충청도 관찰사 윤복의 돌아가신 증조할아버지로서 대전에 의거하여 추증함.

教旨

學生尹思甫贈

通訓大夫通禮

院左通禮者

萬曆元年[寶]九月二十九日

通政大夫守忠清道觀察使尹復曾

祖考依大典追贈

1-1-43) 1573년(선조 6) 윤복의 증조할머니 송씨宋氏를 숙인에 봉작하는 추증교지

[1573년(선조 6) 9월 29일에 윤복 증조비 송씨를 숙인으로 추증하는 문서]

교지

송씨를 숙인으로 증직함.

만력 1년 9월 29일

통정대부 수 충청도 관찰사 윤복의 돌아가신 증조할머니로서 대전에 의거하여 추증함.

教旨

宋氏贈淑

人者

萬曆元年[寶]九月二十九日

通政大夫守忠清道觀察使尹復曾

祖妣依大典追贈

1-1-44) 1577년(선조 10) 윤복 처 윤씨를 정부인에 봉작하면서 발급한 교지

[1577년(선조 10) 12월 28일 윤복 처 남원윤씨를 숙부인에서 정부인으로 증직하는 문서]

교지

숙부인 윤씨를 정부인에 증직함.

만력 5년 12월 28일

통정대부 전前 수 충청도 관찰사 윤복의 처로서 대전에 의거하여 남편의 직을 따름.

教旨

淑夫人尹氏

贈貞夫人者

萬曆五年[寶]十二月二十八日

通政大夫前守忠清道觀察使

尹復妻依大典從夫職

1-1-45) 1617년(광해 9) 유학 윤유겸이 진사시에 합격하여 발급받은 백패

[1617년(광해 9) 12월 16일 유학 윤유겸이 진사시에 합격하여 발급받은 백패]

교지

유학 윤유겸은 진사 3등 제6인으로 합격함.

만력 45년 12월 16일

教旨

幼學尹唯謙進士三等第六人入格者

萬曆四十五年[寶]十二月十六日

1-1-46) 1676년(숙종 2) 한량 윤진미가 무과에 급제하고 발급받은 홍패

[1676년(숙종 2) 3월 21일 한량 윤진미가 무과에 급제하고 발급받은 홍패]

교지

한량 윤진미는 무과 을과 제153인에 급제하여 출신함.

강희 15년 3월 21일

教旨

閑良尹晉美武科乙科第

百五十三人及第出身者

康熙十五年[寶]三月二十一日

1-1-47) 1678년(숙종 4) 윤이석을 별가하면서 발급한 교지

[1678년(숙종 4) 3월에 윤이석을 조봉대부에 임명하는 문서]

교지

윤이석 조봉대부에 봉작함.

강희 17년 3월

선공감 가감역관으로서 무오년(1678) 3월에 별가함.

教旨

尹爾錫爲

朝奉大夫

者

康熙十七年[寶]三月 日

繕工監假監役官戊三別加

(背面)吏吏池有淸

1-1-48) 1678년(숙종 4) 윤이석을 이산현감에 임명하면서 발급한 교지

[1678년(숙종 4) 8월 3일에 윤이석을 조봉대부 행 이산현감에 임명하는 문서]

교지

윤이석을 조봉대부 행 이산현감에 임명함.

강희 17년 8월 3일

教旨

尹爾錫爲朝

奉大夫行尼

山縣監者

康熙十七年[寶]八月初三日

1-1-49) 1678년(숙종 4) 윤인미를 조봉대부 사간원헌납 지제교 겸 춘추관기주관에 임명하면서 발급한 교지

[1678년(숙종 4) 8월 11일 윤인미를 조봉대부 사간원헌납 지제교 겸 춘추관기주관에 임명하는 문

서]

교지

권지 성균관 학유 조봉대부 윤○○尹仁美를 조봉대부 사간원 헌납 지제교 겸 춘추관 기주관에 임명함.

강희 17년 8월 11일

당하의 상당한 문청직을 추증하라는 일로 전교를 받듦.

教旨

權知成均館學諭

朝奉大夫尹□□

贈朝奉大夫司諫

院獻納知製教兼

春秋館記注官者

康熙十七年[寶]八月十一日

堂下相當文清職追 贈事承

傳

1-1-50) 1679년(숙종 5) 윤이석을 별가하면서 발급한 교지

[1679년(숙종 5) 2월 15일에 윤이석을 조산대부 행 이산현감에 임명하는 문서]

교지

윤이석을 조산대부 행 이산현감에 임명함.

강희 18년 2월 15일

기미년(1679) 2월에 별가함.

教旨

尹爾錫爲朝散

大夫行尼山縣

監者

康熙十八年[寶]二月十五日

己二別加

1-1-51) 1679년(숙종 5) 윤이석을 별가하면서 발급한 교지

[1679년(숙종 5) 5월 15일에 윤이석을 봉열대부 행 니산현감에 임명하는 문서]

교지

윤이석을 봉열대부 행 이산현감에 임명함.

강희 18년 5월 15일

기미년(1679) 5월에 별가함.

教旨

尹爾錫爲奉列

大夫行尼山縣

監者

康熙十八年[寶]五月十五日

己五別加

(背面)吏吏池有淸

1-1-52) 1689년(숙종 15) 윤이석을 통훈대부 행 사복시 주부로 임명하면서 발급한 교지

[1689년(숙종 15) 2월 15일에 윤이석을 통훈대부 행 사복시 주부에 임명한 문서]

교지

윤이석을 통훈대부 행 사복시 주부에 임명함.

강희 28년 2월 15일

教旨

尹爾錫爲通訓

大夫行司僕寺

主簿者 康熙二十八年[寶]二月十五日

(背面)吏吏池有清

1-1-53) 1689년(숙종 15) 윤이석을 한성부 판관으로 임명하면서 발급한 교지

[1689년(숙종 15) 4월 9일에 윤이석을 통훈대부 행 한성부 판관에 임명하는 문서]

교지

윤이석을 통훈대부 행 한성부 판관에 임명함.

강희 28년 4월 9일

教旨

尹爾錫爲通訓

大夫行漢城府

判官者

康熙二十八年[寶]四月初九日

(背面)吏吏池有清

1-1-54) 1689년(숙종 15) 윤이석을 종친부 전부로 임명하면서 발급한 교지

[1689년(숙종 15) 5월 9일에 윤이석을 통훈대부 행 종친부 전부에 임명하는 문서]

교지

윤이석을 통훈대부행 종친부 전부에 임명함.

강희 28년 5월 9일

教旨

尹爾錫爲通訓

大夫行宗親府

典簿者

康熙二十八年[寶]五月初九日

(背面)吏吏李元迪

1-1-55) 1748년(영조 24) 윤덕희를 사포서 별제로 임명하면서 발급한 교지

[1748년(영조 24) 11월 5일에 윤덕희를 조봉대부 행 사포서별제에 임명한 문서]

교지

윤덕희를 조봉대부 행 사포서 별제에 임명함.

건륭 13년 11월 5일

教旨

尹德熙爲朝奉

大夫行司圃署

別提者

乾隆十三年[寶]十一月初五日

(背面)吏吏金燾恒

1-1-56) 1749년(영조 25) 윤덕희를 정릉眞陵 영으로 임명하면서 발급한 교지

[1749년(영조 25)에 윤덕희를 조봉대부 행 정릉령에 임명한 문서]

교지

윤덕희를 조봉대부 행 정릉 영에 임명함.

건륭 14년 7월 2[日]

教旨

尹德熙爲朝奉

大夫行

貞陵令者

乾隆十四年[寶]七月 日

(背面)吏吏金

1-1-57) 1763년(영조 39) 윤덕희를 절충장군 첨지중추부사로 임명하면서 발급한 교지

[1763년(영조 39)에 윤덕희를 절충장군 첨지중추부사에 임명한 문서]

교지

윤덕희를 절충장군 첨지중추부사에 임명함.

건륭 28년 1월

教旨

尹德熙爲

折衝將軍

僉知中樞

府事者

乾隆二十八四年[寶]正月 日

1-1-58) 1763년(영조 39) 윤덕희에게 노직老職을 가자하면서 통정대부에 임명한 교지

[1763년(영조 39) 1월 1일 윤덕희가 80세의 나이를 맞게 되자 노직을 가자하면서 발급한 교지]

교지

윤덕희를 통정대부로 임명함.

건륭 28년 1월 1일

나이 80세로서 은혜를 미루어 가자하라는 전교를 받듦.

教旨

尹德熙爲

通政大夫
者
乾隆二十八年[寶]正月初一日
年八十推 恩加資事承
傳

1-1-59) 1764년(영조 40) 윤덕희 처 안씨安氏를 봉작하는 추증교지

[1764년(영조 40)에 윤덕희 처 광주안씨를 숙부인에 추증하는 문서]

교지

유인 안씨를 숙부인에 증직함.

건륭 29년

절충장군 첨지중추부사 윤덕희의 처로서 법전에 의거하여 남편의 직을 따름.

教旨

孀人安氏

贈淑夫人

者

乾隆二十九年[寶] 月 日

折衝將軍僉知中樞府事尹德熙妻依法典從夫職

1-1-60) 1764년(영조 40) 윤덕희 처 심씨沈氏를 봉작하면서 발급한 추증교지

[1764년(영조 40)에 윤덕희 처 청송심씨를 숙부인으로 추증하는 문서]

교지

유인 심씨沈氏를 숙부인에 증직함.

건륭 29년

절충장군 첨지중추부사 윤덕희의 처로서 법전에 의거하여 남편의 직을 따름.

教旨

孺人沈氏

贈淑夫人

者

乾隆二十九年[寶]月日

折衝將軍僉知中樞府事尹德熙妻依法典從夫職

1-1-61) 1766년(영조 42) 윤덕희를 노직으로 가자하면서 발급한 교지

[1766년(영조 42) 9월에 윤덕희를 가선대부에 임명한 교지]

교지

윤덕희를 가선대부로 임명함.

건륭 31년 9월

나이 82세로서 은혜를 미루어 가자하라는 전교를 받듦.

教旨

尹德熙爲

嘉善大夫

者

乾隆三十一年[寶]九月

年八十二推 恩加資事承

傳

1-1-62) 1766년(영조 42) 윤덕희를 용양위 부호군에 임명하면서 발급한 교지

[1766년(영조 42) 9월에 윤덕희를 가선대부 행 용양위부호군에 임명한 문서]

교지

윤덕희를 가선대부 행 용양위 부호군에 임명함.

건륭 31년 9월

教旨

尹德熙爲

嘉善大夫

行龍驤衛

副護軍者

乾隆三十一年[寶]九月 日

1-1-63) 1767년(영조 43) 윤덕희를 노직으로 가자하면서 발급한 교지

[1767년(영조 43) 1월에 윤덕희를 가의대부에 임명한 문서]

교지

윤덕희를 가의대부에 임명함.

건륭 32년 1월 11일

나이 83세로서 은혜를 미루어 가자하라는 전교를 받듦.

教旨

尹德熙爲

嘉義大夫

者

乾隆三十二年[寶]正月十一日

年八十三推 恩加資事承

傳

1-1-64) 1767년(영조 43) 윤덕희를 동지중추부사에 임명하면서 발급한 교지

[1767년(영조 43) 5월에 윤덕희를 가의대부 동지중추부사에 임명한 문서]

교지

윤덕희를 가의대부 동지중추부사에 임명함.

건륭 32년 5월

教旨

尹德熙爲

嘉義大夫

同知中樞

府事者

乾隆三十二年[寶]五月 日

1-1-65) 1774년(영조 50) 윤덕희 처 심씨를 정부인에 봉작하면서 발급한 추증교지

[1774년(영조 50) 9월에 윤덕희 처 청송심씨를 숙부인에서 정부인으로 추증하는 문서]

교지

숙부인으로 증직한 심씨沈氏를 정부인에 증직함.

건륭 39년 9월

가의대부 동지중추부사 윤덕희의 처로서 법전에 의거하여 남편의 직을 따름.

教旨

贈淑夫人沈氏

贈貞夫人者

乾隆三十九年[寶]九月 日

嘉義大夫同知中樞府事尹德熙妻

依法典從夫職

1-1-66) 1774년(영조 50) 윤덕희 처 안씨를 정부인에 봉작하면서 발급한 추증교지

[1774년(영조 50) 9월에 윤덕희 처 광주 안씨를 숙부인에서 정부인으로 추증하는 문서]

교지

숙부인으로 증직한 안씨安氏를 정부인에 증직함.

건륭 39년 9월

가의대부 동지중추부사 윤덕희의 처로서 법전에 의거하여 남편의 직을 따름.

教旨

贈淑夫人安氏

贈貞夫人者

乾隆三十九年[寶]九月 日

嘉義大夫同知中樞府事尹德熙妻

依法典從夫職

1-1-67) 1774년(영조 50) 윤덕희의 아버지 윤두서를 가선대부에 추증하면서 발급한 추증교지

[1774년(영조 50) 윤덕희의 아버지인 윤두서를 가선대부에 추증하면서 발급한 문서]

교지

성균 진사 윤두서를 가선대부 호조 참판 겸 지의금부사 오위도총부 부총관에 증직함.

건륭 39년 9월

가의대부 동지중추부사 윤덕희의 돌아가신 아버지로서 법전에 의거하여 추증함.

教旨

成均進士尹斗緒贈嘉

善大夫戶曹參判兼

知義禁府事五衛都摠

府副總管者

乾隆三十九年[寶]九月 日

嘉義大夫同知中樞府事尹德熙考依

法典追 贈

1-1-68) 1774년(영조 50) 윤덕희의 어머니 이씨(李氏를 정부인에 봉작하면서 발급한 추증교지

[1774년(영조 50) 9월에 윤덕희의 어머니 이씨를 공인에서 정부인으로 추증하는 문서]

교지

공인 이씨李氏를 정부인에 증직함.

건륭 39년 9월

가의대부 동지중추부사 윤덕희의 돌아가신 어머니로서 법전에 의거하여 추증함.

教旨

恭人李氏贈

貞夫人者

乾隆三十九年[寶]九月 日

嘉義大夫同知中樞府事尹德熙妣依

法典追 贈

1-1-69) 1774년(영조 50) 윤덕희 할아버지 윤이석을 통정대부로 증직하면서 발급한 추증교지

[1774년(영조 50) 윤덕희 할아버지 윤이석을 통정대부로 증직하면서 발급한 문서]

교지

통훈대부행 종친부 전부 윤이석을 통정대부 승정원 좌승지 겸 경연 참찬관에 증직함.

건륭 39년 9월

가의대부 동지중추부사 윤덕희의 할아버지로서 법전에 의거하여 추증함.

教旨

通訓大夫行 宗親府

典簿尹爾錫贈通政

大夫承政院左承旨

兼經筵叅贊官者

乾隆三十九年[寶]九月 日

嘉義大夫同知中樞府事尹德熙祖考依
法典追 贈

1-1-70) 1774년(영조 50) 윤덕희 할머니 심씨沈氏를 숙부인에 증직하면서 발급한 추증교지

[1774년(영조 50) 9월에 윤덕희 할머니 심씨沈氏를 숙부인에 증직하면서 발급한 문서]

교지

숙인 심씨沈氏를 숙부인에 증직함.

건륭 39년 9월

가의대부 동지중추부사 윤덕희의 할머니로서 법전에 의거하여 추증함.

教旨

淑人沈氏贈

淑夫人者

乾隆三十九年[寶]九月 日

嘉義大夫同知中樞府事尹德熙祖妣

依法典追 贈

1-1-71) 1774년(영조 50) 윤덕희 증조할아버지 윤인미를 통훈대부로 증직하면서 발급한 추증교지

[1774년(영조 50) 9월에 윤덕희의 증조할아버지 윤인미를 통훈대부 사간원 사간으로 추증하는 문서]

교지

조봉대부 사간원 헌납 지제교 겸 춘추관 기주관으로 증직되었고 생전에 권지성균관학유 조봉대부를 지낸 윤인미를 통훈대부 사간원 사간에 증직함.

건륭 39년 9월

가의대부嘉義大夫 동지중추부사 윤덕희의 증조고曾祖考로서 법전에 의거하여 추증함.

教旨

贈朝奉大夫司諫院獻

納知製教兼春秋館

記注官行權知成均館

學諭朝奉大夫尹仁美

贈通訓大夫司諫院司諫

者

乾隆三十九年[寶]九月 日

嘉義大夫同知中樞府事尹德熙曾祖考依法典

追 贈

1-1-72) 1723년(경종 3) 유학 윤취서가 진사시에 입격하여 발급받은 백패

[1723년 2월 15일에 유학 윤취서가 진사시에 3등 제23인으로 입격하여 발급받은 증서]

교지

유학 윤취서는 진사 3등 제23인으로 입격함.

옹정 1년 2월 15일

教旨

幼學尹就緒進士三等第二十三人

入格者

雍正元年[寶]二月十五日

(背面)幼學尹就緒進士三等第二十三人

2. 교첩

1-2-1) 1547년(명종 2) 윤복이 사가仕加하여 봉훈랑의 품계를 받은 교첩

[1547년(명종 2) 9월에 이조에서 사가의 조치에 의거하여 승의랑 행 부안 현감 윤복을 봉훈랑 행 부안 현감으로 품계를 올려 준 문서]

이조에서 가정 26년 8월 5일에 교지를 받들어 승의랑 행 부안 현감 윤복을 봉훈랑 행 부안 현감에 임명함.

가정 26년 윤9월 일

사가仕加함.

판서 참판 참의 신 심沈[작명] 정랑 좌랑 신 임任[작명]

吏曹 嘉靖二十六年

八月初五日奉

敎承義郎行扶安縣

監尹復爲奉訓郎

行扶安縣監者

嘉靖二十六年[印]閏九月 日

仕加

正郎

判書 叅判 叅議臣沈[着名]

佐郎臣任[着名]

1-2-2) 1551년(명종 6) 윤복을 봉직랑 행 예조 좌랑에 임명하는 교첩

[1551년(명종 6) 4월에 임금의 명을 이조에서 받들어 전 현감 봉직랑 윤복을 봉직랑 행 예조 좌랑에 임명한 문서]

이조에서 가정 30년 3월 15일에 교지를 받들어 전 현감 봉직랑 윤복을 봉직랑 행 예조 좌랑에 임

명함.

가정 30년 4월 일

판서 참판 참의 신 원元[착명] 정랑 좌랑 신 심沈[착명]

吏曹嘉靖三十年

三月十五日奉

教前縣監奉直郎

尹復爲奉直郎

行禮曹佐郎者

嘉靖三十年[印]四月 日

正郎

判書 叅判 叅議臣元[着名]

佐郎臣沈[着名]

1-2-3) 1551년(명종 6) 예조 좌랑 윤복에게 겸직을 임명하면서 발급한 교첩

[1551년(명종 6) 5월에 임금의 명을 이조에서 받들어 윤복을 봉직랑 행 예조 좌랑 겸 춘추관 기사관에 임명한 문서]

이조에서 가정 30년 4월 2일에 교지를 받들어 봉직랑 행 예조 좌랑 윤복을 봉직랑 행 예조 좌랑 겸 춘추관 기사관에 임명함.

가정 30년 5월 일

판서 참판 참의 신 원元[착명] 정랑 좌랑 신 심沈[착명]

吏曹嘉靖三十年

四月初二日奉

教奉直郎行禮曹佐

郎尹復爲奉直郎

行禮曹佐郎兼春

秋館記事官者

嘉靖三十年[印]五月 日

正郎
判書 叅判 叅議臣元[着名]
佐郎臣沈[着名]

1-2-4) 1551년(명종 6) 윤복을 전라도 도사로 임명하면서 발급한 교첩

[1551년(명종 6) 8월에 임금의 명을 이조에서 받들어 윤복을 통선랑 행 전라도 도사 겸 춘추관 기주관에 임명한 문서]

이조에서 가정 30년 7월 13일에 교지를 받들어 통선랑 예조 정랑 윤복을 통선랑 행 전라도 도사 겸 춘추관 기주관에 임명함.

가정 30년 8월 일

판서 참판 신 심沈[작명] 참의 정랑 좌랑 신 이李[작명]

吏曹嘉靖三十年七
月十三日奉
教通善郎禮曹正郎
尹復爲通善郎行
全羅道都事兼春
秋館記注官者
嘉靖三十年[印]八月 日

正郎
判書 叅判臣沈 叅議
佐郎臣李[着名]

1-2-5) 1552년(명종 7) 전라도 도사 윤복에게 통덕랑의 품계를 내리면서 발급한 교첩

[1552년(명종 7) 4월에 임금의 명을 이조에서 받들어 윤복을 통덕랑 행 전라도 도사 겸 춘추관 기주관에 임명한 문서]

이조에서 가정 31년 4월 9일에 교지를 받들어 통선랑 행 전라도 도사 겸 춘추관 기주관 윤복을 통
덕랑 행 전라도 도사 겸 춘추관 기주관에 임명함.

가정 31년 4월 일

사가仕加함

판서 참판 참의 신 원元[작명] 정랑 좌랑 신 이李[작명]

吏曹嘉靖三十一年四

月初九日奉

敎通善郎行全羅道都

事兼春秋館記注官

尹復爲通德郎行

全羅道都事兼春秋

館記注官者

嘉靖三十一年[印]四月 日

仕加

正郎

判書 叅判 叅議臣元[着名]

佐郎臣李[着名]

1-2-6) 1572년(선조 5) 윤강중을 장사랑에 임명하면서 발급한 교첩

[1572년(선조 5) 9월 4일에 임금의 명을 이조에서 받들어 윤강중을 장사랑에 임명하는 문서]

이조에서 융경 6년 9월 4일에 교지를 받들어 학생 윤강중을 장사랑에 임명함.

융경 6년 9월 일

판서 참판 신 이李[작명] 참의 정랑 좌랑 신 정鄭[작명]

吏曹隆慶六年九月

初四日奉

敎學生尹剛中爲

將仕郎者

隆慶六年[印]九月

父尹復司成時壬二別代加

正郎

判書 叅判臣 李[着名] 叅議

佐郎臣鄭[着名]

1-2-7) 1573년(선조 6) 윤강중을 별가하여 효력부위로 임명하면서 발급한 교첩

[1573년(선조 6) 10월 4일에 임금의 명을 병조에서 받들어 윤강중을 효력부위에 임명하는 문서]

병조에서 만력 1년 10월 4일에 교지를 받들어 장사랑 윤강중을 효력부위에 임명함.

아버지 충청도 관찰사 윤복이 부호군일 당시인 계유년(1573) 9월에 받은 별가임.

만력 1년 10월 일

판서 참판 참의신 허許[작명] 참지 정랑 좌랑 신 이추[작명]

兵曹萬曆元年十

月初四日奉

教將仕郎尹剛中

爲效力副尉者

父忠淸道觀察使尹復副護軍時癸九別加

萬曆元年[印]十月 日

叅議臣許[着名] 正郎

判書 叅判

叅知 佐郎臣李[着名]

1-2-8) 1651년(효종 2) 윤인미를 사직서 참봉에 임명하면서 발급한 교첩

[1651년(효종 2) 10월에 임금의 명을 받들어 이조에서 윤인미를 통덕랑 행 사직서 참봉에 임명하는 문서]

이조에서 순치 8년 10월 30일에 교지를 받들어 생원 통덕랑 윤인미를 통덕랑 행 사직서 참봉에 임명함.

순치 8년 10월 30일

판서 참판 신 최취[착명] 참의 정랑 좌랑 신 이취[착명]

吏曹順治八年十月

三十日奉

敎生員通德郎尹仁

美爲通德郎行

社稷署參奉者

順治八年[印]十月三十日

正郎

判書 參判臣 崔[着名] 參議

佐郎臣李[着名]

1-2-9) 1678년(숙종 4) 윤이석을 충무위 사용에 임명하면서 발급한 교첩

[1678년(숙종 4) 1월에 임금의 명을 병조에서 받들어 윤이석을 과의교위 행 충무위 사용에 임명하는 문서]

병조에서 강희 17년 1월 12일에 교지를 받들어 윤이석을 과의교위 행 충무위 사용에 임명함.

강희 17년 1월 일

판서 참판 참의 참지 신 윤취[착명] 정랑 좌랑 신 이취[착명]

兵曹康熙十七年正

月十二日奉

敎尹爾錫爲果毅

校尉行忠武衛

司勇者

康熙十七年[印]正月 日

參議臣 尹[着名] 正郎

行判書 叅判

叅知

佐郎臣 李[着名]

1-2-10) 1689년(숙종 15) 윤두서를 대가하여 통덕랑에 임명하면서 발급한 교첩

[1689년(숙종 15) 9월에 임금의 명을 이조에서 받들어 윤두서를 통덕랑에 임명하는 문서]

이조에서 강희 28년 9월에 교지를 받들어 봉직랑 윤두서를 통덕랑에 임명함.

강희 28년 9월 일

아버지 전부 윤이석이 니산 현감 때 기사년(1689) 2월과 기사년 5월에 받은 별가를 대가하여 아울러 초자超資함.

판서 참판 참의 신 민궐[착명] 정랑 신 목睦[착명] 좌랑

吏曹康熙二十八年九月

日奉

教奉直郎尹斗緒

爲通德郎者

康熙二十八[印]年九月 日

父典簿尹爾錫尼山縣監時己二己五別代加并爲超

正郎臣 睦[着名]

判書 叅判 叅議臣 閔[着名]

佐郎

(背面)吏吏李元迪

1-2-11) 1847년(영조 24) 윤덕희를 용양위 부사용에 임명하면서 발급한 교첩

[1748년(영조 24) 2월에 임금의 명을 병조에서 받들어 윤덕희를 과의교위 행 용양위 부사용에 임명한 문서]

이조에서 건륭 13년 1월 22일에 교지를 받들어 유학 윤덕희를 과의교의 행 양위 부사용에 임명

함. 건륭 13년 2월 일

판서 참관 참지신 엄嚴[작명] 정랑 좌랑 신 이추[작명]

兵曹乾隆十三年

正月二十二日奉

教幼學尹德熙爲果

毅校尉行龍驤衛

副司勇者

乾隆十三年[印]二月 日

參議 正郎

行判書 申[着名] 參判

參知臣 嚴[着名] 佐郎

1-2-12) 1748년(영조 24) 윤덕희를 사옹원 주부에 임명하면서 발급한 교첩

[1748년(영조 24) 2월에 임금의 명을 병조에서 받들어 윤덕희를 과의교위 행 용양위 부사용에 임명한 문서]

병조에서 건륭 13년 2월 14일에 교지를 받들어 유학 윤덕희를 과의교위 행 용양위 부사용에 임명함.

건륭 13년 2월

판서 참관 참의 참지신 엄嚴[작명] 정랑 좌랑 신 이추[작명]

吏曹乾隆十三年二月

十四日奉

教副司勇尹德熙爲通

德郎行司饗院主

簿者

尹德熙爲果 毅校尉

乾隆十三年[印]二月 日

正郎

判書臣 申[着名] 參判 參議

佐郎

1-2-13) 1748년(영조 24) 윤덕희를 동부 도사에 임명하면서 발급한 교첩

[1748년(영조 24) 2월에 임금이 명을 이조에서 받들어 윤덕희를 통덕랑 행 동부 도사에 임명한 문서]

이조에서 건륭 13년 2월 27일에 교지를 받들어 통덕랑 행 사옹원 주부 윤덕희를 통덕랑 행 동부 도사에 임명함.

건륭 13년 2월 일

판서 신 신_甲[작명] 참판 참의 정랑 좌랑

吏曹乾隆十三年二月

二十七日奉

教通德郎行司饗院

主簿尹德熙爲通

德郎行東部都事

者

乾隆十三年[印]二月 日

正郎

判書臣 申[著名] 叅判 叅議

佐郎

3. 차첩

1-3-1) 1652년(효종 3) 윤인미를 전설사 별검에 차정하면서 이조에서 발급한 차첩

[1652년(효종 3) 7월에 이조에서 임금의 명을 받들어 윤인미를 전설사 별검에 임명하는 내용으로 발급한 문서]

이조에서 차정하기 위한 일이다. 순치 9년 7월 8일에 행 도승지 이응시가 담당하 구전 정사에서 전설사 별검을 아직 차정하지 못하였기에 그 자리에 윤인미가 나아오게 하도록 구전으로 시행하도록 하셨으므로, 합당히 문서를 내리니 살펴 시행하여 반드시 직첩이 이르도록 할 것이다.

이 첩은 전 참봉 통덕랑 윤인미에게 내리니 이에 의거할 것.

순치 9년 7월 일.

차정함.

[첩] 판서[서업] 참판 참의 정랑 좌랑[서업]

吏曹爲差定事 順治九

年七月初八日 行都承旨

臣李應蕃次知口

傳 典設司別檢未差本仁

美弋只 進叱使內良如爲 口

傳施行爲有置有等以 合下仰

照驗施行須至帖者

右帖下 前叅奉通德郎尹仁美 准此

順治九年[印]七月 日

差定

正郎

[帖] 判書[署押] 叅判 叅議

佐郎[署押]

1-3-2) 1662년(현종 3) 윤인미를 권지 성균관 학유에 차정하면서 이조에서 발급한 차첩

[1662년(현종 3) 7월에 이조에서 임금의 명을 받들어 윤인미를 권지 성균관 학유에 임명하는 내용으로 발급한 문서]

이조에서 차정하기 위한 일이다. 강희 1년 7월 13일에 동부승지 이연년이 담당한 구전정사에서 권지 성균관 학유에 윤인미가 나아오게 하도록 구전으로 시행하도록 하셨으므로, 합당히 문서를 내리니 살펴 시행하여 반드시 직첩이 이르도록 할 것이다.

이 첩을 신급제 전 별검 통덕랑 윤인미에게 내리니 이에 의거할 것.

강희 1년 7월 일.

차정함.

[첩] 판서 참판 참의[서업] 정랑 좌랑 가낭청[서업]

吏曹爲差定事 康熙元年七

月十三日 同副承旨臣李延年次

知口

傳 權知成均館學諭仁美弋只進

叱使內良如爲 口

傳施行爲有置有等以 合下仰

照驗施行順至帖者

右帖下 新及第前別檢通德郎尹仁美 准此

康熙元年[印]七月 日

差定

正郎

[帖] 判書 叅判 叅議[署押]

佐郎

假郎廳[署押]

1-3-3) 1677년(숙종 3) 윤이석을 선공감 가감역관에 차정하면서 이조에서 발급한 차첩

[1677년(숙종 3) 10월에 이조에서 임금의 명을 받들어 윤이석을 선공감 가감역관에 임명하는 내용

으로 발급한 문서]

이조에서 차정하기 위한 일이다. 강희 16년 10월 27일에 행 도승지 조위명趙威明이 담당한 구전정사에서 선공감 가감역관 조면趙沔이 다른 자리로 옮겨 갔으므로 그 자리에 윤이석이 나아오게 하도록 구전으로 시행하도록 하셨으므로, 합당히 문서를 내리니 살펴 시행하여 반드시 직첩이 이르도록 할 것이다.

이 첩을 통덕랑 윤이석에게 내리니 이에 의거할 것.

강희 16년 10월 일.

차정함.

[첩] 판서 참판[서업] 참의 정랑[서업] 좌랑

吏曹爲差定事 康熙十六年十□(月)

二十七日 行都承旨臣趙威明次知口

傳 繕工監假監役官趙沔轉本 爾□(錫)

弋只 進叱使內良如爲 口

傳施行爲有置有等以 合下仰

照驗施行須至帖者

右帖下 通德郎尹爾錫 准此

康熙十六年[印]十月 日

差定

正郎[署押]

[帖] 判書 叅判[署押] 叅議

佐郎

4. 전령傳令

1-4-1) 1894년(고종 31) 양호순무좌선봉兩湖巡撫左先鋒이 윤관하에게 내리는 전령

[1894년(고종 31) 12월 갑오농민전쟁시 윤관하를 양호순무영 좌선봉의 별군관으로 차정하는 전령]

전령 유학 윤관하에게 내림
양호순무좌선봉의 별군관으로 임명하니 즉시 임무를 보도록 할 것.
1894년(고종 31) 12월 일
양호순무좌선봉 [서암] [마패인] [인]

傳令 幼學尹觀夏
本陣別軍官差定
爲去乎 卽爲察任
者
甲午十二月 日
兩湖巡撫左先鋒 [署押] [馬牌印] [印]

5. 유지有旨

1-5-1) 1652년(효종 3) 윤선도에게 내린 유지

[1652년(효종 3) 1월에 국왕이 해남에 낙향해 있는 윤선도를 성균관 사예로 임명하여 부르면서 내린 전지를 담은 유지]

성균관 사예 윤선도는 열어볼 것. [작명] [해남]

동부승지 이추[작명]

“너는 내가 처음 배운 사부이다. 가르쳐서 깨우치기를 잘하였다. 그래서 선왕께서 특별히 그대로 그 자리에 머물게 한 것이 3년이 되었다. 나의 몽매함을 일깨워준 것은 너의 공이다. 대수롭지 않게 잊어버릴 수 없는 것이다. 지금 너를 성균관 사예로 삼으니, 너는 부디 역마를 타고 속히 올라올 것이다.”라는 명령이 있음.

순치 9년(효종3, 1652) 1월 23일.

成均館司藝尹善道

開拆 海南 [着名]

同副承旨李 [着名]

爾乃予始學之

師傅也 善於教

誨 故

先王特令仍任

至於三年 予之

解蒙 爾之功也

尋常不能忘

今以爾爲成均館

司藝 爾其乘駟

斯速上來事 有

旨

順治九年正

月二十三日

6. 전교傳敎

1-6-1) 윤선도에게 내린 전교傳敎

[1652년(효종 3) 4월에 국왕이 탄핵을 당한 윤선도의 낙향을 만류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교]

전교傳敎하기를,

“전 승지 윤선도가 요사이 참혹한 모함을 당하였다. 틀림없이 서울에 있는 것이 편안하지 않아서 거꾸로 내려가려는 것이다. 만일 이와 같은 낭패스런 근심이 있으면, 실로 내가 당초에 역마를 보내 불러서 올려 예우하는 뜻이 아닌 것이다. 승정원은 전유傳諭하여 내려가지 않도록 하고 잘 설득하고 달래서 진퇴하게 하여 나의 지극한 뜻을 알게 함이 옳다.”

라고 하였다.

傳曰 前承旨尹善道
頃遭慘酷之誣毀 必
不安於在京 顛倒下
去 若有如此狼狽之
患 實非予當初駙
召尊禮之意 本院
傳諭 使之勿爲下
去 從容進退 以體
予至意 可也

7. 녹패(祿牌)와 녹표(祿標)

1-7-1) 1628년(인조 6) 윤선도 녹패

[1628년(인조 6) 4월에 병조에서 교지를 받들어 건공장군 행 충무위 부사맹 윤선도에게 녹패를 정해주는 증서]

병조에서 교지를 받들어 건공장군 행 충무위 부사맹 윤선도에게 1628년(인조 6)에 제 11과목을 내림.

1628년(인조 6) 4월 일

참의

검판서 참판 좌랑 신이[작명]

참지신 유[작명]

[반록 첨지]

건공장군 행 충무위 부사맹 윤선도 1628년(인조 6)

하절기의 녹패

1628년(인조 6) 4월 17일 별고(別庫) 콩 쌀 1석

광흥창[작명][서업]

1628년(인조 6) 4월 22일 조미^{造米} 2석, 콩 1석

감찰[착명][서업]

광흥창[착명][서업]

1628년(인조 6) 7월 13일 쌀 2석, 콩 1석

감찰[착명][서업]

광흥창[착명][서업]

1628년(인조 6) 10월 13일 조미 2석, 콩 1석

감찰[착명][서업]

광흥창[착명][서업]

1628년(인조 6) 10월 4일

사과 윤선도에게 지의^{紙衣} 1건을 납상할 일

비변사 [착명][서업]

兵曹奉

敎賜 建功將軍行忠武衛副司猛尹善道 今戊辰年第十一科祿者

崇禎元年四月 日

叅議

兼判書 參判 佐郎臣李[着名]

叅知臣兪[着名]

[반^頒綠^綠 첨^添지^紙]

建功將軍行忠武衛副司猛尹善道 今戊辰年

夏等祿牌

戊辰四月十七日別庫太米一石

廣[着名][署押]

戊辰四月廿二日造米二石太一石

監察[着名][署押]

廣[着名][署押]

戊辰七月十三日米二石太一石

監察[着名][署押]

廣[着名][署押]

戊辰十月十三日造米二石太一石

監察[着名][署押]
廣[着名][署押]
戊辰十月初四日
司果尹善道紙衣壹件納上向事
備邊司 [着名][署押]

1-7-2) 1652년(효종 3) 윤선도 녹패

[1652년(효종 3) 4월에 이조에서 교지를 받들어 예조 참의 윤선도에게 녹과를 정해주는 증서]

이조에서 왕명을 받들어 통정대부 예조 참의 윤선도에게 1652년(효종 3)에 제 과록을 내림.

1652년(효종 3) 월 일

정랑 신이[착명]

판서 참판 참의신 김[착명]

좌랑

吏曹奉

敎賜 通政大夫禮曹叅議尹善道

今壬辰第 科祿者

順治九年 月 日

正郎臣李[着名]

判書 叅判 叅議臣金[着名]

佐郎

1-7-3) 1748년(영조 24) 윤덕희 녹패

[1748년(영조 24) 2월에 병조에서 교지를 받들어 과의교위 행 용양위 부사용인 윤덕희에게 녹과를 정해주는 증서]

병조에서 왕명을 받들어 과의교위 행 용양위 부사용인 윤덕희에게 1748년(영조 24)에 제 과록을

내림.

1748년(영조 24) 2월 일

참의 정랑

행판서 참판

참지신 엄[작명] 좌랑

兵曹奉

敎賜 果毅校尉行龍驤衛副司勇尹德熙 今戊辰年第 科祿者

乾隆十三年二月 日

參議 正郎

行判書 參判

參知臣嚴[着名] 佐郎

1-7-4) 1748년(영조 24) 윤덕희 녹패

[1748년(영조 24) 2월에 병조에서 교지를 받들어 과의교위 행 용양위 부사용인 윤덕희에게 반록 한 내용의 증서]

[반록 첨지]

과의교위 행 용양위 부사용인 윤덕희에게 이번 봄에 부록付祿함.

2월 등

1748년(영조 24) 2월 27일 요미 10두, 콩 5두

[반록領緣 첨지]

果毅校尉行龍驤衛副司勇尹德熙 今春等付祿者

二月

戊辰二月廿七日 二月料米十斗太五斗

1-7-5) 1748년(영조 24) 윤덕희 녹패

[1748년(영조 24) 2월에 이조에서 교지를 받들어 통덕랑 동부 도사 윤덕희에게 녹과를 정해주는 증서]

이조에서 왕명을 받들어 통덕랑 동부 도사 윤덕희를 금1건 무진년의 제 과 녹봉을 줌.

1748년(영조 24) 2월 일

정랑

판서 참판 신 김[작명] 참의

좌랑

吏曹奉

教賜 通德郎行東部都事尹德熙

今戊辰年第 科祿者

乾隆十三年二月 日

正郎

判書參判臣金[着名] 參議

佐郎

1-7-6) 1748년(영조 24) 녹패

[1748년(영조 24) 2월 29일에 통덕랑 행 동부 도사 윤덕희에게 광흥창에서 내어 준 요미의 증서]

통덕랑 행 동부 도사 윤덕희 춘하 등에 부록付祿함.

1748년(영조 24) 2월 29일 3월 요미料米 1석 1두, 콩 10두

광흥창

감찰

1748년(영조 24) 3월 21일 4월 요미料米 1석 1두, 콩 10두

광흥창

감찰

通德郎行東部都事尹德熙 春夏等

付祿者

戊辰二月廿九日三月料米一石一斗太十斗

廣興倉

監察

戊辰三月廿一日四月料米一石一斗太十斗

廣興倉

監察

1-7-7) 임진년 광흥창 녹표

[임진년 10월 7일에 광흥창에서 내어 준 증서]

임진년 10월 7일

5과科 조미造米 6석 콩太 4石 돈錢 반관半貫

감찰[착명][착압]

광흥창[착명][착압]

壬辰十月初七日

五科造米六石太四石錢半貫

監察[着名][着押]

廣興倉[着名][着押]

8. 은사장 恩賜狀

1-8-1) 1628년(인조 6) 윤선도 은사장 恩賜狀

[1628년(인조 6) 8월 2일에 대전에서 윤선도에게 건어물 등의 음식물과 술을 하사하며 동봉한 문서]

윤선도의 집에 하사하여 보냄.

말린 문어 1마리.

말린 대구어 3마리.

길게 저며서 말린 전복 長引鰓 2무음

말린 송어 2마리.

생뽕 2마리.

생선 2마리.

홍소주 5병.

1628년(인조 6) 8월 초2일.

[9월 28일에 내가 병을 앓고 있을 때, 자가自家(봉림대군)께서 생뽕 1마리를 보내주었다. 10월 27일에 자가께서 납약 臘藥 3종류와 붓 5자루, 떡 2개를 보내주었다. 이상의 사항이 누락되었기에 베껴 둔다.]

尹善道家

賜送

乾文魚 一尾

乾大口魚 三尾

長引鰓 二注之

乾秀魚 二尾

生雉 二首

生鮮 二尾

紅燒酒 五瓶

戊辰八月初二日

[九月二十八日善道病時
自家惠送生雉一首
十月二十七日
自家惠送臘藥三種筆五墨二
以上亦落漏故膽書]

1-8-2) 1628년(인조 6) 윤선도 은사장

[1628년(인조 6) 10월 5일에 국왕의 전교에 의거해 내수사에서 윤선도에게 소금을 보내며 동봉한 문서]

전교의 내용에 의거하여 소금 1석을 윤선도의 집에 보냄.
1628년(인조 6) 10월 초5일.
내수사.

傳教內乙用良
鹽 壹石 尹善道家送
戊辰十月初五日
內需司

1-8-3) 1628년(인조 6) 윤선도 은사장

[1628년(인조 6) 10월 14일에 대전의 명령으로 내농포에서 윤선도에게 순무를 하사하며 동봉한 문서]

사부 윤선도에게 하사하여 보냄.
향청 15단.
1628년(인조 6) 10월 14일.
농포 한韓[착명]

師傅尹善道
賜送
鄉菁拾伍丹
戊辰十月十四日
農圃韓(手決)

1-8-4) 1628년(인조 6) 윤선도 은사장

[1628년(인조 6) 12월 18일에 대전에서 윤선도에게 감귤을 하사하며 동봉한 문서]

사부 윤선도 집에 하사하여 보냄.
감귤 5매.
1628년(인조 6) 12월 18일.

師傅尹□□(善道)[兒輩誤抹]家
賜送
柑子 伍枚
戊辰十二月十八日

1-8-5) 1628년(인조 6) 윤선도 은사장

[1628년(인조 6) 12월 22일에 대전에서 윤선도에게 생노루와 생평을 하사하며 동봉한 문서]

생노루 뒷다리 1개.
생평 2마리.
1628년(인조 6) 12월 22일.

生鹿後脚 一
生雉 二首
戊辰十二月二十二日

1-8-6) 1628년(인조 6) 윤선도 은사장

[1628년(인조 6) 12월 30일에 내전에서 윤선도에게 감귤을 하사하며 동봉한 문서]

사부 윤선도에게 하사하여 보냄.

감귤 15개.

1628년(인조 6) 12월 30일.

[내전에서 하사하여 보냄.]

大君師傅尹善道家

賜送柑子拾五個

戊辰十二月三十日

[內殿賜送]

1-8-7) 1629년(인조 7) 윤선도 은사장

[1629년(인조 7)에 윤선도에게 별선과 후추를 하사하며 동봉한 문서]

하사함(賜)

옷칠한 종이로 만든 상품의 부채 2자루.

기름을 먹인 종이로 만든 상품의 부채 2자루. [기사년]

하사함

후추 3되. [기사년]

賜

漆別扇 二把

油別扇 二把 [己巳]

賜

胡椒三升 [己巳]

1-8-8) 1629년(인조 7) 윤선도 은사장

[1629년(인조 7) 1월 21일에 중전이 윤선도에게 청어를 하사하며 동봉한 문서]

청어 3두름.

중전께서 내리신 것이다.

1629년(인조 7) 정월 21일.

청어 석 들음

등전의셔 나오신

이라.

己巳正月¹二十一日

1-8-9) 1629년(인조 7) 윤선도 은사장

[1629년(인조 7) 2월 16일에 내전에서 윤선도에게 생평과 생선을 하사하며 동봉한 문서]

대군사부 윤선도 집에 하사하여 보냄.

생평 2마리.

생선 3마리.

1629년(인조 7) 2월 16일.

[내전에서 하사하여 보냄.]

대군스부 윤선도가

스송

싱티 이슈

싱션 삼미

괴스이월십육일

1 본문에는 '己巳月正'으로 되어 있으나, '己巳正月'로 고쳤음.

[內殿賜送]

1-8-10) 1629년(인조 7) 윤선도 은사장

[1629년(인조 7) 3월 13일에 국왕의 전교에 따라 내수사에서 윤선도에게 소금을 하사하며 동봉한 문서]

전교로 말미암아, 소금 1석을 사부 윤선도 집에 보냄.

1629년(인조 7) 3월 13일.

내수사.

傳教內乙用良

鹽壹石 師傅尹善道家送

己巳三月十三日

內需司

1-8-11) 1629년(인조 7) 윤선도 은사장

[1629년(인조 7) 윤4월 4일에 대전에서 윤선도에게 웅어를 하사하며 동봉한 문서]

윤선도 집에 하사하여 보냄.

생웅어 7두름.

1629년(인조 7) 윤4월 4일.

尹善道家

賜送

生蓴魚七冬音

己巳閏四月初四日

1-8-12) 1629년(인조 7) 윤선도 은사장

[1629년(인조 7) 윤4월 14일에 내전에서 윤선도에게 준치 등의 어물을 하사하며 동봉한 문서]

준치 생선 열마리.

옹어 일곱두름.

1629년(인조 7) 윤4월 14일.

[내전에서 하사하여 보냄.]

진어 삼선 열

위어 날곱 드름

閏四月十四日己巳

[內殿賜送]

1-8-13) 1629년(인조 7) 윤선도 은사장

[1629년(인조 7) 윤4월 18일에 봉림대군방에서 윤선도에게 공미를 하사하며 동봉한 문서]

내교로 공미 2석을 사부의 집에 보냄.

1629년(인조 7) 윤4월 18일.

봉림대군방 장무 이충신李忠信[착명].

內教內貢米貳石

師傅家送

己巳閏四月十八日

鳳林大君房 掌務李忠信(手決)

1-8-14) 1629년(인조 7) 윤선도 은사장

[1629년(인조 7) 5월 6일에 대전의 명에 따라 윤선도에게 상고에서 부채를 보내며 동봉한 문서]

사부 윤선도 집.

백침선 1자루.

칠별선 1자루.

유별선 1자루.

5월 6일. [기사년]

[대전에서 하사하여 보냄]

[大殿賜送]

師傅尹善道家 白貼扇 一把

漆別扇 一把

油別扇 一把

五月初六日[己巳]

1-8-15) 1629년(인조 7) 윤선도 은사장

[1629년(인조 7) 5월15일에 윤선도에게 노루고기 등을 하사하며 동봉한 문서]

대군의 사부 윤선도 집에 하사하여 보냄.

생 노루고기 반마리.

생꿩 2마리.

생선 2마리.

1629년(인조 7) 5월 15일.

大君師傅尹善道家

賜送

生麋 半口

生雉 二首

生鮮 二尾

己巳五月十五日

1-8-16) 1629년(인조 7) 윤선도 은사장

[1629년(인조 7) 5월 17일에 내전에서 윤선도에게 토주吐絀를 하사하며 동봉한 문서]

대군의 사부인 윤선도에게 줌
초록 토주 50척 1필

[이상은 1629년(인조 7) 5월 17일에 내전에서 선운宣醞 한 후에 하사하신 것이다. 또한 대전에서 표피豹皮 1령을 하사하셨다.]

[작년 겨울에 내전에서 선운할 때 역시 초록 토주 1필(50척)을 하사하셨다.]

대군스부 윤선도

초록토두 오십척 一필

[右五月十七日 [己巳]

內殿宣醞後 所賜也 又

大殿賜豹皮一令]

[上年冬

內殿宣醞時 亦

賜草綠吐絀五十尺一匹]

1-8-17) 1629년(인조 7) 윤선도 은사장

[1629년(인조 7) 6월 5일에 봉림대군방에서 윤선도에게 녹미를 하사하며 동봉한 문서]

自家行下內 祿米貳石 輸送爲白臥乎事

崇禎二年六月初五日鳳林大君房掌務李忠信(手決)

자가께서 행하심을 말미암아, 녹미 2석을 실어 보냄.

1629년(인조 7) 6월 5일 봉림대군방 장무 이충신[착명].

1-8-18) 1629년(인조 7) 윤선도 은사장

[1629년(인조 7) 6월 13일에 봉림대군방에서 윤선도에게 지필묵 등을 하사하며 동봉한 문서]

자가께서 실어 보냄.

두꺼운 백지 5권.

붓 5자루.

먹 2장.

모자 1사.

1629년(인조 7) 6월 13일 봉림대군방 장무 이충신

自家輸送

敦厚白紙 伍卷

筆 伍柄

墨 貳張

笠帽 壹事

崇禎二年六月十三日鳳林大君房掌務李忠信(手決)

1-8-19) 1629년(인조 7) 봉림대군방 은사물목(恩賜物目)

1629년(인조 7) 6월 21일에 대군(大君)이 윤선도의 생일을 맞아 식재료 및 술 등을 하사하며 동봉한 문서]

증편 1그릇.

절육 1그릇.

소육 2그릇.

추복탕 1그릇.

어만두 1그릇.

분 1동이.

정과 1그릇.

서진과 1모판.

능금 1그릇.

자두 1그릇.

홍소주 5병.

가족피회 1보구

[이상은 1629년(인조 7) 6월 21일 나의 생일에 대군께서 보내주신 것이다. 7명이 머리에 이고 왔고, 1명이 영솔하여 왔다.]

증편 一과

절육 一과

쇼육 二과

튀복탕 一과

어만두 一과

분 一동회

정과 一과

셔진과 一모판

닝금 一과

즈도 一과

홍소주 오병

가족피회 一보구

[右己巳六月二十一日 善道初度 大君惠送也 七人戴來 一人領來]

1-8-20) 1629년(인조 7) 윤선도 은사장

[1629년(인조 7) 8월 19일에 봉림대군방에서 윤선도에게 지필묵을 하사하며 동봉한 문서]

자가께서 보낸 삭지 3권, 돼지털 붓 5자루, 먹 2덩이 등을 실어 보냄.

1629년(인조 7) 8월 19일.

궁 장무宮掌務 이충신[작명].

自家教是所送朔紙參卷 猪毛筆五柄 墨貳笏等

輸送爲白臥乎事

己巳八月十九日

宮掌務李忠信(手決)

1-8-21) 1629년(인조 7) 윤선도 은사장

[1629년(인조 7) 9월 9일에 국왕에 전교에 따라 내수사에서 윤선도에게 소금을 하사하며 동봉한 문서]

전교로 말미암아, 이번 가을 분의 소금을 반사함.

소금 1석을 사부 윤선도의 집에 보냄.

1629년(인조 7) 9월 초9일.

내수사.

傳教內乙用良 今秋等鹽 頒

賜

鹽壹石 師傅尹善道家送

己巳九月初九日

內需司

1-8-22) 1629년(인조 7) 윤선도 은사장

[1629년(인조 7) 9월에 국왕에 전교에 따라 내수사에서 윤선도에게 소금을 하사하며 동봉한 문서]

생평 2마리.

생선 2마리.

생복 10마리.

대군께서 (보냄).

[기사년(인조 7, 1629) 9월 25일. 내가 병을 앓고 있을 때.]

싱티 둘

싱션 돌

싱복 열

대군곶티셔 [己巳九月二十五日 善道病時]

1-8-23) 1629년(인조 7) 윤선도 은사장

[1629년(인조 7) 10월 2일에 대군이 윤선도에게 생뽕 등 식재료들을 하사하며 동봉한 문서]

사부 댁.

생뽕 1.

생복 15.

홍당청 3단.

이상의 물건을 자가께서 보내오신 것입니다. 그러한 연유로 아뢰옵니다. 소인은 내사하시오신 뒤에 출사하였습니다. 하지만 계시지 않은 줄을 몰랐다가, 이를 듣고 즉시 나왔지만 문안도 여쭙지 못하여 지극히 송구스럽습니다.

장무 이충신이.

[1629년(인조 7) 10월 2일. 내가 병을 앓고 있을 때.]

스부뉘

싱티-

싱복 열다섯

[己巳十月初二日 善道病時]

홍당청 3단

이상 등물 주계씩
셔 보내오시노이다
전츠로 알외오며
쇼인은 니스 하시오신디 출
스 하오와습다가
전티아녀 하옵시는 줄 모
로오와습다가 듯좁고 즉
시 낮츠오와 문안도 아옵디
못하오와 지극 저스외이다

장무 니툽신이

1-8-24) 1629년(인조 7) 윤선도 은사장

[1629년(인조 7) 10월 6일에 대전의 지시에 따라 윤선도에게 내농포에서 순무를 하사하며 동봉한 문서]

사부 윤선도 집에 하사하여 보냄.

순무 15단을 실어 보냄.

1629년(인조 7) 10월 6일.

농포 옥포[착명]

師傅尹善道家

賜送

鄉菁 拾伍丹輸送事

己巳十月初六日

農圃玉(手決)

1-8-25) 1629년(인조 7) 윤선도 은사장

[1629년(인조 7) 10월 19일에 대전에서 윤선도에게 건어물 등의 식재료들과 술을 하사하며 동봉한 문서]

윤선도의 집에 하사하여 보냄.

말린 대구어 3마리.

중포中脯 2개.

말린 송어 2마리.

조기 5숙.

생평 2마리.

생선 2마리.

술 5병.

1629년(인조 7) 10월 19일.

[대전에서 하사하여 보냄.]

尹善道家

賜送

乾大口魚 三尾

中脯 二介

乾秀魚 二尾

石首魚 五束

生雉 二首

生鮮 二尾

酒 五瓶

己巳十月十九日

[大殿 賜送]

1-8-26) 1629년(인조 7) 윤선도 은사장

[1629년(인조 7) 11월 20일에 봉림대군이 윤선도에게 생문어 등 식재료를 하사하며 동봉한 문서]

사부덕

생문어 4가래.

생복 20개.

봉림대군 피접소避接所에서.

1629년(인조 7) 11월 20일. [내가 병을 앓고 있을 때.]

스부덕

생문어 네가내

생복 이십개

봉림대군 것피접소의서

己巳十一月二十日 [善道病時]

1-8-27) 1629년(인조 7) 윤선도 은사장

[1629년(인조 7) 12월 4일에 봉림대군이 윤선도에게 역서 등을 하사하며 동봉한 문서]

사부덕

전약 1봉.

감굴 1매.

역서 1.

[1629년(인조 7) 12월 4일.]

師傅宅

煎藥一封

柑子一枚

曆書一

[己巳十二月初四日]

1-8-28) 1629년(인조 7) 윤선도 은사장

[1629년(인조 7) 12월 9일에 대전에서 윤선도에게 생노루 및 생꿩을 하사하며 동봉한 문서]

윤선도 집에 하사하여 보냄.

생록生鹿 뒷다리 하나.

생꿩 두마리.

1629년(인조 7) 12월 9일.

尹善道家 卍

賜送

生鹿後脚 一

生雉 二首

己巳十二月初九日

29) 1629년(인조 7) 윤선도 은사 장

[1629년(인조 7) 12월 24일에 봉림대군방에서 윤선도에게 녹미를 하사하며 동봉한 문서]

자가께서 행하하심을 말미암아, 녹미 2석을 실어 보냄.
1629년(인조 7) 12월 24일. 궁의 장무 이충신[착명].

自家行下內 祿米貳石 輸送爲白以乎事

己十二月二十四日

宮掌務李忠信(手決)

30) 1630년(인조 8) 윤선도 은사장

[1630년(인조 8) 2월 3일에 대군이 윤선도에게 생평 등 식재료를 하사하며 동봉한 문서]

생평 2마리. 생노루 반 마리.

[1630년(인조 8) 2월 3일. 내가 병에 걸렸을 때 자가께서 보내주었다.]

[또 보내 준 것을 덧붙인다. 청간해울탕의 재료 10첩.]

싱티 돌 [庚午二月初三日有賤疾時

싱장반구 自家所惠送 又]

[又

送加入清肝解鬱湯

料 十貼]

31) 1630년(인조 8) 윤선도 은사장

[1630년(인조 8) 2월 5일에 대전에서 윤선도에게 감귤을 하사하며 동봉한 문서]

대군 사부 윤선도 집에 하사하여 보냄.

감귤 5매.

1630년(인조 8) 2월 5일.

大君師傅尹善道家

賜送

柑子五枚

庚午二月初五日

1-8-32) 1630년(인조 8) 윤선도 은사장

[1630년(인조 8) 2월 19일에 대전에서 윤선도에게 건어물 등 식재료들과 술을 하사하며 동봉한 문서]

좌랑 윤선도가 집에 하사하여 보냄.

말린 큰 문어 1마리.

말린 대구어 2마리.

건치 2마리.

편포 2개.

말린 송어 2마리.

생뽕 2수마리.

생선 2마리.

술 5병.

경오년(인조8, 1630) 2월 19일.

佐郎尹善道家

賜送

乾大文魚 一尾

乾大口魚 二尾

乾雉 二首

片脯 二個

乾秀魚 二尾

生雉 二首
生鮮 二尾
酒 五瓶
庚午二月十九日

1-8-33) 1630년(인조 8) 윤선도 은사장

[1630년(인조 8) 2월 20일에 봉림대군방에서 윤선도에게 녹미를 하사하며 동봉한 문서]

자가의 교령으로 말미암아, 녹미 1태駄를 실어 보냄.

1630년(인조 8) 2월 20일.

봉림대군방 장무 이충신[착명]

自家教令內 祿米壹駄輸送爲

白臥乎事

庚午二月二十日

鳳林大君房掌務李忠信(手決)

1-8-34) 1630년(인조 8) 윤선도 은사장

[1630년(인조 8) 2월 23일에 내전에서 윤선도에게 생평 등 식재료를 하사하며 동봉한 문서]

생평 3마리.

생선 3마리.

생홍어 2마리.

[1630년(인조 8) 2월 23일, 내전에서 하사하여 보냄.]

싱티 三

싱선 三

싱홍어 二

[庚午二月二十三日 內殿賜送]

1-8-35) 1630년(인조 8) 윤선도 은사장

[1630년(인조 8) 2월 28일에 봉림대군방에서 윤선도에게 지필묵을 하사하며 동봉한 문서]
자가께서 보내신 삭지 3권, 붓 5자루, 먹 2덩이 등을 실어 보냄.

1630년(인조 8) 2월 28일.

장무 이충신[착명]

自家所送 朔紙參卷 筆五柄 墨二笏

等 輸送爲白臥乎事

庚午二月二十八日

掌務李忠信(手決)

1-8-36) 1630년(인조 8) 윤선도 은사장

[1630년(인조 8) 4월 23일에 대전에서 윤선도에게 웅어를 하사하며 동봉한 문서]

공조 좌랑 윤선도의 집에 하사하여 보냄.

생웅어 7두름.

1630년(인조 8) 4월 23일.

工曹佐郎尹善道家

賜送

生羴魚七冬音

庚午四月二十三日

1-8-37) 1630년(인조 8) 윤선도 은사장

[1630년(인조 8) 5월 5일에 대전에서 윤선도에게 후추와 다양한 부채들을 하사하며 동봉한 문서]

대군사부

윤선도의 집.

후추 2되.

백첩선 1자루.

칠별선 1자루.

유별선 1자루.

[1630년(인조 8) 5월 5일. 대전에서 하사하여 보냄.]

大君師傅尹善道家

胡椒 二升

白貼扇 一把 [庚午五月初五日

漆別扇 一把 大殿賜送(手決)]

油別扇 一把

1-8-38) 1630년(인조 8) 윤선도 은사장

[1630년(인조 8) 5월 5일에 내전에서 윤선도에게 건어물 등의 식재료와 술을 하사하며 동봉한 문서]

소문어 3마리.

마른 광어 2마리.

건치 2마리.

편포 1

생선 1마리.

생뽕 1마리.

소주 5병

[1630년(인조 8) 5월 5일. 내전에서 하사하여 보냄.]

쇼문어三

건광어二

건티二

편포一

싱선一 쇼쥬 오병

싱티一

[庚午五月初四日

內殿賜送]

1-8-39) 1630년(인조 8) 윤선도 은사장

[1630년(인조 8) 6월 9일에 대군大君이 윤선도에게 생평 등 식재료를 하사하며 동봉한 문서]

생평 1마리.

생선 1마리.

은구어 1마리.

피소에서 내어 주신 것.

[1630년(인조 8) 6월 9일.]

싱티 하나

싱선 하나

은구어 열다섯

피소의셔 나시는 것

[庚午六月初九日]

1-8-40) 1630년(인조 8) 윤선도 은사장

[1630년(인조 8) 5월 28일에 대군大君이 윤선도에게 다양한 별선別扇을 하사하며 동봉한 문서]

[대군께서 보내주심.]

윤사부덕.

칠별선 2자루.

유별선 2자루.

[1630년(인조 8) 5월 28일.]

[大君惠送]

尹師傅宅 漆別扇 二把

油別扇 二把

[庚午五月二十八日]

1-8-41) 1630년(인조 8) 윤선도 은사장

[1630년(인조 8) 6월 13일에 봉림대군방에서 윤선도에게 녹미祿米를 하사하며 동봉한 문서]

자가께서 행하하심을 말미암아, 녹미 1태를 실어 보냄.

1630년(인조 8) 6월 13일 봉림대군방 장무 이충신[착명]

[또 셋째 아이 윤예미가 학질을 앓음으로 인하여, 육군자탕 10첩에 사용할 생약재를 보내주셨다.]

自家行下內祿米一駄輸送爲白臥乎事

庚午六月十三日

鳳林大君房 掌務李忠信(手決)

[又因第三兒禮美患疴

惠送六君子湯十貼生材]

1-8-42) 1630년(인조 8) 봉림대군방 은사물목록

[1630년(인조 8) 6월 21일에 대군이 윤선도의 생일을 맞아 각종 식재료들과 소주를 하사하며 동봉한 문서이다]

증편 1그릇.

산삼편 1그릇.
2색의 마른 정과 1그릇.
능금 1그릇.
자두 1그릇.
서진과 1그릇.
생치전테수 1그릇.
생선전유 1그릇.
어만두 1그릇.
분 1그릇.
오미자 1그릇.
전복숙 1그릇.
해삼초 1그릇.
홍합초 1그릇.
연계 1그릇.
여러 종류의 절육 1그릇.
오리알 1그릇
홍소주 5병
기자피 흑화자청구 1

[이상은 1630년(인조 8) 6월 21일에 나의 생일에 대군께서 보내주신 것이다. 8명이 머리에 이고 왔다.]

증편일기
산삼편 일기
냥식건정과 일기
님금 일기
즈도 일기
서진과 일기
싱티전테슈 일기
싱선전 유 일기
어만도 일기
분 일기
오미즈 일기
전복숙 일기

히슴초 일기

홍합초 일기

연계 일기

각식절육 일기

압난 일기

홍쇼쥬 오병

기즈피 흑화즈청구 一

[右庚午六月廿一日善道初度

大君惠送也八人戴來]

1-8-43) 1630년(인조 8) 윤선도 은사장

[1630년(인조 8) 7월 4일에 국왕의 전교에 따라 윤선도에게 내수사에서 소금을 하사하며 동봉한 문서]

전교로 말미암아 반사함.

소금 1석을 사부 윤선도의 집에 보냄.

1630년(인조 8) 7월 4일.

내수사.

傳教內乙用良 頒賜

鹽壹石 師傅尹善道家送

庚午七月初四

內需司

1-8-44) 1630년(인조 8) 윤선도 은사장

[1630년(인조 8) 9월 18일에 봉림대군방에서 윤선도에게 녹미祿米를 하사하며 동봉한 문서]

자가의 교령을 말미암아, 녹미 2석을 실어 보냄.

1630년(인조 8) 9월 18일 봉림대군방 장무 이충신[작명].

自家教令內祿米二石輸送爲白臥乎事

庚午九月十八日

鳳林大君房掌務李忠信(手決)

1-8-45) 1630년(인조 8) 윤선도 은사장

[1630년(인조 8) 9월 18일에 대군이 생평 등 윤선도에게 식재료를 하사하며 동봉한 문서]

생평 1.

생문어 반.

말린 연어 1.

자가께서 보내주심. 일월은 위의 것과 같음. [1630년(인조 8) 9월 18일]

싱티 하나

싱문어 반

건년어 하나

[自家惠送 日月同上 庚午九月十八日]

1-8-46) 1630년(인조 8) 윤선도 은사장

[1630년(인조 8) 9월 21일에 국왕의 전교에 따라 내수사에서 윤선도에게 소금을 하사하며 동봉한 문서]

전교로 말미암아, 이번 가을에 나눠줌.

소금 1석을 사부 윤선도의 집에 보냄.

1630년(인조 8) 9월 21일.

내수사.

傳教內乙用良 今秋等頒

賜

鹽壹石 師傅尹善道家送
庚午九月二十一日
內需司

1-8-47) 1630년(인조 8) 윤선도 은사장

[1630년(인조 8) 10월에 내농포에서 윤선도에게 순무를 하사하며 동봉한 문서]

사부 윤선도에게
하사하여 보냄.
순무 15단^단을 실어 보냄.
1630년(인조 8) 10월 일.
농포 옥포[착명]

師傅尹善道
賜送
鄉菁十五丹輸送事
庚午十月日
農圃玉(手決)

1-8-48) 1630년(인조 8) 윤선도 은사장

[1630년(인조 8) 12월 8일에 대군이 윤선도에게 생평과 등을 하사하며 동봉한 문서]

대군께서 주심
생평 2마리.
청어 1두름.
[1630년(인조 8) 12월 8일]

대군것

싱티 二 [庚午十二月初八日]

청어 一드름

1-8-49) 1630년 윤선도 은사장

[1630년(인조 8) 12월 10일에 대전에서 윤선도에게 사슴과 꿩 등을 하사하며 동봉한 문서]

대군의 사부 윤선도의 집에 하사하여 보냄.

사슴 뒷다리 1.

생꿩 2마리.

1630년(인조 8) 12월 10일.

大君師傅尹善道家

賜送

鹿後脚 一

生雉 二首

庚午十二月初十日

1-8-50) 1630년(인조 8) 윤선도 은사장

[1630년(인조 8) 12월 13일에 대전에서 감귤을 윤선도에게 하사하며 동봉한 문서]

대군의 사부 윤선도 집에 하사하여 보냄.

감귤 5매.

1630년(인조 8) 12월 13일.

大君師傅尹善道家

賜送

柑子五枚

庚午十二月十三日

1-8-51) 1630년(인조 8) 윤선도 은사장

[1630년(인조 8) 12월 21일에 국왕의 전교 따라 내수사에서 윤선도에게 공미貢米를 하사하며 동봉한 문서]

전교로 말미암아, 공미 1석을 윤선도의 집에 보냄.

1630년(인조 8) 12월 21일.

내수사

傳教內乙用良

貢米壹石尹善道家送

庚午十二月廿一日

內需司

1-8-52) 1631년(인조 8) 윤선도 은사장

[1631년(인조 9) 3월 13일에 내전에서 윤선도에게 건어물 등의 음식과 술을 하사하며 동봉한 문서]

윤선도의 집에 하사하여 보냄.

말린 문어 1마리.

말린 대구어 2마리.

편포 1개.

말린 송어 2마리.

짧고 납작하게 펴서 말린 전복 3첩.

생 송어生松魚 1마리.

생평 2마리.

생전복 30개.

향온주 5병.

1631년(인조 9) 3월 13일.

[이상은 장악원 주부 이한과 함께 동호에 놀러 갔을 때 내전에서 하사하여 보내주신 것 같다.]

[3월 27일 강학청에 출근했을 때, 대전에서 선운하시고 표피 1령을 하사하셨다.]

尹善道家

賜送

乾文魚 一尾

乾大口魚 二尾

片脯 一箇

乾秀魚 二尾

短引鰈 三貼

生松魚 一尾

生雉 二尾

生鰈 三十箇

香溫酒 五瓶

辛未三月十三日

[右與樂主簿李瀚擬遊東湖時

內殿賜送]

[三月二十七日 講學廳仕進時

大殿宣醞賜豹皮一令]

1-8-53) 1631년(인조 9) 윤선도 은사장

[1631년(인조 9) 4월 5일에 국왕의 전교에 따라 윤선도에게 내수사에서 공미를 하사하며 동봉한 문서]

전교로 말미암아, [대전에서 하사하여 보냈다고 함]

공미 1석

콩 2석

이상을 윤선도의 집에 보낸.

1631년(인조 9) 4월 5일.

내수사.

傳教內乙用良 [大殿賜送云]

貢米貳石

太貳石 以上 尹善道家送

辛未四月初五日

內需司

1-8-54) 1631년(인조 9) 윤선도 은사장

[1631년(인조 9) 4월 28일에 대전에서 윤선도에게 용어를 하사하며 동봉한 문서]

윤선도 집에 하사하여 보냄.

생 용어 7두름.

1631년(인조 9) 4월 28일.

尹善道家

賜送

生葦魚 七冬音

辛未四月二十八日

1-8-55) 1631년(인조 9) 윤선도 은사장

[1631년(인조 9) 단오에 대전에서 윤선도에게 다양한 부채를 하사하며 동봉한 문서]

대군의 사부 윤선도 집.

대전이 내려준 부채

백첩선 1자루.

칠별선 1자루.

유별선 1자루.

[1631년(인조 9) 단오에 대전에서 부채를 하사하심.]

大君師傅尹善道家

白貼扇 一把

漆別扇 一把

油別扇 一把

[辛未端午 大殿賜扇]

1-8-56) 1631년(인조 9) 윤선도 은사장

[1631년(인조 9) 5월에 윤선도에게 후추를 하사하며 동봉한 문서]

[하사함. 1631년(인조 9) 5월]

후추 3되.

[賜 辛未五月]

胡椒三升

1-8-57) 1631년(인조 9) 윤선도 은사장

[1631년(인조 9) 5월 12일 자가께서 보내심]

칠별선 2자루.

유별선 2자루.

[右辛未五月十二日

自家所送]

漆別扇 二把

油別扇 二把

1-8-58) 1631년(인조 9) 윤선도 은사장

[1631년(인조 9) 6월 18일에 봉림대군방에서 윤선도에게 공미 등 식재료를 하사하며 동봉한 문서]

자가께서 다음과 같이 행하하심.

공미 1석.

공대 1석.

조기 15속.

1631년(인조 9) 6월 18일 봉림대군방 장무 이충신[착명]

自家行下內

貢米壹石

貢太壹石

石首魚拾五束

辛未六月十八日 鳳林大君房 掌務 李忠信(手決)

1-8-59) 1631년(인조 9) 윤선도 은사장

[1631년(인조 9) 6월 21일에 봉림대군방에서 윤선도에게 건어물 등 식재료와 술을 하사하며 동봉한 문서]

궁에서 내주는 술과 음식.

말린 문어 1마리.

말린 대구 2마리.

건치 2마리.

편포 2개.

말린 송어 3마리.

생평 2마리.

생선 2마리.

홍소주 5병.

1631년(인조 9) 6월 21일 봉림대군방 장무 이충신[착명]

宮出酒饌

乾文魚 一

乾大口 二尾

乾雉 二首

片脯 二

乾秀魚 三尾

生雉 二首

生鮮 二尾

紅燒酒 五瓶

崇禎四年六月二十一日 鳳林大君房 掌務 李忠信(手決)

1-8-60) 1631년(인조 9) 윤선도 은사장

[1631년(인조 9) 7월 19일에 대전에서 윤선도에게 후추를 하사하며 동봉한 문서]

후추 5되.

[1631년(인조 9) 7월 19일에 강학청에 나아갔을 때, 대전에서 선운하시고 후추 및 단목丹木을 하사 하셨습니다.]

胡椒五升

[辛未七月十九日進

講學廳時

大殿宣醞

賜胡椒及

丹木]

1-8-61) 1631년(인조 9) 윤선도 은사장

[1631년(인조 9) 7월 20일에 국왕의 전교에 따라 내수사에서 윤선도에게 공미 등을 하사하며 동봉한 문서]

전교로 말미암아,

공미 2석

콩 1석

이상의 것들을 윤선도의 집에 보냄.

1631년(인조 9) 7월 20일.

내수사.

傳教內乙用良

貢米貳石

貢太壹石以上尹善道家送

辛未七月二十日

內需司

1-8-62) 1631년(인조 9) 윤선도 은사장

[1631년(인조 9) 8월에 대군이 윤선도에게 지필묵을 하사하며 동봉한 문서]

황모필 5자루.

진묵 3덩이.

삭지 2권.

[신미년 8월 길일에 자가에서 보내옴]

黃毛筆 五瓶

眞墨 三笏

朔紙 二卷

[辛未八月吉日

自家惠送]

1-8-63) 1631년(인조 9) 윤선도 은사장

1631년(인조 9) 9월 3일에 대군이 윤선도에게 녹미를 하사하며 동봉한 문서

자가께서 다음과 같이 행하하심.

녹미 1석

콩 1석 등을 실어 보냄.

1631년(인조 9) 9월 3일 장무 이눌[작명]

[같은 날 또 납약 5종류를 보내주셨다.]

自家行下內

祿米一石

太一石 等輸送爲白臥乎事

辛未九月初三日掌務李(手決)

[同日又

惠送臘藥五種]

1-8-64) 1631년(인조 9) 윤선도 은사장

[1631년(인조 9) 9월 3일에 대전에서 건어물 등 음식과 술 등 식재료를 윤선도에게 하사하며 동봉한 문서]

정량 윤선도의 집에 하사하여 보냄.

말린 문어 1마리.

말린 대구어 3마리.

말린 광어 2마리.

건치 2마리.

말린 송어 2마리.

장인복 3주지.

편포 2개.

생뽕 2수마리.

생선 2미마리.

жат 1말.

홍소주 5병.

1631년(인조 9) 9월 3일.

[전시(殿試) 때에 이장(李樟)에게 정거(停擧) 당한 후 벼슬을 버리고 남쪽으로 돌아가려하자, 이와 같은 은사가 있었다.]

正郎尹善道家

賜送

乾文魚 一尾

乾大口魚 三尾 [殿試時被停於李樟之後 將棄官南還 有此恩賜]

乾廣魚 二尾

乾雉 二首

乾秀魚 二尾

長引鰻 三注之

片脯 二箇

生雉 二首

生鮮 二尾

栢子 一斗

紅燒酒 五瓶

辛未九月三日

1-8-65) 1631년(인조 9) 윤선도 은사장

[1631년(인조 9) 윤11월 3일에 봉림대군방에서 윤선도에게 쌀을 하사하며 동봉한 문서]

자가께서 행하하심을 말미암아, 쌀 2석을 실어 보냄.

1631년(인조 9) 윤11월 3일.

봉림대군방 장무 이충신[작명]

自家行下內 米貳石輸送爲白臥乎事

辛未閏十一月初三日

鳳林大君房掌務李忠信(手決)

1-8-66) 1631년(인조 9) 윤선도 은사장

[1631년(인조 9) 윤10월 4일에 봉림대군이 윤선도에게 역서曆書 등을 하사하며 동봉한 문서]

윤사부댁

역서 1.

감골 10.

전약.

1631년(인조 9) 윤10월 4일.

봉림대군께서.

[본월(윤10월) 1일에 서피와 사모, 귀마개를 보내주셨다.]

윤스부댁

넉서 一

감조 열

전약

신미 윤시월 초스일

봉림대군것

[本月初一日

惠送鼠皮紗帽耳掩]

1-8-67) 1631년(인조 9) 윤선도 은사장

[1631년(인조 9) 11월 29일에 대군이 건어물 등 식재료를 윤선도에게 하사하며 동봉한 문서]

[자가께서 1631년(인조 9) 11월 29일에 보내신 것이다.]

말린 송어 2마리.

말린 연어 1마리.

연어알젓 1그릇.

생전복 40마리.

[自家所送

辛未至月廿九日]

건슈어 二

건년어 一

년어난혜 一과
싱복 스십

1-8-68) 1631년(인조 9) 윤선도 은사장

[1631년(인조 9) 1월 15일에 대전에서 윤선도에게 감귤을 하사하며 동봉한 문서]

대군 사부 윤선도 집에 하사하여 보냄.
감귤 5지.
1632년(인조 10) 1월 15일.
[이상은 대전에서 내준 것이라고 했다.]

大君師傅尹善道家
賜送
柑子 五枝
壬申正月十五日
[右出於
大殿云]

1-8-69) 1632년(인조 10) 윤선도 은사장

[1632년(인조 10) 1월 17일에 대군이 윤선도에게 황감 및 지필묵을 하사하며 동봉한 문서]

황감 1매.
[이상은 1632년(인조 10) 1월 17일에 자가께서 보내주신 것이다.]
[2월에 두 자가께서 종이 10속, 벼루 1면, 붓 10자루, 먹 5덩이를 보내주셨다.]
[3월에 두 자가께서 삭지 2권, 붓 5자루, 먹 3덩이를 보내주셨다.]

黃柑十枚
[右壬申正月十七日]

自家惠送]

二月

二自家惠送紙十束硯一

面筆十枚墨

五笏

三月

兩自家惠送朔紙

二卷筆五枚墨

三笏

1-8-70) 1632년(인조 10) 윤선도 은사장

[1632년(인조 10) 3월 19일에 국왕의 전교에 따라 내수사에서 윤선도에게 소금을 하사하며 동봉한 문서]

전교로 말미암아, 이번 봄에 소금을 내려줌.

소금 1석이다.

사부 윤선도의 집에 보냄.

1632년(인조10) 3월 19일.

내수사.

傳教內乙用良今春鹽頒賜

鹽壹石 師傅尹善道家送

壬申三月十九日

內需司

1-8-71) 1632년(인조 10) 윤선도 은사장

[1632년(인조 10) 4월 1일에 대전과 중전에서 윤선도에게 표피와 토주를 하사하며 동봉한 문서]

[1632년(인조 10) 4월 1일]

대전에서 술을 내려주시면서 표피 1령을 하사함.

중전께서 보라색 토주를 50척을 하사함.

[壬申

四月初一日]

大殿宣醞 賜豹皮一令

中殿賜紫的吐絀五十尺

1-8-72) 1632년(인조 10) 윤선도 은사장

[1632년(인조 10) 4월 2일에 국왕의 전교에 따라 내수사에서 윤선도에게 공미와 붉은 콩을 하사하며 동봉한 문서]

전교로 말미암아,

공미 2석

붉은 콩 1석

이상을 윤선도의 집에 보냄.

1632년(인조 10) 4월 2일.

내수사.

傳教內乙用良

貢米 貳石

赤豆 壹石 以上尹善道家送

壬申四月初二日

內需司

1-8-73) 1632년(인조 10) 윤선도 은사장

[1632년(인조 10) 4월 7일에 대군이 윤선도에게 녹미를 하사하며 동봉한 문서]

자가의 행하로 말미암아, 녹미 2석을 실어 보냄.

장무 신덕인辛德仁[작명]

[1632년(인조10) 4월 7일.]

自家行下內 祿米二石輸送爲白臥乎事
掌務辛德仁(手決)
[壬申四月初七日]

1-8-74) 1632년(인조 10) 윤선도 은사장

[1632년(인조 10) 4월 7일에 대전에서 윤선도에게 웅어를 하사하며 동봉한 문서]

대군의 사부 윤선도의 집에 하사하여 보냄.

생웅어 7두름.

1632년(인조10) 4월 7일.

大君師傅尹善道家
賜送
生葦魚七冬音
壬申四月初七日

1-8-75) 1632년(인조 10) 윤선도 은사장

[1632년(인조 10) 5월 5일에 대전에서 윤선도에게 후추와 다양한 부채들을 하사하며 동봉한 문서]

대군의 사부 윤선도의 집에 하사하여 보냄.

후추 2되.

백첩선 1자루.

칠별선 1자루.

유별선 1자루.

[1632년(인조 10) 5월 5일.]

大君師傅尹善道家

賜送

胡椒 二升

白貼扇 一把

漆別扇 一把

油別扇 一把

[壬申五月五日]

1-8-76) 1632년(인조 10) 윤선도 은사장

[1632년(인조 10) 5월 5일에 두 대군이 윤선도에게 후추와 모자 및 다양한 부채 등을 하사하며 동봉한 문서]

후추 5되.

입모 1사.

백첩선 2자루.

칠별선 1자루.

유별선 1자루.

[1623년(인조 10) 5월 5일.]

[두 자가께서 보내주심.]

胡椒 五升

笠帽 一事

白貼扇 二把

漆貼扇 一把

漆別扇 一把

油別扇 一把

[壬申五月十二日]

[兩自家惠送]

1-8-77) 1632년(인조 10) 윤선도 은사장

[1632년(인조 10) 9월에 내농포에서 윤선도에게 순무를 하사하며 동봉한 문서]

사부 윤선도 집에 하사하여 보냄.
순무 15단을 실어 보냄.
9월 일 [1632년(인조 10)]
농포 안안[착명]

師傅尹善道家
賜送
鄉菁拾伍丹輸送事
九月日 [壬申]
農圃安(手決)

1-8-78) 1632년(인조 10) 윤선도 은사장

[1632년(인조 10) 9월 14일에 국왕의 전교에 따라 내수사에서 윤선도에게 소금을 하사하며 동봉한 문서]

전교로 말미암아 내려줌
소금 1석을 사부 윤선도의 집에 보냄.
1632년(인조 10) 9월 14일.
내수사.

傳教內乙用良頒 賜
鹽壹石 師傅尹善道家送
壬申九月十四日
內需司

1-8-79) 1632년(인조 10) 윤선도 은사장

[1632년(인조 10) 11월 15일에 대군이 윤선도에게 녹미와 해산물 등의 식재료들을 하사하며 동봉한 문서]

자가가 행하하심이 다음과 같다.

녹미 1석.

녹태 1석.

곶내에서 내어줌.

말린 송어 3마리.

말린 연어 1마리.

비늘 없앤 조기 5속.

대구어알 1기.

연어알 1기.

[1632년(인조 10) 11월 15일.]

自家行下內

祿米壹石

祿太壹石

內出乾秀魚 三尾

乾鱧魚 一尾

洗鱗石首魚 五束

大口魚卵 一器

鱧魚卵 一器

[壬申十一月十五日]

1-8-80) 1632년 윤선도(인조 10) 은사장

[1632년(인조 10) 11월에 내전의 명령에 따라 봉림대군방에서 윤선도에게 다양한 색깔의 비단을 하사하며 동봉한 문서]

궐에서 보라색 도련주 1필과 남색 도련주 1필을 내어줌.

내전의 하교에, “이 물건은 자기에서 『대학』을 다 읽은 포상으로 보내주려고 계획했으나, 사부가 병 때문에 궐에 나오지 못하여 댁에 보내주지 못했다. 그래서 지금 내전에서 내어주는 것이다. 이 뜻을 알려줄 것이다.”라고 내교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댁에 와서 앞의 기록을 자세히 바칩니다.

1632년(인조 10) 11월 20일.

봉림대군방 장무 신히[작명]

自內出紫的擣鍊紬壹匹藍擣鍊紬壹匹送宅事
內教內 此物自家大學畢讀之賞送之爲計 師傅以病不進
關中 故未得送宅而今以內出也詮告此意之事 內教教是乎等以
上宅而前者來宅書錄仔細捧入於內爲白有臥乎事
壬申十一月二十日 鳳林大君房掌務辛(手決)
一宮奴愛堂(手決)

1-8-81) 1633년(인조 11) 윤선도 은사장

[1633년(인조 11) 2월 24일에 국왕의 전교에 따라 내수사에서 윤선도에게 소금을 하사하며 동봉한 문서]

전교로 말미암아, 이번 춘등분을 하사함.
소금 1석을 사부 윤선도의 집에 보냄.
계유년(인조 11, 1633) 2월 24일.
내수사.

傳教內乙用良 今春等
賜
鹽壹石 師傅尹善道家送
癸酉二月廿四日
內需司

1-8-82) 1633년(인조 11) 윤선도 은사장

[1633년(인조 11) 4월 길일에 대군이 윤선도에게 지필묵 3종을 하사하며 동봉한 문서]

삭지(朔紙) 1권.

황모필 4자루.

진묵 2덩이.

[1633년(인조 11) 4월 길일. 자가께서 보내줌.]

朔紙 一卷

黃毛筆 四柄

眞墨 二笏

[癸酉四月吉日

自家所惠]

1-8-83) 1633년(인조 11) 윤선도 은사장

[1633년(인조 11) 4월 11일에 대군이 윤선도에게 공목과 녹미를 하사하며 동봉한 문서]

윤사부대에

자가께서 행하하심에,

공목 15필과 녹미 2석을 실어 보냄.

1633년(인조 11) 4월 11일 서원 최정현[작명]

尹師傅宅

自家行下內貢木十五疋

祿米二石

輸送爲白臥乎事

崇禎六年四月十一日 書員 崔挺炫(手決)

1-8-84) 1633년(인조 11) 윤선도 은사장

[1633년(인조 11) 4월에 대전에서 윤선도에게 건어물 등 다양한 식재료와 술을 하사하며 동봉한 문서]

전 사부 윤선도 집에 하사하여 보냄.

말린 문어 1마리.

말린 대구어 3마리.

건치 2마리.

말린 송어 2마리.

말린 광어 2마리.

쾌포快脯 2개.

장인복 3주지.

생평 2마리.

생선 2마리.

생옹어 5두름.

술 5병.

1633년(인조 11) 4월 26일.

前師傅尹善道家

賜送

乾文魚 一尾

乾大口魚 三尾

乾雉 二首

乾秀魚 二尾

乾廣魚 二尾

快脯 二個

長引鰈 三注之

生雉 二首

生鮮 二尾

生葦魚 五冬音

酒五瓶

癸酉四月二十六日

1-8-85) 1652년(효종 3) 윤선도 은사장

[1652년(효종 3) 7월 2일에 대전에서 윤선도에게 다양한 식재료와 술을 하사하며 동봉한 문서]

전 승지 윤선도 집에 하사하여 보냄.

말린 돼지고기 1구마리.

전복 1첩.

말린 문어 1마리.

말린 대구어 3마리.

말린 광어 5마리.

건치 5수마리.

추복 10첩

장인복 10주지.

잣 1말.

생뽕 2마리.

생선 2마리.

홍소주 5병.

[1652년(효종 3) 7월 2일.]

前承旨尹善道家

賜送

乾猪一口

全鰵一貼

乾文魚一尾

乾大口魚三尾

乾廣魚五尾

乾雉五首

槌鰵十貼

長引鰵十注之

栢子 一斗
生雉 二首
生鮮 二尾
紅燒酒 五瓶
[壬申七月初二日]

1-8-86) 1652년(효종 3) 윤선도 은사장

[1628년(효종 3) 7월 2일에 대전에서 윤선도에게 다양한 부채들과 자리를 하사하며 동봉한 문서]

전 승지 윤선도 집에 하사하여 보냄.
칠별선 2자루.
유별선 2자루.
4장부유석 1부.
1652년(효종 3) 7월 2일.

前承旨尹善道家
賜送
漆別扇 二把
油別扇 二把
四張付油席 一浮
壬辰七月初二日

1-8-87) 1652년(효종 3) 윤선도 은사장

[1652년(효종 3) 8월 6일에 국왕의 전교에 따라 내수사에서 윤선도에게 창미_{倉米}와 조기를 하사하며 동봉한 문서]

전교로 말미암아,
창미_{倉米} 2석

조기 30속

이상을 전 승지 윤선도의 집에 하사하여 보냄.

1652년(효종 3) 8월 6일.

내수사

傳教內乙用良

倉米貳石

石首魚參拾束 以上前承旨尹善道家

賜送

壬辰八月初六日

內需司

1-8-88) 1652년(효종 3) 윤선도 은사장

[1652년(효종 3) 9월 4일에 대전의 상고廡庫에서 윤선도에게 모자 등을 비롯한 다양한 물품들을 하사하며 동봉한 문서]

예조 참의 윤선도의 집에 하사하여 보냄.

은립모 1부.

대홍광다회 1조.

공작우 1대.

별월을우 1대.

궁대통개 1부.

향환도 1자루.

흑각궁 1장.

장전 1부.

1652년(효종 3) 9월 4일.

禮曹叅議尹善道家

賜送

銀笠帽 一部

大紅廣多繪 一條
孔雀羽 一對
伐月乙羽 一對
弓俗筒箇 一部
鄉環刀 一把
黑角弓 一張
長箭 一部
壬辰九月初四日

1-8-89) 1657년(효종 8) 윤선도 은사장

[1657년(효종 8) 12월 26일에 대전에서 윤선도에게 식재료들을 하사하며 동봉한 문서

첨지증추부사 윤선도의 집에 하사하여 보냄.

멧돼지 반 마리.

생노루 1마리.

생꿍 5마리.

향온주 5병.

당유자 2매.

감굴 10매.

동정굴 10매.

유감乳柑 10매.

1657년(효종 8) 12월 26일.

僉知尹善道家

賜送

山猪 半口

生獐 一口

生雉 五首

香醞 五瓶

唐柚子 二枚

柑子 十枚
洞庭橘 十枚
乳柑 十枚
丁酉十二月二十六日

1-8-90) 1657년(효종 8) 윤선도 은사장

[1657년(효종 8) 9월 13일에 국왕의 전교에 따라 내수사에서 윤선도에게 소금 등을 하사하며 동봉한 문서]

전교로 말미암아,
전세미 4석.
전세태 4석.
소금 2석.
미역 50근.
조기 30속
이상을 전 승지 윤선도의 집에 보냄.
1657년(효종 8) 9월 26일.
내수사

傳教內乙用良
田稅米 肆石
田稅太 肆石
鹽 貳石
官藿 伍拾斤
石首魚參拾束 以上前承旨尹善道家送
丁酉九月十三日
內需司

1-8-91) 1657년(효종 8) 윤선도 은사장

[1657년(효종 8) 12월 19일에 대전에서 윤선도에게 감귤을 하사하며 동봉한 문서]

첨지중추부사 윤선도의 집에 하사하여 보냄.

감귤 10매.

1657년(효종 8) 12월 19일.

僉知尹善道家

賜送

柑子十枚

丁酉十二月十九日

1-8-92) 1658년(효종 9) 윤선도 은사장

[1658년(효종 9) 3월 27일에 대전에서 윤선도에게 생선 등 식재료와 술을 하사하며 동봉한 문서]

참의 윤선도의 집에 하사하여 보냄.

학꽂치 7두름.

생전어 20미.

생새우 20개)

중간크기 생서대 1마리.

작은 생설어 1마리.

중간크기 생숭어 2마리.

술 5병

1658년(효종 9) 3월 27일.

叅議尹善道家

賜送

生細魚 七冬音

生箭魚 二十尾

生大蝦 二十箇

生中舌魚 一尾
生小舌魚 一尾
生中秀魚 二尾
酒 五瓶
戊戌三月二十七日

1-8-93) 1660년(현종 원) 윤선도 은사장

[1660년(현종 1) 5월 27일과 6월 3일, 6월 7일에 왕대비전과 중궁전 및 대왕대비전 등에서 윤선도에게 곁감과 안감을 하사하며 동봉한 문서

1660년(현종 1) 5월 27일에 왕대비전에서 곁감과 안감을 하사하심.
6월 3일에 중궁전에서 곁감과 안감을 하사하심.
(6월) 7일에 대왕대비전에서 곁감과 안감을 하사하심.

庚子五月二十七日
王大妃殿賜表裡
 六月初三日
中宮殿賜表裡
 初七日
大王大妃殿賜表裡

제2장

가계 계승과 가훈

해설

자료

1. 호구 기록
2. 입후^{立後}
3. 문중 운영과 통문^{通文}
4. 가훈^{家訓}

호구 기록

조선시대에는 3년 마다 호구 기록을 개수하여 호적 대장을 만들어 보관했다. 각각의 호에서는 관에 호적 대장 작성을 위한 기초 자료로 2부의 호구 단자戶口單子를 제출하는데, 한 부는 관에 보관하고 한 부는 뒤에 돌려받았다. 호구 단자는 이러한 이유로 개별 가문에 현존하고 있다. 한편, 관에서 호적 대장의 내용을 등급騰給받은 것이 준호구准戶口이다.

해남 윤씨 가문에 현존하는 호구 자료 중 여기에서는 18세기 윤덕희가의 호구 단자와 준호구를 수록했다. 이 호구 단자와 준호구에는 다른 호구 단자와 마찬가지로 윤덕희의 주소와 직역, 나이, 본관, 4조, 윤덕희 처의 나이와 본관, 4조가 수록된 후 가솔과 솔노비率奴婢가 수록되어 있다.

1729년(영조 5) 해남에 있을 때 작성한 호구 단자에는 아우 둘과 그들의 처가 가솔로 등재되어 있으며, 노비는 수록하지 않았다. (문서 2-1-1) 1738년(영조 14) 한성부에 있을 때의 준호구에는 아우 셋과 그들의 처, 아들 셋과 그들의 처가 가솔로 수록되어 있고, 19구의 솔노비가 수록되어 있다. (문서 2-1-2) 1765년(영조 41) 해남에 있을 때의 준호구에는 아들 둘과 며느리 셋, 손자 한 명과 혼자인 조카, 부부가 함께 사는 조카가 가솔로 수록되어 있고, 서울에 있는 노비와 지방에 있는 노비를 나누어 상당히 많은 노비가 수록되어 있다. (문서 2-1-3)

윤덕희가 45세였던 1729년(영조 5)에는 형제와 제수가 가솔로 등재되어 있고, 54세였던 1738년(영조 14)에는 형제 부부와 아들 부부가 함께 가솔로 등재되어 있으며, 81세였던 1765년(영조 41)에는 아들 부부, 혼자인 며느리, 손자, 혼자인 조카, 조카 부부가 가솔로 등재되어 있는 등 시기에 따른 가솔 구성의 변화가 흥미롭다. 또한 각 시기별 노비 기재 방식에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파악할 수 있다.

입후立後

1437년(세종 19) 입후법이 제정되기 전에 양자나 양녀를 들이는 것은 사적인 영역의 일이었고, 부부 양측의 친족이나 부부와 혈연 관계가 없는 사람들까지 양자나 양녀가 될 수 있었다. 이 시기 사람들은 서로간의 친밀감이나 이해 관계 충족을 위해 자유롭게 양부모와 양자녀 관계를 맺었다. 양부모가 양자나 양녀에게 봉사奉祀를 맡기더라도 부부가 사후에 함께 남편 집안의 가묘에 모셔져 제향을 받는 형태는 아니었다. 유교적 제사 형태가 정착되지 않은 사회에서 제사는 사망자를 기억하고 기리며 무불巫佛식 제사를 통해 그들의 명복을 빌어주는 모습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양자나 양녀를 선택할 때, 심지어 제사를 맡기려고 양자녀를 선택할 때에도 그 선정 대상이 규제되지 않았다. 또한 혼인 후에도 자신의 본가, 그리고 자신과 혈연 관계가 있는 친족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사회 분위기 속에서 남편과 처가 각각 자신의 친족을 양자녀로 들이는 사례가 나타나기도 했다.¹

그런데 조선 건국 후 지배층들이 유교적 제사 형태를 정착시키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아들이 없는 집안에 남편측 동성 친족 중 장자가 아닌 둘째 아들 이하의 아들을 계후자로 세워 부부의 아들, 더 나아가서는 부계 친족 집단의 조상 제사를 받드는 봉사자로 삼도록 하는 법이 제정되어 운영되었다. 이 법이 최초로 제정된 시점은 1437년(세종 19)이며, 일반적으로 ‘입후법立後法’이라고 일컬어진다. 이 법이 제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입양 관행을 금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상이나 목적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양자녀를 들이던 관행은 조선 후기까지도 입후법에 의해 행해진 입후立後와 함께 존속되었다. 그러나 16세기 이후 왕실과 상류층에서는 15세기까지 성행하던 이러한 자유로운 입양 관행이 상당히 쇠퇴되는 모습을 보인다.

입후법 제정 후 안정적으로 부계의 가계를 이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법으로 적장자의 위상과 재산권을 보장해주는 입후법에 따라 계후자繼後子를 세우고자 했다. 또한 『주자가례』에 의한 제사의례가 정착되고, 부계중심적 질서가 강화되어가면서 조선 후기에는 아들이 없는 양반가에서 계후자를 세우는 것이 당연한 일이 되었다.

입후법 제정 후 조선 정부에서는 이 법에 의해 계후자를 세우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예조에서 계후 입안을 발급하여 허가하는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입후법 준수 여부를 감독했다. 입후법을 『경국대전』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적처와 첩에 모두 아들이 없는 자는 관宦에 고하여 동종 지자同宗支子를 세워 후사로 삼는다. 양

1 박경, 2011, 『조선 전기의 입양과 가족제도』, 해안, 66~143쪽 참조.

가兩家의 아버지가 함께 명하여 세운다. <아버지가 사망했으면 어머니가 관에 고한다. 존속과 형제 및 손자는 후사가 되지 못한다.>²

이 법에 의하면 ① 적처와 첩에 모두 아들이 없는 사람만 입후할 수 있으며, ② 입후 대상은 남편 측 동성 친족 중 둘째 이하의 아들로 한정되며, ③ 양가의 아버지가 모두 허락해야 한다는 조건에 부합해야 했다. 이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양가의 아버지가 관廳, 즉 예조에 고하여 허가를 받으면 입후가 성립되었다. 법조문에 수록된 대로 양가 모두 아버지가 없으면, 어머니가 예조에 고하는 것이 가능했다. 입후를 청원한 사람들에게 예조에서 해당 입후가 이러한 법조문에 부합하는지를 조사한 후 법에 부합하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입후가 성립되었음을 증빙해주기 위해 발급한 문서가 예조에서 발급한 계후 입안이었다.³

해남 윤씨 가문에도 계후 입안이 1건 남아있다. 바로 1602년(선조 35) 윤유심의 둘째 아들 윤선도를 윤유기의 계후자로 세우는 것을 허가한 문서(문서 2-2-1)가 그것이다. 이 문서에는 양부가 될 병조 참의 윤유기와 친부인 전 장단 부사 윤유심이 모두 각각 소지를 올림으로써 양가 아버지가 함께 명해야 한다는 『경국대전』의 조건을 충족시켰다. 이들의 소지 내용도 『경국대전』 규정에 부합하는 입후라는 것을 피력하는 내용이었다.

윤유기의 소지 내용을 살펴보면, “제가 적처와 첩에 모두 아들이 없어 동생형(同生兄) 유심의 둘째 아들 선도를 계후하고자 양가에서 동의하여 소지를 올리니 다른 예에 의하여 입후해 주십시오.”라고 했다. 이 소지에는 ① 적처와 첩에 모두 아들이 없다는 점, ② 동종 지자, 즉 형 유심의 둘째 아들이라는 점, ③ 양가가 동의했다는 점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이는 친부인 윤유심의 소지 내용도 마찬가지였다.

양가의 아버지가 소지를 올리면 관에서는 이들의 소지 내용이 진실인지 확인하게 된다. 관에서 『경국대전』 규정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다. 이 입후 사안에도 윤유기와 윤유심에게 공함(公緘)을 보내어 그들에게 답신, 즉 답통(答通)을 받아 이를 확인했다. 조선 전기에는 이러한 과정만 거치면 조사 과정이 마무리되었다. 그런데, 조선 후기에는 문장(門長)이나 친족의 진술까지 들었다. 이 윤선도 입후 사안의 경우 윤유기의 동성 6촌제 윤광계와 윤유심의 처 이성 5촌숙 기성군 현에게 공함을 보내어 윤유기, 윤유심에게 확인했던 것과 같은 내용을 물어 답통을 받았다.

이러한 조사 과정을 거쳐 『경국대전』 입후조에 부합한다는 점이 확인되면 예조에서는 왕에게 입후의 허락을 청하는 계목(啓目)을 올려 윤허를 받은 후 입안을 발급했다. 윤선도 계후 입안에도 예외없

2 『경국대전』 권3, 예전, 입후조

3 박경, 앞의 책, 146~162쪽.

이 이러한 절차가 드러난다. 모든 입후 허가에 왕의 윤허를 받는 것은 입후가 조선시대 위정자들에게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맺어지는 매우 중요한 일’로 여겨졌기 때문이었다.

계후 입안은 양자측에서는 양부모의 적장자로서의 법적 권리를 부여받게 되고 양부모측에서는 관의 인증을 받아 안정적으로 가계를 이어갈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양부모와 계후자 모두에게 중요하게 여겨졌다. 계후 입안은 계후자가 법적으로 정당한 가계 계승자라는 것을 중앙 관서인 예조에서 증빙해 주는 문서였던 것이다. 이렇게 계후 입안은 법적 권리 의무 관계 형성을 관에서 인증해 준 중요한 문서이기 때문에 이 문서를 발급받았는지의 여부를 둘러싸고 분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해남 윤씨 가문에는 윤선언의 계후자인 윤의미가 예조에서 계후 입안을 받았는지의 여부를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했음을 알려주는 문서가 남아있다. (문서 2-2-3)

어떤 일 때문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해남 현감은 예조의 관문에 따라 윤선언 처 원씨의 종들에게 윤의미의 계후 입안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그런데 윤선언의 처 원씨의 종 2인은 1632년(인조 10) 예조에서 윤의미의 계후 입안을 발급받았지만 이후 잃어버렸다고 하며 입안을 제출하지 않았다. 사지노 정회는 상전의 이성 조카가 병자 호란 때 배를 타고 내려오다가 중로에 변란을 만나 잃어버렸다고 했다. 그리고 여종 충금은 1635년(인조 13) 전염병을 피하여 거처를 옮긴 상전을 따라 문서들을 가지고 뒤쫓아 내려오던 종들이 중로에서 입안을 잃어버렸다고 진술했다.

반면에 윤씨 문중의 공증인(公證人)으로 지정된 윤선오는 윤선도가 둘째 아들인 윤의미를 형 윤선언의 계후자로 허락하기는 했지만 예조에서 입안을 발급받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조사 내용을 관찰사에게 첩보하자 관찰사는 윤선오 외의 다른 사람을 불러 조사하여 보고 하라는 등 윤의미가 계후 입안을 받은 윤선언의 계후자임을 부정하고자 한 윤선오 등에게 불리한 지시를 내렸다. 윤의미가 윤선언의 계후자임을 부정하고자 한 편에서는 이러한 정보를 입수하고 앞으로 있을 해남현의 조사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을 강구했다.

이는 조선시대 입후 안정성에 계후입안이 매우 중요했다는 사실과 함께 친족간에 입후를 둘러싼 분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기도 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한편, 조선 후기 입후가 증가하고 문중이 발달하면서 문중 회합 자리에서 문중 사람들이 연명하여 문서를 작성하고 계후자를 세우는 사례들이 나타난다. 해남 윤씨 집안에도 1768년(영조 44) 친족들이 모였을 때 윤희를 윤덕소의 계후자로 인정하는 문서를 작성한 후 이 자리에 모인 친족들이 모두 증인과 필집으로 이름을 적고 착명(着名)한 문서가 남아 있다. (문서 2-2-2) 문중 사람들이 종가의 계후자 선정시 이를 보증하는 문서를 작성했던 것이다. 이러한 경우 이후에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 예조에서 계후 입안을 발급받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문중 사람들이 함께 연명하여 계후자를 세우는 경우는 예조의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문중 사람들의 조력을 받음으로써 상대적으로 계후자로서의 지위를 보장받을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조선시대 유교적 제사 형태를 정착시키기 위해 입후법이 제정되고 이 법에 따라 예조에서 왕의 윤희

허를 받아 법에 부합한 입후를 허가한 계후 입안은 조선 사회내에서 입후가 중요해지면서 안정된 가계승과 봉사를 원했던 사람들과 문중에 매우 중요한 증빙 문서로 부상했다. 이에 친족 간, 혹은 문중 내의 이해 관계에 따라 계후 입안이 발급되었는지의 여부를 두고 분쟁이 일어나는 일도 많았다. 한편, 조선 후기에 입후가 증가하고 문중이 발달하면서 계후 입안을 발급받기 전에 문중 사람들이 모여 사적으로 입후를 하고 문서를 작성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문중 운영과 통문通文

문중이 발달하면서 통문通文, 혹은 회문回文이라고 불리는 문서를 보내어 문중 운영과 관련된 사항들을 통지하기도 했다. 통문이나 회문은 문중 외에도 서원, 계樓 등 다른 사회적 조직에서도 모임, 혹은 사실을 통지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해남 윤씨 가문에서는 1702년(숙종 28)과 1703년(숙종 29)에 윤두서가 고조부 윤유기의 묘전 마련을 위해(문서 2-3-1, 2-3-2), 갑진년에 해남 윤씨 연동 종가에서 충헌공 윤선도 사당의 수리를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문서 2-3-3) 종손 윤정현 등이 어초은 윤효정 사당 추원당 수리 빚을 갚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문서 2-3-4) 문중 사람들에게 통문이나 회문을 보냈던 사례들이 나타난다.

가훈家訓

해남 윤씨 가문에는 ‘충헌공 가훈忠憲公家訓’이라는 제목으로 성책된 가훈이 남아 있다.(문서 2-4-1) 이는 윤선도가 맏아들 윤인미에게 당부한 내용이 담긴 간찰 내용을 성책한 것이다. 윤선도는 윤인미의 과거 시험 답안지에 대해 평가하고 조언한 후 행실을 삼가며 선함과 인도를 쌓도록 당부했다. 또한 윤선도는 집안이 흥성하고 쇠락하는 것은 평소의 행실에 크게 좌우된다고 하며,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사항도 당부했다.

첫째, 의복, 음식, 생활용품 등에 욕심을 내지 말고 기본적인 용도에 쓸 만한 정도의 것만 이용하라고 당부했다. 아들 뿐 아니라 손자인 윤이석에게도 좋은 물건이나 분수에 걸맞지 않는 것을 지니지

않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둘째, 노비 신공을 사내종은 35자 평목平木으로 치밀하게 짠 것 2필, 여종은 1필 반으로 규정하고, 가난하거나 역役이 많은 자는 헤어려서 감해주며, 부유한 자라도 더 받지 않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셋째, 양역 노비仰役奴婢에게 옷과 음식을 넉넉하게 해 주고, 양역량을 지나치게 하지 말며, 학대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넷째, 사소한 잡역과 일상적으로 부리는 일 등은 집안의 노비에게 맡기고 호노戶奴에게 시키지 말며, 동네 사람들을 부리는 것을 삼가도록 당부했다.

다섯째, 후사를 기원하는 것은 『의학입문醫學入門』의 구사求嗣 조항과 『기사진전祈嗣眞詮』을 위주로 하고, 점쟁이가 하는 말에 현혹되지 않도록 당부했다.

여섯째, 상업 활동을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일곱째, 배에 짐을 운반할 때 종들을 격꾼으로 활용하는 경우 양역노仰役奴 외에는 모두 시세를 기준으로 가감하여 격가격價를 지불하도록 당부했다.

여덟째, 평생토록 『소학小學』을 읽어, 심신을 보호하는 데 힘쓰도록 당부했다.

참고문헌

문숙자, 2016, 「조선후기 兩班家系와 地域民의 관계 및 그 변화양상 : 해남윤씨 고문서를 중심으로」, 『고문서 연구』48.

박경, 2011, 『조선 전기의 입양과 가족제도』, 해안.

김현영, 1999, 「호남지방 고문서를 통해 본 조선시대의 가족과 친족」, 『호남지방 고문서 기초연구』, 한국정신 문화연구원.

최승희, 1983, 「戶口單子·准戶口에 대하여」, 『규장각』7.

1. 호구 기록

2-1-1) 1729년 윤덕희 호戶의 호구 단자

[1729년(영조 5)에 해남현 일도면 제1 백련동리 제 3통 제3에 사는 윤덕희가 해남현에 호구 사항을 적어 올린 호구 단자]

현내縣內 일도면一道面 제1 백련동리白蓮洞里 호적단자戶籍單子

주住 제 3통 제 3

호戶 유학幼學 윤덕희尹德熙 나이 45세 을축년생, 본적 해남海南

아버지 성균 진사成均進士 두서斗緒

조부 통훈대부通訓大夫 행行 종친부 전부宗親府典簿 이석爾錫

증조부 증贈 조봉대부朝奉大夫 사간원 헌납司諫院獻納 지제교知製敎 겸兼 춘추관 기주관春秋館記注官
행行 권지 성균관 학유權知成均館學諭 조봉대부 인미仁美

외조부 증贈 가선대부嘉善大夫 이조 참판史曹參判 겸兼 성균관 좌주成均館祭酒 세자시강원 찬선世子侍
講院贊善 행行 통정대부通政大夫 승정원 좌승지承政院左承旨 겸兼 경연 참찬관經筵參贊官 이동규李同揆, 본적
완산完山

처妻 안씨安氏 나이 38세 신미년생, 본적 광주廣州

아버지 성균 생원成均生員 서의瑞儀

조부 통덕랑通德郎 후익後益

증조부 통훈대부通訓大夫 행行 안산 군수安山郡守 수원진관 병마동첨절제사水原鎭管兵馬同僉節制使 헌
기獻奇

외조부 학생學生 성중려成重呂, 본적 창녕昌寧

가솔[率]

아우 덕렬德烈 나이 32세 무인년생

제수 안씨安氏 나이 30세 경진년생, 본적 순흥順興

아우 덕렴德廉 나이 28세 임오년생

제수 허씨許氏 나이 28세 임오년생, 적 양천陽川

縣內一道 第一 白蓮洞里 戶籍單子

住第三統第三 戶幼學尹德熙 年四十五 乙丑 本海南

父 成均進士 斗緒

祖 通訓大夫 行宗親府典簿 爾錫

曾祖 贈 朝奉大夫 司諫院獻納 知製敎 兼春秋館記注官 行權知成均□…□(館學諭 朝奉大夫 仁美)

外祖 贈 嘉善大夫 吏曹叅判 兼成均館祭酒 世子侍講院贊善 行通政大夫□…□(承政院左承 旨 兼經筵參贊官 李同揆 本完山)

妻 安氏 年三十九 辛未 籍廣州

父 成均生員 瑞儀

祖 通德郎 後益

曾祖 通訓大夫 行安山郡守 水原鎭管兵馬同僉節制使 獻奇

外祖 學生 成重呂 本昌寧

率弟 德烈 年三十二 戊寅

嫂 安氏 年三十 庚辰 籍順興

弟 德廉 年二十八 壬午

嫂 許氏 年二十八 壬午 籍陽川

2-1-2) 1738년 한성부에서 발급한 윤덕희 호戶의 준호구

[1738년(영조 14)에 한성부에서 동부 건덕방계 제 14통 제2에 사는 윤덕희가의 호구 사항을 호적 대장에서 베껴 발급해 준 준호구準戶口]

건륭 3년(1738, 영조 14) 월 일 한성부漢城府

무오년(영조 14, 1738)에 성적成籍한 호구 장적을 상고하면 다음과 같다. 동부東部 건덕방계建德坊契 제 14통 제 2

호戶 전 승지 여선장呂善長의 집터에 들어와 사는 유학幼學 윤덕희尹德熙 나이 54세 을축년생, 본본 해남海南

아버지 성균 진사成均進士 두서斗緒

조부 통훈대부通訓大夫 행행 종친부 전부宗親府典簿 이석爾錫

증조부 증贈 조봉대부朝奉大夫 사간원 헌납司諫院獻納 지제교知製敎 겸兼 춘추관 기주관春秋館記注官 행행 권지 성균관 학유權知成均館學諭 조봉대부 인미仁美

외조부 증 가선대부嘉善大夫 이조 참판吏曹參判 겸 성균관 췌주成均館祭酒 세자시강원 찬선世子侍講院 贊善 행행 통정대부通政大夫 승정원 좌승지承政院左承旨 겸 경연 참찬관經筵參贊官 이동규李同揆, 본 완산 完山

처 안씨安氏 나이 48세 신미년생, 본적 광주廣州

아버지 성균 진사成均進士 서의瑞儀

조부 통덕랑通德郎 후익後益

증조부 통훈대부通訓大夫 안산 군수安山郡守 수원진관 병마동첨절제사水原鎭管兵馬同僉節制使 헌기獻 奇

외조부 학생學生 성중려成重呂, 본 창녕昌寧

가솔[率]

아우 덕렴德廉 나이 37세 임오년생. 제수 허씨許氏 나이 37세 임오년생, 본적 양천陽川

아우 덕휴德休 나이 29세 경인년생. 제수 김씨金氏 나이 28세 신묘년생, 본적 안동安東

아우 덕증德蒸 나이 25세 갑오년생. 제수 권씨權氏 나이 24세 을미년생, 본적 안동安東

아들 종棕 나이 34세 을유년생. 며느리 이씨李氏 나이 37세 임오년생, 본적 연안延安

아들 용榕 나이 31세 무자년생. 며느리 이씨 나이 31세 무자년생, 본적 성주星州

아들 탁탁 나이 21세 무술년생. 며느리 남씨南氏 나이 23세 병신년생, 본적 의령宜寧

집에 거느리고 있는 노비 명단[率奴婢秩]

사내종 사망士望, 사망, 계미년생. 아버지 같은 사내종 검학檢鶴, 어머니 같은 여종 순심順心

사내종 이건二建 경오년생. 아버지 이름을 알지 못함, 어머니 같은 여종 출생出生

사내중 일석一石 신사년생. 아버지 이름을 알지 못함, 어머니 같은 여중 기상근上
 사내중 일위一爲 경인년생. 아버지 같은 사내중 선위善爲, 어머니 같은 여중 선화善化
 사내중 삼위三爲 무술년생. 아버지, 어머니는 위와 같음
 사내중 수봉水奉 계묘년생. 아버지 같은 사내중 이건二建, 어머니 같은 여중 연업軟業
 사내중 수재水才 을사년생. 아버지, 어머니는 위와 같음
 여중 연업軟業 기묘년생. 아버지 사노私奴 만석萬石, 어머니 같은 여중 정업丁業
 여중 세월世月 경진년생. 아버지 양인良人 순직順迪 어머니 같은 여중 아정兒丁
 여중 명덕命德 경인년생. 아버지 사노 철신哲信, 어머니 같은 여중 정이丁伊
 여중 말질렬雋烈 신묘년생. 아버지 양인 최상준崔尙俊, 어머니 같은 여중 선금善今
 여중 영례永禮 임진년생. 아버지 사노 우검又儉, 어머니 같은 여중 복상卜尙
 여중 신매信妹 기해년생. 아버지, 어머니는 위와 같음
 여중 해단海丹 계사년생. 아버지 이름을 알지 못함, 어머니 같은 여중 기상근上
 여중 선례善禮 무술년생. 아버지 양인 선택善擇, 어머니 같은 여중 차상次上
 여중 순향順香 신축년생. 아버지, 어머니는 위와 같음
 여중 고상古尙 경인년생. 아버지 같은 사내중 자위自爲, 어머니 같은 여중 부화富化
 여중 대상代上, 사망. 무술년생. 아버지 양인 등학登鶴, 어머니 같은 여중 오정五丁
 여중 두질거비能去非 경술년생. 아버지 같은 사내중 이건二建, 어머니 같은 여중 연업軟業 등
 을묘년(1735, 영조 11) 장적과 대조하여 발급함.
 당상堂上[작서]. 낭청郎廳[작서]. 감동관監董官[작서]

乾隆三年月日 漢城府

考戊午成籍戶口帳內 東部建德坊契第十四統第二 戶 前承旨呂善長家代入 幼學尹德熙 年
五十

四 乙丑生 本海南 父 成均進士 斗緒 祖 通訓大夫 行宗親府典簿 爾錫 曾祖 贈 朝奉大夫 司
諫院獻納 知製

教 兼春秋館記注官 行權知成均館 學諭 朝奉大夫 仁美 外祖 贈 嘉善大夫 吏曹叅判 兼成均
館祭酒

世子侍講院贊善 行通政大夫 承政院左承旨 兼經筵參贊官 李同揆 本完山 妻安氏 年四十八辛
未生 籍廣州 父 成均進士 瑞儀 祖 通德郎 後益 曾祖 通訓大夫 安山郡守 水原鎮管兵馬同僉
節制使

獻奇 外祖 學生 成重呂 本昌寧 率 弟 德廉 年三十七 壬午生 嫂 許氏 年三十七 壬午生 籍陽
川 弟

德休 年二十九 庚寅生 嫂 金氏 年二十八 辛卯生 籍安東 弟 德丞 年二十五 甲午生 嫂 權氏 年二

十四 乙未生 籍安東 子 悰 年三十四 乙酉生 婦 李氏 年三十七 壬午 籍延安 子 愷 年三十一 戊子生

婦 李氏 年三十一 戊子生 籍星州 子 恠 年二十一 戊戌生 婦 南氏 年二十三 丙申生 籍宜寧 率奴婢

秩 奴士望故 年癸未 父同奴儉鶴 母同婢順心 奴二建 年庚午 父名不知 母同婢出生 奴一石 年辛巳 父

名不知 母同婢己上 奴一爲 年庚寅 父同奴善爲 母同婢善化 奴三爲 年戊戌 父母同上 奴水 奉 年癸

卯 父同奴二建 母同婢軟業 奴水才 年乙巳 父母同上 婢軟業 年己卯 父私奴萬石 母同婢丁 業 婢

世月 年庚辰 父良人順迪 母同婢兒丁 婢命德 年庚寅 父私奴哲信 母同婢丁伊 婢忞烈 年辛 卯 父

良人崔尙俊 母同婢善今 婢永禮 年壬辰 父私奴又儉 母同婢卜尙 婢信妹 年己亥 父母同上 婢 海丹 年癸巳 父名不知 母同婢己上 婢善禮 年戊戌 父良人善擇 母同婢次上 婢順香 年辛丑 父母同上

婢古尙 年庚寅 父同奴自爲 母同婢富化 婢代上故 年戊戌 父良人登鶴 母同婢五丁 婢罷去非 年庚

戊 父同奴二建 母同婢軟業等 乙卯帳簿準給者 堂上[着署] 郎廳[着署] 監董官[着署]

2-1-3) 1765년 해남현에서 발급한 윤덕희 호구의 준호구

[1765년(영조 41)에 해남현에서 해남현 현일면 백련동리에 사는 윤덕희가의 호구 사항을 호적 대 장에서 베껴 발급해 준 준호구準戶口]

건륭 30년(1765, 영조 41) 정월 ○일 해남현海南縣

을유년(1765, 영조 41)에 장적한 호구 장적을 상고하면 다음과 같다. 현일면縣一面 제○ 백련동리 白蓮洞里 주주 제○통 제○

호戶 절충장군折衝將軍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 윤덕희尹德熙 나이 81세 을축년생, 본적 해남海南.
 아버지 성균 진사成均進士 두서斗緒
 조부 통훈대부通訓大夫 행행 종친부 전부宗親府典簿 이석爾錫
 증조부 증贈 조봉대부朝奉大夫 사간원 헌납司諫院獻納 지제교知製敎 겸兼 춘추관 기주관春秋館記注官
 행 권지성균관학유權知成均館學諭 조봉대부 인미仁美
 외조부 증贈 가선대부嘉善大夫 이조 참판吏曹參判 겸 성균관 왜주成均館祭酒 세자시강원 찬선世子侍講
 院贊善 행 통정대부通政大夫 승정원 좌승지承政院左承旨 겸 경연참찬관經筵參贊官 이동규李同揆, 본적 완
 산完山

가솔[率]

며느리 이씨李氏 나이 64세 임오년생, 본적 연안延安
 아들 굉내 나이 38세 무신년생. 며느리 남씨南氏 나이 36세 경술년생
 아들 저悻 나이 36세 경술년생. 며느리 유씨兪氏 나이 31세 을묘년생, 본적 기계杞溪
 손자 지상持常 나이 28세 무오년생. 손자 며느리 권씨權氏 나이 26세 경신년생, 본적 안동安東
 종자從子 적愼 나이 50세 병신년생
 종자從子 형惇 나이 32세 갑인년생. 조카 며느리 최씨崔氏 나이 31세 을묘년생, 본적 전주全州

집에 거느리고 있는 노비

사내중 명금命金 나이 56세 경인년생. 어머니 같은 여중 순심順心
 사내중 세인世仁 나이 62세 갑신년생. 아버지 같은 사내중 망일望一
 사내중 사걸士傑 나이 40세 병오년생. 아버지 같은 사내중 춘망春望
 사내중 독산독山 나이 29세 정사년생. 어머니 같은 여중 독업독業
 사내중 득남得男 나이 31세 을묘년생. 어머니 같은 여중 복정卜正
 사내중 이위二偉 나이 53세 계사년생. 어머니 같은 여중 선화善化
 사내중 정명正明 나이 24세 임술년생. 어머니 같은 여중 세금世金
 사내중 인성仁成 나이 19세 정묘년생. 아버지 같은 사내중 차걸次傑
 여중 괴상怪上 나이 55세 신묘년생. 어머니 같은 여중 부화夫化
 여중 개상介上 나이 32세 갑인년생. 아버지 같은 사내중 세인世仁
 여중 연이連伊 사망
 여중 태진太眞 나이 25세 신유년생. 아버지 같은 사내중 독귀독貴
 여중 월단月丹 나이 28세 무오년생. 어머니 같은 여중 귀업貴業
 여중 귀매貴每 나이 24세 임술년생. 아버지 같은 사내중 차걸次傑

여종 영례永禮 사망

사내종 철장哲長 사망

사내종 삼장三長 나이 40세 병오년생. 어머니 같은 여종 사례士禮

서울에 거주하는 노비

사내종 수재水才 나이 41세 을사년생. 어머니 같은 여종 연업軟業

여종 독거비독去非 나이 36세 경술년생. 어머니 위와 같음

여종 유중由中 나이 29세 정사년생. 어머니 위와 같음

어머니 말질렬雋烈 나이 54세 임진년생. 어머니 같은 여종 선금善今

여종 해월海丹 나이 53세 계사년생. 어머니 같은 여종 기상己上

여종 선례善禮 나이 49세 정유년생. 어머니 같은 여종 차상次上

여종 신매信每 나이 48세 무술년생. 어머니 같은 여종 복상卜上

여종 나이 37세 기유년생. 어머니 같은 여종 서운鋤云

여종 삼련三連 나이 29세 정사년생. 어머니 같은 여종 세월世月

여종 개사 나이 32세 갑인년생. 어머니 같은 여종 명덕命德

여종 고이古伊 나이 20세 병인년생. 어머니 같은 여종 해단海丹

사내종 자아동년自兒同年 나이 33세 계축년생. 어머니 같은 여종 영대永代

여종 이단二丹 나이. 어머니 위와 같음

여종 점련占連 나이 24세 임술년생. 어머니 같은 여종 이단二丹

사내종 설은치雪云致 나이 21세 을축년생. 어머니 위와 같음

사내종 마당馬堂 나이 44세 임인년생. 아버지 같은 사내종 잉질산蘆山

사내종 돌몽돌蒙 나이 58세 무자년생. 어머니 같은 여종 감덕甘德

여종 복덕卜德 나이 51세 을미년생. 어머니 같은 여종 내은단內殷丹

지방에 거주하는 노비

사내종 대철大哲 나이 75세 신미년생. 어머니 같은 여종 인섭仁涉

여종 계화桂花 나이 53세 계사년생. 어머니 같은 여종 원양遠陽

여종 계금癸今 나이 49세 정유년생. 어머니 위와 같음

사내종 비은추比隱秋 나이 43세 계묘년생. 어머니 위와 같음

사내종 호걸豪傑 나이 38세 무신년생. 어머니 위와 같음

여종 박례朴禮 나이 59세 정해년생. 같은 여종 점상占上

사내종 박복朴卜 나이 56세 경인년생. 어머니 위와 같음

사내중 세원世元 나이 19세 정묘년생. 어머니 같은 여중 계화桂花
사내중 귀탄貴坦 나이. 어머니 같은 여중 옥심玉心
사내중 선립善立 나이. 어머니 같은 여중 정금貞今
사내중 우생又生 나이. 어머니 같은 여중
사내중 가련可連 나이 31세 을묘년생. 어머니 같은 여중 춘화春化
사내중 만태萬太 나이 29세 정사년생. 어머니 위와 같음
사내중 흔태欣太 나이 27세 기미년생. 어머니 위와 같음
사내중 귀선貴仙 나이. 어머니 같은 여중
사내중 개불介不 나이. 어머니 같은 여중
사내중 잉질산嶺山 나이 65세 신사년생. 어머니 같은 여중 상금尙今
사내중 세필世必 나이 53세 계사년생. 어머니 같은 여중 악섭岳涉
사내중 세재世才 나이 47세 기해년생. 어머니 위와 같음
여중 세금世今 나이 40세 병오년생. 어머니 위와 같음
사내중 세등世登 나이 37세 기유년생. 어머니 위와 같음
사내중 동선소先 나이 20세 정묘년생. 어머니 여중 세금世今
여중 점선占先 나이 35세 신해년생. 어머니 위와 같음
사내중 석순石順 나이 25세 신유년생. 어머니 위와 같음
여중 선상仙上 나이 21세 을축년생. 어머니 위와 같음
사내중 기순己順 나이 18세 무진년생. 어머니 위와 같음
사내중 철순哲順 나이 15세 신미년생. 어머니 위와 같음
여중 수정水貞 나이 66세 경진년생. 어머니 같은 여중 사금士今
사내중 수채水采 나이 54세 임진년생. 어머니 위와 같음
여중 개덕介德 나이 51세 을미년생. 어머니 위와 같음
여중 이례二禮 나이 47세 기해년생. 어머니 위와 같음
여중 서운鋤云 나이 64세 임오년생
여중 송재訟才 나이 34세 임자년생. 어머니 같은 여중 서운鋤云
여중 복상卜尙 나이 30세 병진년생. 어머니 위와 같음
여중 복돌卜堦 나이 23세 계해년생. 어머니 위와 같음
여중 복재卜才 나이 21세 을축년생. 어머니 위와 같음
사내중 윤봉允封 나이 19세 정묘년생. 어머니 위와 같음
사내중 군재軍才 나이 37세 기유년생. 아버지 같은 사내중 태일台一
사내중 세명世明 사망

여중 신금^{信今} 나이 57세 기축년생. 아버지 같은 사내중 보철^{甫哲}
 여중 숙례^{淑禮} 나이 29세 정사년생. 어머니 같은 여중 신금^{信今}
 여중 정금^{貞今} 나이 22세 갑자년생. 어머니 위와 같음
 사내중 강사이^{江沙伊} 나이 17세 기사년생. 어머니 위와 같음
 여중 숙단^{淑丹} 나이 42세 갑진년생. 아버지 같은 사내중 최만^{崔萬}
 사내중 우익^{羽益} 나이 36세 경술년생. 아버지 같은 사내중 세명^{世明}
 여중 세월^{世月} 나이 65세 신사년생. 어머니 같은 여중 아정^{亞丁}
 여중 상단^{尙丹} 나이 54세 임진년생. 아버지 같은 사내중 보철^{甫哲}
 여중 개이^{介伊} 나이 26세 경신년생. 어머니 같은 여중 상단^{尙丹}
 사내중 중이^{重伊} 나이 21세 을축년생. 어머니 위와 같음
 여중 고이^{古伊} 나이 18세 무진년생. 어머니 위와 같음
 여중 어둔상^{於屯上} 나이 15세 신미년생. 어머니 위와 같음
 사내중 난군^{闡軍} 사망
 여중 독업^{獨業} 나이 50세 병신년생. 아버지 같은 사내중 준열^{俊悅}
 사내중 가마괴^{可馬怪} 나이 21세 을축년생. 어머니 같은 여중 독업^{獨業}
 사내중 도이봉^{道伊封} 나이 13세 계유년생. 어머니 위와 같음
 여중 귀덕^{貴德} 나이 15세 신미년생. 어머니 같은 여중 숙단^{淑丹}
 사내중 명걸^{命傑} 나이 37세 기유년생. 아버지 같은 사내중 춘망^{春望}
 여중 감지^{甘之} 나이 49세 정유년생. 어머니 같은 여중 원업^{遠業}
 사내중 흑돌^{黑突} 나이 46세 경자년생. 어머니 위와 같음
 사내중 점태^{占太} 나이 37세 기유년생. 어머니 같은 여중 점섭^{占涉}
 사내중 덕중^{德中} 나이 22세 갑자년생. 어머니 같은 여중 담섭^{淡涉}

... (이하 노비 명단 생략) ...

행 현감^{行縣監}[작서]

[주협무개인]

乾隆三十年乙酉正月○⁴日 海南縣

考乙酉成籍戶口帳內 縣一面第○ 白蓮洞里 住第○統第○ 戶 折衝將軍僉知中樞府事 尹德熙

年八十一乙丑 本海南 父 成均進士 斗緒 祖 通訓大夫 行宗親府典簿 爾錫 曾祖 贈朝奉大夫 司

諫院獻納 知製教 兼春秋館記注官 行權知成均館學諭 朝奉大夫 仁美 外祖 贈嘉善大夫 吏曹 叅判 兼成均館祭酒 世子侍講院贊善 行通政大夫 承政院左承 兼經筵參贊官 李同揆 本完山 率

婦 李氏 年六十四壬午 籍延安 子 恠 年三十八戊申 婦 南氏 年三十六庚戌 子 悖 年三十六庚 戌 婦 俞氏 年

三十一乙卯 籍杞溪 孫 持常 年二十八戊午 婦 權氏 年二十六庚申 籍安東 從子 憤 年五十丙 申 從子 悖 年

三十二甲寅 婦 崔氏 年三十一乙卯 籍全州

率奴 命金 年五十六庚寅 母 全婢順心 奴世仁 年六十二甲申 父 同奴望一 奴士 傑 年四十丙午 父

同奴春望 奴昱山 年二十九丁巳 母 全婢昱業 奴得男 年三十一乙卯 母 同婢卜 正 奴二偉 年五十三

癸巳 母 全婢善化 奴正明 年二十四壬戌 母 同婢世今 奴仁成 年十九丁卯 父 全 奴次傑 婢怪上 年五

十五辛卯 母 全婢夫化 婢介上 年三十二甲寅 父 全奴世仁 婢連伊 故 婢太眞年 二十五辛酉 父 同

奴昱貴婢月丹 年二十八戊午 母 同婢貴業 婢貴每 年二十四壬戌 父 全奴次傑 婢永禮 故 奴哲長 故

奴三長 年四十丙午 母 同婢士禮 京居 奴水才 年四十一乙巳 母 全婢軟業 婢斗 去非 年三十六庚戌

母 上全 婢由中年二十九丁巳 母 上同 婢恠烈 年五十四壬辰 母 全婢善今 婢海 丹 年五十三癸

巳 母 全婢已上 婢善禮 年四十九丁酉 母 同婢次上 婢信每 年四十八戊戌 母 全

4 원문상에 내용을 적지 않고 공간을 비워둔 경우에는 ○로 표기했다. 날짜 등 특정 숫자를 비워둔 경우에는 '○'로 표기 하고, 이름을 비워둔 경우에는 '○○', 이 문서에서와 같이 상대적으로 긴 노비의 나이 표기 즉, '年五十六庚寅'와 같은 표기를 알지 못하여 비워둔 경우에는 '○…○'로 표기했다.

婢卜上 婢三十

七己酉 母 全婢鋤云 婢三連 年二十九丁巳 母 全婢世月 婢介 年三十二甲寅 母
全婢命德 婢

古伊 年二十丙寅 母 全婢海丹 奴自兒同年 年三十三癸丑 母 全婢永代 婢二丹
年○…○

母 上全 婢占連 年二十四壬戌 母 全婢二丹 奴雪云致 年二十一乙丑 母 上全 奴
馬堂 年四十四

壬寅 父全奴菴山 奴芑蒙 年五十八戊子 母 全婢甘德 婢卜德 年五十一乙未 母
同婢內隱丹 鄉居 奴

大哲 年七十五辛未 母 全婢仁涉 婢桂花 年五十三癸巳 母 全婢遠陽 婢癸今 年
四十九丁酉 母 上

全 奴比隱秋 年四十三癸卯 母 上全 奴豪傑 年三十八戊申 母 上全 婢朴禮 年
五十九丁亥 母 全婢占上

奴朴卜 年五十六庚寅 母 上全 奴世元 年十九丁卯 母 全婢桂花 奴貴坦 年○…
○ 母 全婢玉心

奴善立 年○…○ 母 全婢貞今 奴又生 年○…○ 母 全婢 奴可連 年三十一乙卯
母 全婢春化 奴萬太

年二十九丁巳 母 上全 奴欣太 年二十七己未 母 上同 奴貴仙 年○…○ 母 全婢
○○ 奴介不 年○…○ 母

全婢○○ 奴菴山 年六十五辛巳 母 全婢尚今 奴世必 年五十三癸巳 母 同婢岳涉
奴世才 年四十七

己亥 母 上全 婢世今 年四十丙午 母 上全 奴世登 年三十七己酉 母 上全 奴全先
年二十丁卯 母 婢

世今 婢占先 年三十五辛亥 母 上全 奴石順 年二十五辛酉 母 上全 婢仙上 年
二十一乙丑 母

上同 奴己順 年十八戊辰 母 上同 奴哲順 年十五辛未 母 上全 婢水貞 年六十六
庚辰 母 全婢

士今 奴水采 年五十四壬辰 母 上全 婢介德 年五十一乙未 母 上全 婢二禮 年
四十七己亥 母 上全

婢鋤云 年六十四壬午 婢訟才 年三十四壬子 母 全婢鋤云 婢卜尚 年三十丙辰 母
上全 婢卜芑

年二十三癸亥 母 上全 婢卜才 年二十一乙丑 母 上全 奴允封 年十九丁卯 母 上

全 奴軍才 年三十七
 己酉 父 全奴台一 奴世明 故 婢信今 年五十七己丑 父 同奴甫哲 婢淑禮 年
 二十九丁巳 母 全婢信
 今 婢貞今 年二十二甲子 母 上全 奴江沙伊 年十七己巳 母 上全 婢淑丹 年
 四十二甲辰 父 全奴崔萬
 奴羽益 年三十六庚戌 父 全奴世明 婢世月 年六十五辛巳 母 全婢兒丁 婢尙丹
 年五十四壬辰 父
 同奴甫哲 婢介伊 年二十六庚申 母 全婢尙丹 奴重伊 年二十一乙丑 母 上全 婢
 古伊 年十八戊辰 母
 上全 婢於屯上 年十五辛未 母 上全 奴闌軍 故 婢亨業 年五十丙申 父 全奴俊悅
 奴可馬怪 年二
 二⁵十一乙丑 母 全婢亨業 奴道伊封 年十三癸酉 母 上全 婢貴德 年十五辛未 母
 全婢淑丹 奴命傑
 年三十七己酉 父 同奴春望 婢甘之 年四十九丁酉 母 全婢遠業 奴黑夏 年四十六
 庚子 母 上全 奴
 占太 年三十七己酉 母 全婢占涉 奴德中 年二十二甲子 母 全婢淡涉 奴德男 年
 十九丁卯 母 上
 同 奴由昌 年二十五辛酉 母 同婢由業 奴由太 年二十丙寅 母 上全 奴命山 年
 二十五辛酉 母 全婢
 成業 婢命業 年二十一乙丑 母 上全 婢如玉 年四十一乙巳 母 全婢尙業 婢遠眞
 年〇…〇 母
 全婢 內隱今 奴夏先 年〇…〇 父 同奴占山 婢七化 年七十七己巳 母 全婢萬心
 奴牡丹金 年六十
 七己卯 母 上全 婢眞涉 年五十四壬辰 母 全婢七化 奴士明 年五十二甲午 母 上
 全 婢今化 年四十三
 癸卯 母 上全 奴代男 年三十一乙卯 母 上全 奴一先 年五十三癸巳 父 同奴罷孫
 婢二涉 年四十七己亥
 父 上全 婢甘涉 年四十三癸卯 父 上全 奴進夢 年五十一乙未 母 全婢岑眞 婢加
 應於里 年三十七

5 ‘二’가 중복 기록된 것으로 보인다.

己酉 父 全 奴進夢 婢雪今 年七十九丁卯 母 全婢○○ 婢炎爲 年七十一乙亥 母
全婢億仙 婢豎今
年十五辛未 母 全婢占上 婢永丹 年七十三癸酉 母 全婢某良 奴永白 年六十七己
卯 母 上全 奴
永元 年六十四壬午 母 上全 婢水丹 年○…○ 母 全婢○○ 婢順禮 年○…○ 母
全婢水丹 奴德順 年
○…○ 母 上全 婢遠上 年六十九丁丑 母 全婢遠涉 奴世龍 年五十二甲午 母 全
婢夫化 奴善貴 年
五十三癸巳 母 全婢次上 奴正望 年五十七己丑 母 全婢順心 奴正才 故 婢禾得
故 奴西奉 年五十三 癸
巳 父 全奴西同 婢莫烈 年四十一乙巳 母 全婢善今 奴次才 年三十一乙卯 父 全
奴正望 奴莫仙 年二
十丙寅 父 上全 奴卜上 年七十二甲戌 母 全婢○○ 奴次淑 年三十七己酉 母 全
婢卜上 婢順每 年三
十七己酉 母 同婢次上 奴偉巾 年二十八戊午 □(父) □(全)奴世仁 奴浩爲 年
二十五辛酉 父 上全 婢占涉 年
五十七己丑 父 同奴遠先 婢分德 年三十七己酉 母 全婢○○ 婢尙進 年○…○
母 全婢○○ 婢占上
年五十三癸巳 母 上全 奴淡不 年五十一乙未 母 上全 奴石才 年二十七己未 母
全婢莫禮 婢二良 年二
十三癸亥 母 上全 婢今心 年○…○ 母 全婢其品 奴七先 年七十五辛未 母 上全
奴七萬 年六十三
癸未 母 上全 奴三才 年○…○ 母 全婢內隱今 奴一五非 年七十五辛未 母 上全
奴丁太 年三十丙辰 母
全婢眞涉 奴丁偉 年二十八戊午 母 上全 奴扁風 年二十五辛酉 母 上同 奴崇斗
應伊 年二十一乙丑
母 上全 婢二良 年二十七己未 父 全奴罷孫 奴雪云金 年二十二乙丑 母 全婢二
涉 奴遠太 年十八戊
辰 母 上全 婢古邑涉 年十七己巳 母 全婢甘涉 婢未良 年八十四壬戌 母 全婢今
德 奴淡伊 年六十
丙戌 母 全婢未良 婢淡禮 年五十九丁亥 母 上全 奴淡化 年五十五辛卯 母 上全
婢馬音丹 年六

十三癸未 父 同奴三封 婢栗音眞 年三十七己酉 母 仝婢馬音丹 奴西山 年六十一
 乙酉 母 仝婢○
 ○婢莫上 年五十丙申 母 仝婢世陽 婢九禮 年七十丙子 母 仝婢每讓 婢二禮
 六十四壬午 母 上仝 婢
 善丹 年二十九丁巳 母 仝婢九禮 奴德天 年三十一乙卯 母 仝婢二禮 奴重太 年
 三十九丁未 父 仝奴
 遠龍 奴善爲 年六十一乙酉 母 仝婢遠涉 奴遠仝 年三十八戊申 母 仝婢遠上 婢
 尙業 年○…○
 母 仝婢 奴軟必 年六十九丁丑 母 仝婢丁業 婢俊德 年五十八戊子 母 仝婢俊化
 婢士丹 年四十
 一乙巳 父 仝奴台仁 婢尙進 年四十八戊戌 父 仝奴遠伊 奴善爲 年六十七己卯
 母 仝婢○○ 奴代
 明 年二十四壬戌 母 仝婢聖尙 婢忝禮 年六十五辛巳 母 仝婢○○ 奴白伊 年
 七十四壬申 母 仝婢
 秋涼 婢次貞 年三十一乙卯 母 仝婢忝禮 婢今禮 年六十三癸未 父 仝奴昌遠 婢
 今涉 年六十
 一乙酉 父 上仝 奴淡伊 年五十七己丑 父 上仝 婢照良 年三十一乙巳 母 仝婢今
 禮 奴凡山 年二十
 六庚申 母 上仝 奴忠江 年二十一乙丑 母 上仝 婢老月 年六十一乙酉 母 同婢占
 代 奴成元 年二
 十七己未 母 仝婢老月 奴成坦 年二十五辛酉 母 上仝 奴成昌 年二十一乙丑 母
 上仝 奴一丁 年
 五十八戊子 母 仝婢遠辰 奴成萬 年五十丙申 母 上仝 婢舊內 年五十七己丑 母
 仝婢甘之 奴庚戌
 年三十六庚戌 母 仝婢舊內 奴丁夫 年三十三癸丑 母 上仝 奴萬太 年三十丙辰
 母 上仝 奴嫩伊 年
 三十五辛亥 母 仝婢淡禮 婢倫上 年三十二甲寅 母 上仝 婢倫涉 年三十丙辰 母
 上仝 婢欣心
 年二十五辛酉 母 上仝 奴今才 年二十四壬戌 母 上仝 婢貴業 年○…○ 母 仝婢
 ○○ 奴千白 年○…○
 母 上仝 婢月化 年三十七己酉 母 同婢貴業 奴朔不 年二十六庚申 母 上仝 婢月
 代 年二十四壬戌

母 上全 奴禾得 年○…○ 母 上全 婢月上 年十六庚午 母 上全 逃亡奴尋龜 年
 四十六庚子 父 全奴
 俊悅 奴尋才 年四十四壬寅 父 上全 婢文里邁 年六十二甲申 母 全婢順心 婢一
 丁 年二十九丁
 巳 父 全奴芑金 奴一三 年二十五辛酉 父 上全 奴朔不 年十八戊辰 父 上全 奴三
 龍 年十一乙亥
 父 上全 婢順香 年四十五辛丑 母 同婢次上 奴芑金 年五十三癸巳 母 全婢愛心
 奴有仙 年六
 十丙戌 母 全婢○○ 奴三仙 年三十七己酉 全婢善化 奴勃仁老味 年三十丙辰 母
 全婢二丹
 婢汝丹 年五十丙申 母 全婢愛心 婢汝今 年四十八戊戌 母 上全 奴伏龍 年
 二十一乙丑 母 全
 婢順香 奴龍得 年○…○ 母 上全 奴三偉 年四十八戊戌 母 全婢善化 奴水奉 年
 四十三癸
 卯 母 全婢軟業 奴淡伊 年○…○ 父全奴車元 婢朝陽 年 母 全婢今禮 奴有昌 年
 ○…○ 母
 同婢癸今 奴有太 年○…○ 母 上全 奴占上 年○…○ 母 全婢遠業 奴淡不 年
 ○…○ 母 上全 婢芑化
 年○…○ 母 全婢占涉 婢今連德 年○…○ 母 全婢芑化 婢莫禮 年○…○ 母 全
 婢占上 奴莫卜 年
 ○…○ 母 上全 婢莫今 年○…○ 母 上全 婢莫心 年○…○ 母 上全 奴石才 年
 母 全婢莫禮 婢二陽
 ○…○ 母 上全 奴仁太 年○…○ 母 全婢莫心 婢道禮 年○…○ 母 上全 婢芑上
 年○…○ 母 上全 奴道采
 年○…○ 母 上全 奴道才 年○…○ 母 上同

行縣監[着署]

[周挾無改印]

2. 입후立後

2-2-1) 1602년 예조에서 윤선도의 계후를 승인하며 발급한 입안

[1602년(선조 35) 예조에서 윤유심의 둘째 아들 윤선도를 윤유기의 계후자로 승인하며 발급한 계후 입안]

만력 30년(1602, 선조 35) 6월 초3일 예조 입안

이 입안은 계후繼後를 위한 것이다.

예조 계목啓目에,

“이번에 올린 병조 참의 윤유기尹唯幾의 소지所志에,

제가 적처와 첩에 모두 아들이 없어 동생형同生兄 유심唯深의 둘째 아들 선도善道를 계후하고자 하여 양가兩家에서 동의하여 소지를 올리니 다른 예에 의하여 입후해 주십시오.’라는 소지였습니다.

전 장단 부사長湍府使 윤유심尹唯深의 소지에,

‘동생제同生弟 유기가 적처와 첩에 모두 아들이 없어 저의 둘째 아들 선도를 계후하고자 양가에서 동의하여 소지를 올리니 다른 예에 의하여 입후해 주십시오.’라는 소지였습니다.

윤유기에게 공함公緘으로 문비問備하니, 답통答通에,

‘제가 적처와 첩에 모두 아들이 없어 동생형 유심의 둘째 아들 선도를 계후하고자 양가에서 동의하여 소지를 올린 것이 확실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윤유심에게 공함으로 문비하니, 답통에,

‘동생제同生弟 유기가 적처와 첩에 모두 아들이 없어 저의 둘째 아들 선도를 계후하고자 양가에서 동의하여 소지를 올린 것이 확실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윤유기의 동성 6촌제 사정司正 윤광계尹光啓와 윤유심의 처 이성 5촌숙 기성군箕城君 현倪 등에게 공함으로 문비하니 답통에,

‘윤유기가 적처와 첩에 모두 아들이 없어 그의 동생형 유심의 둘째 아들 선도를 계후하고자 양가에서 동의하여 소지를 올린 것이 확실합니다.’라고 했습니다.

공함으로 문비하여 받은 답통과 소지에 의거하여 상고하니, 『경국대전』 입후조立後條에, ‘적처와 첩에게 모두 아들이 없는 자는 관에 고하여 동종同宗의 지지支子를 세워 후사로 삼는다.’라고 했고, 주註에, ‘양가의 아버지가 함께 명하여 세운다.’라고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의 윤선도를 윤유기의 후사로 세우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했다.

만력 30년(1602, 선조 35) 5월 29일 우승지 신묘 윤성尹聖이 담당하여 올린 계목에 그대로 윤희한다고 했으므로 이에 입안함.

			정랑[작서]	좌랑
판서[작서]	참판	참의[작서]	정랑	좌랑
			정랑[작서]	좌랑

萬曆三十年六月初三日 禮曹立案

右立案爲繼後事 曹啓目 節呈兵曹叅議尹唯幾所志內 矣身嫡妾俱無子 同生兄唯深 第二子善道乙 欲爲繼後 兩家同議呈狀 依他立後事所志 前長湍府使尹唯深所志內 同生弟唯幾 嫡妾俱無子 矣第二子善道乙 欲爲繼後 兩家同議呈狀 依他立後事所志 尹唯幾處 公緘問備 答通內 矣身 嫡妾俱無子 同生兄唯深第二子善道乙 欲爲繼後 兩家同議呈狀 的實 尹唯深處 公緘問備 答通內 同生弟唯幾 嫡妾俱無子 矣第二子善道乙 欲爲繼後 兩家同議呈狀 的實 尹唯幾同姓六寸弟司正尹光啓 尹唯深妻異姓五寸叔 箕城君倪等處 公緘問備 答通內 尹唯幾 嫡妾俱無子 其同生兄 唯深第二子善道乙 欲爲繼後 兩家同議呈狀 的實事 公緘問備答通及所志據相考 則大典立後條 嫡妾俱無子者 告官立同宗支子爲後 註 兩家父 同命立之事 載錄 向前尹善道乙 尹唯幾繼後 何如 萬曆三十年五月二十九日 右承旨臣尹聖次知 啓 依允教事是去有等以 合行立案者

			正郎[着署]	佐郎
判書[着署]	叅判	叅議[着署]	正郎	佐郎
			正郎[着署]	佐郎

2-2-2) 1768년 윤희 입사 문기立嗣文記

[1768년(영조 44) 친족들이 모였을 때 윤덕소가 조카 회恢를 계후자로 세우고 작성한 문서. 윤덕소는 1754년(영조 30) 친족들이 모여 선조의 신주를 고칠 때 친족들이 의논하여 윤희를 계후자로 세웠는데, 일이 생겨 문서를 작성하지 못하다가 지금 작성한다고 했다.]

건륭 33년 무자(1768, 영조 44) 12월 13일 입사 문기立嗣文記
이 문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내 운명이 기구하여 자녀 한 명이 없어 후사를 의탁할 곳이 없으니, 이는 실로 한 집안이 함께 근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일찍이 갑술년(1754, 영조 30) 사이에 판교板橋의 큰형님과 연동蓮洞의 큰형님 및 셋째 형님이 선조의 신주를 고쳐 쓰는 일로 우리 집에 모였을 때 여러 종질從姪 또한 …(원문 결락)… 영천俞川에 사는 조카[從子] 회恢를 …(원문 결락)… 모두 다른 의견을 말하는 사람이 없이 동의했고 나의 뜻도 정해졌었다.

그 후 연이어 일이 생겨 아직 한 장의 문서도 작성하지 못했는데, 윤기倫紀에 관한 큰 일에 끝내 문서가 없을 수 없다. 그러므로 지금 일가一家가 모두 모였을 때 이와 같이 문서를 작성하고, 두 명의 종제從弟와 여러 종친들이 모두 증인과 필집으로 참여하니, 이 문서를 가지고 훗날에 증빙으로 삼을 일이다.

입문立文 유학幼學 윤덕소尹德鈞[작명]

증證 족숙族叔 유학幼學 윤도서尹道緒[작명]

종제從弟 윤덕현尹德顯[작명]

윤덕증尹德丞[작명]

족제族弟 윤덕회尹德晦[작명]

종질從姪 윤단尹檀[작명]

윤성尹愷[작명]

윤헌尹憲[작명]

윤굉尹曄[작명]

윤운尹暉[작명]

윤일尹億[작명]

윤저尹佇[작명]

윤조尹髓[작명]

윤우尹懣[작명]

윤황尹悤[작명]

윤계尹械[작명]

윤강尹尙[작명]

윤서尹愾[작명]

윤후尹曄[작명]

윤기尹攄[작명]

재종손再從孫 윤지명尹持明[작명]

윤지상尹持常[작명]

윤지온尹持溫[작명]

윤지옥尹持玉[작명]

윤지구尹持龜[작명]

필집 종질從姪 윤형尹悳[작명]

여중 언대彦代 나이 갑신년생

여중 덕금德今의 여덟 번째 소생 사내중 말질세세世 나이 정해년생

부모님께 받은 유모인 여중 석개石介, 석개의 세 번째 소생 사내중 인길仁吉 나이 병술년생

여중 만개萬介의 두 번째 소생 여중 사화四花 나이 임인년생

사내중 범산凡山이 양처良妻와 낳은 두 번째 소생 여중 가좌可佐 나이 정유년생

여중 억금億今의 첫 번째 소생 여중 춘단春丹 나이 무술년생

乾隆參拾參年戊子十二月十三日 立嗣文記

右文爲 吾之命道奇薄 無一子女 後嗣靡托 此實一家之所共愍 故曾在甲戌年間 板

橋伯兄主 蓮洞伯兄主 及三兄主 以先世改題主事 會于吾家 諸從姪亦多□…□

吾事 令川從子恢 □…□ 百無異同 吾意亦定 而其後連有事故 尚無一丈文字 倫紀

大事 不可終無文蹟 故今當一家齊會之時 如是立文 兩從弟及諸宗皆入證筆 以此爲日

後憑考事

立文 幼學 尹德釗[着名]

證 族叔 幼學 尹道緒[着名]

從弟 尹德顯[着名]

尹德烝[着名]

族弟 尹德晦[着名]

從姪 尹 檀[着名]

尹 愴[着名]

尹 懋[着名]

尹 恹[着名]

尹 憚[着名]

尹 憶[着名]

尹 惺[着名]

尹 慥[着名]

尹 偶[着名]

尹 愧[着名]

尹 慼[着名]
 尹 忼[着名]
 尹 愔[着名]
 尹 惇[着名]
 尹 愔[着名]
 再從孫 尹持明[着名]
 尹持常[着名]
 尹持溫[着名]
 尹持玉[着名]
 尹持龜[着名]
 筆從姪 尹 惇[着名]
 生婢彦代 年甲申 婢德今 八生奴忞世 年丁亥 親得乳婢石介 石介
 三生奴仁吉 年丙戌 婢萬介 二生婢四花 年壬寅 奴凡山良妻 二生婢可
 佐 年丁酉 婢億今 一生婢春丹 年戊戌

2-2-3) 윤의미 입후 여부에 관한 해남현 보첩報牒과 관찰사 제사에 대한 해남 윤씨 성원들의 대응 문서

[해남 윤씨 가문의 일부 성원들이 해남현에서 윤의미를 윤선언의 계후자로 세운 계후 입안을 발급 받았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 전라도 관찰사에게 보고한 보첩報牒과 이에 대한 관찰사의 제사 내용을 입수하여 대응을 준비했던 문서]

...(원문 결락)... 조사한 보초報草. 해남현.

□술년 정월 28일, 고故 학생 윤○○(윤선언尹善言)의 처 원씨元氏의 사지노事知奴 정회丁回 나이 27세.

아뢰입니다. 계하啓下한 예조 관문[關]에 의거한 관찰사의 관문 내용에 따라 “너의 상전 윤의미尹義美의 계후 입안繼後立案을 제출하라.”고 추문推問하시기에 아뢰입니다. 호구戶口를 제출합니다.

저의 상전님이 임신년(1632, 인조 10)에 의미義美를 계후하기 위해 예조에 소지를 올려 발급받은 입안을 제출하지 못하는 사연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 병자년(1636, 인조 14)의 변란 때 저의 안상전님인 원씨元氏는 먼저 육로로 내려오고, 위 입안 및 기타 문권文券을 아울러 모두 상전의 이성異姓 조카로 이름을 알지 못하는 생원님이 위 입안 등을 지니고 수로로 배를 타고 내려오다가 중로에서 변란을 만나 기타 오래된 문기文記들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위의 조카 생원님은 탈출하여 해남의 상

전님 집에 도착하여 함께 지내다가 중병으로 그대로 사망했습니다. 그러므로 위 입안을 제출할 수 없습니다. 상고 시행해 주십시오.

같은 날, 같은 집의 여중 충금忠今 나이 32세.

아됩니다. 계하啓下한 예조 관문[關]에 의거한 관찰사의 관문 내용에 따라 “너의 상전 윤의미의 계후 입안을 제출하라.”고 추문하시기에 아됩니다.

상전님이 지난 임신년(1632, 인조 10)에 예조에 소지를 바쳐 입안을 발급받았습니다. 그 후 위 입안을 제출하지 못하는 사연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 을해년(1635, 인조 13)에 집안에 전염병이 크게 성하여 피하여 거처를 옮겨 해남으로 내려올 때 상전님이 위 입안 및 기타 문권 등을 잊어버리고 가져오지 않았는데, 추후에 종들이 내려올 때 위 문권들을 가지고 오다가 중로에서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상고 시행해 주십시오.

같은 날, 윤씨 문중의 공증인公證人인 강진에 거주하는 유학幼學 윤선오尹善五 나이 49세.

아됩니다. 계하啓下한 예조 관문[關]에 의거한 관찰사의 관문 내용에, “고故 학생 윤○○(윤선언)의 처 원씨의 소지에 거론한 윤의미의 계후 입안을 우선 제출받아 상고하는 것이 마땅할 듯하므로 그 사지노자事知奴子를 잡아다가 이 소지를 보였더니, 그 아버지의 편지가 시골집에 있는데 미처 가지고 오지 못했다고 했다. 또 의미의 아우 예미禮美가 몰래 의미의 아들 이후爾厚를 빼앗아 자기 자식으로 삼은 일은 예미가 아버지를 속인 것인데, 지금은 예미가 사망한 후여서 그 아버지에게 추궁하여 물을 수 없다. 허물며 부자간에 서로 증인이 되지 못하는 것은 법례상 당연한 일이다. 그만둘 수 없다면, 마땅히 윤가 일문의 족친 중에서 공증할 사람[公證之人]에게 물어서 실상을 분명하게 조사해서 첩보하여 계문啓聞할 수 있도록 하라.”라고 했는데, 위와 같은 사연을 상세하게 고하라고 추문하시기에 아됩니다.

“저와 윤 참의○○(선도善道)는 비록 동성 8촌의 친족이지만, 다른 사람의 집안 일을 어찌 모두 자세히 알겠습니까? 다만 윤○○(윤선도)가 그 아들 의미를 그 형 윤○○(윤선언)의 계후자로 허락했으나 선언의 집에서는 일찍이 소지를 제출하여 입안을 발급받지 않았다는 사실, 의미가 사망한 후에 장자 이구爾久가 집안일을 계승한 사실, 이구가 사망한 후에 의미의 둘째 아들 이후爾厚의 셋째 아들 익대益大를 이구의 계후자로 삼아 소종小宗의 누대 가묘家廟 제사를 받들게 한 사실, 익대가 소종의 봉사자가 되고 난 후 이후가 쓸쓸하게 되었으므로 윤○○(윤선도)의 아들 예미禮美가 그 아버지에게 간청하여 의미의 둘째 아들 이후를 그의 계후자로 삼은 사실, 이 계후가 이루어질 때 윤○○가 편지를 써서 예미에게 (계후를) 허락해 준 사실, 이번 이 원씨 수노首奴의 조사에 위 입안을 병자년(1636, 인조 14) 변란에 남양에 피난 가 있을 때 잃어버렸다고 했는데, 이는 종이 주인과 같은 말을 하려는 계책에 불과할 뿐 (계후) 입안은 본래 발급받지 않았다는 사실 등은 온 가문이 모두 아는 바입니다.

그리고 원씨가 을해년(1635, 인조 13) 봄에 남양에서 해남으로 내려왔다가 병자년의 난리 때 윤 참의 일가와 함께 배를 타고 해남海南, 강진康津 등지의 섬으로 피난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온 고을, 온 가문에서 모두 분명하게 알고 일상적으로 이야기하므로 저희들도 상세히 듣고 상세히 알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일은 알지 못하오니, 상고하여 관찰사에게 보고 시행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통틀어 이와 같은 초사이기에 다음과 같이 첩보牒報합니다.

원씨의 사지노事知奴 정희의 초사에, 위 입안은 병자년(1636, 인조 14)의 변란 때 상전의 이성 친족이 남양에서부터 수로로 가지고 왔다가 중로에 잃어버렸다고 했는데, 위 종은 비단 어리고 어리석을 뿐만 아니라 진술한 것도 분명하지 않은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사지노事知奴子를 추문하니, 여종 충금忠今이 와서 진술한 초사에, 그 상전이 을해년(1635, 인조 13)에 전염병으로 피하여 거처를 옮겨 내려올 때 잊어버리고 가져오지 못했으므로, 추후에 종들이 가지고 오다가 중로에서 잃어버렸다고 했습니다.

노비들의 초사가 각각 다르며, 공증인公證人 윤선오의 초사에, 원씨는 당초 본래 입안을 발급받은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조목조목 진술한 것이 이와 같이 명백하므로 모두 조사하여 보고하오며, 원래의 관문은 감봉監封하여 올립니다.

위와 같이 첩보牒報하니, 서목書目의 제사[題]에,

“윤씨 문족門族이 어찌 비단 윤선오 한 사람 뿐이겠는가? 다른 사람을 불러 다시 상세히 조사하여 보고하고, 원씨가 말한 윤○○가 발명發明한 서간은 찾아내어 감봉하여 올리라. 윤운.”

이라고 했다.

본현에서는 윤선창尹善昌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에게 마땅히 다시 추문推問하고자 하여 영암靈岩에 공문을 보내 잡아오게 했는데 아직 도착하지 않았고, 관찰사가 또 체차된다고 하니, 아무래도 지체될 듯하다.

어떤 말, 어떤 일의 시비是非라고 말하지 않고 다만 다시 조사하라고 했으며, 이른바 언간諺簡은 해당 조[該曹]의 문목문目 중에 있지 않아 관찰사가 관여할 만한 것이 아닌데도 반드시 찾아 보내라고 명한 것을 보면, 그 뜻이 대개 좋지 않은 듯하다. 새로 부임해 오는 자가 만약 또 이와 같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모름지기 둘러대기만 하고 문목문目 외의 일은 일절 거론하지 않는 것이 좋겠으며, 공사公事의 예례와 법도 마땅히 이와 같다.

윤선창은,

“어려서부터 병이 많아 귀가 먹고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이 70세가 되어 더욱이 어찌 남의 일에 관여하여 남의 시비를 논하겠습니까? 다만 엿드려 윤선오가 진술한 여러 조목을 보건대, 하나하나가 모두 문중의 노인과 젊은이, 고을의 상하上下가 모두 분명하게 아는 것이고 함께 일상적으로 말하던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고 들었던 것과 조금도 차이가 없으며, 또한 가감한 것도 없습니다. 어찌 감히 부화뇌동한다는 혐의를 꺼려서 다시 거짓된 말을 덧붙이겠습니까? 운운.”
이라고 대답하려 한다.

이 종이의 내용은 모두 아직 치계馳啓하지 않은 내용으로, 만약 다른 사람의 귀와 눈에 먼저 들어가게 되면 비록 적국敵國이 없더라도 필시 번거로운 말이 있게 될 것인데, 하물며 적국이 많은 경우이겠는가? 반드시 모름지기 비밀로 하고 조심해야 할 것이다.

□…□查報草海南縣

□戊正月二十八日 故學生尹○○妻元氏事知奴 丁回 年二十七

□□(白等) 禮曹啓下關據 使關內乙用良 汝矣上典尹義美

□□(繼後)立案現納亦 推問教是臥乎在亦 戶口現納爲齊 矣

□□(上典)主亦 壬申年分 義美繼後次 呈禮曹立案乙 去丙子

□變亂時 奴矣內上典主元氏段 先爲陸路以 下來爲白遣

同立案及其他文券并以 上典異姓族下 名不知生員主亦

同立案等持是遣 水路乘船下來爲白如可 中路逢變亂

其他久遠文記等乙 盡爲闕失爲白遣 同族下生員主段 脫身

來到海南上典主家 同居爲白如可 重病仍爲身死爲白有臥

乎 同立案現納不得爲去乎 相考施行教事

同日 同家婢 忠今年三十二

白等 禮曹啓下關據 使關內乙用良 汝矣上典尹○○義美繼後立

案現納亦 推問教是臥乎在亦 上典主亦 去壬申年分 呈禮

曹受立案之後 同立案乙 去乙亥年良中 家中染病大熾 避

寓下來海南之際 上典主亦 同立案及其他文券等乙 忘置爲遣

不爲持來爲有如可 追後 奴子等下來時 同文券等 持來爲白如可

中路闕失爲白有乎等乙以 入納不得爲白去乎 相考施行教事

同日 尹門公證人 康津居幼學尹善五 年四十九

白等 啓下禮曹關據 使關內 故學生尹○○妻元氏呈狀內 所舉

尹義美繼後立案 似當爲先取考 故捉致其事知奴子示之 則其父書

在於鄉家 未及持來云 且義美之弟禮美 潛奪義美之子爾厚

爲己子之事 以禮美爲欺父 卽今禮美既死之後 不可究問於其父 況父子間不爲相證 法例當然 無已則當問於尹家門族中公證之人 明查實狀牒報 以爲啓聞之地亦爲有置 右良辭緣 詳細現告亦 推問教是臥乎在亦 矣身與尹參議○○ 雖是同姓八寸之親 而他矣家事乙 豈盡詳知 惟只 尹○○之以其子義美 許爲其兄尹○○繼後 而善言家不曾呈出立案事果 義美死後 長子爾久 繼承家事事果 爾久死後 以義美次子爾厚之第三子益大 爲爾久繼後 以奉小宗累代家廟事果 益大既爲小宗奉祀之後 爾厚之身空閑 故尹○○之子禮美 懇請於其父 以義美之次子爾厚 爲其繼後事果 爲此繼後時 尹○○之爲書 許於禮美事果 今此元氏首奴招內 同立案乙 丙子之變 在南陽避亂時 闕失云 此不過奴主同聲之計 而立案本不呈出事段 一門所共知 而元氏乙亥春 自南陽下來海南 丙子之亂 與尹參議一家同船 避于海南·康津等地海島事乙 無人不知是去等 此等事段 一鄉一門之所共明知 常談乙仍于 矣身段置 詳聞詳知爲在果 其他事段 知不得爲去乎 相考報使施行教 事教味 爲等如 招辭是置有亦 元氏事知奴丁回招內 段 同立案丙子之變 上典異姓族 則自南陽水路持來 爲如可 中路闕失是如爲乎矣 同奴非但年少迷劣 所招多不明白是去乙 更推事知奴子 則婢忠今來現招內 上典乙亥年染病避寓下來時 忘未持來乙仍于 追乎奴子等持來白如可 中路闕失是如爲臥乎所 奴婢招辭各異 是旣 公證人尹善五招內 元氏段 當初本無立案呈出事 是如 條陳納段 如是明白是乎等以 并以 查報有乎 旣 元關監封上使爲臥乎事

如右牒報 則書目題曰 尹氏門族 豈但尹善五一人而已 他人招致 更爲詳查以報爲旣 元氏所謂尹○○發明書簡 推得監封上使云云 本縣當更問於尹善昌爲名之人 移文靈岩推捉 而尙未到 使家且遞云 似至遲滯也 不言某言某事之是非 而只令更查 所謂諺簡不在該曹問目中 非使家所可與 而必令

推送 其意盖在不好也 新來者若又如此 則未知如何也 須須曲通曲通切勿舉論問目外事爲可 而公事之例法 亦當如是也 尹善昌 則欲對曰 自少多病 耳聾口吃 而至今今年滿七十 尤何與於人事 論人是非乎 惟只 伏見尹善五所招諸條 則一一皆是門族老少鄉中上下 所共明知 所共常談 矣身所知所聞 毫無異同 亦無加減 何敢嫌於雷同 更贅虛僞之辭云云

此紙皆未馳啓之辭 而若先入於人之耳目 則雖無敵國 必有煩言 況多敵國乎 必須秘而慎之

3. 문중 운영과 통문通文

2-3-1) 1702년(숙종 28) 윤두서가 고조부의 묘전墓田 마련을 위해 족인들에게 보낸 통문

[1702년(숙종 28)에, 해남윤씨 가문의 종손 윤두서 등이 관찰사를 지낸 고조부 윤유기의 묘제墓祭를 지내는 데 쓸 묘전墓田을 마련하기 위해 집안의 내외內外 자손들에게 재물의 수량을 정하여 통지한 통문通文]

통문

이 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조부 관찰공觀察公⁶의 묘제墓祭는 여러 자손들이 돌아가며 지낸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세대가 점차 멀어지고 자손이 더욱더 빈한해져서 제사를 받드는 일에 자연히 정성을 다할 수 없게 될까 우려됩니다. 이제 제사를 돌아가며 지내온 내외 자손들이 의논하여 각각 재물을 보내 약간의 묘전墓田⁷을 마련하여 제사 봉행을 위한 땅으로 삼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자손들의 빈부의 정도가 같지 않아 균등하게 재물을 내기를 기다린다면 일이 성사될 기약이 없을까 염려되므로 종가宗家 이하에

6 관찰공(觀察公) 윤유기(尹唯幾, 1554~1619).

7 묘전(墓田) 묘의 관리와 묘제(墓祭) 비용을 위해 마련한 밭.

모두 그 재력에 맞게 재물의 다소를 나누어 정하여 열거하여 기록해 통유通諭합니다. 이제 받을 사들인 후부터는 그 밭에서 나오는 소출로 제사를 받들고, 대가 다한[代盡] 뒤에는 해마다 한 번 성묘[省掃]할 때 요전상澆奠을 차리는 비용으로 삼을 것입니다. 아! 자손된 자라면 어느 누가 선조를 받들 정성이 없겠습니까마는 정리를 펴지 못하는 사정이 있을 것이고, 재력이 넉넉하지 못한 경우가 있을 것이니 백대百代 이후에 어찌 묘를 수호하고 제사를 올릴 방도를 보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논의한 것은 대개 현재 제사를 받드는 편의와 훗날 묘를 수호하기 위한 방도로 삼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각각 먼 곳에 살고 있어 만나서 약속할 수 없고, 가계가 넉넉한지 궁핍한지를 자세히 헤아릴 수 없어 작성한 액수가 혹 경중이 맞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부디 바라건대, 여러분 들께서는 각 집안의 형편에 맞는지의 여부를 살펴 별록別錄한 아래에 기재해주시면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 | | |
|--------------|------------|
| 중가宗家 20석石 | 모산가茅山家 5석 |
| 노랑대鸞梁宅 5석 | 종남가終南家 5석 |
| 남산동대南山洞宅 15석 | 침지가僉知家 25석 |
| 인천대仁川宅 5석 | 도정가都正家 10석 |
| 심참판대沈參判宅 10석 | |
| 이생원대李生員宅 10석 | |
| 용인가龍仁家 4석 | |
| 학관가學官家 8석 | |
| 양서방가楊書房家 5석 | |
- 임오년(1702, 숙종 28) 4월 일 종손 두서斗緒[작명], 유사 동미東美

通文

右文爲 高祖考觀察公墓祭 諸子孫輪次行之久矣 窃
 恐世代漸遠 子孫愈貧 香火之奉 或不能自盡其誠 今議
 內外諸孫之輪次行祭者 各出財力 備若干墓田 以爲奉祭
 之地 而第慮諸子孫貧富不等 若待其平均出物 則事成無日
 自宗家以下 皆稱其力 分定多寡 列錄通諭 自今買田之後 以田
 所出奉祭 代盡之後 則以爲歲一省掃時澆奠之需 嗚呼 凡
 爲子孫者 孰無奉先之誠 而情有所不能申 力有所不能
 贍 百代以往 安能保守護拜奠之計 故爲此議者 盖爲卽今
 奉祭之便 他日守護之地 但列位各在遠地 不能面約
 家計之饒乏 有不能詳度 酌定之數 或不能無輕重之

不稱 伏望列位 審度各家稱停與否 懸書於別錄
之下 幸甚

宗家 二十石	茅山家 五石
鷺梁宅 五石	終南家 五石
南山洞宅 十五石	僉知家 二十五石
仁川宅 五石	都正家 十石
沈叅判宅 十石	
李生員宅 十石	
龍仁家 四石	有司 東美
學官家 八石	
楊書房家 五石	

壬午四月 日 宗孫 斗緒[着名]

2-3-2) 1703년 윤두서가 고조부의 묘전 마련을 위해 족인들에게 보낸 통문

[1703년(숙종 29) 윤두서가 관찰사를 지낸 고조부의 묘전墓田을 마련하기 위해 친족들에게 그들 집안의 재정 형편에 맞게 낼 재물의 액수를 정하여 통지한 통문通文]

이 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묘전墓田은 비단 제사를 받들기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묘호墓戶를 보존하고 묘산墓山을 수호하는 것도 실로 이 밭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조부인 관찰공觀察公의 묘소에는 묘전墓田이 없어 이제 내외內外 자손들과 의논하여 각각 재물을 내어 약간의 밭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자손들의 빈부의 정도가 같지 않아 균등하게 재물을 내기를 기다린다면 일이 성사될 기약이 없을까 염려되므로 종가宗家 이하에 모두 각각의 재력에 맞게 차등을 두어 나누어 정해 열거하여 통유通諭합니다. 다만 여러분이 각각 먼 곳에 있어 얼굴을 보고 의논할 수 없고 가계가 넉넉한지 궁핍한지 상세히 알 수 없으므로 정한 액수가 혹 경중이 맞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부디 바라건대, 여러분께서는 각 집안의 형편에 맞는지의 여부를 살펴서 열거하여 기록한 곳의 아래 적어주시면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 종가宗家: 11석, 갑신년(1704) 봄
- 노랑댁鷺梁宅: 2석, 을유년(1705) 겨울
- 남산동댁南山洞宅: 8석, 정해년(1707) 봄

- 인천택仁川宅: 2석, 정해년 봄
- 심 참판택沈參判宅: 5석, 갑신년 봄
- 이 생원택李生員宅: 5석, 무자년(1708) 봄
- 용인가龍仁家: 2석
- 학관가學官家: 4석, 갑신년 봄
- 양 서방가楊書房家: 2석, 갑신년 봄
- 모산가茅山家: 2석
- 종남기終南家: 2석
- 첨지가僉知家: 12석, 병술년(1706) 가을
- 도정가都正家: 5석, 임진년(1712) 봄
계미년(1703) 12월 일
- 중손 두서斗緒[착명]
- 유사 동미東美[착명]

右文爲 墓田 非但爲奉香火 所以保存墓戶守護墓
 山者 實賴有田 而高祖考察公墓所 尙無
 墓田 今議內外子孫 各出財力 以備畧干田 而第慮諸
 子孫貧富不等 若待其平均出物 則事成無日 自宗家
 以下 皆稱其力 分定有差 列錄通諭 但列位各在
 遠地 不能面議 家計之饒乏 有不能詳度 所定之
 數 或不能無輕重之不稱 伏望列位審度各家
 稱當與否 縣書於列錄之下 幸甚

- 宗家 十一石 甲申春
- 鷺梁宅 二石 乙酉冬
- 南山洞宅 八石 丁亥春
- 楊書房家 二石 甲申春
- 仁川宅 二石 丁亥春
- 茅山家 二石
- 沈參判宅 五石 甲申春
- 終南家 二石
- 李生員宅 五石 戊子春
- 僉知家 十二石 丙戌秋
- 龍仁家 二石
- 都正家 五石 壬辰春
- 學官家 四石 甲申春
- 有司 東美[着名]
- 癸未十二月 日
- 宗孫 斗緒[着名]

2-3-3) 갑진년에 해남 윤씨 연동 종가에서 윤선도 사당 수리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족인들에게 보낸 회문

[갑진년에 해남 윤씨 연동 종가에서 충헌공 윤선도 사당의 중문中門 수리 비용을 보조해 달라는 내용으로 문중의 족인族人들에게 보낸 회문回文]

회문回文

우리 충헌공忠憲公⁸ 사당의 중문中門이 세월이 오래되어 썩어 무너지는데 이르렀으니, 자손으로 충헌공을 우러러 흠모함에 누군들 두렵지 않겠습니까마는 사당 아래에 사는 자가 더욱 감히 편안하지 못한 것은 이치상 당연합니다.

작년 겨울에 연포蓮浦 문중에서 의견을 내 공역을 시작하여 4달 만에 마쳤습니다. 이에 예전 사당의 모습이 새로워졌으나, 들어간 총 비용이 거의 800냥에 달하여 몇몇에게 거둔 것으로는 태반이 부족합니다. 몇 년 전부터 종가의 재력이 넉넉하지 못하다는 것은 문중 전체가 익히 알고 계실 것입니다. 빚을 내서 임시로 메웠지만 이자가 원금을 넘습니다. 자손이 각처에 흩어져 있어 더러는 이러한 소식을 미처 듣지 못하셨겠지만 한번 들은 이상 남일 보듯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방계 친족의 문중에서도 도움이 있어야겠기에, 이에 서찰을 보내 두루 고합니다. 부디 종가의 자손된 자는 논할 것도 없고 방계 친족의 자손이라 하더라도 충헌공을 존경하고 흠모하는 입장에서 힘닿는 대로 보조하여 빚을 청산할 수 있게 한다면 천만 다행이겠습니다.

갑진년 10월 일

이중에 보조전補助錢은 해당 문중에서 거행할 사람을 정해 연동蓮洞 종가로 보내어 바치고, 통문을 전하러 가는 유사有司의 식비는 각각 적절하게 보조해주십시오.

回文

惟我

忠憲公廟宇中門 年久朽敗 至于頽圯 子孫瞻慕 孰無惶懼 居廟下者 尤不敢安 理勢然也 昨年冬 自蓮浦門中 發論設役 四朔告訖 仍其舊貫 廟貌維新 而總計所入 將至八百兩之夥 收合若干者 不足太半 年來宗家家力不贍 一門之所稔悉也 出債彌縫 尾過於身 子孫散在各處 或有

8 충헌공(忠憲公) 윤선도(尹善道, 1587~1671)의 시호

未及見聞 一有聞之 不應視之秦瘡 至於旁親
門中 似當有助 茲以發書輪告 惟願
僉宗之凡爲子孫者 已無可論 而雖旁親子孫 其
在尊慕之地 隨力補助 以清債帳之地 千萬幸甚

甲辰十月 日

此亦中 補助錢 自該門中定學員 送納于蓮洞宗家 而輪行有司飯費 各其隨宜助給事

2-3-4) 무자년 윤정현 등이 사당 수리 빚을 갚기 위해 죽인들에게 보낸 회문回文

[무자년에 해남 윤씨 문중에서 어초은 윤�효정의 사당인 추원당追遠堂을 빚을 내 수리하고 그 빚을 갚기 위해 비용을 분담해달라는 내용으로 문중의 죽인族人들에게 보낸 회문回文]

회문回文

이 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선조 어초은漁樵隱을 모신 추원당追遠堂을 창건한 지 어언 12년이 되었는데, 작년 여름 폭우 때 동쪽 처마와 서까래 여러 곳에 물이 새어 약간의 기왓장을 종종 수리했습니다. 그런데 올 여름 비바람에 한층 더 물이 새 목재가 변색되어 이대로 두면 필시 썩어 무너질 염려가 있어 작은 돌로 보수할 일이 장차 태산泰山같이 큰 공사를 면치 못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또 동재東齋와 서재西齋 두 방의 온돌이 연차가 오래되어 불 때는 연기가 방으로 새어 나와 형세가 매우 위급했습니다. 그러므로 문임門任이 와서 보고는 물가가 폭등한 것은 계산하지 않고 빚을 내 보수했는데 비용이 만여 원에 이르렀습니다. 이 비용을 만약 급히 갚지 않으면 이율이 너무나 무겁기 때문에 속히 빚을 갚아 처리해야 한다는 내용을 문원門員들이 전부 돌아가며 고했으니, 귀파貴派도 정성을 다해 좋은 쪽으로 의연금을 내어 보조해주시면 천만 다행이겠습니다.

무자년 10월 3일

추원당追遠堂 회석會席

종손宗孫 윤정현尹定鉉

문임門任 윤광호尹光浩

문원門員 윤정하尹貞夏

윤명하尹明夏

윤상하尹相夏

回文

右文事 漁樵隱先祖追遠堂
創建 於焉爲十有二年 而昨夏暴
雨時 東檐夫椽 多數漏濕 略干張
瓦 種種修改 然今夏風雨 一層漏洩 木
材渝色 連拖以去 則必至朽頹之
慮 拳石所補 將不免泰山之役 而且
東西齋兩房烟埃 年久之致 煮
烟漏房 勢甚危急 故門任臨見 不計
物價之騰高 出債改繕 而費金至
爲萬餘圓也 此費金如不急速報償
利率太重 故以速予報償處理之
意 門員全爲輪告 則貴派亦殫
誠從長出義以補之地 千萬幸甚

戊子十月初三日

追遠堂會席

宗孫 尹定鉉

門任 尹光浩

門員 尹貞夏

尹明夏

尹相夏

4. 가훈家訓

2-4-1) 충헌공 가훈忠憲公家訓

[충헌공 윤선도가 만아들 윤인미에게 당부했던 간찰 내용을 『충헌공가훈忠憲公家訓』이라는 이름으
로 성책한 가훈]⁹

충헌공忠憲公 가훈家訓

네가 금산鎭山에서 지은 세 편의 제술製述을 보니, 그 중에서 부賦가 가장 낫더구나. 높은 등급을 받더라도 괴이할 것이 없는데, 낙방하고 말았으니 한탄스럽다. 그러나 서술한 것 중에서 남약納約의 아래에 시제試題를 해설한 실제 사례가 지나치게 소략하니, 이것이 흠이었다. 책문[策] 또한 좋았으나, 매 조목마다 시제의 뜻을 풀이하는 것이 너무 소략하고 실례가 없는 것이 마찬가지로 흠이었다.

대개 과거 시험장에서의 문장은 차라리 지나치게 상세할지언정 지나치게 소략해서는 안 되고, 차라리 지나치게 세밀할지언정 지나치게 영성해서는 안 되는 것이니, 이 뜻을 알지 않으면 안 된다.

또 모름지기 고금의 문자에 유의하여 자세히 살펴서 그 전환하고 받아 잇는 묘법을 터득한 뒤에야 글을 짓는데 흠결이 없게 될 것이다. 만약 옛 사람들의 문장 작법에 침잠하지 않은 채 그저 문자 사이에 사소한 재기를 부린다면, 필시 지리멸렬한 폐단이 있게 될 것이니, 더욱더 알지 않아서는 안 된다.

매번 과거 때마다 모두 낙방하는 것은 진실로 부지런하지 못한 소치이기는 하지만, 그 근본을 살펴 보면 하늘이 돕지 않아서이다. 하늘의 도움을 받는 것은 오직 선을 쌓는 데 달려 있으니, 너희들은 알지 않아서는 안 된다.

하물며 자손들이 거의 다 아이가 없어 제사가 끊어지게 될까 염려 되니, 평소의 두려움을 이루 말로 다 할 수 있겠느냐? 너희들은 몸을 수양하고 행실을 삼가며 선품을 쌓고 인仁을 행하는 것을 제일의 급선무로 삼지 않아서는 안 된다. 너희들도 일찍이 여기에 생각이 미친 적이 있는지 모르겠다.

한漢나라의 문제文帝와 경제景帝는 절약과 검소[節儉]에 힘을 쏟았고, 백성들의 세금을 여러차례 감해 주었는데, 자손들이 크게 번창했다. 역대의 청사靑史를 세세히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없었다.

비록 우리 집 선대의 일을 가지고 말하더라도, 고조부께서 농사에는 부지런하면서 노복奴僕들에게 거두는 것은 아주 적게 하셨으므로 증조부 형제가 발흥했고, 전체 가문이 매우 번성했다. 영광靈光 조부님은 비록 의롭지 않은 일을 하지는 않으셨으나 부를 쌓는데 관심을 두신 듯하다. 그러므로 자식이 끊어진 것이다. 행단杏壇, 졸재拙齋 양 족증조부께서도 모두 고조부님의 가훈을 체득하지 못하셨으므로 자손들이 모두 쇠락했다. 하늘이 인과응보를 분명하게 한다는 것은 이를 통해 알 수 있다.

고조부, 증조부께서는 절약과 검소로 흥하셨는데, 후대에는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을 숭상하는 시속을 따르며 점차 선대의 가풍과 같지 않게 되어 쇠락했다. 『주역周易』의 이치에서 달이 찬 것을 크게 경계한 것과, ‘기득차면 손실을 불러오고, 겸손하면 이익을 얻는다. [滿招損謙受益]’는 말들이 지극한 가르침이 아닌 것이 없으니, 마음에 새기고 뼈에 새기지 않을 수 있겠느냐? 우리 집안에서 떨어내야

9 해남 윤씨가에는 1660년 윤선도가 큰 아들 윤인미에게 보낸 간찰과 이 내용을 베껴 성책한 「충헌공가훈(忠憲公家訓)」이 남아있다. 간찰은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디지털로 제공되는 문서에 반 정도가 잘려 있으므로 『고문서집성』³ 해남 윤씨편 영인본에 수록되어 있는 「충헌공가훈」을 저본으로 했다.

만 할 것을 생각해서 아래에 적으니, 너희들은 유념하여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일, 의복, 안마(鞍馬) 등 자신의 몸에 소용되는 모든 것들은 모두 습관을 고치고 폐단을 줄여야 할 것이다. 먹는 것은 허기를 채우는 정도만을 취하고, 의복은 몸을 가리는 정도만을 취하고, 말은 걷는 것을 대신하는 정도만을 취하고, 안장은 견고하게 고정하는 정도만을 취하고, 그릇은 용도에 맞게 하는 정도만을 취하는 것이 좋다.

탈 것은 그저 멀리 갈 수 있는 놈으로 한두 마리를 구해서 길을 갈 때를 대비하면 되니, 어찌 반드시 잘 달리는 놈이 필요하겠느냐? 하물며 매번 어린 망아지를 구해 길러 이익을 취하니, 사대부의 큰 병통이다. 나는 매번 너의 그런 면이 병통이라고 생각하는데, 너는 그만두지 못하겠느냐?

생부(生父)께서는 비록 망아지를 길러서 이익을 취하는 일을 하지는 않으셨으나, 동공(鄧公)의 버릇이 조금 있으셔서 정이천(程伊川)이 사냥을 좋아하는 듯한 면이 있었으니, 이는 선대에 없던 일이다. 조부께서 그것을 문제라고 여겨, 시를 지어 깨우쳐주시기까지 하셨다. 그러나 끝내 과거에 합격하지 못하셨으니, 이런 문제가 빌미가 된 것이 아니라고는 하지 못할 것이다.

형님은 너처럼 망아지를 길러 일생을 이에 힘쓰셨고, 또 의복을 화려하게 입는데 힘쓰셨는데, 모두 남자의 양덕(陽德)은 아니다. 학문을 하는데 부지런했는데, 조그만 명성도 얻지 못하고 사후의 일이 끝내 영락하게 되었으니, 탄식을 금할 수 있겠느냐?

지금에 이르러 이를 생각해보면, 매번 마음이 서늘해진다. 너는 모름지기 기왕에 하던 일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 말아야 할 것이며, 또 나의 말을 늙은이가 하는 말이라고 소홀히 여기고 경계로 삼지 않아서는 안 될 것이다.

청초(靑草)를 베어 나를 때는 비록 내 집의 소라도 사용해서는 안 되는데, 하물며 종의 전장(奴庄)과 동네 사람들의 농사용 소를 써서야 되겠느냐? 비단 사람들이 크게 괴롭게 여길 뿐만 아니라 사리에도 맞지 않는다. 이런 일들은 지금부터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그저 한두 마리 복마(卜馬)를 구비하여 짐을 실을 수 있으면 된다.

나는 선 살 이후에야 명주 누비옷(納細衣)과 모시 겹옷(苧裋衣)을 비로소 착용해 보았는데, 고향에 있을 때 일찍이 네가 명주 누비옷을 입은 것을 보고 마음이 심히 좋지 않았다. 대개 이 두 종류의 옷은 대부(大夫)의 옷으로 대부들도 입지 않는 이가 오히려 많은데, 하물며 벼슬이 없는 사람이 대부의 옷을 입어서야 되겠느냐? 이러한 옷은 모름지기 벗어버리고 입지 말아 검소한 덕을 숭상하는 것이 좋겠다. 대개 이러한 물건들은 모름지기 검소한 쪽에 가깝게 하고, 사치스러운 쪽에 가깝게 하지 말아야 하니, 이를 기준으로 보면 하나로 열을 알 수 있다.

제갈무후(諸葛武侯)의 말에, “담박하지 않으면 뜻을 밝힐 수 없고, 차분하지 않으면 멀리 갈 수 없다.”라고 했으니, 참으로 의미있는 말이다. 경계하여 잊지 말도록 하라. 단서(丹書)에, “공경하는 마음이 태만한 마음을 이기는 자는 길하고, 태만한 마음이 공경하는 마음을 이기는 자는 멸망한다.”라고 했다.

소홀한 것도 태만한 것이다. 태만함의 해가 멸망에까지 이르게 되니, 어찌 마음이 서늘해지지 않겠느냐?

이석爾錫은 외아들이라서 그 자모慈母의 지나친 사랑을 받았다. 그 아내가 비록 현명하지만 이치를 알지 못하는 것이 아녀자의 속성이어서 오직 부가夫家の 복식을 아름답게 하는 것만을 일삼게 마련이다. 만약 좋은 물건이나 분수에 맞지 않은 옷을 지니게 되면, 이는 이석을 그르치는 것이다. 모름지기 세세히 살피고 상세히 타일러서 남보다 아름다운 옷을 입는 일이 지나쳐 재앙이 생겨나고 복이 지나쳐 근심이 되지 않게 해야 할 것이다. 아녀자의 복장은 연로하면 명주를 사용하고, 나이가 적으면 명주와 면을 섞어 쓸 것이며, 채단을 쓰지 않는 것이 좋다.

일. 노비의 신공身貢은 고조 때는 1명 당 목면 1필씩으로 규정했는데, 그 후에 더하기도 하고 감하기도 하여 일정하지 않았다. 지금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느냐? 남자 종은 35자 평목平木으로 치밀하게 짠 것 2필, 여종은 1필 반으로 하고, 가난하거나 역적이 많은 자는 헤아려서 감해주며, 부유한 자라도 더 받지 않는, 이런 내용으로 규정하는 것이 좋겠다.

일. 양역 노비仰役奴婢는 후하게 구휼해주지 않아서는 안 되니, 모름지기 윗 사람의 것을 덜고 아랫 사람에게 이익이 되도록 하는 방식을 써야 할 것이다. 주인집의 몫을 더욱 줄더라도 매번 노비의 옷과 음식을 넉넉하게 해 주어, 나에게 양역하며 생활하는 자들로 하여금 괴로움으로 원망을 품지 않게 하는 것이 지극히 옳다. 또 매일 매일의 양역량도 모름지기 그 힘을 다 쓰지 않는 한도 내에서 하도록 규정을 만들어 가르쳐야 할 것이다. 또 노비가 비록 실수를 하더라도, 작은 실수는 가르치고, 큰 실수는 약간의 매질을 해서 매번 자신을 다독여준다는 느낌을 가지게 하고, 자신을 학대한다는 원망이 없게 하는 것이 좋다.

이석의 처는 훌륭한 며느리지만, 아랫사람을 다스리는데 너무 엄격하니, 심히 우려가 된다. 윗 자리에 있는 사람의 도리는 오직 마땅히 너그러움을 위주로 해야 한다. 아녀자의 성품은 편협하기 때문에 형장刑杖을 때리는 권한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 매질도 규정을 정하여 감히 지나침이 없게 하고, 감히 직접 손으로 마구 때리지 않도록 또한 모름지기 잘 가르치고 엄히 경계시켜야 할 것이다.

일. 더러 크게 힘을 써야 할 때를 제외하고는, 기타 사소한 잡역과 일상적으로 사환하는 일 등은 그저 집안의 노비에게 맡기고 호노戶奴에게 시키지 말아야 한다. 그리하여 그들이 여유롭게 스스로 본업에 힘쓰며 생활하는 즐거움을 다하게 해야 할 것이다. 동네 사람들은 더욱 종종 부러서는 안 된다. 이와 같은 일들은 모름지기 유념하여 살피고, 참고 지나가는 것이 좋다.

일. 후사를 기원하는[祈嗣] 한 가지 일은 모름지기 『의학입문醫學入門』의 구사求嗣 조항과 『기사진전祈嗣眞詮』을 위주로 하여 부지런히 행하는 것이 지당하고 지당하다. 지인至人の 말을 믿지 않고 맹인의 지시를 믿을 것인가? 좌도左道의 점쟁이가 하는 말은 귀를 막고 듣지 말아야 하며, 며느리가 현혹되지 말게 해야 할 것이다.

『기사진전』의 10편 중에서 마지막 편이 '기도祈禱'인데, 이른바 '기도'라는 것은 이구산尼丘山에서 기

도하여 공자를 낳은 것을 의미하는 것에 불과하다. 공자의 어머니 안씨(顔)처럼 선행을 쌓은 것도 없으면서 기도를 한다면 또한 신의 노여움만 더하지 않겠느냐? 하물며 무속인의 황당무계한 말을 따라서 기도하는 경우이겠느냐? ‘이익이 없을 뿐 아니라 해롭기까지 하다.’는 것은 이러한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이다. 가소로울 뿐만이 아니다. 『기사진전』에서는 개과천선을 제일의 급선무로 삼는데, 앞장에서 말한 것들이 모두 이러한 유이다. 유념하고 유념할 일이다. 후사를 얻으려고 기도하는 것은 중요한 일인데도 오히려 해서는 안 되는데, 하물며 그 나머지 신을 섬기는 일이겠느냐? 일체 배척하고 끊어서 가도(家道)를 바로잡고, 다시 격양되어 타락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일. 이전부터 멀고 가까운 곳의 노비들이 매양 상업활동을 하는 것(賈販)을 근심으로 여겼다. 승노(僧奴) 처간(處簡)이 있을 때 그 일을 힘써 말했는데, 내가 곧바로 고치게 하지 않았으니, 후회스러움을 이길 수 없다. 내가 명한 남초(南草)의 판매는 전부터 시가를 따라 받는 사람에게 손해가 없게 했다. 이후에도 마땅히 그러해야 하는데, 이제 만약 서울로 보낼 수 있게 된다면, 더욱 주고받는 폐단이 없게 될 것이다. 그 밖에는 일체의 상업 활동을 너부터 우선 하지 말고, 내 말을 가지고 여러 자제의 집에 엄격하게 금지시켜서 일체 하지 말도록 하라. 너는 모름지기 형제를 위한다면서 부형(父兄)을 속이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일. 이제는 배에 짐을 운반하기 위해서라 하더라도, 종들에게 격군(格軍)이 되게 하는 경우에는 양역(兩役) 외에는 모두 시세를 기준으로 가감하여 격가(格價)를 지급해야 할 것이다.

일. 성현의 경전상의 가르침은 너희들이 말을 알아듣기 시작할 때부터 내가 찬찬히 가르쳐 주던 것들이다. 『소학(小學)』은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학문하는 자들이 마땅히 이 책을 위주로 해야 한다는 것은 또한 평생토록 말과 글을 통해 부지런하면서도 간절하게 너희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이니, 이제 모름지기 번다하게 고해 줄 필요가 없다. 다만 때로 정좌하여 뜻을 가지고 한가로이 『소학』을 읽는다면, 반드시 새롭게 터득하는 것이 있을 것이다. 또 상세한 주석서를 가지고 반복해서 자세히 완미한다면, 모두 심신을 보호하는 데 보탬이 될 것이다. 이는 모두 일생토록 힘쓰면서 죽을 때까지 그만두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일. 우리 집안이 흥하고 망하는 것은 이 종이 한 장에 달려 있으니, 절대 범범하게 보지 말거라. 또 손자들이 명심하여 읽고 잊지 말게 해야 할 것이다.

忠憲公 家訓

汝之錦山三製見之 賦最勝 雖居異等無足
 怪也 而至於見屈 可歎 然鋪敘中 納約之下解
 題事實 略之太過 是欠也 策亦好矣 而逐條
 題意太略 而沒實 同一欠也 大槩場屋程文
 寧過於詳 而不可過於略 寧過於密 而不可

過於踈 此意不可不知也 且須着意細看古今文字 得其轉換承接之妙然後 乃可作文無欠 若不沈潛於古人文法 徒使些少才氣於文字之間 則必有鹵莽滅裂之弊 尤不可不知也 每榜皆落 莫固是不勤之致 而源其本 則天不佑也 得天佑 惟在積善 汝曹不可不知也 況兒孫幾盡不產育 絕祀可慮 尋常恐懼可勝言哉 汝曹不可不以修身謹行 積善行仁 爲第一急務也 汝曹亦曾念及乎此否 漢之文景節儉爲事 屢蠲民租 而子孫三興 細思歷代青史 則無不皆然 雖以吾家先世言之 高祖勤於稼穡 取於奴僕寔薄 故曾祖昆季勃興 一門鼎盛 靈光祖父主 雖不爲不義之事 似留心於爲富 故生育衰絕 杏壇·拙齋兩族曾祖 皆不能體高祖家規 故子孫皆陵替 天報之昭昭 此可知也 高曾祖以節儉而興 後代之事 隨俗華美 漸不如先世之風而衰 易理以月既望爲大戒 及滿招損謙受益等語 無非至教 可不銘心刻骨 吾家所當損者 思而錄之于左 汝其惕念毋忽

一 衣服鞍馬凡百奉身者 皆當改習省弊 食取充飢 衣取蔽體 馬取代步 鞍取堅牢 器取適用 可也 所騎只求可以涉遠者一二 頭以備行路而已 何必要能涉也 況每覓兒駒養成取利 士夫之大病 吾每病汝 汝不可止耶 生父主雖無養駒取利之事 微有鄧公之癖有如 程伊川之好獵 此先世之所無也 大父主病之 至作詩而誨之 然終不決科 未必非此病爲崇也 兄主養駒如汝一生事於斯 且務服美 俱非男子之陽德 勤於文而不得一名 後事終至零替 可勝歎哉 至今念之 則每令人心寒矣 汝須勿以已往事 爲適然 又勿以吾言爲毫而忽之不戒 青草刈時 雖牛隻不可用也 況可用奴庄及洞人之農牛

耶 非徒人必苦之大 不合於事理 如此等事 自今
 絕勿爲之 只庀一二卜馬 載取可也 吾於五十後
 衲紬衣·苧袂衣始試爲之 而在鄉時 曾見汝服
 衲紬衣 心甚不悅 盖此兩物 大夫之服 而大夫而不
 爲者猶多 況笠下之人 而可衣大夫之服乎 如此服飾
 須斥去不御 以崇儉德 可也 大槩此等物 須近於
 樸 毋近於侈 稱此以求一可知十 諸葛武侯之
 言曰 非淡泊 無以明志 非寧靜 無以致遙 旨
 哉言乎 戒之勿忘 丹書曰 敬勝怠者吉 怠勝敬
 者滅 忽亦怠也 怠之害乃至於滅 豈不寒心 爾錫
 獨子 爲其慈母之偏愛 其妻雖賢 婦性不識
 理 而惟致美於夫家服飾是事 如有長物或
 不稱之服 則是誤爾錫也 須細察而詳諭之
 俾無服美于人之過 灾生 福過之患 婦人之服 則年
 老則用紬 年少則雜用紬綿 勿用綵段 可也
 一 奴婢之貢 高祖時 則每名常木一疋 定式 而
 其後或加或減 無常矣 今則定式如何 奴則卅五
 尺平木密織者二疋 婢則疋半 貧者役多者則
 量減 富者勿加 以此爲定式 可也
 一 仰役奴婢 不可不厚恤 須用損上益下之道
 益減主家自奉 而每優奴婢衣食 使仰活於
 我者 無所艱苦而含怨 至可 且逐日所役 須限
 不盡其力 定式教之 且奴婢雖有所失 小則教之
 大則略答 每令有撫我之感 無虐我之怨 可也
 錫妻佳婦 而御下太峻 深以爲慮 在上之道 惟當
 以寬爲主 婦人性偏 不可付刑杖之權 答亦定式
 使無敢過 不敢爲手自雜打事 亦須善諭
 嚴戒也
 一 或有大運力外 其他細小雜役 及尋常使喚
 等事 只任家內奴婢 勿使戶奴 使其優游
 而自盡於力本有生之樂 洞人尤不可種種使
 之 如此等事 須留念察之 忍耐過了 可也

一 祈嗣一節 須以入門求嗣條 及祈嗣真詮
 爲主 勤而行之 至當至當 不信至人之言 而信
 盲人之指示乎 左道巫卜之說 塞耳斥之
 使婦子毋惑也 真詮十篇中 末篇祈禱 而所
 謂祈禱者 不過尼丘山之意也 無孔顏之積善
 而禱之 則不亦益神之怒乎 况從巫俗無稽之
 說而禱之乎 非徒無益而又害之者 此等之謂
 也 不但可笑而已也 真詮以改過遷善爲第一
 急務 上面所云之事 皆此類也 念之念之 爲求嗣
 祈禱重也 而猶不可爲之 况其他神事乎
 一切斥絕 以正家道 更須激昂毋墮
 一 自前遠近奴婢 每以質販爲悶 僧奴處簡在
 時 力言於我 而我不卽令改 悔恪可勝 吾所
 命南草之販 自前從時 直俾無所損於受者
 後亦當然 而今茲若得送京 則尤無授受
 之弊也 此外一應質販 汝先勿爲 而以我言痛禁
 諸子弟家 一切勿爲 汝須勿爲兄弟而欺父兄也
 一 今茲雖爲船卜 而使奴輩爲格 則仰役奴外
 皆準時加減 給格價
 一 聖賢經訓 則自汝曹解語時 吾所提耳而誨
 者也 小學是做人底樣子 學者當以此爲主
 者 亦於一生言語文字間 勤勤懇懇於汝曹
 者也 今不須瀆告也 但有時靜坐 著意閑
 看小學 則必有新得 且將詳傳循環細玩 則
 無非攝護身心之助 此皆一生當務 而至死不廢
 者也
 一 吾家興滅 在此一紙 切勿泛示 且令孫兒
 輩 銘讀勿忘

제3장 재산 상속과 노비

해설

자료

1. 분재기
2. 노비매매문기
3. 노비 명단과 각종 내역

노비와 노비 관련 고문서

해남 연동의 해남윤씨 종가는 흔히 입학조 윤희정(尹孝貞)의 호를 따서 어초은공파(漁樵隱公派)로 불리지만, 대중적으로는 고산(孤山) 윤선도(尹善道) 종가로 더욱 알려져 있다. 이 가문은 15세기 후반 해남 입향 이후 호남의 유명 가문들과 혼인관계를 통해 사회적 기반을 다진 것은 물론이고, 호남 학맥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윤희정의 아들 대부터 지속적으로 문과급제자를 배출했으며, 나아가 중앙관직에 꾸준히 진출하였다. 정치적으로 윤선도라는 걸출한 학자 겸 정치인을 배출하면서 호남 남인의 대표 가문으로서의 위치를 점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정치적 위상 뿐 아니라 윤씨가(尹氏家)는 경제적 기반이 매우 탄탄한 것으로도 그 위상을 드러냈다. 뿐만 아니라 꾸준히 경제적 기반을 확장해 나감으로써 지역 내에서의 성장과 함께 영향력을 공고히 해 나갔다. 윤씨 집안의 경제적 배경 및 성장에 관해서는 윤씨가에 전래하고 있는 경제 및 재산 관련 고문서들이 매우 상세히 밝혀주고 있다. 지금까지 윤씨의 고문서가 활용된 경제적 기반에 관한 연구는, 우선 분재기를 통해 본 재산의 소유 및 경영 실태에 관한 것이 있다. 또 이 집안에 소장된 방대한 토지매매문기의 분석을 통해 토지매매의 실태가 밝혀졌고, 해언전(海堰田)의 개발과 맹골도 등 도서(島嶼) 지역 경영에 관한 연구도 이루어졌다. 이 중 분재기 분석은 노비와 토지의 소유 실태를 모두 다루었지만, 그 외에는 토지매매와 토지 개간 및 경영에 집중된 경향이 있다.

하지만 윤씨 가계는 토지경영 뿐 아니라 노비경영에 있어서도 주목할 부분이 매우 많다. 노비는 토지와 함께 양반 신분의 양대 재산으로 불릴 정도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재산이었고, 또 양반의 일상생활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였다. 윤씨 가계 역시 토지에 못지않게 수많은 노비를 소유하고 있었다. 『충헌공가훈(忠憲公家訓)』이라는 명칭으로 이 집안에 전해지고 있는 고산(孤山) 윤선도(尹善道)의 가훈에는 노비경영 또는 관리에 관한 항목이 담겨있다. 이를 통해 노비의 효율적 경영과 함께 인간적인 따뜻한 배려 역시 엿볼 수 있다.

윤씨 가계의 노비 경영에 있어서 특징적인 점은, 균분상속과 조선 사회 전체의 노비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조선후기 18세기까지도 엄청난 노비 보유량을 유지했다는 점이다. 여기서는 이런 전반

적인 노비 보유 양상과 관리 및 경영 현황을 보여주는 고문서들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연동 해남윤씨 종가의 노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재산의 보유와 경영에 관한 사이클은 대체로 획득, 경영, 승계의 과정을 밟는다. 노비 역시 마찬가지라 생각된다. 전근대前近代 사회에서 노비를 획득할 수 있는 경로로는 상속의 역할이 가장 크다. 뒤에 제시하는 분재기들을 통해 해남윤씨 연동 종가의 노비 상속 즉, 대수별代數別 노비 획득 경로를 이해할 수 있다. 상속을 통해 획득한 노비는 이를 관리하고 증식하기 위한 각종 수단이 동원된다. 윤씨 가계의 노비매매문기는 이 집안이 꾸준히 노비를 매입하는 가운데, 특히 특정 시기에 보다 집중적인 매매가 이루어지는 현황을 보여준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윤씨 가계는 노비 매입만이 아니라 노비 방매放賣 역시 활발히 수행한 특징을 보인다. 이는 이 가계가 노비를 유동적인 재산으로서 경제적 가치를 가진 개체로 보았음을 입증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노비매매 문기는 한 집안의 노비 매입 양상만을 보여줄 뿐 방매 현황은 파악할 수 없다. 하지만 윤씨 가계에 전래하는 분재기 등에는 뒷면에 노비 방매 현황이 배탈사급입안背頓斜給立案의 형태로 많이 수록되어 있다. 이렇게 분재기 뒷면에 많은 내용의 문서가 추기追記된 사례는 지금까지 분재기가 발굴된 타가문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다. 이러한 분재기 뒷면의 배탈 문기를 통해 윤씨 가계의 노비 방매 양상 역시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불망기不忘記’라는 이름으로 남아 있는 일종의 노비 신공문기이면서 노비 관리대장에 해당하는 문서를 통해 노비의 관리양상을 이해할 수 있다. 이 과정을 거치면 다시 다음 세대로 일정 숫자의 노비가 상속될 수 있다. 이러한 사이클에 유의하면서 이 장章의 문서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재산상속과 노비 확보

1) 노비 상속 현황과 분재기分財記

뒤에 제시할 10건의 분재기는 윤씨 가계에 전래하는 분재기 중 윤씨 집안의 재산 현황과 수수授受 관계를 보여주는 문기만을 추린 것이다. 윤씨 가계에는 이 외에도 처가妻家로부터 상속받은 다수의 분재기가 있다. 사회적 지위와 경제력의 수준이 비슷한 상대와 혼인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윤씨 집안의 남성들이 처가로부터 재산을 상속한 분재기 역시 많은 재산과 다양한 스토리를 수록하고 있다. 또 윤씨가에는 윤씨가와는 친족관계나 인척관계가 전혀 없는 타인의 분재기가 여러 점 전래하고 있다. (자료 3-1-8) 이런 분재기 중에는 작성주체가 양반이 아닌 상민常民이나 천민賤民 신분인 경우도 있어 매우 흥미로운 연구거리를 제공하기도 한다. 이러한 분재기들은 윤씨 가계의

재산상속과는 무관하다. 다만, 그 분재기들에 수록된 재산 중 일부를 윤씨 집안에서 매입하면서 본문 기본文記로 첨부되어 윤씨 가계에 전래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제시한 8번 분재기의 경우 분재기 뿐 아니라 뒷면에 수록된 배탈사급입안까지 윤씨 집안에 유입된 노비의 경로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8번 분재기 외에도 상천민의 분재기가 여러 건 있으나 윤씨 집안 자체와는 관련성이 조금 떨어지므로 생략하였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윤씨가 노비 전승 양상과, 상속을 통한 세대별 노비 확보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윤씨 집안의 분재기만을 살펴보기로 한다.

제시한 분재기는 화회문기와會文記 7건, 분급문기分給文記 1건, 별급문기別給文記 2건으로 모두 10건의 분재기이다. 분재기는 본래 전소 재산에 대한 증여 또는 상속문기와, 일부 재산에 대한 증여문기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일반적인 재산분할인지, 아니면 특별한 의미로 일부 재산을 일시적으로 증여한 것인지를 구분하기 위한 수단이다. 일반적 재산분할에 해당하는 것은 재주財主에 의한 재산분할로서 분급 또는 허여許與로 지칭되는 것과, 재주 사후 자식들이 수행하는 화회라 칭해지는 재산상속이 있다. 그런데 해남윤씨 연동 종가에는 일반적 재산분할은 모두 자식들에 의한 화회문기를 통해서만 이루어진 특징이 있다. 즉 허여문기나 분급문기로 지칭되는 분재기가 남아있지 않다. 1건의 분급문기는 윤씨 집안에 본문기로 달려 온 임조이의 분급문기이다.

화회문기는 모두 7건이다. (자료 3-1-1 ~ 자료 3-1-7)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7건의 화회문기를 보유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모두 4차례의 상속현황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를 아래 <표 1>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1> 16~18세기 연동 해남윤씨 화회문기 현황

번호	명칭	분재시기(년)	財主	상속인	비고
1	윤의중자녀 화회문기	1596	윤의중	윤유기 등 3남매	
2	윤유심자녀 화회문기	1615	윤유심	윤선도 등 3남매	복본
3	윤유심자녀 화회문기	1615	윤유심	윤선도 등 3남매	복본
4	윤유심자녀 화회문기	1615	윤유심	윤선도 등 3남매	초본
5	윤선도자녀 화회문기	1675	윤선도	윤인미 등 5남매	
6	윤선도자녀 화회문기	1675	윤선도	윤인미 등 5남매	초본
7	윤두서자녀 화회문기	1760	윤두서	윤덕희 등 12남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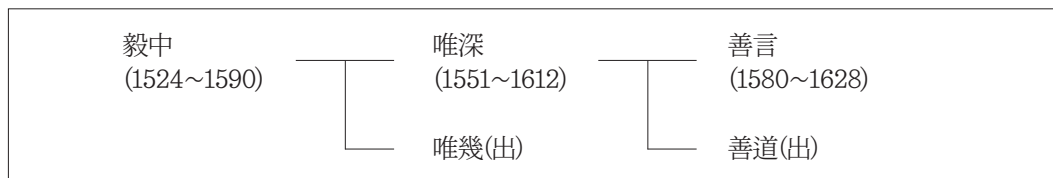
<표 1>에서 보면 윤씨 가계의 화회문기는 1596년(선조 29)부터 1760년(영조 36)까지 약 160여 년에 걸쳐 작성되었다. 이를 통해 윤의중尹毅中부터 그의 6세손 윤두서尹斗緒까지 7대에 걸친 재산상속 내역을 파악할 수 있다.

첫 번째 화회문기는 윤의중 부부의 재산을 윤유심尹唯深·유기唯機 형제와 그들의 누이인 윤공尹鞏의 처씨가 분할상속하면서 작성한 문서이다. 기존 연구에서는 이 문기를 「윤유심남매 화회문기」나 「윤유

기남매 화회문기』로 칭하는 경우가 많았다. 보통 장남 이름을 중심으로 「윤유심남매 화회문기』로 부르는 것이 일반적이기는 하나, 차남의 후손 집안에 전래한 경우 차남 이름을 넣어 명명하기도 한다. 이 문기 역시 「윤유기남매 화회문기』로 지칭되는 경우가 많은데, 바로 윤유기의 후손가에 전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본서에서는 재주를 명확히 한다는 점에서 아버지의 이름을 넣어 분재기 명칭을 부여하였다. 화회문기는 자식들이 재산을 분할상속하고 있지만 결국은 재주의 재산 소유 현황을 보여주는 문서이기 때문이다.

윤유기는 윤의중尹毅中의 형인 윤홍중尹弘中에게 양자로 들어가 가계를 계승하였다. 그런데 윤유기가 이 화회문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생가生家の 재산상속에 다른 형제들과 동등한 자격으로 참여하고 있다. 화회문기를 상속인 수만큼 작성했으므로 윤유기가 받은 문기는 종가, 즉 윤홍중의 자손들에게 대대로 전해 내려왔다. 문기 첫 행에 ‘침지택문기 衿宅文記’라 쓰여 있어 이 분재기가 침지택 즉 윤유기 집에 보관해 온 문서임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화회문기는 윤유심 부부의 재산을 딸인 김응복처金應福妻와 아들 윤선언尹善言·윤선도가 상속한 문서이다. 이 문서 역시 장남의 이름을 넣어 「윤선언남매 화회문기』로 부르거나, 전래처傳來處를 넣어 「윤선도남매 화회문기』로 부르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위와 같은 원칙에 의거하여 「윤유심자녀 화회문기』로 명명하고자 한다. 이 문기에서도 역시 윤유기의 양자로 들어가 종가를 계승한 윤선도가 생가 부모의 재산상속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참고로 첫 번째 화회문기와 두 번째 화회문기의 재주와 상속인의 계통은 <도 1>의 가계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 1> 분재기의 財主와 상속인

그런데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윤유심자녀 화회문기』는 서로 다른 3종의 문기가 존재한다. (자료 3-1-2, 자료 3-1-3, 자료 3-1-4) 「윤의중자녀 화회문기』에 ‘침지택 문서’라 쓰인 것처럼 소장처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앞의 2종은 서로 다른 소장처로 전래된 동일한 내용의 문서로 판단된다. (자료 3-1-2, 자료 3-1-3) 2종의 문기는 노비의 이름 등에서 동음이자同音異字가 몇 군데 발견되는 등의 미세한 차이가 있을 뿐 대부분의 내용이 일치하고 있다. 다만, 배면背面의 내용은 큰 차이가 있다. 배면에는 이미 상속한 노비 중 일부를 방매하면서 발급받은 배탈사급입안이 수록되어 있다. 이 중 2번 분재기에는 3건의 배탈이, 3번 분재기에는 2건의 배탈이 수록되어 있다. 서로 다른 상속인이 각각 1건씩 분재기를 받아서 보존해왔고, 상속 이후 각각 일부 노비를 방매하면서 받은 사급입안이

각각의 분재기에 수록되게 된 것이다.

2번과 3번 분재기는 서로 복본 분재기라 할 수 있는 반면 4번은 이와는 전혀 계통이 다른 분재기이다. 윤씨 가계는 재산상속 문기를 작성하기 이전에 그 대본이 되는 문권을 대대로 갖추어놓고 있었다. 분재기 서문에 ‘화명花名’이나 ‘전답치부田畵置簿’, 또는 ‘전래문권傳來文券’에 의거하여 각자의 몫을 나눈다는 표현이 등장한 것에서 이를 알 수 있다. (자료 3-1-2, 자료 3-1-3) 그들이 말하는 화명·전답치부 또는 전래문권이란 집안에서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한 목록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화명은 노비명부이며, 전답치부는 전답의 소재와 면적 등을 기록해 놓은 장부를 말한다. 전래문권이란 전해 내려오는 문서라는 의미에 불과하지만, 전래문권에 의거하여 재산을 분할한다는 의미는 전해져 오는 장부를 기초로 상속이 이루어진다는 뜻이다. 전래문권은 화명과 전답치부 등을 아우르는 표현인 것이다. 따라서 윤씨 가계는 집안에서 소유하고 있는 노비와 전답의 목록을 작성하여 비치하고 이를 토대로 재산상속을 시행하였다. 이렇게 작성된 재산목록은 정식 상속 문기 작성 전에 만들어지는 일종의 초문기草文記 역할을 하였고, 재산 목록을 대본으로 한 상속은 윤씨 가계의 독특한 방식으로 자리잡았다.

4번 분재기가 바로 2, 3번 분재기의 대본 역할을 한 분재기 초본에 해당한다. 이 문기는 ‘만력43년 을묘화회乙卯和會’라는 제목 하에 서문 없이 노비의 명단만을 나열한 문서이다. 2, 3번 분재기와 같은 을묘년(1615년, 광해군 7)에 작성되었고, ‘화회’라는 제목이 붙어 있다. 결국 2, 3번 분재기와 동일한 재산상속을 실행하기 위해 작성된 것임을 알 수 있다. 4번 분재기에는 ‘비婢 혼지欣之 2소생’부터 시작하여 모두 159명의 노비명단이 수록되어 있는데, 이는 2, 3번 분재기의 ‘생원택生員宅 몫[份]’에 기록된 노비명부터 그 이후의 명단들과 일치한다. 명단뿐만 아니라 생원택 몫부터는 노비명 기재 순서도 착종이 있는 두어 군대를 제외하고는 거의 일치한다. 요컨대 4번 분재기는 을묘년 화회문기의 바탕이 된 노비 화명인 동시에, 분재기 초본임을 알 수 있다.

세 번째 분재기는 윤선도 부부의 재산을 윤인미尹仁美를 포함한 5남매가 상속한 화회문기이다. 따라서 「윤선도자녀 화회문기」라 명명하였다. 이 분재기는 앞부분이 결락되어 작성연대나 문기 제목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 다만 윤선도가 사망한 1671년 이후 3년상을 마치고 화회문기가 작성되었을 것이므로 연구자에 따라 1673년 또는 1675년으로 작성연대를 추정하여 왔다. 그런데 서문序文의 내용상 장남인 윤인미(1607~1674)가 사망한 후에 작성되었다는 점과, 분재기에 수록된 노비의 나이 등을 다른 문기와 대조하면 1675년에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추정임을 밝혀둔다.

「윤선도자녀 화회문기」 역시 2종이 전래하였다. 이 중 5번 분재기는 정식 화회문기이고 6번 분재기는 그 초본의 일부이다. 6번 분재기는 전반부가 결락되어 문서 명칭 등을 전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5번 분재기와 마찬가지로 상속인을 각각 정자택, 진사택, 생원택, 심(沈) 생원택, 이(李) 생원택으로 표기하고 있고, 앞의 분재기와 동일한 노비명이 나열되고 있다. 또 두 분재기 모두 각자

의 택호 아래에 상속분을 기재하였는데, 장남인 윤인미의 몫은 ‘우리 집 몫[吾家份]’이라고 동일하게 표기하였다. 이런 점에서 6번은 5번 분재기의 초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다만 5번 분재기에는 노비와 전답이 상속 재산으로 나열되었으나, 6번 분재기는 노비만 기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기재된 노비가 일부에 불과하다. 따라서 6번 분재기는 분재기 초본이지만, 정확히 표현하면 ‘화회문기의 작성에 대본으로 쓰인 노비 화명 중 일부’라 할 수 있다.

마지막 분재기는 「윤두서자녀 화회문기」로서, 윤두서尹斗緒 부부의 재산을 그의 자식 12남매가 분할 상속한 문기이다. 이 문서는 1760년(영조 36)에 작성되었지만, 서문에서 밝히고 있듯이 실제 상속이 이루어진 것은 무술년 즉 1718년(숙종 44)이다. 윤두서가 사망한 후 3년만인 1718년에 재산분할을 시도하였으나 문서 작성이 40여 년이나 지체된 것이다. 이 문서에 나타난 상속 재산은 지방에 근거를 둔 양반 가계로서는 양적으로 매우 방대하다. 하지만 12남매에게 재산이 상속되었으므로, 그 이후에는 이 정도의 재산 소유 규모를 유지해 나가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물론 윤씨 가계의 토지나 노비 경영이 매우 적극적이고 확장적인 점을 고려하면 타가문과는 달리 재산 규모를 19세기까지 유지했을 수도 있다. 이 화회문기를 마지막으로 후대의 화회문기는 더 이상 전래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18세기 중엽 이후 재산의 소유규모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확인할 방법은 없다.

이 밖에 본서에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윤씨 가계에는 별급문기도 많이 전래하였다. 특히 사마시는 물론이고 문과급제자도 여러 명 배출한 집안답게 사마별급과 급제별급이 여러 차례 시행되었다. 부모가 내린 별급의 경우 화회문기에 그 내용을 수록하기도 하였다. 예컨대, 「윤선도자녀 화회문기」(자료 3-1-5)의 경우 각자의 몫을 기록한 후 별급을 받은 적이 있는 상속자는 별급받은 노비 명단과 토지 내역 등을 적어 놓았다. 이런 이유로 윤씨 가계의 분재기는 단순히 각자의 상속분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별급, 대수별代數別 봉사조 등을 추가로 써넣고 상속분을 예득例得과 친득親得 등 다양한 명칭으로 구분하여 내용이 복잡하기 이를 데 없다. 방대한 재산을 운영하고 상속하되, 법전과 가법을 동원하여 원칙을 세우고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으려는 노력이 엿보인다고 할 수 있다.

이밖에 과거 합격에 따른 별급보다는 적지만, 며느리를 맞이하거나 재혼을 축하하면서 준 별급도 있다. 한편 과거 합격으로 인한 별급은 부모 뿐 아니라 외가나 처가 등에서도 동시에 이루어져 의도와 달리 재산이 특정인에 집중될 가능성까지 내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상속을 통한 노비 확보

위의 분재기를 토대로 윤씨가 세대별 노비 확보량과 총 노비수의 변동양상을 <표 2>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표 2> 대수별 상속을 통한 노비 확보 양상

연도(년)	財主	상속인수	분재총량(口)	자녀 1인당 평균 상속량(口)
1596	윤홍중	3	384	122
1615	윤유심	3	214	71
1673	윤선도	5	540	103
1760	윤두서	12	579	73

<표 2>의 분재총량은 각 분재기에 수록된 노비의 총 숫자이다. 자녀 1인당 평균상속량은 노비의 총 수를 상속인수로 나눈 것이다. 실제로는 노비의 성별이나 나이, 거주지 등을 고려하여 동일한 숫자가 상속되지는 않으므로 1인당 평균상속량과 각자의 실제 상속 노비수가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노비 경영의 일차적 단계로서 상속을 통해 노비를 확보하는 비율과, 경영을 통한 증식의 정도를 가늠해볼 수 있다.

윤씨가 노비 보유에 있어서 특징적인 것은 16세기말 윤홍중(1518~1572) 때보다 18세기 윤두서(1668~1715) 때에 와서 보유량이 증가했다는 점이다. 자세히 살펴보면 1596년(선조 29) 윤홍중 대에서 1615년(광해군 7) 윤유심 대에 오면 약 55.7% 정도로 보유량이 감소했다. 이는 균분상속으로 인한 재산분할의 여파를 20여 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미처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후 17세기 후반 다시 노비 보유량이 증가하고, 이 수량이 18세기 중엽까지 유지되고 있다. 특히 17세기 후반에서 18세기 중엽의 시기에 500여 명의 노비를 보유한 것은 엄청난 규모라 할 수 있다. 다만 1760년 화회문기의 경우 579명의 노비 중 89명은 도망노비로 현재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는 노비이다. 이를 제외하더라도 490명의 노비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므로 엄청난 노비 보유규모라 할 수 있다.

1인당 평균 노비 상속량에 있어서는 증감이 반복되고 있다. 타가문의 경우 17세기 이후 급격한 노비 감소가 나타나며, 재지사족在地土族의 경우는 18세기에는 몇 십 명의 노비를 보유하기도 버거운 정도로 규모가 영세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비해 증감이 반복되고 있지만, 상속을 통해 이미 타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노비를 확보하면서 한 세대의 노비경영이 시작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분재기가 노비의 상속 양상을 보여주지만 노비의 경영 양상도 암시하는 부분이 있다. 예컨대, 첫 번째 분재기인 『윤의중자녀 화회문기(1596)』의 경우 노비를 수록하면서 예분질例分秩, 모변전래 노비질, 부변전래 노비질, 유망질流亡秩, 포작질浦作秩, 신노비질新奴婢秩, 각종 별득질 등으로 나누었다. 두 번째 분재기인 『윤유심자녀 화회문기(1615)』는 노비를 예분例分과 친득親得 등으로 나누었다. 그 이후의 분재기 역시 다양한 분류에 의거하여 노비를 열거하고 상속하고 있다. 또한 이런 분류뿐 아니라 노비들의 거주지와 가족관계까지 열거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이러한 노비 기재방식과 그 복잡성은 윤씨 가계가 노비를 그들의 유래와 출신, 거주지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면서 관리해 왔음

을 암시한다고 하겠다.

노비 매득과 증식

양반가에서는 상속받은 노비만으로 가계를 경영하기보다는 보다 적극적으로 경영에 나서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해남윤씨 가계는 적극적 가계경영이 돋보이는데, 노비에 있어서도 이를 엿볼 수 있다. 여기에 제시한 노비매매문기가 바로 이를 입증하고 있다. 윤씨 가계의 노비매매문기 중 윤씨 가계가 직접 노비를 매입하여 매도자로부터 받은 매매문기는 38건이다. 이 밖에도 노비매매문기가 더 있지만 본문기로 달려 왔거나 다른 이유로 윤씨 가계에 전래하는 경우가 있어 윤씨 집안의 노비 매입과 직접적 관계는 찾기 어렵다.

이 38건의 노비매매문기는 누가 노비를 매입하여 적극적인 노비경영에 임했는지 명확히 하기 위하여 문서 명칭을 모두 매득인을 중심으로 명명하였다. 따라서 뒤에 제시하는 문지 역시 ‘매득문기’로 명명했다. 일반적으로는 ‘매매문기’ 또는 ‘매매명문’ 등으로 부르는 경우가 많고, 행위를 생략한 채 ‘노비문기’라 부르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본서에서는 이와같이 다른 방식으로 명명하게 되었음을 밝혀둔다.

<표 3> 윤씨가의 노비 매입 현황

연대(기간)	매입건수(건)	매입노비수(명)
1611~1620	1	2
1621~1630	2	4
1631~1640	0	0
1641~1650	0	0
1651~1660	5	36
1661~1670	4	10
1671~1680	8	77
1681~1690	8	14
1691~1700	0	0
1701~1710	4	14
1711~1720	2	4
1721~1730	4	10
계	38	171

〈표 3〉은 노비 매매문기를 통하여 윤씨 가계의 시기별 노비 매입 현황을 살펴본 것이다. 최초 매매 문기인 1611년(광해군 3) 것부터 마지막인 1728년(영조 4) 것까지 대략 120여 년에 걸쳐있다. 그러나 꾸준히 노비를 매입한 가운데서도 특히 1651년부터 1680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윤씨 가계에 노비가 유입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8건의 노비매매는 그렇게 빈도가 높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매득한 노비수는 170명이 넘는다. 1회에 평균 4~5명을 매득한 것이다. 다른 연구에 의하면 노비 매매 평균은 1회에 2명 내외이다. 노비 1명을 매매하거나, 미성년의 자녀 1~2명을 동반하여 매매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것이다. 이와 비교하면 해남윤씨 가계의 1회당 노비 매입 규모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노비 가족 중 한 가족이나 두 가족의 가족원 전체를 한꺼번에 매입하는 경우가 많은 데에 있다. 노비가 매매될 때 미성년의 자녀가 함께 거래되는 경우는 매우 일반적인 것이므로 재혼할 필요도 없다. 하지만 윤씨 가계에는 이런 사례 뿐 아니라 대규모 노비 가족의 동시 매입 사례가 여러 차례 눈에 띈다. 이는 윤씨 가계의 노비 매득에만 나타나는 특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수의 가족 구성원을 한꺼번에 매입한 사례는 모두 6사례에 이른다. 본서에는 이 여섯 건의 노비매매문기를 모두 제시하였다. 여섯 차례의 노비 매매를 통해 윤씨 가계는 무려 15가족 102명의 노비를 매입하였다. 이 중 특히 1673년에 한 번의 매매로 39명을 사들였고(자료 3-2-3), 1677년에는 한 번의 매매로 27명을 사들였다.(자료 3-2-4)

이러한 대규모 노비 매득이 17세기 중반 이후에 나타난다는 점, 그리고 매득한 노비들이 대부분 해남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이들 노비들은 가족을 분산하여 상속할 필요가 없는 사환노비使喚奴婢일 가능성이 높다. 즉, 원방遠方에 거주하는 납공노비納貢奴婢는 아닐 것으로 추정된다. 비슷한 시기에 매득한 해남 지역 토지들의 경작에 동원하거나, 가내 사환용 노비이거나, 또는 다시 되팔아 경제적 이익을 취하기 위한 노비 매득일 가능성이 있다.

노비 방매放賣와 관리

1) 노비의 방매

윤씨 가계가 상속을 통해 노비를 확보하고, 집중적인 매득으로 노비를 확장하기만 한 것은 아니다. 노비를 다량으로 매도하기도 하였다. 이는 다른 양반가와는 매우 대조되는 특징이다. 노비는 16세기를 정점으로 보유가 가장 증가한 시기이며 17세기 이후에는 점차 그 보유규모가 축소되는 추세

였다. 방매하지 않더라도 노비는 축소 일로에 놓여 있었으므로, 재지 양반가에서는 최소한의 사환노비를 지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가능하다면 방매하지 않고, 방매하더라도 형제 또는 친족 간에 매매하며, 특히 종가의 경우 노비가 줄지 않도록 하는 데에 신경을 썼다. 이와 비교하면 해남윤씨 가계는 눈에 띄는 정도로 노비 방매를 적극적으로 실행하였다.

그런데 노비매매문기로는 노비 방매에 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 매매문기는 그 문기에 수록된 재물을 방매하는 사람이 매득하는 사람에게 작성해주는 것이므로 매득인 측에서만 문서를 소유하게 되기 때문이다. 앞에 설명한 38건의 노비매매문기가 모두 해남윤씨 집안이 노비를 매득할 때 받은 문기인 것도 같은 이치에서이다. 하지만 해남윤씨 집안의 경우 노비 방매를 확인할 수 있는 또 다른 주요 문서가 있다. 바로 분재기와 일부 매매문기의 배면에 수록된 배탈背墮이 그것이다. ‘배탈’이란 분재기 등 앞면 문서에 수록된 재산 중 일부가 방매되거나 다른 사유로 인해 타인에게 건너갈 때 이를 문서에 표시하고 배면에 그 내역을 기재해 놓은 것이다. 분재기의 경우 수많은 노비가 수록되므로 이 중 1~2구를 방매하더라도 분재기를 본문기로 건네주기 어렵다. 따라서 매매 내역만을 배면에 따로 빼서 표시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배면에 단순히 내역만 기재하지 않고 관의 공증을 거쳐 약식 사급입안 형식으로 수록한 경우가 많다. 흔히 이를 ‘배탈사급입안’이라고 한다.

다른 집안에 남아있는 분재기에도 1~2건의 배탈사급입안이 수록된 경우는 드물지 않게 볼 수 있다. 하지만 윤씨 가계의 분재기에는 배탈의 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을 특징으로 한다. 특히 1건의 분재기의 배면에 44건의 배탈사급입안이 수록된 『윤두서자녀 화회문기(1760)』(자료 3-1-7)는 다른 데에서는 그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운 매우 특이한 문서라 할 수 있다. 분재기나 매매문기를 통해 그동안 파악할 수 없었던 양반가의 노비 방매 또는 유출 현황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그렇고, 그 유출 양상이 매우 파격적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이 분재기에는 모두 579명의 노비가 수록되어 있다. 44건의 배탈은 모두 앞면 분재기에 수록된 노비 중 일부를 방매하면서 분재기의 해당 노비 이름에 표시를 남기고 뒷면에 매매 사실을 관으로부터 공증 받은 것이다. 이 중 해남현海南縣 입안이 30건이며, 장흥부長興府 입안이 7건, 무안현務安縣 입안이 1건이다. 나머지는 장례원 掌隸院 입안이거나 발행 관부官府가 드러나 있지 않은 입안들이다. 배탈사급입안으로 윤씨 가계의 노비 방매 현황을 살펴보면 <표 4>와 같다.

<표 4> 1760년 화회문기의 배탈사급입안 현황

연도(年)	입안 건수(件)	노비수(口)
1760	3	7
1761	4	8
1763	3	11
1764	1	4
1766	3	13

연도(年)	입안 건수(件)	노비수(口)
1767	3	5
1768	2	6
1769	2	4
1770	1	4
1771	2	6
1772	4	26
1773	4	5
1774	2	10
1776	1	6
1779	3	8
1781	1	8
1782	1	1
1783	1	2
1786	1	6
1789	1	1
1796	1	15
합계	44	156

〈표 4〉에 따르면, 44회의 방매 행위는 분재기가 작성되던 1760년(영조 36) 부터 1796년(정조 20) 까지 37년에 걸쳐 이루어졌다. 44회의 매매로 윤씨 가계가 방매한 노비는 모두 156구이다. 분재기에 수록된 570여 구의 노비도 엄청난 숫자이지만, 18세기에 150여구를 방매한 것도 그 규모가 매우 방대하다고 할 수 있다. 노비를 매득할 때와 마찬가지로 방매할 때에도 가족 구성원이 함께 거래된 경우도 많이 나타났다. 매득할 때와 같은 수십명 규모는 없지만 대체로 3~4명 정도의 가족 구성원이 함께 방매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1회의 방매로 8명의 노비, 15명의 노비를 방매하는 사례까지 보인다. 꾸준한 노비 방매, 가족 단위의 매입과 방매는 윤씨 가계의 노비 경영 방식 중 하나라 할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 그 경영철학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는 다른 고문서와 종합하여 파악해 볼 과제라 하겠다.

2) 신공수취身貢收取와 관리

상속, 매매를 통한 노비의 출입 외에 해남윤씨 가계에는 노비를 어떻게 대우하고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기록해 놓은 고문서들이 있다. 예컨대, 윤선도가 아들에게 남긴 『충헌공가훈』에서는 양역노비(仰役奴婢)에게 지나치게 엄격히 하지 말라, 노비의 신공을 노비들의 빈부(貧富)를 고려하여 가(加)하

거나 감減하라는 등의 노비 관리 지침이 들어있다.

마지막 문서로 제시하는 「병자년 불망기」와 「신유년 노비성책」 역시 노비 관리와 관련한 것으로 파악되는 문서들이다. 「병자년 불망기」에서 병자년이 언제인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병자년 당시에 파악한 윤씨 집안 노비의 현황이라 할 수 있다. 노비 명단이 수록되어 있고, 이들의 도망 여부를 포함한 현존양상이 나열되어 있다. 또 신공 수취 여부, 신공 내역 등을 파악해 놓았다. 불망기라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노비를 관리하는 하나의 장부로서 잊지 말고 관리하고 경영한다는 차원에서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신유년 노비성책」은 「노비성책, 신유년」이라는 제하題下에 신공 수취 대상 노비의 명단과 그들의 신공 액수, 수취 여부를 기록한 것이다. 한글로 쓴 것이며 성책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일종의 장부로 보인다. 신유년을 1621년(광해군 13)으로 파악하고, 이 문기를 윤선도가 친필로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한 선행연구가 있다. 이밖에도 해남윤씨 가문에는 「노비안」, 「노비천안」, 「노비화명」, 「노비성책」 등 다양한 명칭으로 작성된 한글 고문서가 많이 있다. 서문이 없고 내용만 나열되어 있어서 정확한 작성 시기나 작성 목적 등을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이런 다양한 문서들이 모두 노비의 확보, 경영, 승계라는 일련의 과정을 수행하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각 문서들을 종합적으로 고찰하면 각각이 씨줄 날줄이 되어 윤씨가 노비를 입체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 문숙자, 2012, 「17~18세기초 海南尹氏家の 노비 매입 양상 -노비 매매 목적과 流入 노비의 성격에 대한 추론」, 『藏書閣』 28.
- 이우연·차명수, 2010, 「조선 후기 노비 가격의 구조와 수준, 1678~1889」, 『경제학연구』 제58집 제4호.
- 안승준, 1990, 「16~18世紀 海南尹氏 家門의 土地, 奴婢 所有實態와 經營 -해남윤씨고문서를 中心으로-」, 『淸溪史學』 6.

1. 분재기

3-1-1) 1596년 윤의중尹毅中 자녀 화회문기와會文記

[1596년(선조 29) 윤의중尹毅中의 적자녀嫡子女 3남매가 부모의 재산을 분할상속하면서 작성한 화회문기와會文記]

침지택兪知宅 문기文記¹

만력 24년 병신년(1596, 선조 29) 10월 21일 동생同生 화회문기와會文記²

이 문서를 작성한다. 부모님께서 돌아가신 후 탈상이 ■……■³, 우리들이 한 자리에 모이지 못하여 전답과 노비를 아직 나눠 갖지 못했다. 지금 비로소 노비의 화명花名⁴에 올라 있는 것과 전답 치부에 근거하여 헤아려 몫을 나눈다.

일. 승중조承重條⁵와 얼동생孽同生들의 몫은 모두 법전法典⁶에 정해진 대로 나눈다.

-
- 1 침지택(兪知宅) 문기(文記)** 이 문서에는 윤유심·윤유기 등 상속자 이름을 쓰지 않고 沃川宅·兪知宅·別坐宅 등의 택호를 쓰고 있다. 문기 첫 행에 쓰여 있는 ‘침지택문기’라는 표현은 이 분재기가 침지택 즉 윤유기(尹唯幾, 1554~1619) 후손가에 전래된 문서임을 의미한다.
 - 2 화회문기(和會文記)** 분재기 중 유일한 상속문기이다. 부모 사망후 자식들이 서로 협의하여 그 재산을 분할상속하면서 작성한 분재기이다. 이 외의 분재기는 모두 증여문기에 해당한다.
 - 3 ■……■** 원문에 2자 정도 마멸 부분이 있다. 마멸부분은 이하에도 모두 ■……■으로 표시하였다. 단, 원문은 글자수가 확인되면 글자수만큼 ■로 표시하였다.
 - 4 화명(花名)** 화명은 보통 노비, 전답, 그밖에 무엇인가를 나열할 때 그 명단을 의미하는 용어로 쓰인다. 여기서는 노비 이름 또는 노비 명단을 의미한다.
 - 5 승중조(承重條)** 승중은 아버지가 사망하여 손자가 할아버지를 바로 계승하는 경우를 일컫는다. 하지만 조선시대 분재기에서는 ‘봉사조’와 동의어로 쓰인다. 즉 제사 봉행에 쓰기 위해 별도로 마련한 재산이라는 뜻이다.
 - 6 법전(法典)** 『경국대전』 『형전(刑典)』의 ‘사천(私賤)’ 조항을 말한다. 부모의 노비를 균등하게 분배하되 승중자에게는 중자녀(衆子女) 1인 몫의 1/5을 더 주고, 천첩 자녀는 중자녀 1인 몫의 1/10만 준다는 규정이다.

일. □……□ 포작浦作⁷ 노비로서 간 곳을 알 수 없는 자는 별도로 헤아려 몫을 나눈다.

일. 열동생孳同生들의 집에 보관할 문기에는 그들 네 집에 나눠 준 수량만 기록하고 우리들의 몫은 기록하지 말아서 문권을 간단하게 한다.

일. 먼 지방의 노비들은 필시 누락된 자들이 있을 터이니 후에 자세히 다 확인하여 다시 헤아려 균 등하게 나눈다.

옥천택沃川宅⁸ 몫

승중조承重條

연지동蓮池洞 집터, 해남에 있는 김백운金白雲의 월월자 논 7마지기, 천석千石의 백白자 논 6마지기, 가점加岾에 있는 김중보金重甫의 제第자 논 7마지기, 집 앞에 있는 장張자 밭 9복⁹.

단금丹今의 첫째 소생인 계집중 풍개風介(무술생), 계집중 돌덕堧德의 첫째 소생인 사내중 동백冬栢(임진생), 계집중 병지丙之의 첫째 소생인 계집중 언심彦心(임진생), 사내중 수억守億과 양인 처의 첫째 소생인 사내중 순이舜伊(신묘생), 계집중 논금論今의 둘째 소생인 계집중 언대彦代(갑신생), 계집중 업대業代의 첫째 소생인 사내중 계남戒男(갑신생), 사내중 수억守億의 둘째 소생인 계집중 화비化非(갑오생), 계집중 신지新之의 첫째 소생인 사내중 대헌大獻(갑신생), 계집중 석대石代의 여섯째 소생인 계집중 은개銀介(갑자생), 사내중 돌근堧斤과 양인 처의 둘째 소생인 사내중 돌시堧屎(신미생), 계집중 풍례風禮의 둘째 소생인 사내중 마진卍進(무인생), 계집중 연주延朱(경신생), 계집중 향운香雲(경인생), 사내중 하송何松의 둘째 소생인 계집중 하대何代(기미생), 계집중 한비漢非의 첫째 소생인 사내중 언상彦常(계사생).

장흥長興에 있는 논 20마지기, 집 앞 밭 28복과 20복.

포작浦作 사내중 산복山福의 첫째 소생인 계집중 덕이德伊(정묘생), 셋째 소생인 사내중 산세山世(신미생).

예분질例分秩¹⁰

해남 백련동 집 1채.

부변전답질父邊田畝秩¹¹ : 해남 현내 역驛 근처에 있는 논 전소 4섬¹² 6마지기, 집 앞 밭 보리 8마지기, 역 앞 황기黃蘗의 밭 남쪽에 위치한 밭 보리 12마지기, 옛 읍터에 있는 애爰자 논 9마지기와 밭 두

7 포작(浦作) 바다에서 해산물을 채취하는 업. 혹은 그 일을 하는 이를 말한다. 바닷가 백성들 중에 물고기 잡는 해척(海尺)과 함께 언급되었다. 『순조실록(純祖實錄)』 25년 11월 19일 기사 참조.) 해남윤씨 종가가 해안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하므로 이와 관련한 사역(使役)에 동원되는 노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8 옥천택(沃川宅) 윤유심(尹惟深, 1551~1612)의 택호로서, 그가 옥천군수를 역임한 데에서 온 칭호이다.

9 복(卜) 부(負)와 같은 뜻으로 보이나 글자 그대로 ‘복’으로 표기해 둔다. 이하 동(同).

10 예분질(例分秩) 신노비질이나 별급질과 구분하여 전례(前例)나 법례(法例)에 따라 나누는 일반적인 항목을 의미한다. ‘예득질(例得秩)’이나 ‘집주질(執籌秩)’로 쓴 분재기도 있다.

곳 합해서 11마지기 14북 7속, 화산花山の 종鍾자 논 3마지기.

노비질奴婢秩 : 사내중 두타비豆他非의 둘째 소생인 사내중 군재君才(경자생), 계집중 덕지德之의 셋째 소생인 계집중 울덕栗德(갑신생), 계집중 근수斤守의 일곱째 소생인 사내중 언계彦戒(병인생), 계집중 논대論代之 둘째 소생인 계집중 풍덕風德(정축생), 사내중 파회破回의 첫째 소생인 계집중 암지岩之(경오생), 계집중 천비千非의 셋째 소생인 사내중 금세金世(갑술생), 사내중 귀희貴希의 둘째 소생인 사내중 희동希同(경신생), 사내중 석이石伊의 첫째 소생인 사내중 말이末伊(무진생), 계집중 혼지欣之의 둘째 소생인 사내중 도손道孫(기유생), 계집중 금월今月의 첫째 소생인 계집중 서대西代(경신생), 사내중 돌산鬲山과 양인 처의 첫째 소생인 사내중 범손凡孫(갑진생), 계집중 근수의 셋째 소생인 사내중 박례朴禮(병진생), 계집중 근수의 둘째 소생인 계집중 풍례風禮(계축생), 계집중 희비希非의 첫째 소생인 사내중 청춘靑春(갑신생), 사내중 양순良順의 둘째 소생인 사내중 수룡守龍(무인생), 계집중 업대業代之 넷째 소생인 계집중 은춘銀春(경인생), 사내중 윤필允必의 다섯째 소생인 사내중 막세莫世(갑술생), 사내중 귀희貴希의 여섯째 소생인 사내중 희일希一(임신생), 계집중 근주斤珠의 첫째 소생인 사내중 연풍延風(기해생), 사내중 오석吳石의 첫째 소생인 계집중 덕지德之(임인생), 계집중 덕금德今의 첫째 소생인 사내중 인회仁回(을축생), 계집중 점대占代之 첫째 소생인 계집중 병지丙之(병인생), 계집중 덕금德今의 일곱째 소생인 사내중 덕세德世(갑신생), 사내중 양순良順의 둘째 소생인 계집중 용덕龍德(병자생), 계집중 덕금德今의 여섯째 소생인 사내중 연이連伊(경진생), 계집중 논대의 넷째 소생인 사내중 남근南斤(기묘생), 계집중 덕금의 여덟째 소생인 사내중 말세末叱世(정해생), 사내중 검동檢叱同과 양인 처의 다섯째 소생인 사내중 무숙戊肅(기묘생), 사내중 석이石伊의 셋째 소생인 사내중 순희順希(경진생), 계집중 금월의 둘째 소생인 계집중 어린개於鄰介(임술생), 계집중 근주斤珠의 둘째 소생인 사내중 의풍義風(기축생), 계집중 덕종德從의 셋째 소생인 계집중 예인禮仁(을유생), 계집중 근수斤守의 첫째 소생인 사내중 세원世元(병오생), 계집중 논금論今의 여섯째 소생인 계집중 연개連介(을미생), 계집중 용대龍代之 둘째 소생인 사내중 기련奇連(정미생), 계집중 구월九月의 첫째 소생인 계집중 춘대春代(을유생), 계집중 덕금의 셋째 소생인 계집중 은지銀之(기사생), 계집중 석대石代之 다섯째 소생인 사내중 수역守億(갑자생), 계집중 서음지西音之의 둘째 소생인 계집중 논서비論西非(임진생), 계집중 막지莫之의 셋째 소생인 계집중 논금論今(신해생), 계집중 논금의 넷째 소생인 사내중 귀봉貴奉(기축생), 계집중 가외덕加外德의 첫째 소생인 사내중 근주斤珠(정사생), 사내중 돌산鬲山の 첫째 소생인 사내중 범산凡山(병인생), 계집중 은대銀代之 첫째 소생인 계집중 언생彦生(계사생), 계집중 기리미리里未의 셋째 소생인 계집중 준화俊花(신사생), 사내중 대언大彦과 양인 처의 둘째 소생인 계집중 애

11 부변전답질(父邊田畝秩) 아버지쪽에서 전래한 전답 목록을 뜻한다. '질(秩)'은 주로 명단이나 목록 등을 나열할 때 쓴다.

12 전(全) 4섬 전석(全石)과 평석(平石)이 있는데, 전1석은 20斗이고 평1석은 15두이다. 『경국대전』 공전, 도량형조.

춘愛春(임진생), 계집중 돌고돌古의 첫째 소생인 사내중 득수得守(정해생), 계집중 근주의 넷째 소생인 사내중 풍남風男(임진생), 사내중 능손能孫의 둘째 소생인 사내중 석손石孫(신축생), 계집중 천비千非의 셋째 소생인 계집중 천화千花(임진생), 사내중 대언大彦의 넷째 소생인 계집중 애생愛生(을미생), 계집중 천비千非의 첫째 소생인 계집중 은대銀代(갑자생), 사내중 세원世元의 첫째 소생인 사내중 희춘希春(임오생), 사내중 박례의 첫째 소생인 사내중 희남希男(계사생), 계집중 금일의 둘째 소생인 사내중 어리於里(을축생), 계집중 풍개風介의 넷째 소생인 계집중 덕년개德年介(기사생), 계집중 은지銀之의 첫째 소생인 계집중 금이今伊(을미생), 사내중 윤필允必의 첫째 소생인 사내중 윤창允昌(을축생), 계집중 묵이墨伊의 셋째 소생인 계집중 천비千非(갑진생), 사내중 오석吳石의 둘째 소생인 계집중 덕금德今(병오생), 계집중 석대石代의 셋째 소생인 계집중 석개石介(을묘생), 석개의 첫째 소생인 계집중 진옥眞玉(기사생), 둘째 소생인 계집중 춘이春伊(신사생), 셋째 소생인 사내중 인길仁吉(무자생).

모변전답질母邊田畝秩 : 장흥長興의 신기新基와 부산夫山 등지에 있는 논 전소 4섬 16마지기 57복 3속, 밭 두 곳 합해서 보리 10마지기, 밭 8곳 합해서 65복 4속, 기氣자 밭 23마지기를 별좌대別坐宅¹³과 절반으로 나눈 것, 방이치方伊峙의 논 전 4섬 7마지기와 밭 전 2섬지기.

부변父邊 전답 추가분 : 해남 양하동襄荷洞 논 전소 3섬 12마지기와 밭 보리 20마지기, 장단長湍 동쪽의 원院 주변 논 30마지기 1결結 8복, 과주坡州 마정리馬井里 논 전소 3섬 3마지기 1결 9속, 5일 반半 같이¹⁴짜리 줄의芑義 등의 마을과 고산高山 앞뒤에 있는 밭 합해서 1결 되는 넓이, 양주楊州 묘산墓山 아래 매입한 묵은 밭.

모변노비질母邊奴婢秩 : 사내중 석수石守의 첫째 소생인 계집중 순화順花(정해생), 계집중 향운香雲의 셋째 소생인 계집중 만개萬介, 사내중 강석江石의 첫째 소생인 계집중 난이蘭伊(갑인생), 사내중 서동을이鋤冬乙伊의 셋째 소생인 사내중 유량有良(임오생), 다섯째 소생인 계집중 금생今生(정해생), 사내중 명손命孫의 첫째 소생인 계집중 울덕栗德(병술생), 사내중 범석凡石의 첫째 소생인 사내중 범량凡良(정해생), 사내중 범이凡伊의 넷째 소생인 사내중 명손命孫(무진생), 사내중 모라毛羅의 다섯째 소생인 사내중 말남耑男¹⁵(계사생), 사내중 영손永孫의 둘째 소생인 사내중 장수長守(계해생), 사내중 명손命孫의 셋째 소생인 사내중 남세南世(임진생), 계집중 난이蘭伊의 셋째 소생인 계집중 애춘愛春(갑오생), 사내중 모라毛羅의 넷째 소생인 계집중 덕례德禮(병술생), 사내중 천매千每의 첫째 소생인 사내중 범석凡石(기묘생), 사내중 장수長守의 첫째 소생인 사내중 흑수黑守(계사생), 계집중 몽대夢代의 셋째

13 별좌대(別坐宅) 윤유심 남매 중 파평윤씨 윤공(尹鞏) 처(妻)로 상속인 중 한 사람이다.

14 5일 반(半) 같이 소 한 마리로 밭을 가는 데 5일 반의 시간이 걸리는 정도의 넓이를 말한다. 일경지법(日耕之法)으로 전지를 측량하는 단위로 주로 밭에 쓰는 단위이다.

15 말남(耑男) 실제로는 '끝남'으로 불렸을 가능성이 크며, 말남(末男), 말질남(末叱男) 등 다양하게 표기했을 가능성이 있다.

소생인 계집종 영매永每(임신생).

유망질流亡秩¹⁶: 계집종 애영愛永, 계집종 무지戊之, 계집종 광비廣非, 계집종 녹양綠楊, 계집종 전비全非, 계집종 안지安之, 계집종 보로미甫老末, 사내중 춘단春丹, 계집종 희춘希春, 계집종 용금龍今, 사내중 청회靑回, 사내중 깃사其叱巳, 계집종 금지今之, 사내중 은보銀甫, 사내중 망괴望愧, 계집종 청덕靑德, 사내중 보만萬甫, 계집종 이대李代.

포작질浦作秩: 계집종 문비文非의 넷째 소생인 사내중 차음사次音沙(임신생), 사내중 막근莫斤의 둘째 소생인 계집종 막금莫今(경진생), 계집종 흔덕欣德의 둘째 소생인 계집종 매일每一(무인생), 계집종 돌금鬪今의 둘째 소생인 계집종 문비文非(을미생), 계집종 문비文非의 첫째 소생인 사내중 막근莫斤(경술생), 계집종 문비의 둘째 소생인 사내중 문석文石(정미생), 사내중 차음사次音沙의 둘째 소생인 사내중 문산文山(신묘생), 계집종 문덕文德의 첫째 소생인 사내중 평세平世(계유생), 계집종 돌장鬪壯의 둘째 소생인 계집종 아금阿今(병진생), 사내중 문손文孫의 첫째 소생인 계집종 문덕文德(임자생), 계집종 아금阿今의 첫째 소생인 계집종 아지阿之(무인생), 사내중 산복山福의 둘째 소생인 계집종 산개山介(정축생).

신노비질新奴婢秩¹⁷: 계집종 난수難守의 첫째 소생인 사내중 오련五連(병오생), ○○¹⁸의 첫째 소생인 사내중 만이萬伊(신해생), ○…○ 사내중 장손長孫(기유생), 계집종 구지仇知的 넷째 소생인 사내중 기세奇世(임자생), 계집종 용비龍非의 셋째 소생인 계집종 홍선洪仙(무신생), 사내중 경수京守의 첫째 소생인 계집종 계화桂花(을사생), 계집종 사금士今의 넷째 소생인 계집종 단금丹今(무신생).

생원별득生員別得¹⁹【병자년(1576) 2월】: 옛 읍 터에 있는 왕往자 논 10마지기, 죽정竹井에 있는 황준조黃準調의 논畝 26마지기, 장흥 백伯자 논 3곳 합 13마지기, 계집종 잉덕莛德의 둘째 소생인 계집종 원비元非(기유생), 계집종 유월六月의 둘째 소생인 계집종 상덕尙德(정사생), 계집종 혼지昆之의 셋째 소생인 사내중 강손江孫(갑인생), 계집종 풍개風介의 둘째 소생인 사내중 덕수德守(병인생), 계집종 돌장鬪壯의 셋째 소생인 계집종 돌서비鬪西非(정묘생), 사내중 외동外同과 양인 처의 둘째 소생인 계집종 덕개德介(을묘생), 계집종 유월六月의 첫째 소생인 사내중 상공尙工(○○), 사내중 한문汗文과 양인 처의 둘째 소생인 사내중 한수汗守(을축생), 사내중 문손文孫과 양인 처의 둘째 소생인 계집종 평덕平德(병인생).

참지덕僉知宅 ㄱ

16 유망질(流亡秩) 보통은 ‘도망질(逃亡秩)’로 쓰며, 도망간 노비 명단을 말한다.

17 신노비질(新奴婢秩) 혼인할 때 증여받은 노비를 신노비라 한다. 신노비질은 신노비의 명단이다.

18 ○○ 원문에 노비 이름이나 나이 등을 쓰지 않고 공란으로 둔 경우 이렇게 표시하였다. 이후에도 원문에서 일부러 지면을 비워둔 부분은 ○○, ○…○로 표시하였다.

19 생원별득(生員別得) 생원시(生員試) 입격을 축하하기 위해 증여했음을 뜻한다. 보통 ‘생원별급’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받은 사람을 중심으로 표현하여 ‘별득’이라고 하였다. 윤희심은 1576년 생원시 2등 20인으로 입격하였다.

어의동於義洞²⁰ 집터, 남양南陽 마도¹道에 있는 기와집 12칸과 공터.

부변전답질 : 해남 죽정竹井에 있는 박봉동朴奉同의 논 9마지기, 방죽防築 춘경春京의 논 10마지기, 방죽 지량止良의 논 12마지기, 조막동趙莫洞 한번韓礮의 논 9마지기, 청지淸池 선금善金の 논 5마지기, 원당元堂 차신車信의 논 10마지기, 돌당堦堂 은년恩年의 논 2마지기, 집 앞 밭 3말 5되지기, 역驛 앞 황기黃耆의 밭 북쪽 일대 12말 5되지기, 옛 읍터에 있는 양讓자 밭 5마지기, 육育자 밭 5마지기, 이李자 논 5마지기, 진珍자 논 4마지기, 간을대干乙代 은년恩年의 논 7마지기, 양척동良尺洞 돌지¹토¹의 논 3마지기, 백야지白也只 초草자 논 2곳 6마지기, 지¹자¹ 논 3마지기, 콩밭 5마지기, 굴포掘浦 간척 논 9섬지기, 남양南陽 간척 논 현賢자 10마지기, 사事자 10마지기, 수산水山의 육답陸畝 선흙자 2마지기, 현賢자 3마지기, 방응문房應文의 숙夙자 밭 11복, 자資자 밭 1마지기, 또 이틀같이[수산水山], 수산 작¹자¹ 밭 4마지기.

노비질 : 계집중 춘학春鶴의 첫째 소생인 사내중 춘복春福(무진생), 계집중 윤비允非의 둘째 소생인 사내중 금세金世(정사생), 계집중 근수斤守의 여섯째 소생인 사내중 대언大彦(갑자생), 죽은 사내중 신징信澄과 양인 처 윤지允之의 첫째 소생인 계집중 유덕有德(신유생), 둘째 소생인 사내중 광수光守(경오생), 계집중 근수斤守의 다섯째 소생인 계집중 업대業代(신유생), 계집중 업대의 첫째 소생인 사내중 계룡戒龍(신사생), 사내중 신징信澄과 양인 처 윤지允之의 셋째 소생인 사내중 덕의德義(임신생), 넷째 소생인 사내중 광내光乃(병자생), 계집중 대금代今의 다섯째 소생인 계집중 헌지獻之(신유생), 사내중 도손道孫과 양인 처 원비元非의 둘째 소생인 사내중 박손朴孫(계미생), 계집중 풍례風禮의 넷째 소생인 사내중 풍종風從(정해생), 계집중 대금代今의 셋째 소생인 계집중 논대論代(무신생), 사내중 준희俊希와 양인 처 예금禮今의 첫째 소생인 사내중 돌성¹成(기사생), 사내중 천석千石과 양인 처 시월十月의 둘째 소생인 사내중 만산萬山(경신생), 계집중 덕금德今의 넷째 소생인 사내중 돌동¹同(신미생), 계집중 윤지允之의 둘째 소생인 계집중 명서비命西非(을해생), 사내중 정손¹孫과 양인 처 이덕二德의 첫째 소생인 계집중 돌덕¹德(을축생), 계집중 헌지獻之의 첫째 소생인 계집중 헛덕¹德(경진생), 사내중 윤필允必과 양인 처 막덕¹德의 둘째 소생인 계집중 논화¹論花(임신생), 사내중 한귀汗貴와 양인 처 덕지¹德只의 첫째 소생인 사내중 천귀千貴(신유생), 둘째 소생인 사내중 세천世千(정축생), 셋째 소생인 사내중 돌시¹屍(병술생), 계집중 막장¹壯의 첫째 소생인 사내중 여추리汝趨里(기축생), 사내중 검동檢叱同과 양인 처의 넷째 소생인 사내중 정희鄭希(갑술생), 사내중 도손道孫과 양인 처 원비元非의 둘째 소생인 사내중 원손元孫(정축생), 사내중 한귀汗貴와 양인 처 덕지¹德只의 넷째 소생인 사내중 수명守明(무자생), 다섯째 소생인 사내중 비내非乃(임진생), 계집중 사랑개思郎介의 첫째 소생인 사내중 동이¹伊(경오생), 죽은 사내중 검동檢叱同과 양인 처 정대¹代의 둘째 소생인 사내중 정문鄭文(경오생), 셋

20 어의동(於義洞) 서울 동부 숭교방(崇教坊)에 있던 동(洞)이다.

2째 소생인 계집중 순덕順德(계유생), 계집중 논금論今의 첫째 소생인 계집중 논화論花(계유생), 계집중 서음지西音之의 첫째 소생인 사내중 논기리論己里(기축생), 계집중 연화延花의 첫째 소생인 사내중 춘손春孫(신유생), 사내중 대인大彦과 양인 처 몽수夢守의 첫째 소생인 사내중 대순大順(을유생), 계집중 막장莫壯의 둘째 소생인 사내중 줄세堧世(경인생), 계집중 만비萬非의 첫째 소생인 계집중 애금愛今(정축생), 계집중 녹정萊丁의 셋째 소생인 사내중 조득趙得(계유생), 계집중 석대石代의 넷째 소생인 계집중 청춘靑春(임술생), 계집중 막대莫代의 첫째 소생인 계집중 막장莫壯(무진생), 계집중 희비希非의 둘째 소생인 사내중 덕춘德春(정해생), 사내중 세원世元과 양인 처 덕이德伊의 넷째 소생인 사내중 희생希生(임진생), 계집중 논화論花의 첫째 소생인 계집중 분화分花(병술생), 계집중 논금論今의 둘째 소생인 사내중 한복汗福(병자생), 계집중 연화延花의 셋째 소생인 계집중 언금彦今(임신생), 사내중 동기지銅其知와 양인 처 일지一之의 첫째 소생인 사내중 이륜二倫(기축생), 죽은 사내중 파진巴眞과 양인 처 몽비夢非의 첫째 소생인 계집중 구월九月(을축생), 둘째 소생인 사내중 모독毛獨(정묘생), 죽은 계집중 논금論今의 첫째 소생인 계집중 만화萬花(병자생), 계집중 마이지伊之의 첫째 소생인 사내중 좃동諶同(을해생), 사내중 자손自孫과 양인 처 고읍지古邑之의 첫째 소생인 계집중 골구지骨仇之(기해생), 계집중 골구지骨仇之의 첫째 소생인 사내중 금동金同(무오생), 사내중 금동과 양인 처 춘이春伊의 첫째 소생인 계집중 봉화奉花(갑오생), 죽은 계집중 금이덕金伊德의 첫째 소생인 계집중 구월九月(갑자생), 죽은 계집중 천대千代의 둘째 소생인 사내중 이복李福(신유생), 계집중 돌고이髑古伊의 둘째 소생인 계집중 윤화允花(임진생), 계집중 윤비允非의 첫째 소생인 계집중 기리미己里未(신유생), 죽은 계집중 길덕吉德의 둘째 소생인 사내중 파회破回(경자생), 사내중 건이巾伊와 양인 처의 둘째 소생인 계집중 춘비春非(기사생), 계집중 논대論代의 다섯째 소생인 사내중 풍단風丹(임오생), 계집중 논룡대論龍代의 셋째 소생인 사내중 근동斤同(경술생), 계집중 억비億非의 첫째 소생인 사내중 강산江山(갑자생), 사내중 마채尗價와 양인 처 석지石之의 첫째 소생인 계집중 월대月代(을미생), 계집중 논금論今의 셋째 소생인 계집중 논개論介(기묘생), 계집중 논금의 넷째 소생인 계집중 귀화貴花(경인생), 죽은 사내중 수제守諸와 양인 처 애주愛珠의 첫째 소생인 사내중 주색朱色(병신생).

모변전답질 : 장흥長興 초草자 논 6복7속과 화和자 논 13복7속 합 4마지기, 제弟자 논 4마지기, 임臨자 논 2곳 합쳐서 4마지기, 박薄자 논 8마지기, 기基자 논 5마지기, 이履자 논 4마지기, 수受자 논 6마지기, 사思자 논 5마지기, 창唱자 논 1말5되지기, 의儀자 논 6마지기와 10마지기, 창嘯자 논 6마지기, 악樂자 밭 3곳 합해서 10마지기, 부산夫山의 집터와 콩밭 7마지기, 광廣자 밭 8마지기, 솔率자 밭 10마지기, 전典자 밭 3곳과 기氣자 밭 3곳 합해서 7마지기와 5마지기, 도圖자 밭과 수獸자 밭 합해서 7마지기, 업業자 밭 6마지기, 형兄자 밭 6복8속, 제弟자 밭 5복5속, 대천大川 주변 공孔자 밭 12복, 영榮자 밭 14복8속과 12복2속, 정定자 밭 4복6속과 9복2속과 3복7속, 지枝자 밭 2복3속과 7속, 죽림竹林의 밭 9복.

노비질 : 계집중 가진可眞의 둘째 소생인 계집중 몽대夢代(기해생), 계집중 몽대의 첫째 소생인 계

집종 인복仁卜(기미생), 둘째 소생인 사내중 사경四更(임술생), 사내중 성이成伊의 넷째 소생인 계집종 옥수玉守(기사생), 계집종 향운香雲의 첫째 소생인 사내중 서동리鋤冬里(갑인생), 사내중 서동리와 양인 처 금례今禮의 둘째 소생인 사내중 덕량德良(경진생), 사내중 파회破回와 양인 처의 첫째 소생인 사내중 돌년石乙年(경신생), 사내중 범이凡伊와 양인 처의 둘째 소생인 계집종 명옥命玉(을축생), 계집종 수금守今의 셋째 소생인 사내중 수진守眞(임신생), 계집종 원화元花의 첫째 소생인 계집종 옥금玉今(무자생), 사내중 모라毛羅와 양인 처의 넷째 소생인 계집종 덕지德之(신사생), 계집종 하대何代의 둘째 소생인 계집종 보배寶倍(갑신생), 사내중 범석凡石과 양인 처의 셋째 소생인 계집종 정월正月(기축생), 사내중 명손命孫과 양인 처의 둘째 소생인 사내중 명남命男(기축생), 계집종 명옥命玉의 첫째 소생인 계집종 춘월春月(신사생), 계집종 용비龍非의 첫째 소생인 사내중 비석非石(기해생).

포작 노비로 간 곳을 모르는 노비질 : 계집종 문덕文德의 여섯째 소생인 사내중 차음실次音實(을해생), 계집종 문덕의 셋째 소생인 계집종 논개論介(임술생), 사내중 돌손鬚孫과 양인 처의 첫째 소생인 사내중 돌금鬚金(신묘생), 계집종 돌심鬚心의 첫째 소생인 사내중 풍악風樂(임진생), 계집종 ○○의 셋째 소생인 사내중 검손檢孫(무인생), 계집종 양금央今의 첫째 소생인 사내중 풍세風世(갑자생), 계집종 돌장鬚壯의 넷째 소생인 계집종 흥개欣介(경진생), 계집종 문덕의 다섯째 소생인 계집종 돌금鬚今(무인생), 계집종 ○○의 첫째 소생인 사내중 차복車福(신사생), 사내중 문손文孫과 양인 처의 둘째 소생인 계집종 평개平介(신미생), 사내중 막개莫介의 셋째 소생인 계집종 막지莫之(계미생), 사내중 산진山眞의 넷째 소생인 계집종 장상長上(무자생).

도망가서 생사를 알지 못하는 노비질 : 계집종 광비廣非의 첫째 소생인 계집종 애록愛聶(임오생), 사내중 천석千石과 양인 처 시월十月의 넷째 소생인 계집종 애경愛敬(갑신생), 계집종 억금億今의 셋째 소생인 계집종 깃금叱今(기미생), 계집종 잉읍지苙邑之의 둘째 소생인 계집종 천대天代(신미생), 셋째 소생인 사내중 망종亡終(계유생), 사내중 무련無連의 넷째 소생인 계집종 돌비鬚非(갑자생), 이 계집종의 첫째 소생인 계집종 사지巳之(을축생), 계집종 깃금의 넷째 소생인 계집종 임지壬之(임진생), 사내중 유재有才와 양인 처의 첫째 소생인 사내중 군재君才(을유생), 계집종 문덕文德의 셋째 소생인 사내중 만공萬工(경진생), 계집종 억금億今의 다섯째 소생인 계집종 이금李今(신미생), 사내중 공작孤雀의 셋째 소생인 사내중 수진手陳(정축생), 사내중 춘이春伊와 양인 처의 둘째 소생인 사내중 이상李尙(무자생), 계집종 녹양綠楊의 넷째 소생인 사내중 춘세春世(정축생), 사내중 석수石守의 셋째 소생인 계집종 순개順介(신사생), 계집종 억대億代의 넷째 소생인 사내중 자근지者斤知(기사생), 계집종 막덕莫德의 첫째 소생인 계집종 논대論代(신사생), 둘째 소생인 계집종 억비億非(무자생).

신노비질 : 계집종 동덕東德의 둘째 소생인 사내중 둔산屯山(병오생), 계집종 능비能非의 넷째 소생인 사내중 억손億孫(정미생), 계집종 보덕甫德의 둘째 소생인 사내중 양세良世(병진생), 계집종 옥이玉伊의 셋째 소생인 사내중 구경九京(을묘생), 계집종 교매巧梅의 첫째 소생인 계집종 춘선春仙(을사생), 계집종 동덕의 넷째 소생인 계집종 막금莫今(임자생), 사내중 하송何松의 첫째 소생인 계집종 하금何

속(무오생), 계집종 석대石代의 일곱째 소생인 계집종 옥이玉伊(정사생). 무진년[1568] 정월.²¹

생원별득[병자년(1576) 2월]²² : 해남 한사눌韓士訥의 실貫자 논 18마지기, 정흔鄭渾의 상糶자 논 9마지기, 장흥長興 채숙공蔡叔公의 창창자 논 12마지기, 사내종 외동外同과 양인 처의 첫째 소생인 계집종 덕춘德春(계축생), 계집종 만비萬非의 첫째 소생인 사내종 원근元斤(갑인생), 계집종 막비莫非의 넷째 소생인 계집종 어린지於鄰之(병진생), 계집종 풍개風介의 셋째 소생인 사내종 업동業同(무진생), 계집종 종금從今의 첫째 소생인 사내종 복룡福龍(경신생), 계집종 유월六月的 셋째 소생인 계집종 상금尙今(병인생), 계집종.²³

등과별득登科別得[경진년(1580) 3월]²⁴ : 남양南陽 비파항琵琶項에 있는 간척 논 50마지기 사사자 24복, 계집종 사금士今의 둘째 소생인 계집종 무금戊今(계미생), 계집종 수금守今의 첫째 소생인 계집종 춘개春介(병진생), 춘개의 첫째 소생인 계집종 양춘良春(을해생), 둘째 소생인 사내종 동정洞丁(기묘생), 사내종 파회破回의 첫째 소생인 사내종 석이石伊(임술생), 계집종 무금戊今의 첫째 소생인 사내종 금금今金(계해생), 사내종 모지毛知의 첫째 소생인 사내종 고성손高成孫(갑자생), 사내종 억손億孫의 셋째 소생인 사내종 춘경春京(을사생), 계집종 역대德代의 셋째 소생인 사내종 귀남貴男(신유생).

별좌택別坐宅 뭇

마포麻浦의 집터, 장흥의 기와집 1채.

부변전답질 : 해남 옷나무 밭, 이봉천李奉天 논 5마지기, 죽정竹井에 있는 이신금李信金의 초草자 논 8마지기, 방죽 주변 은년恩年の 논 7마지기, 청지淸池에 있는 은년恩年の 추秋자 논 7마지기, 와요瓦窯에 있는 은세銀世의 논 7마지기, 이권성李權成의 논 6마지기, 방죽 주변 가지지加知只의 급及자 논 12마지기, 만萬자 논 5마지기, 옛 읍 터에 있는 애愛자 논 9마지기, 화산花山 박영산朴英山의 군群자 논 12마지기, 토산兎山²⁵ 화火자 논 4마지기, 용두龍頭 송운산宋云山의 논 39복1속, 진秦자 논 12복, 집 앞 왕往자 밭 12말5되지기, 옛 읍 터에 있는 육육자 밭 10마지기와 도道자 밭 12마지기, 현내면 장張자 군자답軍資畓 33부6속, 와요瓦窯의 성成자 변천답反川畓 1마지기, 녹산泉山 김걸무金乞武의 밭 10마지기, 화산花山 울동栗洞의 집集자 밭 15복1속, 옛 읍 터에 있는 논 9마지기, 토산兎山 화火자 논 7마지기, 죽정竹井

21 무진년 정월 이 해는 윤유기가 15세 되던 때로 14세인 그의 처 능성구씨(綾城具氏)와 혼인한 해이다. 즉 혼인 때 주는 노비가 신노비이므로 그 지급 시기를 부기(附記)해 둔 것으로 보인다.

22 [병자년(1576) 2월] 생원별급을 시행한 시기를 적은 것이다. 윤유기는 1576년 2월에 식년시에서 생원 3등 23인으로 합격하였다.

23 계집종 ‘婢’라고만 쓰여 있고 이어지는 내용이 없다.

24 [경진년(1580) 3월] 등과별급을 시행한 시기를 적은 것이다. 윤유기는 1580년 별시 문과에서 병과(丙科) 제3인으로 급제하였다.

25 토산(兎山) 별좌택, 즉 윤공(尹鞏)은 토산 현감을 재임한 바 있다.

의 발 19복5속, 사미천沙未川 논 전초 10섬지기와 발 전초 3섬10마지기, 독동음츨冬音²⁶ 전답 합쳐서 7섬10마지기, 파촌波村의 전답 합쳐서 전초 4섬14마지기.

모변전답질 : 장흥의 봉奉자 는 8마지기, 기氣자 발 24복2속, 가입전家入田 의宜자 6복2속과 9복8속, 달達자 발 8마지기, 자慈자 발 9복, 집集자 는 6마지기, 업業자 발 3마지기, 숙夙자 는 9마지기, 흥興자 는 14복3속, 언言자 는 5마지기, 이履자 는 6마지기, 부夫자 는 5마지기, 백伯자 는 6마지기, 마磨자 및 규規자 는 10마지기, 제弟자 는 4마지기, 소所자 는 6마지기, 숙夙자 는 9마지기, 형兄자 는 9마지기, 이履자 는 4마지기, 사寫자 발 5복1속과 22복4속, 속續자 발 5복7속, 솔率자 발 11마지기, 학學자 발 11마지기, 경競자 발 11마지기, 의宜자 발 6마지기, 업業자 발 7마지기.

부변노비질【매득도 아울러서】 : 구지仇知의 셋째 소생인 계집중 덕종德終(갑진생), 계집중 원대元代의 둘째 소생인 계집중 경대庚代(병진생), 계집중 향이香伊의 넷째 소생인 사내중 막동莫同(병진생), 계집중 농금籠今의 둘째 소생인 계집중 구월九月(계해생), 사내중 외동外同의 셋째 소생인 사내중 인이仁伊(을축생), 계집중 석대石代의 여덟째 소생인 사내중 금세今世(임신생), 계집중 검덕檢德의 첫째 소생인 사내중 기량奇良(기유생), ○…○ 사내중 역산億山(경자생), ○…○ 사내중 막금莫金(무술생), 계집중 기리미리里未의 첫째 소생인 사내중 준걸俊乞(신미생), 둘째 소생인 계집중 준덕俊德(○○), 넷째 소생인 사내중 만세萬世(신묘생), 계집중 논대論代의 첫째 소생인 사내중 풍내風乃(을축생), ○…○ 사내중 인수仁守(을사생), 계집중 천비千非의 넷째 소생인 사내중 말세泰世(기묘생), 사내중 개동介同과 양인 처의 첫째 소생인 사내중 득세得世(임술생), 사내중 돌근鬲斤과 양인 처의 둘째 소생인 계집중 분화分花(정묘생), 사내중 군재君才와 양인 처의 첫째 소생인 계집중 돌고鬲古(병인생), 사내중 파회破回와 양인 처의 셋째 소생인 사내중 석산石山(무인생), 사내중 도손道孫과 양인 처의 둘째 소생인 계집중 영추英秋(○○), 넷째 소생인 계집중 신이信伊(갑신생), 사내중 귀희貴希와 양인 처의 넷째 소생인 계집중 희비希非(임술생), 계집중 덕춘德春의 첫째 소생인 사내중 정홍鄭洪(○○), 사내중 윤필允必과 양인 처의 셋째 소생인 사내중 윤귀允貴(임신생), 사내중 인수仁守와 양인 처의 다섯째 소생인 사내중 돌문鬲文(무인생), 계집중 윤지允之의 첫째 소생인 계집중 명화命化(계유생), ○…○ 계집중 마금麻今(○○), 사내중 정손丁孫의 둘째 소생인 계집중 이지二之(기사생), 사내중 귀진櫃珍의 넷째 소생인 사내중 농이籠伊(무술생), 사내중 돌년鬲年의 둘째 소생인 계집중 춘백春白(무술생), 사내중 오석吳石과 양인 처의 넷째 소생인 계집중 윤지允之(무술생), 계집중 윤지允之의 넷째 소생인 사내중 난상蘭尙(○○), 계집중 현지獻之의 둘째 소생인 사내중 사헌司獻(정해생), 셋째 소생인 계집중 사덕四德(기축생), 계집중 전지田之의 첫째 소생인 사내중 목은경目隱京(정해생), 계집중 곳지串之의 첫

26 동음(冬音) 이두로 ‘드름’이라고 발음하며 ‘작은 분지 마을’을 뜻하는 ‘듬’, 현재 지명의 ‘땀’ 등으로도 새길 수 있다. 따라서 독동음(雋冬音)을 현대식으로 읽으면 ‘독땀’이라고 할 수 있다.

째 소생인 사내중 홍복洪福(임진생), 계집중 근주斤朱의 둘째 소생인 사내중 춘합춘合(을유생), 계집중 필금必今의 셋째 소생인 계집중 봉서奉瑞(경오생), 계집중 계월戒月的 넷째 소생인 계집중 유절有節(경오생), 계집중 풍례風禮의 첫째 소생인 사내중 마종太宗(을해생), 사내중 귀희貴希와 양인 처의 셋째 소생인 사내중 희공希工(무오생), 사내중 양순良順과 양인 처의 둘째 소생인 사내중 용복龍卜(기묘생), ○…○ 계집중 울서비粟西非(○○), 사내중 동근同斤의 첫째 소생인 사내중 추손秋孫(○○), ○…○ 계집중 꽃지串之(○○), 계집중 논금論今의 둘째 소생인 사내중 한금汗金(신해생), 계집중 금월今月的 여섯째 소생인 계집중 문덕文德(○○), 계집중 유월六月의 셋째 소생인 계집중 만비萬非(임자생), 계집중 청춘靑春의 첫째 소생인 계집중 향춘香春(갑신생), 사내중 세원世元의 넷째 소생인 사내중 희울希栗(○○), 계집중 은개銀介의 둘째 소생인 사내중 홍수洪守(○○), 사내중 귀한貴汗의 셋째 소생인 계집중 울덕栗德(을축생), 계집중 문비文非의 첫째 소생인 사내중 신징信澄(갑신생), 사내중 석손石孫과 양인 처의 첫째 소생인 계집중 돌덕堦德(○○), 사내중 인회仁回의 둘째 소생인 사내중 인국仁國(임진생), 계집중 업대業代의 둘째 소생인 계집중 업개業介(병술생), ○…○ 계집중 덕개德介(신유생), 계집중 근수斤守의 넷째 소생인 계집중 풍대風代(기미생), 사내중 파회破回의 둘째 소생인 계집중 순대順代(○○), 계집중 논대論代의 둘째 소생인 사내중 우일右一(경오생), 사내중 득세得世의 첫째 소생인 사내중 득남得男(○○), 사내중 인이仁伊와 양인 처의 첫째 소생인 사내중 ○○.

모변노비 : 사내중 한문汗文과 양인 처의 첫째 소생인 계집중 한비汗非(○○), 사내중 청석靑石과 양인 처의 셋째 소생인 계집중 중비終非(경인생), 계집중 선금先今의 둘째 소생인 계집중 매화梅花(무술생), 사내중 모리毛羅와 양인 처의 둘째 소생인 계집중 덕금德今(○○), 계집중 하대何代의 둘째 소생인 계집중 난금蘭今(○○), 사내중 서동리鋤冬里와 양인 처의 넷째 소생인 계집중 말생厓生(○○), 계집중 순화順花의 첫째 소생인 계집중 원화元花(갑자생), ○…○ 의남義男(○○), 계집중 원화의 첫째 소생인 사내중 옥량玉良(○○), 계집중 하대何代의 둘째 소생인 계집중 난개關介(정축생).

도망하여 간 곳을 모르는 노비질 : 사내중 석지石只의 넷째 소생인 계집중 질당대叱唐代(무자생), 사내중 희조希趙와 양인 처의 첫째 소생인 계집중 희화希花(기축생), 사내중 조원趙元과 양인 처의 첫째 소생인 계집중 논개論介(임신생), 계집중 배대裴代의 셋째 소생인 사내중 족산足山(기축생), 계집중 녹양綠楊의 둘째 소생인 사내중 삼울三栗(○○), 계집중 금이덕金伊德(무오생), ○…○ 계집중 돌덕堦德(○○), ○…○ 사내중 수세守世(○○), 계집중 경대京代의 넷째 소생인 계집중 점대占代(임인생), 계집중 금월今月的 일곱째 소생인 사내중 윤추允秋(갑술생), 계집중 깃금其叱今의 둘째 소생인 계집중 정질비定叱非(○○), 사내중 막산莫山의 셋째 소생인 사내중 향복香卜(임인생), 사내중 공작孔雀의 첫째 소생인 사내중 앵무鶯戊(○○), 둘째 소생인 사내중 산진山陳(○○), 사내중 검성檢成, 계집중 춘대春代.

포작浦作 노비질 : 계집중 문비文非의 넷째 소생인 사내중 점사點沙(정묘생), 계집중 막개莫介의 첫째 소생인 계집중 막덕莫德(○○), 사내중 막근莫斤의 넷째 소생인 계집중 건리덕件里德(병술생), 사

내중 돌장鬚壯과 양인 처의 둘째 소생인 계집중 돌심鬚心(신미생), 사내중 차음사次音沙의 첫째 소생인 사내중 좃사리注叱沙里(기축생), 사내중 석장石壯의 셋째 소생인 사내중 돌손石乙孫(경신생), 계집중 평덕平德의 셋째 소생인 사내중 평모平毛(명술생), 사내중 산진山眞의 둘째 소생인 계집중 흥덕欣德(병자생), 여섯째 소생인 사내중 나적리羅赤里(임진생), 계집중 문덕文德의 넷째 소생인 사내중 헛세虛叱世(신사생), 계집중 흥지欣之의 넷째 소생인 계집중 흥비欣非(○○), 계집중 군지君之의 셋째 소생인 사내중 언동彦同(임진생), 계집중 송금宋今의 첫째 소생인 사내중 윤세允世(○○), 사내중 돌장鬚壯의 셋째 소생인 계집중 금화今化(갑술생).

신노비질[병자년(1576) 5월] : 계집중 곤지昆之의 첫째 소생인 사내중 금이金伊(계축생), 계집중 석대石代의 첫째 소생인 사내중 수원守元(신해생), ○…○ 사내중 근세斤世(○○), 계집중 막비莫非의 다섯째 소생인 사내중 막실莫失(○○), 계집중 수근守今의 둘째 소생인 사내중 수근守斤(임술생), ○…○ 계집중 사비士非(정사생), 계집중 덕종德終의 첫째 소생인 계집중 향이香伊(경신생), 군수郡守²⁷의 사위 김선전관宣傳官²⁸ 처가 혼인 때 받은 사내중 순이順伊.

끝.

통훈대부通訓大夫 전前 행行 옥천군수沃川郡守 윤尹[착명][서업]

필집筆執 절충장군折衝將軍 행行 충무위忠武衛 대호군大護軍 지제교知製敎 윤尹[착명][서업]

전前 도화서圖書署 별제別提 통훈대부通訓大夫 윤尹[착명][서업]

兪知宅文記

萬曆二十四年丙申十月二十一日同生和會文記

右成文者 父母主下世後終喪▣▣²⁹緣吾輩不得齊會一處 田地藏獲尙未分占 茲者始據花名現付奴▣(婢)³⁰田畝置簿 執籌分衿 一承重條及孳同生等衿 並依法典 分數施行 一▣▣浦作奴婢 不知去處者 則別爲執籌分衿 一孳同生等家藏文記 則只錄渠四家所分得之數 而吾輩所分衿 則不錄於其文記 以簡文券 一遠方奴婢 必有遺漏者 隨後詳盡聞見 更爲執籌平分者 沃川宅衿 承重條 蓮池洞家代 海南伏金白雲月畝七斗落 千石白畝六斗 加岾金重甫第畝七斗 家前伏張田九卜 丹今一生婢風介年戊戌 婢夏德一生奴冬栢年壬辰 婢丙之一

27 군수(郡守) 옥천 군수인 윤유심을 지칭한다.

28 김(金) 선전관(宣傳官) 윤유심의 사위 김응복(金應福)이다. 윤유심의 딸이 혼인할 때 받은 사내중 순이를 윤유심 누이의 몫으로 재분배한 것이다. (정구복, 「해제」 『고문서집성』3 해남윤씨편 정서본, 1986, 5쪽.)

29 ▣▣ 원문의 마멸 부분을 이와 같이 글자 수만큼 표시한다. 글자수를 알지 못할 때에는 ▣…▣로 한다. 이하 동.

30 ▣(婢) 한 글자가 마멸되어 확인할 수 없지만 ‘비(婢)’로 추정할 수 있다.

生婢彦心年壬辰 奴守億良妻一生奴舜伊年辛卯 婢論今二生婢彦代年甲申 婢業代一生奴戒
 男年
 甲申 奴守億二生婢化非年甲午 婢新之一生奴大獻年甲申 婢石代六生婢銀介年甲子 奴芑斤
 良妻二生奴
 芑屎年辛未 婢風禮二生奴尔進年戊寅 婢延朱年庚申 婢香雲年庚寅 奴何松二生婢何代年己
 未
 婢漢非一生奴彦常年癸巳 長興畚二十斗落 家前田廿八卜又廿卜 浦作奴山福一生婢德伊年
 丁卯
 三生奴山世年辛未 例分秩 海南白蓮洞家舍一坐 父邊田畚秩 海南縣內驛
 近處伏畚全四石六斗落 家前田牟八斗落 驛前黃夔田南邊牟十二斗落 古縣愛畚九
 斗 田二庫合十一斗落 又十四卜七束 花山鍾畚三斗落 奴婢秩 奴豆他非二生奴君才年庚
 子 婢德之三生婢栗德年甲申 婢斤守七生奴彦戒年丙寅 婢論代二生婢風德年丁丑 奴破回一
 生
 婢岩之年庚午 婢千非三生奴金世年甲戌 奴貴希二生奴希同年庚申 奴石伊一生奴末伊年戊
 辰 婢欣之
 二生奴道孫年己酉 婢今月一生婢西代年庚申 奴芑山良妻一生奴凡孫年甲辰 婢斤守三生奴
 朴禮年丙辰 婢
 斤守二生婢風禮年癸丑 婢希非一生奴青春年甲申 奴良順二生奴守龍年戊寅 婢業代四生婢
 銀春年庚
 寅 奴允必五生奴莫世年甲戌 奴貴希六生奴希一年壬申 婢斤珠一生奴延風年己亥 奴吳石一
 生婢
 德之年壬寅 婢德今一生奴仁回年乙丑 婢占代一生婢丙之年丙寅 婢德今七生奴德世年甲申
 奴良順二生
 婢龍德年丙子 婢德今六生奴連伊年庚辰 婢論代四生奴南斤年己卯 婢德今八生奴末叱世年
 丁亥 奴檢叱同
 良妻五生奴戊肅年己卯 奴石伊三生奴順希年庚辰 婢今月二生婢於鄰介年壬戌 婢斤珠二生
 奴義風
 年己丑 婢德從三生婢禮仁年乙酉 婢斤守一生奴世元年丙午 婢論今六生婢連介年乙未 婢龍
 代二生奴奇連年
 丁未 婢九月一生婢春代年乙酉 婢德今三生婢銀之年己巳 婢石代五生奴守億年甲子 婢西音
 之二生婢西音之二生
 婢³¹論西非年壬辰 婢莫之三生婢論今年辛亥 婢論今四生奴貴奉年己丑 婢加外德一生奴斤

珠年丁巳 奴夏山一
 生奴凡山年丙寅 婢銀代一生婢彥生年癸巳 婢己里末三生婢俊花年辛巳 奴大彥良妻二生婢
 愛春年壬辰
 婢夏古一生奴得守年丁亥 婢斤珠四生奴風男年壬辰 奴能孫二生奴石孫年辛 丑婢千非三生
 婢千花年壬申 奴大
 彥四生婢愛生年乙未 婢千非一生婢銀代年甲子 奴世元一生奴希春年壬午 奴朴禮一生奴希
 男年癸巳 婢今月二生奴於里
 年乙丑 婢風介四生婢德年介年己巳 婢銀之一生婢今伊年乙未 奴允必一生奴允昌年乙丑 婢
 墨伊三生婢千非年甲辰 奴
 吳石二生婢德今年丙午 婢石代三生婢石介年乙卯 石介一生婢眞玉年己巳 二生婢春伊年辛
 巳 三生奴仁吉年
 戊子 母邊田畝秩 長興新基夫山等處畝全四石十六斗落 又五十七卜三束 田兩庫合牟十斗落
 又
 八庫合六十五卜四束 氣田廿三斗內別坐宅半分 方伊峙畝全四石七斗落 田全二石落
 父邊田畝加分 海南襄荷洞畝全三石十二斗落 田牟廿斗落 長湍東之院畝卅斗落一結八卜坡
 州馬井里畝
 全三石三斗落 又一結九束 田五日半耕 沔義等洞高山前後并一結量 楊州墓山下賈得陳田
 母邊奴婢秩 奴石守一生婢順花年丁亥 婢香雲三生婢萬介年 奴江石一生婢蘭伊年甲寅 奴鋤
 冬乙伊三生奴
 有良年壬午 五生婢今年丁亥 奴命孫一生婢栗德年丙戌 奴凡石一生奴凡良年丁亥 奴凡伊
 四生奴命孫
 年戊辰 奴毛羅五生奴黍男年癸巳 奴永孫二生奴長守年癸亥 奴命孫三生奴南世年壬辰 婢蘭
 伊三生婢
 愛春年甲午 奴毛羅四生婢德禮年丙戌 奴千每一生奴凡石年己卯 奴長守一生奴黑守年癸巳
 婢夢代三生
 婢永每年壬申 流亡秩 婢愛永 婢戊之 婢廣非 婢綠楊 婢全非 婢安之 婢甫老未 奴春丹
 婢希春 婢龍今 奴青回 奴誌巳 婢今之 奴銀甫 奴望愧 婢青德 奴萬甫 婢李代
 浦作秩 婢文非四生奴次音沙年壬申 奴莫斤二生婢莫今年庚辰 婢欣德二生婢每一年戊寅 婢
 夏今

31 西音之二生婢 원문이 중복되어 두 번 쓰였다.

二生婢文非年乙未 婢文非一生奴莫斤年庚戌 婢文非二生奴文石年丁未 奴次音沙二生奴文山年

辛卯 婢文德一生奴平世年癸酉 婢芑壯二生婢阿今年丙辰 奴文孫一生婢文德年壬子 婢阿今一生婢阿之年戊寅 奴山福二生婢山介年丁丑 新奴婢秩 婢難守一生奴五連年丙午 一生奴萬伊年辛亥 生奴長孫年己酉 婢仇知四生奴奇世年壬子 婢龍非三生婢洪仙年戊申 奴京守一生婢桂花年乙巳 婢士今四生婢丹今年戊申 生員別得[丙子二月]³²古縣內往畚十斗落 竹井黃準調畚廿六斗落 長興伯畚三庫合十三斗落 婢苳德二生婢元非年己酉 婢六月二生婢尚德年丁巳 婢昆之三生奴江孫年甲寅 婢風介二生奴德守年丙寅 婢芑壯三生婢芑西非年丁卯 奴外同良妻二生婢德介年乙卯 婢六月一生奴尚工年 奴汗文良妻二生奴汗守年乙丑 奴文孫良妻二生婢平德年丙寅

僉知宅衿 於義洞家代 南陽尔道伏瓦家十二間空代并 父邊田畚秩 海南竹井朴奉同畚九斗落 防築春京畚十斗落 防築止良畚十二斗落 趙莫洞韓礪畚九斗落 清池善金畚五斗落 元堂車信畚十斗落 芑堂恩年畚二斗落 家前田三斗五升落 驛前黃夔田北邊十二斗五升落 古縣讓田五斗落 育田五斗落 李畚五斗落 珍畚四斗落 干乙代恩年畚七斗落 良尺洞芑之畚三斗 白也只草畚二庫六斗落 之畚三斗 太田五斗落 掘浦堰畚九石落 南陽堰畚賢字十

斗 事字十斗 水山陸畚善字二斗 賢字三斗 房應文夙田十一卜 資田一斗 又[水山]二日耕 水山作田四斗

奴婢秩 婢春鶴一生奴春福年戊辰 婢允非二生奴金世年丁巳 婢斤守六生奴大彥年甲子 故奴信澄良妻允之

一生婢有德年辛酉 二生奴光守年庚午 婢斤守五生婢業代年辛酉 婢業代一生奴戒龍年辛巳 奴信澄良妻

允之三生奴德義年壬申 四生奴光乃年丙子 婢代今五生婢獻之年辛酉 奴道孫良妻元非二生奴朴孫年癸

未 婢風禮四生奴風從年丁亥 婢代今三生婢論代年戊申 奴俊希良妻禮今一生奴芑成年己巳 奴千石良妻十

月二生奴萬山年庚申 婢德今四生奴芑同年辛未 婢允之二生婢命西非年乙亥 奴丁孫良妻二德一生

婢芑德年乙丑 婢獻之一生婢虛叱德年庚辰 奴允必良妻莫德二生婢論花年壬申 奴汗貴良妻

32 [丙子二月] '생원별록' 밑에 2행의 작은 글씨로 쓰여 있다.

德只一生奴千
 貴年辛酉 二生奴世千年丁丑 三生奴芑屎年丙戌 婢莫壯一生奴汝趨里年己丑 奴檢叱同良妻
 四生奴鄭
 希年甲戌 奴道孫良妻元非二生奴元孫年丁丑 奴汗貴良妻德只四生奴守明年戊子 五生奴非
 乃年壬辰
 婢思郎介一生奴同伊年庚午 故奴檢叱同良妻丁代二生奴鄭文年庚午 三生婢順德年癸酉 婢
 論今一生婢論
 花年癸酉 婢西音之一生奴論己里年己丑 婢延花一生奴春孫年辛酉 奴大彥良妻夢守一生奴
 大順年乙酉 婢莫壯
 二生奴逵世年庚寅 婢萬非一生婢愛今年丁丑 婢泉丁三生奴趙得年癸酉 婢石代四生婢青春
 年壬戌 婢莫代
 一生婢莫壯年戊辰 婢希非二生奴德春年丁亥 奴世元良妻德伊四生奴希生年壬辰 婢論花一
 生婢分花年丙戌 婢論今二生奴汗福年丙子 婢延花三生婢彥今年壬申 奴銅基知良妻一之一
 生奴二倫年己
 丑 故奴巴眞良妻夢非一生婢九月年乙丑 二生奴毛獨年丁卯 故婢論今一生婢萬花年丙子 婢
 了
 伊之一生奴滄同年乙亥 奴自孫良妻古邑之一生婢骨仇之年己亥 婢骨仇之一生奴金同
 年戊午 奴金同良妻春伊一生婢奉花年甲午 故婢金伊德一生婢九月年甲子 故
 婢千代二生奴李福年辛酉 婢芑古伊二生婢允花年壬辰 婢允非一生婢己里未年辛
 酉 故婢吉德二生奴破回年庚子 奴巾伊良妻并產二生婢春非年己巳 婢論代
 五生奴風丹年壬午 婢論龍代三生奴斤同年庚戌 婢億非一生奴江山年甲子
 奴了債良妻石之并產一生婢月代年乙未 婢論今三生婢論介年己卯 婢論今四生婢貴
 花年庚寅 故奴守諸良妻愛珠一生奴朱色年丙申
 母邊田畚秩 長興草畚六卜七束 和畚十三卜七束 合四斗落 弟畚四斗落 臨畚二庫并四斗落 薄
 畚八斗落 基畚五斗 履畚四斗 受畚六斗 思畚五斗 唱畚一斗五升 儀畚六斗又十斗 唱
 畚六斗 樂田三庫合十斗落 夫山家代田太種七斗落 廣田八斗落 率田十斗 典田三庫 氣
 田三庫 合七斗落又五斗落 圖田獸田合七斗 業田六斗 兄田六卜八束 弟田五卜五束 大川邊
 孔田
 十二卜 榮田十四卜八束又十二卜二束 定田四卜六束九卜二束三卜七束 枝田二卜三束七束
 竹林田九卜
 奴婢秩 婢可眞二生婢夢代年己亥 婢夢代一生婢仁卜年己未 二生奴四更年壬戌 奴成伊四生
 婢玉守

年己巳 婢香雲一生奴鋤冬里年甲寅 奴鋤冬里良妻今禮二生奴德良年庚辰 奴破回良妻一生
 奴石
 乙年年庚申 奴凡伊良妻二生婢命玉年乙丑 婢守今三生奴守眞年壬申 婢元花一生婢玉今年
 戊子
 奴毛羅良妻四生婢德之年辛巳 婢何代二生婢寶倍年甲申 奴凡石良妻三生婢正月年己丑 奴
 命孫良妻良妻³³二生
 奴命男年己丑 婢命玉一生婢春月年辛巳 婢龍非一生奴非石年己亥
 浦作奴婢不知去處秩 婢文德六生奴次音實年乙亥 婢文德三生婢論介年壬戌 奴芑孫良
 妻 一生奴芑
 金年辛卯 婢芑心一生奴風樂年壬辰 婢 三生奴檢孫年戊寅 婢央今一生奴風世年甲子
 婢芑壯四生婢欣介年
 庚辰 婢文德五生婢芑今年戊寅 婢 一生奴車福年辛 巳奴文孫良妻二生婢平介年辛未 奴
 莫介三生婢莫之年癸
 未 奴山眞四生婢長上年戊子
 流亡不知存沒秩 婢廣非一生婢愛泉年壬午 奴千石良妻十月四生婢愛敬年甲申 婢億今三生
 婢其叱今年己未 婢
 苧邑之二生婢天代年辛未 三生奴亡終年癸酉 奴無連四生婢芑非年甲子 同婢一生婢已之年
 乙丑 婢其叱今四
 生婢壬之年壬辰 奴有才良妻一生奴君才年乙酉 婢文德三生奴萬工年庚辰 婢億今五生婢李
 今年辛未
 奴孔雀三生奴手陳年丁丑 奴春伊良妻二生奴李尙年戊子 婢綠楊四生奴春世年丁丑 奴石守
 三生婢順介年
 辛巳 婢億代四生奴者斤知年己巳 婢莫德一生婢論代年辛巳 二生婢億非年戊子
 新奴婢秩 婢毘德二生奴屯山年丙午 婢能非四生奴億孫年丁未 婢甫德二生奴良世年丙辰 婢
 玉伊三生奴九京年
 乙卯 婢巧梅一生婢春仙年乙巳 婢嗇德四生婢莫今年壬子 奴何松一生婢何今年戊午 婢石代
 七生婢玉伊年丁巳 戊辰正月
 生員別得[丙子二月] 海南韓士訥實字畚十八斗 鄭渾霜字畚九斗 長興蔡叔公唱畚十二斗 奴
 外同良妻一生婢德春年癸丑

33 良妻良妻 원문에 같은 글자가 두 번 쓰여 있다.

婢萬非一生奴元斤年甲寅 婢莫非四生婢於鄰之年丙辰 婢風介三生奴業同年戊辰 婢從今一
 生奴福龍年庚申 婢六月三
 生婢尙今年丙寅 婢
 登科別得[庚辰三月] 南陽琵琶項堰畚五十斗落 事字廿四卜 婢士今二生婢戊今年癸未 婢守
 今一生婢春介年丙辰 春介
 一生婢良春年乙亥 二生奴洞丁年己卯 奴破回一生奴石伊年壬戌婢戊 今一生奴今年癸亥
 奴毛知一生奴高成孫年甲子 奴億
 孫三生奴春京年乙巳 婢億代三生奴貴男年辛酉
 別坐宅衿 麻浦家代 長興瓦家一坐 父邊田畚秩 海南漆田李奉天畚五斗 竹井李
 信金草畚
 八斗 防築恩年畚七斗 清池恩年秋畚七斗 瓦窰銀世畚七斗 李權成畚六斗 防築加知只及畚
 十二斗萬畚五斗
 古縣愛畚九斗 花山朴英山群畚十二斗 兎山火畚四斗 龍頭宋云山畚卅九卜一束 秦畚十二卜
 家前往田十二斗五升
 古縣育田十斗 道田十二斗 縣內張字軍資畚卅三卜六束 瓦窰成字反川畚一斗 泉山金乞武田
 十斗 花山栗洞集田十五卜一束
 古縣畚九斗 兎山火畚七斗 竹井田十九卜五束 沙未川畚全十石落 田全三石十斗 禿冬音田畚
 并七石十斗 波村田畚并全四
 石十四斗落 母邊田畚秩 長興奉畚八斗落 氣田廿四卜二束 家入田宜字六卜二束 九卜八
 束達田八斗 慈田八卜 集
 畚六斗 業田三斗 夙畚八斗 興畚十四卜三束 言畚五斗 履畚六斗 夫畚五斗 伯畚六斗 磨規畚
 十斗 弟畚四斗 所畚六斗
 夙畚九斗 兄畚九斗 履畚四斗 寫田五卜一束又廿二卜四束 又續田五卜七束 率田十一斗 學
 田十一斗 競田十一斗 宜田
 六斗 業田七斗 父邊奴婢秩[買得并] 婢仇知三生婢德終年甲辰 婢元代二生婢庚代年丙辰
 婢香伊四生奴莫同年
 丙辰 婢籠今二生婢九月年癸亥 奴外同三生奴仁伊年乙丑 婢石代八生奴今世年壬申 婢檢德
 一生奴奇良年己酉 生
 奴億山年庚子 生 奴莫金年戊戌 婢己里末一生奴俊乞年辛未 二生婢俊德年 四生奴萬
 世年辛卯 婢論代一生奴風
 乃年乙丑 生奴仁守年乙巳 婢千非四生奴歪世年己卯 奴介同良妻一生奴得世年壬戌 奴
 夏斤

良妻二生婢分花年丁卯 奴君才良妻一生婢芑古年丙寅 奴破回良妻三生奴石山年戊寅 奴道孫

良妻二生婢英秋年 四生婢信伊年甲申 奴貴希良妻四生婢希非年壬戌 婢德春一生奴鄭洪年 奴允必良妻三生奴允貴年壬申 奴仁守良妻五生奴芑文年戊寅 婢允之一生婢命化年癸酉 生婢麻今年 奴丁孫二生婢二之年己巳 奴橫珍四生奴籠伊年戊戌 奴芑年二生婢春白年戊戌 奴吳石良妻四生婢允之年戊戌 婢允之四生奴蘭尙年

婢獻之二生奴司獻年丁亥 三生婢四德年己丑 婢田之一生奴目隱京年丁亥 婢串之一生奴洪福年壬

辰 婢斤朱二生奴春合年乙酉 婢必今三生婢奉瑞年庚午 婢戒月四生婢有節年庚午 婢風禮一生奴了

宗年乙亥 奴貴希良妻三生奴希工年戊午 奴良順良妻二生奴龍卜年己卯 生婢栗西非年 奴同斤一生奴秋孫年 生婢串之年 婢論今二生奴汗金年辛亥 婢今月六生婢文德

年 婢六月三生婢萬非年壬子 婢青春一生婢香春年甲申 奴世元四生奴希栗年 婢銀介二生奴洪守年 奴貴汗三生婢栗德年乙丑 婢文非一生奴信澄年甲申 奴石孫良妻一生婢芑

德年 奴仁回二生奴仁國年壬辰 婢業代二生婢業介年丙戌 生婢德介年辛酉 婢斤守四生婢風代年己未 奴破回二生婢順代年 婢論代二生奴右一年庚午 奴得世一生奴得男年 奴仁伊良妻一生奴 年 母邊奴婢 奴汗文良妻一生婢汗非年 奴青石良妻三生婢終非年庚寅 婢先今二生婢梅花年戊戌 奴毛羅良妻二生婢德今年 婢何代二生婢蘭今年

奴鋤冬里良妻四生婢歪生年 婢順花一生婢元花年甲子 生義男年

婢元花一生奴玉良年 婢何代二生婢蘭介年丁丑

流亡不知去處秩 奴石只四生婢叱唐代年戊子 奴希趙良妻一生婢希花年己丑 奴趙元良妻一生

婢論介年壬申 婢裴代三生奴足山年己丑 婢綠楊二生奴三栗年 婢金伊德年戊午 婢

芑德年 奴守世年 婢京代四生婢占代年壬寅 婢今月七生奴允秋年甲戌 婢其叱今

二生婢定叱非年 奴莫山三生奴香卜年壬寅 奴孔雀一生奴鶯戊年 二生奴山陳年 奴檢成婢春代

浦作奴婢秩 婢文非四生奴點沙年丁卯 婢莫介一生婢莫德年 奴莫斤四生婢件里德年丙戌 奴芑壯良妻二

生婢芑心年辛未 奴次音沙一生奴注叱沙里年己丑 奴石壯三生奴石乙孫年庚申 婢平德三生

奴平毛年丙戌 奴

山眞二生婢欣德年丙子 六生奴羅赤里年壬辰 婢文德四生奴虛叱世年辛巳 婢欣之四生婢欣非年

婢君之三生奴彦同年壬辰 婢宋今一生奴允世年 奴彳壯三生婢今化年甲戌

新奴婢秩[丙子五月] 婢昆之一生奴金伊年癸丑 婢石代一生奴守元年辛亥 生奴斤世年 婢莫非五生奴

莫失年 婢守今二生奴守斤年壬戌 生婢士非年丁巳 婢德終一生婢香伊年庚申

郡守女婿金宣傳官妻新奴順伊

際

通訓大夫前行沃川郡守尹[着名][署押]

筆執折衝將軍行忠武衛大護軍知製 教尹[着名][署押]

前圖畫署別提通訓大夫 尹[着名][署押]

3-1-2) 1615년 윤유심尹唯深 자녀 화회문기와會文記와 배탈사급입안背頓斜給立案 3건

[윤유심尹唯深 사망 3년 후인 1615년(광해군 7)에 윤선도 생가 3남매가 모여 합의 하에 재산을 나눈 화회문기와會文記와 배탈사급입안背頓斜給立案 3건]

만력萬曆 43년 을묘년(1615) 3월 20일 동생同生 화회 성문

이 문기를 작성한다. 친가 외가 쪽에서 전래한 전답과 노비를 전해 내려오는 문권文券과 화명花名을 참고하여 헤아려서 몫을 나눈다.

일. 승중조承重條 전답과 노비는 아버지께서 살아 계실 때 이미 문서를 작성하여 허급許給 했으므로 지금 다시 꺼내지 않는다.³⁴

일. 몫으로 으레 나누는 전답은 각자 한 지역의 농장을 온전하게 차지했으므로 해당 본문기本文記³⁵만 보내고 전답의 마지기 수, 자호字號, 면적 등은 다시 열거하지 않는다.

일. 열擎 동생 몫은, 노비는 법전法典에 의거하여 숫자를 나누되 전답은 나눠야하는 수효를 초과하

34 승중조...않는다 실제로 아래 '생원대 몫'에서 '승중조'는 집터(家代)만 언급하고 있다. 그밖의 제사를 모시는 명목으로 별도로 물려 준 재산의 내역은 '봉사별득(奉祀別得)' 항목으로 따로 기록하였다.

35 본문기(本文記) 토지 등을 매매할 때 이전에 거래 또는 증여될 당시에 작성된 문서를 첨부하는데 이를 본문기 또는 구문기(舊文記)라고 한다. 여기서는 각자가 상속받은 전답에 대한 근거 문기를 말한다.

더라도 양하동襄荷洞 전답 전체를 준다. 그리고 그 문권에는 우리들의 몫을 기록하지 말아서 문권을 간결하게 한다.

일. 빠진 노비와 도망 중인 노비 등은 나중에 나타나는 대로 나눈다.

침지택鎗知宅³⁶ 몫 …〈분재 내역 생략〉…

생원택³⁷ 몫 …〈분재 내역 생략〉…

진사택進士宅³⁸ 몫 …〈분재 내역 생략〉…

정부인貞夫人 윤씨尹氏[인]

필집筆執 유학幼學 윤尹[작명]

진사進士 윤尹[작명]

[배탈사급입안背傾斜給立案]³⁹ 1

만력萬曆 43년(1615, 광해군 7) 6월 5일 장례원掌隸院

재주財主인 정부인貞夫人 윤씨尹氏가 이 문기에 기재된 사내종 금수今守와 양인 처가 함께 낳은 계집종 금옥金玉을 동성同姓의 삼촌 숙부 유순唯順에게 팔았으므로 탈하傾下⁴⁰를 시행함. 끝.

당상堂上[서업]

낭청郎廳[서업]

[장례원인掌禮院印]

[배탈사급입안] 2

만력萬曆 44년(1616, 광해군 8) 2월 7일 장례원掌隸院

재주財主 숙부인淑夫人 윤씨가 이 문기에 기재된 계집종 몽업夢業의 첫째 소생인 계집종 사옥四玉, 넷째 소생인 사내종 사룡四龍, 다섯째 소생인 사내종 말내末吡乃, 여섯째 소생인 계집종 막내莫乃와 계집종 말향末吡香의 둘째 소생인 사내종 중생重生, 넷째 소생인 사내종 업생業生, 다섯째 소생인 계집종 업녀業女, 일곱째 소생인 계집종 효녀孝女와 계집종 진옥眞玉의 첫째 소생인 계집종 옥춘玉春, 셋째 소생인 계집종 말녀末吡女와 계집종 효성孝成의 첫째 소생인 계집종 신이信伊와 계집종 원향遠香의 둘째 소생인 사내종 승인勝仁 등을 남동생인 진사 윤선도尹善道에게 팔았으므로 탈하傾下를 시행함. 끝.

36 침지택(鎗知宅) 윤선도의 누님인 김응복(金應福) 처를 가리킨다.

37 생원택 윤선도의 친형인 윤선언(尹善言)이다.

38 진사택(進士宅) 윤선도를 가리킨다.

39 배탈사급입안(背傾斜給立案) 분재기나 매매문기 등의 뒷면에 사급입안이 수록되었을 때 이를 배탈사급입안이라고 한다. 앞면 문기에 수록된 노비 등의 일부가 타인에게 방매되어 소유권이 변동했을 때 앞면의 해당 부분에 일정 표시를 하고 변동 내역을 뒷면에 쓰고 이를 공증받은 것이다.

40 탈하(傾下) 변동 요인이 생겨 제외하는 것을 말한다. 즉 위 회회문기에 기재되었는데 매매(賣買)로 인해 문서에서 제외한다는 의미이다. 금옥의 이름은 기재되지 않았으나 그의 아버지 금수가 기재되어 있어 근본 내력이 확인되므로 본 문기로서 탈하사실을 기록한 것이다.

당상堂上[서업] 낭청郎廳[서업] [장례원인掌禮院印]

[배달사급입인] 3

강희康熙 5년(1666, 현종7) 4월 29일 서울 거주 유학 윤선각尹善覺이 소장을 올린 데 대해 노비 주인인 적객謫客 윤선도가 계집종 신이信伊의 득후得後 다섯째 소생 계집종 승향勝香(계유생), 이 계집종 승향의 첫째 소생인 계집종 혜훤(계사생), 둘째 소생인 사내종 지장枝障(병신생), 셋째 소생인 계집종 능菱(무술생), 넷째 소생인 계집종 화花(신축생), 다섯째 소생인 계집종 만훤(을사생) 등 6구 및 이들 노비의 후소생을 아울러 영구히 허급할 때 필집筆執을 맡았던 아들 인미仁美를 불러 확인하고 영구히 사급斜給해 준 것이 확실함. 끝.

관官 [서업] [인]

萬曆四十三年乙卯三月二十日 同生和會成文

右成文者

內外邊田畝奴婢 考據傳來文券及花名執籌分衿 一承重條 田畝奴(婢) 父(母)生時已爲成文許給 故今不復出 一例分田畝 則各全執一處農所 故送其本文記 而斗數字卜不復列錄 一孽同生衿奴婢 則依法典分數 田畝則雖過分數 襄荷洞田畝全數許給 而渠之文記 則不錄吾輩所分 以簡文券 一遺漏奴婢及在逃奴婢等 後日隨現隨分者

兪知宅衿 …〈분재 내역 생략〉…

生員宅衿 …〈분재 내역 생략〉…

進士宅衿 …〈분재 내역 생략〉…

際

貞 夫人 尹氏[印]

筆執幼學 尹[着名]

進 士 尹[着名]

[背頃斜給立案] 1

萬曆四十三年六月初五日 掌隸院

財主貞夫人尹氏亦 右文記付奴今守良妻并

産親得後所生婢金玉乙 同姓三寸叔唯順

處 放賣乙仍于 頃下施行印

堂上[署押] 郎廳[署押] [掌禮院印]

[背頃斜給立案] 2

萬曆四十四年二月初七日 掌隸院

財主淑夫人尹氏亦 右文記付婢夢業一生婢四玉四生奴四龍
 五生奴末叱乃六生婢莫乃 婢末叱香二生奴重生四生奴業生五生婢
 業女七生婢孝女 婢眞玉一生婢玉春三生婢末叱女 婢孝成
 一生婢信伊 婢遠香二生奴勝仁等乙 同生甥進士尹善
 道亦中 放賣乙仍于 頃下施行印
 堂上[署押] 郎廳[署押] [掌禮院印]
 [背頃斜給立案] 3
 康熙五年四月二十九日 京居幼學尹善覺狀以 奴婢主謫客
 尹善道亦 婢信伊得後五所生婢勝香年癸酉 同婢勝香一所生婢
 蕙年癸巳 二所生奴枝樟年丙申 三所生婢菱年戊戌 四所生婢花年辛
 丑 五所生婢蔓年乙巳等陸口及同奴婢後所生并以 永永許給時
 筆執子仁美推闕 永永斜給的實印
 官[署押] [印]

3-1-3) 1615년 윤유심 자녀 화회문기와會文記의 배탈사급입안背頃斜給立案 2건

[앞의 화회문기와 동일한 분재기의 뒷면에 수록된 배탈사급입안背頃斜給立案 2건]

[배탈사급입안] 1

만력 43년(1615, 광해군 7) 6월 초5일 장례원掌隸院

재주 윤씨가 이 문기에 들어있는 계집종 인선仁仙의 여덟째 소생 신비新婢 종이終伊와 이 계집종의
 첫째 소생인 사내종 의선義善 및 둘째 소생인 사내종 의세義世 등을 첨지 박진룡朴震龍에게 방매했으
 므로 뒷면에 사유를 기록함.

[배탈사급입안] 2

무술년(1658, 효종 9) 10월 30일 해남현에 거주하는 윤채상尹綵狀이 소장을 올린 데 대하여, 전 별
 좌 윤인미尹仁美의 전 계집종 도일개道一介의 소생인 계집종 논이論伊와 논이의 소생인 계집종 순화順
 花, 순화의 첫째 소생인 계집종 복녀福女와 둘째 소생인 계집종 복련福連 등 2구口를 후소생後所生과 함
 께 매입할 때 증인인 동성3촌 조카 유학 윤이후尹爾厚, 증보訂保였던 동성 3촌숙 윤선양尹善養 등을
 추열推闕하고 윤간尹練에게 사급함. 끝.

행 현감[서압]

[背頃斜給立案] 1

萬曆四十三年六月初五日 掌隸院

財主尹氏亦 右文記付 婢仁仙八所生新婢終伊及同婢一所生奴義善 二所生奴義世等乙 僉知朴震龍處放賣乙仍于 頃下施行事

[背頃斜給立案] 2

戊戌十月三十日 縣居尹綵狀以 前別坐尹仁美前 婢道一介所生婢 論伊 論伊所生婢順花 右婢順花一所生婢福女 二所生婢福連等兩口 後 所生并以買得時 訂人同姓三寸姪幼學尹爾厚 訂保同姓孽三寸叔尹善養 等推閱 尹練處斜給 印 行縣監(押)

3-1-4) 1615년 윤유심 자녀 화회문기 초본草本

[1615년(광해군 7)에 윤유심의 자녀들이 부모의 재산을 분할상속하기 위해 재산목록을 나열한 분 재기 초본 중 일부본]

만력萬曆 43년(1615, 광해군 7) 을묘 화회和會⁴¹

계집중 흔지欣之의 둘째 소생인 사내중 도손道孫 기유생.

계집중 사랑개思郎介.

계집중 근주斤珠의 셋째 소생인 사내중 의풍義風 기묘생.

사내중 천화千花와 양인 처의 첫째 소생인 사내중 범석凡石 기묘생.

계집중 덕금德今의 여섯째 소생인 사내중 연이連伊 경진생.

계집중 연옥連玉.

계집중 만개萬介의 첫째 소생인 계집중 계개桂介.

계집중 막지莫之의 둘째 소생인 계집중 옥진玉珍 임인생.

계집중 천화千花의 넷째 소생인 사내중 복남卜男 기유생.

41 만력(萬曆)~을묘 화회(和會) 초행에 이런 제목이 붙어 있으나 2행부터는 노비 이름이 바로 나열되어 있다. 1615년 화회문기는 서문, 침지택 몫, 생원택 몫, 진사택 몫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문기는 그 초본으로서 생원택 몫의 중간부분으로 시작되어 진사택 몫의 중간 부분까지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분재기를 3등분 했을 때, 초본 중 서문을 포함한 전반부와 서명이 포함된 후반부가 없는 가운데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사내종 덕륜德倫과 양인 처의 셋째 소생인 사내종 순남旬男.
 둘째 소생인 사내종 득순得順 경술생.
 첫째 소생인 사내종 득인得安 을사생.
 사내종 의풍義風과 양인 처의 첫째 소생인 계집종 신옥申玉 무신생.
 둘째 소생인 계집종 가은지加隱之 신해생.
 계집종 천화千花의 셋째 소생인 사내종 기생己生 정미생.
 계집종 은지銀之의 넷째 소생인 계집종 덕이德伊 을사생.
 계집종 막지莫之의 셋째 소생인 계집종 진서비眞西非 을사생.
 계집종 말개壽介.
 계집종 유지有之의 첫째 소생인 사내종 진이眞伊.
 둘째 소생인 사내종 남이男伊.
 사내종 선남先男.
 사내종 후남後男.
 사내종 부거이夫去伊.
 계집종 천화千花의 둘째 소생인 계집종 계생桂生 신축생.
 계집종 안지安之의 첫째 소생인 계집종 인화人花.
 사내종 옥복玉卜.
 계집종 덕금德今이 낳은 계집종 은지銀之 무진생.
 사내종 윤필允必과 양인 처의 첫째 소생인 사내종 윤창允昌 을축생.
 계집종 돌장塚藏의 셋째 소생인 계집종 돌서비塚西非 기사생.
 계집종 덕이德伊의 둘째 소생인 사내종 덕복德卜.
 사내종 명손命孫과 양인 처의 셋째 소생인 사내종 남세男世 임진생.
 사내종 남이男伊와 양인 처의 첫째 소생인 계집종 구월九月.
 사내종 한문汗文과 양인 처의 첫째 소생인 사내종 한수汗守 을축생.
 계집종 어린개於隣介의 둘째 소생인 계집종 무춘戊春 기해생.
 계집종 옥희玉希의 첫째 소생인 계집종 원향願香 을유생.
 계집종 은이銀伊의 다섯째 소생인 계집종 말례壽禮 계축생.
 계집종 효성孝成의 둘째 소생인 사내종 신룡信龍 병오생.
 이⁴²

42 둘째 면부터 시작 부분에 면수(面數) 즉 일종의 페이지가 표시되어 있다.

다섯째 소생인 계집종 말례禮禮 계축생.

계집종 근수斤守의 첫째 소생인 사내종 세원世元 병오생.

사내종 돌산돌山과 양인 처의 첫째 소생인 사내종 범손凡孫 신축생.

계집종 은지銀之의 첫째 소생인 사내종 순충順忠 무인생.

사내종 건리손件里孫과 양인 처의 첫째 소생인 사내종 계남桂男 정유생.

둘째 소생인 사내종 계륜桂倫 갑진생.

사내종 지복知卜 병술생.

사내종 인회人會와 양인 처의 첫째 소생인 사내종 수손守孫.

사내종 감동甘同.

계집종 어린개於隣介의 셋째 소생인 사내종 막세莫世 임인생.

계집종 덕개德介의 첫째 소생인 계집종 덕지德之 정축생.

사내종 암석岩石과 양인 처의 첫째 소생인 계집종 안지安之 임오생.

계집종 금월今月の 둘째 소생인 사내종 어리於里 임술생.

계집종 논금論今의 넷째 소생인 사내종 남근男斤 기묘생.

계집종 연희然喜의 둘째 소생인 사내종 연손然孫 임오생.

셋째 소생인 사내종 연금然今 신묘생.

사내종 무숙戊叔.

사내종 풍남風男.

사내종 귀봉貴奉 을축생.

사내종 단예傳禮와 양인 처의 첫째 소생인 사내종 희남希男 계사생.

사내종 범석凡石과 양인 처의 둘째 소생인 사내종 범량凡良 정해생.

사내종 서동을鋤同乙과 양인 처의 셋째인 소생 사내종 유량有良 임오생.

넷째 소생인 계집종 금생今生 정유생.

계집종 업대業代의 넷째 소생인 계집종 은춘銀春 경인생.

사내종 수억壽億과 양인 처의 첫째 소생인 사내종 순이旬伊 신묘생.

둘째 소생인 계집종 화비花非 을미생.

사내종 돌고돌高와 양인 처의 둘째 소생인 사내종 득수得守 임진생.

계집종 이금利今의 첫째 소생인 계집종 무지戊之 무자생.

계집종 부금賦今의 셋째 소생인 계집종 금지今之 정해생.

계집종 윤비允婢의 첫째 소생인 사내종 희운希云 정축생.

계집종 홍선洪先의 둘째 소생인 계집종 은이銀伊 병인생.

여섯째 소생인 사내종 종금從今 병인생.

일곱째 소생인 사내중 종란從蘭 갑신생.
 계집중 은이銀伊의 둘째 소생인 계집중 업성業成 임진생.
 넷째 소생인 사내중 충성忠誠 경자생.
 셋째 소생인 사내중 효성孝成 병신생.
 사내중 업대業代의 둘째 소생인 사내중 계남桂男 갑신생.
 삼드
 계집중 헌지憲之의 둘째 소생인 사내중 대헌大憲 갑신생.
 계집중 천화千花의 첫째 소생인 사내중 계윤桂允 정유생.
 사내중 만이萬伊와 양인 처의 첫째 소생인 계집중 응금應今 을해생.
 계집중 단금丹今의 둘째 소생인 계집중 금대금代.
 계집중 검동儉同과 양인 처의 첫째 소생인 계집중 덕이德伊 정축생.
 사내중 석이石伊의 셋째 소생인 사내중 순희順希 경진생.
 사내중 박례朴禮와 양인 처의 셋째 소생인 계집중 말비婁非.
 계집중 영희迎喜의 소생인 계집중 난비蘭非.
 계집중 석일개石一介의 첫째 소생인 사내중 석이石伊.
 사내중 덕생德生.
 계집중 덕종德從의 셋째 소생인 계집중 예인禮人 을유생.
 계집중 은이銀伊의 첫째 소생인 계집중 업이業伊 을유생.
 계집중 홍선洪先의 넷째 소생인 사내중 은쇠銀金.
 사내중 세원世元과 양인 처의 첫째 소생인 사내중 희춘希春.
 사내중 검동儉同과 양인 처의 둘째 소생인 사내중 선동先同.
 사내중 복수卜守와 양인 처의 첫째 소생인 사내중 수업守業.
 계집중 은대銀臺의 둘째 소생인 계집중 은생銀生.
 계집중 복개卜介의 첫째 소생인 사내중 언춘彦春 을축생.
 둘째 소생인 사내중 언경彦景 임신생.
 셋째 소생인 계집중 사랑개司郎介 을해생.

진사댁進士宅 뒀

계집중 덕춘德春.

계집중 말개婁介의 첫째 소생인 사내중 보리손甫里孫 신미생.

계집중 억복億卜의 넷째 소생인 사내중 금이산金伊山 갑오생.

계집중 말개婁介의 첫째 소생인 사내중 갓산蠶山 계유생.

계집종 잉비(莛婢)의 첫째 소생인 계집종 억금(億今) 을해생.
 계집종 억복(億卜)의 첫째 소생인 사내종 억금(億今) 정축생.
 계집종 억복(億卜)의 둘째 소생인 계집종 허룡개(許弄介) 을유생.
 셋째 소생인 계집종 금이금(金伊今) 임진생.
 계집종 억금(億今)의 둘째 소생인 사내종 무남(戊男) 을사생.
 셋째 소생인 사내종 천남(天男) 정미생.
 넷째 소생인 계집종 춘생(春生) 신해생.
 다섯째 소생인 사내종 춘남(春男) 계축생.
 보리손(甫里孫)과 반비(班婢) 억금(億今)의 첫째 소생인 사내종 응춘(應春) 을사생.
 둘째 소생인 계집종 옥춘(玉春) 무신생.
 셋째 소생인 계집종 옥진(玉眞) 신해생.
 넷째 소생인 계집종 덕성개(德成介) 계축생.
 다섯째 소생인 사내종 을묘생.
 계집종 허룡개(許弄介)의 첫째 소생인 계집종 언금(彦今) 경술생.
 계집종 덕세(德世)와 양인 처의 첫째 소생인 사내종 덕춘(德春) 경술생.
 계집종 덕금(德今)의 첫째 소생인 사내종 인회(仁會) 을축생.
 사내종 귀천(貴千)과 양인 처의 셋째 소생인 사내종 윤이(允伊) 갑자생.
 사내종 잉비(莛非)의 셋째 소생인 계집종 막진(莫眞) 병오생.
 둘째 소생인 사내종 덕생(德生) 갑진생.
 사내종 인회(仁會)와 양인 처의 첫째 소생인 계집종 논금(論今) 임인생.
 계집종 덕금(德今)의 일곱째 소생인 사내종 덕세(德世) 갑신생.
 계집종 춘비(春非)의 소생인 사내종 논학(論鶴) 을해생.
 계집종 향운(香云)의 셋째 소생인 계집종 만개(萬介) 임신생.
 계집종 원대(遠代)의 셋째 소생인 사내종 복수(卜守) 계축생.
 계집종 상덕(尙德)의 둘째 소생인 계집종 돌개(鬪介) 을축생.
 사내종 영손(永孫)과 양인 처의 둘째 소생인 사내종 장수(長守) 계해생.
 계집종 사작(作)의 둘째 소생인 사내종 막금(莫金) 신해생.
 계집종 어린개(於隣介)의 첫째 소생인 사내종 무수(戊守) 무술생.
 둘째 소생인 계집종 막춘(莫春).
 계집종 인복(仁卜)의 첫째 소생인 계집종 영매(永梅) 정축생.
 계집종 효성(孝成)의 셋째 소생인 계집종 신종(信終) 기유생.
 계집종 원향(遠香)의 첫째 소생인 사내종 승현(勝玄) 정미생.

계집종 신이信伊의 첫째 소생인 계집종 을묘생.
 사내종 만이萬伊.
 사내종 예문禮文.
 계집종 은지銀之의 둘째 소생인 계집종 순덕順德 병술생.
 별급으로 받은 계집종 만추萬秋의 둘째 소생인 계집종 석일개石一介 임신생.
 사내종 대언大彦과 양인 처의 셋째 소생인 계집종 애춘愛春 계사생.
 계집종 연희延希의 첫째 소생인 계집종 연덕延德 임오생.
 계집종 연옥連玉의 둘째 소생인 계집종 귀생貴生 을사생.
 계집종 금덕金德의 소생인 계집종 인화仁花 기해생.
 계집종 은지銀之의 둘째 소생인 사내종 복동卜同 을해생.
 사내종 범산凡山과 양인 처의 셋째 소생인 사내종 명남命男 임인생.
 사내종 복수卜守와 양인 처의 둘째 소생인 사내종 말금לט金 기해생.
 계집종 옥희玉希의 넷째 소생인 사내종 말룡לט龍 임인생.
 계집종 돌서비聶西非의 다섯째 소생인 계집종 연희延希 병오생.
 계집종 박례朴禮와 양인 처의 넷째 소생인 사내종 희손希孫 신축생.
 사내종 검질동檢叱同과 양인 처의 다섯째 소생인 사내종 무숙戊肅 을묘생.
 계집종 근주斤周의 넷째 소생인 사내종 풍남風男 임진생.
 사내종 윤필允必과 양인 처의 다섯째 소생인 사내종 막세莫世 갑술생.
 사내종 귀희貴希와 양인 처의 여섯째 소생인 사내종 희일希一 임신생.
 신노비 홍선紅仙의 여덟째 소생인 계집종 종이終伊 기축생.
 계집종 석개石介의 둘째 소생인 계집종 춘이春伊 신사생.
 계집종 은대銀代의 첫째 소생인 계집종 언생彦生 계사생.
 계집종 논금論今의 셋째 소생인 계집종 언대彦代 갑신생.
 계집종 덕금德今의 여덟째 소생인 사내종 말세לט世 정해생.
 친득親得한 신비新婢⁴³ 석개石介의 셋째 소생인 사내종 인길仁吉 병술생.
 계집종 만개萬介의 둘째 소생인 계집종 사화사화 임인생.
 사내종 범산凡山과 양인 처의 둘째 소생인 계집종 가좌可佐 정술생.
 계집종 억금億今의 첫째 소생인 계집종 춘단春丹 무술생.

43 신비(新婢) 혼인할 때 받는 신노비 중 비(婢)를 가리킨다.

萬曆四十三年乙卯和會

婢欣之 二奴道孫己酉

婢思郎介

婢斤珠 三奴義風 己卯

奴千花良一奴凡石 己卯

婢德今 六奴連伊 庚辰

婢連玉

婢萬介 一婢桂介

婢莫之 二婢玉珍 壬寅

婢千花 四奴卜男 己酉

奴德倫良三奴旬男

二奴得順 庚戌

一奴得安乙巳

奴義風良一婢申玉 戊申

二婢加隱之 辛亥

婢千花 三奴己生 丁未

婢銀之 四婢德伊 乙巳

婢莫之 三婢眞西非 乙巳

婢黍介

婢有之一奴眞伊

二奴男伊

奴先男

奴後男

奴夫去伊

婢千花 二婢桂生 辛丑

婢安之一婢人花

奴玉卜

婢德今 生婢銀之 戊辰

奴允必良一奴允昌 乙丑

婢夏藏 三婢夏西非 己巳

婢德伊 二奴德卜

奴命孫良三奴男世 壬辰

奴男伊良一婢九月
奴汗文良一奴汗守 乙丑
婢於隣今二奴戊春 己亥
婢玉希 一婢願香 乙酉
婢銀伊 五婢忝禮 癸丑
婢孝成 二奴信龍 丙午

[二]

五婢忝禮 癸丑
婢斤守 一奴世元 丙午
奴芑山良一奴凡孫 辛丑
婢銀之一奴順忠 戊寅
奴件里孫良一奴桂男 丁酉
二奴桂倫 甲辰
奴知卜 丙戌
奴人會良一奴守孫
奴甘同
婢於隣介 三奴莫世 壬寅
婢德介 一婢德之 丁丑
奴岩石良一婢安之 壬午
婢今月 二奴於里 壬戌
婢論今 四奴男斤 己卯
婢然喜 二奴然孫 壬午
三奴然今 辛卯
奴戊叔
奴風男
奴貴奉乙丑
奴博禮良一奴希男癸巳
奴凡石良二奴凡良丁亥
奴鋤同乙良三奴有良壬午
四婢今生丁酉
婢業代 四婢銀春庚寅
奴壽億良一奴旬伊辛卯

二婢花非乙未
奴亓高良二奴得守壬辰
婢利今一婢戌之戊子
婢賦今三婢今之丁亥
婢允婢一奴希云丁丑
婢洪先二婢銀伊丙寅
六奴從今庚辰
七奴從闌甲申
婢銀伊二婢業成壬辰
四奴忠誠庚子
三奴孝成丙申
奴業代二奴桂男甲申
[三]
婢憲之二奴大憲甲申
婢千花一奴桂允丁酉
奴萬伊良一婢應今乙亥
婢丹今二婢今代
婢儉同良一婢德伊丁丑
奴石伊三奴順希庚辰
奴朴禮良三婢歪非
婢迎喜婢闌非
婢石一介一奴石伊
奴德生
婢德從三婢禮人乙酉
婢銀伊一婢業伊乙酉
婢洪先四奴銀金
奴世元良一奴希春
奴儉同良二奴先同
奴守卜良一奴守業
婢銀臺二婢銀生
婢卜介一奴彥春乙丑
二奴彥景壬申

三婢司郎介乙亥

進士宅衿

婢德春

婢忞介一奴甫里孫辛未

婢億卜四奴金伊山甲午

婢忞介一奴叢山癸酉

婢苐婢一婢億今乙亥

婢億卜一奴億今丁丑

婢億卜二婢許弄介乙酉

三婢金伊今壬辰

婢億今二奴戊男乙巳

三奴天男丁未

四婢春生辛亥

五奴春男癸丑

甫里孫班婢億今一奴應春乙巳

二婢玉春戊申

三婢玉眞辛亥

四婢德成介癸丑

五奴乙卯

婢許弄介一婢彥今庚戌

婢德世良一奴德春庚戌

婢德今一奴仁會乙丑

奴貴千良三奴允伊甲子

奴苐非三婢莫眞丙午

二奴德生甲辰

奴仁會良一婢論今壬寅

婢德今七奴德世甲申

婢春非奴論鶴乙亥

婢香云三婢萬介壬申

婢遠代三奴卜守癸丑

婢尙德二婢芘介乙丑

奴永孫良二奴長守癸亥

婢乍作二奴莫金辛亥

婢於隣介一奴戌守戊戌

二婢莫春

婢仁卜一婢永梅丁丑

婢孝成三婢信終己酉

婢遠香一奴勝玄丁未

婢信伊一婢乙卯

奴萬伊

奴禮文

婢銀之二婢順德丙戌

別得婢萬秋二婢石一介壬申

奴大彥良三婢愛春癸巳

婢延希一婢延德壬午

婢連玉二婢貴生乙巳

婢金德婢仁花己亥

婢銀之二奴卜同乙亥

奴凡山良三奴命男壬寅

奴卜守良二奴歪金己亥

婢玉希四奴歪龍壬寅

婢芈西非五婢延希丙午

婢朴禮良四奴希孫辛丑

奴檢叱同良五奴戌肅乙卯

婢斤周四奴風男壬辰

奴允必良五奴莫世甲戌

奴貴希良六奴希一壬申

新奴婢紅仙八婢終伊己丑

婢石介二婢春伊辛巳

婢銀代一婢彥生癸巳

婢論今三婢彥代甲申

婢德今八奴歪世丁亥

親得新婢石介三奴仁吉丙戌

婢萬介二婢四化壬寅
奴凡山良二婢可佐丁戌
婢億今一婢春丹戊戌

3-1-5) 1675년 윤선도尹善道 자녀 화회문기와會文記

[윤선도尹善道가 죽은 뒤인 1675년(숙종 1)에 적자녀嫡子女 5남매가 부모의 재산을 합의하여 나눠 갖는 화회문기와會文記]

…(원문 결락)… 3년을 넘겼으니⁴⁴ 지연되는 것이 염려되어 동생들이 모두 모여 제사조祭祀條 및 전답과 노비를 규례대로 나누고, ■……■ 사역하는 노비는 이미 시아버지 살아계실 때 친득親得한 것이므로, 노비가 많고 적고 간에 각 다툼에 ■……■ 소생과 함께 상속분에 미리 포함하지 않은 것은 처음부터 분명하게 논의하여 정할 일이므로 이와 같이 나누어 기록한다.

일. 가옹家翁⁴⁵의 등과조登科條는 이미 가르침이 있었으므로 여러 동생과 의논하여 간략히 적어 넣는 바이며, 심주沈柱 형제의 사마조⁴⁶는 사리로 볼 때 각각 별지에 기록하고 오늘 작성하여 주는 것은 타당하지 못한 점이 있을 듯하여 ■……■ 상속분의 말단에 기록한다.

일. 파주坡州의 전답 전부와 노비 약간에 대해서는 일체 유언에 따라 아버님의 생가친가외가의 봉사조奉祀條에 수록한다.

일. 가옹의 서열 동생 직미直美 3남매의 전답은 아버님께서 살아계실 때 이미 처리하였고, 노비에 대해서도 가옹께서 기록하여 문서로 작성한 초고가 있으므로 도문기都文記에는 기입하지 않는다. 이 순안李順安의 별가別家와 순미循美⁴⁷ 집의 전답 및 노비는 별도로 문서를 작성함으로써 문권을 간단하게 한다.

44 3년을 넘겼으니 윤선도(1587~1671)의 사망 후 3년을 넘겼으므로 1673년 이후 어느 시점을 이 화회문기의 작성연대로 추정할 수 있다. 하지만 문서의 서문이 장남인 윤인미의 사망으로 인해 윤인미처의 주도로 이루어진 것을 암시하는 부분이 있으므로 윤인미의 사망 시점인 1674년 이후로 볼 수 있다. 또 문기에 수록된 노비들의 나이를 기준으로 추산해보면 1675년에 작성된 문기로 추정된다.

45 가옹(家翁) 이 화회문기는 윤선도의 장남 윤인미(1607~1674) 사망 후에 작성되었다. 따라서 윤인미를 대신하여 그 처가 화회문기 작성을 주도하여 '가옹' 등의 표현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서문 첫머리와 문기 말미의 서명 부분이 없으므로 정확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

46 심주(沈柱) 형제의 사마조(司馬條) 심주 형제는 심주와 심단(沈檀)으로 윤선도의 사위인 심광면(沈光沔)의 아들이다. 심주와 심단이 1662년(현종3) 생원시에 합격하여 별급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47 순미(循美) 윤선도의 서자이다.

일. 각 맥이 친득한 도망노비는 각 맥의 뭍에 기록하여 각자 추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일. 소동을 피웠거나 도망친 노비를 아래에 열거하여 훗날 추쇄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누락된 노비들도 마땅히 나타나는 대로 나눌 것이다.

정자택正字宅⁴⁸ 뭍

▣……▣ 가대家代, 서울 연화방蓮花坊에 있는 집터 5백칸, 진도珍島 굴포窟浦 차경원且耕員의 제척자 논 정조正租 12마지기, ▣……▣ 되지기, 면천沔川의 논 20마지기, ▣……▣ 문문자 밭 태종太種 1섬 2마지기.

계집중 납생納生의 첫째 소생인 사내중 수복守卜(44세), 계집중 애개愛介의 첫째 소생인 사내중 용립龍立(42세), 둘째 소생인 사내중 용생龍生(36세), 셋째 소생인 사내중 용일龍日(29세), 계집중 울덕蔚德의 소생인 사내중 망립亡立(38세), 계집중 원금遠今(44세), 이 계집중의 첫째 소생인 사내중 일선日先(24세), 둘째 소생인 계집중 일화日花(23세), 계집중 향개香介의 소생인 계집중 계화桂花(14세), 계집중 승옥勝玉의 소생인 계집중 신덕信德(20세), 계집중 봉서非西非의 둘째 소생인 계집중 귀옥貴玉(25세), 계집중 도상道尙의 소생인 계집중 막금莫今(23세), 계집중 연생連生의 첫째 소생인 사내중 승명勝命(48세), 둘째 소생인 사내중 말봉耑奉(30세), 계집중의 소생인 계집중 논화論花(38세), 계집중의 소생인 계집중 신화信花(31세), (계집중)⁴⁹ 흥금興今의 둘째 소생인 계집중 매금每今(27세), 계집중 득옥得玉의 첫째 소생인 계집중 득녀得女(39세), 계집중 충금忠今의 둘째 소생인 사내중 임술壬戌(25세), ○○번째 소생인 사내중 추선秋先(19세).

경중京中 계집중 계환戒還의 첫째 소생인 사내중 점이點伊(○○세), 둘째 소생인 사내중 후점厚點(○○세), 계집중 신종信從의 소생인 사내중 선이先伊(○○세), 계집중의 소생인 계집중 수명守命(24세), 계집중의 소생인 계집중 정이正伊(16세), 계집중의 소생인 계집중 근심斤心(○○세).

예분例分질

…〈토지 분재 내역 생략〉…

노비질

계집중 신이信伊(76세), 이 계집중의 첫째 소생인 사내중 승인勝仁(57세), 둘째 소생인 사내중 승열勝悅(52세), 사내중 몽동夢同(56세), 계집중 금개金介의 첫째 소생인 사내중 선복善卜(48세), 사내중 현이喧伊와 양처良妻의 셋째 소생인 사내중 홍열洪烈(46세), 매득한 사내중 효건孝建(○○세), 계집중 명금命今의 첫째 소생인 사내중 의일義一(46세), 계집중 연옥延玉의 소생인 사내중 수운守云(13세), 계집

48 정자택(正字宅) 장남 윤인미(1607~1674)를 말한다.

49 (계집중) 원문은 한 글자가 마멸되어 보이지 않으나, 흥금이 계집중이므로 ‘비(婢)’ 자가 마멸된 것으로 추정된다.

중 금옥^{金玉}(77세), 계집종 충금^{忠金}의 소생인 계집종 인금^{仁金}(35세), 계집종 득옥^{得玉}의 소생인 계집종 세화^{世花}(8세), 계집종 득녀^{得女}의 소생인 계집종 양금^{良金}(7세), 사내중 덕생^{德生}(75세), 죽은 계집종 진화^{眞花}의 첫째 소생인 사내중 벽옥^{碧玉}(47세), 계집종의 소생인 계집종 금이^{今伊}(22세), 계집종 금향^{今香}의 소생인 계집종 일춘^{一春}(9세)과 계집종 일상^{日尙}(4세), 사내중 사안^{四安}(59세), 계집종 막덕^{莫德}의 소생인 사내중 차일^{次日}(33세), 사내중 사안^{四安}과 양처의 첫째 소생인 사내중 갑생^{甲生}(30세), 둘째 소생인 계집종 사진^{四眞}(24세), 계집종 감생^{甘生}의 소생인 사내중 안립^{安立}(39세), 계집종 구지^{久之}의 첫째 소생인 사내중 천귀^{千貴}(18세), 둘째 소생인 계집종 신월^{申月}(3세), 계집종 양생^{陽生}의 소생인 계집종 임진^{壬辰}(24세), 계집종의 소생인 사내중 망립^{亡立}(○○세), 계집종 막개^{莫介}의 소생인 계집종 옥상^{玉上}(17세), 계집종의 소생인 사내중 용금^{龍金}(○○세), 계집종 검덕^{檢德}(71세), 이 계집종의 둘째 소생인 사내중 성립^{成立}(49세), 계집종 건리^{健里}의 첫째 소생인 사내중 중발^{終發}(15세), 둘째 소생인 사내중 연발^{延發}(11세), 계집종 생춘^{生春}의 다섯째 소생인 사내중 칠봉^{七奉}(19세), 사내중 회이^{會伊}(70세), 계집종 근지^{斤之}의 첫째 소생인 사내중 마음^{耳音金}(40세), 계집종 칠월^{七月}의 첫째 소생인 사내중 임학^{林鶴}(15세), 둘째 소생인 사내중 임선^{林先}(12세), 셋째 소생인 사내중 임철^{林哲}(4세), 계집종 원금^{遠金}의 둘째 소생인 계집종 시월^{十月}(11세), 셋째 소생인 계집종 순녀^{順女}(9세), 넷째 소생인 사내중 순립^{順立}(6세), 계집종의 소생인 계집종 향개^{香介}(39세), 이 계집종의 둘째 소생인 사내중 실룡^{實龍}(10세), 셋째 소생인 계집종 실금^{實金}(7세), 넷째 소생인 계집종 득이^{得伊}(3세), 계집종 일화^{日花}의 소생인 사내중 한립^{汗立}(7세), 계집종 과심^{過心}의 첫째 소생인 사내중 무가은^{無加隱伊}(15세), 셋째 소생인 사내중 돌가은^{突加隱伊}(5세), 넷째 소생인 사내중 산가은^{山加隱伊}(2세), 계집종의 소생인 사내중 남산^{南山}(37세), 계집종 양춘^{陽春}의 소생인 계집종 채선^{采先}(4세), 계집종의 소생인 계집종 예양^{禮陽}(○○세), 계집종 납생^{納生}(63세), 이 계집종의 넷째 소생인 계집종 칠월^{七月}(34세), 여섯째 소생인 계집종 양춘^{陽春}(22세), 계집종 난화^{亂花}(71세).

영광^{靈光} 계집종 덕환^{德還}의 소생인 사내중 선남^{先男}(47세)과 사내중 삼복^{三卜}(45세), 계집종의 소생인 계집종 금춘^{今春}(45세), 이 계집종의 소생인 사내중 이걸^{二乞}(8세), 계집종 애금^{愛金}의 소생인 사내중 문백^{文白}(13세).

무장^{務長} 계집종의 소생인 사내중 정인^{正人}(45세).

구례^{求禮} 사내중 득명^{得命}의 대비^{代婢} 정옥^{丁玉}(18세), 계집종의 소생인 계집종 난향^{蘭香}(45세), 계집종 ○○의 소생인 사내중 이선^{二先}(17세).

무안^{務安} 계집종의 소생인 계집종 소금^{小金}(32세).

낙안^{樂安} 계집종의 소생인 계집종 영진^{永眞}(50세).

김포^{金浦} 계집종 승화^{勝花}의 소생인 사내중 영남^{永男}(32세).

양주^{楊州} 계집종의 소생인 사내중 구인^{久仁}(30세).

삼수^{三水} 계집종 애환^{愛還}의 첫째 소생인 계집종 애월^{愛月}(48세), 이 계집종의 첫째 소생인 사내중

선이善伊(28세), 계집종 애향愛香의 첫째 소생인 사내중 순복順卜(27세).

북청北靑 계집종 말선壽善의 첫째 소생인 계집종 성옥成玉(58세), 둘째 소생인 계집종 선옥善玉(56세), 셋째 소생인 계집종 태옥太玉(49세), 넷째 소생인 계집종 종옥終玉(43세), 계집종 성옥成玉의 둘째 소생인 사내중 거좌을이巨佐乙伊(7세), 계집종 태옥太玉의 첫째 소생인 사내중 철주鐵朱(5세), 계집종 종옥終玉의 첫째 소생인 사내중 윤이允伊(2세).

상주尙州 죽은 계집종 귀생貴生의 둘째 소생인 계집종 효양孝陽(46세), 셋째 소생인 사내중 상명尙命(43세), 계집종 효양孝陽의 첫째 소생인 사내중 영이英伊(15세), 계집종 귀지貴之의 셋째 소생인 계집종 소전小全(9세).

영일寧越 계집종 의영義英의 셋째 소생인 사내중 덕금이德金伊(13세).

친득親得한 노비 : 사내중 애순愛順(50세), 사내중 삼돌三斗(45세), 사내중 영립英立(52세), 사내중 순남順男(51세), 사내중 후일厚一(48세), 사내중 경신敬信(51세), 사내중 천일天日(50세), 사내중 가외금加外金(〇〇세), 사내중 애신愛信(30세), 사내중 을명乙命(31세), 사내중 인금仁金(33세), 사내중 서옥西玉(22세), 사내중 갑금甲金(17세), 사내중 노적老迹(20세), 사내중 충경忠敬(20세), 사내중 백철白哲(〇〇세), 사내중 우물牛勿(〇〇세), 사내중 정금丁金(〇〇세), 사내중 검동檢同(〇〇세), 계집종 막덕莫德(〇〇세), 계집종 금화金花(〇〇세), 계집종 미화美花(45세), 계집종 금향今香(〇〇세), 계집종 애정愛丁(〇〇세), 계집종 이정二丁(〇〇세), 사내중 봉익奉翊(〇〇세), 사내중 명정命丁(〇〇세), 계집종 승화勝花(46세), 계집종 애덕愛德(45세), 계집종 귀상貴尙(49세), 계집종 귀양貴陽(35세), 계집종 옥녀玉女(29세), 계집종 득금得今(36세), 계집종 막선莫先(〇〇세), 계집종 복금卜今(32세), 계집종 가옥加玉(29세), 계집종 화리덕禾里德(〇〇세), 계집종 ■……■ 12세, 계집종 인녀仁女(〇〇세), 계집종 흥덕興德(〇〇세), 계집종 수강守江(〇〇세), 계집종 일양日陽(〇〇세), 계집종 신향申香(〇〇세), 계집종 매상每尙(〇〇세), 계집종 모지暮之(〇〇세), 계집종 후녀後女(〇〇세), 계집종 석생石生(〇〇세), 계집종 매신每信(14세), 사내중 길복吉卜(〇〇세), 계집종 논개論介(〇〇세).

도망 노비 : 계집종 애춘愛春(〇〇세), 계집종 관향貫香(〇〇세).

사마경오조司馬庚午條⁵⁰ : 해남海南 백야지비白也只 전답 전부. 계집종 영주永朱, 사내중 수남守男, 계집종 영진永眞, 계집종 영화永花, 계집종 세금세今, 사내중 복남卜男, 사내중 금춘金春, 계집종 서대西代, 계집종 복서비卜西非, 사내중 복생卜生.

등과임인조登科壬寅條⁵¹ : 독포정자秃浦亭子 1좌좌, 전답 전부. 계집종 은금銀今(〇〇세), 이 계집종의 첫째 소생인 계집종 난향蘭香(23세), 둘째 소생인 사내중 호성好成(19세), 셋째 소생인 계집종 연향

50 사마경오조(司馬庚午條) 윤인미가 1630년(인조 8)에 생원시(生員試)에 합격하여 받은 별급이다.

51 등과임인조(登科壬寅條) 윤인미가 1662년(현종 3)에 문과에 급제하여 받은 별급이다.

連香(14세), 넷째 소생인 사내중 호인好仁(8세), 다섯째 소생인 계집종 금녀今女(3세), 사내중 설금鬪金(○○세).

진사댁進士宅⁵² 몫 : …(분재 내역 생략)…

생원댁生員宅⁵³ 몫 : …(분재 내역 생략)…

심생원댁沈生員宅⁵⁴ 몫 : …(분재 내역 생략)…

이생원댁李生員宅⁵⁵ 몫 : …(분재 내역 생략)…

□…□過三年 則遲延爲悶□□同生齊會 祭條及田民依例分□…□

使喚奴婢 則已爲舅姑主生前親得者 故奴婢多少間□…□

各宅前而并其所生 不預於分數中 自初亦有丁寧議定之事

以此分錄

一家翁登科條及沈柱兄弟司馬條 已有成教 故諸同生僉議 略有所錄 至於沈柱兄弟司馬條 則

事當各載別丈 而今日成給 似有所未妥□…□(付)

衿末端矣

一坡州田畝全數及奴婢若干 一依遺教 載於舅主生親外家奉祀條矣

一家翁孽同生直美三甥妹處田畝 則舅主生時已爲區處 奴婢

則家翁亦有書錄成文之草 故不入於都文記中 而李順安別家及循美家田民 爲別丈成文 以簡文券

一各宅親得逃亡奴婢 載於各宅衿 以爲各自推用之地矣事

一橫反及逃亡奴婢 列錄於下 以爲日後推得分用之地 而遺漏奴婢亦當 隨現隨分事

正字宅衿

□…□代 京中蓮花坊家代五百間 珍島窟浦且耕員制字畝正租十二斗落

□…□升落只 沔川畝二十斗落只 新□…□文字

田太種一石二斗落只 婢納生一生奴守卜年四十四 婢愛介一生奴龍立年四十二 二生奴龍 生年三十六 三生奴龍日年二十九 婢蔚德生奴亡立年三十八 婢遠今年四十四 同婢一 生奴日先年二十四 二生婢日花年二十三 婢香介生婢桂花年十四 婢勝玉生婢信德

52 진사댁(進士宅) 윤선도의 둘째 아들인 윤의미(尹義美, 1612~1636)를 가리킨다.

53 생원댁(生員宅) 윤선도의 셋째 아들인 윤예미(尹禮美, 1619~1669)를 가리킨다.

54 심생원댁(沈生員宅) 사위 심광면(沈光沔)이다.

55 이생원댁(李生員宅) 윤선도의 사위 이보만(李保晩)이다.

年二十 婢奉西非二生婢貴玉年二十五 婢道尙生婢莫今年二十三 婢連生一生奴勝命
 年四十八 二生奴齏奉年三十 婢生婢論花年三十八 婢生婢信花年三十一
 ▣興今二生婢每今年二十七 婢得玉一生婢得女年三十九 婢忠今二生奴壬戌年二十五 ▣
 生奴秋先年十九 京中婢戒還一生奴點伊年 二生奴厚點年 婢信從
 生奴先伊年 婢生婢守命年二十四 婢生婢正伊年十六 婢生婢斤
 心年
 例分 …〈토지 분재 내역 생략〉… 奴婢秩 婢信伊年七十六 同婢一生奴勝仁
 年五十七 二生奴勝悅年五十二 奴夢同年五十六 婢今介一生奴善卜年四十八 奴暄伊良妻三
 生奴洪列年四十六 買得 奴孝建年 婢命今一生奴義一年四十六 婢延玉生奴守云年
 十三 婢今玉年七十七 同婢二生奴小伊叱同年四十二 婢忠今生婢仁今年三十五 婢得玉生
 婢世花年八 婢得女 生婢良今年七 奴德生年七十五 故婢眞花一生奴碧玉年四十七 婢
 生婢今伊年二十二 婢生婢今德年四十 婢今香生婢一春年九 生婢日尙
 年四 奴四安年五十九 婢莫德生奴次日年三十三 奴四安良妻一生奴甲生年三十二 生婢
 四眞年二十四 婢甘生生奴安立年三十九 婢久之 一生奴千貴年十八 二生婢申月年三 婢
 陽生生婢壬辰年二十四 婢生奴亡立年 婢莫介生婢玉上年十七 婢生
 奴龍金年 婢儉德年七十一 同婢二生奴成立年四十九 婢件里德一生奴終發年十五 二生奴延
 發年十一 婢生春五生奴七奉年十九 奴會伊年七十 婢斤之一生奴尔音金年四十 婢七月一生
 奴林鶴年十五 二生奴林先年十二 三生奴林哲年四 婢遠今二生婢十月年十一 三生婢順
 女年九 四生奴順立年六 婢生婢香介年三十九 同婢二生奴實龍年十 三生婢實今
 年七 四生婢禿伊德年三 婢日花生奴汗立年七 婢過心一生奴無加隱伊年十五 三生奴芻
 加隱伊年五 四生奴山加隱伊年二 婢生奴南山年三十七 婢陽春生婢采先年四 婢
 生婢禮陽年 婢納生年六十三 同婢四生婢七月年三十四 六生婢陽春年二十二 婢亂花
 年七十一 靈光婢德還生奴先男年四十七 生奴三卜年四十五 婢生婢今春年
 四十五 同婢生奴二乞年八 婢愛今生奴文白年十三 務長婢生奴正人年四十一
 五 求禮奴得命代婢丁玉年十八 婢生婢蘭香年四十五 婢生奴二先年十七
 務安婢生婢小今年三十二 樂安婢生婢永眞年五十 金浦婢勝花生
 奴永男年三十二 楊州婢生奴久仁年三十 三水婢愛還一生婢愛月年四十八
 同婢一生奴善伊年二十八 婢愛香一生奴順卜年二十七 北青婢齏善一生婢成玉年五十八
 八 二生婢善玉年五十六 三生婢太玉年四十九 四生婢終玉年四十三 婢成玉二生奴巨佐乙伊
 年七
 婢太玉一生奴鐵朱年五 婢終玉一生奴允伊年二 尙州故婢貴生二生婢孝陽年四十六 三生奴
 尙命年四十三 婢孝陽

一生奴英伊年十五 婢貴之三生婢小全年九 寧越婢義英三生奴德金伊年十三 親得奴愛順
年五十 奴三爨年四十五 奴英立年五十二 奴順男年五十一 奴厚一年四十八 奴敬信年五十一
奴天日年五

十 奴加外金年 奴愛信年三十 奴乙命年三十一 奴仁金年三十三 奴西玉年二十二 奴甲金年十
七 奴老迹年二十 奴忠敬年二十 奴白哲年 奴牛勿年 奴丁金年 奴儉同年 婢莫德
年 婢今年 婢美花年四十五 婢今香年 婢愛丁年 婢二丁年 奴奉翊年

奴命丁年 婢勝花年四十六 婢愛德年四十五 婢貴尙年四十九 婢貴陽年三十五 婢玉女(年)
二十九 婢得今年三十六 婢莫先年 婢卜今年三十二 婢加玉年二十九 婢禾里德年 婢(年)
十二 婢仁女年 婢興德年 婢守江年 婢日陽年 婢申香年 婢每尙年 婢暮之年 婢後

女年 婢石生年 婢每信年十四 奴吉卜年 婢論介年 逃亡婢愛春年 婢貫香年

司馬庚午條 海南白也只田畚全數 婢永朱 奴守男 婢永眞 婢永花 婢世今 奴卜男 奴金春 婢
西代 婢卜西非 奴卜生

登科壬寅條 禿浦亭子一坐田畚全數 婢銀今年 同婢一生婢蘭香年二十三 二生奴好成年十
九 三生婢連香年十四 四生奴好仁年八 五生婢今年女三 奴饒金年

進士宅衿：…〈분재 내역 생략〉…

生員宅衿：…〈분재 내역 생략〉…

沈生員宅衿：…〈분재 내역 생략〉…

李生員宅衿：…〈분재 내역 생략〉…

3-1-6) 1675년 윤선도 자녀 화회문기 초본

[1675년(숙종 1)에 윤선도의 자녀들이 부모의 재산을 분할상속하기 위해 작성한 화회문기 초본 중
일부분]

…(앞부분 결락)… 승중承重 전답과 노비. 우리집 몫.

면천沔川 정답正畧 20마지기. 6명.

경중

계집중 계환戒還의 첫째 소생인 사내중 점이點伊

…(이하 노비 명단 생략)…

진사댁 몫：…(이하 노비 명단 생략)…

생원댁 몫：4명. …(이하 노비 명단 생략)…

봉사조⁵⁶

파주 전답 전부.

계집종 무춘^{戊春}의 첫째 소생인 사내종 천이^{千伊}(37세).

…(이하 노비 명단 생략)…

심생원택 몫 : …(이하 노비 명단 생략)…

심진사[심주^{沈柱}⁵⁷] 사마^{司馬}

면천^{沔川} 논 7마지기, 밭 5마지기. 파주 계집종 애덕^{艾德}(33세), 서산 계집종 대녀^{大女} 소생인 사내종 남이^{南伊}(35세). 2명⁵⁸.

심진사[심단^{沈檀}⁵⁹] 사마

신창^{新昌} 논 7마지기, 밭 5마지기. 경중^{京中} 계집종, 서산 계집종 대녀^{大女}의 소생인 사내종 세운^{世云}(26세). 2명.

이 생원택 몫 : …(이하 노비 명단 생략)…

…(缺)…承重田民吾家衿

沔川正畝二十斗落六名

京中婢戒還一生奴點伊 …(이하 노비 명단 생략)…

進士宅衿 …(이하 노비 명단 생략)…

生員宅衿 …(이하 노비 명단 생략)…

奉祀條 坡州田畝全數婢^{戊春}一生奴^{千伊}年三十

七 …(이하 노비 명단 생략)…

沈生員宅衿 …(이하 노비 명단 생략)…

沈進士司馬 沔川畝七斗田五斗 坡州婢^{艾德}年

三十三 瑞山婢^{大女}生奴^{南伊}年三十五 二名

沈進士司馬 新昌畝七斗田五斗 京中婢

瑞山婢^{大女}生奴^{世云}年二十六 二名

李生員宅衿 …(이하 노비 명단 생략)…

56 봉사조 보통 화회문기의 경우 봉사조를 맨 앞에 쓰거나, 장자 몫의 앞 또는 뒤에 쓰는데 이 문기의 경우 3형제 몫을 다 쓴 후에 봉사조를 기록했다.

57 심주(沈柱) 심광면의 장남, 윤선도의 외손자이다.

58 2명 문기 곳곳에 노비 명단을 수록한 후 노비 숫자를 집계하여 써두었다.

59 심단(沈檀) 심광면의 차남, 윤선도의 외손자이다.

3-1-7) 1760년 윤두서尹斗緒 자녀 화회문기와 배탈사급입안 44건

[윤덕희를 비롯한 윤두서의 자녀子女 12남매가 부모의 재산을 분할한 후 40여 년 만인 1760년(영조 36)작성한 화회문기와 44건의 배탈사급입안]

건륭 25년 경진년(1760, 영조 36) 11월 27일 동생 화회문기

문서를 다음과 같이 작성한다. 부모님께서 돌아가시고 탈상한 후 토지와 노비를 즉시 나누려고 했으나 여러 형제가 서울과 지방에 흩어져 있었고 여러 가지로 일도 많았으므로 화회和會에 이르지 못한 채 40년이나 되었다. 지금 비로소 문권을 작성하는데, 몫을 나누는 규례는 국전國典⁶⁰에 따라 시행하는 일이다.

일. 봉사조奉祀條는 국법에 따라 5분의 1을 덜어내어 대대로 전하고 중자손衆子孫에게 나누지 말 것⁶¹.

일. 백련동白蓮洞⁶²과 백야지白也只⁶³ 두 곳의 가사家舍와 산지山地 및 촌기村基는 영구히 분할하지 말 것이며, 중자손衆子孫들이 거주하다가 다른 곳으로 이사하게 되면 집터는 종가宗家에 환속還屬할 것.

일. 백야지와 두모포斗毛浦는 해택입안海澤立案⁶⁴이 있으니, 각 집의 전답 외에 비어있는 땅은 영구히 분할하지 말 것.

일. 각처의 산소山所와 묘위墓位 전답 또한 옮기지 말 것⁶⁵.

일. 봉사조에 속하는 토지와 노비는 영구히 척매斥賣하지 말 것이며, 만약 종손이 약속을 어기면 중자손衆子孫이 싸워 지키고 관에 소송까지 하는 한이 있더라도 손대지 못하도록 할 것.

일. 각 집안에 분배된 노비와 토지는 그간 이미 팔아치웠다 하더라도 애초 나눈 몫대로 문권文券에 베껴 적도록 하고, 그 동안 각 집안에서 척매한 문권은 거론하지 말 것.

일. 분재分財는 무술년(1718, 숙종 44)에 하였으나, 중간에 일부가 서울로 옮기기도 하고 여러 일이

60 국전(國典) 『경국대전』 형전 사천조에 수록된, 노비와 전택의 분할 법례를 따른다는 의미이다.

61 중자손(衆子孫)에게 나누지 말 것 중자(衆子)는 적자(嫡子) 중 장자(長子)가 아닌 차자(次子) 이하를 가리킨다. 따라서 지자(支子)에게 나눠주지 말고 장남 가계에만 대대로 전하라는 뜻이다.

62 백련동(白蓮洞) 해남윤씨 종가가 위치한 현재의 연동리. 윤효정(1476~1543)이 도강김씨로부터 매입하여 자리잡은 후 현재까지 이곳에 종가를 두고 세거하고 있다.

63 백야지(白也只) 현산면 백야지는 해남윤씨가 140여 년 간 해언전(海堰田)을 개발하고 집중적으로 토지를 매입한 곳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곳이다.

64 해택입안(海澤立案) 해택(海澤)은 갯벌 혹은 간척지를 말한다. 무주진황지에 대해 개간을 전제로 미리 소유권을 공증받을 수 있는데, 이 때 대상 지역이 갯벌이나 간척지인 경우 이를 해택입안이라 한다.

65 옮기지 말 것 이미 지정된 내용을 바꾸지 말라는 뜻이다.

있었으므로 40년이란 오랜 세월이 지나 올해에서야 비로소 문권을 작성하는 것임.

일. 부모님 살아생전에 빛이 매우 많았으므로 그 이자와 빛을 변제할 대책으로 맹골도盟骨島를 따로 빼내어 분재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음.

일. 각 자손들이 찾아낸 유루노비遺漏奴婢에 대해서는 종가에서 거론하지 않고 문서에 포함시키되 끝부분에 따로 수록함.

일. 각 집의 토지 중 빠뜨린 것과, 달아나 숨어살고 있는 노비의 자손들은 어느 집에서 추심하더라도 본래 분배된 집에 돌려보낼 것.

일. 몫을 나눈 후 문권을 작성하기 전에 형제들이 사망하여 거의 없으니 각 자손들의 착명着名과 서압은 그 자식들로 하여금 대신 써넣게 하였음.

일. 백포白浦의 마을 터는 모두 종가의 것으로 나눌 수 없는 물건이다. 각 집에서 동네에 얼마간 개간한 곳이 있다 하더라도 모두 종가에 귀속시킬 것.

일. 초사동椒寺洞, 장석동長石洞, 망산望山, 입석동立石洞 등의 지역은 모두 입안이 있고 마을터와 더불어 한 덩어리이므로 나눌 수 없으니, 개간한 곳이 있다 하더라도 종가에 다시 귀속시킬 것.

일. 각처에 산재한 종가의 토지를 종손이 혹여 이매移買⁶⁶하려고 하거든 여러 자손이 극력 싸워 말리고 옹기지 못하도록 하라. 만약 약속을 어기는 자가 있다면 관에 송사하게 되더라도 결코 용서하지 말 것.

...(이하 분재 내역 생략)...

조봉대부朝奉大夫 전前行行政릉령貞陵令 윤덕희尹德熙[착명][서업]

둘째 아우 윤덕겸尹德謙 대자代子 격⁶⁷

셋째 아우 윤덕훈尹德熏 대자代子 탄⁶⁷

넷째 아우 윤덕후尹德煦 대자代子 성⁶⁷

다섯째 아우 윤덕렬尹德烈 대자代子 경⁶⁷

여섯째 아우 윤덕렴尹德廉 대자代子 의⁶⁷

일곱째 아우 윤덕현尹德顯

여덟째 아우 윤덕휴尹德休 대자代子 조⁶⁷

아홉째 아우 윤덕증尹德蒸

66 이매(移買) 가진 땅을 팔아 다른 곳의 땅을 사는 일을 말한다. 조선후기에 토지를 세거지 주변에 집적하는 방식으로 활용되었다.

67 격(悳) 윤육(尹楛, 1713~1780)의 초명(初名)이다. (녹우당 소장 『해남윤씨족보(海南尹氏族譜)』 1권 여(呂)장 참조)

만누이 권태언權台彦 대손代孫
가운데누이 홍위한洪緯漢
막내누이 신광수申光洙
필집 조카 형惺⁶⁸[작명]

[배탈사급입안背傾斜給立案] 1

건륭乾隆 26년 신사(1761, 영조 37) 장흥부長興府 입안立案

이 문기에 기재된 계집종 무서비戊西非(사망)의 셋째 소생인 계집종 일랑一娘(갑오생)과 넷째 소생인 계집종 설운금雪云今의 첫째 소생 사내중 윤동允同(을축생)⁶⁹ 2구구의 몸을 13냥의 값을 받고 이후 태어날 자식들까지 심생원沈生員의 사내중 금이동金伊同에게 방매放賣 했음이 확실함. 끝.

행부사行府使[서업][인]

[배탈사급입안] 2

건륭 25년 경진(1760, 영조 36) 12월 일 장흥부 입안

이 문기에 기재된 계집종 고故 무서비의 다섯째 소생인 계집종 무례戊禮(정유생)와 무례의 첫째 소생인 사내중 양복良卜(계유생) 등 2구의 몸을 본 부府에 거주하는 심생원의 사내중 금동金同에게 방매 했음이 확실함. 끝.

행부사[서업][인]

[배탈사급입안] 3

건륭 25년 경진년 12월 일 장흥부 입안

이 문기에 기재된 장흥 계집종 고 금서비金西非의 첫째 소생인 계집종 소아小牙(신사생)와, 소아의 첫째 소생인 사내중 북실北京(을사생), 둘째 소생인 계집종 불춘豊春(신유생), 금서비의 둘째 소생인 계집종 상업尙業의 둘째 소생인 사내중 금태今太(무오생) 등 4구의 몸을 본 부府에 거주하는 최생원崔生員의 사내중 천년금千年金에게 값을 매겨 받고 영구히 방매했음이 확실함. 끝.

행부사[서업][인]

68 형(惺) 윤덕휴의 차자(次子)로, 윤덕휴를 대신하여 서명한 조(髓)의 아우이다.

69 일랑~윤동 일랑과 설운금은 '유루목록'에 포함되어 있다. 윤동은 1745년 생으로 1718년 분재 당시 태어나지 않았으므로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배탈사급입안] 4

건륭 25년 경진 12월 일 장흥부 입안

이 문기에 기재된 장흥 지천止川에 거주하는 여종 수양水陽(사망)의 다섯째 소생인 사내종 선백善白(62세, 기묘생) 1구의 몸을 본 부에 거주하는 심생원沈生員의 사내종 금동金銅에게 방대했음이 확실함. 끝.

행부사[서업][인]

[배탈사급입안] 5

건륭 26년 신사(1761, 영조 37) 2월 일 장흥부 입안

이 문기에 기재된 사내종 추산秋山(사망)이 양인 처에게서 낳은 첫째 소생인 사내종 청돌이靑堧伊(경진생)와 청돌이가 양인 처에게서 낳은 첫째 소생인 사내종 당대當代(경술생) 등 2구의 몸을 23냥의 값을 받고 이후 태어날 자식들까지 노성린魯聖麟에게 영구히 방대했음이 확실함. 끝.

행부사[서업][인]

[배탈사급입안] 6

건륭 26년 장흥부 입안

이 문기에 기재된 계집종 청례靑禮(사망)의 첫째 소생인 계집종 막서비莫西非(무술생)와 막서비의 첫째 소생인 사내종 갖동鼈同(기묘생), 둘째 소생인 계집종 귀■■(경진생) 등 3구의 몸을 27냥 값을 받고 이후에 태어날 자식들까지 노성린에게 영구히 방대했음이 확실함. 끝.

행부사[서업][인]

[배탈사급입안] 7

건륭 26년 장흥부 입안

이 문기에 기재된 사내종 우산友山(사망)이 양인 처에게서 낳은 둘째 소생인 계집종 금상錦上(경진생) 1구 몸을 전錢 12냥 값을 받고 심생원의 사내종 금이동에게 방대했음이 확실함. 끝.

행부사[서업][인]

[배탈사급입안] 8

건륭 28년(1763, 영조 39) 월 일 ■■■ 입안

이 문기에 기재된 여종 추량秋良(사망)의 다섯째 소생인 사내종 백이白伊(70세)의 몸 1구를 한량閑良 조담석趙淡石에게 방대했음이 확실함. 끝.

행현감[서업][인]

[배탈사급입안] 9

건륭 28년 11월 일 해남현 입안

이 문기에 기재된 사내중 설금鬚金(사망)의 첫째 소생인 계집중 순지順之(40세), 둘째 소생인 계집중 마얌이馬蹏伊(37세), 셋째 소생인 사내중 금이창金伊昌(35세), 순지의 첫째 소생인 계집중 보寶(15세), 둘째 소생인 사내중 운세云世(10세), 마얌이의 첫째 소생인 계집중 미금未今(10세) 등 6구의 몸을 전錢 50냥으로 값을 받고 후일 태어날 자녀들까지 모두 조담석에게 방매했음이 확실함. 끝.

행현감[서업][인]

[배탈사급입안] 10

건륭 28년 11월 일 해남현 입안

이 문기에 기재된 여중 점상占上(사망)의 셋째 소생인 계집중 성덕星德(병술생), 성덕의 둘째 소생인 사내중 명삼明三(신유생), 셋째 소생인 사내중 명진明眞(정묘생), 계집중 ㅁㅁ(사망)의 첫째 소생인 사내중 ㅁㅁ(병자생) 등 4구의 몸을 전錢 45냥으로 값을 받고 ㅁ인건ㅁ仁建에게 방매했음이 확실함. 끝.

행현감[서업][인]

[배탈사급입안] 11

건륭 29년 갑신(1764, 영조 40) 정월 일 해남현 입안

이 문기에 기재된 본 현縣 하동荷洞의 계집중 봉업奉業의 첫째 소생인 계집중 미정未丁(30세, 을묘생), 둘째 소생인 사내중 수산水山(28세, 정사생), 셋째 소생인 사내중 흥세興世(26세, 기미생), 미정의 첫째 소생인 계집중 잉서비蔞西非(11세, 갑술생) 등 4구를 본 현에 거주하는 윤생원댁尹生員宅 사내중 승위升位에게 방매했음이 확실함. 끝.

행현감[서업][인]

[배탈사급입안] 12

건륭 31년(1766, 영조 42) 2월 일 해남현 입안

이 문기에 기재된 진도 거주 계집중 사금四今(사망)의 넷째 소생인 계집중 개덕介德(을사생), 개덕의 첫째 소생인 사내중 송창宋昌(정축생), 둘째 소생인 계집중 ㅁ가단ㅁ可丹(기묘생) 등 3구를 진도에 거주하는 송매옥宋梅玉에게 방매했음이 확실함. 끝.

행현감[서업][인]

[배탈사급입안] 13

이 문기에 기재된 계집종 정서비(丁西非(사망)의 첫째 소생 계집종 수업(水業)의 셋째 소생인 계집종 필업(必業(신축생), 다섯째 소생인 계집종 필대(必代(기유생), 필업의 첫째 소생인 계집종 명대(命代(임술생), 둘째 소생인 사내종 명중(命中(무진생), 셋째 소생인 사내종 대중(代中(을묘생), 넷째 소생인 계집종 막례(莫禮(임오생), 필대의 첫째 소생인 계집종 한례(汗禮(임오생), 둘째 소생인 사내종 악봉(惡奉(을유생), 명대의 첫째 소생인 계집종 귀대(貴代(을유생) 등 9구의 몸을 전錢 50냥으로 값을 받고 이후에 태어날 자식들까지 모두 강진에 거주하는 차만철(車萬轍)에게 팔았음이 확실함. 끝.

건륭 31년 9월 일 입안

행[]주목[]州牧[]署押[]印

[배탈사급입안] 14

건륭 31년 병술 12월 일 해남현 입안

이 문기에 기재된 계집종 후상(厚上(사망)의 둘째 소생인 사내종 초봉(焦朋 1구를 현縣에 거주하는 김생원(鎭生員宅) 사내종 귀룡(貴龍)에게 방매했음이 확실함. 끝.

행현감[서업][인]

[배탈사급입안] 15

건륭 32년(1767, 영조 43) 정월 일 해남현 입안

이 문기에 기재된 여중 순심의 첫째 소생인 계집종 []리매[]里邁(갑[]생) 1구의 몸을 능주(綾州)에 거주하는 한량 박순원(朴淳源)에게 방매했음이 확실함. 끝.

행현감[서업][인]

[배탈사급입안] 16

건륭 32년 3월 일 해남현 입안

이 문기에 기재된 노아도 거주 계집종 순업(順業(사망)의 셋째 소생인 사내종 태산(太山(계미생) 1구를 현에 사는 윤생원의 사내종 성재(成才)에게 방매했음이 확실함. 끝.

행현감[서업][인]

[배탈사급입안] 17

건륭 32년 11월 일 해남현 입안

이 문기에 기재된 계집종 원량(遠良(사망)의 첫째 소생인 계집종 계화(桂化(병술생), 계화의 첫째 소생인 계집종 이단(二丹(경신생), 둘째 소생인 계집종 금덕(金德(병자생) 등 3구를 후에 태어날 소생까지

함께 강진에 사는 조수량趙秀良에게 방매했음이 확실함. 끝.

행현감[서업][인]

[배탈사급입안] 18

건륭 33년(1768, 영조 44) 4월 일 해남현 입안

이 문기에 기재된 지천 거주 계집종 칠화七化(사망)의 셋째 소생인 계집종 금상錦上(신축생), 금상의 첫째 소생인 사내중 연세軟世(무진생), 둘째 소생인 사내중 연래軟來(무인생) 등 3구를 강진에 거주하는 조수량에게 방매했음이 확실함. 끝.

행현감[서업][인]

[배탈사급입안] 19

건륭 33년 12월 일 해남현 입안

이 문기에 기재된 사내중 사▣四▣(사망)의 첫째 소생인 사내중 사▣四▣(계사생)과 이 사내중의 첫째 소생인 계집종 ▣덕▣德(갑인생), 둘째 소생인 계집종 감덕甘德(경신생) 등 3구와 이후 태어날 소생까지 현에 사는 김업산金業山에게 방매했음이 확실함. 끝.

행현감[서업][인]

[배탈사급입안] 20

건륭 34년(1769, 영조 45) 3월 일 해남현 입안

이 문기에 기재된 여중 윤상允尙(사망)의 셋째 소생인 사내중 귀창貴昌(신묘생)과 귀창의 첫째 소생인 사내중 흥이興伊(정묘생), 흥이의 첫째 소생인 계집종(금년출생) 등 3구의 몸을 전錢 40냥으로 값을 받고 이후 태어날 소생까지 함께 현에 사는 박생원朴生員의 사내중 정금丁金에게 방매했음이 확실함. 끝.

행현감[서업][인]

[배탈사급입안] 21

건륭 34년 9월 해남현 입안

이 문기에 기재된 계집종 축상丑尙의 셋째 소생인 사내중 승휴 昇休(22세, 무진생) 1구를 전錢 15냥 값을 받고 현에 거주하는 윤생원의 사내중 애사愛士에게 방매했음이 확실함. 끝.

행현감[서업][인]

[배탈사급입안] 22

건륭 54년(1789, 정조 13) 10월 일 해남현 입안

이 문기에 기재된 내용을 배효背效⁷⁰하는 일이다. 계집종 선덕善德(사망)의 첫째 소생인 계집종 막례莫禮 1구의 몸과 이후 태어날 소생까지 함께 장흥에 사는 한익좌韓益佐에게 방대했음이 확실함. 끝.

행현감[서업][인]

[배탈사급입안] 23

건륭 35년(1770, 영조 46) 11월 일 무안현務安縣 입안

이 문기에 기재된 장흥의 계집종 무서비(사망)의 넷째 소생인 사내중 ■선(■先이 양인 처에게서 낳은 첫째 소생인 계집종 조금섭曹今涉(무진생)과 둘째 소생인 사내중 아로미牙老味(경오생), 셋째 소생인 계집종 안심安心(계유생), 넷째 소생인 계집종 안덕安德(병자생) 등 4구의 몸을 이후에 태어날 소생까지 함께 장흥에 사는 고점재高占才에게 값을 받고 방대했음이 확실함. 끝.

행현감[서업][인]

[배탈사급입안] 24

건륭 36년(1771, 영조 47) 10월 일 해남현 입안

이 문기에 기재된 계집종 칠화七化(사망)의 첫째 소생인 사내중 사명士明(신묘생), 사내중 청돌靑突(사망)의 둘째 소생인 계집종 덕지德只(경술생), 덕지의 첫째 소생 계집종 곤아困娥(계유생), 둘째 소생인 계집종(금년 출생) 등 4구를 강진에 사는 조수량趙秀良에게 이후에 태어날 소생까지 함께 방대했음이 확실함. 끝.

행현감[서업][인]

[배탈사급입안] 25

건륭 36년 11월 해남현 입안

이 문기에 기재된 계집종 원양遠陽(사망)의 셋째 소생인 계집종 계금계금의 첫째 소생 유업柳業(임술생), 유업의 첫째 소생인 계집종 순례順禮(경인생) 등 2구의 몸을 이후 태어날 소생까지 함께 강진에 거주하는 송선宋善에게 방대했음이 확실함. 끝.

행현감[서업][인]

70 배효(背效) 앞 문기에 기재된 내용의 일부를 말소하고 그 내용을 뒷면에 언급하여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흔히 '효주배탈(效周背頭)' 등으로 쓰인다.

[배탈사급입안] 26

건륭 37년 2월 일 해남현 입안

이 문기에 기재된 계집종 약섭岳涉(사망)이 낳은 사내중 계남癸男의 첫째 소생인 세금世今의 첫째 소생 사내중 동석同石(계축생), 계남의 둘째 소생인 사내중 세재世才(무술생), 셋째 소생인 사내중 상재尙才(을사생), 넷째 소생인 사내중 상태尙太(기유생), 다섯째 소생인 계집종 말심심心(경술생), 세재의 첫째 소생인 사내중 효창孝昌(무오생), 세재의 둘째 소생인 사내중 소태小太(을축생), 셋째 소생인 계집종 소단小丹(경오생), 넷째 소생인 사내중 소돌小突(임신생), 다섯째 소생인 계집종 마당덕馬堂德(경진생), 말심의 첫째 소생인 사내중 이재二才(갑신생), 둘째 소생인 사내중 이봉二奉(정해생) 등 12구의 몸을 후에 태어날 소생까지 함께 진도에 거주하는 설[창薛昌]에게 방해했음이 확실함. 끝.

행헌감[서업][인]

[배탈사급입안] 27

건륭 37년 임진(1772, 영조 48) 3월 일 해남현 입안

이 문기에 기재된 영암 거주 사내중 대산大山의 둘째 소생인 계집종 대추大秋, 셋째 소생인 계집종 대화大化, 넷째 소생인 계집종 여화汝化, 다섯째 소생인 계집종 소화小化, 여섯째 소생인 사내중 철장哲長, 대산의 첫째 소생인 대군大軍(사망)의 첫째 소생인 운사云寺, 둘째 소생인 사내중 운주云周, 대화의 첫째 소생인 사내중 세신世申 등 8구와 계집종 대추의 복중태아를 비롯해 후에 태어날 소생까지 함께 영암에 거주하는 정덕화鄭德華에게 방해했음이 확실함. 끝.

행헌감[서업][인]

[배탈사급입안] 28

건륭 37년 5월 일 해남현 입안

이 문기에 기재된 창원昌元의 소생인 금례今禮의 첫째 소생 계집종 조량朝良(갑술생), 조량의 첫째 소생인 사내중 충강忠江(정묘생), 둘째 소생인 사내중 대운代云(정축생), 셋째 소생인 계집종 대금代今(기묘생), 넷째 소생인 사내중 순귀順貴(계미생) 등 5구를 후에 태어날 소생까지 함께 장흥에 거주하는 한량 조[趙]에게 방해했음이 확실함. 끝.

행헌감[서업][인]

[배탈사급입안] 29

건륭 37년 12월 일 해남현 입안

이 문기에 기재된 계집종 점대占代(사망)의 둘째 소생인 계집종 내은월內隱月이 낳은 넷째 소생 계집종 화진化眞(을해생) 1구의 몸을 후에 태어날 소생까지 함께 장흥에 거주하는 전도사리田道沙里에게

방매했음이 확실함. 끝.

행현감[서업][인]

[배탈사급입안] 30

건륭 38년(1773, 영조 49) 2월 일 해남현 입안

이 문기에 기재된 계집종 기단己丹(사망)의 둘째 소생인 승노僧奴 보학甫學 1구를 현에 사는 박대권 朴大權에게 방매했음이 확실함. 끝.

행현감[서업][인]

[배탈사급입안] 31

건륭 38년 9월 일 해남현 입안

이 문기에 기재된 계집종 원양遠陽(사망)의 첫째 소생인 계집종 감甘 甘(임진생), 둘째 소생인 사내종 묵돌墨斗(임인생) 2구를 본 현에 사는 윤생원의 사내종 甘 甘에게 방매했음이 확실함. 끝.

행현감[서업][인]

[배탈사급입안] 32

건륭 38년 해남현 입안

이 문기에 기재된 계집종 칠화七化(사망)의 첫째 소생 계집종 금섭今涉이 낳은 다섯째 소생인 사내종 수포水包(병인생) 1구를 장흥에 사는 심생원沈生員의 사내종 금동金同에게 방매했음이 확실함. 끝.

행현감[서업][인]

[배탈사급입안] 33

건륭 38년 해남현 입안

이 문기에 기재된 계집종 악섭岳涉의 소생인 계집종 세금世今의 둘째 소생 사내종 업業(정묘생) 1구를 진도에 거주하는 설악창薛岳昌에게 방매했음이 확실함. 끝.

행현감[서업][인]

[배탈사급입안] 34

건륭 39년(1774, 영조 50) 해남현 입안

이 문기에 기재된 계집종 채상采上(사망)의 다섯째 소생인 계집종 순매順每(신해생), 이 계집종의 첫째 소생인 사내종 점동占同(기사생), 둘째 소생인 사내종 금태金太(임신생), 셋째 소생인 사내종 금재金才(을해생), 넷째 소생인 계집종 봉금奉今(무인생) 등 5구를 나주에 사는 임생원任生員의 사내종

부억夫億에게 방대했음이 확실함. 끝.

행현감[서업][인]

[배탈사급입안] 35

건륭 39년 정월 일 해남현 입안

이 문기에 기재된 사내중 설금설金(사망)의 첫째 소생 사내중 순지順之(■)의 셋째 소생인 사내중 ■(■)(병자생), 넷째 소생인 계집중 ■금■(신사생), 설금의 둘째 소생인 계집중 마얏馬얏이 속량 전에 낳은 둘째 소생 계집중 천상天上(정축생), 셋째 소생인 사내중 ■동■(경진생), 넷째 소생인 계집중 후진厚眞(계미생) 등 ■구를 후에 태어날 소생까지 함께 전錢 100냥을 값으로 받고 ■에게 방대했음이 확실함. 끝.

행현감[서업][인]

[배탈사급입안] 36

건륭 41년(1776, 영조 52) 2월 일 해남현 입안

이 문기에 기재된 사내중 일망一望(사망)의 소생인 계집중 풍화風化의 둘째 소생 계집중 순항順恒(무오생), 넷째 소생인 사내중 소항小恒(무인생), 순항의 첫째 소생인 계집중 복진卜辰(갑신생), 둘째 소생인 계집중 복아卜娥(정해생), 셋째 소생인 사내중 성인成仁(신묘생), 넷째 소생인 계집중 미안未安(을미생) 등 6구의 몸을 후에 태어날 소생까지 함께 전錢 150냥을 값으로 받고 현내에 거주하는 윤생원의 사내중 성재成才에게 방대했음이 확실함. 끝.

행현감[서업][인]

[배탈사급입안] 37

건륭 44년(1779, 정조 3) 정월 일 입안

이 문기에 기재된 계집중 백상白尙(사망)의 다섯째 소생인 사내중 어둔於屯(임술생) 1구를 후에 태어날 소생까지 함께 흥양興陽에 사는 한량 김봉채金鳳彩에게 방대한 것이 확실함. 印.

행현감[서업][인]

[배탈사급입안] 38

건륭 44년 정월 일 입안

이 문기에 기재된 계집중 선일善日(사망)의 첫째 소생인 계집중 ■■■(정미생), 이 계집중의 첫째 소생인 계집중 만평萬平(정묘생), 둘째 소생인 계집중 만화萬化(무인생), 셋째 소생인 사내중 만동萬東(경진생), 넷째 소생인 계집중 ■대■(을유생) 등 5구와 만화의 복중 태아, 후에 태어날 소생까지

지 함께 흥양에 사는 한량 차재현車載鉉에게 방대한 것이 확실함. 끝.

행현감[서업][인]

[배탈사급입안] 39

건륭 44년 정월 일 입안

이 문기에 기재된 여중 추량秋良(사망)의 소생 계집종 ㉠례㉡禮의 첫째 소생인 계집종 ㉢㉣의 첫째 소생인 득강得江(정축생)과 ㉤...㉬ 2구를 후에 태어날 소생까지 함께 흥양에 사는 가선嘉善 박성재朴聖載에게 방대한 것이 확실함. 끝.

행현감[서업][인]

[배탈사급입안] 40

건륭 46년(1781, 정조 5) 해남현 입안

이 문기에 기재된 계집종 세금世今(사망)의 첫째 소생인 사내중 정명正明(경신생), 넷째 소생인 사내중 순이順伊(기사생), 다섯째 소생인 사내중 철순哲順(임신생), 계집종 준㉠俊㉡의 소생인 계집종 독업獨業(사망)의 둘째 소생인 계집종 태진太眞(신유생)과 태진의 첫째 소생인 계집종 인덕仁德(을유생), 둘째 소생인 사내중 인남仁男(병술생), 셋째 소생인 계집종 노랑老郎(계사생), 넷째 소생인 계집종 검양黔仰(기해생) 등 총 8구의 몸을 후에 태어날 소생까지 함께 현에 사는 김생원의 사내중 어린노미於齡老味에게 방대한 것이 확실함. 끝.

행현감[서업][인]

[배탈사급입안] 41

건륭 47년(1782, 정조 6) 해남현 입안

이 문기에 기재된 내용을 배효하는 일이다. 계집종 정화丁化(사망)의 소생인 계집종 복상卜上 ㉠...㉢(이 계집종의) 소생인 사내중 차숙次淑(병오생) 1구를 후에 태어날 소생까지 함께 같은 현에 거주하는 윤생원의 사내중 성재星才에게 방대한 것이 확실하므로 배효함. 끝.

행현감[서업][인]

[배탈사급입안] 42

건륭 48년(1783, 정조 7) 2월 일 해남현 입안

이 문기에 기재된 사내중 월망月望(사망)의 소생인 계집종 풍화風化(병신생), 이 계집종의 셋째 소생인 사내중 군이軍伊(계해생) 등 2구 몸을 현에 사는 윤생원의 사내중 성재에게 방대한 것이 확실함. 끝.

행현감[서업][인]

[배탈사급입안] 43

건륭 51년(1786, 정조 10) 해남현 입안

이 문기에 기재된 계집종 칠화七化(사망)의 둘째 소생인 계집종 금화錦化(갑진생), 이 계집종의 첫째 소생인 계집종 칠대七代(갑자생), 둘째 소생인 사내중 명창明昌(정축생), 셋째 소생인 사내중 냉금冷金(경진생), 넷째 소생인 사내중 냉복冷卜(병술생), 계집종 칠대의 첫째 소생인 사내중 도이사리道伊沙里(경자생) 등 6구를 본 현에 거주하는 박생원택의 귀동貴同에게 방대한 것이 확실함. 끝.

행현감[서업][인]

[배탈사급입안] 44

가경원년嘉慶元年(1796, 정조 20) 병진년 4월 일 해남현 입안

이 문기에 기재된 여중 담례淡禮(사망)의 첫째 소생인 사내중 눈이嫩伊(사망)의 첫째 소생 사내중 정오丁五(병자생), 둘째 소생인 사내중 순태順太(사망), 셋째 소생 계집종 연비延非(임오생), 넷째 소생 계집종 연심延心(갑오생), 정오의 첫째 소생인 사내중 수귀水貴(신축생), 순태의 첫째 소생인 사내중 기운근기운(기유생), 계집종 눈서비嫩西非(계해생), 눈서비의 첫째 소생인 계집종 성덕性德(을유생), 둘째 소생인 계집종 성창性昌(경인생), 계집종 혼심欣心(병인생), 혼심의 첫째 소생인 사내중 성삼聖三(무자생), 둘째 소생인 계집종 성단聖丹(경인생), 사내중 금금(사망)의 첫째 소생인 계집종 잉단荊丹(기해생), 계집종 포덕包德(신미생), 포덕의 첫째 소생인 계집종 복덕卜德(기사생), 둘째 소생인 사내중 종득終得(기유생) 등 총 15구를 영암에 거주하는 고생원의 사내중 수장水長에게 방대한 것이 확실함. 끝.

행현감[서업]

乾隆二十五年庚辰十一月二十七日同生和會文記

右成文者 父母主下世終喪後 田地藏獲卽爲分派 而中年諸兄弟散處京鄉 且多事故 未及和會者 至於四十年之久矣 今者始得成券 而分衿之例 則依國典施行事

一 奉祀條 依國典除出五分之一 而世傳之 不分於衆子孫事

一 白蓮洞白也只兩處家舍山地及村基 永勿分派 而衆子孫居住者 移徙他處 則家基還屬宗家事

一 白也只斗毛浦 則有海澤立案 各家田地外 空地則永勿分派事

一 各處山所墓位田畝 亦勿移動事

一 奉祀條田地奴婢 永勿斥賣 而宗孫若違約 則衆子孫爭執 雖至於官下 勿令下手事

- 一 各家分派奴婢田地 其間雖已斥賣 依初分衿贖券 而自有各家斥賣文券 不爲舉論事
- 一 分財則戊戌所爲 而中間或分移于京 且多事故 至於四十年之久 而今年始成文券事
- 一 盟骨島則父母在世時負債甚多 故別出此島 以爲料利償債之計 不入於分衿中事
- 一 遺漏田民各子孫尋出者 宗家不爲舉論 而并別錄于末端事
- 一 各家田地之失漏者及奴婢逃走隱匿者之子孫 雖某家推尋 還屬於本分衿家事
- 一 分衿後成文券前 兄弟零落殆盡 各子孫着名畫押 以代子某書墳事
- 一 白浦村基 皆是宗家不分之物 則各家雖有坊曲 苦干起墾處 盡屬於宗家事
- 一 椒寺洞長石洞望山立石洞諸處 皆有立案 與村基一體不分 雖有起墾者 還屬於宗家事
- 一 宗家田地散在各處者 宗孫或有移買之意 諸子孫極力爭執 俾勿遷動 而或有違約者 雖至官卞斷不饒貸事

…(이하 분재 내역 생략)…

朝奉大夫前行貞陵令 尹德熙[着名][署押]

二弟 尹德謙 代子懌

三弟 尹德熏 代子懌

四弟 尹德煦 代子懌

五弟 尹德烈 代子懌

六弟 尹德廉 代子懿

七弟 尹德顯

八弟 尹德杰 代子慥

九弟 尹德烝

長妹 權台彦 代孫

仲妹 洪緯漢

季妹 申光洙

筆執 從子惇[着名]

[背頃斜給立案] 1

乾隆二十六年辛巳長興府立案

右文付故婢戊西非三生婢一娘年甲午 四生婢雪云今一生奴允同年乙丑二口身乙 捧價十三

兩爲遣 後所生并以 沈生員奴金伊同處放賣的實印

行府使[署押][印]

[背頃斜給立案] 2

乾隆二十五年庚辰十二月日長興府立案

右文付故婢戊西非五生婢戊禮年丁酉 同婢一生奴良卜年癸酉生二口乙 府居沈生員奴金同處放賣的實印

行府使[署押][印]

[背頃斜給立案] 3

乾隆二十五年庚辰十二月日長興府立案

右文付長興故婢金西非一生婢小牙年辛巳 同婢一奴北實年乙巳 二婢芑春年辛酉 金西非二婢尚業同婢二奴今太年戊午生等四口身乙 本府居崔生員奴千年金處 准捧價後 永永放賣的實印

行府使[署押][印]

[背頃斜給立案] 4

乾隆二十五年庚辰十二月日長興府立案

右文付長興止川居故婢水陽五生奴善白年六十二己卯生一口身乙 本府居沈生員奴金同處放賣的實印

行府使[署押][印]

[背頃斜給立案] 5

乾隆二十六年辛巳二月日長興府立案

右文付故奴秋山良一生奴青芑伊年庚辰 同奴良一生奴當代年庚戌生二口身乙 捧價貳拾參兩 後之所生并以 永永放賣於魯聖麟處的實印

行府使[署押][印]

[背頃斜給立案] 6

乾隆二十六年長興府立案

右文付故婢青禮一生婢莫西非年戊戌 同婢一生奴髀同年己卯 二生婢貴年庚辰三口身乙 捧價貳拾七兩捧上爲遣 後所生并以 魯聖麟處 後所生并以 永永放賣的實印

行府使[署押][印]

[背頤斜給立案] 7

乾隆二十六年長興府立案

右文付故奴友山良二生婢錦上年庚辰一口乙 捧價錢十二兩爲遣 沈生員奴金伊同處放賣的實印

行府使[署押][印]

[背頤斜給立案] 8

乾隆二十八年月日□□□立案

右文付故婢秋良五生奴白伊年七十身一口乙 閑良趙□□□□□□□□(淡石處放賣的實印)

行縣監[署押][印]

[背頤斜給立案] 9

乾隆二十八年十一月日海南縣立案

右文付故奴豐金一婢順之年四十 二婢馬鬻伊年三十七 三奴金伊昌年三十五 順之一婢寶□年十五 二奴云世年十 婢馬鬻伊一婢未今年十六口身乙 捧價錢五十兩 後所生并以 趙淡石處放賣的實印

行縣監[署押][印]

[背頤斜給立案] 10

乾隆二十八年十一月日海南縣立案

右文付故婢占上三婢星德年丙戌 同婢二奴明三年辛酉 三奴明□(眞)年丁卯 故婢□□一奴□□年丙子四口身乙 捧價錢四十五兩爲遣□ 仁建處放賣的實印

行縣監[署押][印]

[背頤斜給立案] 11

乾隆二十九年甲申正月日海南縣立案

右文付本縣荷洞婢奉業一生婢未丁年三十乙卯 二生奴水山年二十八丁巳 三生奴興世年二十六己未 未丁一生婢苐西非年十一甲戌四口身乙 本縣居尹生員宅奴升位處放賣的實印

行縣監[署押][印]

[背頤斜給立案] 12

乾隆三十一年二月日海南縣立案

右文付珍島居故婢四今四生婢介德年乙巳 同婢一生奴宋昌年丁丑 二生婢^口可丹年己卯三
口身^乙 珍島居宋梅玉處放賣的實印
行縣監[署押][印]

[背頃斜給立案] 13

右文付故婢丁西非一婢水業同婢三婢必業年辛丑 五生婢必代年己酉 婢必業一婢命代年壬
戌
二奴命中年戊辰 三奴代中年乙卯 四婢莫禮年壬午 婢必代一婢汗禮年壬午 二奴惡奉年乙酉
婢命代一婢貴代年乙酉九口身^乙 捧價錢伍拾兩後所生并^以 康津居車萬轍處
放賣的實印
乾隆三十一年九月日立案
行^口州牧[署押][印]

[背頃斜給立案] 14

乾隆三十一年丙戌十二月日海南縣立案
右文付故婢厚上二生奴焦朋一口身^乙 縣居金生員宅奴貴龍處放賣的實印
行縣監[署押][印]

[背頃斜給立案] 15

乾隆三十二年正月日海南縣監立案
右文付婢順心一婢^口(里)邁年甲^口生一口身^乙 綾州居閑良朴淳源處放賣的實印
行縣監[署押][印]

[背頃斜給立案] 16

乾隆三十二年三月日海南縣立案
右文付露兒島居故婢順業三奴太山年癸未一口身^乙 縣居尹生員^口(奴)成才處放賣的實印
行縣監[署押][印]

[背頃斜給立案] 17

乾隆三十二年十一月日海南縣立案
右文付故婢遠良一生婢桂化年丙戌 同婢一生婢二丹年庚申 二生婢金德年丙子三口身^乙 後
所生并^以 康津居趙秀良處放賣的實印

行縣監[署押][印]

[背頤斜給立案] 18

乾隆三十三年四月日海南縣立案

右文付止川居故婢七化三生婢錦上年辛丑 同婢一生奴軟世年戊辰 二生奴軟來年戊寅三口

身乙 康津居趙秀良處放賣的實印

行縣監[署押][印]

[背頤斜給立案] 19

乾隆三十三年十二月日海南縣立案

右文付故奴四口一生奴四口年癸巳 同奴一生婢口德年甲寅 二生婢甘德年庚申三口身乙 後

所生并以 縣居金業山處放賣的實印

行縣監[署押][印]

[背頤斜給立案] 20

乾隆三十四年三月日海南縣立案

右文付故婢允尙三生奴貴昌年辛卯 同奴一生奴興伊年丁卯 同奴一生婢今年生三口身乙 捧

價錢四十兩後所生并以 縣居朴生員奴丁金處放賣的實印

行縣監[署押][印]

[背頤斜給立案] 21

乾隆三十四年九月海南縣立案

右文付婢丑尙三生奴僧月訓年二十二戊辰一口身乙 捧價錢十五兩 縣居尹生員奴愛士處

放賣的實印

行縣監[署押][印]

[背頤斜給立案] 22

乾隆五十四年十月日海南縣立案

右文付背爻事故婢善德一所生婢莫禮一口身乙 長興居韓益佐處後所生并以 放賣的實印

行縣監[署押][印]

[背頤斜給立案] 23

乾隆三十五年十一月日務安縣立案

右文付長興故婢戊西非四生奴[■]先良一生婢曹今涉年戊辰 二生奴牙老味年庚午 三生婢安心年癸酉 四生婢安德年丙子四口身^乙 長興居高占才處 後所生并以 捧價放賣的實印
行縣監[署押][印]

[背頃斜給立案] 24

乾隆三十六年十月日海南縣立案

右文付故婢七化一生奴士明年辛卯 故奴青芑二生婢德只年庚戌 同婢一生婢困娥年癸酉 二生婢

今年生四口^乙 康津居趙秀良處 後所生并以 放賣的實印

行縣監[署押][印]

[背頃斜給立案] 25

乾隆三十六年十一月海南縣立案

右文付故婢遠陽三生婢癸今同婢一生婢柳業年壬戌 同婢一生婢順禮年庚寅二口身^乙 後所生并以 康津居宋善處放賣的實印

行縣監[署押][印]

[背頃斜給立案] 26

乾隆三十七年二月日海南縣立案

右文付故婢岳涉所生奴癸男一婢世今同婢一奴同石年癸丑 癸男二奴世才年戊戌 三奴尙才年乙巳 四奴尙太年己酉 五婢忞心年庚戌 奴世才一奴孝昌年戊午 二奴小太年乙丑 三婢小丹年庚午 四奴小芑年壬申 五婢馬堂德年庚辰 婢忞心一奴二才年甲申 二奴二奉年丁亥 十二口身^乙 後所生并以 珍島居薛[■]昌處放賣的實印

行縣監[署押][印]

[背頃斜給立案] 27

乾隆三十七年壬辰三月日海南縣立案

右文付靈岩居奴大山一生奴大軍故 二生婢大秋 三婢大化 四婢汝化 五婢小化 六奴哲長 奴大軍一奴云寺 二奴云周 婢大化一奴世申八口及婢大秋腹胎與後所生并以 靈岩居鄭德華處放賣的實印

行縣監[署押][印]

[背頃斜給立案] 28

乾隆三十七年五月日海南縣立案

右文付昌元所生今禮一生婢朝良年甲戌 同婢一奴忠江年丁卯 二奴代云年丁丑 三婢代今年
己卯 四奴順貴年癸未生五口身乙 後所生并以 長興居閑良趙▣▣處放賣的實印
行縣監[署押][印]

[背頃斜給立案] 29

乾隆三十七年十二月日海南縣立案

右文付故婢占代二婢內隱月同婢四生婢化眞乙亥生一口身乙 後所生并以 長興居田道沙里處
放賣的實印
行縣監[署押][印]

[背頃斜給立案] 30

乾隆三十八年二月日海南縣立案

右文付故婢己丹二生僧奴甫學一口身乙 縣居朴大權處放賣的實印
行縣監[署押][印]

[背頃斜給立案] 31

乾隆三十八年九月日海南縣立案

右文付故婢遠陽一婢甘▣年壬辰 二奴墨夏年壬寅二口身乙 本縣居尹生員奴▣▣(星才)處放
賣的實印
行縣監[署押][印]

[背頃斜給立案] 32

乾隆三十八年海南縣立案

右文付故婢七化一生婢今涉五生奴水包年丙寅一口乙 長興居沈生員奴金同處放賣的實印
行縣監[署押][印]

[背頃斜給立案] 33

乾隆三十八年海南縣立案

右文付婢岳涉所生婢世今同婢二生奴業年丁卯一口身乙 珍島居薛岳昌處放賣的實印
行縣監[署押][印]

[背頃斜給立案] 34

乾隆三十九年海南縣立案

右文付故婢采上五婢順每年辛亥 同婢一奴占同年己巳 口奴金太年壬申 三奴金才年乙亥 四婢奉今年戊寅五口身乙 羅州居任生員宅奴夫億處放賣的實印

行縣監[署押][印]

[背頃斜給立案] 35

乾隆三十九年正月日海南縣立案

右文付故奴鏹金一生奴順之口口 三生奴口口年丙子 四生婢口今年辛巳 奴鏹金二婢馬鬣 贖前二生婢天上年丁丑 三奴口東年庚辰 四婢厚真年癸未口口(五)口乙 後所生并以 捧價錢百兩口口口口處放賣的實印

行縣監[署押][印]

[背頃斜給立案] 36

乾隆四十一年二月日海南縣立案

右文付故奴一望所生婢風化二生婢順恒年戊午 四生奴小恒年戊寅 婢順恒一生婢卜辰年甲申 二生婢卜娥年丁亥 三生奴成仁年辛卯 四生婢未安年乙未六口身乙 後所生并以 捧價錢百五十兩 縣居尹生員奴成才處放賣的實印

行縣監[署押][印]

[背頃斜給立案] 37

乾隆四十四年正月日立案

右文付故婢白尙五生奴於屯年壬戌生一口乙 後所生并以 興陽居閑良金鳳彩處放賣的實印

行縣監[署押][印]

[背頃斜給立案] 38

乾隆四十四年正月日立案

右文付故婢善日一生婢口口年丁未 同婢一生婢萬平年丁卯 二生婢萬化年戊寅 三生奴萬東年庚辰 四生婢口代年乙酉生五口身及婢萬化腹胎 與後所生并以 興陽居閑良車載鉉處放賣的實印

行縣監[署押][印]

[背頤斜給立案] 39

乾隆四十四年正月日立案

右文付故婢秋良所生婢^口禮一生婢^{口口口口}一生得江年丁丑^口…^口二口^乙 後所生并以 興陽居^{口口口口}朴聖載處放賣的實印

行縣監[署押][印]

[背頤斜給立案] 40

乾隆四十六年海南縣立案

右文付故婢世今一奴正明年庚申 四奴順伊年己巳 五奴哲順年壬申 婢俊^口所生故婢^口業二婢太真年辛酉 同婢一婢仁德年乙酉 二奴仁男年丙戌 三婢老郎年癸巳 四婢黔仰年己亥合八口身^乙 後所生并以 縣居金生員奴於齡老味處放賣的實印

行縣監[署押][印]

[背頤斜給立案] 41

^口…^口(乾隆)四十七年海南縣立案

^口…^口(右文付背)爻事 故婢丁化所生婢卜上^口…^口所生奴次淑年丙午生一口身^乙 後所生并以 同縣居尹生員奴星才處 放賣的實是乎等以 背爻印

行縣監[署押][印]

[背頤斜給立案] 42

乾隆四十八年二月日海南縣立案

右文付故奴月望所生婢風化年丙申 同婢三生奴軍伊年癸亥二口身^乙 縣居尹生員奴星才處放賣的實印

行縣監[署押][印]

[背頤斜給立案] 43

乾隆五十一年海南縣立案

右文付故婢七化二生婢錦化年甲辰 同婢一生婢七代年甲子 二生奴明昌年丁丑 三生奴冷金年庚辰 四生奴冷卜年丙戌 婢七代一生奴道伊沙里年庚子六口^乙 本縣居朴生員宅貴同處 放賣的實印

行縣監[署押][印]

[背頃斜給立案] 44

嘉慶元年丙辰四月日海南縣立案

右文付故婢淡禮一生奴嫩伊故一生奴丁五年丙子 二奴順太故 三婢延非年壬午 四婢延心年
甲午 丁五一奴水貴年辛丑 順太一奴己云年己酉 婢嫩西非年癸亥 一生婢性德年乙酉 二婢性
昌年庚寅 婢欣心年丙寅 一生奴聖三年戊子 二生婢聖丹年庚寅 奴今[■]故 一生婢苧丹年己亥
婢包德年辛未 一生婢卜德年己巳 二生奴終得年己酉 合十五口身^乙 靈岩居高生員奴水長處
放賣的實印
行縣監[署押]

3-1-8) 1608년 임조이林召史 분급문기分給文記와 배탈사급입안 1건

[1608년(광해군 즉위년)에 임조이林召史가 자식 3남매에게 재산을 나눠 주면서 작성한 분급문기와 배탈사급입안 1건]

임종남任終男 가장家藏 1도度⁷¹

만력 36년(1608, 광해군 즉위년) 무신 12월 15일 자녀 삼남매에게 주는 문기

이 문기를 다음과 같이 작성한다. 전답은 이미 몫을 나누어 허여許與해 주었는데, 노비는 남편 생시에 만들어둔 도문기都文記⁷²를 적자들이 받아두었다가⁷³, 정유왜란 때에 잃어버린 후에 아직 문기를 다시 만들지 못하였기 때문에 남편에게서 몫으로 받은 계집종 말개⁷⁴ 및 이 계집종 말개의 소생인 계집종 예상禮上, 계집종 안심安心 등을 자녀 3남매에게 몫으로 주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올해 11월에 적자손 등 동생이 모였으므로 도문기都文記의 본 뜻에 따라서 화회和會 성문을 받은 후에야 삼남매에게 평균 분집하니, 자녀들이 가지고 사환하여 영원히 자손에게 전하도록 할 것이다.

장녀 손자 김수억金守億 몫: 남편 쪽 말개 2소생 계집종 안심 나이(7세, 임인생). 장녀 해생亥生이

71 임종남(任終男) 가장(家藏) 1도(度) 문서 원문과 별도로 나중에 추가된 부분이다. 임종남 집안에 보관되어 오던 1건의 문서임을 뜻한다.

72 도문기(都文記) 보통 분재기를 작성할 때 상속인 전원의 몫을 다 기록한 문기를 도문기라 하고, 각 상속인 1인의 몫만 기록한 것을 깃부(衿付) 문기라 한다. 동일한 분재기를 상속인 수만큼 작성하여 1장씩 나눠 갖지만, 재산이 많은 경우 장남이 도문기를 보관하고 나머지 상속인은 깃부문기를 받기도 한다.

73 적자들이 받아두었다가 임조이가 누군가의 첩이고, 남편의 재산을 적자들이 1차 분할한 후 자신의 자식인 첩자들이 그 후에 분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난 무술년에 죽었고, 손자 수억守億은 나이가 어리므로 나이를 따져서 비슷한 뜻으로 계집종 말개 2소생 계집종 안심을 허급하는 것임.

차남 종남終男 冑: 남편 쪽 계집종 거비鉅非 8소생 계집종 말개(30세, 기묘생).

말녀 막생莫生 冑: 남편 쪽 계집종 말개 1소생 계집종 예상(9세, 경자생).

재주財主 어머니 임조이林召史 [右掌]

증인證人 적손嫡孫 부장部將 임경발任慶潑 [작명] [서업]

필집筆執 사과司果 김의덕金毅德 [작명] [서업]

[배탈 사급입안]

만력 40년(1612, 광해군 4) 정월 27일 계집종 말개 및 소생 사내중 정개丁介 등 2구를 윤감사尹監司의 호노戶奴 정복定福에게 방매할 때에 증인 임대영任大英, 임달영任達英, 필집筆執 권숙權叔, 비주婢主 임종남任終男 등을 추열推闕하고 매득한 것이 분명한 정복定福에게 사급斜給함. 끝[卽].

행현감行縣監 [서업]

任終男家藏壹度

萬曆三十六年戊申十二月十五日 子女三娣妹亦中許與成文

右成文事段 田畝已爲分衿許給爲乎矣 奴婢段 家翁生時成置都文記乙 嫡子等逢授爲有如可 丁酉倭亂闕失後 未有文記乙仍于 家翁前衿得婢忝介及同婢忝介所生婢禮上婢安心等子女 三

娣妹亦中 衿給不得爲有如可 節同年十一月分 嫡子孫等同生爲有在都文記本意導良 和 會成文捧上後良沙 三娣妹亦中 平均分執爲去乎 子女等執持使喚 永傳子孫者

一長女孫金守億衿 家翁邊忝介二所生婢安心年七壬寅 長女亥生亦 去戊戌年身故 孫守億年 幼 故取年相若之義 婢忝介二所生婢安心乙 許給爲臥乎事

次男終男衿 家翁邊婢鉅非八所生婢忝介年三十己卯

末女莫生衿 家翁邊婢忝介一所生婢禮上年九庚子

財主 母林召史[右掌]

證人 嫡孫部將任慶潑[着名][署押]

筆執 司果金毅德[着名][署押]

[背頃斜給立案]

萬曆四十年正月廿七日 婢忝介及所生奴丁介等二口乙 尹

監司戶奴定福亦中放賣時 訂人任大英任達英 筆執權

叔 婢主任終男等推閱 買得的實有爲在定福亦中 斜給印
行縣監[署押]

3-1-9) 1739년 윤덕희尹德熙 별급문기와 배탈사급입안 1건

[1739년(영조 15)에 윤덕희가 아들 윤중尹悤에게, 나이가 마흔이 되었고 자녀도 많음을 축하하는 뜻으로 노비 7구를 별급한 문기]

건륭 4년(1739, 영조 15) 기미 9월 일 장자 중悤에게 별급하는 문서

이 문기를 다음과 같이 작성한다. 네 나이가 장차 마흔으로 자녀가 이미 많으니 기쁨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기에, 해남의 계집종 인서비懿西非의 첫째 소생 사내중 지철之哲(경신생), 둘째 소생 사내중 대철大哲(경오생), 수영水營의 계집종 엿서비懿西非의 둘째 소생 계집종 한양恨陽(신유생), 한양의 첫째 소생 사내중 효재孝才(병술생), 둘째 소생 사내중 중재中才(병오생), 셋째 소생 계집종 만아萬牙(무신생), 효재가 양처와 함께 낳은 첫째 소생 사내중 인금仁金(무오생) 등 7구의 몸을 후에 태어날 소생까지 함께 영원히 허급하니, 네가 오래 잘 사용하고 이 문서를 가지고 뒤에 증빙으로 삼을 일이다.

재주財主 아버지 윤덕희尹德熙 [작명][서업]

증證 동생제同生弟 윤덕후尹德煦 [작명][서업]

필筆 동생제 윤덕훈尹德薰 [작명][서업]

[배탈사급입안]

건륭 5년(1740, 영조 16) 윤6월 초1일 진도군珍島郡 사급斜給

이 문기에 올라 있는 수영水營에 사는 계집종 엿서비懿西非의 둘째 소생 계집종 한양恨陽(신유생)과, 이 계집종의 첫째 소생 사내중 효재孝才(병술생), 둘째 소생 사내중 중재中才(병오생), 셋째 소생 계집종 만아萬牙(무신생), 효재가 양처와 함께 낳은 첫째 소생 사내중 인금仁金(무오생) 등 5구의 몸을 전 문錢文으로 값을 매겨 110냥 받고 이들 노비를 후에 태어날 소생까지 함께 같은 현에 사는 전 첨정僉正 김무창金武昌에게 방매한 것이 확실함. 끝.

행군수行郡守 [서업]

乾隆四年己未九月日 長子悤處

別給文

右文爲 汝年將四十 子女已多 不

可無表喜之道 海南婢仁西非一生
奴之哲年庚申 二生奴大哲年庚午 水
營婢齡西非二生婢恨陽年辛酉 恨
陽一生奴孝才年丙戌 二生奴中才
年丙午 三生婢萬牙年戊申 孝
才良妻一生奴仁金年戊午等七口身
乙 後所生並以 永永許給 汝亦鎮長
使用 以此文爲憑後者
財主 父尹德熙[着名][署押]
證 同生弟尹德煦[着名][署押]
筆 同生弟尹德熏[着名][署押]

[背頃斜給立案]

乾隆五年閏六月初一日 珍島郡斜給

右文付水營居婢齡西非二所生婢恨陽年辛酉 同婢一生奴孝
才年丙戌 二生奴中才年丙午 三生婢萬牙年戊申 孝才良妻一生
奴仁金年戊午等五口身乙 價折錢文壹百拾兩捧上爲遣 同奴婢
後所生并以 同縣居前僉正金武昌處 放賣的實印

▣[行]郡守[署押]

3-1-10) 1744년 윤덕희 별급문기와 배탈사급입안 1건

[1744년(영조 20)에 윤덕희가 만아들 종례에게, 장녀의 혼인에 사환할 노비가 부족할 것을 걱정하
여 노비 5구를 별급한 문기]

건륭 9년(1744, 영조 20) 갑자 정월 20일 장자 종례에게 별급하는 문서

이 문서는 허급하기 위한 것이다. 너의 장녀가 지금 마야흐로 혼인을 하는데 사환하기 부족하지 않
을까 걱정되어 해남의 계집종 차정次丁의 첫째 소생인 사내종 천강千江(40세), 둘째 소생인 계집종 명
덕命德(34세), 계집종 명덕의 첫째 소생인 계집종 개介(10세), 계집종 선양先陽의 넷째 소생인 계집종
점덕占德(33세), 계집종 애정哀丁의 셋째 소생인 사내종 차명次明(33세) 등 5구의 몸을 영원히 허급하
니 오래 사환하고 이 문서를 가지고 앞으로 증빙할 일이다.

재주財主 아버지 [작명]

증證 동성 조카 윤혁尹愾 [작명]

필筆 동생 제 윤덕후尹德煦 [작명]

[배탈사급입안]

건륭 9년(1744) 11월 일 흥양관

이 문서에 있는 계집종 선양의 넷째 소생인 계집종 점덕(33세, 임진생)의 몸 1구를 류정한에게 값을 받고 방매한 것이 확실함. 끝.

행현감行縣監 [서업]

乾隆九年甲子正月二十日 長子悰處別給文

右文爲許給事 汝矣長女 今方當婚爲慮 使喚之不

齊 海南婢次丁一生奴千江年四十 二生婢命德年三十

四 婢命德一生婢介年十 婢先陽四生婢占德年三十三

婢哀丁三生奴次明年三十三等五口身乙 永永許給爲

去乎 鎮長使喚爲遣 以此文爲日後憑準者

財主 父[着名]

證 同姓侄尹愾[着名]

筆 同生弟尹德煦[着名]

[背嶼斜給立案]

乾隆九年十一月日 興陽官

右文付婢先良四生婢占德

年卅三壬辰生身一口乙 柳挺漢

處 捧價放賣的實印

行縣監[署押]

2. 노비매매문기

3-2-1) 1655년 윤별좌댁尹別座宅 노부 애순愛順 노비매매문기와 배탈사급입안 3건

[1655년(효종 6)에 윤별좌댁尹別座宅이 노비를 매득할 때 작성한 매매문기와 매입 후 방매하면서 작성된 배탈사급입안]

순치順治 12년(1655, 효종 6) 을미 9월 11일 윤별좌댁尹別座宅 사내중 애순愛順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쓸 데가 있어서 내가 매득하여 사환使喚하던 계집종 율음덕 栗音德의 둘째 소생인 계집종 인개仁介(46세), 이 계집종의 넷째 소생인 사내중 태일台日(18세), 다섯째 소생인 계집종 태응화太應花(13세), 여섯째 소생인 계집종 춘열春說(10세), 일곱째 소생인 계집종 금연생金連生(4세), 여덟째 소생인 계집종 막금莫今(1세), 계집종 막장莫壯(43세), 이 계집종의 둘째 소생인 계집종 이량貳良(18세), 셋째 소생인 사내중 석송石崇(11세), 다섯째 소생인 계집종 금년생金年生(2세) 등 10구口에 대해 목면木綿 3동同을 값으로 받고 이 노비들의 후소생까지 아울러서 이 사람의 상전덕에 영구히 방매한다. 본문기本文記는 다른 노비가 함께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내어줄 수 없다. 이 계집종 인개仁介의 소생인 계집종 선옥先玉, 사내중 선봉先奉, 사내중 선국先國 등 3구 및 그 소생들 외에 혹 다른 숨긴 소생이 있거나, 계집종 막장莫壯의 소생인 추량秋良 및 그 첫째 소생 외에 혹 다른 숨긴 소생이 있거나, 계집종 이량貳良의 소생에 혹시 숨긴 소생이 있을지라도 모두 아울러서 영구히 방매한다. 훗날 자손 가운데 잡담을 하는 일이 있으면 이 문기를 가지고 관에 고하여 변별해서 바로 잡을 일이다.

증인 사노 귀상貴上[좌촌]

증보證保 처부妻父 진막남陳莫男[좌촌]

자필自筆 노비주奴婢主 정병正兵 박태순朴太順[작명]

[배탈사급입안] 1

강희康熙 3년 갑진(1664, 현종 5) 4월 10일, 영암靈巖에 사는 서한익徐漢益이 소지所志를 제출했으므로, 계집종 막장莫莊의 둘째 소생인 계집종 이량貳良의 몸 1구口를 후소생까지 아울러 영구히 매득할 때, 계집종의 주인인 윤별좌댁 사내중 애순과 사내중 줄금礎金과 사내중 홍렬洪烈 등을 추열推闡하여 사급함. 끝[卍]

행현감[입]

[배탈사급입안] 2

정유년 3월 28일, 영암에 사는 정병正兵 서한룡徐漢龍이 소지所志를 제출하였으므로, 사내종 석송石崇을 윤별좌택 수노首奴 애순으로부터 매득할 때 증인 반노班奴 몽남夢男과 증보證保 반노班奴 줄금礎金 등을 추열推闡하여 이 사내종을 후소생까지 아울러서 매득한 것이 확실함을 확인했으므로 서한룡에게 사급함. 끝[印]

행현감行縣監[압]

[배탈사급입안] 3

정유년 3월 10일, 영암에 사는 정병 서한룡이 소지所志를 제출하였으므로, 사내종 태일台日을 윤별좌택 수노 애순으로부터 매득할 때 증인 반노班奴 몽남夢男과 증보證保 반노班奴 줄금礎金 등을 추열하여 이 사내종을 후소생까지 아울러서 매득한 것이 확실함을 확인했으므로 서한룡에게 사급함. 끝[印]

행현감[압]

順治拾貳年乙未玖月拾壹日 尹別座宅奴愛順處明文
右明文事段 要用所致以 自己買得使喚爲如乎 婢栗音
德貳所生婢仁介年肆拾陸 同婢肆所生奴台日年拾捌 五所
生婢太應花年拾參 陸所生婢春說年拾 柒所生婢今
連生年肆 捌所生婢莫今年壹 婢莫壯年肆拾參 同
婢貳所生婢貳良年拾捌 參所生奴石崇年拾壹 五所
生婢今年生年貳等拾 良中 價折木綿參同捧上爲
遣 同奴婢後所生并以 同人上典宅良中 永永放賣爲乎
矣 本文記段 他奴婢并付乙仍于 許納不得爲旡 右婢
仁介所生婢先玉奴先奉奴先國等參 及其所生外或有
他隱匿者爲去乃 婢莫壯所生婢秋良及其一所生外或有
他隱匿者爲去乃 婢貳良所生或有隱匿者爲良置 並
只永永放賣爲去乎 後次子孫中雜談爲去等 此文
記乙用良 告官卞正事

證人私奴貴上[左寸]

證保妻父陳莫男[左寸]

自筆奴婢主正兵朴大順[着名]

[背頃斜給立案] 1

康熙三年甲辰四月初十日 靈岩
居徐漢益狀以 婢莫莊二所生
婢貳良身一 後所生并以 永
永買得時 婢主尹別坐宅奴
愛順次奴 滄金奴洪烈
等推閱斜給印
行縣監[押]

[背頃斜給立案] 2

丁酉三月二十八日 靈岩接正兵徐漢龍狀以 奴石崇身乙 尹別坐宅
首奴愛順處買得時 證人班奴夢男 證保班奴滄金等推閱 同奴
後所生并以 買得的實爲在徐漢龍處斜給印
行縣監[押]

[背頃斜給立案] 3

丁酉三月十日 靈岩接正兵徐閑龍狀以 奴台日身乙 尹別坐
宅首奴愛順處買得時 證人班奴夢男 證保班奴滄金等
推閱 同奴後所生并以 買得的實爲在閑龍處斜給印
行縣監[押]

3-2-2) 1658년 윤인미 노비매득문기

[1658년(효종 9) 윤인미가 삼촌 숙모인 윤선언 처 원씨元氏로부터 노비를 매득할 때 작성한 문기]

순치順治 15년(1658, 효종 9) 무술 9월 15일 가옹家翁 동성同姓 3촌 조카 전前 별좌 윤인미尹仁美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쓸 데가 있어서 가옹변家翁邊으로부터 전래되어 사환하던 계집종 은생銀生의 둘째 소생인 계집종 승옥勝玉(갑자생), 계집종 금생今生의 다섯째 소생인 계집종 생춘生春(무오생), 이 계집종의 첫째 소생인 계집종 생덕生德(경진생), 둘째 소생인 사내종 생립生立(임진생), 사내종 덕륜德倫이 양인 처와 함께 낳은 넷째 소생인 계집종 순화順花(갑인생), 이 계집종의

첫째 소생인 계집종 점생點生(신미생), 둘째 소생인 사내종 점금點金(을해생), 셋째 소생인 계집종 축생丑生(정축생), 넷째 소생인 사내종 축민丑民(경진생), 다섯째 소생인 사내종 득민得民(계미생), 여섯째 소생인 계집종 득상得祥(을유생), 일곱째 소생인 계집종 말상말祥(무자생), 여덟째 소생인 계집종 정상丁祥(경인생), 아홉째 소생인 사내종 탑인塔仁(갑오생), 열번째 소생인 사내종 탑손塔孫(병신생) 등 15구口에 대해 목면 15동同을 값으로 받고 후에 태어날 소생까지 함께 이 사람에게 영구히 방해한다. 훗날 잡담하는 일이 있으면 이 문서를 가지고 관에 고하여 변별해서 바로잡을 일이다.

노비 주인 고故 동성同姓 3촌 숙부 윤선언尹善言 처 원씨元氏[도서圖書][윤선언처원씨尹善言妻元氏]

증인 열4촌擘四寸 전前 사과司果 윤선양尹善養[착명][서업]

필집 손자 유학 윤이후尹爾厚[착명]

順治十五年戊戌九月十五日 家翁同姓三寸姪前別坐尹仁美處明文
右明文事段 要用所致以 家翁邊傳來使喚婢銀生二所生
婢勝玉年甲子 婢今生五所生婢生春年戊午 同婢一所生婢生德
年庚辰 二所生奴生立年壬辰 奴德倫良妻并産四所生婢順
花年甲寅 同婢一所生婢點生年辛未 二所生奴點金年
乙亥 三所生婢丑生年丁丑 四所生奴丑民年庚辰 五所生奴
得民年癸未 六所生婢得祥年乙酉 七所生婢忝祥年戊
子 八所生婢丁祥年庚寅 九所生奴塔仁年甲午 十所生
奴塔孫年丙申等十五口良中 價木十五同捧上爲遣
後所生并以 同人處永永放賣爲去乎 後次雜談隅有去
等 將此文告官下正事

奴婢主 故同姓三寸叔尹善言妻元氏(「尹善言妻元氏」印, 方5cm)

證人 擘四寸前司果尹善養[着名][署押]

筆執 孫幼學尹爾厚[着名]

3-2-3) 1673년 윤인미 노비매득문기

[1673년(현종 14) 윤인미가 유흡柳瀾으로부터 노비를 매입할 때 작성한 매매문기]

강희 12년(1673) 계축년 8월 초5일 정자正字 윤인미尹仁美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저의 동생(同生) 형제들이 각각 몫으로 받은 노비들에 대하여 매년 신공(身貢)을 거둬 왔는데, 긴히 쓸 데가 있어서 동생 간에 서로 상의하여 각각의 몫으로 받은 노비를 방매(放賣)하되 다음과 같다.

영암(靈巖) 원두지(元頭池)에 살고 있는 계집종 윤비(閨非)의 첫째 소생인 계집종 몽화(夢化)(기유년생), 이 계집종의 둘째 소생인 계집종 독금(毒金)(갑술년생), 셋째 소생인 계집종 독심(毒心)(병자년생), 넷째 소생인 사내종 독승(毒承)(임오년생), 다섯째 소생인 사내종 독립(獨立)(갑신년생), 계집종 윤비(閨非)의 둘째 소생인 계집종 몽심(夢心)(무오년생), 이 계집종의 첫째 소생인 사내종 임승(壬承)(기묘년생), 둘째 소생인 사내종 신생(辛生)(신사년생), 셋째 소생인 계집종 신덕(辛德)(갑신년생), 다섯째 소생인 계집종 악녀(惡女)(정해년생), 여섯째 소생인 계집종 신헌(辛奭)(기축년생), 일곱째 소생인 계집종 악협(惡夾)(신묘년생), 강진(康津)의 여러포(如里浦)에 살고 있는 계집종 세덕(細德)의 첫째 소생인 계집종 은하(銀河)(갑인년생), 이 계집종의 소생으로 장흥(長興) 지천(地川)에 살고 있는 사내종 대복(大卜)(무진년생), 둘째 소생인 계집종 인심(仁心)(경오년생), 셋째 소생으로 이진(梨津)에 살고 있는 계집종 단심(丹心)(임신년생), 넷째 소생인 사내종 대승(大承)(갑술년생), 다섯째 소생인 사내종 은승(銀承)(병자년생), 여섯째 소생인 계집종 점진(點眞)(무인년생), 일곱째 소생인 사내종 정립(正立)(경진년생), 여덟째 소생인 사내종 말립(末立)(계미년생), 계집종 독심(毒心)의 첫째 소생인 사내종 윤일(閨日)(갑오년생), 셋째 소생인 계집종 농금(弄琴)(무술년생), 넷째 소생인 계집종 농협(弄夾)(무신년생), 계집종 신덕(新德)의 둘째 소생인 사내종 신립(新立)(기유년생), 계집종 단심(丹心)의 첫째 소생인 계집종 구월(九月)(갑오년생), 둘째 소생인 사내종 득남(得男)(정유년생), 셋째 소생인 사내종 예문(예文)(경자년생), 계집종 점진(點眞)의 첫 소생인 사내종 점리(點里)(신축년생), 셋째 소생인 사내종 점실(點實)(무신년생), 넷째 소생인 계집종 점대(點代)(신해년생), 계집종 인심(仁心)의 첫째 소생인 사내종 추산(秋山)(신묘년생), 둘째 소생인 사내종 우산(雨山)(갑오년생), 셋째 소생인 사내종 인남(因男)(병신년생), 넷째 소생인 계집종 인향(仁香)(무술년생), 계집종 세덕(細德)의 넷째 소생인 계집종 내은(內隱)(무진년생), 이 계집종의 둘째 소생인 내은심(內隱心)(병술년생), 셋째 소생인 계집종 내은향(內隱香)(기축년생), 넷째 소생인 사내종 굿금(毒金)(임진년생), 이상의 노비 총 39구(口)의 몸을 상목(常木) 22동(同)으로 값을 매겨 교역(交易)하여 받고 이 사람에게 전후(前後)소생(所生)을 모두 아울러 영구히 방매(放賣)한다. 관련 본문(本文)記는 다른 노비들의 명단이 함께 기재되어 있으므로 부득이 넘겨주지 못한다. 차후에 이에 대하여 어떤 이들이 잡담(雜談)한다면 이 문서를 가지고 관에 고하여 바로잡을 일이다.

노비주(奴婢主) 자필(自筆) 유학(幼學) 류흡(柳滄) [작명]

증인(證人) 동생매(同生妹) 유학(幼學) 오경문(吳景文) [작명]

증보(證保) 訂保 동성삼촌질(同姓三寸姪) 류문두(柳文斗) [작명]

康熙拾貳年癸丑八月初五日 正字尹仁美前明文

右明文事段 同生各衿奴婢每年收貢爲如乎 要用所致以 同生中相議 各其衿付奴婢放賣爲乎
矣 靈

岩元頭旨婢閏非一所生婢夢化年己酉 同婢二所生婢禿金年甲戌 三所生婢禿心年丙子 四所
生奴禿承年壬午 五所

生奴禿立年甲申 閏非二所生婢夢心年戊午 同婢一所生奴壬承年己卯 二所生奴辛生年辛巳
三所生婢辛德

年甲申 五所生婢惡女年丁亥 六所生婢辛夾年己丑 七所生婢惡夾年辛卯 康津如里浦婢細德
一所生婢

銀河年甲寅 同婢長興地川居奴大卜年戊辰 二所生婢仁心年庚午 三所生婢梨津居婢丹心年
壬

申 四所生奴大承年甲戌 五所生奴銀承年丙子 六所生婢點眞年戊寅 七所生奴正立年庚辰 八
所生奴磊立年癸未

婢禿心一所生奴閏日年甲午 三所生婢弄琴年戊戌 四所生婢弄夾年戊申 婢新德二所生奴新
立年己酉

婢丹心一所生婢九月年甲午 二所生奴得男年丁酉 三所生奴刈文年庚子 婢占眞一所生奴占
里利年

辛丑 三所生奴占實(宗)年戊申 四所生婢占代年辛亥 婢仁心一所生奴秋山年辛卯 二所生奴
雨山年甲午 三所生奴因

男年丙申 四所生婢仁香年戊戌 婢細德四所生婢內隱化年戊辰 同婢二所生婢內隱心年丙戌
三所生婢內隱香年己丑 四

所生奴叢金年壬辰 奴婢并參拾玖^回身乙 價折常木貳拾貳同 交易捧上爲遣 同人前後所生并
以 永永放

賣爲乎矣 本文記段 他婢奴并付乙仍于 許給不得爲去乎 後次良中 某人中雜談爲去等 將此
文告官下

正者

奴婢主 自筆 幼學柳瀾[着名]

證 同生妹幼學吳景文[着名]

證 同姓三寸姪柳文斗[着名]

3-2-4) 1677년 윤생원택 노 흥렬 노비매득문기

[1677년(숙종 3) 윤생원택尹生員宅이 오생원택吳生員宅으로부터 노비를 매득할 때 작성된 매매문기]

강희康熙 16년(1677) 정사년丁巳年 7월 24일 윤생원택 사내종 흥렬洪烈에게 주는 명문明文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저의 상전택上典宅 소유의 노비들이 해남海南과 영암(靈岩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데, 긴히 쓸 곳이 있어서 계집종 눌질심訥叱心의 첫째 소생인 사내종 녹금錄金(기묘년생), 둘째 소생인 계집종 녹금錄今(정해년생), 셋째 소생인 계집종 녹덕錄德(기축년생), 이 계집종의 첫째 소생인 사내종 엄돌시嚴丕屎(○○년생), 계집종 녹금錄今의 첫째 소생인 사내종 청산靑山(병오년생), 계집종 돌심脫心의 첫째 소생인 계집종 점금占金(기축년생), 둘째 소생인 계집종 점화占化(신묘년생), 셋째 소생인 계집종 모란某蘭(갑오년생), 계집종 아금阿今의 첫째 소생인 계집종 만월萬月(무진년생), 셋째 소생인 계집종 반화半化(신사년생), 넷째 소생인 계집종 말화壽化(경인년생), 이 계집종의 첫째 소생인 계집종 신상辛祥(정미년생), 둘째 소생인 사내종 시룡時龍(기유년생), 계집종 만월萬月의 첫째 소생인 계집종 만영萬影(기축년생), 둘째 소생인 계집종 단화丹化(신묘년생), 셋째 소생인 사내종 서음산西音山(계사년생), 넷째 소생인 사내종 석란石亂(을미년생), 다섯째 소생인 사내종 석룡石龍(정사년생), 계집종 만영萬影의 셋째 소생인 계집종 집상執祥(○○년생), 계집종 반화半化的 첫째 소생인 계집종 순지順之(신축년생), 사내종 별이別伊와 양인良人인 처妻가 낳은 첫째 소생인 사내종 일서기日西起(갑자년생), 넷째 소생인 계집종 순금順今(계유년생), 다섯째 소생인 사내종 순복順卜(신사년생), 계집종 순금順今의 첫째 소생인 계집종 순충順聰(정유년생), 둘째 소생인 사내종 천손天孫(기해년생), 계집종 가지加地的 셋째 소생인 계집종 해생海生(신미년생), 다섯째 소생인 사내종 해운海云(경인년생)의 몸 등 총 27구구를 보마步馬 1필匹로 값을 매기면 정은자正銀子 25냥兩이고, 자우雌牛 1척隻으로 값을 매기면 8냥이니, 총 33냥으로 쳐서 받고, 상전上典의 배자牌字에 따라 후소생後所生을 모두 아울러 영구히 방매한다. 본문기本文記는 다른 노비들이 함께 기록되어 있어서 부득이 넘겨주지 못한다. 차후에 만약 잡담雜談이 있으면 이 문기文記를 가지고 관에 고하여 바로잡을 일이다.

노비주奴婢主 오생원택吳生員宅 사내종 사남士男 [좌촌]

증인證人 사노私奴 수견守見 [좌촌]

사노私奴 막립莫立 [좌촌]

필집筆執 김진휘金震輝 [작명]

康熙拾陸年丁巳七月二十四日 尹生員宅奴洪烈處明文

右明文事段 矣上典宅奴婢等 居在海南靈岩地是如乎 要用所致以 婢訥叱心一

生奴錄金年己卯 貳生婢錄今年丁亥 參生婢錄德年己丑 同婢壹生奴嚴

夏屎年 婢泉今壹生奴青山年丙午 婢夏心壹生婢[奴]占金年己丑
 貳生婢占化年辛卯 參生婢某蘭年甲午 阿今壹生婢萬月年戊辰 參
 生婢半化年辛巳 肆生婢恣化年庚寅 同婢壹生婢辛祥年丁未 貳生
 奴時龍年己酉 婢萬月壹生婢萬彰年己丑 貳生婢丹化年辛卯 參生奴
 西音山年癸巳 肆生奴石亂年乙未 伍生奴石龍年丁巳 婢萬影參生婢執祥年 婢半化壹生婢
 順之年辛丑 奴別伊良產壹生奴
 日西起年甲子 肆生婢順今年癸酉 伍生奴順卜年辛巳 婢順今壹生婢順聯
 年丁酉 貳生奴天孫年己亥 婢加地參生婢海生年辛未 伍生奴海云年庚
 寅身等 并貳拾柒口乙 步馬壹匹 折價則正銀子貳拾伍兩 雌牛壹隻 折價則
 捌兩 合參拾參兩以 折價捧上爲遣 上典牌字導良 後所生並以 永永放
 賣爲乎矣 本文記段 他奴婢並付乙仍于 許給不得爲去乎 後次良中 若有
 雜談爲去等 持此文記告官卜正事

奴婢主 吳生員宅奴士男[左寸]

證 私奴守見[左寸]

私奴莫立[左寸]

筆執 金震輝[着名]

3-2-5) 1702년 윤 니산댁 노 필경(彌慶) 노비매득문기

[1702년(숙종 28)에 윤이산댁이 한생원댁(韓生員宅)으로부터 노비를 매득할 때 작성된 매매문기]

강희 41년 임오년 4월 13일 윤이산댁 사내중 필경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상전(上典) 님의 배자(牌字)에 따라 큰상전 님께서 살아계시던 지난 병인년(1686, 숙종 12)에 해남의 여중 정심(丁心), 안현(安玄), 선월(先月) 등 3구를 정조(正租) 20섬으로 값을 쳐 받고 윤이산댁 사내중 신남(申男)에게 팔았다. 그 때 피차간에 연달아 일이 생겨 그 즉시 관의 공증을 받지 못하였다. 이제 위 댁에서 관의 공증 문서를 발급받고자 하나 연한이 이미 지났을 뿐 아니라⁷⁴ 위 노비들도 방매 후에 또 자식을 낳았으므로 부득불 이전의 계약서를 고칠 수밖에 없다. 따

74 연한이~아니라 노비 등을 거래한 후 100일 안에 관에 고하여 입안을 받도록 『경국대전』에 규정되어 있다. 『경국대전』 戶典, 買賣限條

라서 이 사람에게 전문 20냥을 더 받고 위의 계집종 정심(54세, 기축생)과 이 계집종의 첫째 소생인 계집종 안현(31세, 임자생), 둘째 소생 계집종 선월(28세, 을묘생) 등 3구에, 정심의 셋째 소생인 사내종 시원時元(14세, 기사생), 안현의 첫째 소생인 계집종 유단有丹(3세, 경진생), 계집종 선월의 첫째 소생인 사내종 세득世得(3세, 경진생) 등 3구까지 아울러 총 6구를 이 맥 사내종 필경에게 영구히 판매한다. 단 본문기는 다른 토지와 노비들이 함께 기재되어 있으므로 넘겨주지 못하니, 이후에 상전택의 형제나 자손, 일가붙이 중에 잡소리를 하는 이가 있거든 이 문기를 가지고 관에 고하여 바로잡을 일이다.

노비주奴婢主 한생원택韓生員宅 사내종 상룡尙龍[좌촌]

증인 차해평車海平[작명]

필집 황진상黃震祥[작명]

康熙四十一年壬午四月十三日 尹尼山宅奴彌慶前明文
 右明文事段 上典主牌字導良 大上典主在世時 去丙寅年分海
 南婢丁心安玄先月等三口乙 價折正租貳拾石捧上爲遣 尹尼山
 宅奴申男處放賣爲乎矣 其時彼此連有事故 未卽官斜爲
 有如乎 今者同宅亦欲爲斜出爲乎矣 年限已過券不喻 右
 奴婢等放賣後 又有所生是乎等乙以 不得改作明文是白乎
 所 同人處錢文貳拾兩加捧納宅爲白遣 上項婢丁心年五十四
 己丑生 同婢一生婢安玄年三十一壬子生 二生婢先月年二十八乙
 卯生等三口 及同婢丁心三生奴時元年十四己巳生 婢安玄一生婢有丹
 年三庚辰生 婢先月一生奴世得年三庚辰生身 并陸口乙 後所生并
 同宅奴彌慶處 永永放賣爲乎矣 本文記段 他田民并付乙仍于
 許給不得爲去乎 後次良中 上典宅同生子孫族類中 若有雜
 談是去等 持此文記告官下正事

奴婢主 韓生員宅奴尙龍[左寸]

證人 車海平[着名]

筆執 黃震祥[着名]

3-2-6) 1707년 윤진사택 노 필경彌敬 노비매득문기

[1707년(숙종 33) 윤진사택에서 김생원택으로부터 노비를 매득할 때 작성된 매매문기]

강희康熙 46년(1707) 정해년 1월 18일 윤진사택尹進士宅 사내종 필경必敬에게 주는 명문明文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저의 상전上典 님이 작성하신 배자牌字에 의거, 해남海南에
 살던 유루遺漏 계집종인 인섭仁攝을 팔기 전에 은닉隱匿했던 첫째 소생의 계집종 정이貞伊(33세, 을묘
 년생), 둘째 소생의 사내종 지철至哲(30세, 무오년생), 넷째 소생의 계집종 마음정馬音貞(25세, 계해년
 생) 및 계집종 정이貞伊의 첫째 소생인 사내종 천강天降(7세, 신사년생), 둘째 소생인 사내종 지강地降
 (4세, 갑신년생) 등의 몸 5구구를 전문錢文 70냥兩으로 값을 쳐서 수대로 정확히 받고, 이 사람에게 후
 에 태어날 소생까지 함께 영구히 방매한다. 본문기本文記는 다른 노비와 전답이 함께 기록되어 있으
 므로 넘겨주지 못하며, 상전님의 배자를 함께 허급許給하오니, 후에 만일 잡담이 있다면 이 문기文記
 를 가지고 관에 고하여 바로잡을 일이다.

노비주奴婢主 금천衿川 김생원택金生員宅 차노差奴 수만守萬 [좌촌]

증인證人 반노班奴 돌선돌先 [좌촌]

증보證保 이귀금李貴金 [작명]

필집筆執 강성건姜成建 [작명]

康熙肆拾陸年丁亥正月拾捌日 尹進士宅奴必敬處明文
 右明文事段 矣上典主牌字導良 海南居遺漏婢
 仁攝賣前隱匿爲在一所生婢貞伊年三十三乙卯生 二所生
 奴至哲年三十戊午生 四所生婢馬音貞年二十五癸亥生
 及婢貞伊一所生奴天降年七辛巳生 二所生奴地降年四甲申生
 等身五□乙 價折錢文柒拾兩以 依數捧上爲遣 同人處後
 所生并以 永永放賣爲乎矣 本文記段 他田民并付乙仍于 不得
 相與爲旅 上典主牌字并爲許給爲去乎 日後良中 如有
 雜談是去等 持此文記告官下正事

奴婢主 衿川金生員宅差奴守萬[左寸]

訂人班奴돌先[左寸]

訂保李貴金[着名]

筆執 姜成建[着名]

3. 노비 명단과 각종 내역

3-3-1) 병자년 불망기

[병자년 윤 내금尹內禁을 보냈을 당시의 노비 명단과 현재 소재지, 그들이 바치는 신공과 선물 현황 등을 상세히 기록한 불망기]

병자년 윤내금尹內禁을 보낼 당시의 불망기.

죽은 종 억산億山과 양인良人인 처妻 사이에 낳은 첫째 소생 계집종 억화億花는 이름을 억대億代로 고쳤으며, 병인년 생이다. 사는 곳은 □…□ 수철점水鐵店이며, 남편은 수철장水鐵匠 거동巨同이다. □…□ 전처前妻의 자식 이춘복李春卜·이춘□李春□ □…□ 초사招辭를 받아 보수保授한 사람이 3명인데 모두 수철장이라고 한다. 이 이하 을해乙亥년에 □…□

이 계집종 억대億代가 전 남편 일봉一奉과 함께 낳은 계집종 구화九花는 기축년 생으로 억대와 한 마을에 산다. 본점 호수戶首 송일남宋日男 □…□의 일족으로 절린切隣인 박세생朴世生에게 초사招辭를 받아 보수保授하였다. 송일남의 나이는 49세이고, 박세생의 나이는 39세이다. □…□

이 계집종 구화九花의 첫째 소생인 계집종 사월四月은 기미년 생인데, 붙잡아 와서 사환하고 있었으나 병자년 봄에 그 아버지 송일남이 불러내어 데리고 도망갔다.

둘째 소생인 계집종 득춘得春은 신유년 생인데, 죽었다고 말하니 다시 따져 물어야 한다.

셋째 소생 사내중 갑생甲生은 갑자년 생이다. 잡아다 사환하고 있었는데 병자년 봄에 그 아버지 송일남이 불러내어 데리고 도망갔다.

넷째 소생 사내중 병인丙寅은 병인년 생이다.

다섯째 소생 계집종 옥이玉伊는 무진년 생이다. 억룡億龍으로 화명花名에 있는데, 송일남이 죽었다고 말한다.

여섯째 소생 계집종 일품一品은 계유년 생이다.

일곱째 소생 계집종 막덕莫德은 갑술년 생이다.

여덟째 소생은 을해년 생이다.

사내중 억산億山의 둘째 소생인 사내중 억룡億龍은 갑신년 생으로 고성固城 고곡촌古谷村에 산다. 전처 검지檢之는 다른 집의 계집종이라 하는데, □…□ 홍해洪海 주읍朱邑의 □…□에 산다.

사내중 억룡이 전처 검지와 함께 낳은 첫째 소생 사내중 덕남德男은 갑진년 생이다.

둘째 소생 사내중 덕립德立은 무신년 생이다.

사내중 덕룡의 후처는 양인 여자로 말서비西非이며, 함께 낳은 첫째 소생 계집종 연생延生은 정사

년 생이다.

둘째 소생 사내중 연립延立은 경신년 생이라 죽었다고 하니, 다시 따져 물어야 한다.

셋째 소생인 사내중은 죽었다고 하고,

넷째 소생인 사내중은 죽었다고 하니, 함께 다시 따져 물어야 한다.

다섯째 소생 계집중 연화延花는 병인년 생이다.

여섯째 소생 계집중 영화永花는 기사년 생이다.

일곱째 소생 계집중 말개濼介는 신미년 생이다.

사내중 억산億山의 셋째 소생인 계집중 금개今介는 정해년 생이다. 고성에 산다. 고곡촌 쫘에 사는 하득연河得淵은 나이가 31세로 첫 번째 남편은 해남海南의 대문大文이고, 지금 남편은 홍막동洪莫同이다.

계집중 금개今介의 첫째 소생 계집중 대생大生은 무신년 생이고 남편은 고성固城 하리下里에 사는 사노私奴 31세로 아울러 초사招辭를 받았다.

셋째 소생 계집중 목은매目隱梅는 갑술년 생이다.

계집중 금개今介의 둘째 소생 계집중 옥상玉祥은 임자년 생이다. 순천順天 마을산馬乙山에 산다. 성

병사의 농소에 붙어살았다.

계집중 옥상의 첫째 소생 사내중 언생彦生은 신미년 생이다. 봉춘에게 물으니 옥상에게 아들 셋이 있다고 한다.

계집중 금개의 셋째 소생 사내중 상립祥立은 을묘년 생이며, 고성固城 광내廣內에 사는데, 유학幼學 허국지許國祗의 호노戶奴 성성 54세로 초사를 받았다.

넷째 소생 사내중 상남祥男은 무오년 생이다.

다섯째 소생 사내중 상득祥得은 임술년 생이며 지금 사환使喚하고 있다.

여섯째 소생 계집중 말매濼每는 신미년 생이며, 아버지는 홍막동洪莫同이다.

사내중 억산의 넷째 소생 계집중 은개銀介는 병인년 생이다. 죽었다고 하니, 다시 따져 물어야 한다. 남편은 소목장小木匠 배억룡裵億龍이며 붙어사는 정한걸鄭漢傑은 나이가 54세로 초사를 받았다.

계집중 금개의 첫째 소생 사내중 득생得生은 무신년 생으로 나주羅州 비슬도非瑟島에 산다. 그의 처는 사세士世이고 딸은 사세 부르는 사람의 집 옆이라 한다.

둘째 소생 계집중 봉춘奉春은 신해년 생으로 고성固城 상리고곡上里古谷에 산다. 남편은 박돌이朴荪伊이고 붙어산다.

셋째 소생 계집중 순금順今은 병진년 생이다. 남편은 전득남全得男이고 28세이며 삼천진三千鎭 검암檢岩에 산다. 붙어산 이는 같은 위 2명은 지난해 성산星山에 있을 때 붙잡아 왔는데, 다시 도망

하였다. 그 남편과 붙어산 이에게 ▣…▣

넷째 소생 사내중 백립白立은 무오년 생인데, 죽었다라고 하니 다시 따져 물어야 한다.

다섯째 소생 사내중 월명月明은 임술년 생이다. 이 이하는 백억용裊億龍의 소생이다.

여섯째 소생 사내중 명월明月은 갑자년 생이다.

일곱째 소생 사내중 천월天月은 정묘년 생이다.

여덟째 소생 계집중 일월日月은 기사년 생이다.

사내중 봉춘奉春의 첫째 소생 사내중 업생業生은 임신년 생이다.

계집중 순금順今의 첫째 소생 계집중 덕춘德春은 임신년 생이다. 덕춘을 혹 득례得禮라고도 부르는데, 아마도 2명인 듯하니 다시 따져 물어야 한다.

사내중 억산億山의 다섯째 소생 사내중 ▣…▣ 창원昌原 남면南面 독곡獨谷이라는 곳에 산다고 한다.

▣…▣계집중 분이分伊는 기사년 생이다. 낳은 아이들이 필시 여기에 그치지 않을 텐데, 다시 화명花名을 ▣…▣

사내중 억산億山의 여섯째 소생 계집중 막덕莫德은 강진康津 백도白道에 사는데 올해 여름 송일남 등이 불러내서 도망갔다.

일곱째 소생 사내중 ▣복▣卜은 을사년 생이다.

사내중 화복花卜의 첫째 소생 사내중 민이敏伊는 신미년 생이다.

둘째 소생 사내중 민상敏祥은 갑술년 생이다.

일. 이 노비들은 본디 영암靈岩에 살면서 신역身役을 지다가 그 후 도망하여 나주羅州에 살았다. 또 추쇄推刷해서 잡아다가 신역을 살다가 거슬러 헤아려보니 7~8년 사이 나주에서 도망하여 고성固城으로 옮겼다. 대개 그 이유는 계집중 억대億代가 본래 고성에서 살았기 때문이다. 작년 5월에 성산臺山에 있을 때에 함께 잡아들여 명단을 작성하고 신공身貢을 받았다.

일. 이 노비 중 권점圈點을 친 자는 올해년과 병자년 두 해의 신공으로 받을 목면이 합해서 사람 당 4필씩, 선물贈物은 참깨를 사람 당 2말씩 받아들 것.

일. 이 노비들은 완악하고 간사함이 습관이 되어서 잠깐 굶혔다가 조금 후엔 배반하니 그 중에는 혹 숨어서 나타나지 않는 자가 있거든 곧 각각 그 보수保授한 다짐[拷音]을 상고하여 엄히 가두거나 무겁게 곤장을 쳐서라도 기어이 찾아낼 것.

일. 다짐 13장을 동봉해서 보내니 살펴본 후에 다시 봉하여 가져올 것.

일. 계집중 구화九花의 첫째 소생 계집중 사월四月과 셋째 소생 사내중 갑생甲生 2명은 즉 붙잡아 와서 부렸는데, 금년 봄에 그 아버지 송일남이 불러내어 도망했으니 매우 분통하다. 그 어머니 구화에게 칼을 씌워 무겁게 채우고 감옥에 단단히 가두어서 그 아버지 송일남이 도망한 노비를 데리고 주인집에 나타나게 하여 수익을 상납한 후에 보증인을 받고서 풀어줄 일.

일. 이 노비 중 나이가 아직 어리고 결혼하지 않은 자 중에서 사람됨이 부리기에 적합한 자 약간 명을 잡아오되, 잡혀 온 자가 수익을 상납할 때까지 그 부모 형제 중에 한 사람을 엄히 가둘 것.

일. 이상 기록한 화명은 모두 그들의 말을 토대로 기록한 것이니 그 사이에 필시 누락된 것이 많을 것이다. 또한 그 죽었다고 하는 자도 필시 거짓말이 많을 것이니, 엄중하게 형벌을 베풀어 문초하여 하나하나 찾아내어 얼굴을 보고 다시 명단을 기록할 것.

일. 다른 도도, 다른 고을에 산다고 일컫는 자는 그 부모, 형제, 가까운 친족 등에게 신공과 선물을 갖추어 바치게 할 것.

일. 계집종 봉지奉之는 무술戊戌 생으로 고성固城 널오지에 살며, 남편은 석장錫匠 명득命得으로 나이가 □…□ 득남得男 □…□

이 계집종 봉지의 첫째 소생인 사내중 몽립夢立은 갑자甲子 생이다.

둘째 소생인 사내중 명생命生은 9세이다.

셋째 소생⁷⁵인 사내중 명일命一은 경오년 생이다.

넷째 소생인 계집종 명금命今은 갑술년 생이다.

이 계집종 봉지는 예전부터 믿고 따랐으며 그 자식들도 필시 □…□ 잡아와서 얼굴을 보고 명단을 작성하고 신공과 선물을 예전처럼 받고 □…□ 부과된 신공과 선물을 보내고 각각 그 처와 혹 □…□ 수익을 다시 바칠 때까지 붙잡아 가둘 것.

병자년 12월 일 노비 등

계집종 구□仇□ □…□

사내중 억용億龍 공선貢膳 무명 2필되

사내중 상립詳立 공선貢膳 무명 4필되 께 1말[되]

사내중 화복花卜 공선貢膳 무명 2필되 께 1말[되]

사내중 상남詳男 공선貢膳 무명 3필되 께 1말[되]

계집종 연생連生 공선貢膳 무명 2필되 께 1말[되]

계집종 봉춘奉春 공선貢膳 무명 2필되 께 1말[되]

계집종 순금順今 공선貢膳 무명 2필되 께 1말[되]

계집종 대생大生 공선貢膳 무명 2필되 께 1말[되]

사내중 억생億生 공선貢膳 무명 1필되 께 1말[되]

丙子年 送尹內禁時不忘記

75 둘째 소생 앞에도 둘째 소생이 나왔으므로 기록할 때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故奴億山良妻并産一生婢億花變名億代年丙寅 居□…□水鐵店 夫水鐵匠巨同 □前妻子李
春卜李春□…捧招保授三名 并水鐵匠云 此以下乙亥年 在□…□

同婢億代前夫一奉并産婢九花年己丑 與億代同里居 本店戶首宋日男□…□之一族切隣朴
世生捧招保授 日男年四十九 世生年三十九□…□

同婢九花一生婢四月年己未 捉來使喚 丙子春其父宋日男招引逃去

二生婢得春年辛酉 稱故更問次

三生奴甲生年甲子 捉來使喚 丙子春其父宋日男招引逃去

四生奴丙寅年丙寅

五生婢玉伊年戊辰 億龍花名而日男稱故

六生婢一品年癸酉

七生婢莫德年甲戌

八生年乙亥

奴億山二生奴億龍年甲申 居固城古谷村 前妻檢之 他婢稱云□…□洪海居朱邑之□…□

奴億龍前妻檢之并産一生奴德男年甲辰

二生奴德立年戊申

奴億龍後妻良女歪西非并産一生婢延生年丁巳

二生奴廷立年庚申 稱故更問次

三生奴 稱故

四生奴 稱故并更問次

五生婢延花丙寅

六生婢永花年己巳

七生婢歪介年辛未

奴億山三生婢今介年丁亥 居固城古谷村 許接河得淵年□…□ 初夫海南大文 時夫洪莫同

婢今介一生婢大生年戊申 夫固城下里居私奴□…□年卅一并捧招

□……………□

三生婢目隱梅年甲戌

婢今介二生婢玉祥年壬子 居順天馬乙山許接成兵使農所介

婢玉祥一生奴彥生年辛未 問于奉春則玉祥有三子云

婢今介三生奴祥立年乙卯 固城廣內居幼學許國祇戶奴成□…□

四生奴祥男年戊午

五生奴祥得年壬戌 時方使喚

六生婢歪每年辛未 父洪莫同

奴億山四生婢銀介年庚寅 稱故更問次 夫小木匠裴億龍許接 上□…□鄭漢傑年五十四捧招
□…□

□□介一生奴得生年戊申 居羅州非瑟島 其妻士世女子士世□…□稱名人家傍云

二生婢奉春年辛亥 居固城上里古谷 夫朴夏伊許接□…□

三生婢順今年丙辰 夫全得男年十八 居三千鎮檢岩許接 同□…□右兩□上年在星山時捉來
還逃 其夫及許接等俵□…□

四生奴白立年戊午 稱故更問次

五生奴月明年壬戌 此以下裴億龍所生

六生奴明月年甲子

七生奴天月年丁卯

八生婢日月年己巳

奴奉春一生奴業生年壬申

婢順今一生婢德春年壬申 德春或云得禮 似是二□更問次

奴億山五生奴□…□ 居昌原南面獨谷云

□…□婢分伊年己巳 所生必不止此 更花次□…□

奴億山六生婢莫德 居康津白道 而今年夏宋日男等招引逃去

七生奴花卜年乙巳

奴□卜一生奴敏伊年辛未

二生奴敏祥年甲戌

一 右奴婢等 本居靈岩服役 其後逃居羅州 又爲推得服役 退計七八年間 自羅州逃移固城 盖
緣其中婢億代 本居固城故也 上年五月在星山時 并推得花名捧貢矣

一 右奴婢中圈點者 乙亥丙子兩年貢木合 每名四疋式 膳物眞荏子每名二斗式捧來事

一 右奴婢等頑詐成習 乍降乍叛 其中或有隱匿不現者 則各其保授俵音相考 嚴囚重杖 期於
推出事

一 俵音十三丈同封送去 相考後還封持來事

一 婢九花一生婢四月三生奴甲生兩□ 則捉來使喚 而今年春間 其父宋日男招引逃亡 極可痛
惡其母婢九花 重枷扭堅囚 令其父宋日男率現主家 受益上納後保放事

一 右奴婢中年少未嫁娶爲人 且合使喚者若干□捉來 而捉來者則限受益上納 令嚴囚其父母
兄弟中一人事

一 已上所錄花名 皆因渠等之言 而爲之其間必多落漏 且其稱故者必多詐僞之言 嚴刑請問
一一推出見面 更爲花名事

一 居在他道他官稱云者 并令其父母兄弟切族等 備納貢膳事

一 婢奉之年戊戌 居固城널오지 夫錫匠命得生或□□得男

同婢奉之一生奴夢立年甲子

二所生奴命生年九

二生奴命一年庚午

三生婢命今年甲戌

右婢奉之則從前信服 而其所生必□□捉來見面花名 而貢膳則一樣收捧□□□□名負貢

膳以送 而各其妻或□□弟 中限受益還納間拘囚事

丙子十二月 日 奴婢等 婢仇□□

奴億龍貢木二疋

奴詳立貢木四疋任子一斗

奴花卜貢木二疋任子一斗

奴詳男貢木三疋任子一斗

婢連生貢木二疋任子一斗

婢奉春貢木二疋任子一斗

婢順今貢木二疋任子一斗

婢大生貢木二疋任子一斗

奴億生貢木一疋

3-3-2) 신유년 노비성책

[1621년으로 추정되는 신유년에 신공 수취 대상 노비의 명단과 수취 여부를 기록해 둔 일종의 노비관리 장부]

노비성책⁷⁶

노비성칙 신유년

히남빅년골

노순통

노통님 노덕의냥쳐일싱(貢)⁷⁷

76 노비성책 이 제목은 성책한 후 나중에 붙인 것으로 보인다. 한글문서이므로 따로 국역은 하지 않는다.

77 (貢) 빨간 글씨로 쓰여있다. 신공을 바친 명단에 추후에 이를 표시하려고 쓴 것으로 추정된다.

노기납 노더의⁷⁸냥쳐이싱
 비 노더의⁷⁹냥쳐삼싱(貢)
 노긱싱 비봉월삼싱(貢)
 노춘복 노춘학냥쳐일싱(貢)
 노덩이 노돌문냥쳐일싱
 노덩세 노덩이냥쳐일싱(貢)
 ■■이 비운화일싱(貢)
 ■■세 고비풍디일싱
 노성괴 고비평디일싱(貢)
 비덴덕 노시위냥쳐삼싱(貢)
 비석개 노시위냥쳐스싱(貢)
 비계싱 비석개이싱
 비계량 비석개삼싱
 노응발 비심의일싱(貢)
 노농발 비심의이싱(貢)
 비진이 고비석매일싱(貢)
 노대인 비진이삼싱
 노박남 비진이스싱
 비갈상 비진이오싱
 ■비순개 고비늦덕일싱
 ■비일싱 비녀제삼싱(貢)
 노몽남 비일싱일싱
 노 비일싱일싱
 ■비봉셔비 노봉이냥쳐삼싱(貢)
 ■비명금 비봉셔비일싱(貢)
 ■■이 비무금이싱 서울금쇠아아(貢)
 ■■산 노천석냥쳐이싱
 노벼누리 노만산냥쳐이싱

78 더의 '덕의'의 오기로 추정된다.

79 더의 위의 주와 같음.

노동이 비스랑개일싱
 비논해 비논금일싱
 노죽쇠 비논해삼싱
 노죽덕 비논해스싱
 히남
 비검셔비 비검해일싱(貢)
 ▣노손동 비검셔비이싱(貢)
 ▣노신구지 비상금싱(貢)
 비옥쉴 노성이스싱
 비춘개 비슈금일싱
 물애
 ▣비홍년 노빅년냥쳐일싱(貢)
 양하동
 ▣노옹손 고비연싱일싱(貢)
 ▣비봉디 고비연싱이싱(貢)
 ▣도희 노옹손일싱(貢)
 ▣▣덕 노옹손삼싱(貢)
 ▣노슈명 고비경진일싱(貢)
 비논덕 노도희일싱(貢)
 노수두기 노도희이싱
 비연싱 비은싱일생
 노연넙 비은싱이싱
 비금싱 비은싱삼싱
 노뚝넙 비은싱스싱
 히남읍니
 노의싱 노희세냥쳐일싱(貢)
 비청춘 고비셔디스싱(貢)
 비난춘 비청춘일싱(貢)
 노이남 비근덕일싱(貢)
 비논디 고비은힝일싱(貢)
 비논개 고비은힝이싱(貢)
 건들음

노대산 고노파진냥쳐일싱(貢)
 ■■쉬 노디석냥쳐일싱
 노단손 비미춘일싱 서울셔스환
 비이금 비만비일싱(貢)
 비님덕 비이금일싱(貢)
 노을싱 비미춘삼싱
 슈영
 ■비은비 고비은디일싱(貢)
 히남놀근성
 노윤희 고노순건일싱
 ■노귀희 노윤희냥쳐일싱(貢)
 오도재
 노유영 노윤희냥쳐일싱
 비긱개 비은비팔싱 미득
 노성경 비긱개득후일싱
 노순경 비긱개이싱
 희여기
 ■비이싱 고노광쉬이싱년스물세(貢)
 ■비분혜 비노혜일싱 주식세(貢)
 노분손 비분혜일싱
 비유덕 고노신딩냥쳐일싱(貢)
 비■성 노준희냥쳐일싱(貢)
 ■비연합 노돌성냥쳐일싱(貢)
 노머두리 노돌성냥쳐이싱
 노멋세 노돌성냥쳐삼싱
 노 돌성냥쳐스싱
 ■노천귀 노한귀냥쳐일싱(貢)
 ■노세천 노한귀냥쳐이싱(貢)
 ■노돌히 노한귀냥쳐삼싱(貢)
 노슈명 노한귀냥쳐스싱(貢)
 노부귀 노한귀냥쳐오싱
 노비내 노한귀냥쳐녹싱(貢)

노분손 노돌히냥쳐일싱
 노억명 노돌히냥쳐이싱
 노억남 노돌히냥쳐삼싱
 노죽동 고비메지일싱(貢)
 돌모뢰
 노돌쇠(貢)
 노풍낙(貢)
 노■손(貢)
 노차복(貢)
 노풍세(貢)
 비흔개 비돌장스싱(貢)
 비은춘 비흔개일싱(貢)
 비은덕 비흔개이싱
 노석이 노바회냥쳐일싱
 히남고현니
 노원근 고비만비일싱
 비숫그리 고비민지일싱
 비뉴월 비숫그리일싱 단되브름의겨집(貢)
 노니동 비숫그리이싱(貢)
 화산
 ■노이룬 노동기디냥쳐일싱(貢)
 ■리아
 ■비턴디 비넙지이싱(貢)
 ■노망중 비넙지삼싱(貢)
 노옥춘 비턴디어싱(貢)
 비춘이 비턴디삼싱
 비 비턴디스싱
 ■암
 ■슌덕 고비덕춘삼싱(貢)
 ■■춘 고비네쥬오싱(貢)
 ■■지 비덕춘이싱 중도경환쇼(貢)
 ■비 비덕춘일싱 광지숨것다(貢)

■노대쉬 비덕춘삼싱(貢)
 ■비자귀 고비중비이싱(貢)
 ■비군지 비자귀일싱 즈식세(貢)
 ■노난흥 비자귀이싱(貢)
 노영희 고비연비일싱 중쳐간(貢)
 ■비평일 고비니디이싱(貢)
 ■노흔복 고비니디오싱 년경진마은돌(貢)
 노복남 고비니디늑싱 년설흔아흙
 노능훤 고노평근냥쳐일싱
 ■비능셔비 고노평근냥쳐이싱(貢)
 비감지 고노평근냥쳐삼싱
 비민지 고평일삼싱
 노감손 고노평근냥쳐스싱
 ■노옹지 비평일일싱 년스믈여숫
 ■비은춘 비평일이싱 년열여늑(貢)
 비은싱 비평일삼싱 년열다숫(貢)
 비금싱 비평일스싱
 노긱복 비평일오싱
 ■골
 ■현지 비디금오싱(貢)
 울머리
 노원봉 고비녀비이싱(貢)
 金山
 ■노삐 고비아덕이싱 서울스 환만훤아으(貢)
 相丘洞
 ■비구월 고비쇠덕일싱 윤봉스 노눗섹미(貢)
 노던손 비구월이싱
 영암송지면쇠무더미
 ■비아덕 노귀학냥쳐이싱(貢)
 ■노대성 비아덕일싱(貢)
 ■노경싱 비아덕이싱(貢)
 ■노막복 비아덕삼싱

비막덕 비애덕스싱

▣노슈산 노귀학냥쳐일싱(貢)

▣노대싱 노슈만냥쳐일싱 중강희미황렬의밋다(貢)

녕암밭매

노언복

▣노계환 노언복냥쳐일싱(貢)

노득희 노언복냥쳐삼싱

▣▣ 노언복냥쳐스싱(貢)

▣▣디 고비연금일싱(貢)

노윤세 고노순건이싱(貢)

▣노숙손 고비연금이싱(貢)

▣노운이 고노화련냥쳐일싱(貢)

비득개 노운이냥쳐일싱

▣노막난(貢)

▣노진한 고노박손냥쳐일싱(貢)

비논금 고노슈당냥쳐이싱

▣비만해 비논금일싱(貢)

▣노근비 비만해일싱

노근쇠 비만해이싱(貢)

노언경 고비구월일싱

▣비언지 고비구월이싱 당흥노스 경겨집(貢)

녕암옥천

▣노김세 비윤비이싱(貢)

▣비타덕 비금월삼싱 김세겨집(貢)

비분지 비타덕삼싱

▣노산복 비감지스싱(貢)

녕암

▣▣복 고노학이냥쳐일싱(貢)

▣▣현 고노학이냥쳐이싱(貢)

▣쟁

▣비봉덕 고노동녕냥쳐이싱(貢)

비뉴월 비봉덕일싱
 ■비업지 고비돌비일싱(貢)
 ■비억금 비업지일싱(貢)
 ■비저금 비억금삼싱(貢)
 ■비니금억금오싱(貢)
 ■비막개 비젓금늑싱(貢)
 ■비춘화 비니금일싱(貢)
 노막싱 비니금이싱
 소호섬
 ■비돌비 고노무련스싱(貢)
 비괴지 비돌비일싱 밧다(貢)
 노대인 비괴지일싱
 노대복 비괴지이싱
 흥히
 노병신 고노억동냥쳐일싱(貢)
 비진
 비망개 고노영산냥쳐일싱(貢)
 ■■
 ■■동 비덕금스싱(貢)
 ■노종괴 고노종손냥쳐삼싱(貢)
 ■노산쉴 고노춑산냥쳐일싱(貢)
 ■비세금 고비분이이싱(貢)
 ■비영쥬 비세금일싱(貢)
 ■노김춘 비세금이싱(貢)
 ■노난복 비세금삼싱(貢)
 ■비셔디 비세금스싱(貢)
 ■노복남 비세금오싱(貢)
 노복성 비세금늑싱
 노슈남 비영쥬일싱
 비슈덕 비영쥬이싱(貢)
 비영춘 비영쥬삼싱
 비영진 비영쥬스싱

비영해 비영쥬오싱

▣노세복 비분이일싱(貢)

▣노보롬이 노줏산냥쳐이싱(貢)

▣노보세 노보롬이냥쳐일싱(貢)

▣울덕 노보롬이냥쳐이싱(貢)

▣▣그리 노보롬이반비구월병산일싱(貢)

노자사리 노보롬이반비구월병산이싱(貢)

노자사리 노보롬이반비구월병산삼싱

비금월 노보롬이반비구월병산스싱

노금복 노보롬이반비구월병산오싱

노금손 노보롬이반비구월병산눅싱

▣비막덕 고비니단이싱(貢)

▣비분금 고비니단스싱(貢)

▣노두남 비막덕일싱(貢)

▣노몰뢰 고노분세냥#쳐#일싱(貢)

▣비구월 고노파진냥쳐일싱(貢)

▣노모독 고노파진냥쳐이싱(貢)

▣노님손 비구월일싱(貢)

비막장(貢)

▣노너추리 비막장일싱(貢)

▣노논그리 비섬지일싱(貢)

▣비어둔개(貢)

▣비난해 비어둔개일싱(貢)

노회 비어둔개이싱

비돌덕 비어둔개삼싱

노눗쇠 비어둔개스싱

▣▣산 비어둔개오싱

▣▣쇠 비어둔개눅싱

당흥

노대언

▣비업디 고비근썩오싱(貢)

▣노계룡 비업디일싱(貢)

노노환 노계룡냥쳐이싱
 노은룡 노계룡냥쳐삼싱
 노 노계룡냥쳐스싱
 비승춘 노대안냥쳐녹싱
 비인복 비몽디일싱
 ■노스경 비몽디이싱(貢)
 노향복 노스경이싱 스경후쳐소싱서이
 비정월 노범석냥쳐삼싱
 비네춘 비정월일싱
 비월복 비정월이싱
 ■노네복 고비종이일싱(貢)
 비은싱 고비보비일싱
 비■옥 노범이냥쳐이싱(貢)
 ■■개 비문덕삼싱(貢)
 비한금 비논개일싱(貢)
 ■비돌금 비문비스싱(貢)
 ■노쇠동 비골지일싱(貢)
 ■비봉해 노쇠동냥쳐일싱(貢)
 비봉춘 노쇠동냥쳐이싱
 ■노복쉴 비춘선일싱(貢)
 광마흘남
 ■노춘단 고비작#셔#비이싱(貢)
 노심이 노춘단일싱
 비금이 노춘단이싱
 노막쇠 노춘단삼싱 쏘춘단일싱비니진스 덕비부도여숨엇느니라 그러니춘단의즈 식이실은네히라
 노범세 즈식서너(貢)
 ■비더환 비논디일싱(貢)
 ■비풍셔비 노자근찌일싱(貢)
 ■노천남 노자근찌이싱(貢)
 ■인
 ■■억 고노송독일싱(貢)
 ■■■면히와대

- ▣비막싱 노서들이냥쳐오싱(貢)
- ▣노긱냥 노서들이냥쳐늑싱(貢)
- ▣노대쇠 고비중비스싱 막성의남진(貢)
- ▣비연춘 노유지일싱(貢)
- ▣비년옥 비연춘일싱 년갑오(貢)
- ▣비년금 비연춘이싱 년신훈(貢)
- 비네금 비연춘삼싱 년갑진(貢)
- 비막개 비연춘스싱 년을스
- 노막쇠 비연춘오싱 년신히
- 나안옴니
- ▣노만중 고비학디일싱(貢)
- ▣노긱중 고비학디이싱(貢)
- ▣▣휘 노만중냥쳐일싱(貢)
- ▣▣윤 노만중냥쳐이싱(貢)
- ▣비우정 노만중냥쳐삼싱(貢)
- ▣비금이 노만중냥쳐스싱(貢)
- 비순싱 노만중냥쳐오싱
- 비막싱 노만중냥쳐늑싱
- 흥양남면
- ▣비효운 비만덕일싱 남진영쉬(貢)
- ▣비브리덕 비만덕이싱 남진영통(貢)
- ▣노긱복 비만덕늑싱(貢)
- ▣비춘엽 비효운일싱(貢)
- 비일봉 비춘엽일싱
- ▣노퉁남 비효운이싱(貢)
- 노브리산 비효운삼싱(貢)
- ▣노퉁닙 브바리덕일싱(貢)
- 노돌싱 비브리덕이싱
- ▣비막개 비막덕이싱 남진김무저기(貢)
- 비둑겹 비명개싱
- 비명개(貢)

제4장

신분 이동과 노비

해설

자료

1. 노비의 속량贖良
2. 노비의 추심推尋
3. 노비의 처지

고문서에는 노비 도망, 속량贖良, 자매自賣 등 조선 후기 양인과 천인간의 신분 이동의 실태를 보여주는 생생한 자료들이 많다. 해남 윤씨 고문서에도 사노비의 속량, 노비 횡탈을 위한 압량위천壓良爲賤, 노비의 도망과 양역良役 모속, 주인의 노비 추심 등 조선 후기 신분 이동과 노비의 생활을 알려주는 여러 자료들이 현존하고 있어 당시의 신분 이동과 하층민의 생활을 엿볼 수 있다.

사노비의 속량贖良

먼저 일반 사노비 속량은 17세기 이후 등장한 현상이었다. 속량은 천인이 자신의 주인이나 자신이 소속된 관에 속신기贖身價, 즉 몸값을 지불하고 양인이 되는 것을 말한다. 천인 아버지와 양인 어머니 사이에서 낳은 자녀들을 어머니의 신분에 따라 양인으로 삼도록 한 종모법從母法 제정 전까지¹ 조선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 중 한 쪽만 천인이면 그 자녀들은 천인이 되었다. 태종대에 양인과 천인 사이의 소생을 양인으로 삼게 하는 법을 제정하기도 했지만²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결국 양반과 일부 양인의 천처첩자녀賤妻妾子女만 법으로 정해진 속량 절차를 거쳐 양인이 될 수 있도록 했다. 그런데 17세기 이후 사적으로 사노비 속량이 이루어졌고, 관에서도 이러한 속량을 인정해주었다.

조선 전기 정부에서는 양반과 일부 양인의 천처첩자녀의 속량을 허용하면서도 개인간의 소유권 문제가 해결되고, 보충대補充隊 입역을 마친 후에야 양인이 될 수 있도록 했다. 보충대 입역 절차는 양

1 천인 아버지와 양인 어머니 사이의 소생을 어머니의 역에 따라 양인이 되게 한 종모법은 1669년(현종 10)에 처음 제정되었다가 1675년(숙종 원년)에 폐지되었고, 1681년(숙종 7)에 다시 제정되었다가 1689년(숙종 15)에 다시 폐지되었다. 결국 1730년(영조 6)에 다시 제정되어 1731년(영조 7) 정월 초1일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이후 이 종모법은 노비제도 폐지시까지 유지되었다.

2 지승중, 1995, 『身分世襲』, 『朝鮮前期奴婢身分研究』, 일조각 참조.

인과 천인의 신분질서를 공고히 하면서 양역을 담당하는 인구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양인이 된 천처첩자녀가 자신들이 양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노비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 관서인 장예원掌隸院에서 발급한 보충대 입속 허가 사실을 증빙하는 입안이 있어야 했다. 또, 이 장예원 입안은 물론이고 보충대 입역을 마쳤음을 증빙하는 병조 입안까지 발급받는 경우도 있었다.³

그런데 17세기 이후에는 일반 사노비들이 주인에게 속신가를 지불한 후 별다른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양인이 될 수 있었다. 1655년(효종 6)의 수교에는 중앙 정부에서 사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반 사노비 속량을 인정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또한 몇몇 사노비 속량 문서들이 현존한다. 또한 관에서는 사적으로 이루어진 속량에 대해 관에서 인증해 주는 사급 입안을 발급해줄기도 했다.⁴ 해남 윤씨 고문서에도 이러한 사노비 속량에 관한 문서들이 있다.

1709년(숙종 35) 진도군에서 발급한 속량 입안은 박상현이 그의 여종인 애임을 속량해 준 후 애임이 진도군에 소지를 올려 이 속량 문기를 공증한 입안을 발급받는 과정에서 작성된 일괄 문서이다. (문서 4-1-1)

이 문서에는 애임이 박상현의 소유 노비가 되기까지의 과정과 속량 과정이 드러난다. 1662년(현종 3) 박상현의 외사촌 대모大母인 심씨가 애임이 3살 전일때 수양하여 노비로 삼았다. 이후 1708년(숙종 34) 심씨가 애임을 그 전소생, 후소생과 함께 박상현에게 팔았다. 그리고 이듬해인 1709년(숙종 35) 2월 박상현이 애임과 그의 전소생, 후소생을 속량하여 양인으로 놓아준다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해 주었다.

조선시대에는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한 3살 전의 어린 아이를 수양한 경우 자식이나 노비로 삼을 수 있었다.⁵ 애임은 심씨가 수양하여 노비로 삼은 경우였다. 심씨는 수양 노비인 애임을 뒤에 박상현에게 매매했고, 이후 애임은 주인인 박상현에게 속신가를 지불함으로써 양인이 될 수 있었다.

이렇게 속량된 애임은 다음 달인 3월에 진도군에 소지를 올려 이를 공증해달라고 청했다. 진도군에서는 애임을 속량해 준 노비주 박상현에게 애임과 그 전소생, 후소생을 양인으로 놓아 준 것이 사실인지의 여부를 추문하고, 속량시 증인이었던 김월백에게 이때 증인으로 참여했는지를 추문하여

3 成鳳鉉, 1994, 「1481年「掌隸院 贖身立案」文記 檢討」, 『古文書研究』 5 ; 1994, 「조선 중종 27年「掌隸院 贖身立案」文記 檢討」, 『民族文化의 諸問題』, 세종문화사 ; 김소은, 2006, 「고문서를 통해 본 조선시대 천첩자녀의 속량 사례」, 『古文書研究』 28 ; 박경, 2013, 「속량(贖良) 문서를 통해 본 17세기 조선 정부의 사노비(私奴婢) 통제 양상의 변화」, 『역사와 현실』 87 참조.

4 박경, 2013, 앞의 논문 참조.

5 조선 후기에는 기근이 심할 경우 수양하여 노비나 고공으로 삼을 수 있는 나이를 8세, 9세, 심지어는 15세까지 올리는 한시적인 법이 반포되기도 했다. (박경, 2017, 「3세전 수양의 함의 변천을 통해 본 조선의 법 제정과 운용」, 『조선시대사학보』 82, 24~26쪽)

속량의 진위 여부를 확인했다. 그리고 본문기를 제출받아 박상현이 애임의 노비주가 확실한지를 검토한 후 애임의 속량 사실을 공증해주는 사급 입안을 발급했다. 이때 본문기는 1662년(현종 3) 심씨가 애임을 수양하고 관에서 사급받은 수양 입안과 1708년(숙종 34) 심씨가 박상현에게 애임을 판매문기였다.

이 문서를 통해 유기아 수양을 통해 노비가 되고 속량을 통해 양인이 되었던 한 하층민 여성의 삶을 엿볼 수 있다. 또한 이 문서가 해남 윤씨가에 남아있다는 것은 애임이나 그 자손들이 해남 윤씨의 노비가 되었기 때문이 아닐까 추측하게 한다. 유기아 수양 외에도 조선 후기에는 자매自賣나 구활救活 등의 방법으로 기아에 시달리는 양인을 노비로 삼을 수 있었다. 애임이나 그 자손들이 유기아 수양, 자매, 구활 등으로 노비가 되려 했을 때 자신들이 양인이라는 것을 증빙하는 본문기로 이 문서를 활용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만약 애임이 빈곤에 시달리다 해남 윤씨가의 노비가 되었다면 그의 인생은 어려서 노비가 되었다가 뒤에 양인이 되었다가 다시 노비가 되는 롤러코스터같은 인생을 살았다고 할 수 있다.

1703년(숙종 29) 김정삼이 김선백에게 매득 문기 사급 입안을 퇴급해 준 문기에서도 사노비 속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문서 4-1-2) 이 문서는 김정삼이 김선백에게 매매 문기 사급 입안을 물려준 문서이다. 이 문서가 작성되게 된 이유는 윤월이라는 여종이 속량할 때 제 3자인 김정삼이 윤월의 주인에게 윤월을 사는 형식을 이용했기 때문이었다. 추후에 속량 당사자에게 윤월 매매 문기를 물려주기로 약속되어 있었던 것이다. 문서상에 퇴급받은 대상인 김선백이 윤월과 어떠한 관계였는지 나타나지 않지만 문서를 퇴급해야 할 대상이 당사자여야 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남편이 아닐까 추측된다.

1706년(숙종 32) 윤 진사 덕 노 을룡이 장예원에 올린 소지에는 조선 후기 납속納粟과 이에 따른 소유권 문제 해결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주는 문서이다. (문서 4-1-3) 납속은 대표적인 합법적 면천免賤 수단이다. 그런데 사노비가 납속으로 면천하는 경우 그 노비 주인의 소유권 문제는 어떠한 방식으로 해결되었을까? 그 문제에 대한 답이 이 소지에 드러난다. 이 소지는 진흥청에 자속自贖한 명례의 주인인 윤 진사의 종 을룡이 장예원에 본문기를 바치며, 자속한 명례의 이름을 본문기에서 삭제하고, 값을 받도록 해달라고 청한 문서이다. 자속은 스스로 속신贖身, 혹은 속량했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명례가 주인이 아닌 진흥청에 자속했다는 것은 납속을 통해 면천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윤 진사는 자신의 노비가 납속을 통해 면천하자 종 을룡에게 장예원에 소지를 올리도록 하여 자신의 문서에서 해당 노비를 삭제하고 그 노비의 값을 받았던 것이다.

노비의 추심

해남 윤씨 문서에는 노비의 추심에 관한 문서들도 여러 건 남아있다. 이 문서 중 주인이 자신 소유의 노비를 추심하는 경우는 누군가 자신의 노비를 빼앗아갔거나 노비가 양역(良役)에 모속(冒屬)했거나 도망하는 경우였다. 물론 이들 문서는 해남 윤씨가에 남아있는 문서이기 때문에 해남 윤씨측의 소유권 주장을 뒷받침하는 문서를 중심으로 남아있을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1) 횡탈한 노비의 추심

해남 윤씨가에서 다른 사람이 자신 소유 노비를 불법으로 빼앗았다 하여 관에 소지를 제출하여 추심한 사례로는 안심의 자녀들을 추심한 사안이 있다. 이에 관한 문서는 1660년(현종 원년) 안심이 양인임을 주장하거나 이를 뒷받침하는 진술, 소지, 증거 문서들이 점련된 일괄 문서(문서 4-2-1), 윤참의덕, 즉 윤선도가의 호노 산복이 형조에 올린 소지(문서 4-2-2), 1660년 호노 산복이 금천현에 올린 소지와 이에 의거한 정복량의 초사(문서 4-2-3), 호노 산복이 경기도 관찰사에 올린 의송(문서 4-2-4)이다.

이 문서들에는 해남 윤씨가에서 안심을 자신의 노비라고 하며 그 자녀들을 잡아 간 정복량을 상대로 소지를 제출하여 잡혀간 안심의 자녀들을 추심한 사안이 수록되어 있다. 안심의 첫 번째 남편은 말질룡으로 윤참의덕의 종이며, 그와의 사이에서 5자녀를 두었다. 말질룡이 사망한 후 안심은 윤연산덕 종인 성길과 혼인하여 2자녀를 두었다. 이후 안심은 성길과 헤어지고 맹목탁이라는 사람과 살았다. 그런데 정복량은 안심과 말질룡 사이의 자녀 4구를 빼앗아갔다.

이 사안에서의 핵심은 안심이 양인인지의 여부였으며, 안심과 해남 윤씨가에서는 안심이 양인이라고 주장했다. 안심이 천인이라면 노비의 역은 어머니를 따르는 원칙에 따라 어머니 상전의 소유가 되지만 양인이라면 말질룡과의 소생은 윤참의덕, 성길과의 소생은 윤연산덕의 소유가 되었다. 즉, 안심이 양인인지의 여부는 정복량이 남의 노비를 불법으로 빼앗아갔는지, 정당한 소유권을 행사한 것인지를 가리는 중요한 요소였다.

정복량이 안심의 소생들을 잡아간 시점에 대해서 안심은 1649년(인조 27)이라고 진술했으며, 정복량은 1648년(인조 26)으로 기억한다고 했다. 그런데 해남 윤씨 집안에 남아있는 문서에서의 소송 시기는 1660년(현종 원년)이었다. 해남 윤씨 집안의 입장에서 보자면 1660년(현종 원년)에 이르기까지 10년이 넘도록 정복량이 빼앗아간 노비들을 찾지 못한 것이다. 이에 대해 윤참의 즉, 윤선도를 대신하여 소지를 제출했던 호노 산복은 정복량이 노비를 잡아간 것에 대해 상전이 괴이하게 여겼지

만 상전이 해남에 살아 먼 곳에서 추심하기가 쉽지 않았고, 집에 일이 많아 추심하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다가 1660년(현종 원년)에서야 서산관에 노비를 보내어 소지를 제출했다.

해남 윤씨가에 남아있는 4-2-1 문서가 이때 서산관에 제출했다가 점련하여 돌려받은 문서이다. 소지는 유실되어 있으며, 서산관에서 관련인들에게 초사를 받고 증거 문서를 제출받았던 시기는 이 해 3월이었다. 이때 서산관에서는 안심에게 그가 양인인지 천인인지의 여부와 자녀들을 빼앗아간 사람의 이름과 거처, 자녀들에 대해 추문했고, 정복량에게 잡혀가지 않았던 안심과 말질룡의 딸 개례에게는 정복룡의 거주지에 대해 추문했으며, 안심과 말질룡이 안심이 아닌 다른 여성과의 사이에서 낳은 이들로 보이는 안영에게는 말질룡의 누이 언향의 거처를 추문하여 초사를 받았다. 한편, 윤선도 측에서는 1651년(효종 2) 2월 성길이가 관에 소지를 올려 호적 대장을 근거로 안심의 아버지 김언세가 대대로 양역을 했다는 것을 증빙받은 입지, 같은 해 비슷한 내용으로 관찰사에게 입지 발급을 청하며 올린 의송, 당시 성길이의 초사를 제출했다. 또, 관에서 경자년(1660년, 현종 원년) 호적을 베껴 준 문서도 증거 문서로 제출했다.

이전에 정복량이 빼앗아갔던 노비들은 안심과 말질룡이 낳은 자녀들이었지만 정복량이 자신의 자녀들까지 차지하려고 다시 오자 1651년(효종 2) 성길이는 안심이 양인이라는 입지를 발급받고자 한 것이다. 이 때 성길이는 안심이 양인인데, 정복량이 구승원, 송몽열과 함께 남의 노비를 빼앗으려고 계획하여 안심의 자녀들을 빼앗았다고 주장했다. 또, 관비를 유인하다 수금되어 형추를 받고 풀려난 행적과 이들 3인이 해미에서 압량위천(壓良爲賤)으로 수금되었다가 정복량과 구승원은 도주하고, 송몽열은 처벌되었다는 사실도 언급했다. 안심이 양인임을 주장함과 동시에 정복량 등이 남의 노비를 빼앗고 압량위천을 하는 것을 업으로 삼는 사람들이라는 점을 피력함으로써 자녀들을 정복량에게 빼앗기지 않고 윤 연산택의 노비로 남아있게 하고자 한 것이다. 성길이가 이러한 소지를 올려 받은 입지, 그리고 이 때 진술했던 초사와 관찰사에게 올린 의송은 윤선도가의 노비인 산복이 소송하는 데에도 매우 유용한 증거 문서가 되었다.

윤선도의 노비가 서산관에 올린 소지에 따라 진술한 증인들 중 주요한 증인은 안심이었다. 안심은 자신의 소생들에 대해 진술하고, 정복량이 자신의 상전이라며 말질룡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들 중 4구를 잡아갔는데, 자신은 그 이유를 알지 못한다고 진술했다. 또, 호적 대장의 내용과 자신의 여동생인 춘이가 봉선사의 종 최계봉과 혼인하여 자식들을 낳았는데, 이 자식들이 아버지의 역에 따라 역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자신이 양인임을 주장했다.

이 문서에서 소지는 유실되었지만 4-2-3 문서와 4-2-4 문서에서 산복이 서산관의 제사 내용을 언급한 부분이 있다. 금천현에 올린 소지와 경기도 관찰사에 올린 의송에서 산복은 서산관에서 피고가 거주하는 고을의 관아에서 변별하라는 제사를 내렸다고 했다. 이에 따로 윤선도가의 호노 산복은 이해 4월 정복량의 거주지인 금천현에 소지를 올려 정복량이 붙잡아간 노비들을 추심했다.

그런데 해남 윤씨가의 문서 중에는 산복이 형조에 올린 소지도 있다. 산복이 형조에 올린 소지인

2-2)번 문서는 결락된 부분들이 많은데, 연월일 부분도 결락되어 있어 소지를 올린 시기를 정확히 알 수 없으며, 구승원의 아들 구정을 엄히 가두어 붙잡아간 노비들을 추심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3월 서산관에서는 직접 노비를 잡아간 정복량에게서만 해당 노비를 추심하고자 한데 반해, 4월 금천현에 올린 소지와 경기도 관찰사에게 올린 의송에서는 구승원이 정복량의 노비 횡탈을 사주한 것으로 지목했고, 구승원의 아들 구정이 형조에 초사를 바친 후 안심의 자녀인 대례, 개질월리와 대례의 아들인 인룡을 찾아 바쳤다는 사실을 고했다. 이를 고려할 때 형조에 소지를 바쳐 구정에게 정복량이 잡아간 노비를 추심하고자 한 것은 3월 서산관에서의 조사와 4월 금천현과 관찰사에 각각 소지, 의송을 올리기 전의 시점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산복이 금천현에 소지를 올리기 전 형조에 소지를 올려 구정을 가두어 노비를 추심해주기를 청한 후 윤선도 측에서는 구정에게 안심의 2자녀 대례, 개질월리와 그 소생을 돌려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때 구정은 다른 안심의 자녀 2구, 즉 대근과 태근에 대해서는 정복량에게 미루고 팔아먹어 간 곳을 알지 못한다고 했다. 이에 4월에 금천현에 올린 소지와 관찰사에게 올린 의송에서는 정복량에게 대근과 태근 2구의 노비를 추심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산복은 금천현에 올린 소지와 관찰사에게 올린 의송에서 안심과 말질룡 사이의 소생이 상전가에 별 탈 없이 복역했다는 점, 정복량이 이들 중 4구를 빼앗아간 사정, 이제야 소지를 올리게 된 이유, 서산관에 소지를 올렸다가 금천현에 다시 소지를 올리게 된 과정을 언급하고 정복량이 안심의 자녀들을 빼앗아간 것은 상전의 외가 쪽 열4촌인 구승원이 정복량을 사주하여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형조에서 구정을 조사한 후 대례 등을 돌려받았지만 대근, 태근은 돌려받지 못했으며, 정복량을 잡아와 노비들을 불법으로 빼앗아 구승원에게 준 연유, 대근과 태근을 모점한 연유 등을 조사하고, 정복량을 가두어 대근, 태근을 바치도록 하기를 청했다. 또, 그에게 압량위천의 죄와 다른 사람의 노비를 모점한 죄를 다스려주기를 청했다.

산복의 소지를 근거로 금천현에서는 정복량을 추문했다. 정복량은 송몽열이 자신의 조상 노비가 숨어있다고 알려주기에 서산관에 소지를 올려 추심해 와 사환했는데, 이후 송몽열이 다시 구승원에게 이 노비들이 정복량의 노비가 아니라 구승원의 노비라고 말하여 1653년(효종 4) 구승원과 소송하게 되었고, 이 소송에서 패소하여 노비들을 모두 구승원 측에 주었다고 했다. 이 중 대근은 병들어 죽었고, 태근은 구승원의 집에 있는데 자신이 찾아다 운 참의택에 바치겠다고 했다.

이러한 문서들을 통해 1660년(현종 원년) 윤선도 측에서 정복량이 10여 년 전에 자신의 노비를 빼앗아갔으며 시작한 노비 추심은 윤선도 측에서 해당 노비들을 되찾는 것으로 귀결되었음을 알 수 있다. 윤선도 측에서 정복량의 노비 추심을 노비 횡탈이라고 했지만 정복량이 안심의 자녀들을 계획적으로 빼앗으려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도망 노비로 알고 있었다면 그의 입장에서는 노비 추심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행위가 윤선도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종의 양처 소생으로 자신의 소유인 노비들을 정복량이 빼앗아 간 것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조선 후기 노비 추심은 사안에 따라 노비 추심이 될 수도

있고 노비 횡탈이 될 수도 있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정복량은 노비 추심 과정에서 안심을 자신의 종의 딸로 자신의 도망 노비라고 했고, 안심과 윤선도 측에서는 안심이 양인이라고 주장했다. 정복량이 양인인 안심을 자신의 노비라 했다면 이는 양인을 억눌러 천인으로 삼은 압량위천에 해당하여 처벌될 수도 있는 사안이었다. 이렇게 조선 후기 노비 추심은 단순히 도망간 노비를 추심하는 차원에 그치지 않는 다양한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2) 양역에 모속한 노비의 추심

조선 후기에 노비들이 주인의 통제에서 벗어나려 할 때 다른 사람에게 투탁하거나 양역에 모속하여 양인 행세를 하기도 했다. 해남 윤씨가 문서에는 윤 참의덕, 즉 윤선도가의 종 말질립이 양역에 모속한 상전덕 종 의발을 추심한 문서가 남아있다. (문서 4-2-5, 문서 4-2-6, 문서 4-2-7)

1661년(현종 2) 11월 윤선도가의 종 말질립은 병마절도사에게 소지를 올려 상전덕 여종 성옥이 영노 營奴 자이와 혼인하여 낳은 두 번째 소생 의발이 주인을 배반할 계획을 세워 영속 營屬 신성과 모의하여 신성의 보인 保人으로서 모속했다며, 법에 의해 의발을 치죄하고 보인의 안에서 삭제해 달라고 청했다. 그리고 뒤에 증빙으로 삼기 위해 입지를 발급해 주기를 청했다. (문서 4-2-5)

이 소지에 의거하여 이해 12월 병마절도사는 의발의 아버지인 자이와 영속인 신성의 초사를 받았다. 이 자이와 신성의 초사는 소지에 함께 점련되지 않고, 개별 문서로 전해지고 있다. (문서 4-2-6, 4-2-7)

자이는 의발이 장성하자 본부 本府의 역을 면하려고 의발을 동서인 신성의 보인으로 입록했고, 그에게 신공을 받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그리고 신성은 자이가 아들 균역을 면하게 하기 위해 아들을 보인의 역에 속하게 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가 원하는대로 따랐다고 하고, 이후 윤선도에게 이 사실을 고한 후 의발이 사천 私賤이라는 것을 알고 더 이상 보인으로 채우지 않았다고 했다.

이를 통해 17세기 노비가 불법으로 친인척의 보인이 됨으로써 양인이 되고자 하기도 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노비주가 이를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세월이 오래되면 양역에 모속한 노비와 그 자손들은 양인이 될 수도 있는 노릇이었다. 이에 대응하여 노비주가 자신의 소유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소속된 관아에 소지를 올려 관의 양역 명단에서 삭제하는 과정을 거쳐야 했다.

3) 도망 노비의 추심

해남 윤씨기에는 도망한 노비의 추심과 관련된 문서도 있다. 1669년(현종 10) 윤 생원덕 사내종 정

원이 순천부에 노비 추심을 청한 소지에는 당시 양반가의 노비 추심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알 수 있다. (문서 4-2-8) 정원은 순천 상사면에 도망한 노비 임명운의 가족이 숨어있다는 정보를 접하고 순천도호부에 이들을 추심하는 일로 소지를 올리자 순천도호부에서는 면주인과 함께 이들을 잡아오도록 관에서 패첩을 발급해 주었다. 그런데 그 곳에 가 보니 십 수 호 중 네 다섯 집만 남아있고, 나머지 예닐곱집은 사람들이 없었다. 그리고 이웃 사람들이 임명운의 아들인 태우 등이 광양 야을촌에 이주했다고 했다.

정원은 다시 소지를 올려 이러한 사정을 순천도호부사에게 고하여 상사면에 사는 상전의 종이자 태우 등의 친족이 되는 자들을 잡아 가두어 이들을 관정에 나오도록 하고, 그래도 태우 등이 관정에 나오지 않으면 광양현에 이문하여 잡아오게 해 달라고 청했다. 이에 순천도호부사는 패를 발급해서 잡아오라는 제사를 내렸다.

이를 통해 양반가에서 도망 노비를 추심할 때에는 이들이 숨어 사는 장소가 확인되면 노비를 보내 도망 노비가 거주하는 관아의 수령에게 소지를 제출하여 관의 도움을 받아 노비를 잡아오는 방식을 이용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윤 내금위에게 다른 지역에 사는 노비 관리 지침을 적어 당부한 문서인 병자년 불망기不忘記에도 도망 노비의 추심 방식이 드러난다. 또한 이 문서를 통해서 도망 이력이 있는 노비들의 관리 실례도 확인할 수 있다. (문서 4-2-11) 이 문서에는 노비 명단과 함께 이 노비들의 내력과 관리 지침에 해당하는 10조항이 수록되어 있다. 이 문서에 수록된 노비들은 본래 영암에 살았는데, 뒤에 나주로 도망갔다가 고성에 도망가 살았으며, 작년에 모두 잡아들여 화명을 받고 신공을 받은 노비들이었다. 도망한 적이 있어서인지 이들을 엄하게 관리하도록 당부했음을 파악할 수 있다.

현재 도망한 노비의 관리 지침에 관해서는 두 조항이 있다. 그 하나는 이 노비들 중 숨어서 나타나지 않은 자가 있으면 그 노비들을 보수保授한 사람을 엄히 가두어 무겁게 장을 쳐 기어이 추심하도록 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구화의 딸 사월, 아들 갑생 2구를 잡아와서 부렸는데, 금년 봄에 그 아버지 송일남이 유인하여 도망갔으며, 어미인 구화에게 형구를 무겁게 채워 단단히 가두어 송일남이 자녀들을 데리고 나타나게 한 후 신공을 받고 보수하여 놓아줄 것을 당부했다. 한 번 도망갔던 노비들을 보수하도록 하고, 보수한 노비들이 또 도망갔을 때 보수인에게 책임을 엄하게 물었음을 알 수 있다. 또, 앞의 순천부에 올린 소지에서 드려나듯이 노비가 도망했을 때 관의 도움을 얻어 가족이나 친족을 엄히 가두어 도망한 노비들이 나타나게 하는 방법을 이용했음을 알 수 있다.

노비의 처지

배자[牌子]혹은 배지[牌旨]라 불리우는 문서는 일반적으로 주인이 노비에게 매매 거래 등을 위임하는 수단으로 많이 이용되었다. 1645년(인조 23) 상전이 사내중 춘매에게 백야지 채자 논 5두락지, 채자 밭 5두락지를 팔아오도록 배지(문서 4-3-1)가 이러한 문서이다.

그런데 해남 윤씨가에 전해지는 배지 중에는 거래를 위임받은 노비들이 중간에서 받은 돈을 가로챤 것을 염려한 부분들이 나타나기도 한다. 1659년(효종 10) 상전이 사내중 시민에게 사망한 종 박무금이 기상^{記上}한 밭 13복을 팔아오도록 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속이거나 숨기지 말아 중죄를 면하도록 하라’는 당부까지 한 것이 이러한 사례이다. (문서 4-3-4)

한편, 해남 윤씨가에는 흥년으로 끼니가 염려되는 노비에게 자신이 허급해 준 논을 팔도록 허락해 준 배지가 남아있다. 상전 박씨가 여종 막금과 그의 자녀들이 흥년에 기아로 사망할 것을 염려하여 자신이 허급했던 논을 팔도록 허락해 준 배지가 이러한 문서이다. (문서 4-3-3)

참고문헌

- 박경, 2017, 「3세전 수양의 숨意 변천을 통해 본 조선의 법 제정과 운용」, 『조선시대사학보』 82.
박경, 2013, 「贖良 문서를 통해 본 17세기 조선 정부의 私奴婢 통제 양상의 변화」, 『역사와현실』 87.
김소은, 2006, 「고문서를 통해 본 조선시대 천첩 자녀의 속량 사례」, 『古文書研究』 28.
지승중, 1995, 「身分世襲」, 『朝鮮前期奴婢身分研究』, 일조각.
成鳳鉉, 1994, 「1481年 ‘掌隸院 贖身立案’ 文記 檢討」, 『古文書研究』 5.

1. 노비의 속량贖良

4-1-1) 1709년 진도군에서 여종 애임에게 발급한 방량 문기 사급 입안

[1709년(숙종 35) 3월에 진도군에서 여종 애임의 방량 문기(放良文記, 속량 문기)를 공증해 준 입안과 입안 발급 과정에서 작성된 일괄 문서. 방량 후 애임이 방량 문기를 공증해 달라고 청원한 소지, 애임이 주인인 박상현에게 값을 지불하고 방량을 허락받은 문기, 박상현이 방량 사실을 증언한 초사, 방량 문기 작성시에 참석한 증인 김월백의 초사, 진도군에서 애임에게 방량 문기(방량 사실)를 공증해 준 입안의 순으로 점련되어 있다.]

① 여종 애임이 진도군에 올린 소지

임준면(臨准面)에 사는 여종 애임(愛任)

이 삼가 올리는 소지(所志)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흥(長興)에 사는 유학(幼學) 박상현(朴尙玄)이 저를 수양(收養)했던 자신의 외사촌 대모(大母)에게서 (저를) 샀습니다. 그런데 올해 2월에 친히 저의 집에 와 자속(自贖)하라고 하셔서 제가 이전에 낳은 자식과 이후에 낳을 자식들(前後所生)을 아울러서 값을 치르고 자속(自贖)했습니다. 그러므로 예례에 따라 사출(斜出)하여...(원문 결락)...하도록 행하(行下)해 주십시오.

영감(令監)님 처분.

기축년(1709, 숙종 35) 3월 일, 소지

관 [작성]

【형방. 17일.】

② 박상현이 여종 애임을 방량해 준 문기

...(원문 결락)...년 기축(1709, 숙종 35) 2월 초 4일 수양하여 입안받은 여종 애임에게 방량(放良)⁹⁶

을 허락해 주는 명문明文

…(원문 결락)…지난 임인년(1662, 현종 3)에 수양한 여종 애임 나이 58세 임진년생을 외사촌대 모大母께 샀는데, 긴요하게 쓸 데가 있어 위 애임의 전소생과 후소생[前后所生]을 아울러 값을 …(원문 결락)… 및 전문錢文 3냥으로 매겨 수대로 받고 너를 영원히 양인으로 풀어준다[放良]. …(원문 결락)…본문기本文記인 입안은 다른 여종이 함께 기록되어 있으므로 주지 못한다. 훗날에 자손 중에 만약 잡담하는 일이 생기거든 이 문서를 가지고 관宦에 고하여 변별하여 바로잡을 것.

비주婢主 자필自筆⁷ 유학 박상현 [작명]

증인 김월백金月白 [작명]

③ 노비주 박상현의 초사

기축년(1709, 숙종 35) 3월 일 노비주奴婢主 유학 박상현 나이 ○세

아뢰습니다. “네가 군鄣에 사는 여종 애임의 상전으로서 올 봄 2월에 그를 그의 전소생, 후소생과 함께 방랑한 것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사실대로 고하라”라고 추문推問하시기에 아뢰입니다. …(원문 결락)… 외사촌 대모大母에게 샀다가 형세상…(원문 결락)…하여 직접 와서 위의 여종 애임에게 값을 받고 방랑했습니다. 진위는 증인에게 추문하십시오.

관 [작성]

아뢰 [작명]

④ 증인 김월백의 초사

같은 날, 증인 김월백 나이 ○세

아뢰입니다. 호구戶口는 확실합니다. “네가 장흥에 사는 유학 박상현이 여종 애임을 그의 외사촌 대 모大母에게 샀다가 위의 여종 애임에게 스스로 문기를 써서 방랑해 줄 때 증인으로 참석했는지의 진위를 사실대로 고하라”라고 추문하시기에 아뢰입니다. 김월백이 방랑할 때 증인으로 참석한 것이 확실 하니 상고해주십시오.

관 [작성]

아뢰 [작명]

⑤ 진도군에서 애임에게 발급한 입안

강희 48년(1709, 숙종 35) 3월 일 진도군 입안

6 방랑(放良) 양인으로 놓아주는 것.

7 자필(自筆) 문서를 쓰는 필집(筆執)을 따로 두지 않고 재주가 직접 문서를 쓰는 것을 의미한다.

이 입안은 사급斜給을 위한 것이다. 점련한 소지와 각 사람들의 초사招辭가 있기에 본문기 및 수양 입안收養立案을 제출받아 상고했다.

강희 원년(1662, 현종 3) 장흥의 여종 춘월春月이 여종 애임 및 석을화硃花 등과 3세 전에 여러 곳에서 걸식하므로 데려와 기르고 본부本府에 소지를 올려 입안 1장을 작성했다.

그리고 강희 47년 무자(1708, 숙종 34) 10월 15일 매득 문기에 여종 …(원문 결락)… 대모大母 심씨沈氏, 증인인 남편의 동성질 유학 이훈李燾, 필집筆執인 동성질 …(원문 결락)… 심익량沈翊良 등이 각각 착명·착압했는데, 위의 여종 애임을 전소생, 후소생 및 당초의 수양 입안과 함께 이성 사촌 손자인 유학 박상현에게 전소생, 후소생을 아울러 영구히 판 사연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다.

위의 여종 애임의 전소생, 후소생과 함께 박상현이 기축년(1709, 숙종 35) 2월에 군郡에 사는 그의 여종 애임을 영구히 방랑할 때, 군郡에 사는 김월백은 증인으로 참석했으며, 필집으로는 (박상현이) 스스로 써 작성한 것이 확실하다고 각각 초사를 바쳤다.

그러므로 위의 여종 애임을 전소생, 후소생과 함께 영구히 사급해준다. 그리고 수양 입안의 뒷면의 내용을 효주하고, 엽질은 치부置簿하여 관의 지통에 두고, 훗날의 증빙을 위해 이에 입안한다.

행군수 [작서]

① 여종 애임이 진도군에 올린 소지

臨准面居婢愛任

右謹陳所志矣段 長興居幼學朴尙玄亦 婢矣身乙 收養

是在 當身外四寸大母前 買得是如乎 今年二月分 親到婢

矣身家 自贖亦爲去乙 婢矣身前后所生并以 準價

自贖爲有等以 依例斜出 □…□爲白只爲

行下向教是事

令監主處分

己丑三月 日 所志

官 [着署]

【刑 十七日】

② 박상현이 여종 애임을 방랑해 준 문기

□…□年己丑二月初四日 收養立案 □□□(婢愛任)處 放良許給明文

□…□去壬寅年分 收養婢愛任年五十八壬辰生身乙 外四寸大

□□□□(母前 買得)爲有如乎 要用所致以 同愛任矣前後所生并以 價折

□…□及錢文三兩以 依數捧□□(上爲)遣 汝矣處 永永放良
…□本立案段 他婢并付乙仍于 許給不得爲去乎 日後良中
子孫中中⁸ 如有雜談是去等 持此文 告官卞正事

婢主自筆 幼學朴尙玄 [着名]

證人 金月白 [着名]

③ 노비주 박상현의 초사

己丑三月 日 奴婢主幼學朴尙玄 年
白等 汝亦 郡居婢愛壬上典□ 今春二月分
其矣身前后所生并以 □□(放良)眞僞乙 從實
直告亦 推問教臥乎□□(在亦) □…□外四寸大
母前 買得是如可 勢有所□…□自來到 同
婢愛壬處 捧價放良爲白齊 眞僞乙良 證
人處 推問施行向事
官 [着署] 白 [着名]

④ 증인 김월백의 초사

同日 證人 金月白 年
白等 戶口的是齊 汝矣身亦 長興居
幼學朴尙玄亦 婢愛壬身乙 其矣外四寸
大母處 買得是如可 同婢愛壬處 自筆
放良時 參證眞僞 從實直告亦 推問
教是臥乎在亦 金月白亦 放良時 證參
的實是白去乎 相考施行向事
官 [押] 白 [着名]

⑤ 진도군에서 애임에게 발급한 입안

康熙四十八年三月 日 珍島郡立案
右立案爲斜給事 粘連課狀 及各人等招辭是

8 ‘中中’은 ‘卞’의 오키로 판단된다.

置有亦 本文記及收養立案取納相考 則康熙元年 長
 興婢春月亦 婢愛壬及芑花等 三歲前 諸處乞食乙
 仍于 率養後 呈于本府 立案一張成置 及康熙四十七
 年戊子十月十五日 買得成文 婢□…□大母沈氏 證人家翁同
 姓姪幼學李壘 筆執同姓姪□…□沈翊良等 各各着名着
 押爲乎矣 同婢愛壬身 前后所生 及當初收養立案 并以
 異姓四寸孫幼學朴尙玄□(處) □(前)后所生并以 永永放賣辭緣
 昭然載錄是齊 同婢愛□□(壬前)后所生并以 朴尙玄亦 己
 丑二月分 郡居其矣婢愛□(壬)□…□ 永永放良時 郡居金
 月白段 證參爲有旆 筆執段 自筆的實是如 各各納招是乎
 等以 上項婢愛壬身 前后所生并以 永永斜給爲遣 收養
 立案 背后爰周 葉作置簿紙筒上 以憑後考次
 合行立案者
 行郡守 [着署]

4-1-2) 1703년 김정삼이 김선백에게 준 매득 퇴급退給 문기

[1703년(숙종 29) 3월에 김정삼이 김선백에게 매득 문기 사급 입안을 물러 준 문서. 김정삼은 1701년(숙종 27) 윤월이 속량할 때 가명으로 산 것이라며 김선백에게 이 문서를 작성해 주고, 당시의 매득 문기 사급 입안을 물러주었다. 다만 실제로 사급 입안은 매매 문기 사급 인안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최선위에게 주었다.]

강희 42년(1703, 숙종 29) 3월 13일에 김선백金善白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난 신사년(1701, 숙종 27)에 본현本縣에 사는 사망한 여중 면금免
 今の 두 번째 소생 여중 윤월九月 1구가 스스로 값을 마련하여 속량贖良할 때 내가 이름을 빌려주어 가
 名假名으로 산 것이 확실하여 사급 문서[劄文]와 함께 물러준다. 그런데 위 사급 문서는 함께 기재되
 어 있는 최선위崔善謂에게 물러 준다.

훗날에 자손 중에 만약 잡담하는 자가 있거든 이 문기를 가지고 관官에 고하여 바로잡을 것.

가명주假名主 자필自筆 김정삼金鼎三 [착명]

康熙四十二年癸未三月十三日 金善白處 明文

右明文事段 去辛巳年分 本縣居故
 婢免今二所生婢允月身一口 自備價贖
 良時 矣亦 許借名 假名買得的實 而
 斜文并以 退給是乎矣 同斜文段
 并付是在 崔善謂處 退給爲有在果
 日後良中 子孫中 如有雜談是去等 此
 文記 告官卞正事
 假名主 自筆 金鼎三 [着名]

4-1-3) 1706년 윤 진사 덕 노 을룡이 장예원에 올린 소지

[1706년(숙종 32) 윤 진사 덕 노 을룡이 진흥청에 자속自贖한 상전덕 노비 2구의 본문기를 제출하며, 이 본문기에 배탈하고 노비 값을 받도록 처분해달라고 장예원에 올린 소지]

남부南部 명례동明禮洞에 사는 윤 진사尹進士⁹ 덕 사내중 을룡乙龍 [좌촌左寸]

【호패號牌를 바침.】

이 소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의 상전덕 여종인 경원慶源에 사는 조이[召使]의 첫 번째 소생 여중 명례明禮와 위 여종의 두 번째 소생 사내중 口술口述 2구 등이 진청賑廳¹⁰에 값을 바치고 자속自贖했으므로 본문기本文記를 제출하니 예례에 따라 배탈背頃¹¹하고 값을 받도록 행하行下해 주십시오.

장예원掌隸院 처분

병술년(1706, 숙종 32) 9월 ○일 소지.

[제사] 문서를 상고하여 보고하라. 초 9일.

관官 [작성]

9 윤 진사(尹進士) 윤두서(尹斗緒, 1668~1715)

10 진청(賑廳) 진흥청

11 배탈(背頃) 문서 내용 중에 변경 사항이 생길 경우 뒷면에 그 내용을 기록하는 것. 이 사례에서는 자속(自贖)한 종 2구가 기재되어 있는 본문기에서 이 노비들을 삭제 표시한 것을 이른다.

南部明禮洞居 尹進士宅奴乙龍 [左寸] 【號牌納】
 右所志矣段 矣上典宅婢 慶源居召史一所生婢明
 禮 同婢二所生奴口述 二口等亦 納價賑廳 自贖乙
 仍于 本文記現納爲去乎 依例背頃 以爲受價
 之地爲白只爲
 行下向教是事
 掌隸院處分
 丙戌九月 日所志
 [題辭] 文書相考 告課向事 初九
 官 [着署]

2. 노비의 추심

4-2-1) 1660년 윤 참의댁 종의 소지에 의거한 각 사람들의 초사와 증거 문서

[1660년(현종 원년) 윤 참의댁 종이 상전을 대신하여 상전댁 노비를 횡탈해 간 정복룡을 상대로 관에 소지를 올려 노비를 추심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일괄 문서. 양녀 안심의 초사 1, 양녀 안심의 초사 2, 사내종 성길의 초사, 윤 연산댁 종 성길이 관에 올린 소지, 윤 연산댁 종 성길이 충청도 관찰사에게 올린 의송, 호적 전서傳書, 여종 개례의 초사, 양녀 안심의 초사 3, 사내종 안영의 초사 순으로 점련되어 있다.]

① 양녀 안심의 초사

경자년(1660, 현종 원년) 3월 1일 양녀良女 안심安心 나이 57세.

아웁니다. 서울에 사는 윤 참의댁¹² 사내종 산복山卜이 올린 소지에 의거하여 네가 …(원문 결락)… 양인인지 천인인지의 근인根因 및 전 남편 말질룡龍과 낳은 소생을 자기 노비라고 하면서 중간에서 함부로 침책[橫侵]한 사람의 성명과 거처를 아울러 사실대로 고하라고 추고推考하시기에 아

12 윤 참의댁(尹參議宅) 윤선도(尹善道, 1587~1671) 댁을 지칭한다.

됩니다.

저는 본래 …(원문 결락)… 사내중 말질룡과 혼인하여 낳은 첫 번째 소생 여중 대례大禮 나이 계해생, 두 번째 소생 사내중 태근大斤 나이 을축생, 세 번째 소생 여중 개례介禮 나이 기사생, 네 번째 소생 여중 개질월리衿月里 나이 임신생, 다섯 번째 소생 사내중 태근大斤 나이 을해생 등 5구를 낳아 길렀습니다. (그리고) 본 남편[本夫] 말질룡은 정축년(1637, 인조 15)에 사망했습니다. …(원문 결락)… 윤연산댁尹連山宅 사내중 성길威吉과 혼인하여 낳은 자녀 모두 2구 또한 …(원문 결락)… 낳아 길렀습니다. (이들은) 아버의 역[父役]을 따라 지금 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원문 결락)…

지난 기축년(1649, 인조 27)간에 전후로 얼굴과 이름을 알지 못하는 경기 금천淸川에 사는 정복량鄭復良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저의 상전이라고 하며 저의 본 남편 말질룡과 낳은 소생 중에 여중 대례, 사내중 태근, 여중 개질월리, 사내중 태근 등 4인을 밤을 틈타 쳐들어와 뜻하지 않게 붙잡아갔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 이유를 알지 못하여 지금까지 한탄하고 있습니다.

저의 양적良籍은 어리석은 여인이라 상세히 알지 못합니다. …(원문 결락)… 김언세金彦世는 본 군本郡의 안案에 정병보正兵保라고 기록되어 있고, 조부는 …(원문 결락)… 양호良浩이고, 외조부는 기억하지 못하므로 고할 수 없습니다. 저의 아버지의 이름은 대사동면大寺洞面 김언세의 호戶 아래에 기록되어 있으니 상고하시면 양인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제가 양녀良女임이 명백하다는 것은 다음을 통해 증명됩니다. 즉, 저의 아우 춘이春伊가 예산안禮山案에 기록되어 있는 봉선사奉先寺 사내중 최계봉崔戒奉과 혼인하여 낳은 자식들이 아버의 역에 따라 지금 역을 수행하고 있으니 제가 사천私賤일리는 전혀 없습니다.

전일에 정복량이라는 사람이 저의 자식을 모조리 붙잡아간 일은 지극히 근거 없는 일인데, 어리석은 여인의 몸으로 변별하여 밝힐 길이 없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상고 시행해 주십시오.

아뢰[우촌]

관[착서]

② 양녀 안심의 초사

같은 날, 양녀 안심 나이 ○세.

다시 추문하시기에 아뢰입니다. “너의 자녀들의 소생을 하나하나 고하라”고 하였고, “정복량이 붙잡아간 사람들이 그 어미가 있는데 오지 않았을 리가 없다. 거주하는 곳과 소생을 아울러 사실대로 고하라”라고 추고하시기에 아뢰입니다.

저의 소생들은 위의 정복량이 잡아간 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소생은 하나하나 고하오니, 상고 시행해 주십시오.

아뢰[우촌]

관[착서]

저와 사내종 말질룡이 낳은 소생

일. 첫 번째 소생 여종 대례大禮 나이 계해생 } 정복량이 잡아감.
두 번째 소생 사내종 대근大斤 나이 을축생 }

세 번째 소생 여종 개례介禮 나이 기사생 현재 읍저邑底에 거주함. 가사령假使令 전개질동全畵同과 혼인함.

네 번째 소생 여종 개질월리龜月里 나이 임신생 } 정복량이 잡아감.
다섯 번째 소생 사내종 태근太斤 나이 을해생 }

여종 대례의 첫 번째 소생 사내종 예남禮男 나이 알지 못함. 정복량이 잡아감.

여종 개례의 첫 번째 소생 사내종 사일士日 나이 을미생 } 현재 그 어미의 집에 있음.
두 번째 소생 사내종 오일五日 나이 무술생 }
세 번째 소생 사내종 을해 태어남. }

끝.

③ 사내종 성길의 초사

같은 날, 사내종 성길成吉 나이 56세.

아웁니다. 이번에 올린 서울에 사는 윤 참의댁 사내종 산복山卜이 올린 소지에 의거하여 “너의 후처後妻 안심의 양천良賤 여부를 사실대로 고하라”라고 추고하시기에 아웁니다.

저는 사내종 말질룡의 처 안심이 남편을 잃고 혼자였을 때인 지난 무인년(1638, 인조 16)간에 혼인하여 첫 번째 소생인 여종 예영禮英과 두 번째 소생인 사내종 태량太良 등 2구口를 낳았습니다. 위의 안심이 본래 양녀良女이므로 저와 함께 낳은 소생 자식들은 아버지의 역에 따라 저의 상전댁에서 지금 양역仰役하고 있으며, 제가 함께 살 때인 지난 정유 식년(1657, 효종 8) 호적에 안심의 아버지와 조부를 일일이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전후로 알지 못하는 정복량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난 신묘년(1651, 효종 2)에 위의 안심을 그의 여종이라고 하며 와서 부당하게 침책했습니다. 그래서 연유를 갖추어 관에 소지를 올려 추변推辨하려고 했는데, 위의 정복량이 스스로 그의 죄를 알고 도주하여 추핵推覈하지 못했습니다. 그 때 관에 소지를 올려 받은 입지를 제출하니 아울러 상고 시행해 주십시오. 그 후에는 위의 여자 안심을 같은 군郡에 사는 맹몽탁孟夢卓이 데리고 살고 있습니다. 상고 시행해 주십시오.

아웁[좌촌]

관[착서]

④ 윤 연산댁 중 성길이 관에 올린 소지

대사동大寺洞 …(원문 결락)… 성길成吉

이 소지에서 아뢰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원문 결락)… 의송議送을 올려 도부到付¹³하여 정복량과 접송接訟했는데, 정복량이 도주한 일에 대해 다시 진달합니다. 저의 양처良妻의 아버지 김언세金彦世의 사조四祖는 아버지 정병正兵 김양호金良浩, 조부 기관記官 김연金連, 증조부 기관 김보종金甫從, 외조부는 정병 임수련林水連이니, 양적良籍, 양족良族이 명백합니다. 그런데 위의 정복량이 구승원具承元이라는 사람과 본 군本郡에 사는 송몽열宋夢說 등과 합심하여 법을 무릅쓰고 차지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하여 저의 양처良妻를 정복량의 여종인 것처럼 위력으로 겁박하여 다짐을 받고 화명花名을 받아간 후 저의 처 전 남편 소생 5구를 구승원과 절반씩 나누어 혹은 시환하고 혹은 팔아먹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낳은 자식 2구를 차지하여 이익을 보려고 군郡에 왔다가 추가로 관비官婢 등을 유인한 것이 드러나 여러 날 수금되어 형추刑推를 받고 풀려났습니다.

제가 이와 같은 정유情由로 시송始訟하던 날 정복량의 초사에서는 저의 처부妻父 김언세를 그의 사내중 언복彦卜의 소생이라고 했습니다. 위의 김언세가 생존해 있을 때의 호적을 관전官前에서 상고했는데, 정병 김양호의 아들 언세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사내중 언복의 이름과는 전혀 관계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다만 전날 다짐 문기를 받아서 덕산德山땅에 두었으니 가지고 와서 대송對訟하겠다고 하고, 몰래 숨어서 도주했습니다.

위의 정복량은 이러한 일을 업業으로 삼았습니다. 전에도 해미海美 …(원문 결락)… 양인良人을 구승원, 송몽열 세 사람이 합심하여 불법으로 차지하여 입량위천壓良爲賤했다가 죄가 드러났을 때 복량은 간신히 도주했고 구승원과 송몽열 등은 홍주목洪州牧에 옮겨 수감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구승원이 옥을 빠져나와 도망했고, 그 후 송몽열은 울에 의해 죄를 받아 고사역古寺驛에 정패定牌되었습니다.

대개 정복량은 이익을 보면 쫓고 해로움을 보면 피하면서 거리낌없이 폐단을 만드는 자입니다. 저는 세력 없는 시골 백성으로 마침 밝게 정사를 펴시는 때이고, 이 사람은 죄명이 드러나자 요행히 도주했습니다. 간사한 꾀를 꾸미는 것이 매우 심하여 부당하게 (남의 것을) 빼앗는 사람으로 반드시 훗날 폐해가 있을 것입니다. 위의 사람이 거주하는 관脞에 의송을 도부하니, 변별하여 판결하셔서 처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군本郡의 호적에 기록되어 있는 김언세 사조四祖의 역명役名을 아울러 상세히 밝혀서 입안을 성급하도록 행하行下해 주십시오.

행 군수님 처분.

신묘년(1651, 효종 2) 2월 일 소지

[제사] 원하는 대로 입안을 성급하거니와, 김언세가 대대로 양역良役을 지고 있는 것은 본 군本郡의 장적帳籍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다. …(배면 이미지 없음)…¹⁴

13 도부(到付) 관찰사에게 의송을 올려 받은 제사를 수령에게 제출하는 것.

⑤ 윤 연산택 중 성길의 충청도 관찰사에게 올린 의송

도내 서산瑞山에 사는 사노私奴 성길

이 소지에서 아뢰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대대로 양인인 김언세의 여식으로 남편을 잃고 혼자 사는 여자와 혼인하여 살았으며, 소생 자녀 2구를 저의 상전에게 양처소산良妻所産이라고 화명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서울에 사는 정복량이라는 사람이 저의 처를 그의 사내중 소생이라고 하면서 작년 사사로이 겁박하여 다짐을 받았고, 제 처의 전 남편 소생 남녀 모두 5구를 잡아갔습니다. 대대로 양인인 김언세의 여손女孫 등을 부당하게 빼앗은 연유는 서울에 사는 정복량, 구승원 및 본 군에 사는 송몽열 세 사람이 한통속이 되어 도적의 심보와 다름 없이 세력 없는 시골 사람이라고 보아 문기를 위조해 마구잡이로 폐해를 저지른 것입니다.

전에도 이와 같이 하여 해미海美땅의 대대로 양인인 사람을 압량위천壓良爲賤했다가 죄명이 드러나니 정복량은 도주했고, 구승원과 송몽열은 홍주목에 옮겨 수감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구승원은 감옥을 빠져나와 도주했고, 그 후 송몽열은 율령에 의해 정죄定罪되어 고사역古寺驛에 정패定牌되었습니다.

위의 정복량이 이익을 보려고 금년 2월에 본 군本郡에 왔다가 추가로 관비官婢 등을 유인했을 때 죄가 드러나 붙잡혀 수감되었고, 형추刑推를 받고 풀려날 때 제가 의송議送을 올려 도부到付하여 접송接訟했습니다. 위의 정복량의 조사에서는 저의 처부妻父 김언세를 그의 사내중 언복彦卜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 군의 군수님께서 김언세가 생존했을 때의 옛 장적帳籍을 상고하니, 정병 김양호의 아들 김언세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사내중 언복의 이름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다만 전날 다짐 문기가 덕산德山땅에 있으니 가지고 와서 대송對訟하겠다고 하더니 몰래 숨어서 도주했습니다.

위의 정복량은 이익을 보면 쫓고 해로움을 보면 피하는 자입니다. 훗날 반드시 세력을 얻으면 저의 자식들을 침책侵責하는 폐해가 있을 것입니다. 이에 본 군에 전에 올렸던 소지를 아울러 점련하여 올리니, 훗날의 상고를 위해 입지立旨를 성급하도록 행하行下해 주십시오.

겸 순찰사님 처분

신묘년(1651, 효종 2) 12월 일 의송

[제사] 소지의 내용이 확실하다면 본관本官에 소지를 올려서 입지를 받으라. 17일.

겸사兼使[작성]

14 이후의 제사 내용이 배면(背面)에 기재되어 있지만 이미지를 확보하지 못하여 번역하지 못했다. 군수의 착서도 배면에 있다.

⑥ 호적 전서傳書

경자년(1660, 현종 원년) 3월 일. 호적을 옮겨 적음.

일. 만력萬曆 40년 임자(1612, 광해 4) 호적 내 대사동면大寺洞面

호戶 경장京匠 보인 김언세 나이 54세 기미생, 본관 서산瑞山

아버지 정병正兵 양호良浩

조부 기관記官 김연金連

증조부 기관 보종甫從

외조부 정병 임수련林水連, 본관 서산

솔率 딸 자심이子心伊 나이 8세 갑진생

끝.

일. 정유 식년(1657, 효종 8) 호적 내 대사동면 양녀 안심의 후부後夫 사내중 성길. 호적을 옮겨 적음.

호戶 서울에 거주하는 윤제尹濟의 사내중 성길 나이 53세.

처妻 양녀良女 김조이 나이 54 갑진생, 본관 서산

부父 정보正保 언세

조祖 정병 양호

증조부 기관 연連

외조부 정병 임수련林水連, 본관 서산

솔率 딸 예영禮英 나이 18세 경진생

관[착서]

⑦ 여중 개례의 초사

같은 날, 여중 개례介禮 나이 33세.

아웁니다. 정복량이 저에게 해마다 신공을 받았다고 하는데, 위의 정복량이 어떤 사람이며, 사는 곳이 어디인지 사실대로 고하라고 추고推考하시기에 아웁니다.

정복량이 저의 어머니의 상전이라고 하면서 저의 동생들을 잡아갔습니다. 어리석은 여인인 저는 (정복량을) 알지 못하고, (그가) 사는 곳은 경기 금천衿川 남면南面입니다. 상고 시행해 주십시오.

아웁[우촌]

관[착서]

⑧ 양녀良女 안심의 초사

같은 날, 양녀 안심 나이 ○세.

다시 추문하시기에 아웁니다. 저의 전 남편의 누이 언향彦香이 간 곳을 사실대로 고하라고 추고하시기에 아웁니다.

언향의 이름은 지금 처음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저의 전 남편의 누이 말질춘壽春은 그의 상전이 남양南陽 땅으로 잡아갔다는 것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상고 시행해 주십시오.

아웁[우촌]

관[착서]

⑨ 사내중 안영의 초사

같은 날, 사내중 안영安永 나이 40세.

아웁니다. 저의 아버지의 누이동생인 언향彦香의 거처를 사실대로 고하라고 추고推考하시기에 아웁니다.

저의 아버지의 누이 언향인지를 경기 남양南陽 땅 상전택에서 잡아갔다는 것을 들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들으니 저의 아버지의 누이인 말질춘壽春이 남양 땅에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상고 시행해 주십시오.

아웁[좌촌]

관[착서]

① 양녀良女 안심의 초사

庚子三月初一日 良女安心 年五十七

□□(白等) 京居尹叅議宅奴山卜呈狀據 汝矣□

□(良)賤根因 及前夫衞龍并産所生 稱以

□奴婢 中間橫侵之人 姓名居處并以 從

實現告亦 推考教是臥乎在亦 女矣身亦 本

□…□人 奴衞龍交嫁所産 一所生婢大禮年癸

□…□(亥生) 二所生奴大斤年乙丑生 三所生婢介禮年己巳生

四所生婢龔月里年壬申 五所生奴太斤年乙亥

□…□(生等) 五口産長 本夫衞龍段 丁丑年分身死 其

□…□ 尹連山宅奴成吉交嫁 子女并二口 亦爲□

産長 從父役 今方對答是白乎矣 年

□記 去己丑年間 前後名不知 京圻

衿川居鄭復良稱名人來到 稱以女矣上
 □(典) 女矣本夫歪龍并産所生中 婢大禮·奴大斤·
 婢兪月里·奴太斤等 四人乙 乘夜突入 不意
 捉去 尙未知其由 于今恨歎是白乎旡 女矣
 身良籍段 迷劣女人以 未能詳知是白在果
 □金彦世段 本郡案付正兵保是白乎旡 祖□
 前良浩 兼外祖段 未能記憶現告不得
 爲白去乎 女矣父名 付大寺洞面金彦世戶
 下 相考 則良派乙 可知是旡 又於女矣身
 良女明白事段 矣弟春伊亦 禮山案付
 奉先寺奴崔戒奉交嫁所産子息等亦 爲從
 父役 今方對答爲白去等 女矣身身亦 私
 賤是白乎乙所 萬萬理無 而前日鄭復良□(稱)
 名之人 女矣子息 沒數捉去事 極無據
 是白乎矣 迷劣女身以 無路卞覈 以致
 今日是白去乎 相考施行教事
 官[着署] 白[右寸]

② 양녀 안심의 초사

同日 良女安心 年
 更推 白等 汝矣子女等所生 一一現告爲旡 鄭
 復良捉去之人等 其母在 萬無不來之理
 居處及所生 并以 從實現告亦 推考教
 是臥乎在亦 女矣所生等 上項鄭復良捉去後 一不相
 見爲白有在果 女矣身所知所生段 一一現告
 爲白去乎 相考施行教事
 官[着署] 白[右寸]

女矣身奴歪龍并産

一 一所生 婢大禮 年癸亥生 } 鄭復良捉去
 二 所生 奴大斤 年乙丑生 }
 三 所生 婢介禮 年己巳生 時居邑底 假使令全兪同 交嫁

四所生 婢龔月里 年壬申生 } 鄭復良捉去
五所生 奴太斤 年乙亥生 }

婢大禮 一所生 奴禮男 年不知 鄭復良捉去

婢介禮 一所生 奴士日 年乙未生 }
二所生 奴五日 年戊戌生 } 時在厥母家
三所生 奴 今年生 }

際

③ 사내중 성길의 초사

同日 奴成吉 年五十六

白等 節呈京居尹叅議宅奴山卜呈

狀據 汝矣後妻安心 良賤與否 從

實現告亦 推考教是臥乎在亦 奴矣身

段 奴恣龍妻安心亦 喪夫獨在時 往在

戊寅年間交嫁 一所生婢禮英 二所生

奴太良等 二口是白乎矣 同安心亦 本

以良女是白乎等以 矣身並產所生子息

等 從父役 矣上典宅以 今方仰役是白乎

旃 矣身同居時 去丁酉式年戶籍良中

安心父祖 一一懸錄爲有旃 前後不知鄭

復良稱名人亦 去辛卯年分 上項安心乙

其矣婢子是如 來到橫侵爲白去乙 具由呈官

推下計料是白如乎 同鄭復良亦 自知

其罪 逃走乙仍于 未得推覈 其時呈官立旨

現納爲白去乎 并以 相考施行教矣 其後 則同女

安心乙 郡居孟夢卓亦 率居爲白去乎 相考施

行教事

官[着署]

白[左寸]

④ 윤 연산택 중 성길이 관에 올린 소지

大寺洞□…□成吉

右所志 奴矣□…□(段 奴矣)身亦 呈議送到付 鄭福良果 接訟爲白有如可 鄭福良

亦 逃走事乙 更良陳達爲白去乎 奴矣良妻父金彦世四祖段 父正兵金良
 浩 祖記官金連 曾祖記官金甫從 外祖段 正兵林水連是白齊 良籍良族
 明白爲白去乙 上項鄭福良亦 具承元稱名人果 本郡居宋夢說等 同心冒
 占設計爲白良齊 奴矣良妻乙 鄭福良婢子樣以 威力劫捧侂音 花名以去後
 奴矣妻前夫所生五口乙 具承元果 半分作立 或以使換 或以賣食爲白乎旆
 奴矣身所產子□二口等 蠶食之利 而來到郡地爲有如可 加至而奴婢等招引
 現露 累日囚禁 刑推放送之余 矣身亦 如此情由以 始訟之日 鄭福良招辭
 段 奴矣妻父金彦世乙 厥奴彦卜之所生是如爲乎矣 同金彦世生存時 戶
 籍乙 官前相考 則正兵金良浩子彦世是乎等以 其奴彦卜之名 皮肉不
 奸¹⁵乙仍于 一不開口 而只曰前日捧侂音文記 德山地位置爲良尔 持來對訟是
 如爲白遣 潛隱逃走爲白是乎所 上項福良亦 所凡如此之事 以爲業爲白在 前
 矣段置 海美□良人乙 具承元·宋夢說三人等 同心冒占 壓良爲賤爲白如可 罪
 名現露之際 福良段 艱□逃走爲白遣 具承元·宋夢說等段 洪州牧移囚爲白
 有如可 具承元段 越獄逃亡後 宋夢說段 依律定罪 古寺驛定牌爲白有如乎
 大概鄭福良亦 見利則趨 見害則避 橫行作弊爲白在 奴矣身段 無勢村氓以
 適音明政之時是白遣 右人段 罪名現露 僥幸逃走爲白有在果 奸謀莫甚 橫
 奪之人以 必有後弊是白置 右人所居官良中 議送到付 下決處置望良白去乎
 本郡戶籍懸錄爲白有在 金彦世四祖役名 并以 詳明立案成給爲白只爲
 行下向教是事

行郡守主 處分

辛卯二月日所志

[題辭] 依願立案成給爲

在果 金彦世代代良役

本郡帳籍良中 昭然懸

□...□¹⁶

⑤ 윤 연산댁 중 성길이 충청도 관찰사에게 올린 의송

道內瑞山接私奴成吉

15 ‘奸’은 ‘부’의 오기이다.

16 이후의 제사 내용이 배면(背面)에 기재되어 있지만 이미지가 없어 탈조하지 못했다. 군수의 착서도 배면에 있다.

右所志 奴矣段 奴矣身亦 世代良人金彦世女息 喪夫獨女乙 交嫁居生爲白乎
旻 所產子女等二口乙 奴矣上典良中 良妻所產禾¹⁷名爲白有如乎 京居鄭福
良稱名人亦 奴矣妻乙 其奴所生是如 上年分 私門以 劫捧侂音爲白遣 奴
矣妻前夫所生男女 并五口乙 捉去爲白是乎所 世代良人金彦世女孫等乙 橫
奪之由 京居鄭福良·具承元 及本郡居宋夢說 三人等付¹⁸同 無異賊心以
無勢村氓旨名 僞造文記 橫行作弊爲白如乎 前矣段置 如此之事以 海
美地代代良人口(乙) 厭良爲賤爲白如可 罪名現露 則鄭福良段 能走逃
亡爲白遣 具承元·宋夢說等段 洪州牧移囚爲有如可 具承元段 越獄逃
走後 宋夢說段 依律定罪 古寺驛定牌爲白有如乎 上項鄭福良亦
蠶食利以 今年二月分 本郡地來到爲白有如可 加至而官婢等招引之際
現露捉囚 刑推放送時 奴矣身亦 呈議送到付 接訟爲白如乎 同鄭福良
招辭段 奴矣妻父金彦世乙 其奴彦卜之子是如爲乎矣 本郡郡守主
教是 上項金口(彦)世生存時 舊帳籍相考 則正兵金良浩子金彦世
是乎等以 其奴彦卜之名 皮肉不奸¹⁹乙仍于一不開口 而只曰 前日侂音文記 德山
地在置爲良尔 持來對訟是如 潛隱逃走爲白有去乎 上項福良亦 見利
則趨 見害則避爲白良置 後必得勢 則奴矣子息等 侵責之弊是白
乎喻良置 本郡前呈所志 并以 粘呈爲白去乎 後考次以 立旨
爲白只爲

行下向教是事

兼巡察使主 處分

辛卯十二月日議送

[題辭] 狀辭的實 則呈本官立旨向事 十七

兼使[着署]

⑥ 호적 전서傳書

庚子三月日 戶籍傳書

一 萬曆四十年壬子帳內 大寺洞面

戶 京匠保金彦世 年五十四己未生 本

17 '禾'는 '花'의 오기이다.

18 '付'는 '符'의 오기이다.

19 '奸'은 '干'의 오기이다.

瑞山 父 正兵良浩 祖 記官金連 曾祖
 記官甫從 外祖 正兵林水連 本瑞山 率
 女 子心伊 年八甲辰生 印
 一 丁酉式年戶籍內 大寺洞面 良女安心後夫奴成吉
 戶籍傳書
 戶 京居尹濟奴成吉 年五十三 妻良女
 金召史 年五十四甲辰生 本瑞山 父
 正保彥世 祖 正兵良浩 曾祖 記官連 外
 祖 正兵林水連 本瑞山 率女 禮英 年十八
 庚辰生
 官[着署]

⑦ 여중 개례의 초사

同日 婢介禮 年卅三
 白等 鄭復良亦 汝矣處 年年收貢
 是如爲置 同鄭復良 何如人是旆
 居在何處是諭 從實現告亦 推
 考教是臥乎在亦 鄭復良亦 矣母上
 典稱云 婢矣同生等 捉去爲白有乎矣
 迷劣女人 知不得是白乎旆 居處段 京
 圻衿川南面是白去乎 相考施行
 教事
 官[着署] 白[右寸]

⑧ 양녀 良女 安心의 초사

同日 良女安心 年
 更推 白等 汝矣前夫妹彥香去處 從
 實現告亦 推考教是臥乎在亦 彥香
 之名段 今始初聞是白在果 女矣前夫妹
 春段 其上典 南陽地 捉去是如爲白去乙
 聞知爲白有良尔 相考施行教事
 官[着署] 白[右寸]

⑨ 사내중 안영의 초사

同日 奴安永 年四十
 白等 汝矣父妹彦香居處 從
 實現告亦 推考教是臥乎在
 亦 矣父妹彦香是白乎喻 京
 圻南陽地 上典宅 捉去是如爲
 白去乙 聽聞勞是白如乎 今聞
 矣父妹姝春 南陽地居生是如爲白置
 相考施行教事
 官[着署] 白[左寸]

4-2-2) 1660년 윤 참의덕 호노 산복이 형조에 올린 소지

[1660년(현종 원년) 윤 참의덕 호노 산복이 형조에 상전덕 노비를 횡탈해 간 사건에 관련된 구정을 수금하고 독촉하여 노비를 돌려받게 해 달라고 청한 소지]

뒤이어 올림

양주楊州에 사는 윤 참의덕 호노戶奴 산복山福 [우촌右寸]

이 삼가 아뢰는 소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의 상전덕의 사내중 말질룡漆龍이 양처良妻 안심安心과 낳은 …(원문 결락)… 소지에서 상세히 진달하였으니 다시 번거롭게 해드리지 않겠습니다. 위의 구정具楨이 …(원문 결락)… 찾아와 계집종 대례大禮 및 그의 소생들을 잡아갔습니다. …(원문 결락)… 매우 원통합니다. 위의 구정을 법에 따라 엄히 가두어 기한을 정하여 독촉하고 빨리 …(원문 결락)… 점련 …(원문 결락)… 훗날의 폐단을 막고 국법을 밝히도록 행하行下해 주십시오.

형조刑曹

追呈

楊州居尹叅議宅戶奴山福[右寸]
 右謹陳爲白內等 矣上典宅奴漆龍 良妻安心并産 □…□
 所志良中 詳細陳達 不復煩瀆爲白在果 同具楨□…□
 處 尋到 上項婢大禮 及其所生等段 推給爲白乎矣 □…□
 極痛惡□(爲)白去乎 同具楨乙 依法嚴囚 刻督期速□…□

粘連□□□給 以絶後弊 以明
 國法爲白只爲
 行下向教是事亦在
 刑曹
 □…□

4-2-3) 1660년 윤 참의댁 호노 산복의 소지와 금천현에서 정복량에게 받은 초사

[1660년(현종 원년) 양주에 사는 윤 참의댁 호노戶奴 산복이 정복량에게 빼앗긴 상전댁 노비를 돌려받기 위해 금천관에 올린 소지와 이에 의거하여 금천현에서 정복량에게 받은 초사. 산복은 이 소지에서 상전댁의 종 말질룡과 그의 양처良妻 안심 사이의 소생 노비 4구를 상전 외가 쪽 얼4촌 구승원의 사주를 받은 정복량이 빼앗아갔고, 그 중 2구를 아직 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정복량을 잡아 그의 행위에 대해 추문하고 엄히 가두어 노비 2구를 돌려주도록 독촉해 주기를 청했다. 또 압량 위천壓良爲賤의 죄와 남의 노비를 모점冒占한 죄로 그를 처벌해 주기를 청했다. 이에 의거하여 금천현에서는 정복량에게 윤 참의댁 사내종 말질룡과 양처 안심 사이의 소생을 빼앗아 구승원에게 준 사건의 전말과 이 중 2구를 모점하고 있는 이유와 그 전말을 추문했고, 정복량은 이 추문에 답변하며, 노비 2구 중 현재 생존해있는 태근은 구승원의 집에 있다며 윤 참의댁에 찾아 바치겠다고 했다.]

① 윤 참의댁 호노 산복이 금천현에 올린 소지

양주楊州에 사는 윤 참의댁尹參議宅²⁰ 호노戶奴 산복山福 [좌촌]

이 삼가 아뢰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의 상전댁의 서산瑞山에 사는 사내종 말질룡壽龍은 양처良妻 안심安心과 낳은 첫 번째 소생 여종 대례大禮 나이 계해생, 두 번째 소생 사내종 대근大斤 나이 을축생, 세 번째 소생 여종 개례介禮 나이 기사생, 네 번째 소생 여종 개질월리龜月里 나이 임신생, 다섯 번째 소생 사내종 태근太斤 나이 을해생 등 5남매를 데리고 별 탈 없이 복역했습니다. 그러다 위 말질룡이 사망한 후 말질룡의 처 안심이 윤 연산댁尹連山宅 사내종 성길成吉이라는 사람과 혼인하여 살았습니다.

그 후 안심이 말하기를, “전후로 알지 못하는 금천衿川에 사는 정복량鄭復良이라는 사람이 저의 집

20 윤 참의댁(尹參議宅) 윤선도(尹善道, 1587~1671) 댁을 지칭한다. 윤선도는 1652년(효종 3) 예조참의에 제수된 적이 있고, 1658년(효종 9)에는 공조 참의에 제수된 바 있다.

에 밤을 틈타 쳐들어와 저의 아버지인 정병(正兵) 김언세(金彦世)를 그의 사내종 언복(彦福)의 소생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본 남편(本夫) 말질룡과 낯은 여종 대례, 사내종 대근, 여종 개질월리, 사내종 태근 등 4구(口)를 뜻하지 않게 겁박하여 빼앗아 잡아 갔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저의 상전께서 이 말을 듣고 오셔서 매우 괴이하다고 하셨지만 상전이 해남에 살아 천리 먼 곳에서 추변(推辨)하기가 쉽지 않았을 뿐 아니라 집에 일들이 많아 생각이 미칠 겨를이 없어 우선 마음에 두지 않고 내버려두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에야 차노(差奴)를 보내어 서산관(瑞山官)에 소지를 올려 변별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서산 관주(官主)께서 각 사람들에게 받은 초사(招辭)와 호적 등본 및 안심의 후부(後夫) 성길(性吉)이 제출한 이전에 소지를 올려 받은 입지(立帖)를 아울러 점련하여 제사(題辭)내리셨는데, 피고가 거주하는 고을의 관아에 나아가 변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저의 상전이 금천(紇川)에 소지를 올려 정복량을 추문(推問)하게 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성길(性吉)이 관에 올린 소지를 살펴보니 “정복량이 구승원(具承元)과 반씩 나누었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구승원은 저의 상전 외가 쪽 일사촌(擘四寸)인데 지금은 이미 사망했고 구승원의 일자인 구정(具楨)이 지금 서울에 있어 그 날로 불러 그 연유(緣由)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구정이 말하기를, “노비를 잡아 올 때 소인이 비록 어렸지만 아버지를 따라 함께 갔는데, 이는 정복량의 소행이 아니라 실은 사망한 아버지가 한 것입니다.”라고 했습니다. 또 말하기를, “사망한 아버지의 처가 쪽 사내종이 덕의 사내종인 말질룡의 처 안심의 아버지 언세와 이름이 서로 비슷하여 착오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긴 요하게 쓸 데가 있어서 서울 사람에게 팔았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구정이 또 말하기를, “여종 개질월리는 무자년(1648, 인조 26)에 저의 아버지가 팔았고, 여종 대례와 그 소생 인룡(仁龍)은 같은 해 저의 아버지가 사망한 후 제가 팔았습니다. 사내종 대근은 정복량이 팔았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구정 부자가 위 노비들을 자기 노비로 알았다는 것은, 사내종 대근(大根)이를 정복량에게 일임하여 팔아 먹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혀 그럴 리가 없습니다. 이는 필시 당초 구정 부자가 도매(盜賣)하려고 계획할 때 자신들을 드러내고 잡아간다면 저의 상전이 반드시 즉시 추변(推辨)하여 일이 실패로 돌아갈 것이라고 여겨 그 노비 중 1구를 정복량에게 떼어주고 복량으로 하여금 위 노비들을 전부 그의 노비라고 칭하여 잡아오도록 한 것이 명백합니다.

그러므로 노비들의 어머니인 양녀 안심의 초사에, “이름과 얼굴을 알지 못하는 정복량이라는 사람이 저를 그의 여종이라고 하면서 밤을 틈타 쳐들어와 저의 소생들을 뜻하지 않게 겁박하여 빼앗아 잡아 갔습니다.”라는 말과 안심의 후부(後夫)인 윤 연산(尹連山) 사내종 성길(性吉)의 소지에 이른바 “정복량이 구승원과 반씩 나누어 주인이 되어 혹 사환하기도 하고 혹 팔아먹기도 했습니다.”라는 말은 모두 구승원에게 속은 것이고, 지금까지도 구승원이 (그 일을) 주장했다는 것을 알지 못한 것입니다. 정복량은 다만 승원이 먹여주는 이익을 받아먹고 승원의 사냥개 역할만 한 것이 명백한 듯합니다.

위 구승원의 아들 구정이 이미 사실을 고하여 형조에 초사를 바친 후에, 위 여종 대례, 여종 개질월리 및 대례의 소생 인룡(仁龍) 등은 즉시 추심해 바쳤습니다. 그런데 사내종 대근(大根), 태근(太斤) 등 2구

는 시종일관 정복량에게 미루어 팔아먹어 간 곳을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사연과 서산관의 입지를 아울러 세세히 살피신 후 위의 정복량을 잡아 와 당초 이 노비들을 무슨 연유로 겁탈하여 구승원에게 잡아 주었으며, 그 중 사내중 대근과 태근 2구를 무슨 연유로 사내중 모점_{모점}占했는지를 엄히 추문_{추문}推問해 초사를 받으십시오. 그 후 위 초사를 저의 원 소지에 점련_{점련}粘連하여 제사를 내려주시어 훗날 상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내중 대근, 태근을 추심해 바치는 일에 관해서는 엄히 가두어 바치도록 독촉하고 압량위천_{壓良爲賤}의 죄와 다른 사람의 노비를 모점한 죄를 징계하여 국가의 정법_{정법}正法을 밝히도록 행하_行行下해 주십시오. 삼가 아뢰입니다.

금천관주_{金川官主} 紘_紘 처분

순치_{順治} 17년(1660, 현종 원년) 4월 일 소지

[제사] 위 정복량을 추열_{추열}推闕하기 위해 잡아 오라. 12일.

[착서]

② 정복량의 초사

경자년(1660, 현종 원년) 4월 16일 남면_{南面} 아방리_{阿方里}에 사는 충의위_{忠義} 정복량_{鄭復良} 나이 52세.

아뢰입니다. 양주_{楊州}에 사는 윤 참의_{參議}댁 호노_{戶奴} 산복_{山福}이 올린 소지에 의거하여 서산_{瑞山}에 사는 그 집의 사내중 말질룡_{말질룡}이 양처_{良妻} 안심과 낳은 사내중 대근_{大斤}, 태근_{太斤} 등 2구를 무슨 연유로 모점_{모점}占했으며, 당초 위 노비들을 무슨 연유로 겁박하여 빼앗아 구승원_{具承元}에게 잡아다 주었다고 하는지, 모점 연유와 어떤 이유로 구승원에게 잡아다 주었는지 그간의 곡절을 숨기지 말고 사실대로 고하라고 추고_{추고}推考하시기에 아뢰입니다.

당초 잡아 와 사환한 것은 아마도 지난 무자년(1648, 인조 26)이었던 것 같습니다. 서산에 사는 송몽열_{宋夢悅}이 저의 조상 노비가 숨어 있다고 진고_{진고}陳告하기에 서산관에 소지를 올려 추심해 잡아 와 사환했을 뿐입니다. 송몽열이 다시 흥계를 내어 구승원에게 또 진고하여 말하기를, “정기_{鄭哥}의 노비가 아니라 구가_{具哥}의 노비가 확실하다.”라고 하므로 무자년(1648, 인조 26)에 형조에 소지를 올려 구승원이 저와 서로 소송했는데, 승원이 승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위의 소지에 기재된 노비들을 잡아다 승원에게 주었습니다.

그 후에는 그들이 다른 사람의 노비가 확실하다는 것을 알았으므로 위의 대근, 태근 등 2구도 또한 구승원에게 잡아다 주었습니다. 그 후 구승원이 대근을 병들어 폐인이 된 종이라며 쫓아내었으므로 위의 대근이 저희 집에 왔는데, 저는 그 병든 종을 가엽게 여겨 저의 집에 머물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계사년(1653, 효종 4)에 사망한 것이 명백하여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태근은 비록 구승원의 집에 있지만 제가 찾아다 윤 참의_{參議}댁에 바칠 계획입니다. 만약 이후에 다시 다른 계획을 꾸민다면 저를 법에 의하여 처치하십시오.

아립니다.[작명]

관官[작서]

① 윤 참의댁 호노 산복이 금천현에 올린 소지

楊州居尹叅議宅戶奴山福[左寸]

右謹陳爲白內等 矣上典宅瑞山居奴恠龍亦 良妻安心并産 一所生婢大禮年癸亥生 二所生奴
大斤年乙丑生 三

所生婢介禮年己巳生 四所生婢兪月里年壬申生 五所生奴太斤年乙亥生等 五男女 率良遣 無
弊服役爲白如可 □(同)

恠龍身死後 恠龍妻安心亦 尹連山宅奴成吉稱名人 交嫁居生爲有如乎 其後安心言內 前後不
知 衿川□(居)

鄭復良稱名人亦 女矣家良中 乘夜突入 □□□(女矣父)正兵金彥世乙 其矣奴彥福之所生是
如稱云 而女矣本夫□□(恠龍)

并産 婢大禮·奴大斤·婢兪月里·奴太斤等 四口乙 不意劫奪 捉去是如爲有去乙 矣上典亦 聞來
極以爲怪爲乎矣 上典

方居海南 地遠千里 推辨未易芬不喻 家多事故 念不暇及 姑置度外爲白有如乎 到今乃送差
奴呈辨於□(瑞)

山官爲乎矣 瑞山官主教是 各人□□(等捧)招 及戶籍謄本 □(及)安心後夫成吉所納 前呈立
旨 并以 粘連題給 而隻在

官就下亦爲有去乙 矣上典亦 方欲呈狀衿川 推問鄭復良爲白如可 更考成吉納官所志 則有鄭
復良亦 具承元□(果)

分半云云之語爲有臥乎所 具承元段 矣上典外邊孽四寸 而今已身死爲白在果 具承元之孽子
具楨 方在京中爲□(有)

去乙 卽日招致 問其緣由爲乎矣 具楨言內 奴婢捉來之時 小人雖年少 而隨父同行 此非鄭復
良所爲 實是亡父所

爲云云 又曰 亡父妻家奴 與宅奴恠龍妻安心之父彥世 名字相近 錯認爲此 而迫於要用賣於
京人云云爲白遣 具楨又曰

婢兪月里段 戊子年間 矣父放賣 婢大禮及其所生仁龍段 同年矣父身死後 矣身放賣爲有在果
奴大斤段

鄭復良放賣云云爲白臥乎所 具楨父子亦 右奴婢等乙 認爲己奴 則奴大斤耳亦 一任鄭復良
賣食爲乎乙所 萬無其

理 此必當初具楨父子盜賣設計時 以爲自己顯然捉去 則矣上典必卽推下 事將立敗爲乎乙去

向入 啗其奴婢中

一口於鄭復良 使復良右奴婢等乙 全數稱以渠奴 而捉致明白爲白置 然則奴婢母良女安心招
內 名面不知鄭復良

稱名人亦 女矣身乙 其矣婢子是如 乘夜突入 女矣所生等乙 不意劫奪捉去之說 及安心後夫
尹連山奴成吉所志所謂

鄭復良亦 具承元果 分半作主 或以使喚 或以賣食之說 皆是被欺於具承元 至今不知具承元
主張 而鄭復良只是

喫承元所啗之利 爲承元鷹犬之役而已也 似□(爲)明白矣 然□□(上項)具承元之子具楨亦 既
已首實 納招於刑曹後 同婢大禮婢

介叱月里 及大禮所生仁龍等段 卽爲推納爲乎矣 奴大斤·太斤等二口段 終始推諉於鄭復良
賣食不知處去是如爲白去

乎 右良辭緣 及瑞山官立旨 并以 細細鑑當後 同鄭復良乙 捉來 當初右奴婢等乙 某緣由以
劫奪捉付於具承元處爲

白乎旡 其中奴大斤·太斤二口乙 某緣由以 冒占爲有臥乎噏 嚴威推問捧招後 同招辭乙 矣身
元狀良中 粘連題給 以

爲後考之地爲白乎旡 奴大斤·太斤推納間 嚴囚督納 以懲壓良爲賤 冒占他奴之罪 以明 國家
正法爲白只爲

行下向教是事亦在 僅陳

衿川官主 處分

順治十七年四月日 所志

[題辭] 同鄭復良乙 推閱次以 捉來 十二

[着署]

② 정복량의 초사

庚子四月十六日 南面阿方里居 忠義

鄭復良 年五十二

白等 楊州居尹叅議戶奴山福呈狀據 其

家瑞山居奴叅龍良妻安心并産所生 奴

大斤·太斤等 二口乙 某緣由以 冒占爲有旡

當初右奴婢等乙 某緣由以 劫奪捉付於

具承元處是如爲有臥乎噏 冒占與

何故捉付具承元處爲有臥乎噏 其間

曲折 隱諱除良 從實現告亦 推考
 教是臥乎在亦 當初捉來使喚者 恐去
 戊子年分 瑞山居宋夢悅亦 矣祖上奴婢
 隱匿是如 陳告爲白去乙 呈瑞山官 推尋
 捉來 使喚而已是矣 宋夢悅亦 更生
 凶計 具承元處 又爲陳告曰 鄭哥奴婢不喻
 具哥奴婢的實是如乙仍于 戊子年分 呈
 刑曹 具承元與矣身果 相訟爲白如可 承
 元得決乙仍于 上項狀付奴婢等乙 捉付
 於承元處爲白有齊 其後 則知其他矣奴婢的實
 是白乎等以 同大斤·太斤等二口段置 亦
 爲捉給具承元處爲白有如乎 其後具
 承元亦 大斤乙 病廢之奴是如 黜送 故
 同大斤亦 矣家來到爲白有去乙 憐其
 病奴是可向入 仍留矣家爲白有如可 去
 癸巳年分 身死者 明白無疑爲白乎
 矣 太斤段 雖有具承元家 矣身推納
 于尹叅議宅 計料爲白去乎 如是之後 更
 生他計是白去等 矣身乙 依法處置教
 事
 官[着署] 白[着名]

4-2-4) 1660년 윤 참의댁 호노 산복이 경기도 관찰사에게 올린 의송

[1660년(현종 원년) 양주에 사는 윤 참의댁 호노戶奴 산복이 정복량에게 빼앗긴 상전댁 노비를 돌려받기 위해 경기도 관찰사에 올린 의송. 산복은 이 소지에서 상전댁의 종 말질룡과 그의 양처良妻 안심 사이의 소생 노비 4구를 상전 외가 쪽 열4촌 구승원의 사주를 받은 정복량이 빼앗아갔고, 그 중 2구를 아직 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금천현에 정복량을 잡아 그의 행위에 대해 추문하도록 제사를 내려주기를 청했다. 또, 금천현에 노비 2구를 돌려주도록 독촉하고 압량위천壓良爲賤의 죄와 남의 노비를 모점冑占한 죄로 정복량을 처벌하도록 명을 내려주기를 청했다.]

양주楊州에 사는 윤 참의댁 호노戶奴 산복山福[좌촌]

이 삼가 이르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의 상전댁의 서산瑞山에 사는 사내중 말질롱醜龍이 양 처良妻 안심安心과 낳은 첫 번째 소생 여종 대례大禮 나이 계해생, 두 번째 소생 사내중 대근大斤 나이 을축생, 세 번째 소생 여종 개례介禮 나이 기사생, 네 번째 소생 여종 개질월리介叱月里 나이 임신생, 다섯 번째 소생 사내중 태근太斤 나이 을해생 등 다섯 자녀를 거느리고 아무 탈 없이 복역服役했습니다. 그러다가 위 말질롱이 사망한 후에 말질롱의 처 안심이 윤 연산댁尹連山宅 사내중 성길成吉이라는 사람과 혼인하여 살았습니다.

그 후 안심이 말하기를, “전후로 알지 못하는 금천衿川에 사는 정복량鄭復良이라는 사람이 저의 집에 밤을 틔타 쳐들어와서 저의 아버지 정병正兵 김언세金彦世를 그의 사내중 언복彦卜의 소생이라고 하면서 저의 본 남편[本夫] 말질롱과 낳은 여종 대례, 사내중 대근, 계집종 개질월리, 사내중 태근 등 4구구를 뜻하지 않게 겁박하여 빼앗아 잡아 갔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저의 상전이 듣고 와서 매우 괴이하다고 했지만 상전이 해남에 살아 천리 먼 곳에서 추변推辨하기가 쉽지 않았을 뿐 아니라 집에 일들이 많아 생각이 미칠 겨를이 없어 우선 마음에 두지 않고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에야 차노差奴를 보내 서산관瑞山官에 소지를 올려 변별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서산 관주官主께서 각 사람들에게 받은 초사招辭와 호적의 등본 및 안심의 후부後夫 성길이 제출한 이전에 소지를 올려 받은 입지立帖를 아울러 점련하여 제사를 내리셨는데, 피고가 거주하는 고을의 관아에 가서 변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저의 상전이 금천衿川에 소지를 올려 정복량을 추문推問하게 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성길이 관에 올린 소지를 살펴보니 “정복량이 구승원具承元과 반씩 나누었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구승원은 저희 상전의 외가 쪽 열사촌孽四寸인데 지금은 이미 사망했고, 구승원의 열자인 구정具楨이 지금 서울에 있어 그 날로 불러 그 연유緣由를 물었습니다.

구정이 말하기를, “노비를 잡아 올 때 소인이 비록 어렸지만 아버지를 따라 함께 갔는데, 이는 정복량의 소행이 아니라 실은 사망한 아버지가 한 것입니다.”라고 했습니다. 또 말하기를, “사망한 아버지 처가妻家の 사내중이 댁의 사내중인 말질롱의 처安心的 아버지 언세彦世와 이름이 서로 비슷하여 착오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긴요하게 쓸 데가 있어서 서울 사람에게 팔았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구정이 또 말하기를, “여종 개질월리는 무자년(1648, 인조 26)에 저의 아버지가 팔았고, 여종 대례와 그 소생 인룡仁龍은 같은 해 저희 아버지가 사망한 후 제가 팔았습니다. 사내중 대근大斤은 정복량이 팔았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구정 부자父子가 이 노비들을 자기 노비로 알았다는 것은, 사내중 대근이를 정복량에게 일임하여 팔아먹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혀 그럴 리가 없습니다. 이는 필시 당초 구정 부자가 도매盜賣하려고 계획할 때 자신들을 드러내고 잡아간다면 저의 상전이 반드시 즉시 추변推下하여 일이 실패로 돌아갈 것이라 여겨 그 노비 중 1구를 정복량에게 떼어주고 복량으로 하여금 위 노비들을 전부 그의 노비라

고 칭하여 잡아오도록 한 것이 명백합니다.

그러므로 노비들의 어머니인 양녀良女 안심의 초사에, “이름과 얼굴을 알지 못하는 정복량이라는 사람이 저를 그의 여종이라고 하면서 밤을 틈타 쳐들어와 저의 소생들을 뜻하지 않게 겁박하여 빼앗아 잡아갔습니다.”라는 말과 안심의 후부後夫人 윤 연산택尹連山宅 사내종 성길成吉의 소지에 이른바 “정복량이 구승원과 반씩 나누어 주인이 되어 혹 사환하기도 하고 혹 팔아먹기도 했습니다.”라는 말은 모두 구승원에게 속은 것이고 지금까지도 구승원이 (그 일을) 주장했다는 것을 알지 못한 것입니다. 정복량은 다만 승원이 먹여주는 이익을 받아먹고 승원의 사냥개 역할만 한 것은 명백한 듯합니다.

위 구승원의 아들 구정이 이미 사실을 고하여 형조에 초사를 바친 후에, 위 여종 대례, 여종 개질월리 및 대례의 소생 인룡仁龍 등은 즉시 추심해 바쳤습니다. 그런데 사내종 대근大斤, 태근太斤 등 2구는 시종일관 정복량에게 미루어 팔아먹어 간 곳을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사연과 서산관의 입지를 아울러 세세히 살피신 후 위의 정복량을 잡아 와 당초 이 노비들을 무슨 연유로 겁박하여 빼앗아 구승원에게 잡아 주었으며, 그 가운데 사내종 대근과 태근 2구를 무슨 연유로 모점_{모점}했는지를 엄히 추문_{추문}해 초사를 받으십시오. 그 후 위 초사를 저의 원 소지에 점련_{점련}하여 제사를 내려주시어 훗날 상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내종 대근과 태근을 추심해 바치는 일에 관해서는 엄히 가두어 바치도록 독촉하고 압량위_{천壓}良爲賤의 죄와 다른 사람의 노비를 모점한 죄를 징계하여 국가의 정법_{정법}을 밝히도록 금천관에 각별히 처분하도록 행하_行하해 주십시오. 삼가 아뢰입니다.

관찰사 처분

순치_{順治} 17년(1660, 현종 원년) 4월 일 의송

楊州居尹叅議宅戶奴山福[左寸]

右謹陳爲白內等 矣上典宅瑞山居奴龍亦 良妻安心并產 一所生婢大禮年癸亥生 二所生奴大斤年乙丑生 三

所生婢介禮年己巳生 四所生婢龔月里年壬申生 五所生奴太斤年乙亥生等 五男女 率良遣 無弊服役爲白如

可 同龍身死後 龍妻安心亦 尹連山宅奴成吉稱名人 交嫁居生爲有如乎 其後安心言內前後不知 衿川居

鄭復良稱名人亦 女矣家良中 乘夜突入 女矣父正兵金彦世乙 其矣奴彦卜之所生是如稱云 而女矣本夫龍并產

婢大禮·奴大斤·婢龔月里·奴太斤等 四口乙 不意劫奪捉去是如爲有去乙 矣上典亦 聞來 極以爲怪爲乎矣 上典

方居海南 地遠千里 推辨未易勞不喻 家多事故 念不暇及 姑置度外爲白有如乎 到今乃送差

奴呈辨於瑞山官
爲乎矣 瑞山官主教是 各人等捧招 及戶籍謄本 及安心後夫成吉所納前呈立旨 并以 粘連題
給 而隻在官就下亦
爲有去乙 矣上典亦 方欲呈狀衿川 推問鄭復良爲白如可 更考成吉納官所志 則有鄭復良亦
具承元果 分半云云之
語爲有臥乎所 具承元段 矣上典外邊孽四寸 而今已身死爲白在果 具承元之孽子具楨方在京
中爲有去乙 卽日
招致問其緣由爲乎矣 具楨言內 奴婢捉來之時 小人雖年少 而隨父同行 此非鄭復良所爲實是
亡父所爲云云 又曰亡父
妻家奴 與宅奴歪龍妻安心之父彥世名字 相近 錯認爲此 而迫於要用 賣於京人云云爲白遣
具楨又曰 婢瓮月里段
戊子年間 矣父放賣 婢大禮及其所生仁龍段 同年矣父身死後 矣身放賣爲有在果 奴大斤段
鄭復良放賣
云云爲白臥乎所 具楨父子亦 右奴婢等乙 認爲己奴 則奴大斤耳亦 一任鄭復良賣食爲乎乙所
萬無其理 此必當初
具楨父子盜賣設計時 以爲自己顯然捉去 則矣上典必卽推下 事將立敗爲乎乙去向入 啗其奴
婢中一口於鄭復
良 使復良右奴婢等乙 全數稱以渠奴 而捉致明白爲白置 然則奴婢母良女安心招內 名面不知
鄭復良稱名人亦
女矣身乙 其矣婢子是如 乘夜突入 女矣所生等乙 不意劫奪捉去之說 及安心後夫尹連山奴成
吉所志所謂 鄭復
良亦 具承元果 分半作主 或以使喚 或以賣食之說 皆是被欺於具承元 至今不知具承元主張
而鄭復良只是喫
承元所啗之利 爲承元鷹犬之役而已也 似爲明白矣 然上項具承元之子具楨亦 既已首實 納招
於刑曹後 同婢
大禮婢瓮月里 及大禮所生仁龍等段 卽爲推納爲乎矣 奴大斤·太斤等二口段 終始推諉鄭復良
賣食 不知去
處是如爲白去乎 右良辭緣 及瑞山官立旨 并以 細細鑑當後 同鄭復良乙 捉來 當初右奴婢等
乙 某緣由以 劫奪捉
付於具承元處爲白乎旆 其中奴大斤·太斤二口乙 某緣由以 冒占爲有臥乎噓 嚴威推問捧招後
同招辭乙 矣
身元狀良中 粘連題給 以爲後考之地爲白乎旆 奴大斤·太斤推納間 嚴囚督納 以懲壓良爲賤

冒占他奴之罪以
明國家正法事乙 衿川官良中 各別行下爲白只爲
行下向教是事亦在 謹陳
觀察使道主 處分
順治十七年四月日 議送

4-2-5) 1661년 윤 참의댁 종 말질립이 병마절도사에게 올린 소지

[1661년(현종 2) 윤 참의댁 사내종 말질립이 병마절도사에게 상전댁 여종의 아들 의발이 주인을 배반할 계획으로 영속營屬 신성辛誠의 보인保人으로 모속했다며, 의발을 치죄하고 보인의 안에서 삭제한 후 입지를 발급해주시기를 청한 소지]

삼수군三水郡에 유배되어 있는 윤 참의댁 종 말질립謹立

이 소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의 상전댁 조상에게서 전해져 온 여종 말질선謹先의 첫 번째 소생 여종 성옥成玉이 영노營奴 자이自願와 혼인하여 낳은 두 번째 소생 사내종 의발義發이 주인을 배반할 계획을 세워 양역良役に 모속冒屬했으니, 일이 매우 놀랍습니다. 대개 위의 사내종 의발이 그 어머니의 동생同生인 저의 상전댁 여종 선옥善玉의 남편 영속營屬²¹ 신성辛誠과 몰래 모의하여 위 신성의 보인保人으로 모속했습니다.

자이와 신성 등에게 초사招辭를 받은 후, 위 의발을 법에 의해 죄를 주고 보인의 안案에서 삭제함으로써, 서울 사대부가의 먼 지방 노복이 몰래 주인을 배반하기를 피하여 양역良役に 함부로 투탁投託하는 폐단을 막아 일벌백계로 삼으소서. 그리고 입지立帖를 성급하여 훗날 상고할 수 있도록 행하行下해 주십시오.

병사또兵使道 처분

신축년(1661, 현종 2) 11월 일 소지

[제사] 사천私賤이 군보軍保로 모속했다는 말은 매우 놀랍다. 자이와 신성에게 초사를 받은 후에 위의 의발을 영안營案에서 삭제하고, 뒤에 다시 모반할 계획을 하더라도 상고하도록 하기 위해 입지를 성급하라. 14일.

21 영속(營屬) 조선시대 감영, 병영, 수영 등에 소속된 영리(營吏)나 영노(營奴) 등을 지칭함. 말질립이 병사(兵使)에게 소지를 올린 것으로 보아 신성은 병영에 소속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使[작서]

三水郡謫居尹叅議宅□□(奴恠)立
右所志段 矣上典宅祖上傳來婢恠 一所生婢成玉矣 營奴
自頤交嫁 二所生奴義發 叛主設計 冒屬良役 事極
駭愕 大槩上項奴義發亦 與其母同生矣上典宅婢
善玉之夫 營屬辛誠果 潛謀 同辛誠保人以 冒屬
爲有置 自頤辛誠等捧□(招)後 同義發依法科罪 削去
保人之案 以杜京洛士大夫家 遐方奴僕 潛謀叛主 冒
托良役之弊 懲一勵百爲乎旡 仍爲立志成給 以爲
後考之地爲只爲
行下向教是事
兵使道 處分
辛丑十一月 日 所志
[題辭] 私賤之冒屬軍保之說 極爲痛駭爲乎等以 自頤辛誠處 捧招後 同儀發 營案除減爲旡
後有更爲謀叛之計是良置 相考次以 立旨成給向事 十四日
使[着署]

4-2-6) 1661년 영노 자이의 초사

[1661년(현종 2) 윤 참의댁 호노의 소지에 의거한 병영의 추문에 대해 자이가 아들인 의발이 장성
하자 본부本府의 역을 면하게 하려고 영속營屬의 보인保人으로 입록하기를 꾀했다고 진술한 초사]

신축년(1661, 현종 2) 12월 14일 영노營奴 자이自頤 나이 45세.

아닙니다. “윤 참의댁尹叅議宅 호노 말질립恠이 올린 소지에 네가 위의 반비班婢 성옥成玉과 혼인
하여 낳은 두 번째 소생 사내중 의발儀發이 주인을 배반하려고 계획하여 양역良役に 모속冒屬해 영속
營屬 신성辛誠의 보인保人으로 정해졌다고 했다. 이에 대해 상세하게 바른대로 고하라.”라고 추고推考
하시기에 아됩니다.

저의 아들인 의발이 장성했기 때문에 본부本府의 역역을 면하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이
신성과 동서지간입니다. 그러므로 영속의 보인으로 입록入錄하고자 꾀한 것이 확실합니다. 상고하여
분간 시행해 주십시오.

아뢴.[작명]

사使[작서]

辛丑十二月十四日 營奴自願 年四十五

白等 尹叅議宅戶奴忝立呈狀內 汝

矣身亦 同班婢成玉交嫁二所生

奴儀發 叛主口(設)計 冒屬良役 營

屬辛誠保人 完定是如爲置 詳

細直告亦 推考教是臥乎在亦 奴

矣子儀發年壯乙仍于 欲免本府之

役勞不喻 矣身亦 是辛誠 同婿之分

故營屬保人圖謀入錄 的實爲白置

相考分揀施行教事

使[着署]

白[着名]

4-2-7) 1661년 영속營屬 신성의 초사

[1661년(현종 2) 병영에서 영속營屬 신성에게 윤 참의댁 사내중 의발을 보인으로 정한 근인을 추문 하자 의발이 부군府軍의 역을 면하려고 했고, 의발의 아버지 자이도 이를 원했기 때문이라는 등의 내용을 진술한 초사]

신축년(1661, 현종2) 12월 10일 영속營屬 신성辛誠 나이 45세.

아뢴니다. “네가 윤 참의댁尹參議宅 사내중 의발儀發을 보인保人으로 정했다고 하는데, 그 근인根因을 숨기지 말고 상세하게 바른대로 고하리”라고 추고推考하시기에 아뢴니다.

위의 의발은 저의 처妻의 …(원문 결락)… 뿐이고, 지난 여러해 동안 별다른 신공身貢을 보낸 일이 없었습니다. 그가 부군府軍의 역을 면하려고 했고, 그 아버지인 자이自願 또한 보인의 역에 속하기를 원했으므로 저는 그가 원하는 대로 따랐습니다. 저의 보인 假標가 오래되었는데, 이때에 이르러 윤 참의께서 삼수三水 유배지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러한 사연을 참의 영감께 고했습니다. 이후에는 위의 의발이 사천私賤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보인으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훗날 다시 보인인 것처럼 정하는 일이 있으면 저를 마땅히 추문하십시오.

아뢴.[작명]

사使[작서]

辛丑十二月十日 營屬辛誠 年四十五
白等 汝矣身 尹叅議宅奴儀發身 保
人完定是如爲乎所 根因隱諱除良
詳細直告亦 推考教是臥乎在亦 上項
儀發亦 矣妻□□而已 往積年至
別無身貢之舉 渠亦 欲免府軍
之役 厥父自願亦 願屬保人之役
是白去乙 矣身段 從其所願 矣保人
假標年久是白如乎 到此尹叅議
教是 三水謫所是白乎等以 矣身 以此緣
由 告于叅議令監前爲白有如乎 此後
同儀發 既知私賤是白乎等以 保人勿備
爲白去乎 日後 更有保人樣備責
之舉 則矣身當推教事
使[着署] 白[着名]

4-2-8) 1669년 윤 생원댁 사내종 정원이 순천도호부에 올린 소지

[1669년(현종 10) 윤 생원댁 사내종 정원이 순천도호부에 광양으로 도망간 노비의 추심을 청원한 소지]

해남海南 윤 생원尹生員²² 댁 사내종 정원正元[좌촌左寸]

이 삼가 소지를 올리는 매우 민망한 정유情由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의 상전댁의 숨어버린 노비 임명운林命云의 권속을 추심하는 일로 지난번에 소지와 발괄[白活]을 올리니, 관에서 패牌를 발급하여 저와 해당 면주인面主人이 함께 잡아오라고 분부하셨습니다.

22 윤 생원(尹生員) 윤인미(尹仁美, 1607~1674). 1630년(인조 8)에 생원시에 합격했고, 1662년(현종 3) 증광시에 합격했다.

이에 따라 그 때 면주인과 함께 상사면上沙面 구질거동峯巨洞에 가보니, 그 마을은 침수 호에 불과했는데, 그 중에 네다섯 집만 있었고, 그 나머지 예닐곱 집은 인가人家의 가계 형지形止만 있었으며, 사람들은 없이 모두 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웃 사람이 말하기를, “임명운의 아들 태우太佑 삼형제 등은 오래 전에 이미 광양光陽의 이른바 야을촌野乙村에 이주했는데, 이 부府와의 거리가 10여 리 떨어진 곳입니다”라고 했습니다. 과연 (이 말이) 진실인지, 혹은 누가 몰래 알려주어 기미를 알고 잠시 피한 것인지, 제가 다른 고을 사람이라 생소하고 이는 사람이 없어 헤아릴 수가 없었기에 빈손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다시 소지와 발괄을 올리고자 했지만 마침 관가宦家가 어수선하고 또, 해가 바뀌는 때여서 뜻대로 하지 못하고 부득이하게 물러나 지금까지 기다렸습니다.

먼 곳에서 가져온 식량으로 여러 사람들과 말들을 먹이기가 몹시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의 상전댁의 명백히 사소하지 않은 노비를 공공연하게 버려두는 것이 애석한데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명백한 노비와 주인 사이에 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배반을 피하고 항거하는 모습이 매우 통탄스럽습니다.

이에 감히 이렇게 밝은 정사로 법을 집행하시는 영감께 호소합니다. 바라건대 위의 연유를 세세히 살피신 후 엄하고 분명하게 패牌를 발급하시어 우선 저의 상전댁의 사내종 윤한경尹漢卿 및 비부婢夫 금위보인禁衛保人 박세민朴世民이 상사촌上沙村에 살고 있으니, 해당 면주인과 해당 리리의 이임里任이 함께 가서 잡아오게 한다면 일이 쉬울 것입니다. 윤한경은 태우 등에게 이성異姓 오촌숙이 되고 박세민은 또 태우 등에게 동성同姓 고모부가 되니, 두 놈을 한편으로 잡아 가두어 그 놈들로 하여금 광양의 사내종 태우, 태창太昌, 태원太遠 삼형제를 엄히 분부하여 잡아 보내도록 하면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그리하여 한경, 세민 등과 동시에 처결處決하면 일이 편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했는데도 태우 등이 곧 나타나지 않으면 바라건대 다시 광양현에 바로 이문移文하여 잡아오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밝게 정사를 펴시는 영감께서 한편으로는 상전을 배반하기를 피한 죄를 다스리고, 한편으로는 상전가의 일이 순리대로 귀결되도록 엄히 조사하여 행하行下하도록 행하해 주십시오.

순천 영감님 처분

기유년(1669, 현종 10) 정월 일 소지

[제사] 조사추문하여 처리하기 위해 패를 발급하여 잡아오라. 형방刑房, 12일.

사使[작성]

海南尹生員宅奴正元[左寸]

右謹陳所志悶迫情由段 矣上典宅隱匿奴婢林命云所屬推得

事 頃日良中 呈所志白活是乎則 自官發牌 而矣身及該面主人 眼同

捉來亦 分付教是乎等以 其時 與主人 偕往上沙面侏巨洞是乎則 厥村不過

十數戶內只存四五家 而其餘六七家段 但存人家計形止 而男女人丁則
 一空是白遣 其隣人曰 林命云子太佑三兄弟等 則久已移居于光陽所謂野乙
 村 距此府十餘里之地云云 果是的實是乎喻 或有誰漏通 知機姑避之
 事是乎喻 矣身 以他官生疎孤蹤 有所莫測 未免空還 而卽欲更呈所
 志及白活是乎乃 適值官家擾擾 且當歲換 不能任意 而不得已退待
 今日是乎則 遠地齎糧 累口人馬 糊口極難 券不喻 矣上典宅明白不些
 奴婢 公然棄置 不但可惜 以昭然奴主之間 自曾前至于今 謀反抗拒之狀 事極
 痛惋是乎所 敢此仰訴於明政執法之下爲白去乎 伏乞右良緣由乙
 細細叅商教是後 嚴明發牌 爲先矣宅奴尹漢卿 及婢夫禁衛保人
 朴世民等 方居在於上沙村是乎等以 該面主人 及該里里任 眼同捉致 則事
 當容易是白遣 尹漢卿於太佑等 爲異姓五寸叔 朴世民則又於太佑等 爲同姓
 姑母夫 則其兩漢一邊捉囚 而使厥漢等 光陽奴太佑·太昌·太遠三兄弟
 等 嚴銘分付 使之捉付 則事無不成之理 而與漢卿·世民等 同時處決 事
 涉便好是乎旣 如是而太佑等 趁不來現是白去等 更伏乞趁卽行移於
 光陽縣 以爲捉來 明政之下 一以治上典謀反之罪 而一以決歸順上典
 家之事 嚴查行下爲白只爲

行下向教是事

順天令監主 處分

己酉正月 日 所志

[題辭] 查問處置次 發牌推捉事 刑房 十二

使 [着署]

4-2-9) 신사년 사내종 소을복과 허질금의 초사

[신사년 사내종 소을복과 허질금이 여중 점덕을 꺾어서 도망하게 한 사실을 인정하고 훗날 점덕이 다시 주인을 배반하는 일이 있으면 자신들을 추문하시라는 내용의 초사]

신사년 5월 초3일, 사내종 소을복^{소을복} 나이 39세, 사내종 허질금^{許叱金} 나이 87세.
 아웁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사대부가에서 아무 탈 없이 사환^{使喚}하던 여중 점덕^{占德}을 꺾어내어
 숨어살게 한 사연을 바르게 고하라고 추문^{推問}하시기에 아웁니다.

사내종 소을복은 “(여중 점덕과) 부부 간에 정리^{情理}가 이와 같아서 거주하던 곳에 몰래 들어가 꺾

어 데리고 온 것이 확실합니다.”라고 했다.

사내중 허질금은 “위 여종 점덕을 그 남편 소을복이 꺾어 데리고 왔는데, 저의 집에 머물러 살고 있는 것이 탄로났으니 죄를 마땅히 달게 받을 것임을 자복[遲晚]합니다.”라고 했다.

상고하여 분간 시행하시되, 위의 여종 점덕이 훗날 또 도망하여 주인을 배반하는 폐단이 있으면, 저희들을 마땅히 추문 시행하십시오.

아뢴[좌촌]

아뢴[좌촌]

관[착서]

辛巳五月初三日 奴^ㄹ 卽卜年卅九 奴^{許叱金} 年八十七
白等 向矣等 士大夫家無弊使喚婢子 占德乙 招引至於隱接
辭緣直告亦 推問教是臥乎在亦 奴^ㄹ 卜是在如中
夫妻之間 情理如此 潛入所居處 招引率來的實
奴^{許叱金} 則同婢占德乙 其夫^ㄹ 亦 招引率來爲自有
去乙 奴^矣 家止接現露 罪當甘受遲晚爲白去
乎 相考分揀施行教矣 上項婢占德亦 日後又有逃
躲判²³ 主之弊 則奴^矣 徒等以 當推施行教事

官[着署]

白[左寸]

白[左寸]

4-2-10) 계사년 사내중 복지의 조사

[계사년 사내중 복지가 자신의 처 금생이 숙모에게 전해받은 자신 소유 여종이기 때문에 금생이 낳은 자식들이 아버지의 역에 따라 양인이 되어야 한다고 진술하고, 만약 주인을 배반한 것이라면 법에 의해 다스려달라고 한 조사]

계사년 4월 초10일, 사내중 복지^{福只} 나이 55세.

아뢰니다. 저의 처가 양인^{良人}인지 천인^{賤人}인지의 근인^{根因}을 숨기지 말고 사실대로 고하라고 추

23 ‘판(判)’은 ‘반(叛)’의 오기로 판단된다.

문推問하시기에 바르게 고하겠습니다.

저의 처 금생^{今生}은 본래 저의 아버지의 동복 누이인 양녀^{良女} 잉질개^{蔞介}의 여종으로, 잉질개가 자식이 없어서 저를 수양^{收養}했으며, (제가) 위 여종 금생과 혼인하여 같은 집에서 데리고 살았습니다.

위의 잉질개가 사망한 후에는 저를 잉질개의 수양자로 논한다고 해도 저의 처 금생은 제가 전해 받은 저의 여종이고, 자식이 없는 숙모²⁴의 여종으로 논한다고 해도 저의 처 금생은 제가 전해 받은 여종입니다. 이쪽으로 보나 저쪽으로 보나 금생은 똑같이 저의 여종입니다.

저의 처 금생이 낳은 소생 자식들은 속신^{贖身}하지 않고 종량하는 법에 따라 법에 마땅히 아버지의 역을 따라야 합니다. 만일 제멋대로 (주인을) 배반한 폐단이 있다면 법에 의해 잡아 가두어 그 악을 징계하십시오.

아림[좌촌]

관[작성]

癸巳四月初十日 奴福只 年

五十五

白等 奴矣妻良賤根因 隱諱

除良 從實現告亦 推問教是

臥乎在亦 直爲所如中 奴矣妻今

生亦 本以 矣父之同胎妹 良女蔞介

之婢子以 蔞介亦 無子息爲乎等以

矣身乙 收養爲乎旡 右婢今生交

嫁 同家率居爲白有齊 同蔞介身

死之後以 矣身爲蔞介收養

子論之 則矣妻今生 亦矣身□(傳)

得自己婢子是白置 以無後叔□(母)婢

子論之 則矣妻今生 亦爲矣身傳

得之婢子是白去等 以此以彼 今生均

是矣身婢子是白置 矣妻今生所

生子枝等亦 無贖身從良法以

24 현재 '숙모'는 작은 어머니, 즉, 작은 아버지의 처를 의미하지만 조선 전기에는 고모나 이모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중서, 「14~16세기 韓國의 親族用語와 일상 親族關係」,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박사학위 논문, 2003, 20~21쪽) 이 문서에서 '숙모'는 고모를 지칭한다.

法當從父役爲乎矣 萬一橫
叛之弊有去等 依法捉囚 以
懲其惡教事
官[着署] 白[左寸]

4-2-11) 병자년 윤 내금위를 보낼 때 써 준 불망기^{不忘記}

[병자년에 윤 내금위를 보내면서 노비 화명^{花名}과 함께 도망한 노비들을 추심하는 문제, 노비들에 게 공선^{眞膳}을 받는 문제 등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노비들의 관리 지침을 써 준 불망기^{不忘記}]

병자년 윤 내금^{尹內禁}을 보낼 때 써 준 불망기.

사망한 사내중 억산^{億山}이 양처^{良妻}와 낳은 첫 번째 소생 여중 억화^{億花}: 억대^{億代}로 이름을 고침. 나이 병인년생. 거주지는 …(원문 결락)… 수철점^{水鐵店}²⁵. 남편은 수철장^{水鐵匠}²⁶ 거동^{巨同}. …(원문 결락)… 전처^{前妻}의 아들 이춘복^{李春卜}·이춘^{李春} …(원문 결락)… 초사를 받아 보수^{保授}²⁷한 사람이 3명인데, 모두 수철장이라고 함. 이 아래로는 을해^{乙亥}년에 …(원문 결락)…

위 여중 억대^{億代}가 전 남편 일봉^{一奉}과 낳은 여중 구화^{九花}: 나이 기축년생. 억대와 같은 리^里에 거주하는 본점 호수^{戶首} 송일남^{宋日男} …(원문 결락)… 의 일족으로 가까운 이웃 박세생^{朴世生}에게 초사를 받아 보수^{保授}하게 함. 일남은 나이 49세, 박세생은 나이 39세임. …(원문 결락)…

위 여중 구화^{九花}의 첫 번째 소생 여중 사월^{四月}: 나이 기미년생. 잡아 와 사환했는데, 병자년 봄에 그 아버지 송일남이 피어 도망감.

(여중 구화의) 두 번째 소생 여중 득춘^{得春}: 나이 신유년생. 사망했다고 함. 다시 추문해야 함.

(여중 구화의) 세 번째 소생 사내중 갑생^{甲生}: 나이 갑자년생. 잡아 와 사환했는데, 병자년 봄에 그 아버지 송일남이 피어 도망감.

(여중 구화의) 네 번째 소생 사내중 병인^{丙寅}: 나이 병인년생.

(여중 구화의) 다섯 번째 소생 여중 옥이^{玉伊}: 나이 무진년생. 억룡^{億龍}으로 노비 명단^[花名]에 있는데, 일남이 죽었다고 함.

25 수철점^(水鐵店) 무쇠로 연장, 철기구 등을 제작하던 곳.

26 수철장^(水鐵匠) 무쇠로 연장, 철기구 등을 제작하던 장인.

27 보수^(保授) 보방^(保放)된 죄인이나 도피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 등을 지정된 사람이 책임지고 맡는 것. ‘보수’를 책임진 사람을 ‘보수주인^(保授主人)’이라고 한다.

(여중 구화의) 여섯 번째 소생 여중 일품一品: 나이 계유년생.

(여중 구화의) 일곱 번째 소생 여중 막덕莫德: 나이 갑술년생.

(여중 구화의) 여덟 번째 소생: 나이 을해년생.

사내중 억산億山の 두 번째 소생 사내중 억룡億龍: 나이 갑신년생. 고성固城 고곡촌古谷村에 거주. 전 처 김지檢之는 다른 사람의 여중이라고 함. …(원문 결락)… 홍해洪海는 주색朱色…(원문 결락)… 에 거주.

사내중 억룡이 전처 김지와 낳은 첫 번째 소생 사내중 덕남德男: 나이 갑진년생.

(사내중 억룡이 전처 김지와 낳은) 두 번째 소생 사내중 덕립德立: 나이 무신년생.

사내중 억룡이 후처 양녀양녀 良女 말질서비西非와 낳은 첫 번째 소생 여중 연생延生: 나이 정사년생.

(사내중 억룡이 후처 양녀 말질서비와 낳은) 두 번째 소생 사내중 연립延立: 나이 경신년생. 사망했다고 함. 다시 추문해야 함.

(사내중 억룡이 후처 양녀 말질서비와 낳은) 세 번째 소생: 사망했다고 함. } 모두 다시 추문해야 함.
(사내중 억룡이 후처 양녀 말질서비와 낳은) 네 번째 소생: 사망했다고 함.

(사내중 억룡이 후처 양녀 말질서비와 낳은) 다섯 번째 소생 여중 연화延花: 나이 병인년생.

(사내중 억룡이 후처 양녀 말질서비와 낳은) 여섯 번째 소생 여중 영화永花: 나이 기사년생.

(사내중 억룡이 후처 양녀 말질서비와 낳은) 일곱 번째 소생 여중 말개말개 末介: 나이 신미년생.

사내중 억산億山の 세 번째 소생 여중 금개금개 金介: 나이 정해년생. 고성 고곡(고실)촌에 거주. 하득연 河得淵 집에 삶. …(원문 결락)… 첫 번째 남편은 해남海南 대문대문 大文이고, 현재 남편은 홍막동洪莫洞임.

여중 금개금개의 첫 번째 소생 여중 대생대생 大生: 나이 무신년생. 남편은 고성固城 하리下里에 사는 사노私奴 …(원문 결락)… 나이 31세. 아울러 초사를 받음.

세 번째 소생 여중 목은매목은매 目隱梅: 나이 갑술년생.

여중 금개금개의 두 번째 소생 여중 옥상옥상 玉祥: 나이 임자년생. 순천順天 마을산馬乙山에 거주. 성 병사成兵使의 농소에 삶. …(원문 결락)…

여중 옥상의 첫 번째 소생 사내중 언생언생 彦生: 나이 신미년생. 봉춘에게 물으니 옥상에게 아들 셋이 있다고 함.

여중 금개의 세 번째 소생 사내중 상립상립 祥立: 나이 을묘년생, 고성固城 광내廣內에 사는 유학幼學 허국지許國祇의 호노戶奴 성매성매 成每 …(원문 결락)…

(여중 금개의) 네 번째 소생 사내중 상남상남 祥男: 나이 무오년생.

(여중 금개의) 다섯 번째 소생 사내중 상득상득 祥得: 나이 임술년생. 지금 사환使喚 중.

(여중 금개의) 여섯 번째 소생 여중 말질매말질매 末每: 나이 신미년생. 아버지는 홍막동洪莫洞임.

사내중 억산의 네 번째 소생 여중 은개은개 銀介: 나이 경인년생. 사망했다고 하니, 다시 추문해야 함. 남편은 소목장小木匠²⁸ 배억룡裴億龍. …(원문 결락)…에 사는 정한걸鄭漢傑(나이 54세)의 집에 삶. 초사

를 받음. …(원문 결락)…

여중 은개銀介의 첫 번째 소생 사내중 득생得生: 나이 무신년생. 나주羅州 비슬도非瑟島에 거주. 그의 처는 사세士世의 딸이다. 사세 …(원문 결락)… 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의 집 옆이라고 한다.

(여중 은개의) 두 번째 소생 여중 봉춘奉春: 나이 신해년생. 고성固城 상리고곡上里古谷에 거주. 남편 은 박돌이朴堧伊임. …(원문 결락)…에 삶.

(여중 은개의) 세 번째 소생 여중 순금順今: 나이 병진년생. 남편은 전득남全得男이고, 나이는 28세 임. 삼천진三千鎭 김암檢岩에 거주. …(원문 결락)…에 삶. 이 2구는 지난해 성산星山에 있을 때 잡아 왔는데, 다시 도망함. 그 남편과 살던 집의 주인 등의 다짐 …(원문 결락)….

(여중 은개의) 네 번째 소생 사내중 백립白立: 나이 무오년생. 사망했다고 하니, 다시 추문해야 함.

(여중 은개의) 다섯 번째 소생 사내중 월명月明: 나이 임술년생. 이 아래로는 배억룡裵億龍의 소생 임.

(여중 은개의) 여섯 번째 소생 사내중 명월明月: 나이 갑자년생.

(여중 은개의) 일곱 번째 소생 사내중 천월天月: 나이 정묘년생.

(여중 은개의) 여덟 번째 소생 여중 일월日月: 나이 기사년생.

사내중 봉춘奉春의 첫 번째 소생 사내중 업생業生: 나이 임신년생.

여중 순금順今의 첫 번째 소생 여중 덕춘德春: 나이 임신년생. 덕춘은 혹 득례得禮라고도 하는데, 아마도 2구인 듯하니 다시 추문해야 함.

사내중 억산億山의 다섯 번째 소생 사내중 …(원문 결락)… 창원昌原 남면南面 독곡獨谷에 거주한다고 함.

…(원문 결락)… 여중 분이分伊: 나이 기사己巳년생. 소생이 필시 이에 그치지 않을 것이니, 다시 화명花名을 받아야 함.

사내중 억산億山의 여섯 번째 소생 여중 막덕莫德: 강진康津 백도白道에 사는데, 올해 여름 송일남 등이 피어 도망감. …(원문 결락)…

(사내중 억산의) 일곱 번째 소생 사내중 화복花卜: 나이 을사년생.

사내중 화복의 첫 번째 소생 사내중 민이敏伊: 나이 신미년생.

(사내중 화복의) 두번째 소생 사내중 민상敏祥: 나이 갑술년생.

일. 이 노비들은 본래 영암靈岩에 살면서 복역服役했는데, 그 뒤에 도망하여 나주羅州에서 살았다. 또 추심하여 잡아들여 복역했는데, 거슬러 7~8년 사이에 나주에서 고성固城으로 도망하여 이주했

28 소목장(小木匠) 나무로 가구, 목기 등을 제작하던 장인.

다. 대개 그 이유가 그 중 여종 역대^代가 본래 고성에서 살았기 때문이다. 작년 5월에 성산^山에 있을 때에 모두 잡아들여 화명을 받고 신공을 받았다.

일. 위 노비 중 권점^{圈點}을 친 자는 올해년과 병자년 두 해의 신공으로 받을 목면이 합하여 일인당 4필씩이며, 선물^{贈物}인 참깨는 일인당 2말씩 받아올 것.

일. 위 노비들은 완악하고 간사함이 습관이 되어서 잠깐 굶혔다가 조금 후엔 배반하니 그 중에 혹 숨어서 나타나지 않는 자가 있으면 곧 각각 그 보수^{保授}의 다짐^[拷音]을 상고하여 엄히 가두어 무겁게 장을 쳐 기어이 추심해 낼 것.

일. 다짐 13장을 동봉해서 보내니 자세히 상고한 후에 다시 봉하여 가지고 올 것.

일. 여종 구화^{九花}의 첫 번째 소생 여종 사월^{四月}과 세 번째 소생 사내^內중 갑생^{甲生} 2구는 잡아 와서 부렸는데, 금년 봄에 그 아버지 송일남^{宋日男}이 유인하여 도망했으니 매우 악하다. 그 어머니 여종 구화를 가추^{枷杻}²⁹를 무겁게 채워 단단히 가두어 그 아버지 송일남이 주인 집에 도망한 노비를 데리고 나타나게 하여 이익을 받아 바친 후에 보수^{保授}하여 놓아줄 것.

일. 위의 노비 중에 나이가 어려 아직 시집가고 장가가지 않은 자 중에서 사람됨이 또한 부리기에 적합한 자 약간 명을 잡아오되, 잡혀 온 자들은 수익을 바칠 때까지 그 부모, 형제 중에 한 사람을 엄히 가둘 것.

일. 이상 기록한 노비 명단^[花名]은 모두 그들의 말에 따라 기록한 것이어서 그 사이 필시 누락되고 빠진 것이 많을 것이다. 또한 그 사망했다고 하는 자도 필시 거짓으로 말한 것이 많을 것이니, 엄하게 형장을 가하고 힐문하여 하나하나 찾아내어 얼굴을 보고 다시 화명을 기록할 것.

일. 다른 도, 다른 고을에 산다고 일컫는 자는 그 부모, 형제, 가까운 친족 등에게 공선^{貢膳}을 갖추어 바치게 할 것.

일. 여종 봉지^{奉之} 무술^{武術}생은 고성^{固城} 널오지에 살며, 남편은 석장^{錫匠} 명득^{命得}으로 …(원문 결락)… 득남^{得男} …(원문 결락)…

위의 여종 봉지의 첫 번째 소생 사내^內중 몽립^{夢立} 나이 갑자년생

〈두 번째 소생 사내^內중 명생^{命生} 나이 9세〉

두 번째 소생 사내^內중 명일^{命一} 나이 경오년생.

세 번째 소생 여종 명금^{命今} 나이 갑술년생.

위 여종 봉지는 전부터 믿고 따랐으나 그 소생들도 필시 …(원문 결락)… 잡아와서 얼굴을 보고 화

29 가추^(枷杻) 조선시대에 사용하던 형구^(刑具). ‘가^(枷)’는 죄인의 목에 채우는 나무로 만든 형구이고, ‘추^(杻)’는 손목에 채우는 나무로 된 형구이다.

명을 작성하여 공선은 예전처럼 받고 …(원문 결락)…

일. …(원문 결락)… 부가된 공선眞膳을 기록하여 보내고 각각 그 처와 혹 …(원문 결락)… 수익을 다시 바칠 때까지 붙잡아 가둘 것.

병자년 12월 일 노비 등

- 사내중 억룡億龍 공선眞膳: 목면 2필
- 사내중 상립詳立 공선眞膳: 목면 4필, 개 1말
- 사내중 화복花卜 공선眞膳: 목면 2필, 개 1말
- 사내중 상남詳男 공선眞膳: 목면 3필, 개 1말
- 여중 연생連生 공선眞膳: 목면 2필, 개 1말
- 여중 봉춘奉春 공선眞膳: 목면 2필, 개 1말
- 여중 순금順今 공선眞膳: 목면 2필, 개 1말
- 여중 대생大生 공선眞膳: 목면 2필, 개 1말
- 사내중 억생億生 공선眞膳: 목면 1필, 개 1말
- 여중 구仇 …(원문 결락)…
- 여중 …(원문 결락)…

丙子年 送尹內禁時 不忘記

故奴億山良妻并産 一生婢億花 變名億代 年丙寅 居□…□
 水鐵店 夫水鐵匠巨同□ 前妻子李春卜·李春□…□
 捧招保授三名 并水鐵匠云 此以下 乙亥年 在□…□
 同婢億代前夫一奉并産婢九花 年己丑 與億代同里居 本店戶首宋日男□…□
 之一族 切隣朴世生 捧招保授 日男 年四十九 世生 年三十九□…□
 同婢九花一生婢四月 年己未 捉來使喚 丙子春 其父宋日男 招引逃去
 二生婢得春 年辛酉 稱故 更問次
 三生奴甲生 年甲子 捉來使喚 丙子春 其父宋日男 招引逃去
 四生奴丙寅 年丙寅
 五生婢玉伊 年戊辰 億龍花名 而日男稱故
 六生婢一品 年癸酉
 七生婢莫德 年甲戌

八生 年乙亥

奴億山二生奴億龍 年甲申 居固城古谷村 前妻檢之他婢稱云 □…□ 洪海居朱色之□…□

奴億龍前妻檢之并産 一生奴德男 年甲辰

二生奴德立 年戊申

奴億龍後妻良女歪西非并産 一生婢延生 年丁巳

二生奴 延立 年庚申 稱故 更問次

三生奴 稱故 } 并更問次

四生奴 稱故 }

五生婢延花 年丙寅

六生婢永花 年己巳

七生婢歪介 年辛未

奴億山三生婢今介 年丁亥 居固城古谷(고실)村 許接河得淵 年□…□ 初夫海南大文 時夫洪莫同

婢今介一生婢大生 年戊申 夫固城下里居私奴□…□年卅一 并捧招

□…□

三生婢目隱梅 年甲戌

婢今介二生婢玉祥 年壬子 居順天馬乙山 許接成兵使農所□…□

婢玉祥一生奴彦生 年辛未 問于奉春 則玉祥有三子云

婢今介三生奴祥立 年乙卯 固城廣內居 幼學許國祇戶奴成每□…□

四生奴祥男 年戊午

五生奴祥得 年壬戌 時方使喚

六生婢歪每 年辛未 父洪莫同

奴億山四生婢銀介 年庚寅 稱故 更問次 夫小木匠裴億龍 許接上□…□鄭漢傑 年五十四 捧招□…□

□□(婢銀)介一生奴得生 年戊申 居羅州非瑟島 其妻士世女子 士世□…□稱名人家傍云

二生婢奉春 年辛亥 居固城上里古谷 夫朴芻伊 許接□…□

三生婢順今 年丙辰 夫全得男 年廿八 居三千鎮檢岩 許接同□…□ 右兩口 上年在星山時 捉來還逃 其夫及許接等俦□…□

四生奴白立 年戊午 稱故 更問次

五生奴月明 年壬戌 此以下 裴億龍所生

六生奴明月 年甲子

七生奴天月 年丁卯

八生婢日月 年己巳

奴奉春一生奴業生 年壬申

婢順今一生婢德春 年壬申 德春或云得禮 似是二口 更問次

奴億山五生奴□…□也 居昌原南面獨谷云

□…□婢分伊 年己巳 所生必不止此 更花次

奴億山六生婢莫德 居康津白道 而今年夏 宋日男等 招引逃□…□

七生奴花卜 年乙巳

□□(奴花)卜一生奴敏伊 年辛未

二生奴敏祥 年甲戌

一 右奴婢等 本居靈岩服役 其後逃居羅州 又爲推得

服役 退計七八年間 自羅州逃移固城 盖緣其中婢億

代 本居固城故也 上年五月在星山時 并推得花名 捧貢矣

一 右奴婢中圈點者 乙亥丙子兩年貢木 合每名四疋式 膳

物眞荏子 每名二斗式 捧來事

一 右奴婢等 頑詐成習 乍降乍叛 其中或有隱匿不現者

則各其保授 拷音相考 嚴囚重杖 期於推出事

一 拷音十三丈同封送去 相考後還封持來事

一 婢九花一生婢四月·三生奴甲生兩口 則捉來使喚 而今年春間

其父宋日男招引逃亡 極可痛惡 其母婢九花 重枷杻堅囚

令其父宋日男率現主家 受益上納後 保放事

一 右奴婢中 年少未嫁娶 爲人且合使喚者 若干口捉來而

捉來者 則限受益上納間 嚴囚其父母兄弟中一人事

一 已上所錄花名 皆因渠等之言 而爲之其間 必多落漏 且

其稱故者 必多詐僞之言 嚴刑詰問 一一推出 見面更爲花

名事

一 居在他道他官稱云者 并令其父母兄弟切族等 備納貢

膳事

一 婢奉之年戊戌 居固城널오지 夫錫匠命得生或□□得男

同婢奉之一生奴夢立年甲子

<二所生奴命生 年九>³⁰

二生奴命一 年庚午

三生婢命今 年甲戌

右婢奉之 則從前信服 而其所生必□…□
 捉來 見面花名 而貢膳 則一樣收捧 □…□
 一 □…□名負貢膳以送 而各其妻 或□…□
 弟中 限受益還納間 拘囚事

丙子十二月日 奴婢等 婢仇□…□
 奴億龍貢 木二疋 婢□…□
 奴詳立貢 木四疋 任子一斗
 奴花卜貢 木二疋 任子一斗
 奴詳男貢 木三疋 任子一斗
 婢連生貢 木二疋 任子一斗
 婢奉春貢 木二疋 任子一斗
 婢順今貢 木二疋 任子一斗
 婢大生貢 木二疋 任子一斗
 奴億生貢 木一疋

3. 노비의 처지

4-3-1) 1645년 상전이 사내종 춘매에게 내린 배지

[1645년(인조 23) 정월 24일에 상전이 종 춘매에게 자신의 논밭을 팔아올 것을 지시하며 내린 배지牌旨]

종 춘매春每에게 준다.

다름이 아니라 긴히 사용할 곳이 있어 백야지白也只 채자菜字 논 5두락지와 채자 밭 태太 5두락지 등을 속히 팔되 값에 준하여 상납하여라.

30 < >안의 내용은 행과 행 사이에 끼워 넣은 내용이다.

을유년(1645, 인조 23)³¹ 정월 24일
상전[작서]

奴春每付
無他 切有用處爲去乎 白也
只菜畚五斗落只 同字田
太五斗落只庫等乙 斯速
放賣爲乎矣 準價上納事
乙正月二十四日
上典[着署]

4-3-2) 1659년 상전 박씨가 여중 덕화에게 내린 배지

[1659년(효종 10) 12월 1일, 상전 박씨가 자신의 여중 덕화에게 덕화의 전답 방매를 허락한 배지
牌旨]

여중 덕화(德花)에게,
다름이 아니라 네가 늙고 병이 깊을 뿐 아니라 흉년이 들어 끼니 잇기가 어렵다 하니, 네가 원하는
것이 염려된다. 너의 눈을 팔아 먹도록 하라.

기해년(1659, 효종 10)³² 12월 1일
상전 박씨[작서]

婢德花
無他 汝亦 年老病深 勞不喻 年
凶口腹難繼 是如 汝矣所願可

31 이 문서에는 작성 연도가 '을(乙)'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지만 이 집안에 1645년(인조 24) 정월 24일 춘매가 이 배지에서 지정한 상전덕 눈을 승려인 학선에게 판 토지매매문기가 남아있어 을유년, 즉 1645년에 작성된 문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32 이 문서에는 문서 작성 연도가 '기해(己亥)'라고만 기재되어 있지만 이 집안에 1659년 덕화가 윤 별좌택 노 애순에게 논 3두락지를 판 토지매매문기가 남아있어 문서 작성 연도가 1659년(효종 10)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慮是置 汝矣畚庫 放食向事

己亥十二月初一日

上典 朴[着署]

4-3-3) 1659년 상전 박씨가 여중 막금에게 내린 배지

[1659년(효종 10) 11월 20일에 상전 박씨가 여중 막금에게 자신이 허급해 준 전답을 팔아 막금과 가족의 기아를 해결하도록 지시하며 내린 배지牌牒]

여중 막금莫今에게 준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흉년을 당하여 네가 많은 자녀들을 거느리고 있어 굶어 죽을 것이 분명하니 보기에 참혹한데 구제할 방법이 전혀 없다. 갑술년(1634)에 양전量田할 때 박씨가 정자[朴亭子] 아래 묵은 논 3두락지가 계묘년(1603) 양안量案에 주인이 없어 상전이 덕화德花의 명의로 기록해 두었다. 그 후 너희들에게 이미 허급許給하여 갈아먹게 했으니 임의대로 팔아 굶어죽을 근심에서 빨리 벗어나도록 하라.

기해년(1659, 효종 10) 11월 20일

상전 박朴[작성]

婢莫今付

無他 當此凶年 汝亦 多率子女等 飢

死丁寧 所見慘矣 萬無救治是置

甲戌量田時 朴亭子下陳畚三斗落

只庫 癸卯量案無主是去乙 上典

德花名字置付後 汝矣等處 已爲

許給畊食是在 任意放賣 救急

於飢死之患向事

己亥十一月二十日

上典 朴[着署]

4-3-4) 1659년 상전이 종 시민에게 내린 배지

[1659년(효종 10) 12월 24일에 상전이 사내종 시민에게 사망한 종 박무금이 기상記上한 밭을 팔아 값을 받아오도록 지시하며 내린 배지牌旨]

종 시민時民에게 준다.

다름이 아니라 너는 상전택의 사망한 사내종 박무금朴武金이 기상記上³³한 현산면 당산堂山에 있는 내지奈字 밭 13복을 영구히 팔아 일일이 값에 준하여 받되, 속이거나 숨기지 말아 중죄를 면하도록 하라.

상전[着署]

순치順治 16년(1659, 효종10) 12월 24일

奴時民付

無他 汝亦 上典宅故奴朴武

金記上是在 縣山堂山伏 奈

字田拾參卜庫乙 永爲放

賣 一一準價 捧上爲乎矣

勿爲欺隱 俾免重罪向

事

上典[着署]

順治十六年十二月二十四日

4-3-5) 1707년 상전 송씨가 노 구질금에게 내린 배지

[1707년(숙종 33) 11월 27일에 상전 송씨가 사내종 구질금에게 논의 방매를 위임하면서 내린 배지牌旨]

33 기상(記上) 사천(私賤)이나 공천(公賤)이 자신의 재산을 상전이나 소속 관청에 바치거나 자식이 없는 노비의 재산을 상전이나 소속 관청에서 차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경국대전』에는 “공천으로 자녀가 없이 사망한 자의 노비와 전택(田宅)은 본사(本司)나 본읍(本邑)에 속하게 하고, 사천의 경우에는 모두 그 재산을 본주(本主)가 구처(區處)하도록 허락한다.”라고 하여 자식 없이 사망한 노비 재산 기상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차노差奴 구질금侁金에게

다름이 아니라 상전택 노비가 해남海南 화산면花山面 안정포安正浦에 사는데, 사내중 무금武金과 사내중 하일河日 등이 후손이 없이 사망한 후 그의 전답을 일찍이 순치 17년 경자년(1660, 현종 원년)에 법에 의거하여 기상記上했다.

그런데 이번에 상전이 와서 기상 문서를 증거로 삼아 그 전답을 추심하니, 그 중에 화산 판교원板橋員에 있는 약자若字 논 고종古種 4두락지 2작 13복 1속과 같은 곳에 있는 언자言字 논 고종古種 1두락지 4복 2속과 같은 곳에 있는 정자定字 논 고종古種 4두락지 2작 23복 4속을 현縣에 사는 고故 윤 니산尹尼山택에서 샀다고 한다. 그러므로 그 수노首奴 충경忠敬을 불러 물어보니, 그의 젊은 상전 윤 진사택이 서울로 이주하여 오래된 문서를 찾기가 어렵다고 했다. 이는 필시 무금과 하일 등의 아우나 조카 배들이 마음대로 팔아먹은 것이다.

서로 이는 사대부 사이에 소송을 일으킬 수는 없으므로 여러 사람의 의논에 따라 좋은 모양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위 윤 진사택 사내중 충경에게 정조正祖 모두 13석을 받고 위의 세 곳 논을 영구히 파니 너는 이 배지에 의거하여 문서를 작성하여 주어라.

정해년(1707, 숙종 33)³⁴ 11월 27일

상전 송宋[着署]

差奴侁金處

無他 上典宅奴婢 在於海南花山面安正浦居生 而奴武金·奴河日等 無後身死之後 其矣田畝乙 曾於順治十七年庚子年分 依法記上是如乎 今此上典之來 憑考記上文書 推尋其田畝 則其中花山板橋員伏在 若字畝古種四斗落只二作十三卜一束庫 及伏在 言字畝古種一斗落只四卜二束庫 及伏在 定字畝古種四斗落只二作二十三卜四束庫乙 縣居故尹尼山宅亦 買得是乎等以 招問其首奴忠敬 則其矣少上 上典尹進士宅亦 移居于京中 故舊遠文書乙 難以搜覓云云是乎所 必是武金·河日等弟姪輩 私自賣食是乎矣 相知士夫間 未可起訟仍于 從衆議

34 이 집안에 남아있는 1707년(숙종 33) 11월 27일 차노 구질금이 윤 진사택 노 충경에게 작성해 준 매매 문기는 이 배지에 의거하여 작성한 것이다. 이 배지에 문서 작성 연도는 '정해(丁亥)'라고만 기재되어 있지만 위 매매 문기의 내용을 고려하면 이 배지의 작성 연도는 1707년임을 알 수 있다.

好兼處置 同尹進士宅奴忠敬處 正租全十三石 捧
上爲遣 上項三庫畝乙 永爲許賣爲去乎 汝亦 據
此牌 成文以給向事
丁亥十一月二十七日
上典 宋[着署]

제5장

연해전沿海田

개발과

도서島嶼 지배

해설

자료

1. 입지실태, 입안立案과 연해전沿海田 개발
2. 개간지 소유권 쟁송
3. 맹골도 지배

본 장에서는 해남윤씨 일가의 연해전 개발과 도서島嶼 지배에 관한 자료를 수록하였다. 해남윤씨는 조선초기에 해남정씨를 취향贅鄕으로 하여 입향하고 부를 물려 받은 이후 대대로 연해 지역의 개발을 통하여 지배력을 확대해나갔다. 그 방법은 연해 무주지의 절수 입안, 입지를 통한 토지 소유권의 확립이었다. 해남윤씨가에는 이러한 과정을 보여주는 입지, 입안 문서들이 다수 남아있다. 또한 연해 도서島嶼 지역에 대한 지배 문서도 많이 남아있는데, 특히 멀리 맹골도에 대한 지배와 세공의 징수 과정에서 도서민들과의 갈등, 보호를 보여주는 문서가 다수 남아있다.

1절에서는 입지, 입안을 통한 연해전 개발과 토지소유권의 확인에 관한 자료들이다. 잘 알다시피 토지소유권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관의 입안을 받는 절차가 필요하다. 이것은 토지를 매매하는 과정에서도 필요한 일이지만, 무주지를 절수 받아 개간을 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입안의 간략한 형태가 입지이다. 해남윤씨가에는 절수 입안, 서실鬮失 입안, 입지 등이 다수 남아있다. 토지 소유권과 관련된 입지, 입안들을 모아 정리한 것이 이 절의 자료들이다.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1620년 사노 몽남 소지’(1번 문서)는 1620년에 화산에 사는 사노 몽남이 현산면 삼막동의 주인 없는 진황지에 대해 입안을 신청하는 소지이다. 사노 몽남이 자신이 직접 진황지를 개발하려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소지 문서가 해남윤씨가에 들어와 있는 것으로 보아 이 토지는 해남윤씨의 소유가 되었다고 해도 될 것이다. 다음 ‘1625년 윤선도 호노 충순 의송’(2번 문서)은 1625년에 윤선도의 호노 충순이 상전을 대신하여 해택海澤에 독을 쌓아 수세할 것에 대한 입안을 신청하는 의송이다. 따라서 이것은 윤선도가 직접 해택을 개간하는 목적에서 입안을 신청하였다고 할 수 있다. 대개 입안은 현지의 수령에게 받아야 하는데, 관찰사에게 입안을 신청하는 의송을 올렸다는 것이 특이하다고 할 수 있다. ‘1647년 해남현 입안’(3번 문서)도 윤선도가 연해전을 개발하기 위해서 받은 입안이다. 즉 1647년에 전 성산 현감 윤선도의 호노 춘립이 화산 연해의 바닷물이 드나드는 땅에 제방을 쌓은 토지를 입안해달라고 해남현에 소지를 올린 것이고, 이에 해남현에서 이를 허락한 것이다. ‘1650년 윤 성산덕 호노 춘립 소지’(4번 문서)도 역시 윤선도가 1650년에 해택海澤에 대한 입지를 신청하는 소지이다.

‘1689년 윤 좌랑덕 사내중 용이의 소지’는 윤이석尹爾錫의 사내중 용이龍伊가 해남 화산 이도면 죽도원의 무주지를 개간하기 위해 주인 유무를 조사 후 입안을 발급해 달라고 청원하는 소지이고 조사, 입안이 이어지는 문서이다. ‘1711년 해남현 현산면 풍헌장의 첩정’도 윤 진사尹進士의 종 필신必信이 개

간을 위한 입안 발급을 요청함에 따라 현산면 縣山面 풍헌장 風憲長이 관련자들과 함께 해당 토지의 주인 유무를 조사하여 보고한 첩정 牒呈인데 입안 발급을 위한 문서 행위들이 점련된 것이다. ‘1715년 윤진사택 중 청일 소지’ 2건은 윤진사택 사내중 청일이 상전을 대신하여 개간 예정지인 녹산면 접산강 일대의 토지에 대한 입지를 신청하는 소지와 현산면 백야지 토지에 대한 입안을 분실하였으므로 이에 대해 입지를 해줄 것을 신청하는 소지이다.

‘1676년 사노 이인 소지’(5번 문서)는 사노 이인이 상전을 대신하여 불에 탄 현산면 백야지 문기에 대한 입지를 신청하는 소지이고, ‘1677년 윤생원택 중 사만 소지’(6번 문서)는 윤생원택 사내중 사만이 상전택의 분실한 음죽관의 문기에 대해 입지를 신청하는 소지이다. ‘1685년 윤니산택 중 수복 소지’(7번 문서)는 윤니산택 사내중 수복이 상전을 대신하여 불에 탄 문기에 대한 입지를 신청하는 소지이다. ‘1687년 윤니산택 중 수복 소지’(8번 문서)는 윤니산택 사내중 수복이 상전택을 대신하여 맹골도 입지를 분실한 것에 대하여 입지를 신청하는 소지이다. 2절 맹골도 지배의 권원 權原 문서이기도 하다.

이외에 화재로 인한 문서의 소실 또는 분실에 관련한 입지가 많다. 원래의 매매 입안이나 절수 입안이 없는 권리 행사를 할 수 없으므로 입지를 받아서 권원 權原 문서로 활용하는 것이다. ‘1714년 윤생원택 소지’나 ‘1742년 낙창군 방노 이퇴 소지’ ‘기해년 대둔사 승려 새수 소지’(18번 문서)이 그것이다. 연대를 확정할 수는 없지만 ‘경신년 중 옥산 소지’(15번 문서)는 사내중 옥산이 기경지에 대해 입지를 신청하는 소지이고, ‘기유년 고망금 소지’(17번 문서)도 고망금이 기경지에 대해 입지를 신청하는 소지이며, ‘미상년 소지’(19번 문서)도 주인 없는 해택 海澤에 대해 입안을 신청하는 소지이다. ‘을미년 김덕민 소지’(16번 문서)는 매득한 토지에 대해 입지를 신청하는 소지이므로 정식 입안은 하지 않았지만 매매 행위에 대한 간단한 입지를 요청하는 소지이다.

2절은 주로 개간지인 백야지 땅의 소유권을 둘러싼 소송의 소지, 의송 문서들이다. ‘1672년 현산면 거인 등장’(1번 문서)은 현산면 사람들이 노순복의 토지 도매 盜賣에 관련하여 해남현에 올린 등장이고, ‘1675년 노홍렬 의송’(2번 문서)은 1675년(숙종 1) 8월 노홍렬 洪烈이 상전 윤이석 尹爾錫을 대신하여 만력 연간에 관의 공증을 받은 해남 백야지 白也只 땅의 모점 冒占 사건과 관련하여 채도남 蔡道男과 김순복 金順卜 형제를 처벌해 달라고 순찰사에게 청원하는 의송 議送이고 ‘1675년 12월 윤정자택 노홍렬 소지’(3번 문서)는 1675년 12월 노홍렬이 공증 받은 백야지 토지의 소유권 문제로 주민들과 분쟁을 벌이다 수령의 교체 등으로 공백 상태 중에 강영남 姜永男이라는 주민이 소장을 올려 소환되자 전후 사정을 호소하는 소지이다. ‘1676년 윤정자택 노홍렬 소지’(4번 문서)도 역시 백야지 토지를 둘러싼 논쟁으로 만력 연간에 공증 받은 백야지 땅을 둘러싼 현 백성들과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해남현감에게 올린 소지이다. 이상 4건의 문서는 만력 연간에 입안을 받아 개간한 백야지 땅에 대한 일련의 문서이다.

‘1719년 윤생원택 중 소지’(5번 문서)는 양명 量名, 양안에 기록하는 소유주 명에 올리기 위해 소유

토지에 대한 입지를 신청한 소지이고 ‘병신년 천립 소지’(6번 문서)는 병신년에 천립이 해남관에 양안 등급을 요청한 소지이다.

3절은 맹골도 관련 자료이다. 해남윤씨가에 남아있는 맹골도 관련 문서는 양반가의 무주지 점유와 수세, 그리고 근대적 소유권의 확립 과정과 맹골도 주민의 세공稅貢, 또는 賭租 회피 과정에 관련된 자료의 전형적인 예라고 하겠다. 이 문서들을 통하여 우리는 (1) 전근대 시기에 있어서 해남윤씨가의 무주지無主地(맹골도 등) 지배, (2) 섬 주민의 세공稅貢 납부와 저항, (3) 전근대 문서에서 근대 문서로 변화와 근대적 토지소유권의 확립 과정 등을 볼 수 있었다. 수백 년에 걸친 해남윤씨가의 맹골도 지배는 전근대적인 장토庄土, 장민庄民 지배에서 근대적인 지주 지배로의 이행 과정에서 많은 자료를 남기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여러 문서를 통하여 해남윤씨가의 맹골도 지배와 섬 주민들의 항조 운동에 대하여 볼 수 있다.

맹골도와 죽도, 곶도는 주로 바위로 형성된 섬으로 약간의 밭 정도만 있기 때문에 사람이 거주하기는 어려운 곳이었다. 그러나 세 섬 주변에 서礮와 해변가 바위에서 채취되는 미역과 전복 등은 오히려 육지의 경제적 가치를 능가하는 것이었다. 1751년(영조27)에 제정된 균역법에서 국가의 부족 재원을 보충하는 세원稅源으로서의 어염선세漁鹽船稅를 설정한 것은 연해읍과 도서 지역의 경제적 가치가 그만큼 상승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맹골도 경제적 소득의 주산물인 미역도 그 경제적 가치가 높았지만 경상도와는 달리 아직 그 소득은 사가私家의 수입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해남윤씨가에서 맹골도를 점유하게 되는 최초인 문서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일찍부터 그 일대의 연해전 개발과 도서 지역에 대한 점유권은 그 지역의 토호적 양반 세력들에 의하여 확대되어 갔다. 18세기 중엽에는 해남윤씨가에서 일정 시기에 맹골도를 매도하여 부채 상환의 용도로 쓸 계획도 있었지만, 그 계획은 실행되지 않았고 맹골도민들과 여러 차례의 갈등을 겪으면서도 근대에까지 지배를 관철하여 왔다. 해남윤씨가에 남아있는 18세기 후반 이후의 맹골도 자료는 윤씨가의 맹골도 지배가 봉건적 장토庄土, 장민庄民 지배였고 그 지배력의 원천은 전통적 관행과 양반 지배에 기초한 관권에 의존하는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해남윤씨가에는 맹골도 관련 문서들이 다수 소장되어 있다. 그중 근대 이전 시기의 맹골도 관련 문서는 다음 <표 1>과 같이 총 7건과 관련 건기件記가 다수 있다. (1)번 문서는 20세기 초반의 맹골도 소유권 쟁송 문서들과 같이 묶여있는 문서이지만 시기적으로 17세기 후반의 문서이기 때문에 전근대 문서로 정리하였다. 다음 (2)번 문서는 1762년(혹은 1822년) 이남李楠 등 맹골도 주민들이 진도관珍島官의 창속倉屬들이나 장교들의 횡포가 있음을 말하고 수세에 관한 완문을 만들어 주어 원칙에 없는 착취를 막아달라는 내용의 등장等狀이다. 나머지는 도민島民 이병관이 윤씨가에 세공稅貢을 납부하지 않으려고 하여 양쪽에서 관에 진정을 한 소지所志와 의송議送, 수표手票 등 5건이다. 이들 문서는 간지干支만 적혀 있어서 절대 연대를 확정하는 것이 선결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기존의 해제에서는 이들 문서를 모두 17세기의 것으로 비정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자료들은 해남윤씨가와 쟁송

하고 있는 이병관이 등장하는 자료들이 18세기 후반 이후의 자료라고 추정한다.

해남윤씨의 입장을 대변하는 소지와 의송은 아래와 같이 임인년(1842, 현종8) 5월에 ‘윤생원택 노 성록’의 이름으로 진도군수에게 올린 소지가 2건, 암행어사에 올린 의송이 1건이다. 또 3년 후인 을사년(1845, 현종11)에 ‘윤도사택 노 성록’의 이름으로 진도군수에게 올린 소지가 1건이다. 이 소지와 의송의 연대는 18세기부터 1842년까지 추정이 가능한데, 여기에서는 윤 도사尹都事를 1763년(영조 39) 1월 1일에 70세 이상자에게 내린 은전恩典으로 도사都事 벼슬을 받은 윤덕희尹德熙로 추정하였다.¹ 이 자료를 18세기 후반 이후의 것으로 추정하는 이유는 또 있다. 그것은 소지 본문 중에 나오는 ‘저희 택이 중세에 형제 수가 많았습니다(矣宅中世兄弟數多)’라든가 ‘저희 택이 여러 번 상변을 겪어서 과부와 고아가 주장을 하여 겨우 보존하고 있습니다. (矣宅屢經變喪 孀孤主張 而僅能保存者)’라는 구절로 보아서, ‘저희 택이 중세에 형제 수가 많았다.’는 것은 윤인미尹仁美 형제(3형제 5남매, 첩자녀 제외), 윤덕희尹德熙 형제(9형제 12남매)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며, ‘저희 택이 여러 번 상변喪變을 겪어서 과부와 고아가 일을 주장하여 겨우 보존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은 윤덕희尹德熙(1685~1766)의 아들인 윤종尹棕(1705~1757)과 손자인 윤지정尹持貞(1731~1756)이 연이어 사망을 하고 양자로 들어온 윤종경尹鍾慶(1767~1810)에 이어서 그 아들인 윤광호尹光浩(1805~1822)가 또 요절을 하여 윤주흥尹柱興(1822~1873) 어린 나이에 집안 살림을 주관하였다는 것을 말한다고 추정하였다. 이로서 보아 맹골도민 이병관과 관련된 소지나 의송, 수표 등은 18세기 후반 이후의 자료라는 것을 확정할 수 있다.² 개연적인 상황을 보아도 이 자료들은 18세기 후반 이후의 것일 가능성이 크다.

<표 1> 전근대 맹골도 관련 문서

번호	제목	연월일	발급	수급	주요내용	비고
1	윤니산택 노 수口(복) 입지	정묘(1687) 3월	尹尼山宅奴 守口(卜)	郡守主	흥년이어서 看檢次 갔다가 풍랑으로 筆匣을 망실. 尹尼山은 尹爾錫.	立旨. 윤이석은 윤선도의 손자
2	맹골도 거민 등장	임오년(1762 또는 1822) 10월	李楠, 崔卜南, 朴一先	使道主	倉校들의 횡포를 막도록 완의를 정해달라는 청원	윤씨가와 이해 일치. 이남은 이병관의 조부

1 兵批, (중략) 守李綬, 令李壽圭, 參奉安衡, 司果李錫禧, 都事尹德熙, 引儀車夢良, (중략) 已上竝年七十, 推恩(『승정원일기』 1763년 1월 1일조).

2 본고에서는 문서의 연대를 처음에는 18세기 후반의 것으로 비정하였으나, 3번 문서에서 “向在乙酉年分 蔓才島民 稱怨庄主 其所誣呈 一如李丙寬今番狀辭 而其時巡使道 卽貞洞曹尙書大監也”라는 구절이 나오고, 여기에서 말하는 정동 조상서대감은 1825년(순조25, 을유년)의 전라감사인 曹鳳振(1777~1838)을 말하므로 이 문서의 연대는 1825년 이후의 것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들 문서의 연대를 한 周甲 내려서 19세기 전반인 1840년대로 비정하였다.

번호	제목	연월일	발급	수급	주요내용	비고
3	윤생원택 노성록 소지	임인(1842) 5월	尹生員宅奴聖祿	珍島案前主	이병관의 도지 거납에 대한 처벌 요청 청원. 노성록이 먼저 진도군수에게 청원을 하였고, 이어서 해남에 와있는 암행어사에게 청원을 하였으며 암행어사의 제결을 받아 최종적으로 다시 진도군수에게 청원함.	윤씨가에서는 봉건적 노주 관계, 윤리적 문제 및 다른 島庄의 수세액 보다는 약하다는 것을 강조함.
4	윤생원택 노성록 의송	임인(1842) 5월	尹生員宅奴聖祿	暗行御史		
5	윤생원택 노성록 소지	임인(1842) 5월	尹生員宅奴聖祿	珍島案前主		
6	윤도사택 노성록 소지	을사(1845) 10월	尹都事宅奴聖祿	珍島案前主	도민들이 세공 미납을 하지 못하게 하도록 강제해달라는 청원	
7	이병관 수기	1850년 8월	이병관	해남윤씨	세공 미납분 감액 및 납부 서약	

또 이 시기는 연해전 개발을 거쳐 각 섬의 어염과 魚鹽 藪 등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민들의 이동이 이 시기에 이루어졌다. 1751년에 시행된 균역법의 감세 減稅 재원 보충을 위하여 어염선세 魚鹽船稅를 지목한 것은 그와 같은 사실을 뒷받침 해준다. 따라서 해남윤씨가의 전근대 망골도 관련 문서의 연대를 비정한다면 아래 표와 같이 1번, 2번 문서를 제외하고는 모두 19세기 전반기의 문서로 비정할 수 있다.

참고문헌

- 문숙자, 2012, 「17~18세기 해남윤씨의 토지 확장 방식과 사회경제적 지향」, 『고문서연구』 40집.
- 김현영, 2011, 「전근대 해남윤씨의 망골도 지배와 주민들의 稅貢 회피」, 『고문서연구』 39집.
- 정윤섭, 2008, 「조선후기 해남윤씨의 망골도 획득과 경영」, 『도서문화』 31집.
- 정윤섭, 2008, 「16~18세기 해남윤씨의 연해전 개발과정과 배경」, 『지방사와 지방문화』 11-1집.
- 이종길, 1998, 「한국사회의 소유권 형성과정에 대한 일 연구 - 광전과 임야의 소유관계를 중심으로」, 『법사학연구』 19집.
- 이종길, 1994, 「일제초기 어촌의 소유권 분쟁 - 망골도 문서를 중심으로」, 『법사학연구』 15집.
- 안승준, 1990, 「16~18세기 해남윤씨 가문의 토지·노비 소유 실태와 경영 - 해남윤씨가 고문서를 중심으로」, 『청계사학』 6집.

1. 입지立旨, 입안立案과 연해전沿海田 개발

5-1-1) 1620년 사노 몽남 소지

[1620년 화산에 사는 사노 몽남이 현산면 삼막동의 주인 없는 진황지에 대해 입안을 신청하는 소지.]

화산花山에 사는 사노私奴 몽남夢男

삼가 아뢰옵니다. 저는 양반 집에서 도망 나온 사내중 막동莫洞이 현산면縣山面 삼막동三莫洞에 있는 밭...(원문 결락)... 주반암晝飯岩 양전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진황陳荒 전답 5, 6섬지기[石落只] 및...(원문 결락)... 관청항官廳港 양전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진황 전답 4, 5마지기가 주인 없이 버려져 있습니다. 독을 쌓아 저수지를 만들고 해언海堰에서 물을 끌어와 기경起耕하여 몽리蒙利하고자 하니 관례에 따라 입안을 성급하도록 명령해 주십시오.

영감께서 처분하실 일입니다.

만력萬曆 48년(1620, 광해군12) 6월 일 소지

[제사] 지금 주인이 없는 것이 확실하거든 법에 의하여 갈아먹을 일이다. 9일.

관 [서업]

花山接 私奴 夢男

右所陳奴矣段 班中逃奴莫同 矣縣山地三莫洞伏在田□... 晝飯岩 至
量田不付陳荒田畚并五六石落只 及□... 以官廳港 至 量田不付陳荒
田畚并四五落只 無主棄置爲白有良尔 或塞防築儲水 海堰引水 或自起
耕蒙利次以 依他立案成給爲白只爲
行下向教是事

令鑑主處分

萬曆四十八年六月 日 所志

[題辭] 今無主的實爲去等 依法耕食事 初九日
官(押)

5-1-2) 1625년 윤선도 호노 충순 의송

[1625년(인조 3)에 윤선도의 호노 충순이 상전을 대신하여 해택海澤에 독을 쌓아 수세할 것에 대한 입안을 신청하는 의송.]

해남에 사는 전前 도사都事 윤선도尹善道 호노戶奴 순충順忠

삼가 소지를 올려 아뢰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현 현산면縣山面 백야지白也只의 남쪽으로는 ... (원문 결락)... 초사동椒寺洞 하류에 이르고, 서쪽으로는 큰 바다에 이르며, 동쪽으로는 부을치이夫乙齒伊에 이르는 곳에 해포海浦가 하나 있는데 수원水原이 전혀 없어 논농사를 지을 수 없어서 예로부터 버려둔 곳입니다. 그 위쪽에 독을 쌓아 물을 담아두어 논을 만들고 세를 거두며 갈아먹고자 합니다. 규례대로 입안을 성급하도록 명령하실 일.

순찰사또님이 처분하여 주십시오.

천계天啓 5년 2월 일 의송

[제사] 주인이 없는 해택海澤이면 원하는 대로 절수折受³하여 갈아먹을 것. 2월 25일 본관本官.

[서업] 도사都事

海南居 前都事尹善道 戶奴 順忠

右謹陳所志矣段 本縣縣山面白也只 南至堂□...□至椒寺洞下流 西至大海 東至夫乙齒伊有
一海浦 絶無

水根 不得爲畚 自古棄置爲白有去乙 欲於其上防築貯水 作畚收稅耕食爲白去乎 依例立案
成給

爲白只爲

3 절수(折受) 국가로부터 일종의 토지소유권 증명서인 입안(立案)을 발급받거나 전조(田租)의 수조권(收租權)을 지급받는 행위를 말한다.

行下向教是事

兼巡察使道主 處分

天啓五年二月 日 議送

[題辭]

海澤無主之處則

依願折受耕食

向事

二月廿五日

本官

[押]

都事

5-1-3) 1647년 해남현 입안

[1647년(인조 25)에 성산 현감을 역임한 윤선도의 호노 춘립이 화산 연해의 바닷물이 드나드는 땅에 제방을 쌓은 토지를 입안해달라고 해남현에 소지를 올리고, 이에 해남현에서 이를 허락한 입안.]

해남현海南縣에 사는 윤 성산尹星山⁴ 대宅 호노戶奴 춘립春立

소지所志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남현 화산이도면花山二道面 엄구지奄仇之 죽도竹島 앞바다에 서쪽으로는 옛 해창海倉에 이르고 동쪽으로는 새 해창海倉에 이르는 곳에 예로부터 양안(量案)에 등재되지 않은 염분이 많고 바닷물이 드나드는 땅이 있었는데, 저의 상전이 힘써 제방을 쌓았습니다. 전례에 따라 입안立案을 성급成給하도록 명령하실 일입니다.

행行 현감님께서 처분해 주옵소서.

정해년 11월 일. 소지.

[제사]

절수折受하는 곳은 제방을 쌓아 막은 자를 주인으로 한다는 것이 법전法典에 실려 있으니, 전례에 따라 입안을 성급할 것. 18일.

행관行官 [서업]

4 윤 성산(尹星山) 성산 현감(星山縣監)을 지낸 윤선도(尹善道, 1587~1671)를 가리킴.

순치順治 4년(1647, 인조 25) 11월 일 해남현 입안

이 입안은 절수折受를 위한 일이다. 점련粘連한 과장課狀에 의거하여, 화산이도면花山二道面 엄구지奄仇之 죽도竹島 앞바다에 서쪽으로는 옛 해창海倉에 이르고 동쪽으로는 새 해창海倉에 이르는 곳에 예로부터 양안量案에 등재되지 않은 염분이 많고 바닷물이 드나드는 땅이 있는데, 주인이 없는 것이 확실하다고 하므로 이 땅의 노奴 춘립春立에게 영원히 절수하고, 후일의 증빙자료로 삼고자 이에 입안함.

행현감行縣監 [서업]

縣居 尹星山宅 戶奴 春立

右所志矣段 縣地花山二道奄仇之竹島前洋 西至舊海

倉 東至新海倉良中 有舊遠量不付斥鹵海水出入

之地爲有去乙 矣上典家亦 欲爲勉力築堰爲白去乎

依例立案成給爲白只爲

行下向教是事

行縣監主 處分

丁亥十一月 日 所志

[題辭]

折受之處

防塞者爲

主 載在法

典 依例立

案成給向事

十八日

行官 [署押]

順治四年十一月日 海南縣立案

右立案爲折受事 粘連課狀

據 所謂花山二道奄仇之竹島前洋

西至舊海倉 東至新海倉良中 有舊遠

量不付斥鹵海水出入之地 無主

的實是如爲乎等以 同宅奴春立

亦中 永永折受爲遣 以憑後考

次以 合行立案者
行縣監 [署押]

5-1-4) 1650년 윤 성산택 호노 춘립 소지

[1650년(효종원년) 경인년에 윤 성산택 호노 춘립이 상전을 대신하여 주인 없는 해택에 대한 입지를 신청하는 소지.]

현縣에 사는 윤 성산택尹星山宅 호노戶奴 춘립春立

삼가 소지를 올리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의 황원면黃原面 무고진舞鼓津 소지명小地名이 돌도곶島라고 칭하는 포구에, 남쪽으로는 월양月仰에 이르고 북쪽으로는 마방변馬坊邊에 이르며, 서쪽으로는 큰 바다에 이르고 동쪽으로는 파□언破□堰 밖에 이르는 곳이 예로부터 바닷물이 드나드는 곳인데, 양안에 등록되지 않은 채 주인이 없으면서 염분 많은 땅이 있습니다. 저의 상전께서 제방을 쌓아 농사를 짓고자 하니 법에 따라 입안을 성급하도록 명령해 주십시오.

행현감주行縣監主께서 처분하실 일입니다.

경인년 12월 일 소지

[제사] 주인이 없는 해택海澤임이 확실하면 법에 따라 제방을 쌓고 갈아먹되, 만일 함부로 침해하는 폐단이 있거든 관에 고하여 시행할 일이다. 1일.

관 [서업]

縣居尹星山宅 戶奴春立

右所志矣段 縣地黃原面舞鼓津小地名芑島稱名浦良中 南至月仰 北至

馬坊邊 西至大海 東至破□堰外 有自古海水出入 量不付無主斥鹵之地爲白去乙 矣上典 欲
爲築堰作農爲白去乎 依法立案成給

爲白只爲

行下向教是事

行縣監主 處分

庚寅十二月 日 所志

[題辭] 無主海澤的實 則依法築堰畊食爲乎矣 如有橫侵之弊是去等 告官施行事 初一
官(押)

5-1-5) 1676년 사노 이인 소지

[1676년(숙종 2) 사노 이인이 상전을 대신하여 불에 탄 현산면 백야지 문기에 대한 입지를 신청하는 소지.]

현산면縣山面에 사는 사노私奴 이인李仁

삼가 소지를 올려 아뢰는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상전주上典主께서 사환使喚하여 지난 8월에 상경했다가 겨우 돌아오자마자 지난 9월에 집에 뜻하지 않은 불이 나서 집에 보관하던 기물器物 및 다른 곳을 매득買得한 문기 등이 모두 불에 탔습니다. 뒤에 기록하였으니 증빙하여 훗날 상고하기 위해 입지를 성급하여 주십시오.

명령하시도록 영감주께서 처분하실 일입니다.

병진년(1676) 10월 일 소지

후록後錄

본면本面 백야지원白也只員에 있는 함자醜字 논 3마지기, 복수卜數 9복 5속 곳을 순룡順龍에게 매득한 명문明文 1도度.

끝.

[제사] 초사招辭를 받아 진위眞僞를 가리기 위해 겨린[切隣]과 이정里正 등을 데리고 나올 것. 28일.
관 [서업]

병진년 10월 29일

겨린[切隣] 사내중 정기鄭己 나이 56세

이정里正 사내중 논금論今 나이 38세

아웁니다. 향리에 사는 사노 이인의 소지에 “저의 집에 불이 나서 상고할 문기가 모두 불에 탔습니다.”라고 하니 진위를 추문推問하라고 하셨습니다. 앞의 이인 집에 지난 9월에 불이 나서 집에 보관하던 잡물雜物 및 문기가 모두 불에 탄 것이 확실하오니 빙고하여 처치하실 일입니다.

아웁 [좌촌]

아웁 [좌촌]

관 [서업]

강희 15년 10월 일. 해남현 입안

이 입안은 훗날 빙고하기 위한 일이다. 점련한 과장課狀에 근거하여 각 사람들의 초사를 받으니, 소지를 제출한 사노 이인의 집에 지난 9월에 불이 나서 상고할 문기가 불에 탄 것이 확실하다고 하므로

증빙하여 훗날 상고하기 위해 입안을 발급함이 합당하다.

행현감 [서업]

縣山面居 私奴李仁

右謹陳所志 矣情由段 矣身亦 以上典主使喚 去八月分上京爲白有如可
繼以還來 則去九月分 家中意外出火 家藏器物及他處買得文記等 盡爲燒
燼爲白有去乎 後錄憑考後考次以 立旨成給事乙

行下向教是事

令監主 處分

丙辰十月日 所志事

後 本面白也只員伏在 鹹字畚 參斗落只卜數玖卜伍束庫乙 順龍處買得明文
壹度 際

[題辭] 眞僞捧招次以 切隣里正等率現 廿八日

官(押)

丙辰十月廿九日 切隣奴鄭己 年五十六 里正奴論今 年卅八 白等 鄉里居私
奴李仁狀以 其矣家失火可考文記 燒燼眞僞推問教是臥乎在亦 上項李仁
家 去九月分失火 家藏雜物及文記并以 盡爲燒燼的實爲白在果 憑考處
置施行教事

白[左寸]

白[左寸]

官(押)

康熙十五年十月日 海南縣立案

右立案爲後考事 粘連課狀據 各人等招辭是置有亦 上項狀者 奴李仁
家 去九月分失火 可考文記燒火的實爲乎等以 以憑後考次以 合行立案者
行縣監(押)

5-1-6) 1677년 윤 생원댁 증 사만 소지

[1677년(숙종 3)에 윤 생원댁 사내증 사만이 상전댁의 분실한 음죽관의 문기에 대해 입지를 신청

하는 소지.]

서울에 사는 어의동於義洞 윤 생원택 사내중 사만士萬 [좌촌]

삼가 소지를 아뢰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의 상전택에서 본현 서면西面に 있는 군자君字 62답 19복卜짜리 논을 매득買得하였습니다. 그런데 집안의 우환 때문에 전라도로 이사하느라 행차하던 즈음에 매득문기를 분실하였습니다. 훗날 혹 뜻밖의 폐단이 생길수도 있으므로 자호字號 순서와 복수卜數가 29복 가운데 남쪽 편 4결鬲 7마지기 19복 6속束인 곳을 빙고憑考하기 위해 입지를 성급하도록 명령해 주십시오.

음죽 관주陰竹官主께서 처분하실 일입니다.

정사년 11월 일 소지

[제사] 과연 청원한 내용대로인지 빙고하기 위하여 입지를 해 줄 것.

2일

관 [서업]

京居 於義洞 尹生員宅 奴士萬(左寸)

右謹陳所志矣段 矣身上典宅番庫 買得於本縣西面伏在君字六十二番十九卜庫 買得爲白有如乎 家患移接於全羅道行次之際 買得文記闕失爲白有置 日後或有意外之弊是白良置 字號第次卜數 則二十九卜內南片四鬲七斗落只十九卜六束是白如乎 憑考次立旨成給事

行下爲只爲

行下向教是事

陰竹官主 處分

丁巳十一月 日 所志

[題辭] 果如所訴是噲 憑考次立旨事 初二日

官(押)

5-1-7) 1685년 윤 니산택 중 수복 소지

[1685년(숙종 11) 윤 니산택 사내중 수복이 상전을 대신하여 불에 탄 문기에 대한 입지를 신청하는 소지.]

[1]

현산면縣山面 백야지白也只에 사는 윤 니산택尹尼山宅 사내종 수복守卜

삼가 소지를 올립니다. 하늘에 닿도록 절통하고 근심스런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 상전택에서 지난 2월 29일에 천장遷葬할 때 온 집안이 여러 날 동안 매우 분주하고 경황이 없어 집안일을 살피지 못했었습니다. 장방藏房 가운데가 진즉부터 방돌房墺이 움푹 꺼진 곳이 있었는데, 쥐가 드나들며 구멍을 파는데도 차일피일 고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홀연 29일 밤중에 그곳에서 불이 났습니다. 경황이 없던 중이었고 밤이 깊은 뒤라서 사람들이 모두 깊이 잠들어 까맣게 모르고 있다가 바깥에서 경우는 연기가 가득 차서 코를 막아 사람들이 자다가 알아차린 뒤에 이르러서야 놀라 일어나 연기 나는 곳을 찾았습니다. 이어서 장방 문을 열었더니 넣어두었던 옷농[衣籠]과 서책 등의 물건 대부분이 불에 다 탔을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신구新舊 전답문권 및 2代代에 걸쳐 받아 둔 여러 곳의 입안문기立案文記가 모두 불에 타버렸습니다. 집에 보관되어 전래해 온 오래된 물건은 매우 절실하고 막대한 것이기에 하루라도 그 표標가 없어서는 안 됩니다.

저의 상전은 올해 60세인데 상중[草土]⁵에 있을 때 숙병宿病과 풍증風症이 장례를 치른 후에 더 심해져 다른 일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에서야 비로소 소지를 올립니다. 불에 탄 전답문권은 어느 곳, 마지기수[斗數], 부수卜數, 자호字號,⁶ 몇 년 몇 월, 누구에게 매득한 문권 몇 장 및 입안문기는 몇 통, 양안에 동서남북 범표犯標,⁷ 몇 년 몇 월, 누구에게 매득한 곳이라는 것을 아울러서 하나하나 명백하게 뒤에 적었습니다. 그리고 영암 땅에 소재한 전답 및 기타 여러 곳의 입안문기도 함께 한 곳에 넣어두었는데, 모두 이곳에서 불에 탔기 때문에 불에 탄 문권의 물건物件을 누락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함께 기재하였으니, 훗날 상고하기 위하여 규례대로 입지立旨를 성급成給하도록 처분해 주십시오.

사또께서 처분하실 일입니다.

을축년(1685) 3월 일 소지

[제사題辭] 훗날 상고할 수 있도록 입지를 성급 하라.

17일.

관 [서업]

후록後錄

강희康熙 10년(1671, 현종 12) 신해 5월 일. 본현 화산면花山面 관선불觀仙佛의 동북쪽에 산이 있는

5 상중 원문의 ‘초토(草土)’는 거상(居喪)을 뜻하니, 부모님의 상을 지낼 때에 풀로 만든 거적을 깔고 흙으로 만든 베개를 뱀다는 데서 온 말이다.

6 자호(字號) 조선시대 토지대장인 양안(量案) 등에 천자문의 순서로 토지의 지번(地番)을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7 동서남북 범표(犯標) 토지의 사방 경계 표시인 사표를 말한다.

데 이름이 남산南山이다. 이 산 위의 서남쪽 2변邊 및 산 아래 남쪽변에 있는 작은 들판으로, 이름이 수여척水餘陟 골짜기 등지이다. 남쪽은 바다에 이르고, 동쪽은 윤선호尹善好가 일찍이 모친을 천장한 곳에 이른다. 서쪽은 화산면 대촌大村 가는 길에 이르고, 북쪽은 남산 중턱의 주인 없는 진황지陳荒無主處에 이른다. 이곳의 절수折受 입안문권 1장

강희 10년 신해 10월 일. 본현 화산일도면 관선불 들판[員]에 있다. 저전구미楸田仇尾로부터 마근다미爾近多未에 이르는 산 앞과 뒤, 위와 아래, 동서남북의 주인 없는 진황지이다. 선금의 눈으로부터 마근다미의 산 위와 산 아래에 이르는 곳은 일찍이 윤선경尹善慶에게 모두 방매하였고, 그 나머지 기경전起耕田은 간간이 주민들에게 또 방매하였다. 그 외에 남아있는 기경전답을 유학幼學 박남형朴藍堦에게 모두 매득한 문기 1장

강희 11년(1672, 현종 13) 임자 3월 일. 본현 화산일도면 둔전지屯田埗에 있는 수자隨字 논 9마지기, 복수卜數 20복卜 1속束 곳을 사노私奴 준일准日에게 매득한 문기 2장

강희 14년(1675, 숙종 1) 을묘 2월 일. 본현 화산일도면 금착평金鑿坪에 있는 등자登字 논 4마지기 20복 8속 곳을 사노 최신崔信에게 매득한 문기 2장

강희 14년 을묘 2월 일. 본현 화산일도면 역고지원亦古旨員에 있는 익자益字 논 5마지기 목정논[陳畝] 및 이어져 있는 밭 3마지기를 합한 8마지기 40복 7속 곳을 황계성黃戒成에게 매득한 문기 2장

강희 15년(1676, 숙종 2) 병진 3월 일. 본현 화산일도면 금착평에 있는 심자甚字 논 3마지기, 복수 6복 5속 곳을 이신언李信言에게 매득한 문기 1장

승정崇禎 6년(1633, 인조 11) 계유 8월 일. 영암靈岩 북평면北平面 주교위舟橋衛 일명 실아덕교失兒德橋라고 하는 소금기 있는[斥鹵] 해언海堰⁸이다. 동쪽으로는 큰 바다가 있어 밀물과 썰물이 들어오는 곳이며, 남쪽으로는 좌일대촌左日大村 앞, 서쪽으로는 간두幹頭 해안, 북쪽으로는 장전촌長田村 해안의 주인 없는 곳을 해남 백련동白蓮洞 윤도사댁尹都事宅 사내종 말세泰世 이름으로 신청하여 받은 절수입안折受立案⁹ 문기 1도度. 또 순치順治 3년(1646) 병술 3월 일에 해남 백련동 윤성산댁尹星山宅 사내종 춘립春立 이름으로 신청하여 재발급 받은 입안 1도. 또 강희康熙 7년(1668) 무신 8월 일에 해남 백련동 윤정자댁尹正字宅 사내종 애순愛順 이름으로 신청하여 재발급 받은 입안 1도. 전후로 모두 합한 3도.

승정 6년 계유 10월 일. 영암 송지면松旨面 갈두葛頭 도즉동道即洞 일명 박중건동朴中建洞이다. 동쪽으로는 마전치馬轉峙에 이르며, 남동南洞으로부터 일령 어위동一嶺御衛洞에 이르며, 서동西洞으로부터 위구衛口에 이르며, 북동北洞으로부터 일령 금착동一嶺金鑿洞에 이르는 곳을 해남 백련동 윤도사댁 사

8 해언(海堰) 바닷가에 조수를 방지하는 제방을 쌓고 그 안에 만든 전지이다.

9 절수입안(折受立案) 국가로부터 일종의 토지 소유권 증명서인 입안을 발급받거나, 전조(田租)의 수조권(收租權)을 지급받는 행위이다. 『한국고전용어사전』 참조

내중 말세 이름으로 신청하여 받은 절수 입안문기 1도. 또 순치 3년 병술 3월 일에 해남 백련동 윤성산댁 사내중 춘립 이름으로 신청하여 받은 입안문기 1도. 또 강희 7년 무신 8월 일에 해남 백련동 윤정자댁 사내중 애순 이름으로 재발급 받은 입안 1도. 전후로 모두 합한 3도.

순치 16년 기해 정월 일. 정병正兵 한봉복韓奉福에게 영암靈岩 옥천면沃川面 가작동원加作洞員에 있는 함자醢字 논 2마지기 7복 6속 곳을 매득買得한 문기 2도

강희 10년 신해 정월 일. 영암 옥천면 중평원種坪員에 있는 용자龍字 논 2마지기 6복 1속 곳을 유학幼學 최흥우崔興佑에게 매득한 문기 2도

강희 10년 신해 정월 일. 영암 옥천면 중평원에 있는 용자 논 2마지기 6복 2속 곳을 보인保人 임화임林華任에게 매득한 문기 2도

강희 11년 임자 3월 일. 영암 옥천면 팔마방八馬方 전교前橋에 있는 당자唐字 논 13마지기 49복 6속 곳을 사노 정복丁卜에게 매득한 문기와 결급決給 입안¹⁰을 합한 3도. 끝.

을축년(1685) 3월 18일 현산면縣山面 백야지리白也只里 거린[切隣] 사노私奴 정기正己 나이 67세, 두두인頭頭人¹¹ 사노 덕룡德龍 나이 49세, 색장色掌 사노 이분二分 나이 43세, 각각 호구戶口가 확실함.

아뢰웁니다. 이번에 “너의 마을에 사는 윤 니산댁 사내중 수복의 이름으로 올린 소지 내용에 의하면 ‘저의 상전집 장방藏房에 우연히 불이 나서 옷농과 서책, 문권을 넣어둔 상자籠子가 모두 불에 타서 오래된 각 전민田民(토지와 노비) 문권들이 모두 타서 없어졌습니다.’라고 하니, 진위眞僞를 현고現告하라.”고 추문推問하셨습니다.

지난 2월 29일 밤중에 윤 니산댁이 천장遷葬을 하느라 사람이 없을 때, 장방 가운데에 방구들이 구멍 난 곳이 있었는데 우연히 불이 나서 옷농 및 중대한 문권들이 정말로 모조리 불에 탄 것이 확실하오니 상고하여 시행하실 일입니다.

아뢴 [좌춘]

아뢴 [좌춘]

아뢴 [좌춘]

관 [서업]

10 결급(決給) 입안 해당 토지에 대해 측량을 하거나 소송을 진행하고 나서 관에서 ‘판결하여 주는’ 과정을 통한 것이다. 그리고 결급한 내용을 관에서 공증하는 의미에서 입안을 발급해 준 것이다.

11 두두인(頭頭人) 가장 우두머리가 되는 사람. 행정 조직이나 군사 조직의 정식 직급은 아니지만 일정 집단의 우두머리를 지칭할 때 사용한다. 예컨대 향촌의 부세를 책납할 때 또는 공문을 모을 필요가 있을 때 향촌 준위(尊位), 유사(有司), 색장(色掌)과 함께 참가하는 두두인의 경우가 그러하다. 『한국고전용어사전』

강희 24년 을축 3월 일. 해남현 입안

이 입안은 빙고憑考하는 일이다. 후록을 점련한 과장課狀에 근거하여, 각 사람들의 초사招辭가 있었다. 지난 2월 29일 밤에 장방의 바닥이 폭 꺼진 곳에서 불이 나 옷농 및 보관 중이던 전답문기와 그에 딸린 오래된 문기가 모조리 불에 탄 것이 확실하다는 내용의 초사招辭이므로 증빙하여 훗날 상고하기 위해 이에 입안을 발급함.

행현감 [서업]

縣山面白也只居尹尼山宅奴守卜

右所志極天切悶段矣上典宅頃於二月二十九日遷葬時渾家累日奔違罔極之際未顧家事爲白如乎藏房中曾有房埃坎陷處鼠仍穿穴遷延未改是白如可忽於二十九日中夜火出其處爲乎矣奔違中夜深後人皆熟眠朦然不知是白如可至於外房烟氣塞鼻人睡自覺之後沙驚起覓烟仍開藏房門則所藏衣籠書冊等物多數盡燒燬不喻其中新舊田畝文券及兩世所出數處立案文記并爲灰燼爲白如乎家藏傳來舊遠之物最是切迫莫大不可一日無其標是乎矣上典六十草土中宿病風症添劇於葬後無意暇及他事是乎等以今始呈訴爲白乎旡同所燒田畝文券某庫斗數卜數字號某年某月某人處買得文券幾張及立案文記度量處東西南北犯標某年某月某人處買得并爲一一明白後綠爲乎旡至於靈岩地所在田畝及數處立案文記共藏一器俱焚於此地故凡所燒文券物件不可漏落故如是同載爲白去乎後考次依例立旨成給爲白只爲行下向教是事官可主處分

乙丑三月日所志

[題辭] 後考次立旨 十七日

官(押)

後錄

康熙十年辛亥五月日 本縣地花山面觀仙佛東北有山名曰南山其山上西南二邊及其山下南邊有小坪名水餘陟谷等地南至海東至尹善好曾葬母遷葬處西至花山大村去路北至南山腰上陳荒無主處折受立案文券一張

康熙十年辛亥十月日 縣地花山一道觀仙佛員伏在自楮田仇尾至尔近多未山前山後山上山下東西南北無主陳荒處乙自先金畝至尔近多未山上山下則曾於尹善慶處盡爲放賣其餘起耕田段問之民人等處亦爲放賣爲有如乎其外餘存者陳起田畝并沒數買得於幼

學朴藍珩處 文記一張

康熙十一年壬子三月日 縣地花山一道屯田旨伏在隨字畝九斗落只 卜數二十卜一束庫乙 私奴准日處買得文記二張

康熙十四年乙卯二月日 縣地花山一道金鑿坪伏在登字畝四斗落只 二十卜八束庫乙 私奴崔信處買得文記二張

康熙十四年乙卯二月日 縣地花山一道亦古旨員伏在益字畝五斗落只 陳畝及連田并三斗合八斗落四十卜七束庫乙 黃戒成處買得文記二張

康熙十五年丙辰三月日 縣地花一道金鑿坪伏在甚字畝三斗落只 卜數六負五束庫乙 李信言處買得文記一張

崇禎六年癸酉八月日 靈岩北平面舟橋衛 一名失兒德橋斥鹵海堰處 東大海潮汐水入處 南左日大村前 西幹頭海岸 北長田村海岸無主處 海南白蓮洞尹都事宅奴忝世名呈折受立案文記一度 又於順治三年丙戌三月日 海南白蓮洞尹星山宅奴春立名呈重出立案一度 又於康熙七年戊申八月日 海南白蓮洞尹正字宅奴愛順名呈重出立案一度 前後并三度

崇禎六年癸酉十月日 靈岩松旨面葛頭道即洞 一名朴中建洞 東至馬轉峙 自南洞至一嶺御衛洞 自西洞至衛口 自北洞至一嶺金鑿洞 海南白蓮洞尹都事宅奴忝世名呈折受立案文記一度 又於順治三年丙戌三月日 海南白蓮洞尹星山宅奴春立名呈立案文記一度 又於康熙七年戊申八月日 海南白蓮洞尹正字宅奴愛順名呈重出立案一度 前後并三度

順治十六年己亥正月日 正兵韓奉福處 靈岩沃川面加作洞員伏在 鹹字畝二斗落只七卜六束庫 買得文記并二度

康熙十年辛亥正月日 靈岩玉川面種坪員伏在 龍字畝二斗落只六卜一束庫 幼學崔興佑處 買得文記二度

康熙十年辛亥正月日 靈岩玉川面種坪員伏在 龍字畝二斗落只六卜二束庫 保人林華任處 買得文記二度

康熙十一年壬子三月日 靈岩玉川面八馬方前橋伏在唐字畝十三斗落只四十九負六束庫乙 私奴丁卜處 買得文記決立案并三度

際

乙丑三月十八日 縣山面白也只里 切隣 私奴正己 年六十七 頭頭人 私奴德龍 年四十九 色掌 私奴二分 年四十三 各各戶口的
白等 節 汝矣里居 尹尼山宅奴守卜名呈所志內乙用良 次矣上典家臧房良中 偶然出火 衣籠及書冊文券所藏籠子 盡爲燒燼 而舊遠各項田民文券 沒數燒滅是加爲有置 眞僞現告亦 推問教是臥乎在亦 去二月二十九

日夜半 同宅遷葬無人時 同藏房良中 仍其房墜穿穴之處 偶然出火 衣籠
及重大文券等乙 果爲沒數燒燼的實爲乎去等 相考施行教事

白(左寸)

官(押)

白(左寸)

白(左寸)

康熙二十四年乙丑三月日 海南縣立案

右立案爲憑考事 後錄粘連課狀據 各人等招辭是置有亦 去二月二十九日

夜良中 自藏房坎陷處出火 同衣籠及所藏是在 田畝所付舊遠文記沒數

燒燼的實是如 招辭是乎等以 以憑後考次 合行立案者

行縣監(押)

5-1-8) 1687년 윤 니산택 중 수복^守□ 소지

[1687년(숙종 13) 정묘년 윤 이산택 사내중 수복^守□이 상전택을 대신하여 분실한 문기에 대한 입지를 신청하는 소지.]

해남 현산면縣山面에 사는 윤 니산택尹尼山宅 사내중 수복^守□

삼가 소지를 올려 절박한 사정을 말씀드리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의 상전택이 오랫동안 ... (원문 결락)... (진도)군 소속 맹골도盟骨島 및 그 섬 소속의 죽도竹島와 곶도藪島를 수용收用한 것이 오래되었고, 관^官에 등록하여 세를 거두어 왔으며 매년 연분年分할 때에 감색監色이 출입한 것이 또 이 미 오래되었습니다. 여느 해마다 연례대로 하는 일이 되어 이와 같이 경과해 왔습니다.

근년 이래로 연이어 흉년이 들고 밭 또한 척박하여 소출을 수용한 것이 점차 적어지고 있던 중에, 이번에 전에 없던 흉년을 당하여 여러 섬이 텅 비고, 이 섬의 백성들도 사방으로 흩어지는 것을 면치 못하여 약간 명만 남아있습니다.

지금 보리를 심고 기경起耕한 곳을 부득이 빙고^{憑考}하고 살펴 검사[看檢]할 일이 있었습니다. 이 섬은 ... (원문 결락)... 제가 섬의 문기를 가지고 그 섬을 지나가는 배를 찾아 타고 들어갔다 ... (원문 결락)... 외양外洋의 험난한 바다에서 돌아올 때에 마침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배 안의 사람들이 생사를 알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정신없었을 때 문기를 넣은 필갑을 바닷물에 빠뜨렸습니다. 이 날이 바로 2월 22일입니다. 매우 중요한 오래된 문기[久遠文記]는 하루라도 없어서는 안 되니, 서실 입지^{失立} 旨^旨를 전례대로 성급하도록 명령해 주십시오.

군수께서 처분하실 일입니다.

정묘년 3월 일 소지

[제사] 청원한 대로 임지를 성급해 줄 것. 13일

관할[서업]

海南縣山面居 尹尼山宅 奴守□□…

右所志切悶情理段 矣上典宅久□□…□處 □□郡所屬盟骨島及其島所屬竹/島藿島 收用久遠
官家懸錄收稅 每年年分時 監色出入 亦已/久遠 常年例事 如是經過是白如乎 近年以來 連
值凶年 田且脊/薄 所出收用 自漸些小之中 值此無前凶歲 諸島空散 此島之民/ 亦不免散
以之四 若干栖存是去乎 卽今種麥起耕處 有不得已憑考看/檢事 同此島□□…□ 矣身持是
遣 覓得其島過去船 入往爲白如可/ □□…□外洋險難之海 來時適遭大風浪 舟中人死生未
定 罔極奔/走之際 文記所藏筆匣 遺落海水 此乃二月二十二日也 莫重久/遠文記 不可一日
無之是白如乎 闕失立旨 依例成給爲白只爲

行下向教是事

郡守主處分

丁卯三月 日 所志

[題辭] 依願立旨成給事 十三日

官[押]

5-1-9-1) 1689년(숙종 15) 윤 좌랑댁 사내종 용이의 소지

[1689년(숙종 15) 윤이석尹爾錫의 사내종 용이龍伊가 해남 화산 이도면 죽도원의 주인 없는 땅을 개간하기 위해 주인 유무有無 조사 후 입안立案을 발급해 달라고 청원하는 내용으로 올린 소지所志.]

서울 사는 윤 좌랑尹佐郎¹³댁 사내종 용이龍伊

삼가 소지所志로 아뢰는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의 상전이 지난 병인년[1686]에 본 현縣 화산 花山 이도면二道面 죽도원竹島員¹⁴에 있는 무자茂字¹⁵ 땅을 정금丁금이 값을 치르고 사서 시방 농사짓고

12 서실 입지(闕失立旨) 문기를 잃어버렸거나 훼손되었을 경우, 이에 대한 관의 공증 문서이다.

13 윤 좌랑 윤이석(尹爾錫, 1626~1694)을 말한다. 윤선도의 손자로 숙종 때 문음(門蔭)으로 관직에 나갔고 이 해 2월에 종6품 낭관 벼슬인 사복시 주부(司僕寺主簿), 4월에는 종5품의 한성부 판관(漢城府判官)이 되었다.

있습니다. 죽도에는 주인 있는 논 이외에도 물을 막아 논으로 만들 만한 곳이 여러 곳 있는데, 모두 주인이 없는 땅입니다. 그 땅의 사표四標¹⁶는, 동쪽의 해창海倉으로부터 서쪽으로 징이도澄二島까지, 남쪽의 바다가 보이는 곳에서부터 북쪽으로 부소도扶蘇島까지입니다. 주인이 없는지 진위 여부를 면임面任에게 조사하도록 하신 후 법에 따라 입안立案을 성급해 주시어 개간하고 물을 댈 수 있도록 분부해 주십시오.

관사주官司主 처분處分

기사년(1689) 10월 일 소지所志

[제사題辭 정말로 주인이 없거든 (청원자가) 바라는 대로 조사하여 보고하라. 6일. 약정約正¹⁷에게.]

관官 [서업]

京居尹佐郎宅奴龍伊

右謹陳所志矣段 奴矣上典亦 去丙寅年分 本縣地花山二道
面竹島員茂字丁 金給價買得時 方畊食爲去乎 同島下有主
畚 外多有防塞作畚之處 而皆是無主是白遣 四標則東自海
倉西至澄二島南自望海北至扶蘇島是白去乎 無主
眞僞查問面任教後 依例立案成給 以爲起耕蒙利
之地爲只爲

行下向教是事

官司主 處分

己巳十月 日 所志

[題辭] 果是無主是去等 依願查報向事 初六日 約正

官[署押]

14 원(員) 토지의 일정한 구획을 말한다. 조선 초기 공법(貢法)에서 연분(年分) 등제(等第)의 단위를 고원(庫員)으로 나누어 할 때, 고와 원은 일정한 들판의 지역을 말한다.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에서 원 자를 토속자로 다루었으며 ‘도리’라고 읽었다.

15 무자(茂字) 양안에 천자문 순으로 기재되는 토지의 지번. 『한국고전용어사전』 ‘자호(字號)’ 참조.

16 사표(四標) 전답의 동서남북 사방의 끝, 대개 이어지는 토지의 용도와 소유자를 표시하였다.

17 약정(約正) 동리(洞里)의 책임자. 여기에서는 입안을 해달라는 소지에 대하여 해남 현감이 처분을 하고 이를 실행할 집행자로 약정을 지목하였다.

5-1-9-2) 1689년(숙종 15) 화산면 약정의 첩정

[1689년(숙종 15) 윤이석尹爾錫의 종 용이의 무주지無主地 개간 청원과 해남 현감의 지시에 따라 화산면花山面 약정約正이 해당 토지의 주인 유무有無 여부를 조사하여 해남 현감에게 보고한 첩정牒呈.]

화산면花山面 약정約正이 조사하여 보고하는 일입니다. 서울 사는 윤 좌랑尹佐郎의 사내종 용이龍伊가 올린 소지에 '본 현縣 화산花山 이도면二道面 죽도원竹島員의 무자茂字 땅을 사서 농사짓고 있으며 죽도에는 주인 있는 논 이외에 물을 막아 논으로 만들 만한 곳이 여러 곳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제사題辭에 '주인이 없는지 진위 여부를 조사해 보고하라'고 하셨습니다. 직접 가서 사실 관계를 알아보니 주인 없는 땅이 확실합니다. 사표四標로는 동쪽 해창海倉으로부터 서쪽으로 제이도際二島¹⁸까지, 남쪽의 바다가 보이는 곳에서부터 북쪽으로 부소도扶蘇島까지 주인 없음이 확실합니다. 이러한 연유緣由로 조사한 내용을 보고합니다.

절차대로 첩정을 올리니 이 문서에 비추어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첩정을 올립니다.

우右 첩정牒呈

행현감行縣監

기사년 10월 7일 약정約正 박하[작명]

[제사] 입안立案 발급을 위해 이 문서를 전달하라. 11일.

花山面約正爲查報事 京居尹佐郎奴龍伊所志內 本縣地花山二道面竹島員茂字丁金買得畊食爲去乎 同島下有主畚外多有防塞作畚之處是乎等以 題辭內無主眞僞查報亦爲有等以 親到摘奸 則無主的實 而四標則東自海倉西至際[澄]二島南自望海北至扶蘇島是乎等以 無主的實 緣由查報爲臥乎事 合行牒呈伏請
照驗施行須至牒呈者

18 제이도(際伊島) 용이(龍伊)의 청원서에는 '징이도(澄伊島)'로 표기된 섬의 이름이 이 첩정에서는 '제이도'로 기재되었다. 『대동지지(大東地志)』의 '해남(海南)'과 1791년의 『해남군읍지(海南郡邑誌)』의 '도서(島嶼)', 18세기 <비변사인양안지도(備邊司印方眼地圖)> '호남지도(奎12155)' 등을 살펴보면 모두 징이도(澄伊島)로 기록하고 있으므로 이 첩정의 작성자 오기(誤記)로 추정된다.

右牒呈

行縣監

己巳十月初七日 約正朴[着名]

[題辭] 立案次到付 十一日

5-1-9-3) 1689년(숙종 15) 해남현 입안

[1689년(숙종 15) 해남현 감이 윤이석尹爾錫의 중 용이의 무주지無主地 개간 청원에 따라 사실 관계를 조사한 뒤 이를 공증해 주는 입안.]

강희康熙 28년(1689) 10월 일 해남현 입안

위 입안은 훗날의 참고를 위한 것이다. 첨부한 과장課狀¹⁹에 근거하여 해당 면面 약정約正의 보고서 文狀가 있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 내 화산花山 이도면二道面 죽도원竹島員 무자정茂字丁 땅에 주인 있는 논 이외에 해안가 주변에 물을 막아 논을 만들 수 있는 곳이 있으며 이 땅의 주인이 없는 것이 확실하다. 그러므로 법에 따라 소지를 올린 사내중 용이龍伊에게 법대로 허여許與하고 훗날의 참고를 위해 절차대로 입안을 발급한다.

행현감行縣監 [서업]

康熙貳拾捌年十月 日海南縣立案

右立案爲後考事 粘連課狀據 該面約正文狀
是置有亦 縣地花山二道面竹島員茂字丁有
主畚外浦邊 可以防塞作畚之處 而無主的實
是乎等以 依例狀者奴龍伊處 依例許與爲遣
以憑後考次合行立案者

行縣監[署押]

19 과장(課狀) 과(課)는 매긴다는 의미이고 장(狀)은 소지이므로 관장의 처분 내용이 적힌 소장, 즉 윤이석(尹爾錫)의 중 용이(龍伊)가 올린 소지를 말한다.

5-1-10-1) 1711년(숙종 37) 해남현 현산면 풍헌장의 첩정

[1711년(숙종 37) 윤 진사尹進士의 종 필신必信이 간석지 개간을 위한 입안 발급을 요청함에 따라 현산면縣山面 풍헌장風憲長 오똥 씨가 관련자들과 함께 해당 토지의 주인 유무를 조사하여 보고한 첩정牒目.]

현산면縣山面 풍헌장風憲長이 조사 내용을 첩牒으로 보고하는 일.

서울 거주 윤 진사尹進士²⁰의 사내종 필신必信 명의로 올린 소지所志의 사연에 ‘해남현 현산면縣山面 백야지리白也只里 동남쪽에 조수潮水가 드나드는 곳이 있는데, 남쪽으로 의도蟻島까지, 동쪽으로 백생원白生員의 방죽 밖까지, 서쪽으로 두모포斗毛浦의 배 대는 곳까지가 예부터 주인 없는 개필’이라 합니다. 필신의 상전가에서 현재 바닷물을 막고 물을 대고자 소지를 올렸고 그에 대한 관의 처분으로 ‘주인이 있는지 여부를 상세히 알아보고 문서로 보고하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에 따라 삼색장三色掌을 데리고 자세히 조사하니 주인 없는 땅이 확실합니다. 이러한 연유를 첩으로 보고하는 일입니다. 절차대로 첩정牒目하오니 이 문서에 비추어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右 첩정牒目

행현감行縣監

신묘년(1711) 11월 29일 풍헌장風憲長 오똥[작명]

[제사] 과연 주인이 없다면 입안을 작성해 내줄 것. 29일. 담당 아전[色].

縣山面風憲長爲摘奸牒報事 京居尹進士奴必信名呈所志辭緣內 縣地縣山面白也只里東南潮汐出入處 南至蟻島 東至白生員堰外 西至斗毛浦船泊所 自古無主海澤 其矣上典家 今欲防塞蒙利爲良齊呈狀 則題辭內無主與否詳探牒報亦爲有等以 三色掌率良遣詳查 則無主的實是乎等以 緣由牒報爲臥事 合行牒呈伏請

照驗施行須至牒呈

右牒呈

行縣監

辛卯十一月二十九日 風憲長 吳[着名]

[題辭] 果若無主 則立案成出事

廿九日 色

20 윤 진사(尹進士) 윤두서(尹斗緒, 1668~1715)로 추정된다.

5-1-10-2) 1711년(숙종 37) 백야지 이정里正 외 2인의 초사

[1711년(숙종 37) 윤 진사尹進士의 사내중 필신必信의 개필 개간을 위한 입안 발급 요청과 관련, 실무 담당자들이 해당 개필 주인의 유무有無를 진술하는 초사招辭.]

신묘년(1711) 12월 1일 현산縣山 백야지白也只 이정里正 사내중 정금丁金 나이 〇〇.

겨린切隣²¹ 사내중 금을이金乙伊 나이 〇〇.

색장色掌 사내중 후봉厚奉 나이 〇〇.

아뢰옵니다. 서울 사는 윤 진사尹進士의 중 필신必信의 명의로 올린 소지에 “본 현縣 현산면 백야지리 동남쪽에 조수潮水가 드나드는 곳이 있는데, 남쪽으로 의도蟻島까지, 동쪽으로 백 생원白生員의 방죽 밖까지, 서쪽으로 두모포斗毛浦의 배 대는 곳까지가 예부터 주인 없는 개필입니다. 저의 상전가에 서 현재 바닷물을 막고 논물을 대고자 하오니 법에 따라 입안立案을 작성 발급해 주십시오.”라고 소지를 올렸은 바, 동同 개필이 정말 주인 없는 땅인지 현고現告²²하라 심문하셨습니다. 저희 백야지리 앞 바다 개필은 정말로 주인이 없는 것이 확실하오니 훗날 참고가 되도록 시행하실 일입니다.

아뢰. [좌촌]

아뢰. [좌촌]

아뢰. [좌촌]

관 [서업]

辛卯十二月初一日縣山白也只 里正 奴 丁金 年

切隣 奴 金乙伊 年

色掌 奴 厚奉 年

白等 京居尹進士奴必信名呈所志
內 本縣縣山面白也只里東南邊潮汐
出入處 南至蟻島 東至白生員堰
外 西至豆毛浦船泊所 自古無主海
澤仍于 矣上典家 今欲防塞蒙利
是白去乎 依例立案成給事 發狀爲

21 겨린(切隣) ‘겨린’이라고 읽는다. 가까운 이웃, 혹은 법률적 사안에 증인이 될 이웃을 말한다.

22 현고(現告) 범죄 사실이나 관의 질문에 대하여 나타나서 신고하거나 고발함.

有臥乎所 同海澤 果是無主之地
是喻現告亦 推問教是臥乎在亦 矣里
前洋海澤 果爲無主的實是白去乎
以憑後考施行教事

白[左寸]

白[左寸]

白[左寸]

官[署押]

5-1-10-3) 1711년(숙종 37) 해남현 입안

[1711년(숙종 37) 윤 진사尹進士의 사내중 필신必信의 개펄 개간을 위한 입안 발급 요청에 따라 실무 담당자들의 진술과 면임의 조사 보고를 거친 후 필신에게 발급한 입안.]

강희康熙 50년(1711) 12월 일 해남현 입안立案

입안을 발급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첨부한 과장課狀에 근거하여 각각의 초사招辭²³가 있었다. 동同 개펄에 대해 해당 면면의 면임面任에게 조사시킨 결과, 현산면縣山面 백야지리白也只里 동남쪽 바닷물이 드나드는 곳, 남쪽으로 의도蟻島에 이르고 동쪽으로는 백생원白生員의 방죽 밖에 이르며 서쪽으로 두모포斗毛浦의 배 대는 곳에 이르기까지가 예부터 주인이 없는 것이 확실하다는 보고牒報가 있었다. 따라서 동 개펄에 대한 권리를 위해 청원에 따라 윤尹씨의 중 필신必信에게 입안을 작성·발급하되 훗날 참고로 삼기 위해 엽질葉作²⁴을 관에 보관하고 즉시 입안을 발급한다.

현감 [서업]

康熙五十年十二月日 海南縣立案

▣(右)立案爲給事 粘連課狀據 各條招辭是

▣(置)有亦 同海澤 使該面面任摘奸 則縣山面白也只里

23 초사(招辭) 법관의 신문에 따라 사안에 대해 증언하는 진술서.

24 엽질(葉作) 엽질(葉秩)로도 쓰인다. 『유서필지』 「매득사출식(買得斜出式)」에 ‘엽질’을 ‘빗기치부책명(斜只置簿冊名)’이라고 주석하였다. 엽(葉)은 낱장을 의미하고 질(作)은 ‘관에서 작성, 보관하는 문서’ 혹은 ‘관의 확인이나 공증을 거친 증빙 문서’를 의미한다.

東南潮汐出入處 南至蟻島 東至白生員堰外 西至
▣▣(豆毛)浦船泊所 自古無主的實是如 牒報爲有等以
同海澤 依所訴 尹奴必信處 立案成給爲遣
以憑後考次 葉作官上 合行立案者
縣監[署押]

5-1-11) 1714년 윤 생원택 소지

[1714년(숙종 40) 갑오년에 윤 생원택에서 입지를 신청하는 소지.]

현내면縣內面 백 ... (원문 결락)... [좌촌]

삼가 소지를 올려 아뢰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문 결락)... 상전택에 오래 내려온 선산입니다. 산 안과 산 바깥에 수백 년 동안 나무를 심어 오래도록 길렀는데 근래 ... (원문 결락)... 나날이 민둥산이 되어가고 있습니다.²⁵ 중간에 경작할만한 땅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사대부가의 선산을 수백 년 동안 ... (원문 결락)... 함부로 차지하니 일이 매우 부당하기에 감히 이렇게 우러러 호소합니다. ... (원문 결락)... 북쪽 고개 위로부터 산을 따라 동쪽으로 꺾어지고, 북쪽으로는 우사치于沙峙 하천 아래에 이릅니다. 산봉우리 둘레는 옛날부터 나무를 심어 ... (원문 결락)... 곳입니다. 지금 주인이 없는 진황지陳荒地이니 다른 사람의 침범하여 경작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입지를 ... (원문 결락)...

관사주官司主께서 처분하실 일입니다.

갑오년[1714] 11월 일

[제사] 정말로 ... (원문 결락)... 백 년 동안 나무를 심어 ... (원문 결락)... 곳이라면 지금 비록 ... (원문 결락)... 어찌 감히 함부로 차지 ... (원문 결락)... 원하는 대로 입지를 성급해줄 일이다.

20일.

관 [서업]

縣內白▣... ...▣(左寸)

右謹陳所志矣段 白▣... ...▣ 上典宅久遠先山乙仍于 山內山外數百年樹

25 나날이.....있습니다 원문의 '취탁(就濯)'은 '일취탁탁(日就濯濯)'의 줄임말로, 소와 양이 초목을 헤쳐서 온 산이 반질반질 민둥산이 된 모양을 말한다. 『맹자』 「고자 상(告子上)」에 관련 고사가 나온다.

木長養之□... ..□乎 近□... ..□ 就濯之中間 不無可耕之地 而士夫家先山
 數百年□... ..□冒占 則事甚不當乙仍于 敢此仰訴爲白去乎 白□... ..□
 自北古介以上 緣山而東折以北 至於于沙峙 川流之下 山脚周回 昔日
 樹木□□之處 卽今無主陳荒之地 不許他人侵耕事立旨
 行下向教是事
 官司主 處分
 甲午十一月 日

(題辭) 果□言□如百年樹木□... ..□之地 則今雖□... ..□何敢冒占□...
 ...□願立旨成給事 卅日

5-1-12) 1715년 윤 진사댁 종 청일 소지

[1715년(숙종 41) 윤 진사댁 사내종 청일이 상전을 대신하여 개간 예정지인 녹산면 접산강 일대의 토지에 대한 입지를 신청하는 소지.]

현내면縣內面 백련동白蓮洞 윤 진사댁 사내종 청일淸一 [좌촌]

삼가 소지를 올려 말씀드리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녹산면祿山面에 있는 이른바 접산강蟻山岡은 형태가 평평한 대臺와 같으니 옛적 이른바 고평전륙高平田陸입니다. 동쪽은 작은 산에 기대있고 남쪽과 서쪽, 북쪽 3면은 모서리가 계단과 같은데, 모서리 아래는 민전民田이 있기도 하고 모서리 위부터 작은 산까지는 모두 묵고 황폐하여 예로부터 주인이 없었습니다. 개간하여 갈아먹을 계획을 하고 있으니 훗날 빙고하기 위해 입지를 성급하도록 명령해 주십시오.

영감께서 처분하실 일입니다.

을미년(1715) 2월 일 소지

[제사] 과연 주인이 없는 땅이고 묵고 황폐한 것이 확실하다면 청원한 대로 입지를 해줄 일이지만, 주인이 없는지의 여부를 적간摘奸한 후에 첩보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9일. 면임面任.

관 [서업]

녹산면 풍헌風憲과 약정約正의 서목

현내면 윤 진사댁 사내종 청일 소지에 의거하여 담당하고 있는 면면의 접산강이 주인이 없는지의

여부를 적간摘奸하였더니, 예로부터 주인이 없는 것이 확실하기에 첩보하는 일입니다.

강희 54년(1715) 2월 11일

풍헌장風憲長 윤尹 [작명]

약정 김금 [작명]

[제사] 주인이 없는 것이 확실하다면 잘 알아서 도부到付하라. 11일

관 [서업]

縣內白蓮洞 尹進士宅 奴清一(左寸)

右謹陳所志矣段 祿山面有所謂蝶山岡者 形如平臺 古所謂高平田陸也 東靠小山 南西北三面
則廉隅如砌 廉隅以下 則或有民田 而廉隅以上 至於小山 一望陳廢 自古無主 欲爲開墾耕
食計料爲白去乎 後考次立旨成給爲白只爲

行下向教是事

令監主 處分

乙未二月 日 所志

[題辭]果是無主之地 而陳廢的實 則依願立旨是在果 無主與否 摘奸後牒報宜當向事

初九日 面任

官(押)

祿山面風憲約正 書目

縣內尹進士宅奴清一所志據 掌面蝶山岡 無主與否摘奸 則自古以來 無主的實是乎等以 緣牒
報事

康熙五十四年二月初十一日

風憲長尹[着名]

約正金[着名]

[題辭] 無主的實 則知悉到付 十一日

官(押)

5-1-13) 1715년 윤 진사댁 종 청일 소지

[1715년(숙종 41) 윤 진사댁 사내종 청일이 상전댁을 대신하여 현산면 백야지 토지에 대한 입안을
분실하였으므로 이에 대해 입지를 해줄 것을 신청하는 소지.]

현내縣內에 사는 윤 진사택 사내중 청일淸一

삼가 소지를 아뢰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산면縣山面 백야지白也只의 동쪽으로는 우곡牛谷 큰 길로부터 산을 따라서 북쪽으로 봉비산鳳飛山 비탈을 거쳐 곧바로 초피사椒皮寺 골짜기에 이르며, 또 산을 따라 서쪽으로 장석長石 골짜기로 들어가 삼치三峙 골짜기 입구를 지나며, 바다를 따라서 남쪽으로 당산堂山을 둘러싸고 바깥 들머리를 에둘러서 다시 우곡에 이르는 주인 없는 진황지를 저희 상전택이 만력 원년 계유년(1573)에 소지를 올려 입안을 받아 지금 5, 6대에 이르도록 세를 거두고 사용해 왔습니다.

이 입안을 저희 상전께서 작년에 서울에서 내려올 때 가지고 왔는데, 지금 찾아보니 끝내 찾을 수가 없습니다. 혹 서울 집에 있는 것을 잊었는지 염려스러워 사람을 시켜 찾아보았지만 끝내 찾지 못하였습니다. 먼 길을 왕래할 때에 잃어버린 것이 확실하기에 감히 이렇게 우러러 호소하옵니다. 훗날 상고하기 위해 입지를 성급하여 주도록 명령해 주십시오.

행현감주행縣監主께서 처분하실 일입니다.

을미년(1715) 3월 일 소지

[제사] 내가 청원한 내용을 믿을 수 없으므로 상세히 조사하여 첩보할 일이다.

17일. 현내면 면임에게.

관 [서업]

현내면 풍헌風憲과 약정約正의 서목

담당하고 있는 면面의 백련동白蓮洞에 사는 윤진사택 사내중 청일의 소지에 근거하여 그 맥의 현산면 백야지의 입안을 잃어버린 것이 확실한 지 여부를 조사하여 보고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입안은 서울과 시골을 왕래할 때에 잃어버린 것이 확실하므로 이러한 연유로 첩보하는 일입니다.

강희康熙 54년(1715) 4월 일

풍헌장風憲長 박朴 [작명]

약정約正 정鄭 [작명]

[제사] 입안을 잃어버린 것이 확실하다면 다시 작성해줄 일이다.

30일. 도부到付.

관 [서업]

을미년(1715) 5월 2일.

현내면 백련동리 이정里正 사내중 모언개毛言介 나이 33세

두두인頭頭人 사내중 진명晉明 나이 64세

겨린[切隣] 사내중 검동檢同 나이 66세

아웁니다. 윤 진사댁 사내중 청일 이름으로 올린 소지 내용에, “현산면 백야지 동쪽으로는 우곡 큰 길을 따라 산을 따라서 북쪽으로 봉비산 비탈을 거쳐 곤장 초피사 골짜기에 이르며, 또 산을 따라 서쪽으로 장석 골짜기로 들어가 삼치 골짜기 입구를 지나며, 바다를 따라 남쪽으로 당산을 둘러싸고 바깥 들머리를 에둘러서 다시 우곡에 이르는 주인 없는 진황지를 저희 상전댁이 만력 원년 계유년에 소지를 올려 입안을 받아 지금 5, 6대에 이르도록 수용해 왔습니다. 이 입안을 저희 상전께서 작년 서울에서 내려올 때 가지고 왔었는데, 지금 찾아보니 끝내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혹 서울 집에 있는 것을 잊었을까 염려스러워 사람을 시켜 찾아보았지만 끝내 찾지 못하였습니다. 먼 길을 왕래할 때에 잃어버린 것이 확실하기에 감히 이렇게 우리러 호소하옵니다. 훗날 상고하기 위해 입지를 성급하여 주십시오.”라고, 입지 신청을 하였으므로 과연 사실인지 사실대로 현고現告하라고 추문推問하셨습니다.

저희들은 원래 윤진사댁 호수 아래에서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이 댁의 사내중은 그 상전이 서울에서 지낼 때 입안을 가지고 왕래하며, 타조打租할 때 몇 년 전에 잃어버렸다고, 일찍이 입지 신청을 할 때, 과연 직접 보았습니다. 입안을 잃어버린 것을 평소 듣고 보았으니, 명백하게 잃어버린 것이 사실이므로 증빙하여 훗날 상고하게 할 일입니다.

아웁

아웁

아웁

관 [서업]

 강희 54년(1715) 5월 2일 해남현 입안

이 입안은 훗날 상고하기 위한 일이다. 점련한 과장課狀에 근거하여 각 사람들의 초사 및 문장文狀이 있었다. “앞에서 말한 윤진사댁이 입안을 받은 곳이 주인 없는 공지空地를 기경起耕한 것이 맞는지의 여부 및 이미 입안을 받았다가 잃어버린 것이 맞는지의 여부를 상세히 조사하라.”고 추문하였다. 위 입안을 받은 곳은 한결같이 과장에 기록된 내용대로 본 현산면 백야지 우곡으로부터 당산에 이르며, 바깥 들머리를 에둘러서 다시 우곡에 이르는 땅에 대한 입안을 잃어버린 것이 확실하므로, 절린 과 면임에게 다시 추문한 후에 입안을 성급해주고 엽질藥作을 관官에 보관하여 증빙하여 훗날 상고하기 위해 이에 입안함.

행현감行縣監[서업]

縣內居 尹進士宅 奴淸一

右謹陳所志矣段 縣山面白也只 東自牛谷大路 循山而北由鳳飛山麓 直抵椒皮寺谷 又循山而西入長石谷 歷三峙谷口 遵海而南 包堂山繞外野頭 還抵牛谷無主陳荒之地乙 矣上典宅亦萬曆元季癸酉分 呈所志受立案 至今五六代收用爲有如乎 同立案乙 矣上典主 昨年自京下

來時持來爲有如可 今始搜出 則終不得之乙仍于 或慮忘在京家是白乎可 使人搜覓 亦終不得 其爲遠路往來時 遺失的實是白乎等以 敢此仰訴爲白去乎 後考次立旨成給爲白只爲

行下向教是事

行縣監主 處分

乙未三月日 所志

[題辭] 以汝矣所訴 不可取信 詳查牒報向事 十七日 縣內面任

官(押)

縣內面 風憲約正 書目

掌面白蓮洞居尹進士宅奴清一所志據 其矣宅縣山面白也只立案乙 闕失與否 查問牒報亦爲是教等乙以 同立案 京鄉往來時 闕失的實是乎等乙以 緣由牒報事

康熙五十四年四月 日

風憲長 朴[着名]

約 正 鄭[着名]

[題辭] 立案闕失的實 則改成出事 到付 卅

官(押)

乙未五月初二日 縣內 白蓮洞里 里正

奴毛言介 年三十三

頭頭人奴晉明 年六十四

切隣奴檢同 年六十六

白等 尹進士宅奴清一名呈所志內 縣山面白也只 東自牛谷大路 循山而北 由鳳飛山麓直抵椒皮寺谷 又循山而西 入長石谷 歷三峙谷口 遵海而南 包堂山繞外野頭 還抵牛谷無主陳荒之地乙 矣上典宅亦 萬歷(曆)元季癸酉年分 呈所志受立案 至今五六代收用爲有如乎 同立案 矣上典主 昨年自京下來時持來爲有如可 今始搜出 則終不得之乙仍于 或慮忘京家是乎可 使人搜覓 亦終不得 其爲遠路往來時 遺失的實是乎等以 敢此仰訴爲白去乎 後考次 立案成給爲只爲 呈立旨爲有臥乎所 果是實狀是喻 從實現告亦 推問教是臥乎在亦 矣徒等 素是尹進士宅戶下居生之人是如乎 同宅奴子 以其上典京居之時 持立案往來 打租之時 數年前闕失是如 曾呈立旨時 果以目見是白乎 則立案闕失 平日聞見之下 明白闕失的實是白去乎 以憑後考教事

白

官(押)

白

康熙五十四年五月初二日 海南縣立案

右立案爲後考事 粘連課狀據 各人等招辭及文狀是置有亦 上項尹進士宅受立案處 無主空地
起耕與否 及已受立案闕失與否 詳查推問是如乎 上項立案處 一依狀內所錄 本縣山面白也
只牛谷至堂山繞外野頭 還抵牛谷等地 立案闕失的實是乎等以 同切隣及面任處 更矣推問
後 立案成給 葉作官上爲遣 以憑後考次 合行立案者
行縣監(押)

5-1-14) 1742년 낙창군 방 노 이퇴 소지

[1742년(영조18) 임술년에 낙창군 방의 노 이퇴가 개성부에 올린 입지 신청 소지.]

낙창군洛昌君(미상~1761)²⁶ 방房의 노자奴子 이퇴二賚 [좌촌左寸]

삼가 소지所志를 올리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 방에서 여러 해 동안 밋자리를 구하다가 본부本府 서면西面 묵지동墨只洞에 있는 동남쪽 내룡
來龍에 을좌신향乙坐辛向이며 득수처得水處는 신방辛方(서북쪽)이고 파수처破水處는 경방庚方(서남쪽)
인 언덕을 얻었습니다. 본래 주인 없는 황무지이므로 이에 감히 호소하오니 입지立旨를 성급成給해 줄
것을 특별히 명령해 주십시오. 처분해 주십시오.

개성부開城府 경력經歷 처분.

임술년 11월 일. 소지.

[제사] 입지를 성급할 것. 9일.

관官 [서압署押]

洛昌君房 奴子 二賚 [左寸]

右謹陳所志矣段 矣房是亦積年求山是白如可 本府西面墨只洞巽卯龍乙坐辛向辛
得水庚破之原乙 占得爲白去乎 自是無主陳荒處乙仍于 茲敢仰訴爲白去乎 立旨成給事 特
爲行下爲白只爲

26 이당(李樞, ?~1761) 종친으로 여러 차례 연행(燕行)을 다녀왔다.

行下向教是事

開城府 經歷主 處分

壬戌十一月 日 所志

(題辭)

立旨成給

向事

初九

5-1-15) 경신년 종 옥산 소지

[경신년에 사내종 옥산이 기경지에 대해 입지를 신청하는 소지.]

화산면花山面에 사는 사내종 옥산玉山

삼가 소지를 올려 말씀드리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본래 전토田土가 없는 사람입니다. 계묘년 양안量案 및 갑술년 양안에 주인 없는 진황지가 현산면縣山面 선석동원仙石洞員에 있는데, 로자露字 진전陳田 2마지기와 같은 자호字號의 콩밭 10마지기가 주인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정미년 전부터 기경起耕하기 시작하여 갈아먹으면서 몽리蒙利하여 세를 거두고 있습니다.

훗날 아무 사람이나 자신이 입안을 받아놓은 곳이라고 하거나, 위조문기를 가지고 송변訟下하는 폐단이 있게 된다면 그때 드러내어 밝히기 위해 입지를 성급하여 주십시오. 요즘은 작은 땅덩어리도 금銀과 같은 때이고 사람마음을 헤아릴 수 없으니, 양반이나 상한常漢(상놈) 중에 행여 잡담雜談하는 일이 있을 지라도 기경자起耕者가 주인이 되는 법이 법전에도 실려 있으니, 전토가 없는 이 사람의 사정을 세세히 헤아려주십시오. 몽리蒙利하여 세를 거두면서 갈아먹는 일을 밝히기 위해 입지를 성급하도록 명령해 주십시오.

영감주令監主께서 처분하실 일입니다.

경신년 1월 일 소지

[제사] 주인이 없는지의 여부를 상세히 조사하고 첩보牒報하여 입안해 줄 일이다.

28일. 약정約正에게.

관[서업]

화산면에 사는 사내종 왕산往山

이 소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본래 전토田土가 없는 사람인데 지난 계묘년부터 현산면縣山面 선

돌동원仙廻洞員에 있는 로지露字 밭 2마지기와 주인이 없는 같은 자호字號의 콩밭 10마지기가 주인 없는 진황지陳荒地이므로 집경執耕하여 갈아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면 탄동리炭洞里에 사는 사내중 삼철三哲이라는 사람이 먼저 집경하여 기경하기 시작하였다고 함부로 침해하고 있습니다. 훗날 다시 침해하는 일이 있을 지라도 훗날 상고하기 위해 입지를 성급하도록 명령해 주십시오.

행현감주行縣監主께서 처분하실 일입니다.

정미년 윤4월 일 소지

[제사] 선후先後를 분간하여 판결해 주기 위해 데려올 일이다. 12일

관 [서업]

花山面居 奴玉山

右謹陳所志矣段 矣身本無田土之人 癸卯量案及甲戌量案 無主陳荒處在於縣山面仙石洞員是白居乎 伏在露字陳田二斗落只 同字田種太十斗庫 無主爲白有去乙 自丁未年前爲始起耕耕食 蒙利收稅爲白有如乎 日後良中 某人是乃 其矣立案處是如稱云爲白去是乃 僞造文記 若有訟下之弊是白去是乃 發明次以 立旨成給爲白乎於 此時寸土如金之日 人心不測 兩班及常漢語中 幸有雜談爲乎喻置 起耕者爲主之法 載在法典 是白去乎 以此無田土之人情理 細細叅商教後 蒙利收稅耕食事發明次 以 立旨成給行下爲只爲

行下教是事

令監主 處分

庚申正月 所志

[題辭] 無主與否 詳查牒報 以爲立案之地事 十八日 約正

官(押)

花山面接 奴往山

右所志矣段 矣身本以無田土之人以 去癸卯年分 縣山面仙廻洞員伏在露字田二斗落只 無主同字田種太十斗落只等 無主陳荒爲白有去乙 執耕耕食爲有去乙 同面炭洞里居奴三哲稱名人亦 先執起耕樣以 橫侵爲白臥乎所 日後如有更侵之舉是白乎喻良置 後考次以 立旨成給爲白 只爲

行下向教是事

行縣監主 處分

丁未閏四月 日 所志

[題辭] 先後分揀決給次以 奉來事 十二日

官(押)

5-1-16) 을미년 김덕민 소지

[을미년에 김덕민이 매득한 토지에 대해 입지를 신청하는 소지.]

화산면花山面에 사는 김덕민金德敏

삼가 소지를 아뢰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지난 신해년에 같은 면에 사는 사내중 기생_{己生}에게 ...(원문 결락)... 밭 5마지기를 매득_{買得}하였는데, 이 밭은 윤 니산택에서 입안을 받아놓은 곳이라고 하면서 이 택에서 빼앗아 갔습니다. 때문에 그 대신에 같은 자호_{字號}의 밭 2마지기와 묵은 곳을 함께 기생에게 받아서 지금 갈아먹고 있습니다. 훗날 기생이 다시 계획을 꾸며 잡담_{雜談}하는 폐단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치를 논하여 입지를 성급하도록 명령해 주십시오.

영감주_{令監主}께서 처분하실 일입니다.

기미년 2월 일 소지

[제사] 입지해 줄 일이다. 22일

관 [서업]

花山面居 金德敏

右謹陳所志矣段 矣身去辛亥年分 同面居奴己生

處_{田伍斗落只庫乙} 買得爲白有知乎

同田尹尼山宅立案處是如 同宅良中 拒奪乙仍于

其代乙 同字田二斗落只及陳處并以 己生處取執 時方畊食爲白在果 日

後己生 更生謀計 雜談之弊是白喻良置 論理立旨行下爲白只爲

行下向教是事

令監主 處分

己未二月 日 所志

(題辭) 立旨事 廿二

5-1-17) 기유년 고망금 소지

[기유년에 고망금이 기경지에 대해 입지를 신청하는 소지.]

현산면縣山面에 사는 고망금高忘金 【병오년 호구가 관철되어 있어 신호구를 제출하지 않음】

삼가 소지를 아뢰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본래 전답이 없는 사람인데, 동면同面 선돌동원仙
芻洞員 양안量案의 주인 없는 진황전陳荒田인 치자致字 전답으로 꺾보리[皮牟]를 심은 7마지기 및 논 3
마지기 곳을 지난 무인년에 기경起耕하여 갈아먹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다른 사람이 문기를 위
조하거나, 지금 이번 적선積善하는 시기에 훗날 밍고하기 위해 입지를 성급하도록 명령해 주십시오.

영감주令監主께서 처분하실 일입니다.

기유년 9월 일 소지

[제사] 훗날 상고하기 위해 시행할 일. 9일

관[서업]

縣山面接 高忘金 [丙午戶口官納以 新戶口未出]

右謹陳所志矣段 矣身本無田畝之人以 同面仙芻洞員量案無主陳

荒田庫 致字田畝皮牟七斗落只及畝三斗落只庫乙 去戊寅年分 起畊食爲白去乎

萬日[一]良中 他人等僞造文記爲白去乃 今此積善之時 後考次以 立指[旨]

成給爲白只爲

行下向教是事

令監主 處分

己酉九月 所志

(題辭) 後考施行事 初九

官(押)

5-1-18) 기해년 대둔사 승려 새수 소지

[기해년 대둔사 승려 새수가 서실입지를 신청하는 소지.]

대둔사大菴寺 승려 새수蠶守

삼가 소지를 올려 사정을 말씀드리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승려인 제가 지난 정유년에 승경을 구

경하기 위해 출타하였을 때, 승가僧家에 전해 온 녹산면泉山面 덕정원德井員 경지慶字 4마지기 논이 문기를 본리本里의 진도 삼촌면 덕정리에 보관해 두었는데, 어린아이가 우연히 실수로 불을 내서 다 태웠습니다. 이 때문에 감히 우러러 호소하오니, 헤아리신 후에 빙고憑考하기 위해 입지를 성급하도록 명령해 주십시오.

사또께서 처분해주십시오.

기해년 1월 일

[제사]

입지를 발급해 줄 것. 30일

관 [서업]

大菴寺僧 璽守

右謹陳所志情由事段 僧矣身 去丁酉

年分 翫景次出去時 僧家流來畚四斗落只

泉山面德井員慶字庫文記 藏置于本里

玆島三寸面德井里 矣兒童偶然失火燒火

仍于以 敢此仰訴爲白去乎 叅商教是

後 憑考次 立旨行下爲白只爲

行下向教是事

使道主 處分

己亥正月 日

(題辭) 立旨 卅日

官(押)

5-1-19) 미상년 소지

[주인 없는 해택에 대해 입안을 신청하는 소지.]

...(원문 결락)... 백 생원白生員의 제방 밖에 이르고, 서쪽으로 두모포斗毛浦 선船...(원문 결락)... 해택海澤을 저의 상전택이 지금 바다를 막아서 몽리蒙利하고자 합니다. ...(원문 결락)... 관례에 따라 입안을 성급하도록 명령해 주십시오.

명령하시도록 현감주縣監主께서 처분하실 일입니다.

...(원문 결락)... 12월 일 소지

[제사] 주인이 없는지의 여부를 상세히 조사한 후 입안을 성급해 줄 일이다. 23일 면임面任에게.

...**□**至白生員堰外 西至斗毛浦船**□**...

...**□**海澤乙 矣上典家亦 今欲防塞蒙利**□**...

...**□**乎 依例立案成給事

行下爲白只爲

行下向教是事

縣監主 處分

□**□**十一月 日 所志

[題辭] 無主與否詳探後 立案成給事 廿三 面任

2. 개간지 소유권 쟁송

5-2-1) 1672년 현산면 거인 등장

[1672년(현종 13)에 현산면 사람들이 노 순복의 토지 도매盜賣에 관련하여 해남현에 올린 등장.]

현산면縣山面에 사는 사람들 등장等狀

삼가 소지所志를 올리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들 각각은 민망한 마음입니다. 저희들은 같은 면면에 사는 노奴 순복順卜이 외야두원外也頭員의 25마지기인 곳을 방매放賣하겠다고 하여, 저희들이 각각 값을 주고 매득買得하여 보리를 심어 경작하였습니다. ...(원문 결락)... 노 순복은 영암靈岩 땅 보길리甫吉里²⁷로 이사하여 살고 있습니다. 문기文記가 있는 조상祖上의 밭이라고 거짓말을 하여 팔아 먹은 후에 다른 관官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밭은 현縣에 사는 윤 정자尹正字²⁸ 댁에서 입안立案을 받은 밭이라고 하기에 양안量案을 살펴보니, 정말 이 댁에서 입안을 받은 곳임이 분명하였으므로 이번에 심은 보리를 추심해갔습니다. 저희들이 노 순복의 거짓말을 믿고 매득한 것은 분명한 진실입니

27 지금의 전라남도 완도군 보길면.

28 윤 정자(尹正字) 윤인미(尹仁美, 1607~1675).

다.

위의 순복의 전답이 저희 마을 근처에 있는데, 지금 다른 사람이 병작^{병작}하고 있습니다. 매득한 밭을 그의 현재 남아있는 밭으로 대신하여 보리로 마지기를 계산하여 모두 찾아내주어서 갈아먹도록 해 주십시오. 사대부가 입안을 받은 곳을 무식한 촌사람에게 몰래 팔아먹은 죄를 각별히 무겁게 다스리시고, 그리고 그의 현재 남아있는 밭을 갈아먹을 수 있도록 살펴서 명령하시기를 바랍니다. 명령하실 일입니다.

영감^{영감}님께서 처분해 주옵소서.

임자년(1672, 현종 13) 5월 일. 소지. 노^노 卍卍, 노 춘신^{春身}, 노 밀양봉^{密陽奉}, 노 돌복^{돌복}, 노 수복^{수복} 守卜, 노 출복^{출복}, 노 축입^{축입} 入 끝.

[제사]

사대부가의 전답을 몰래 팔았다가 이미 되찾았으니, 그가 판 밭은 그의 밭을 대신 주는 것이 사리에 마땅할 것이다. 그의 전답이 과연 근처에 있으면 그 크기를 헤아려 서로 의논하여 대신 받는 것이 피차간에 편리하고 합당할 것이며, 그 소출도 헤아려 의논하여 거두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26일.

관^관 [서업]

[뒷면]

우동^{牛洞}의 방축^{防築} 터를 되찾을 때의 마을 사람 등장^{等狀}

縣山面居人等狀

右謹陳所志 矣徒各各悶望情理^{矣徒等} 同面居奴順卜
處外也頭員種^{二十五斗落只庫乙} 放賣之意 矣徒
等亦 各各給價買得 種牟起畊食^則
奴順卜段 移居于靈岩地甫吉里居生乙仍于 有文
記祖上田庫是如 虛稱賣食後 他官居生爲白乎^{同田}
庫 則縣居尹正字宅立案處 量案相考 則果爲
同宅立案處明白是白乎等以 今種牟禾推尋爲臥乎所
矣徒等段 奴順卜虛言 信聽買得 公然虛實是白如乎
上項順卜田畝等 矣徒里近處 時方他人并作爲白置 買得
田庫 代其矣時存田庫斗數 計之牟禾 并推尋畊食
爲白乎^{他矣士大夫立案處} 期因無識村^{(氓)盲} 隱然賣食
之罪 各別重治爲白遣 其矣時存田庫畊食事乙 叅商
行下爲白只爲
行下向教是事

令監主 處分
 壬子五月 日 所志
 奴[□]奴[□]春身
 奴蜜陽奉奴^ㄷ卜
 奴守卜
 奴出卜
 奴^于入 印
 [題辭]
 士夫家田畝盜賣爲有
 如可 既已還推 則其矣所
 賣田庫代 他田代給
 事理當然是置 其
 矣田畝 果在近處
 則量其大小 相議代
 捧 彼此便當是^旵
 其所出段置 量議
 收捧宜當事
 廿六日
 官 [署押]
 [背面]
 牛洞防築基還推時 里人等狀

2) 1675년 노 홍렬 의송

[1675년(숙종 1) 8월 노奴 홍렬洪烈이 상전 윤이석尹爾錫을 대신하여 만력 연간에 관의 공증을 받은 해남 백야지白也只 땅의 모점冒占 사건과 관련하여 채도남蔡道男과 김순복金順卜 형제를 처벌해 달라고 순찰사에게 청원하는 의송議送.]

□…□²⁹ 노奴 홍렬洪烈.

□…□소지所志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남海南 현산면縣山面 백야지白也只라는 이름의 땅에 제 상전의 선대에 입안立案을 발급받아 □…□ 농소農所가 있습니다. 그 입안에 기재된 토지의 사방

지형지물은 남쪽의 당산堂山에서부터 북쪽으로 최백손崔白孫의 언담堰畓³⁰부근 초피사椒皮寺□…□까지, 동쪽의 우동牛洞 큰 길에서부터 서쪽으로 해변까지이고 입안이 발급된 연대는 만력萬曆 4년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와 같은 해변 □…□ 모두 □…□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땅이 상전댁 농소가 되어 오랫동안 전래된 유래를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사동寺洞 아래 방죽에 물을 저장하고 농사지어온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동同 4면面 □…□ 대개 당초부터 상전주上典主께서 서울에서 벼슬을 하시기도 하고 □…□ 하셨기 때문에 그간에는 노복奴僕들이 간수看守하기도 하고 혹은 친족들이 감독하기도 하였으나, 간수하는 일을 타인他人으로 바꾸고 옮겨 서로 출입하는 자가 □…□ 연기年紀이므로 그간 발두둑을 나누고 찢어서 모점할거冑占割據하는 폐단이 다수 있었습니다. 하오나 혹자는 옛날부터 살던 곳이라 하고, 혹자는 조상으로부터 전래된 것이라고도 하며 또 혹자는 자기가 산 것이라면서 각각 문기文記를 만들어 증험인 것처럼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하여 저의 대상전주大上典主³¹께서 늘 한번 추심하여 바로잡고자 하셨으나, 남북南北으로 분주하고 집안일로 미처 겨를이 나지 않을 때이라 정말로 전장田庄의 일애까지 여력이 미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지난 임자년(1672)에 상전³²께서 잠시 농장에 가셨을 때 그 무리들의 문권을 몇몇 찾아보시고는, 누대에 걸친 마름노畝音奴의 자손과 노배奴輩, 비부婢夫, 몇몇 호戶의 하인배下人輩가 각자 땅을 숨기고 빼돌리고 불법으로 점유하고 정체를 바꿔 훔쳐 팔기까지 한 일을 대강 찾아 다스리셨습니다.

대개 □…□ 순복順卜·순룡順龍이라는 상놈 형제는 본시 말과 글에 능하여 그 간교하고 외람됨을 예측할 수 없는 □…□ (상전댁이) 관의 공증을 받은 지역인 외야두外野頭 강薑자 원員 밭 73부負 되는 곳을 그가 매득買得했다면서 여러 번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본관本官 사포께 정소하여 감색監色 대동 하에 대장책大帳冊³³을 지니고 함께 나와 조사하고 피차인彼此人과 한 자리에서 증험하고 비교해보니, 강薑자 토지 항목 중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순복이라는 이름자는 전혀 없었습니다. 동 순복이 말하는 양안量案 □…□ 문기文記에 기재되었다 하는 이른바 매화梅花라는 이름자 역시 전무했으며 또 그가 말한 73부負의 밭 역시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순복은 이른바 매득했다는 문기를 가지고 타처他處로 나가서는 탈이 났다면 오지 않고 있습니다. 동 순복 또한 그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을 위조하려한 것이 바로 탄로 날까 두려워 우선 피하고 나 타나지 않는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동 순복의 친동생으로 글을 아는 순룡만 나왔는데, 여러 눈이

29 □…□ 1675년 12월 동일인의 소지와 1676년 소지를 참고하면 이 훼손된 부분은 '현산(縣山) 사는 윤 정자댁(尹正字宅)'로 복원할 수 있다. 윤 정자는 윤이석(尹爾錫)을 말한다.

30 언담(堰畓) 바닷물이 드나드는 개펄에 독을 쌓아 만든 논.

31 대상전주(大上典主) 윤인미(尹仁美, 1607~1674)로 추정된다.

32 윤이석(尹爾錫, 1624~1694)로 추정된다.

33 대장책(大帳冊) 토지대장인 양안(量案).

보는 곳에서 함께 고찰하고 조사한 결과 전혀 트집 잡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저 말하기를 “우리 형이 이런 터무니없는 일을 하였으니 일이 매우 염려스럽다.”하며 하늘을 우러러 자탄하였습니다. 죄상을 조사한 박 별감林別監께서는 이러한 경위를 낱낱이 들어 보장鞫狀을 올리셨습니다.

대체로 순복의 아버지는 본래 소금 굽는 것을 업으로 삼은 자로, 외야두막이 입안 받은 장등과長登坡 아래쪽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언덕 상하좌우上下左右에 조금씩 땅을 일구어간 것인데, 처음 상전택 입안 지역에 의탁해 살면서 ‘병작并作’이라 하면서 개간하였으므로, 감히 다른 마음을 먹지 않았습니다. 대수가 멀어지고 세월이 오래 지난 후에는 사실관계가 희미해졌을까 싶어 요행을 바라고 감히 불법으로 점유할 마음을 내게 되었고 ‘산 것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지경에까지 이른 것입니다. 그러다 양안을 조사해 본 후 사실이 드러나자 말도 없이 물러났습니다. 이것을 보면 위 순복이 명문明文을 위조하여 사대부가에서 입안을 받아 누대에 걸쳐 소유해 온 농소의 밭을 탈취하려고 했던 정상이 의심의 여지없이 확실하니 극히 놀랄 만한 일입니다. 장차 관에 정소하여 엄히 다스림으로써 일벌백계 하려는데 순복 형제가 스스로 자신들 죄가 가볍지 않음을 알고는 해도海島로 달아나 종적이 간 데 없으므로 찾아내어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대개 모점할거冒占擄據의 폐단을 저지른 것은 순복 무리만이 아닙니다. 이 농소가 여러 세대 동안 비어 있었고 그들의 손에 일임되어 있었으므로 종놈들이 다수 정체를 바꾸어 사고팔고 숨기고 빼돌리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사대부가의 오래된 농장으로 종놈들이 간수하는 곳은 서울과 지방을 막론하고 으레 이러한 근심이 많습니다. 이런 ■■ 몇몇을 찾아내 다스리시고는 저의 대상전주께서 조만간 이 농장으로 이주하시어 그 때부터 점차로 찾아내 바로잡을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러다 계축년(1673)에 이 농장으로 이주하신 후 병환이 점차 위독해지시는 통에 갑자기 금일의 상황에 처했으므로 농장의 매우 심한 혼란과 착오를 연이어 한 번 바로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상전께서 입안 받은 지역의 사면四面 측량 내용을 살펴보니, 종놈들과 호를 이루고 사는 몇몇 상놈들이 땅을 숨기고 빼돌려 매매한 것이 근년近年의 배가 되는 터무니없는 일이 벌여졌고, 본래의 전답과 비교하니 반절에 곱절이 더해졌으니 진실로 매우 놀랍고 괴로운 일입니다. 더욱이 위에서 언급한 순복 등이 문제를 일으킨 외야두 땅은 임자년에 이미 관에 고하여 바로잡은 곳인데도, 종놈과 약간의 상민들이 순복 형제가 자신들에게 판 것처럼 각자 백문白文³⁴을 만들어 거집據執³⁵하고 있었습니다. 하여 상전택의 본초 입안과 임자년에 관에 정소하여 감색監色과 양안을 조사한 후 올린 보장鞫狀을 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대조하여 바로잡아 주니 그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죄를 자복하기에 일일이 바르게 고쳤습니다.

34 백문(白文) 관의 공증을 받지 않은 문기. 백문문기라고도 한다. 관의 공증을 받은 관사문기(官斜文記)의 대(對)가 되는 용어이다.

35 거집(據執) 강제로 점유하고 있는 것.

게다가 입안 중 백호³⁶ 내에 장석동^{長石洞}이라는 땅의 검축자와 호號자가 있는 원뚝은 입안 내의 땅 중에서도 더욱 긴요한 곳입니다. 상놈 채도남^{蔡道男}이라는 자가 또한 글에 능하고 교활한 것이 순복의 무리들보다 심한 자로, 위 장석동 땅을 자신이 샀다고 하며 거의 다 훔쳐 팔았습니다. 하여 일일이 추심해 보니 이른바 (도남에게서) ‘샀다’는 곳은 모두 상전댁 사내종들과 계집종의 남편과 근처에 사는 사람이었고, 도남이란 자는 이미 먼 곳으로 떠난 지 오래였습니다. 각 무리들이 말하는 문기^{文記}라는 것은 모두 새로 만든 백문^{白文}이니, 이 또한 도남이 판 것처럼 각자 문기를 만들어서 근거로 삼으려는 것이었습니다. 이 일과 위의 외야두 일은 그 방법이 명백하게 같은지라 각 무리들이 말도 못하고 죄를 자복하여 하나하나 찾아 바로잡았습니다.

대체로 혹자는 ‘조상에게 물려받은 것’이라 하고 혹자는 ‘양안에 기재된 것’이라 하고 또 혹자는 ‘매득^{買得}한 것’이라 합니다. 그러나 이른바 ‘조상에게 물려받았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저의 상전댁이 만력^{萬曆} 초년에 입안을 받아 이 땅을 차지하고 농장을 세운 후에 사람들이 다수와 의지해 살면서 조금씩 일궈가며 병작^{并作}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세대가 멀어지고 세월이 오래 지난 후에 종놈과 근처에 사는 사람을 막론하고 이곳에 거주하는 자들이 오랫동안 땅이 비어 있음에 요행을 바라고는 점차 생심을 내어 구획을 나누고 전래되는 것 모양으로 문기를 만들어 근거로 삼은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문기라는 것을 살펴보면 황당한 1장의 문기 외에 모두 본문^{本文}기^記가 없고, 그 작성연대를 살펴보면 모두 근년의 문기이니 저의 상전댁이 농장을 세운 후에 들어와 살았다는 사실이 의심할 것 없이 명백합니다. 고금^{古今} 세상에 위조문기^{僞造文記}라는 4글자가 없다면 그만두겠지만, 있다면 이 무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로 논한다면 그저 터무니없는 일이 아니라 응당 모점^{冢占}의 중죄가 있는 것입니다.

또 이른바 ‘양안에 기재된 것’이라고 일컫는 것은 한층 더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대개 한가하고 넓은 곳이면 양반의 전토^{田土}도 있고 백성의 전토도 있으나 자연히 밭두둑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경계가 잇닿아 있는 땅이라 하더라도 김 아무개도 양안에 올리고 이 아무개도 양안에 올려 피차가 함께 섞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은 안팎의 백야지, 외야두^{外野頭}, 의도^{蟻島}, 당산^{堂山}, 장석동 등의 곳으로, 만력 초년에 저의 상전댁에서 입안을 발급받은 뒤 얼마간은 개간하고 또 얼마간은 병작으로 주었습니다. 그런즉 이 입안에 적힌 사방 경계 내에는 본래 한 치의 밭 한 자의 논도 다른 이의 것이라고는 없었습니다. 다만 여러 세대에 걸쳐 비워두고 그자들의 손에 일임해 두었으므로 중간에 숨기고 빼돌리고 훔쳐 파는 등등의 터무니없는 일이 한 둘이 아니었음은 이미 앞에서 아뢴 바 있습니다.

36 백호(白虎) 본래는 주산(主山)에서 갈려나간 오른쪽 산줄기를 말한다. 여기서의 땅의 서쪽 경계를 일컫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른바 양안에 올렸다는 것 또한 거짓을 꾸며 위조한 것이고, 설혹 진짜로 그들 이름을 양안에 올렸다고 하더라도 이 역시 (땅이) 비어있을 때 그들이 병작하고 있었던 연고로 당시 경작자로서 우선 기록하였는데, 매년 같은 이름으로 되풀이되다보니 세월이 오래된 후에는 점점 자기 물건으로 만들려는 마음이 생겨난 것이 명백무의明白無疑합니다.

더욱이 계묘년과 갑술년 양안의 연대는 상전택의 만력 초 입안의 연대보다 나중의 것으로 비단 수십 년의 시차가 벌어지는 것만이 아닌 즉, 이는 상전택에 입안한 곳을 몰래 그들 이름으로 올리고 이를 근거로 변동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계책으로 삼았으나, 그 계갑양안癸甲量案의 연대가 상전택 입안의 연대와 시차가 매우 멀다는 것을 아주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진실로 이른바 제 귀를 막고 방울을 흠치는 자³⁷이오니 이것으로 논한다면 소위 ‘양안에 올렸다고 말하는 자는 터무니 없을 뿐 아니라 옹당 목록冒錄³⁷죄에 해당하는 무거운 형률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근래 “토지에 대한 입안을 발급하는 일은 들어주지 않는다.” 라고 하는 법은 그저 근래에 나온 것으로, 무단武斷한 무리들이 값싼 입안을 다량 발급 받아 넓은 땅을 차지하는 수단으로 삼는 사례가 번성하여 분란의 폐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찌 사대부가에서 만력 초에 받은 입안으로 누대에 걸쳐 전해 내려온 문기를 이름이겠습니까.

“양안 내용대로 일괄 따른다.” 운운하는 것 또한 위에서 언급한 대로, 한가하고 넓은 전토에 김 아무개 이름으로 올린 곳을 이 아무개가 빼앗으면 양안에 기록된 바를 고찰하여 그 내용대로 따르기 때문입니다. 어찌 사대부가에서 오래 전에 입안 받은 땅을 상놈 무리들이 누대 동안 비어 있는 틈을 타 몰래 자기 이름을 올려서 자기 물건이라 칭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더구나 계묘년 갑술년의 양안과 만력 초년은 시기의 선후가 한참 멀건만, 어찌 사대부가에서 만력 초에 발급 받아 누대에 걸쳐 내려온 입안을 따르지 않을 수 있으며, 입안 몇 십 년 후에 상놈들이 답습하여 몰래 이름을 올린 양안이 기필코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로써 논한다면 그 선후와 경중輕重, 주객主客, 진위眞僞는 변별할 것도 없이 자명합니다.

대체로 사대부가 선대에 입안을 받아 누대에 걸쳐 전래된 땅을 변변치 못한 상놈무리가 땅이 비어 있는 틈을 타 발두둑을 갈라 나눠가진 교활하고 간사하며 일고의 근거도 없는 일이니 참으로 비통하고 놀랍습니다. 그러므로 위에서 언급한 외야두에 있는 당초 순릉 무리가 모점한 곳에 대한 것으로 상전택에서 임자년에 본관本官께 올린 소지와 함께 감색監色과 함께 가서 조사한 후에 작성된 보장報狀을 아울러 첨부하여 올리웁니다. 지금 상전택의 형세가 매우 고단孤單하고 요즘 인심은 이전보다 배나 예측할 수 없습니다. 혹여 이 무리와 모인某人들이 때를 틈타 사변을 만드는 폐단이 있더라도, 채도남과 김순복 형제 이 3인을 각별히 엄한 제사題辭와 배관背關³⁸으로 잡아 가두고 엄히 다스림으

37 목록(冒錄)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기록한 것.

로써, 하방遐方의 무례하고 질 나쁜 무리들의 사대부가를 침해하고 옥보이며 공의公義를 범하고 사정私情을 내세우는 등의 전해 내려오는 습성을 징계하도록 분부하여 주실 일입니다.

순찰사도주巡察使道主 처분.

을묘년(1675) 8월 일 의송議送

[제사] 만력 초 입안과 누대에 걸쳐 전해지는 전답이 중간의 공백으로 인하여 타인이 불법 점유하는 폐단이 많다는 폐단은 그 형세가 실로 그러하다. 그래서 농장을 지키는 종들이 (땅을) 훔쳐 팔기까지 하는 일은 서울과 외방의 사대부 농장에 으레 존재하는 근심거리이다. 김순복 형제와 채도남의 불법점유는 매우 놀랍고 비통하며, 혹여 양안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트집을 잡을지라도 계갑양전은 모두 만력 입안 후에 있었으니, 양안에 자기 이름을 모록冒錄하여 점유를 도모한 계책임이 명백무의明白無疑하다.

소지의 내용을 일일이 상고相考하고 상항上項 김순복 형제와 채도남 등을 잡아 가두어 가을 순력巡歷 때 직접 형문刑問하고 금단禁斷할 수 있게 하라. 각인各人들이 모점冒占한 전답과 모록冒錄한 양안 등등을 아울러 일일이 찾아 고치되 결송입안決訟立案을 발급하여 나중에 다시 침노하는 폐단이 없도록 하라. 지난 해 이 집안이 겪은 재앙은 사람들이 공분하는 바이다. 그들의 세전世傳 전답 또한 보유할 수 없었을 것이니 진실로 개탄스럽다. 각별히 착실하게 거행하라. 해남海南에서. 25일.

겸사兼史[署押][전라도관찰사지인全羅道觀察使之印]

□…□(縣居尹正字)奴洪烈
□…□(所)志矣段 海南縣山面白也只稱名地良中 自是矣上典先世立案□…□
□…□之農所是白如乎 槩其立案中四面周回段 南自堂山 北至崔白孫堰畚邊椒皮寺 □…□
□…□(東自)牛洞大路 西至海邊 而立案年歲 則即是萬曆四年是白置 其時如此海邊□…□
□…□渾是□…□乙 不言可知叱分不喻 其爲上典宅農所 傳來久遠之由乙 尤此可見是□…□
□…□寺洞下防築貯水 已爲久遠耕食爲旡 同四面□…□
□…□乎矣 蓋自當初上典主教是 或仕宦京洛爲旡 或□…□
□…□仍于 其間或以奴僕看守爲旡 或以族屬監事是乎矣 他人之換看移守 互相出入者
□…□年紀是乎等乙以 其間多有分畦裂畝 冒占割據之弊是乎矣 或稱舊居爲旡 或稱傳來爲旡 或□
己買得是如 至於各造文記 若爲證驗者是去乙 矣大上典主教是 每欲一番推正 而南北奔走

38 배관(背關) 관문의 이면에 제사를 기록하는 것. 이 문서는 관찰사에게 올린 의송이므로 해당 지방 수령, 즉 해남 현감에게 공문을 발송해 달라는 의미이다.

家事

未違之際 實無暇及於田庄之事是白如可 去壬子年間 上典主 暫時駐庄之時 推見渠輩若干文券

則累代舍音奴子孫及奴輩婢夫 若間戶下人輩 各有隱漏 冒占換身 盜賣之事是去乙 大槩推治大槩□…□順卜順龍常漢兄弟者 本是能文能言 奸濫莫測之□…□(白置 同上典宅立)

案處 外野頭薑字員田七十三卜庫乙 其矣買得是如 多般稱冤是白去乙 呈本官監色眼同 大帳冊持是遣

□時出來摘奸 彼此人處 一時打驗相考 則自薑字始 終所謂順卜名字全無爲白乎旡 同順卜稱云 量

□…□文記所付是如爲在 所謂梅花名字 亦爲全無爲白乎旡 所謂七十三卜田庫 亦爲全無爲白去乎

順卜段 所謂得稱云 文記并以持是遣 他處出去是如 稱頃不來爲白齊 同順卜亦 其矣偽造不測之狀 恐

即敗露是乎乙可 姑避不現之狀 明若觀火爲白去乎 同順卜同生弟能文者 順龍叱分來到 十日所視處 同

參考驗之後 同順龍亦 絕無可執之言 故只曰 吾兄爲此無據之事 事甚可慮是如 仰天自嘆爲白臥乎

所 同摘奸爲在 朴別監主教是 以此緣由 枚舉報狀爲白有置 大概順卜之父 本以煮鹽爲業 因居於外

野頭宅立案處長登坡下爲旡 因漸起耕於坡之上下左右是乎矣 當初則依接於宅立案處 并作稱云起耕 故不敢有他意爲白如可 代遠年久之後 辛其熹迷是乎乙可 敢生冒占之意 至於□得是如 稱冤爲白如可 照驗量案之後 情跡敗露 無辭退却是白去乎 以此觀之 則上項順卜 偽造明文 謀奪士大夫家累代立案農所田庫之狀 的實無疑 極爲痛駭爲白置 方欲呈官猛治 以爲懲一勵百之地爲白如乎 順卜兄弟 自知其罪之不輕 因并逃去海島 更無接跡 故不得推治爲白

齊 大槩冒占割據之弊 不獨在於順卜輩而已 此農所累代空曠 一任於渠輩之手 故至於奴輩亦多換

身買賣隱漏之事是白置 大概士大夫家久遠農庄奴輩 看守之處 無論京鄉 例多此患爲白齊 若干推治 如此□□ 矣大上典主教是 早晚移住於此庄 以爲其時自漸推正是計是白如可 癸丑移

居此庄之後 病患漸革 猝值今日爲白如乎 庄所大段雜亂錯誤之事乙 不可不一番繼以推正是乎乙以

▣今上典主教是 考看立案處 四面度量 則奴輩及戶居若干常漢等 隱漏買賣 近年一倍 無據之事 比於本田畝一半有倍是白置 誠極驚痛是白遣 加于上項外野頭順卜輩所稱壬子呈官已爲考正之庫乙 奴輩及若干戶人等以 順卜兄弟放賣樣以 各造白文據執是去乙 同上典宅本立案

及壬子呈官監色考量後 報狀並以 各人處照驗考正 則其矣等亦 無辭服罪是白去乙 一一治正爲白遣

加于立案中白虎內長石洞稱名地 劍號兩字員立案中 尤所緊要處乙 常漢蔡道男稱名者 亦是能文 奸猾有甚於順卜輩是白如乎 上項長石洞庫乙 稱以買得是如爲遣 幾盡盜賣是去乙 一一推尋

則所謂買得云者 皆是上典宅奴輩婢夫若干戶居之人 而道男者 則久已離居遠地是白置 各人輩所

▣文記云者 皆是新造白文 則此亦以道男放賣樣以 各造文記 以爲依據之地爲白齊 此與上面外野頭

事 其規一樣 明白無疑是乎{ホ/乙}以 各人輩 無辭服罪是白去乙 一一推正爲白去乎 大概或稱傳來 或稱量

付 或稱買得是乎矣 所謂傳來云者 無他 自宅萬曆初年占得此地 立案設農之後 人多來接 依住 稍

漸起耕并作是白如可 代遠年久之後 無論奴輩戶人爲白遣 居此者 幸其久遠空曠 因漸生意 分區割場

以傳來樣 造文記 以爲依據之地爲白齊 考其所謂文記 則荒唐一丈之外 並無本文記是白遣 考其年

歲 則皆是頃年文記 則其爲自宅設農 後來依居住之事 明白無疑爲白去乎 所謂人間古今僞造 文記四字

無則已 有則此輩之謂也 以此論之 則不但無據 應有冒占重罪是白遣 所謂量付云者 尤有所大

▣然者是白置 大凡閑漫之處 則有兩班之田土 有民人之田土 自然畦分壟裂 故雖是連界之地是

▣良置 有金同量付爲旆 有李同量付 彼混此雜之事是乎矣 此地則內外白也 只外野頭蟻島 堂山長石洞等庫乙 萬曆初 自宅立案 或自起耕 或與并作 則此立案中 四面度量處 本無寸田尺畝他人之物是乎矣 只是累代空曠 一任於渠輩之手是乎等乙以 中間隱漏盜賣 種種無據之事 非一非二

一一已陳於上面是白去乎 所謂量付云者 亦是虛套僞造是白遣 設或真以渠名量付是 妥喻良置 此亦不過空曠時 以渠并作 故因以時作者姑錄 而今年如是 明年又如 至於代遠年久之後

漸生

作己物之心者 明白無疑爲白齊 加于癸卯甲戌兩年量案 年歲後於上典宅萬曆初立案年
歲者 不但數十年之遠 則此不過上典宅立案處 潛付渠名 以爲依據不動之計 而殊不覺其癸甲
□(量)案年歲 與上典宅立案年歲 先後迥別是白置 眞所謂掩耳偷鈴者是白去乎 以此論之 則
所謂

量付云者 不但無據 應有冒錄重律是白齊 大概近來立案之地 不爲聽理云云之法 只出於近來
武斷

之輩 多出不似之立案 因以此爲廣占之階梯 以致滔滔者紛擾之弊 故也豈謂是士大夫家萬曆
初所出

立案 累代牢作流傳之文記者乎 況一從量案云云者 亦出於上面所陳閑漫田土中 金同量付之
處乙 李

同奪之 則考其所付之量 而一從之故也 豈謂是士大夫家久遠立案之處 常漢輩乘其累代空曠
因循潛付

稱作己物者乎 況癸甲之量與萬曆初 年歲先後迥別 則安有不從士大夫家萬曆初所出累代流
傳之立

案 而必以立案 累十年後 常漢因循潛付之量爲重乎 以此論之 則其先後輕重 主客眞僞 不待
卜釋而

自明是白齊 大槩士大夫家先世立案 累代傳來之地乙 麼魔常漢輩 乘其空曠 分畦裂壟 傍狷
曲奸

□□(一一)無據之事 誠極痛駭是乎{水/乙}以 上面外野頭當初順龍輩冒占之處 上典宅壬子年
呈本官所志 監色

眼同考驗後 報狀并以 粘連以呈爲白去乎 卽今上典宅形勢 殊極孤單爲白遣 此時人心不測
有倍

於是白置 如有此輩某人等 乘時作梗之弊是白良置 蔡道男金順卜兄弟此三漢乙 各別
嚴題 背關囚禁 痛治以懲 遐方濫惡之輩 侵侮士大夫家 犯公逞私 流來之習爲白只爲
行下向教是事

巡察使道主 處分

乙卯八月 日議送

[題辭] 萬曆初立案 累代流傳之田畝以 中間空曠之故 多有他人冒占之弊 其勢固然 而至於守
庄奴之盜賣 京外士夫農庄 所當有之例患也 金順卜兄弟及蔡道男之冒占 極爲痛駭爲旡 或
以量案名付爲執言之地已良置 癸甲量田 皆在於萬曆立案之後 則冒錄其名於量案 以爲圖
占之計者 明白無疑 狀辭一一相考 上項金順卜兄弟蔡道男等 捉來囚禁 以爲□□時親問刑

推禁斷之地爲旅 各人等冒占田畝及冒錄量案之類 並一一推治爲乎矣 決立案成給 俾無他日更侵之弊 頃年此家之羅禍 人所共憤 世傳田畝 亦不能保 有誠爲慨然 各別着實舉行向事 海南 廿五

兼史[署押][全羅道觀察使之印]

5-2-3) 1675년(숙종 1) 12월 윤 정자택 노 홍렬 소지

[1675년(숙종 1) 12월 노奴 홍렬이 공중 받은 백야지白也只 토지의 소유권 문제로 주민들과 분쟁을 벌이다 수령의 교체 등으로 공백 상태 중에 강영남姜永男이라는 주민이 소장을 올려 소환되자 전후 사정을 호소하는 소지.]

현산縣山 거주 윤 정자尹正字의 사내중 홍렬洪烈

소지所志로 아뢰는 하늘을 찌르게 억울하고 원통한 사연은 다음과 같습니다. 백야지白也只에 있는 제 상전택의 선대先代 농장은 만력萬曆 초³⁹에 입안立案을 받아 여러 세대 동안 전해 내려온 곳입니다. □…□ 상전주上典主께서는 입안이 나오자마자 곧바로 서울에서 벼슬살이를 하셨습니다. 서울과 지방과의 거리가 천리인지라 지방의 농장을 돌아보고 점검할 형편이 못되어 그저 어리석고 외람된 농장지기 종들에게 맡겨 두고, □…□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비워 두었더니) 농장을 지키던 노배奴輩들이 자기들끼리 서로 돌아가며 땅을 몰래 파는 일이 벌어지는 등 기강이 심히 무너졌습니다. 뿐 만 아니라 각자들이 의지해 살고 있는, 입안으로 정한 경계 내의 땅을 처음에는 병작并作이라고 칭하다가 세월이 오래 지난 것을 다행으로 여기고 □…□ 불법으로 차지하고 거짓으로 꾸미면서 자기 물건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후 대상전大上典⁴⁰께서는 두 세대가 지나도록 한번 추심하여 바로잡기를 간절히 바라셨으나, □…□ 일찍 찍혀냄을 당하시어 세상에 미움을 받으시고 남으로 북으로 귀양살이를 하시니 온 집안이 분주하고 황망한 지경이었습니다. 몸도 거의 보존할 수 없을 것 같았던 이런 시기에 무슨 마음으로 남들과 시비를 가릴 수 있었겠습니까. 남들이 얼굴에 침을 뱉으면 닦아내는 것을 법도로 삼고 외려 (상대가) 거짓을 꾸미고 없는 것을 날조하여 생각지도 못한 환난이 생길까 두려워하며 지낸 지가 50여 년입니다.

39 만력(萬曆) 초 1675년 8월 홍렬의 의송(議送)에는 만력 4년(1571)으로 기재되어 있다.

40 대상전(大上典) 윤이석의 아버지인 윤인미(尹仁美, 1607~1674)로 추정된다.

이런 때를 당했으니 비록 누대로 전래되는 농장이라 하나 각각의 사람들이 불법으로 차지하고 거짓으로 기록을 올렸습니다. 응당 추심해야 할 물건이 명백하나 ▣…▣ 그저 저희가 합법이라는 것만 믿고 바로 시비를 가리고 다투려 한다면, 옥석玉石이 가려지지 않는 시기에 그로 인해 집에 화가 미치지 않을까 싶어 분을 참고 칩거해 왔습니다. ▣…▣ 불행히 대상전주께서 연달아 세상을 떠나시고 지금 상전께서 의지할 곳 없는 외로운 신세가 된 나머지 이 농장으로 이주하신 것이 때마침 지금입니다.

하오나 상전께서는 평소 산업産業 같은 일에는 간여하시는 일이 없어 반생애 동안 전답과 노비가 어떤 것인지 아시지 못했으므로, 입안에 기재된 이곳의 땅이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는 더더구나 아실 수 없었습니다. 갑자기 지금의 처지에 놓고 또 이 땅으로 이주까지 하니, 이전처럼 수노守奴들에게 모두 맡겨둘 수 없어서 한차례 추심하여 바로 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여 여러 본의 입안들을 참고하여 (토지의) 사방 경계를 측량한 내용을 살펴보았더니 동쪽의 대로大路에서부터 남쪽으로는 당산堂山까지, 서쪽으로는 큰 바닷가 최백손崔白孫의 제방 가장자리까지, 북쪽으로는 초피사椒皮寺 북령北嶺 ▣…▣(까지였습니다.)

만력萬曆 초년에는 땅이 넓고 사람이 드물어 비옥하고 반듯한 밭 터도 묵고 빈 곳이 많았으니, 해변의 척박하고 수풀이 우거진 땅은 말할 나위도 없었습니다. 당초에는 이 땅의 사면이 모두 주인 없는 황무지여서, 입안을 받아 농장을 세운 후에야 많은 사람들이 의지해 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개개의 사람들이 어찌 이곳에 감히 공공연히 생심을 냈겠습니까. 세월이 오래 지난 후에 (구별이) 희미해진 것을 요행으로 삼아 ▣…▣ (감히 불법으로 점유할 마음을 먹었다가 나라에서) 양안量案을 만들자, 그대로 움직일 수 없게 차지할 요량으로 양안에 자신들 이름으로 등록한 것입니다. 이곳은 애당초 빈 들판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땅을 일구면서 그들의 이름을 몰래 양안에 등록한 것에 불과합니다.

금년에 ▣…▣ 각인各人들의 이른바 ‘문권文券’이라는 것이 모두 백문白文 1장 말고는 본문기本文記도 본래 주인도 없다 말하고, 더더구나 양안에 기재되었다는 말을 하는 것은 그저 점유하는 방법만 알고 ▣…▣(스스로 이치에 어긋나는 줄은 모르는 처사입니다.) 계갑양전癸甲量田⁴¹이 시행된 시기는 모두 만력萬曆 연간의 입안보다 나중이니, 이는 바로 상전댁이 입안 받은 땅을 몰래 그들 명의로 올렸다는 의미이며, 양안에 거짓으로 이름을 올려 ▣…▣ 차지하려는 계책임이 의심할 것 없이 명백합니다. 대체로 입안에 측량기재된 토지 구획과 그곳이 주인 없는 황무지였다는 사실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시골 마을의 아이들부터 노인까지 모두 전해지는 이야기로 모르는 이가 없습니다.

만약 당초 입안을 받은 사방 둘레 내에 이처럼 사유지가 많았다면 어떻게 청원서를 올려 입안을 발급 받았겠습니까. 각각의 사람들이 문권이 있고 그들 이름이 양안에 기재되었다면 입안을 받을 그 당시 어떻게 말이 없을 수 있었겠습니까. 이는 오로지 양안과 문권이 모두 만력 연간의 입안보다 나

41 계갑양전(癸甲量田) 계묘년(1603) 양전과 갑술년(1634)의 양전을 말한다.

중이라는 뜻이니, 당초 이 땅이 주인 없는 황무지였을 뿐 전혀 다른 이들에게 넘겨준 물건이 아니라는 것은 따져보지 않고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이와 잘잘못을 따지는 것은 본래 제 상전께서 바라는 바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땅은) 선대로부터 전해오는 옛 물건으로서 양 대에 걸쳐 분노를 참고 인내해온 뜻을 이어 한 번은 추심하여 바로 잡고자 ■…■. 누대에 걸쳐 전해진 지 오래된 땅이라는 근거, 각각의 사람들이 말하는 문권이 그저 백문 1장 뿐 다른 본문기나 본 주인이 없는 연유, 양안에 기재되었다 해도 계갑양전癸甲量田의 연대가 입안보다 나중이니 이는 상전댁이 입안 받은 땅을 몰래 그들 명의로 양안에 올려 자신들의 점유를 다른 곳으로 움직이지 못하게 할 계책일 뿐으로 일의 선후先後와 주객主客, 진위眞僞는 변별을 기다릴 것도 없이 자명한 이유를 상세히 의송議送으로 올렸습니다. 순찰사포의 제음題音에 “만력 초 입안과 누대에 걸쳐 전해지는 전답이 중간의 공백으로 인하여 타인이 불법점유하는 폐단이 많다는 주장은 그 정황이 실로 그러하다. 농장을 지키는 종들이 (땅을) 훔쳐 팔기까지 하는 일은 서울과 외방의 사대부 농장에 으레 존재하는 근심거리이다. 김순복 형제와 채도남의 불법점유는 매우 놀랍고 비통하며, 간혹 양안에 이름을 올린 것을 가지로 트집을 잡을지라도 계갑양전은 모두 만력 입안 후에 있었으니 양안에 자기 이름을 불법으로 기록하여 점유를 도모한 계책임이 명백무의明白無疑하다. 소지의 내용을 일일이 상고相考하고 상항上項 김순복 형제와 채도남 등을 잡아 가두어 가을 순력巡歷 때 직접 형문刑問하고 금단禁斷할 수 있게 하라. 각인各人들이 모점冒占한 전답과 모록冒錄한 양안 등등을 아울러 일일이 찾아 고치되 결송입안決訟立案을 발급하여 나중에 다시 침노하는 폐단이 없도록 하라. 지난 해 이 집안이 겪은 재앙은 사람들이 공분하는 바이다. 그들의 세전世傳 전답 또한 보유할 수 없었을 것이니 진실로 개탄스럽다. 각별히 착실하게 거행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전임 위영감魏令監께서는 (위 판결이 담긴) 문서가 도착하자마자 즉시 개개인들을 불러 심문하셨습니다. 그 결과 원래 문기文記가 없는 자도 간혹 있었고 문기가 있는 자도 있었으나, 소위 문기라는 것이 모두 만력 초에 발급된 상전댁 입안보다 나중의 것으로, 어떤 것은 상전댁 입안과 30여 년 차이가 나기도 하고 또 어떤 것은 20여 년 차이가 나기도 했으며 그 중 가까운 것도 10여 년에 불과하였습니다. 하오니 주객主客과 선후先後, 진위眞僞를 분간하여 판결할 방법으로 이 입안 말고 달리 무엇을 근거로 하겠습니까. 이 입안과 그들 문기의 연대를 조사한 후 그 선후가 비록 하루 차이가 나더라도 응당 이 문제로 주객과 진위가 판결 나건만, 하물며 그들의 문기가 입안 보다 늦은 것이 30년, 20년, 10여 년까지 먼 경우는 어떠하겠습니까. 더욱이 만력 후인 승정崇禎, 천계天啓 연간의 문기라도 작성 연대의 선후를 거론할 수도 없건만 더더구나 승덕崇德, 순치順治, 강희康熙 연대의 것은 어떠하겠습니까. 그들이 말하는 만력 연간의 문기文記는 1/10이고 그 나머지는 모두 순치, 강희 등 근래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게다가 각 인등의 문기는 모두 백문이며 또 모두 본문기도 없고 당초 땅을 매매한 본주인도 없습니다. 상놈의 문기란 것이 비록 일일이 갓출 수 없다 하더라도 도대체 한 두 장의 백문 외에 사람마다 본문기가 없고 사람마다 본 주인이 없을 이치가 있겠습니까.

이 사실로 미루어 보면, 그 무리들이 당초 입안한 곳이 비어있는 틈을 타 모점·모록하여 자신의 물건으로 만들고는 조만간 탄로 날까 두려워 서로 돌아가며 번갈아 팔면서 차례차례 주인을 옮긴 것입니다. 모조리 본주인이 없다고 한 것은 바로 땅의 근본을 덮고 유래한 곳을 숨기려는 술수입니다. 그 무리의 정적情跡이 또한 명확하지 않습니다.

양안에 기록되었다는 주장 또한 당초 입안한 곳이 빈 황무지일 때 그 무리들이 발두둑으로 갈라 나누고는 몰래 자기들 명의로 양안에 올리고 이것을 발미로 점유를 공고히 하려는 계책입니다. 설혹 정말로 양안에 기록되었을지라도 계갑양안의 연대가 만력 연간의 입안보다 나중이니, 자기들 명의를 양안에 모록함으로써 점유하려는 계책인 것은 의심의 여지없이 명백합니다. 이 사실에 대해 논하자면, 응당 모록冊錄한 죄가 있는데 어찌 이처럼 양안에 기재되었다고 도리어 제 차지가 되었다는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양안에 이렇게 양안에 저렇게’ 하더니 이런 양안을 말한 것입니까. 여러 말이 필요 없습니다. 누대에 걸쳐 내려오는 오래된 입안이 있는 사대부가가 주인이겠습니까? 입안 발급 후에 모점하여 양안과 문기의 연대가 입안보다 나중인 상놈무리들이 주인이겠습니까?

당초 순사또남께서 이미 그 정적을 파악하시고 이치를 논하여 처분하셨으므로 관官에서 하나하나 명백히 조사하시고 서목書目과 보장報狀을 올리셨으나, 조사의 일이 자연 쉽지 않아져 한 달 남짓 지연되었습니다. 잠깐 사이에 보장이 돌아오고 거기 적힌 제사題辭가 처음의 것과 달라져 제사를 받은 후 마음이 매우 괴이쩍고 납득할 수 없었는데, 마침 공관空官이 되고⁴²상전이 또한 중한 병으로 우환 중인 까닭에 처결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한 번 의송을 올려 다시 시종일관 이긴 후에도 사대부가의 입안으로서 누대에 걸쳐 전래된 것이 객客이 되고, 사대부가의 입안 후에 상놈 무리가 우물쭈물 모점·모록한 것이 주초가 된다면 또다시 처음처럼 분을 참으며 마구 짓밟혀짐을 감수하는 것에 불과하다 생각되었습니다.

얼핏 들으니 당초 심문 중에 강영남姜永男이라는 자가 이런 생각을 엿보고 감히 먼저 소장訴狀을 올려 여러 가지로 장황하게 멋대로 위협하고 다그친다 합니다. 이 일의 결말이 멀지 않은 시점이니, 그 무리들의 문기文記가 어찌 길게 관가 지통 안에만 있겠습니까. 상놈들이 사대부가를 능멸하고 업신여기는 것이 근래 일상화된 풍습이라 하나, 거저 호소로 감히 정소呈訴하여 먼저 양반을 침범하기까지 하는 일이 아름다운 풍속風俗이겠습니까.

당초 이놈을 심문할 때 자기 전답은 상전택 입안 지역 밖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른바 ‘자기 전답’이라는 것은 입안에 기록된 ‘동변東邊의 대로 내에 외야두外野頭’라고 불리는 땅으로, 예부터 지금까지 어린이와 노인들까지 모두 율판서택尹判書宅 입안 지역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놈이 자기

42 공관(空官)이 되고 관장(官長)의 공백 상태로, 1675년 10월 전임 현감이었던 위천상이 파직된 상황을 말한다. 8월에 홍렬(洪烈)의 1차 정소가 있었으나 심리 중에 담당관이 체직되었고, 관장의 교체로 인해 12월에 이 소지를 재차 올린 상황이다.

各人冒占冒錄輩明白

- …□(當推之物 而)只恃我理直而徑爲卜詰之舉 則石不爲石 玉不爲玉之日 適足因之以嫁禍爲乎乙可 忍憤螫
- …□(居者 尤多年紀是)如乎 不幸矣大上典主 連此棄世 卽今上典主 孤露獨餘 移居此庄 適又今時 而上典主常時不
- …□(曾參知於產業等事) 故半生不知田民之何許 尤不知此處立案度量之從某至某爲有如何乎 猝值今日 又移此地 則不可一向終委
- …□(於守奴 不可不一番推正 故)考諸本立案照驗 四面度量 則東自大路南至堂山西至大海邊崔白孫堰邊北至椒皮寺北嶺 而
- …□萬曆初年地廣人稀 雖膏腴正田之處 尙多陳曠 則況此海邊斥莽林藪之地乎 當初此地四面 并是
- …□(陳荒無主 而立案設庄之後 人)多依接 當初則各人輩亦豈敢公然生意於此間哉 及其世遠年久之後 幸其熹迷是乎乙可
- …□量案仍爲圖占難動之計 而其爲量付 亦不過當初空曠 因渠起耕 因以渠名潛付量案 今年
- …□各人等所謂文券 皆是白文一丈之外 並無本文記本主是如云云爲旡 加于量付云者 徒知圖占之計
- …□大槩癸甲量田年歲皆 在於萬曆立案之後 則便是上典宅立案處 潛付渠名 而其爲冒錄量
- …□圖占之計者 明白無疑爲白齊 大槩立案 四面度量處及陳荒無主事段 自初至今 村兒野老 亦無不共知傳說是白
- 置 若於當初立案處 四面民田 如是之多 則何得呈出立案各人輩 有文券量付者 亦何得無說於其時乎 只是量與文券 皆
- 於萬曆立案之後 則當初此地陳荒 無主了無他人之物乙 不卜而可知也 與人卜詰 本非上典之所欲 而以先世舊物 兩世忍憤之意 不可
- 不一番繼而推正 故此□…□累代傳來久遠之由 及各人輩所謂文券白文一丈之外 無別本文記 本主之由及雖或有量付稱云
- 者 而癸甲量田年歲 在□…□立案之後 則只是宅立案處潛付渠名 以爲圖占難動之計 而先後主客 眞僞不待
- 卜詰而自明之由乙 詳細呈議送 則巡使道題音內曰 萬曆初立案 累代流傳之田畝 以中間空曠之故 多有他人冒占之弊 其
- 勢固然 而至於守庄奴之盜賣 京外士夫農庄 所常有之例患也 金順卜兄弟及蔡道男之冒占 極

爲通〔痛〕駭爲旆或以量案
名付爲執言之地是良置 癸甲量田 皆在於萬曆立案之後 則冒錄其名於量案 以爲圖占之計者
明白無疑 狀辭一一相考 上項
金順卜兄弟蔡道男等乙 捉來囚禁 以爲秋巡時親問刑推禁斷之地爲旆 各人等 冒占田畝及冒
錄量案之類 并一一
推治爲乎矣 決立案成給 俾無他日更侵之弊 頃年此家之罹禍 人所共憤 其世傳田畝 亦不能
保有 則誠爲慨然 各別着實
舉行云云 前等魏令監時到付 卽招各人等推閱 則元無文記者 間或有之爲旆 雖有文記者 所
謂文記 皆在於萬曆初上
典宅立案之後 相去或三十餘年或二十餘年 其中稍近者 亦不過十餘年 則主客先後 眞僞分揀
決折之道 舍〔捨〕此立案 而
更何所據乎 此立案及渠文記年歲憑閱之後 其先後雖或一日之間 只當以此條下決 其主客眞
僞是白去等 況
此渠文記 後於立案者三十年二十年十餘年之迥別乎 加千萬曆後崇禎天啓文記 則不可舉論
於年歲先後是
白在等 又況崇德順治康熙年歲乎 渠輩所謂萬曆文記十分之一 而其餘則皆是順治康熙近年
所造是白遣
加于各人等文記 皆是白文 並無本文記 又並無當初買賣本主是白去乎 常漢輩文記 雖不能
一一 而寧有一二
丈白文之外 箇箇無本文 箇箇無本主之理乎 以此推之 則當初立案處 渠輩因其空曠冒占冒錄
仍爲己物 而
恐或有早晚敗露之端是焉可 仍又轉相翻賣 移梯遷次 而至於并無本主云者 卽是掩其根本 隱
其所自出之
術也 渠輩情跡 不亦明乎 至於量付云者 此亦不過當初立案處陳荒空曠之時 渠輩分畦割壟
間或潛付渠名於
量案 以爲圖占不動之計是白去乎 設或眞付量案是白良置 癸甲量年 在於萬曆立案之後 則冒
錄其名於量案
以爲圖占之計者 明白無疑爲白齊 以此論之 則當有冒錄之罪 又豈有以如此之量付 反爲執言
之地乎 量云量云如此之量
云乎哉 不須多言 士夫家累代流傳久遠立案者爲主乎 常漢輩立案後冒占而量案文記年歲在
於立案後者爲主乎
當初巡使道主 已能洞燭其情跡 論理題辭 故箇箇明白 憑閱於官前書目報狀 而憑閱之事 自

然未易 延至月餘矣 頃
間報狀回來 而題辭與初題有異 受題之後 心甚怪訝 未得其理 而適值空官 上典家亦重患 方
在憂患 故未及處
決券不喻 一番議送 更得終始之後 如以士夫家立案 累代久遠傳來者爲客爲白遣 反以士夫家
立案後常漢輩因
循冒占冒錄爲主 則亦不過忍憤 如初甘心籍躡計料爲白如乎 旻〔側〕聞爲乎矣 當初推閱中
姜永男稱名者 窺覘
此意 敢先呈訴 多般張皇 恣意脅督是如爲臥乎所 此事決未當在不遠 則渠輩文記 豈長爲官
家紙筒中物
乎 常漢之凌轢士夫家 雖曰近來常習 而妄訴敢呈 至於先侵兩班者 亦是風俗之美者乎 當初
此漢推閱之
時 至稱以渠田畝 則在於宅立案之外云 所謂渠田畝在於立案東邊 東自大路之內外野頭稱名
地 自古至今 兒
童翁媪 皆知其尹判書宅立案處 而此漢以脫出渠田畝之故 至自擅縮士大夫家累代流傳立案
度量處
其爲奸巧濫惡 將無所不至爲白去乎 官前指畫〔劃〕 本立案 四面度量 人所共知處 箇箇明白
卜詰 則姜永
男亦 言窮語塞 無一可答是乎等乙以 官主即欲大治 而姑待結末後懲治爲白如乎 即今永男亦
不量其矣
所犯爲遣 先發侵督爲白去乎 此真所謂賊反荷杖是白置 永男治與不治 則在所不已 固非尋常
可忘者是
白去乎 大槩先世流傳舊物乙 人誰不欲推正 而渠輩文券量案年歲 皆在於上典宅立案累十年
之後 而主客先
後 明白如是 則本非以兩班之勢 而掩制常漢之比也 鄉隣之鬪 閉門以度 而一芥不以取諸人
之義乙 上典家亦嘗粗聞
是白置 即今上典家孤子 莫此爲甚 此時人心之不淑 有倍於前日 則傳來田土乙 尙不得保有
推正是白去等 有何氣勢
攘奪不當 推他人之物乎 顧念今昔 慨痛無涯是白齊 右良辭緣乙 姑先暴白爲臥乎事
行下向教是事
官主 處分
乙卯十二月二十六日 所志
〔題辭〕 姜永男名呈所志據 推下次以 汝矣身捉來亦 題送爲有如乎 今見張皇呈狀 則未知首末

而不無曲折是遺 亦不無彼此對卞之舉是置 姜永男一張所志以 不可推考□ 姑勿施宜當向
事 廿六日

官[署押]

5-2-4) 1676년(숙종 2) 윤 정자택 노 홍렬 소지

[1676년(숙종 2) 윤 정자택尹正字宅 노奴 홍렬이 만력 연간에 공증 받은 백야지白也只 토지를 둘러
싼 현 백성들과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해남 현감에게 올린 소지.]

현縣 거주 윤 정자택尹正字宅⁴³ 사내중 홍렬洪烈

소지所志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 현 현산면縣山面 백야지白也只라는 이름의 땅에는 본래 제
상전의 선대에 입안立案을 받아 일군, 누대에 걸쳐 전해 내려오는 농소農所가 있습니다. 처음 입안을
발급받은 시기는 만력萬曆 초기로 그 당시 상전주上典主께서 입안을 받자마자 바로 서울에서 벼살살
이를 하셨습니다. 서울과 해남海南의 거리가 1,000리이니 형편상 살피고 점검하실 수 없어 지방의
농장은 그저 어리석고 무례한 수장노守庄奴에게 맡겨 두셨습니다. 그렇게 여러 해가 흐르고 오래도록
농장을 비우게 되자 노배奴輩들이 서로 돌아가며 땅을 매매하는 일이 생기고 기강이 크게 무너졌습니
다. 뿐 만 아니라 입안에 기록된 범위 내 토지를 의지해 살고 있는 각인배各人輩들이 처음에는 병작并
作하는 것이라고 하다가, 오래도록 비어있음을 다행으로 여기면서 점차 생심을 내게 되어 밭두령을
나눠 차지하고는 모점冒占·모록冒錄하여 흡사 자기의 물건인 양 하였습니다.

그 후 대상전大上典께서 두 세대가 지나도록 한번 찾아 바로잡기를 간절히 바라셨으나, 일찍 기궤
劓劓⁴⁴을 만나 남으로 북으로 귀양살이 하시느라 온 집안이 분주하고 황망하였습니다. 그 때는 몸도
거의 보존할 수 없을 것 같았으니 무슨 마음으로 남들과 대항하는 일을 만들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얼굴에 침을 뱉으면 닦아내는 것을 법도로 여기고 오히려 그가 거짓을 꾸미고 없는 일을 만들어 생각
지도 못한 환난이 생길까 두려워 한 것이 50여 년입니다. 은 두려운 일입니다. 하오니 비록 누대에 걸
쳐 내려오는 농소를 각개의 사람들이 모점·모록한 것이 명백하여 응당 추심해야 할 물건이라 하더라
도, 내가 옳다는 것만 믿고 바로 따지고 변별하여 다투려 했다가 돌을 돌이라 하지 못하고 옥을 옥이
라 하지 못하던 시절에 그로 인해 회를 입기어나 알맞지 않을까 싶어 분을 참고 원한을 쌓은 지 여러

43 윤 정자(尹正字) 윤이석(尹爾錫, 1626~1694).

44 기궤(劓劓) 대개 조각용 칼, 혹은 인쇄, 판각(板刻)의 의미로 쓰이나, 여기에서는 부근(斧斤)의 의미로 추정된다.
즉 나무가 도끼를 만나듯이 찍혀냄을 당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해입니다.

불행히도 저의 대상전께서 연이어 세상을 버리시고⁴⁵ 지금의 상전주上典主께서는 의지할 곳 없는 외로운 신세가 된 나머지 이 농장으로 이주하신 것이 때마침 이 때입니다.

그러나 상전께서는 평소 산업産業 등의 일은 참여하고 맡으신 적이 없어 전답과 노비가 어떠한지 알지 못하셨고, 입안에 측량된 땅이 이곳의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는 더더구나 알지 못하셨습니다. 갑자기 지금의 상황에 놓이고 또 이 땅으로 이주까지 하다 보니, 게을러 제대로 살피지 않는 수노守奴들에게 내내 끝까지 맡겨둘 수 없어서 한차례 이어서 추심하여 바로 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여러 입안들을 살펴보고 사면四面⁴⁶을 대조해 보니, 동쪽의 우동牛洞 대로大路에서부터 남쪽으로는 당산堂山, 서쪽으로는 큰 해변에 있는 최백손崔白孫의 제방 변두리, 북쪽으로는 초피사椒皮寺 북쪽 고개까지였습니다.

대개 만력 초에 땅이 넓고 사람은 드물어 비록한 땅의 정전正田이라도 오히려 중사를 짓지 않는 땅이 많은데, 하물며 이처럼 바닷가의 염분이 많은 수풀이 있는 땅은 어떻겠습니까? 처음부터 이 땅의 사방은 모두 주인 없는 황무지였고 입안을 받고 농장을 세운 후에 사람들이 여럿 의지해 살게 되었습니다. 각자 사람들이 처음에야 어찌 감히 대놓고 여기에 생심을 내었겠습니까. 세월이 오래 흘러 기억이 희미해졌을까 바라면서 땅을 일궈 문기文記를 만들고 양안에 올리는 등 그대로 차지하고 변치 못하게 하려는 계책을 쓴 것이니, 그들이 양안에 기재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당초 텅 빈 들판이었으므로 그들의 이름을 몰래 양안에 올린 것이 불과한 것이고, 이것이 한 해 한 해 되풀이 되다가 지금에 이른 것입니다.

각 사람들이 말하는 문권文券이란 것도 모두 백문白文 1장 말고 본문기本文記가 없으며, 더욱이 양안에 이름을 올렸다는 것은 다만 도점圖占⁴⁷하는 계책으로만 알고 저절로 탄로 나는 단서가 될 줄은 알지 못한 행위입니다.

계묘년(1603)과 갑술년(1634) 양전(量田)의 연대는 만력 입안보다 나중이므로, 이는 곧 상전댁에서 입안 받은 땅을 몰래 그들 이름으로 올린 것이니, 양안에 모록冒錄하여 땅을 차지하려는 계책임이 의심의 여지없이 명백합니다. 입안에 측량된 땅과 그 땅이 주인 없는 황무지였다는 사실은 처음부터 이제까지 촌야의 노인들도 전해오는 이야기로 모르는 이가 없습니다. 만일 애초 사방 구획 내에 민전民田이 이처럼 많았다면 그 당시 어떻게 진황처陳荒處라고 소지를 올려 입안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각인 무리들이 문권이 있고 양안에 이름을 올렸다면 또 어찌 그 당시 말이 없을 수 있었겠습니까. □…□ 이는 단지 양안과 문권이 모두 만력 연간에 발급 받은 상전댁 입안보다 나중 것이라는 뜻이

45 불행히도-버리시고 윤선도(尹善道)와 그 아들 윤인미(尹仁美)가 각각 1671년과 1674년에 사망한 사실을 말한다.

46 사면(四面) 구획된 토지의 사방 경계로, 양안의 사표(四標)와 같은 의미이다.

47 도점(圖占) 점탈을 도모하는 것.

니 당초 이 땅이 주인 없는 황무지였고 다른 이의 물건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따지지 않고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이와 따지고 다투는 것은 상전께서 본래 원하는 바가 아닙니다. 그러나 선대의 옛 물건을 양대에 걸쳐 울분을 참은 뜻을 이어 불가불 한 번은 추심하여 바로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취지로 의송^{議送}을 올렸더니, 권^權사^司또께서 제사^{題辭}로 이르시기를, “만력 초 입안과 누대에 걸쳐 전해지는 전답이 중간에 비워둔 연고로 타인이 불법 점유하는 폐단이 많다는 함은 그 형세가 실로 그러하다. 농장을 지키는 종들이 도매^{盜賣}하는 지경에 이르는 일은 서울과 외방의 사대부 농장에 으레 존재하는 근심거리이다. 김순복 형제와 채도남의 모점^{冒占}은 매우 놀라운 일이며, 혹여 양안에 이름을 올린 것을 가지고 말꼬리를 잡는다 해도 계갑양전^{癸甲量田}은 모두 만력 입안 후에 있었으니 양안에 자기 이름을 거짓으로 기록하여 점탈을 도모한 계책임이 명백무의^{明白無疑}하다. 소지의 내용을 일일이 상고^{相考}하고 위 김순복 형제와 채도남 등을 잡아 가두어 가을 순행^{巡行} 때 내가 직접 형문^{刑問}하고 금단^{禁斷}할 수 있게 하라. 각인^{各人}들이 모점^{冒占}한 전답과 모록^{冒錄}한 양안 등등은 아울러 일일이 찾아 고치되 결송입안^{決訟立案}을 발급하여 나중에 다시 침노하는 폐단이 없도록 하라. 지난 해 이 집안이 겪은 재앙은 사람들이 공분하는 바이다. 그들의 세전^{世傳} 전답 또한 보유할 수 없었을 것이니 진실로 개탄스럽다. 각별히 착실하게 이행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전임 현감이신 위 영감^{魏令監}⁴⁸께서는 공문이 도착하자마자 즉시 각 인 등을 불러 심문하셨습니다. 그 결과 소위 그들의 문기라는 것은 모두 만력 초에 발급된 상전택 입안보다 나중의 것이었으며 어떤 것은 연대의 차이가 30여 년이 나기도 하고 또 어떤 것은 20여 년이 나기도 했으며 그 중 근접한 것도 10여 년 차이에 불과했습니다. 주객^{主客}, 선후^{先後}, 진위^{眞僞}를 분간하여 판결할 방법으로 이 대목 말고 어디에 근거를 하겠습니까.

더욱이 만력 후인 승정^{崇禎}, 천계^{天啓} 때의 문기라도 시기의 선후를 거론조차 할 수 없건만, 하물며 승덕^{崇德}, 순치^{順治}, 강희^{康熙} 등 근래의 문기는 말해 무엇 하겠습니까. 또 개개인들의 문기는 모두 백문으로 본문기조차 없고 아울러 애초에 땅을 매대한 본주인도 없습니다. 상놈들의 문기가 비록 일일이 갖출 수는 없다 하더라도 어찌 한 두 장의 백문 외에 사람마다 본문기가 없고 사람마다 본 주인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이것으로 미루어 보건대 당초 입안 받은 지역이 비어있는 틈을 타 그 무리들이 모점·모록하여 그대로 자기 물건으로 만들고는, 혹시 일찍 들통 날 꼬투리가 있을까 두려워 서로 돌아가며 번갈아 팔면서 차례차례 옮겨간 것입니다. 당초의 본주인조차 없다고 하는 말은 바로 그 근본을 덮고 유래를 숨기려는 □…□. 그 무리의 정적^{情跡}이 또한 명확하지 않습니다.

48 위 영감(魏令監) 1675년 2월 해남 현감으로 부임한 위천상(魏天相)이다. 『승정원일기』 숙종 1년 2월 26일 기사 참조.)

막 판결이 확정하려는 때에 위 영감께서 갑자기 파직되어 돌아가시고⁴⁹ 개개인들의 문기와 초사招辭는 관가 지통紙筒⁵⁰ 안에 봉납되었습니다. 그 후 이 영감李令監⁵¹ 임기 내에는 그 기간이 오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 해 겨울부터 봄까지 상전택에 크고 작은 병환이 생기고 지금까지도 이어져 □…□ 이 일에 힘쓸 겨를이 없었으므로 미루며 날을 보내다 오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 일은 송사訟事가 아니라 그저 조사하는 것 뿐인데, 조사할 일이 이미 위와 같으니 판결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다만 그 후에 개개인들이 후회하고 부끄러워하기는커녕 도리어 원망하는 말들이 많다 하니 이것이 소위 적반하장이라는 것입니다. 무릇 이러한 일은 한 사람이 이기면 한 사람이 지게 되는 것이니, 진 사람의 사연이 비록 심히 터무니없다고 하나 족기 때문에 으레 떳떳치 못한 원한이 있게 마련입니다. 고금古今 세상에 선대의 유물을 찾아 바로잡는 일에는 제한을 두지 않고 그저 사리의 옳고 그름만 생각하지 으레 따르는 원한 유무有無는 돌아보지 않는 법이나, 지금 상전의 뜻은 “크게 관계치는 않으나 전부 버려둘 수는 없으니 응당 추심할 것은 □…□ 만약의 원한을 없앤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이른바 “연혜제인이호경의捐惠濟人以胡景猗.”⁵²라고 하는 것이며, 취사取捨와 조종操縱이 손 안에 있으니 우선 그것을 주고 선善을 행하는 것이 낫습니다. 하오니 □…□ 지통紙筒 안의 당초 봉납한 문권을 찾아서, 즉시 각각의 관련자들을 불러 흔쾌히 내주십시오. 처음의 의송을 위쪽에 붙여 첨부하오니 세세히 살펴주시도록 하시기를.

현감님 처분.

병진년(1676) 7월 일 소지.

[제사] 일괄 이전 서목書目의 처분 내용에 따라 판결할 것이로되 너의 하소연이 지극히 순편順便하다. 원하는 대로 시행하는 것이 마땅할 듯하다. 25일.

□ [서업]

縣居 尹正字宅奴 洪烈

右所志矣段 本縣縣山面白也只稱名地良中 自是矣上典先世立案起耕累代流傳之農所是白如乎 蓋當初立案時 則萬曆初年 而其時上典主 纔出立案之後 旋即仕宦

49 위 영감께서~돌아가시고 위천상은 1675년 10월 해남 전 현감 황징(黃徵)을 무고한 죄로 파직되었다. 『승정원일기』 숙종 1년 10월 27일 기사 참조.)

50 지통(紙筒) 종이나 서류를 넣어두는 통. 혹은 관가에서 문서를 보관하는 통을 의미한다.

51 이 영감(李令監) 1675년 11월 해남 현감에 제수된 이항(李炆)을 말한다. 『승정원일기』 숙종 1년 11월 2월 기사 참조.) 이항도 이듬해인 1676년 6월 세곡(稅穀) 운반 관련 문제로 체직되었다. 『숙종실록』 숙종 2년 6월 1일 기사 참조.) 이 문서에서 전임이라고 칭한 것은 그 때문이며 동일 내용의 문서를 여러 번 올리게 된 이유로 추정된다.

52 연혜제인 이호경의(捐惠濟人以胡景猗) 은혜를 베풀어 사람을 구제함으로써 큰 덕을 드리운다는 의미로 해석되나, 전거를 찾지 못해서 그대로 옮긴다.

京洛 京鄉千里 勢有所不能顧檢 鄉庄徒委於迷濫守庄奴 以至累年 久遠空曠 奴輩之轉

▣買賣之事 罔有紀極叱分不喻 各人輩依接立案度量處者 初稱并作 而幸其久遠空

▣[曠] 因漸生心 分畦占壟 冒占冒錄 宛然作己物者然是去乎 厥後至於大上典教是 兩世以來 切欲

一番推正 而矣大上典主 早遇劓劓 南北謫居 學家奔遑 當此之時 身若幾乎不保 則何心與人 作頡

頡之舉乎 人唾面 則拭以度 猶恐有構虛捏 無料外之患者 五十餘年 則雖是累代流傳農所 各 人冒

占冒錄輩 明白當推之物 而只恃理直徑爲卞詰之舉 則石不爲石 玉不爲玉之日 適足因之以嫁 禍爲_ㄹ可

忍憤蓄怨者 尤多年紀是白如乎 不幸矣 大上典主 連此棄世 卽今上典主 孤露獨餘 移居此庄 適又

▣時 而上典主常時不曾參知於產業等事 故不知田民之何許 尤不知此庄立案處度量之從某 至某

▣有如乎 猝值今日 又移此地 則不可一向終委於守奴 慢而不察 亦不可不一番繼以推正 故 考諸立案 照驗

▣(四)面 則東自牛洞大路南至堂山西至大海邊崔白孫堰邊北至椒皮寺北嶺是白如乎 蓋萬曆 初 地廣

八稀 雖膏腴正田之處 尙多陳曠 則況此海邊斥鹵林藪之地乎 當初此地四面 並是陳荒無主 而立案設

庄之後 人多依接 當初則各人輩亦豈敢公然生意於此間哉 及其世遠年久之後 幸其熹迷是_ㄹ可 隨渠起

耕 或造文記 或付量案 仍爲圖占難動之計 而其爲量付 亦不過當初空曠 因以渠名潛付量案 今年如是 明年

▣是 以至于今日 而各人等所謂文券 皆是白文一丈之外 并無本文記爲_ㄹ加于量付云者 徒 知圖占之計 而自不覺其敗

▣▣端爲白齊 大概癸甲量田 年歲皆在於萬曆立案之後 則便是上典宅立案處潛付渠名 而其 爲冒錄量案

▣▣圖占之計者 明白無疑爲白齊 大概立案度量處及陳荒無主事段 自初至今 村婆野老 亦無 不共知傳說是白

▣若於當初 四面民田 如是之多 則其時何得以陳荒處呈出立案 而各人輩有文卷量付者 亦 何得無說於其時

- …□ 只是量與文券 皆出於萬曆宅立案之後 則當初此地陳荒無主 更無他人之物乙 不卞可知也 與人卞詰 本非上典之所
- 而以先世舊物 兩世忍憤之意 不可不一番繼以推正是乎{水/乙}以 以此意呈議送 則權使道 主題音內曰 萬曆初立案 累
- 代流傳之田畝 以中間空曠之 故多有他人冒占之弊 其勢固然 而至於守庄奴之盜賣 京外士夫 農庄所常有之例患
- …□也 金順卜兄弟及蔡道男之冒占 極爲痛駭爲旆 或以量案名付爲執言之地是良置 癸甲 量田 皆在於萬曆立
- …□案之後 則冒錄其名於量案 以爲圖占之計者 明白無疑 狀事一一相考 上項金順卜兄弟 蔡道男等乙 捉來
- …□(囚)禁 以爲秋巡時親問刑推禁斷之地爲旆 各人等冒占田畝及冒錄量案之類 並一一推 治爲乎矣 決立案成給 俾
- …□(無他)日更侵之弊 頃年此家之羅禍 人所共憤 其世傳田畝 亦不能保有 則誠爲慨然 各 別着實舉行云云
- …□等 魏令監時到付 卽招各人等推閱 則所謂渠輩文記 皆在於萬曆初 上典宅立案之後 相去或三十
- …□(餘)年 或二十餘年 其中稍近者 亦不過十餘年之間 則主客先後 眞僞分揀 決折之道 捨此條而何所據乎 加于
- …□萬曆後崇禎天啓文記 則不可舉論於年歲先後是白去等 又況崇德順治康熙近來文記 乎 加于各人等文記皆
- …□是白文 再無本文記 又并無當初買賣本主是白去乎 常漢輩文記 雖或不能一一而 亦豈 有一二丈白文之外 箇
- …□(箇無)本文 箇箇無本主之理乎 以此推之 則當初立案處 渠輩因其空曠 冒占冒錄 仍爲 己物 而恐或有早
- …□(敗)露之端是乎乙可 仍又轉相鬻賣 移梯遷次 而至於再無當初本主云者 卽是掩其根 本 隱其所自出之
- …□渠輩情跡 不亦明白乎 方欲決折之際 魏令監忽值罷歸 各人等文記及招辭 封納 官家紙
- …□(箇)中爲白去乎 厥後李令監等內 其間亦不能久叱分不喻 上典宅自其冬至春 大小病 患 至今連仍 無
- …□(暇)及於此等事是乎等乙以 遲延以度 至于今日爲有如乎 大槩此非訟也 只是憑閱 而 憑閱之事 既已
- …□(如)右 則事當決受是乎矣 第厥後各人等 非徒無恥悔之意 反多怨說云 此眞所謂賊反

荷杖者是

□…□置 大凡此等事 一勝則一負 負者之事 雖甚無據 而負則例有傍蹊曲徑之怨也 然則人間古今推正先

□…□(舊)物者何限 而只思事理之當否 而不顧例怨之有無是乎矣 卽今上典之意 則以爲大不關 不□全捨 當推之

□…□以去倘來之怨 此眞所謂捐惠濟人 以胡景猗 而取捨操縱 唯在手中 則不如姑與之爲善 爲有如乎

□…□披紙筒中當初封納文券 卽招各人等 快與之爲白遣 當初議送乙 粘付上邊爲去乎 細細監當教是

□…□爲白只爲

□…□主處分

丙辰七月日 所志

[題辭] 一依前日書目題送內辭緣決折是乎矣 汝矣所訴 極涉順便是置 依願施行似當 卅五

□[署押]

5-2-5) 1719년 윤 생원댁 증 소지

[1719년(숙종 45) 기해년 윤 생원댁 사내종이 상전을 대신하여 양명을 올리기 위해 올린 입지 신청 소지.]

현내縣內…(원문 결락)… 윤 생원尹生員…(원문 결락)…[좌촌]

삼가 소지를 올려 아뢰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년 토지 측량[打量]을 할 때 민가에서 입안 받은 곳은 다시 입지를 제출해서 양명量名⁵³을 기록하라는 사목事目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감히 이번 에 관에 소장을 올립니다.

저희 상전집의 신규新舊 입안 8통[度]입니다. 순치順治 신사년에 발급받은 은소면銀所面 입안, 순치 정해년에 발급받은 죽도竹島 입안, 강희康熙 경술년에 발급받은 오십치五+峙 입안, 신묘년에 발급받은 백야지白也只 제언堤堰이 있는 곳의 입안, 을미년에 발급받은 접산강蠶山岡 입안, 갑오년에 발급받은 백련동白蓮洞 입안, 을미년에 발급받은 녹산면祿山面 입안, 같은 해에 발급받은 백야지白也只 입안

53 양명(量名) 양안(量案)에 기재하는 기주(起主)의 성명이다.

을 일일이 헤아리신 후에 측량할 때 양명을 올리기 위해 입지를 성급하도록 명령해 주십시오.
행현감께서 처분하실 일입니다.

기해년 월 일 소지

[제사] 입지에 따라서 기주起主 이름을 등록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8일. 타량감관打量監官에게.
관 [서업]

縣內□…□尹生員□…□(左寸)

右謹陳所志矣段 今年量打時 民家立案處 更爲出立旨繫量名是如 有事
目云云 故敢此呈告爲白去乎 矣上典家新舊立案八度是白去乎 順治辛巳
所出銀所面立案 順治丁亥年所出竹島立案 康熙庚戌年所出五十峙立案
辛卯年所出白也只堤堰處立案 乙未年所出蝶山岡立案 甲午年所出白蓮
洞立案 乙未年所出祿山面立案 同年所出白也只立案乙 一一叅商教是
白乎後 打量時立量名次 立旨成給爲白只爲

行下向教是事

行縣監主 處分

己亥 月 日 所志

[題辭] 依立旨懸主宜當事 初八日 打量監官
官(押)

5-2-6) 병신년 천립 소지

[병신년에 천립이 해남관에 양안 등급을 요청한 소지.]

현산면縣山面 백야지리白也只里에 사는 천립千立 [좌촌左寸]

삼가 소지所志를 올리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의 논은 화산면花山面 일도리一道里 용자원容字員
에 있는데, 다른 사람의 전답이 섞여 들어가고 서로 침범하는 일 때문에 봄을 기다려 경계를 나누어
정하고자 밝은 정사를 펴시는 영감께 호소합니다. 위의 화산면 일도리의 양안量案을 베껴서 내어 줄
것을 특별히 명령하도록 해 주소서. 명령하실 일입니다.

영감님께서 처분해 주옵소서.

병신년 4월 일 소지.

[제사] 양안을 베껴서 줄 것. 12일. 도서관都書員에게.

관官 [서압署押]

화산면 일도리 용자정容字丁

1. 동쪽 4등의 직사각형 논[直畚]. 길이 52척尺, 넓이 6척, 1복卜 7속束. 【두 방향은 산, 서쪽은 정일丁一의 논, 북쪽은 정일丁日의 논】경작, 주인 없음.
2. 북쪽 3등의 사다리꼴 논[梯畚]. 길이 48척 9촌【긴 쪽[大頭] 13척, 짧은 쪽[小頭] 3척 7촌】 5복 8속. 【동쪽은 구다금九多金の 논, 남쪽은 정일丁日의 논, 두 방향은 길】정일, 진陳.
3. 남쪽 2작作 4등의 직사각형 논. 길이 143척 5촌, 넓이 57척, 40부負 4속. 【동쪽은 득환得還의 논, 세 방향은 길】정일.
4. 동쪽 2등의 사다리꼴 논. 길이 98척【긴 쪽 34척, 짧은 쪽 13척】 10부 1속. 【동쪽은 동인同人의 논, 남쪽은 주인 없는 묵혀둔 땅, 두 방향은 정일의 논】득환.
5. 동쪽 2작 3등의 직사각형 논. 길이 104척, 넓이 37척, 20부 9속. 【동쪽은 토따, 남쪽은 주인 없는 묵혀둔 땅, 서쪽은 정일의 논, 북쪽은 구다금의 논】경작자 동인.
6. 동쪽 3등의 사다리꼴 논. 길이 96척【긴 쪽 32척, 짧은 쪽 14척】 16복. 【동쪽은 구다금의 논, 남쪽은 주인 없는 묵혀둔 땅, 두 방향은 토따】경작자 이복二補).
7. 남범南犯 4등의 사다리꼴 논. 길이 222척【긴 쪽 49척, 짧은 쪽 13척】 37복 9속. 【동쪽은 구다금의 논, 북쪽은 정환丁還의 논, 남쪽은 길, 서쪽은 정일의 논】주인 없음, 진陳.
8. 남범 4등의 직사각형 논. 길이 122척, 넓이 26척 5촌, 18복 1속. 【동쪽은 토따, 남쪽은 엇세訖世의 논, 서쪽은 식연食延의 논, 북쪽은 길】경작, 주인 없음, 진陳.
9. 남범 4등의 사다리꼴 논. 길이 33척【긴 쪽 9척 3촌, 짧은 쪽 5척】 1복 3속. 【동쪽은 토따, 남쪽은 길, 두 방향은 주인 없음】경작, 주인 없음, 진陳.
10. 남범 5등의 직사각형 밭. 길이 46척 5촌, 넓이 33척, 3복 1속. 【동쪽은 토따, 세 방향은 주인 없는 묵혀둔 땅】경작, 주인 없음.
11. 북범北犯 5등의 직사각형 논. 길이 54척, 넓이 7척, 1복 3속. 사방 주인 없는 묵혀둔 땅. 경작, 주인 없음, 진陳.
12. 남범 4등의 직사각형 논. 길이 39척, 넓이 22척, 4복 2속. 【동쪽은 주인 없음, 남쪽은 토따, 두 방향은 덕엽德葉의 밭】경작, 주인 없음, 진陳.
13. 북범 6등의 직사각형 밭. 길이 72척, 넓이 17척, 3복 1속. 【세 방향은 길, 북쪽은 덕엽의 논】주인 없음.
14. 서범西犯 3등의 직사각형 논. 길이 75척, 넓이 14척, 7복 4속. 【세 방향은 길, 서쪽은 엇세의 논】경작자 덕엽.
15. 서범 3등의 직사각형 논. 길이 94척 7촌, 넓이 9척 1촌, 6복 7속. 【두 방향은 덕엽의 논, 서쪽은 이복二의 논, 북쪽은 묵혀둔 땅】엇세.

16. 남범 3등의 직사각형 논. 길이 78척 5촌, 넓이 19척 5촌, 11복. 【두 방향은 묵허둔 땅, 서쪽은 이복의 논, 북쪽은 동답(洞畓)】동인.
17. 남범 3작 5등의 직사각형 논. 길이 11척, 넓이 8척 7촌, 2속. 【두 방향은 길, 서쪽은 이복의 논, 북쪽은 동답(洞畓)】동인, 진陳
18. 서범 3등의 직사각형 논. 길이 104척 4촌, 넓이 9척 1촌, 12복 2속. 【두 방향은 엇세의 논, 서쪽은 금춘(今春)의 논, 북쪽은 묵허둔 밭】이복.
19. 서범 4등의 직사각형 논. 길이 228척, 넓이 26척, 33복 5속. 【동쪽은 이복의 논, 서쪽은 동인의 논, 서쪽은 식연(式延)의 논, 북쪽은 길】금춘.
20. 북범 4등의 직사각형 논. 길이 38척, 넓이 14척, 2복 9속. 【동쪽은 금춘, 남쪽은 동인의 논, 서쪽은 도랑, 북쪽은 길】경작, 식연.
21. 남범 2작 4등의 직사각형 논. 길이 117척, 넓이 20척 6촌, 39복 3속. 【동쪽은 금춘의 논, 남쪽은 구다금의 논, 서쪽은 길】동인.
22. 남범 4등의 직사각형 논. 길이 101척 2촌, 넓이 52척, 29복 3속. 【동쪽은 금춘의 논, 남쪽은 구다금의 논, 서쪽은 동인의 논】경작자 구다금.
23. 남범 2작 5등의 논. 길이 102척, 넓이 53척, 10복 8속. 【두 방향은 용화(龍化), 서쪽은 덕생(德生)의 논, 북쪽은 식연(式延)의 논】동인, 진陳.
24. 남범 2등의 직사각형 논. 길이 80척, 넓이 25척, 5복. 【동쪽은 구다금, 서쪽은 동인의 논, 두 방향은 동인의 논】경작자 동인.
25. 남범 2작 6등의 직사각형 논. 길이 46척, 넓이 14척 6촌, 5복 7속. 【동쪽은 묵허둔 땅, 서쪽은 덕생의 논, 두 방향은 동인의 논】경작자 동인.
26. 남범 2등의 사다리꼴 밭. 길이 87척【긴 쪽 36척, 짧은 쪽 9척】 4복 9속. 【서쪽은 묵허둔 밭, 남쪽은 덕생의 묵허둔 논, 두 방향은 구다금의 묵허둔 밭】주인 없음.
27. 북범 6등의 직사각형 논. 길이 72척, 넓이 31척, 5복 7속. 【동쪽은 구다금의 논, 남쪽은 묵허둔 밭, 서쪽은 덕생의 묵허둔 땅】경작, 주인 없음.
28. 북범 3등의 직사각형 논. 길이 114척, 넓이 29척, 23복 1속. 【동쪽은 문세(文世)의 논, 세 방향은 동인의 논】경작자 구다금.
29. 남범 3등의 직사각형 논. 길이 79척, 넓이 34척 5촌, 19복 6속. 【동쪽은 구다금의 논, 남쪽은 산, 서쪽은 묵허둔 밭, 구다금】동인.
30. 북범 3등의 직사각형 논. 길이 66척, 넓이 12척, 5복 5속. 【동쪽은 엇세의 논, 남쪽은 문세의 논, 서쪽은 구다금의 논, 북쪽은 자복(自卜)의 논】동인.
31. 북범의 사다리꼴 논. 길이 48척【긴 쪽 9척, 짧은 쪽 3척 3촌】 2복 9속. 【동쪽은 엇세의 논, 세 방향은 구다금의 논, 북쪽은 도랑】경작자 엇세.

32. 남범 2등의 직사각형 논. 길이 184척 5촌, 넓이 12척 3촌, 8복 9속. 【서쪽은 중심(重心)의 논, 북쪽은 엷세의 논, 남쪽은 구다금의 논, 서쪽은 문세의 논】경작자 동인.

34. 서범 3등의 직사각형 논. 길이 105척, 넓이 33척, 20복 6속. 【동쪽은 엷세의 논, 세 방향은 구다금의 논】경작자 문세.

35. 남범 3등의 직사각형 논. 길이 6척 3촌, 넓이 13척 2촌, 1복 8속.

36. 남범 2등의 직사각형 논. 길이 44척 3촌, 넓이 13척 6촌, 1복 8속. 【두 방향은 구다금】동인.

37. 서범 3등의 직사각형 논. 길이 28척 8촌, 넓이 12척 5촌, 2복 4속. 【동쪽은 산, 세 방향은 묵허둔 밭】경작자 덕생.

38. 북범 4등의 직사각형 밭. 길이 28척, 넓이 11척, 1복 5속 【동쪽은 구다금의 논, 세 방향은 주인 없는 묵허둔 땅】경작, 주인 없음.

39. 남범 5등의 직사각형 밭. 길이 48척, 넓이 13척, 2복 5속 【사방 묵허둔 밭】주인 없음.

40. 서범 5등의 직사각형 논. 길이 49척, 넓이 17척, 3복 3속. 【동쪽은 산, 세 방향은 묵허둔 밭】주인 없음.

41. 서범 5등의 직사각형 논. 길이 57척, 넓이 18척, 4복 1속. 【사방 주인 없는 묵허둔 땅】

42. 남범 5등의 직사각형 밭. 길이 98척, 넓이 31척, 12복 2속. 【세 방향은 주인 없는 묵허둔 땅, 남쪽은 덕생의 논】주인 없음.

43. 남범 2등의 직사각형 논. 길이 75척, 넓이 34척, 17복 9속. 【세 방향은 구다금의 논, 북쪽은 덕생의 논】경작자 구다금 【내(內) 7복 9속, 나머지 10복】

縣山面白也只居 千立[左寸]

右謹陳所志事段 矣身畚庫 在於花山一道容字員
是白乎矣 他人田畚與渾入相侵事 故待春欲爲分定
境界 仰訴于明政之下爲白去乎 上項花山一道量案
膽出次出給事 特爲行下爲白只爲

行下向教是事

令監主處分

丙申四月 日所志

[題辭]

量案膽給

向事 十二日

都書員

官 [署押]

花山一道容字丁

- 一 東四等直畝長五十二尺廣六尺一卜七束【二方山西丁一畝 北丁日畝】 時無主
- 二 北三等梯畝長四十八尺九寸【大頭十三尺 小頭三尺七寸】 五卜八束 東九多金畝 南丁日畝二方道】 丁日陳
- 三 南二作四等直畝長一百四十三尺 五寸 廣五十七尺四十負四束【東得還畝 三方道】 丁日
- 四 東二等梯畝長九十八尺【大頭卅四尺 小頭十三尺】 十負一束【東同人畝南無主陳 二方丁日畝】 得還
- 五 東二作三等直畝長一百四尺廣卅七尺廿負九束【東吐南無主陳, 西丁日畝北九多金畝】 時同人
- 六 東三等梯畝長九十六尺【大頭卅二尺, 小頭十四尺】 十六卜【東九多金畝, 南無主陳二方吐】 時二補
- 七 南犯四等梯畝長二百廿二尺【大豆四十九尺 小豆十三尺】 卅七卜九束 ■(時)【東九多金畝北丁還畝 南道西丁日畝】 無主陳
- 八 南犯四等直田長一百廿二尺廣廿六尺五寸十八卜一束【東吐南畝世畝 西食延畝北道】 時無主陳
- 九 南犯四等梯畝長卅三尺【大豆九尺三寸 小豆五尺】 一卜三束【東■(道)吐南道 二方無主】 時無主陳
- 十 南犯五等直田長四十六尺五寸廣卅三尺三卜一束【東吐 三方無主陳】 時無主
- 十一 北犯五等直畝長五十四尺廣七尺一卜三束四方無主陳 時無主陳
- 十二 南犯四等直田長卅九尺廣廿二尺四卜二束【東無主南吐 二方德葉田】 時無主陳
- 十三 北犯六等直田長七十二尺廣十七尺三卜一束【三方道 北德葉畝】 無主
- 十四 西犯三等直畝長七十五尺廣十四尺七卜四束【三方道 西畝世畝】 時德葉
- 十五 西犯三等直畝長九十四尺七寸廣九尺一寸六卜七束【二方德葉畝 西二卜畝北陳】 畝世
- 十六 南犯三等直畝長七十八尺五寸廣十九尺五寸十一卜【二方陳 西二卜畝北同畝】 同人
- 十七 南犯三作五等直畝長十一尺廣八尺七寸二束【二方道西二卜畝 北同畝】 同人陳
- 十八 西犯三等直畝長一百四尺四寸廣九尺一寸十二卜二束【二方畝世畝 西今春畝北陳田】 二卜
- 十九 西犯四等直畝長二百廿八尺廣廿六尺卅三卜五束【東二卜畝 西同人畝西食延畝北道】 今春
- 廿 北犯四等直畝長卅八尺廣十四尺二卜九束【東今春南同人畝 西作等北道】 時無主
- 廿一 南犯二作四等直畝長一百十七尺廣廿尺六寸卅九卜三束【東今春畝 南仇多金畝西道】 同人

卅二 南犯四等直畝長一百一尺二寸廣五十二尺廿九卜三束【東今春畝南仇多 金畝西同人
 畝】時仇多金
 卅三 南犯二作五等畝長一百二尺廣五十三尺十卜八束【二方龍化西德生畝 北式延畝】同
 人陳
 卅四 南犯二等直畝長八十尺廣廿五尺五卜【東仇多金 西同人畝二方同人畝】時同人
 卅五 南犯二作六等直畝長四十六尺廣十四尺六寸五卜七束【東陳西德生畝 二方同人畝】
 時同人
 卅六 南犯二等梯田長八十七尺【大頭卅六尺 小頭九尺】 四卜九束【西陳田南德生陳畝 二
 方仇多金陳田】無主
 卅七 北犯六等直畝長七十二尺廣卅一尺五卜七束【東仇多金畝 南陳田西德生陳】時無主
 卅八 北犯三等直畝長一百十四尺廣廿九尺廿三卜一束【東文世畝 三方同人畝】時仇多金
 卅九 南犯三等直畝長七十九尺廣卅四尺五寸十九卜六束【東仇多金畝 南山西陳田仇多
 金】同人
 卅 北犯三等直畝長六十六尺廣十二尺五卜五束【東齡世畝南文世畝 西仇多金畝北自卜
 畝】同人
 卅一 北犯梯田畝長四十八尺【大頭九尺 小頭三尺三寸】 二卜九束【東齡世畝 三方仇多金畝
 北渠】時齡世
 卅二 南犯二等直畝長一百八十四尺五寸廣十二尺三寸八卜九束【西重心畝北齡世畝 南仇
 多金畝西文世畝】時同人
 卅四 西犯三等直畝長一百五尺廣卅三尺廿卜六束【東齡世畝三方仇多金畝】時文世
 卅五 南犯三等直畝長六尺三寸廣十三尺二寸一卜八束
 卅六 南犯二等直畝長四十四尺三寸廣十三尺六寸一卜八束【二方仇多金】同人
 卅七 西犯三等直畝長廿八尺八寸廣十二尺五寸二卜四束【東山三方陳田】時德生
 卅八 北犯四等直田長廿八尺廣十一尺一卜五束【東仇多金畝 三方無主陳】時無主
 卅九 南犯五等直田長四十八尺廣十三尺二卜五束【四方陳田】無主
 四十 西犯五等直畝長四十九尺廣十七尺三卜三束【東山三方陳田】無主
 四十一 西犯五等直畝長五十七尺廣十八尺四卜一束【四方無主陳】
 四十二 南犯五等直田長九十八尺廣卅一尺十二卜二束【三方無主陳 南德生畝】無主
 四十三 南犯二等直畝長七十五尺廣卅四尺十七卜九束【三方仇多金畝 北德生畝】時九多
 金

內【七卜九束 余十卜】

3. 맹골도 지배

5-3-1) 1822년 임오년 이남 등 등장

[임오년에 이남 등이 진도군에 올린 완문 발급 신청 등장.]

조도鳥島 먼 바다 맹도孟島⁵⁴에 사는 백성 이남李楠, 최복남崔卜南, 박일선朴一先 等等

삼가 절박한 사정을 말씀드리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 섬은 궁벽한 곳에 떨어져 있는 여러 섬들 중에 가장 가장자리에 있는 작은 섬입니다. 바닷가는 척박하고 소금기가 많아서 한 되지기의 논도 없고 자갈한 돌밭만 있습니다. 넓이가 작아서 거주하는 사람이 10여 호戶에 불과하며 근근이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차례 큰 흉년을 겪은 후로 민호民戶가 쇠잔해져서 부담하고 있는 관세官稅를 갖추어 납부할 길이 전혀 없는데, 전에 없던 역役이 해마다 더욱 증가하고 사창社倉의 장교將校 무리가 날마다 오가니 저희들이 어찌 지탱하기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하리下吏가 행한 바가 아니라, 바로 본면本面の 풍헌風憲⁵⁵이 아래에서 농간을 부린 것입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특별히 감색監色⁵⁶을 보내 분명하게 조사한 후에 다른 섬의 예례에 따라서 납부할 관세를 정하고 나서 완문完文 2장을 작성하여, 한 장은 본면의 풍헌과 섬을 지키는 백성에게 내려 주고, 한 장은 저희 섬에 내려주어 영구히 준행遵行하게 하여 저희 섬이 지탱할 수 있도록 해 주소서. 명령하실 일입니다.

사또께서 처분해 주옵소서.

임오년 10월 일.

[제사] 먼 바다에 외파로 떨어져 있는 해도海島의 쇠잔한 백성에게 관납官納과 역役이 해마다 증가하니, 어찌 지탱할 수 있겠는가? 이후로는 하나같이 거차도巨次島⁵⁷의 예에 따라서 완문을 작성해 주고, 만약 뒷날의 폐단이 있으면 이것을 증빙 자료로 삼도록 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10일.

관官 [서업]

54 맹도(孟島) 맹골도(孟骨島).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에 딸린 섬.

55 풍헌(風憲) 조선 시대 면(面)이나 리(里)의 한 직임. 또는 그 직임에 있는 사람.

56 감색(監色) 감관(監官)과 색리(色吏)를 아울러 이르는 말. 감관은 관청(官廳)이나 궁가(宮家)에서 돈, 곡식 따위의 출납(出納)을 맡아보던 관리, 색리는 일정한 일이나 책임을 맡은 아전을 말함.

57 거차도(巨次島)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에 딸린 섬으로, 동거차도와 서거차도가 있음.

鳥島外洋孟島居民 李楠崔卜南朴一先等

右謹陳切迫情由事段 矣島則僻處諸島之最邊一小島也 濱海磽鹵 切無一升落畝 只有片片石田是如 幅圓偏小 所居不過十餘戶 僅僅支保是白加尼 自屢經大凶之後 民戶凋殘所當官稅 萬無備納之道是白去乙 自前所無之役 年年益加 倉校輩日日來往 矣民等安可支保之望乎 此非

下吏之所爲 乃是本面風憲之自下幻弄者 伏望別送監色 明白適干[摘奸]後 依他島例 所納官稅作定後 成完文二丈 一件則下本面風憲及守島民處爲白遣 一件下矣島 永久遵行 使矣島以爲

支保之地爲白只爲

行下向教是事

使道主 處分 壬午十月 日

[題辭]

海島殘民 僻處外洋/ 官納應役 歲加/年增 何可支保/乎 日後段 一依/巨次島例 成[貼]完文/ 以給 若有後弊/ 則以此憑考宜當/向事

初十日

官 [署押]

2) 1842년 윤 생원택 증 성록 의송

[1842년(헌종 8) 윤 생원택 사내증 성록이 상전을 대신하여 세를 내지 않는 이병관의 처벌을 요청하는 의송]

해남 연동蓮洞 윤 생원택 사내증 성록聖祿 [수결]

삼가 의송을 올리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 상전택은 누대에 걸친 종가宗家로서 3백여 년 동안 전래된 구장舊庄이 진도珍島 바깥바다 맹골도盟骨島에 있고, 그곳에서 생산되는 각종 수확물에 대해서는 이미 규례가 있습니다.

도민島民 이병관李丙寬은 그의 아버지 할아버지 위로 5, 6세대 때부터 대대로 섬에 있는 농장의 수노首奴였기 때문에 노주奴主관계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금년 봄에 갑자기 이병관이 저희 상전택을 무함하여 본관本官과 감영監營에 고소하여 양조兩造(원고와 피고 쌍방)가 송정訟庭에 나와 대질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바다 밖의 어리석은 백성이 비록 왕의 교화와 멀리 떨어져있다고 하더라도, 이병관은 노비로서 주인을 고소한 것이니 풍화風化와 크게 관련이 있을 뿐만이 아닙니다.

또한 본 사안으로 말씀드리면 연해沿海지역 사대부가가 소유한 도장島庄은 저희 상전덕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저희 상전덕의 구장舊庄인 맹골도와 맹골도 소속의 곽도藪島와 죽도竹島는 이미 문권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맹골도의 토산은 보리이고 죽도는 어복魚鰓이며, 곽도는 미역이므로 그 토산에 따라 약간씩 수량을 정하였습니다.

설령 이병관의 소장에 있는 내용처럼 전답을 예로 들어서 말씀드리면, 경작하는 관례를 따라서 공세公稅 외에 절반을 받는다면, 미역은 천여 속束을 내려가지 않을 것이고, 보리는 백여 섬石을 내려가지 않을 것입니다. 특별히 절해絶海의 섬 주민이라 사는 것이 불쌍하기 때문에, 당초 정한 액수보다 특별히 너그럽게 해서 깎고 또 깎았으며 줄이고 또 줄여서 겨우 10분의 1을 거두니, 보리의 경우는 20섬이고 미역은 25접貼입니다.

또 섬주민은 고기잡이가 주업이므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줄여준 미역과 보리의 수량을 대략 본전本錢의 예를 따라서 어유魚油 5되[斗], 건어乾魚 13속束, 소복小鰓 2접貼을 정식으로 삼았습니다. 이것은 섬 주민이 원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매년 받아들였고 지금까지 한 번도 거두지 못한 적이 없었습니다. 또 담배[南草]가 또 이곳의 토산인데, 섬 주민들이 편리하게 비용을 줄일 셈으로 돈 5냥으로 대납代納하였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준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을미년 이래로 미역은 간혹 절반을 가지고 오거나 혹은 3분의 1, 4분의 1을 가져다 바치더니, 재작년에는 1속束도 바치지 않았고 작년에는 80속으로 책임을 떼웠습니다. 또 섬이 흉년이 들었다고 핑계를 둘러댔기 때문에, 저희 상전덕은 보리 7섬과 쌀 1섬으로 구휼하여 상전의 보살핌과 안타까움이 이르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지금 이 이병관이 미역을 돈으로 대신해서 거두었다고 하는 것은 절대로 근거 없는 말입니다. 당해 연도의 미역은 매년 거두지 못했고 작년에도 거두지 못했으니 어느 겨를에 받아냈겠습니까. 또 주민이 있는 후에 장토庄土가 있는 법이니, 장주庄主가 장토 주민을 사랑하고 아끼는 것은 관가官家에서 백성을 보살피는 것과 같을 뿐만이 아닙니다. 이병관이 침해하고 포학하게 했다는 등의 말은 터무니없이 꾸며내 무함한 것이니, 이것은 이른바 기른 개에게 물리고 도둑이 도리어 매를 드는 격입니다.

이번에 진도 관가에서 회보回報한 내용에 ‘가을미역[秋藪]과 여름보리[夏牟]의 경우, 미역도 밭이 있고 보리도 밭이 있기 때문에 가을미역은 180속束, 여름보리는 18섬씩 매년 거두는 것으로 다시 정해주고, 어복魚鰓과 어유魚油, 담배 등의 경우는 영원히 침해하지 말라’는 뜻으로 완문完文을 성급해 주었습니다. 섬주민의 이름으로 바다를 건너 관에 정소呈訴하였는데 간사한 정황을 살피지 않고 겉으로만 대충 보고나서 관가官家가 이렇게 처분하였으니, 어찌면 이상할 것이 없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도장島庄을 소유한 각 집들은 토산에 따라서 액수를 정하여 거두어들이는 데에 본디 규례가 있어서, 주민은 호소하는 일이 없고 관가에서도 간섭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병관의 경우는 그가 섬 주민이라고 칭하더라도 본래 탕지蕩子라서 교활함이 종잡을 수 없습니다. 그는 영암靈巖 도시포都市浦⁵⁸에서 처가살이 하면서 가산을 탕진하였고, 또 교활한 계책을 내어 겉으로는 섬 주민을 위

해 억울함을 호소하는 척 했을지라도 속으로는 실제 도장을 욕심내서 저희 상전댁을 무함하고 감영을 속여 비록 물종(物種)의 견감(讞減)이 있었지만, 그는 그것을 빙자하여 농단을 부려서 한때의 술과 밥을 위해 사사로이 주머니를 채우려고 한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섬 주민이 털끝만큼이라도 억울한 단서가 있었다면, 그의 부조(父祖)가 대대로 사음(訴音)이었을 때는 관례에 따라 거행하여 한 번도 갈등이 없었다가 어찌 이병관에 이르러서 이처럼 억울하다고 하는 일이 있는지 정황이 뻔합니다.

저희 상전댁이 거듭 화변(禍變)을 당하여 밖으로 주장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엄히 단속하는 일은 없고 다만 보살펴주는 은택만 있었습니다. 섬 주민이 해마다 왕래하면서 관대함에 익숙해져서 그러한 상황을 익숙히 알고 있는 즉, 이병관이 이 기회를 틈타서 먼저 가을미역을 납부하지 않으면서 해마다 상전을 떠보다가 끝내 엄히 단속하는 일이 없자, 끝에 가서는 섬 주민을 꼬드기고 위협해서 상전을 무함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이런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저희 상전댁에게는 더욱 뼈에 사무치게 원통한 일입니다. 애타고 억울한 심정에 감히 암행어사께 호소하옵니다.

삼가 바라건대 헤아리신 후에, 이병관은 사안이 풍화와 관계된 일이니 관문(關文)을 보내 붙잡아 들여서 옥에 가두어 번갈아 형벌을 가하시고(輪刑), 저희 상전댁에서 거두어야 할 미역, 보리, 어복, 어유, 담배 등의 물품은 3백여 년 동안 전해온 옛 규례를 따라 그대로 받아들여서 하루아침에 모조리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천만번 바라오니 처분해 주십시오.

암행어사께서 처분하실 일입니다.

임인년 5월 일

[제사]

이와 같이 호소하니 응당 그렇다면 세세히 사실을 조사하여 보고하도록 하라.

진도관(珍島官)에게. 21일.

해남에서.

암행어사 [서업]

海南蓮洞尹生員宅奴聖祿[手決]

右議訟事段 矣宅以屢代宗家 有三百餘年傳來舊庄於珍島外洋盟骨島 而土產各種之所收者 已有規例是乎遣 島民李丙寬段 渠之父祖以上五六代 世爲島庄首奴 無異於奴主間 而忽於 今春 所謂丙寬者 構誣矣宅 呈官呈營 至於兩造訟下是乎 則 海外蠹氓 雖云王化絕遠 而丙寬則可謂以奴誣主 大關風化分除 良 且以本事言之 沿海士夫家之有島庄者 非徒矣宅獨然 各處比比有之 而矣宅之舊庄盟島及所屬藿島竹島 已載於文券中 而盟島則產麥 竹島則產

58 도시포(都市浦) 현재 영암군 도포면(都浦面)이다. 도포리는 도섯개, 도삿개, 도시포, 도포라고 불렀다.

魚鰔 藿島則產藿 故從其所產 略干定數是遣 設如丙寬之狀辭 以田畝例言之 若依耕作之例 公稅外一半分捧 則藿不下千餘束 麥不下百餘石 而特以絕海島氓 生涯可矜 故當初定額 特用寬曲 削之又削 減之又減 僅以十分一收捧 而麥則爲二十石 藿則爲二十五貼是遣 且島氓則以漁釣爲業 故從其所願 以其藿麥蠲減之數 略依本錢之例 魚油五斗 乾魚十三束 小鰔二貼定式 而此則島氓之所願 故每年收納 至于今無一未收是遣 南草則亦是土產 而島氓所便 省費爲計 以五兩錢代納 故依渠願聽施是加尼 忽自乙未以來 藿則或折半來納 或三分一四分一來納是如可 再昨年則 元無一束之納是遣 昨年則只以八十束塞責 而又以島凶稱托 故矣宅以七石麥一石租周恤是乎則 其所撫摩愛惜 非不至矣是去乙 今此丙寬 以藿代錢徵捧云者 萬萬無據是如乎 當年之藿 每爲未捧 則去年未收 何暇徵出是乎旡 且有民而後 可以有庄 則庄主之愛恤庄民 不啻如官家之顧護 而丙寬乃以侵虐等說 白地構誣 此所謂畜狗反噬 賊反荷杖是去乙 今番珍島官家回報內 秋藿夏牟段 藿有其田 牟有其田 故秋藿一百八十束 夏牟十八石式 每年收捧之意 更爲定給是遣 魚鰔油草等物段 永爲勿侵之意 完文成給教是乎所 名以島民越海呈訴 則未燭奸狀 驟看外面 官家之如是決處 容或無怪是乎矣 各家之有島庄者 從其土產收捧定額 自有規例 而民無呼訴 官無于涉是去乙 至於丙寬 則雖稱島民 而本是蕩子 奸滑無雙 贅居于靈巖都市浦 蕩洗其家產是遣 又生奸計 外雖爲島民訟冤 而內實生慾於島庄 構誣矣宅 欺罔營邑 雖有物種之蠲減 而渠則憑藉舞弄 欲爲一時酒食之私橐者 明若觀火是乎所 島氓若有一毫可冤之端 則渠之父祖 世爲舍音 依例舉行 無一葛藤是如可 奚至於丙寬 有此稱冤者 情節自縱是乎旡 且矣宅荐遭禍變 外無主張 故專無嚴制之政 只存撫恤之澤 島氓逐年來往 狃於寬恕 習知動靜是乎 則丙寬乘此機會 先以秋藿之未納 年年嘗試是如可 終無嚴戡之道 則未乃誘脅島民 構捏呈訴 至於此極者 尤爲矣宅切骨之冤是乎所 耿耿抱鬱 茲敢呼籲於繡節之下 伏乞叅商教是後 同李丙寬段 事關風化 發關捉來 移囚輪刑教是遣 矣宅所收藿麥魚鰔油草等物 亦依三百餘年遺來舊規 依前捧納 毋至一朝白失之地 千萬望良爲只爲

行下向教是事

繡衣使道主 處分

壬寅五月 日

(題辭) 如此呼訴 應其然矣 細細查實 以爲報來向事

珍島官 廿一日

在海南

暗行御史(押)

3) 1842년(헌종8) 5월 노 성록 소지

[1842년(헌종8) 5월 해남윤씨 연동 종가의 종 성록聖祿이 맹골도盟骨島 장민庄民 이병관李丙寬과의 세稅 수납 분쟁 건으로 진도군수珍島郡守에게 올려 같은 달 8일 처분을 받은 소지.]

해남海南 연동蓮洞 윤 생원택尹生員宅⁵⁹ 사내중 성록聖祿.

삼가 아뢰는 답답하고 억울한 사연은 다음과 같습니다. 맹골도盟骨島 장민庄民 이병관李丙寬⁶⁰이 의송議送을 올린 일과 굴포窟浦 강판철姜判哲의 어기漁基 문권 위조 일로 저의 대택과 노자奴子들의 대변對辨이 거의 한 달 가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허나 관가에 일이 많아 모두 명쾌하게 판결이 나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감히 바다를 건너 와 다시 호소합니다.

저희 상전택은 비록 문호가 영체零替하고 가력家力이 쇠락했으나 아직 고가古家의 엄치를 지키고 있습니다. 어찌 감히 자신의 장민庄民을 침학侵虐하여 田畝를 초래하겠습니까. 수령께서 다스리는 먼 바다의 소소한 여러 섬들은 대다수 해남 사대부가의 장소庄所입니다. 거차도巨次島는 송정松汀 이도사대李都事宅이 입안立案 받은 곳으로, 길보리·미역·건어·어유魚油·해삼·전복·홍합·소태素苔·김·해조海藻 등 허다한 물산을 받는데, 매년 소출이 저희 대이 거두는 것에 비해 4~5배는 많습니다. 만재도蔓才島는 백치白峙 이직산덕李稷山宅의 오랜 장토庄土로 보리·미역·기름·물고기 등 여러 종류의 산물이 나는데 거두는 양은 역시 거차도와 같습니다.

맹골도라는 곳은 두 섬 사이에 있어 생산되는 물종이 두 섬과 마찬가지로입니다. 당초 세稅를 정할 때 자잘한 것은 제외하고, 그저 미역 25점·보리 20섬·건어 13속·어유魚油 5말·소전복小全鰓 2점·담배 약간으로 하였는데 담배는 지금 대錢 5냥으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평소 위 두 섬에 비해 세가 제일 가볍다고들 하고 백성들이 원망하는 말도 없었으므로 10세대 동안 변함없이 전해질 수 있었고 폐단이 없었습니다.

맹골도 입안 원문서와 (맹골도를) ‘종가의 물건’으로 기록한 저희 대 선대 화회문기와會文記, 세를 거둔 건기件記는 지난번에 이미 살펴보셨고, 분부 내에 “이 건기를 보니 보리는 18섬, 미역은 18점, 건어 또한 9속에 불과하니 이것과 어긋난다.”라고 하셨습니다. 저희 대은 세대가 내려오는 중간에 형제의 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손支孫인 각 대에 원래 액수 중 미역 3점을 덜어서 나누어 주고, 또 4

59 윤 생원택(尹生員宅) 기존의 해제에서는 윤선도의 장남인 윤인미(尹仁美, 1607~1672)로 보았으나 김현영은 「전근대 해남윤씨가 맹골도 지배와 주민들의 稅貢 회피」(『고문서연구』39호, 2011.)에서 1842년으로 보았다. 따라서 윤생원은 윤주흥(尹柱興, 1824~1874)으로 추정된다.

60 이병관(李丙寬) 조부인 이남(李楠) 대부터 맹골도 주민 대표로 소장 올리는 인물로 해남윤씨가에서는 맹골도 도장(島庄)의 마름으로 여겼다. ‘맹골부자 이동지(李同知)’라는 호칭을 얻을 정도로 부를 축적한 인물이라 한다.(김현영, 앞의 논문, 223쪽 참조.)

접을 나누어 수노首奴의 보수 및 양역노비仰役奴婢의 옷감과 월료月料로 하는 등 형편에 따라 구분해 썼습니다. 보리 또한 2섬을 덜어내어 비복婢僕에게 주었으니 이것들은 본디 액수 중에서 변통한 것이고 액수 외로 늘린 것이 아닙니다. 건어 역시 제수祭需에 쓰이므로 덜어서 각 댁에 나누는 것이 4속이니 9속만 기록한 것이며, 어유와 전복은 본래 쪼개서 마련하도록 하지 않으므로 원 수량이 바뀌지 않은 것입니다.

본래 일이 이와 같은데 이병관의 모함 중에 “본래 미역을 납부하는 일이 없었는데 바뀌어 상례常例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겠습니까? ‘곽도蘘島’라는 두 글자가 입안에 명확히 실려 있을 뿐 아니라, 만약 미역을 받지 않는다면 꺾보리와 기름, 물고기 약간 등의 물건만으로 어찌 대대로 전해지는 종가의 재산이 되기에 충분하겠습니까?

또 ‘해마다 걷는 미역이 360속’이라는 말은 100여 속을 거짓으로 보탠 것이고 말을 꾸며 변명한 것입니다. 30편片을 1속으로 하는 것은 모든 섬에서 통용되는 규칙인데 어찌 홀로 20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이는 뜬소리에 불과하며 수를 늘려 사람들을 크게 놀라게 하려는 계획입니다.

병관이 또 말하기를 “미수未收된 것을 독촉하기를 살갓을 벗겨내고 골수를 뽑아내듯이 한다.”라는 것과 “대전代錢을 강제로 받아내는데 그 값이 (원래의) 몇 배나 된다.”라고 한 것은 더욱 근거가 없습니다. 그의 할아버지인 이남李穰이 올해 나이 80이라 불러다 하문下問할 수 없는 것이 한스럽습니다. 10년 전에는 미수未收라는 명색이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이남은 자기 아버지와 할아버지 때부터 대대로 검납檢納을 관장해 오면서 은혜와 신의로 서로 믿음을 주어 노비와 주인 관계와 다를 바 없습니다. ‘맹골부자 이 동지李同知⁶¹’라는 호칭 역시 저희 댁 덕택입니다.

저희 댁이 여러 차례 상변喪變을 겪으면서 과부와 고아가 집안을 주재했으나 겨우 보존할 수 있었던 것은 전부 섬의 미역에 의지한 결과였는데, 이남이 연로하여 그 아들이 대신 관리하면서 갑자기 을미년(1835)부터 해재海災를 입었다며 전혀 미역을 실어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또 다음 해에도 해마다 핑계를 대다가 작년에는 저희 댁만 혼자 흉년을 만났으니, 이런 지가 대략 7년째입니다. 지금 살림이 불안하고 다급한 것은 바로 오로지 이것 때문이나, 험한 바다 절해고도의 진위眞僞를 알기가 어려우니 내내 달래가며 기미羈縻하고 책임을 지도록 하였습니다. 여러 해 체납한 미역이 거의 1,000속이 넘는데 그 자가 언제 한 푼의 돈이라도 대납한 적이 있습니까? 올해 물건도 아직 받지 못했는데 묵은 체납을 논할 겨를이 있겠습니까? 저희 댁이 굴복시키고 싶다고 해도 과부와 고아만 있는 집에 무슨 위령威令이 있겠으며 강제로 받아내려고 한들 한참 떨어진 바다의 소굴에 누가 왕래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맡겨두고 믿을 뿐이니, 저희 댁은 실로 털끝만큼의 잘못이 없고 병관의 일은 진실로 변화

61 이 동지(李同知) 동지(同知)는 본래 종2품의 조선시대 관직 명칭. 그러 조선후기에는 납속(納粟)으로 받은 명예직 명칭으로 첩자와 함께 흔히 쓰였다. 이 동지라는 칭호 역시 그가 많은 부를 축적했음을 알 수 있는 근거이다.

무쌍하여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무릇 장민(庄民)으로서 그 주인을 무함(誣陷)하는 자는 간혹 변괴(變怪)에 관계되기도 하는데 그 자의 소원대로 감영(監營)에의 보고도 못하게 하시니, 저희 댁의 사정이 억울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차도와 만재도는 모두 물고기와 기름을 바치는데 맹골도 혼자만 깎아서 영구히 폐지하는 것은 아마도 공정한 의론(議論)이 아닐 것입니다. 지난 을유년(1825)에 만재도 백성들이 장주(庄主)를 원망하는 내용으로 무고(誣告)한 것이 이병관의 금번 소지 내용과 똑같습니다. 그 당시 순사(巡使)인즉 정동(貞洞) 조 상서(曹尙書)⁶² 대감으로 간교한 정상을 통찰하시어 도민(島民)들에게 차례대로 형벌을 내리시고 이씨(李氏) 댁이 하나의 삭감도 없이 예전대로 세를 거두도록 하셨는데 어찌 유독 저희 댁만 굴욕을 받고도 말을 못하게 하십니까.

어기(漁基) 위조문권(偽造文券) 문제는 (강판철의) 간교한 정상이 끝내 탄로나 돈 7냥으로 문서를 작성해 팔아치우려 하더니 사려던 자가 그 비리를 알고 도로 물리기에 이르렀으니 명쾌히 결단하여 처분하심이 합당합니다.

이에 감히 대강의 원통함을 호소하였으나 본 사안이 다단(多端)하여 말이 장황해졌으므로 황송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엇드려 빌건대 헤아리신 후 다시 명찰(明察)을 더하시어 공정한 판결로 억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천만번 바라옵니다. 분부하여 주실 일입니다.

진도(珍島) 안전주(案前主) 처분.

임인년(1842) 5월 일.

[제사] 너는 하찮은 사노(私奴)의 몸으로 어찌 감히 ‘억울하냐, 그렇지 않냐, ‘공정한 의론이 아닐 것’이라는 등의 말로 관장(官長)을 뒤흔드느냐. 매우 무엄하다. 지난 번 대질 조사 때를 말한다 해도 단지 문권을 따라 시행한 것이거늘 어찌 원통하다고 하는 것이며, 어찌 공정하지 않다고 말하는가? 굴포(屈浦) 강가(江) 놈과의 맞소송(對訟) 일로 말하더라도 출두한 사내(舍內)종이 즉시 (강가(江) 놈을) 데려와 대질(對質)하지 않고 바로 물러갔거늘, (내가) 어느 겨를에 조사하여 판결하겠는가? 지금 조사하고자 하니 네가 말한 위조문권을 만들어 준 놈을 즉시 물러가자마자 데려와 대령(對領)할 일이다. 8일. 소지를 올린 자에게.

진도관(珍島官)[서업] [인]

海南蓮洞 尹生員宅 奴聖祿

右謹陳悶枉情由段 矣宅以盟骨島庄民李丙寬呈議送事 及窟浦姜判哲漁基文券偽造事 奴子對下 殆將一月 連值官家多事 並未快決是乎所 茲敢越海復訴是白齊 矣宅雖門戶零替 家力剝落 尙守古家廉耻是去等 豈堪[敢]侵虐自己之庄民 以來[于]治下外洋 小小諸島 多

62 정동(貞洞) 조 상서(曹尙書) 1825년 전라도관찰사를 지낸 조봉진(曹鳳振, 1777~1838)을 말한다.

是海南士夫宅庄所 而巨次島卽松汀李都事宅立案也 其所收則皮麥甘藿乾魚魚油海蔘全
鯨紅蛤素苔海
衣海藻 許多物產 年例出來者 比諸矣宅所收四五倍夥多是遣 蔓才島乃白峙李稷山宅舊庄 而
麥藿油魚雜種之產 亦如巨次島所收是遣 所謂盟骨島 間於二島所產物種 與二島一般 而當
初定稅時
除却細瑣 只以藿二十五貼 麥二十石 乾魚十三束 魚油五斗 小全鯨二貼 南草略干段 今爲代
錢五兩是乎所 較諸上項二島之稅 素稱最輕 而民無怨言 故能傳之十世 壹遵而無弊矣 其
立案本券及矣宅先世和會文記 以宗物
載錄之券 與收稅件記 頃已下監 而官分付內 觀此件記 則麥止十八石 藿止十八貼 乾魚亦不
過九束 以此爲左是乎矣 矣宅中世 兄弟數多 故元額之中 除藿三貼 分隸旁支各宅是遣 又
分四貼 首奴應食及仰役奴婢衣資月料
從便區劃是遣 麥亦二石除出 以給婢僕 則此乃自其中推移也 非額外增益者也 乾魚段置 祭
需所用 故亦除分各宅者四束 而以九束載錄是白遣 魚油全鯨段 本非分破 故元數不改是白
齊 本事若此 而李丙寬構誣內 本無納
藿之事 而轉成常例云者 其可成說乎 藿島二字 昭載立案券不除 若非捧藿 則皮牟油魚略干
之物 豈足爲傳世宗物乎 又曰歲收藿三百六十束者 加誣百餘束 而飾辭發明是乎乃 三十片
一束 諸島之通規 則何獨以二十
片爲言乎 此不過浮言增數 駭人聽聞之計也 丙寬又曰 督責未收 剝膚推髓 又曰 代錢勒捧 其
價倍蓰云者 尤其無據矣 渠祖李楠年今八十 恨不得招致下問也 十年以前 曷嘗有未收名色
乎 李楠自其父祖 世掌
檢納 恩信相孚 無異奴主 而盟骨富者李同知之稱 亦矣宅之澤也 矣宅屢經變喪 孀孤主張 而
僅能保存者 全賴島藿是加尼 李楠年老 其子代管 而忽自乙未年 稱以被海災 全不載來 明
又明年 年年稱托 至於去年
則矣宅之獨遭凶年 凡七歲矣 目今家力遑遑 職由於此 而絕島險洋 情僞難知 一向撫摩 羈縻
警責是遣 積年藿逋 殆過千束 而渠何曾一分錢代納乎 當年之物未勘 則暇論宿逋乎 矣宅
雖欲枉政 孀孤門戶 有何威令是旡
雖欲勒捧 絕域海窟 誰能往來乎 任之而已 信之而已 則矣宅實無毫芥之失 而丙寬之事 誠閃
忽難測也 夫以庄民而誣陷其主者 或係變怪 而從其所願 削汰報營是乎尼 矣宅情事 冤乎
不乎 巨次蔓才之島 皆供油魚 則盟島
之獨削永廢 恐非公公之論也 向在乙酉年分 蔓才島民 稱怨庄主 其所誣呈 一如李丙寬今番
狀辭 而其時巡使道 卽貞洞曹尙書大監也 洞察奸狀 輪刑島民是遣 使李氏宅 依前收稅 無
一減削 則何獨矣宅受屈無言

是乎旆 漁基僞券段置 奸情畢露 以七兩錢成文斥賣是加尼 願買者知其非理 至於還退 則合當有明決處分 茲敢舉概鳴冤 而本事多端 語涉張皇 不勝惶悚是乎乃 伏乞叅商教是後 更加明察 並伸訟理之地 千萬

望良爲只爲

行下向教是事

珍島案前主 處分

壬寅五月 日

[題辭] 汝矣身 以么麼之私奴 焉敢以冤乎不乎 非公等之說 動掀官長乎 極爲無嚴是旆 向者面質查處時言之良置 只從文券施行是去乙 何以謂之冤乎是稱 何以謂之非公乎 以屈浦姜漢相訟事言之良置 所來奴子 不卽率來對卞 旋即退去是去乙 何暇以查決乎 今欲就查 則汝矣所爲僞造文券造給云者 退卽率待向事 初八日 狀者

珍島官[署押] [印]

5-3-4) 1842년(헌종8) 5월 노 성록의 소지

[1842년(헌종8) 5월 해남윤씨 연동 종가의 노奴 성록聖祿이 맹골도盟骨島 장민庄民 이병관李丙寬과의 세稅 수납 분쟁 건으로 진도 군수에게 올린 소지.]

해남海南 연동蓮洞 윤 생원댁尹生員宅 노奴 성록聖祿

삼가 아뢰는 억울하고 절박한 사연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 댁이 일전에 맹골도盟骨島 일로 다시 소지를 올리면서 억울하고 절박함에 격발되어 분별 있게 말씀 올리지 못하여 엄절한嚴截 제시題辭를 내리셨습니다. 이는 종의 실수가 아니라 저희 댁의 허물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두렵고 불안한 마음 가눌 길이 없습니다.

도장島庄의 전후곡절은 이미 모두 아셨으므로 거듭 말씀 올릴 필요가 없으나, 도민島民 이병관李丙寬은 이미 5, 6대에 걸쳐 맹골도 장토庄土의 수노首奴였으므로 (저희 댁과는) 노비와 주인 간이나 다름 없습니다. 그런데도 감히 협잡하려는 마음을 품고 턱없이 없는 일로 모함하여 도도와 군郡에 소장訴狀을 올린 것은 풍속의 교화에 관련되는 일입니다.

또 물고기·전복·기름·담배 등의 물건으로 말한다면, 그 자가 비록 백방으로 날조를 하더라도 기름 5말·건어 13속 4개·전복 200개·담배 대전代錢 5냥을 받기로 정한 규정은 감히 숨기고 피할 수 없이 (그 자신의) 의송議送 내에 환히 적혀 있습니다. 병관의 이와 같은 모습은 문권으로 만들었으니, 다른 곳에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관가에서는 병관의 간교한 실상을 거의 간파하실 수 있으니 더욱이나

판결해 주십시오.

또 이 병관은 섬 주민이라고 하지만 본래 탕아입니다. 영암(靈岩)에서 처가살이를 하며 도시와 갯가에서 잡기(雜技)로 가산을 탕진하고도 간교한 꾀를 내어 명분은 도민(島民)들을 위해 송사한다고 하나 내실로는 도장(島庄)에 욕심을 낸 것입니다. 처음에는 가을에 미역을 거두지 않은 것으로 시작하여 7년 동안 시험해 본 정황이 환하게 드러났으니, 1년의 미역 흉년은 이상할 것이 없지만 어떻게 유독 맹골도 하나만 7년간 흉해를 입을 수 있는지 □…□. 병관의 조부 이전 대부터 수노(首奴)가 되어 정해진 예에 따라 거행하면서 전혀 갈등이 없었는데, 도민들이 만약 한 올이라도 원망할 꼬투리가 있다면 어찌 그 당시 억울하다는 송사를 하지 않다가 병관의 대에 와서 이러한 호소를 하겠습니까. 이 또한 그릇됨이 드러나는 한 대목입니다.

맹골도는 멀리 떨어진 바다에 있어 백성이 있는 후에야 장(庄)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장주(庄主)가 장민(庄民)을 애호(愛恤)할 뿐만 아니라 관가가 돌보고 보호하듯이 합니다. 이런 면으로 미루어 보면 대체로 통촉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덕의 억울한 근심에 가만히 입 닫고 있을 수 없어 사유를 갖추어 암행어사님께 진정하여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보고하리’는 제사를 받았습니다. 이에 감히 그 문서를 올리며 아울러 다시 호소하오니, 엎드려 빌건대 헤아리신 후 동 이병관의 간교한 실상을 밝히시어 그 범분(犯分)의 죄를 엄히 다스려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 덕이 섬 주인으로서 거둬 온 미역·보리·물고기·전복·기름·담배 등도 300여 년 이어 온 오랜 규정에 의거해 잔패(殘敗)한 저희 덕이 하루아침에 밀천까지 죄다 잃어버리는 일을 면하게 되기를 천만번 바라오니 분부하여 주실 일입니다.

진도(珍島) 안전주(案前主) 처분.

임인년(1842) 5월 일.

[제사] 비록 감영에 보고하여 처결할 일이지만, 어사또의 제사 말씀이 이처럼 거듭 밝히시니, 해당 주민을 잡아다 다시 조사하여 바로잡은 후 사유를 갖추어 보고할 일이다. 24일. 형리(刑吏).

겸관(兼官)[서업][인]

海南蓮洞 尹生員宅 奴聖祿

右謹陳冤迫情由段 矣宅日前以盟骨島事 更有呈訴 冤迫所激 語不知裁 而官題嚴截(非) 奴子之所失 莫非矣宅之引咎

不勝悚慄是乎旣 島庄之前後委折 旣爲洞悉教是乎 則不必架疊 而島民李丙寬段 渠旣五六代 世爲島庄首奴 則無異於奴主間 而敢生挾雜

之心 白地構誣呈官呈營者 有關風化是乎遣 且以魚鰕油草等物言之 渠雖百端構捏 而至於油 五斗乾魚十三束四介全鰕二百介南草代

錢五兩收捧之規 則不敢隱諱 以至昭載於議送狀內 則丙寬此狀 是爲文券 不必他求是乎尼 官家庶可燭丙寬之奸狀 而更加決處教是乎旣

且丙寬則雖稱島民 而本是蕩子贅居于靈岩都市浦 以雜技蕩析其家產是遣 又生奸計 名雖爲
 島民訟冤 而內實生慾於島庄 初以秋藿
 之未收 七年嘗試者 情跡白露 一年藿凶 容或無怪 而奚獨盟骨一島 七年被凶是乎噏□…□
 是乎旂 丙寬之父祖以上 世爲首奴 依例舉行 而
 無一葛藤是如尼 島民若有一毫可怨之端 則何不其時訟冤是遣 乃至於丙寬有此呼訴是乎噏
 此亦爲違綻之一節是乎旂 盟島旣在絕海 則有民
 而後 可以有庄主之愛恤庄民 不啻如官家之顧護 推此一段 則庶或有洞燭之道是乎所 矣宅
 抱鬱耿耿 不容泯默 具由呈訴於繡衣使道主 至有
 查實報來之題音 故茲敢到付兼有更訴 伏乞叅商是教後 同李丙寬段 明燭其奸狀 嚴繩其犯分
 之罪是遣 矣宅島主所收藿麥魚鰓油草段置 亦依三
 百餘年遺來舊規 俾此殘敗之矣宅 幸免一朝白失之地 千萬望良爲只爲
 行下向教是事

珍島案前主 處分

壬寅五月 日

[題辭] 雖是報營決處者 而御史道題教 若是申明 當於捉致該民 更爲查正後 具由以報向事
 廿四日 刑吏
 兼官[署押][印]

5-3-5) 1842년(헌종 8) 5월 노 성록의 의송

[1842년(헌종 8) 5월 해남윤씨 연동 종가의 노奴 성록聖祿이 맹골도盟骨島 장민庄民 이병관李丙寬과
 의 세稅 수납 분쟁 건으로 암행어사에게 올린 의송議送.]

해남海南 연동蓮洞 윤 생원택尹生員宅 사내중 성록 [작명]

의송議送의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 택은 누대에 걸쳐 내려온 지 300여 년 되는 종가宗家로, 전
 래되는 구장舊庄이 진도 앞 먼 바다 맹골도盟骨島에 있고 그곳에서 나는 각종 토산물을 거두는 규례가
 있습니다. 도민 이병관은 그자의 조부 5, 6대 이전부터 도장島庄의 수노였으므로 노비와 주인 사이와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금년 봄에 병관이란 자가 저희 택을 모함하여 진도 관과 감영에 소장을
 올려 원고와 피고로 송사를 가리게 되었습니다. 먼 바다 무지한 백성에게 임금님의 교화가 너무 멀
 다고는 하나 병관의 일은 중으로서 주인에게 송사를 벌인 것이니 풍속의 교화에 크게 관계되는 일입
 니다.

본 사안으로 말하자면, 연해 사대부가로서 도장島庄을 소유하고 있는 곳이 저희 덕 하나 뿐만이 아니고 각 처에 준비하게 있으며, 저희 덕의 구장인 맹골도와 그 소속인 곽도藿島·죽도竹島는 이미 문권 중에 실려 있습니다. 맹골도에서는 보리가 나고 죽도에서는 물고기와 전복이 나고 곽도에서는 미역이 나므로 각기 나는 물산에 따라 대략(세의) 액수를 정하였습니다.

설혹 병관의 소지 내용처럼 전답田畠의 예로 말한다면, 경작의 예에 따라 나라에 바치는 세금 이외 수확의 반을 받아야 하는 것이니, 미역 1,000여 석보다 밑돌지 않으며 보리 100여 섬보다 못하지 않습니다. 허나 절해고도 백성의 생애를 가궁히 여겨 당초 정한 액수에 특별히 너그러운 법을 써 삭감하고 또 삭감하여 겨우 1/10인 보리 20섬, 미역 25점만 징수하였습니다. 또 도민들은 고기잡이를 업으로 삼기 때문에 그들의 소원에 따라 미역과 보리의 액수를 줄여주고, 대략 본전에 맞춰 어유魚油 5말, 건어 13속, 작은 전복 2점을 정식定式으로 삼았습니다. 이것은 도민들이 바란 바이므로 매년 수납하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미수된 적이 없습니다. 담배 역시 토산물이나 도민들이 편하게 비용을 줄여 계산하여 돈 5냥으로 대신 납부하였으므로 그 바랍대로 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을미년 이래로 미역을 절반 혹은 1/3, 1/4만 납부하다가 재작년은 1속도 납부하지 않았고, 작년은 다만 80속으로 책임을 면하려 하였으며, 또 섬에 흉년이 들었다고 핑계를 대었습니다. 하여 저희 덕에서 보리 70섬과 벼 1섬으로 두루 구휼하였으니 저희 덕이 지극하게 달래고 아껴주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지금 병관이 '미역 대신에 돈을 징수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만의 만 배나 터무니없습니다. 당시의 미역도 매년 받지 못했는데 어느 겨를에 작년의 미수未收를 징출했겠습니까.

또 백성이 있는 후에 장씨가 있는 것이니 장주庄主가 장민庄民을 아끼고 구휼할 뿐 아니라 관가처럼 돌보고 보호하는데, 병관이 '침학侵虐' 등의 말로 턱도 없이 모함을 꾸몄으니 이것이 소위 '기르던 개가 도리어 문다'는 것이고 '적반하장'이라는 하는 것입니다.

이번 진도 관가의 회보回報 내에 "가을 미역과 여름 보리는 다음과 같이 한다. 미역과 보리는 그 밭이 있으니 (수세의 근거가 있으므로) 가을에 미역 180속, 여름에 보리 18섬씩 매년 거둬 바치는 것으로 다시 정식으로 삼아주고, 물고기와 전복, 기름, 담배 등의 물건은 영구히 침해하지 않는다(거두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완문을 작성해 주어라."라고 하셨습니다. '도민이 바다를 건너와 정소'한다는 명분에 간교한 정상을 간파하지 못하고 언뜻 외면만 본 관가의 이런 처결은 간혹 이상하게 여겨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도장島庄을 소유한 각 가문들이 각기 산물에 따라 받는 세의 액수를 정하는 데에는 원래 규례가 있고 백성은 호소하지 않으며 관은 간섭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병관의 일은 자신을 도민島民이라고 칭하지만 본래 간교하기 짝이 없는 탕자로서 영암에서 처가살이를 하며 도시와 갯가에서 가산을 탕진한 자입니다. 그러고는 또 간계奸計를 내어 외면으로는 도민들을 위해 원통함을 소송한다고 하지만 내심으로는 도장島庄에 욕심을 내어 저희 덕을 포함하고 영읍營邑을 기망했습니다. 영읍에서 비록 물종物種을 면제해 주었으나, 그 자는 구실을 내세워 농간을 부려 한 때의 술과 음식

값으로 사사로이 쓰려는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도민들이 만약 터럭만큼이라도 원망할 꼬투리가 있었다 해도 그의 조상이 대대로 마름 노릇하며 규정대로 거행할 때는 하나의 갈등도 없다가, 어찌서 병관의 대에 이르러 이런 원망의 말이 있는 것인지 그 정황이 저절로 드러납니다.

또 저의 덕이 거듭 화변禍變을 만나 바깥어른의 주재가 없으므로⁶³ 엄히 제재하는 법이 전무하고 무휼撫恤의 은택만 있는데, 도민들이 해마다 왕래하면서 관용에 익숙해지고 이러한 상황을 익히 알았습니다. 병관은 이 기회를 틈타 우선 가을의 미역 미납을 해마다 시험해 보다가 끝내 엄하게 단속하지 않자 마침내 도민들을 꾀고 협박하여 없는 일을 꾸며 소장을 올리고 이처럼 극한 지경에 이른 것이니 저희 덕의 빠져진 원통함이 더욱 심하고 마음에 품은 억울함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에 감히 암행어사께 호소하오니, 엿드려 바라옵건대 헤아리신 후 동 이병관을 풍화風化로 엮으시어 관鬪을 보내어 잡아다가 옮겨 가둬가며 율형輪刑을 받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 덕에서 거뒀던 온 미역·보리·전복·기름·담배 등 물건 또한 300여 년 내려온 구규舊規대로 예전처럼 납부하도록 하여 하루아침에 밀천까지 잃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천만번 바라옵니다. 분부하여 주실 일입니다.

수의사도주繡衣使道主(암행어사) 처분.

임인년(1842) 5월 일.

[제사] 호소가 이와 같으니 응당 그러한지 세세히 조사하여 보고할 일이다. 진도관珍島官에게, 21일. 해남海南에서.

암행어사暗行御史[서업][마패인]

海南蓮洞 尹生員宅 奴聖祿[着名]

右議訟事段 矣宅以屢代宗家 有三百餘年傳來舊庄於珍島外洋盟骨島 而土產各種之所收者 有規例是乎遣 島民李丙寬段 渠之父祖以上五六代 世爲島庄首奴 無異於奴主間 而忽於今春 所謂丙寬者 構誣矣宅 呈官呈營 至於兩造訟下是乎 則海外蠢氓 雖云王化絕遠 而丙寬則可謂以奴訟主 大關風化分除良 且以本事言之 沿海士夫家之有島庄者 非徒矣宅獨然 各處比比有之 而

矣宅之舊庄盟島及所屬藿島竹島 已載於文券中 而盟島則產麥 竹島則產魚鯪藿島則產藿 故從其所產 略于定數是遣 設如丙寬之狀辭 以田畝例言之 若依耕作之例 公稅外一半分捧 則藿

63 거듭 화변을 ... 없었으므로 윤덕희(尹德熙, 1685~1766)의 아들인 윤중(尹悤, 1705~1757)과 손자인 윤지정(尹持貞, 1731~1756)이 연달아 사망하고 윤중경(尹鍾慶, 1767~1810)이 양자로 들어왔으나, 그 아들인 윤광호(尹光浩, 1805~1822)가 다시 젊은 나이로 사망하는 일이 있었다. 이 송사가 있던 당시 집안을 주관한 사람은 윤주흥(尹柱興, 1823~1873)으로 아직 어린 나이였다. 원문의 '外無主張'은 이런 상황을 표현한 말이다.

不下千餘束 麥不下百餘石 而特以絕海島氓 生涯可矜 故當初定額 特用寬典 削之又削 減之又減 僅以十分一收捧 而麥則爲二十石 藿則爲二十五貼是遣 且島氓則以漁釣爲業 故從其所願 以其藿麥蠲減之

數 略依本錢之例 魚油五斗 乾魚十三束 小鰻二貼定式 而此則島氓之所願 故每年收納 至于今 無一未收是遣 南草則亦是土產 而島氓所便 省費爲計 以五兩錢代納 故依渠願聽施是加尼 忽自乙未以來 藿則

或折半來納 或三分一四分一來納是如可 再昨年則元無一束之納是遣 昨年則只以八十束塞責 而又以島凶稱托 故矣宅以七石麥一石租周恤是乎 則其所撫摩愛惜 非不至矣是去乙 今此丙寬 以藿代錢徵捧云者 萬萬

無據是如乎 當年之藿 每爲未捧 則去年未收 何暇徵出是乎旡 且有民而後 可以有庄 則庄主之愛恤庄民 不啻如官家之顧護 而丙寬乃以侵虐等說 白地構誣 此所謂畜狗反噬 賊反荷杖是去乙 今番珍島官

家回報內 秋藿夏牟段 藿有其田 牟有其田 故秋藿一百八十束 夏牟十八石式 每年收捧之意 更爲定給是遣 魚鰻油草等物段 永爲勿侵之意 完文成給教是乎所 名以島民 越海呈訴 則未燭奸狀 驟看外面

官家之如是決處 容或無怪是乎矣 各家之有島庄者 從其土產 收捧定額 自有規例 而民無呼訴 官無干涉是去乙 至於丙寬 則雖稱島民 而本是蕩子 奸滑無雙 贅居于靈巖都浦 蕩洗其家產是遣

又生奸計 外雖爲島民訟冤 而內實生慾於島庄 構誣矣宅 欺罔營邑 雖有物種之蠲減 而渠則憑藉舞弄 欲爲一時酒食之私橐者 明若觀火是乎所 島氓若有一毫可冤之端 則渠之父祖世爲舍音

依例舉行 無一葛藤是如可 奚至於丙寬 有此稱冤者 情節自綻是乎旡 且矣宅荐遭禍變 外無主張 故專無嚴制之政 只存撫恤之澤 島氓逐年來往 狃於寬恕 習知動靜是乎 則丙寬乘此機會 先以

秋藿之未納 年年嘗試是如可 終無嚴戢之道 則末乃誘脅島民 構捏呈訴 至於此極者 尤爲矣宅切骨之冤是乎所 耿耿抱鬱 茲敢呼籲於

繡節之下 伏乞叅商教是後 同李丙寬段 事關風化 發關捉來 移囚輪刑教是遣 矣宅所收藿麥 魚鰻油草等物 亦依三百餘年遺來舊規 依前捧納 毋至一朝白失之地 千萬望良爲只爲 行下向教是事

繡衣使道主 處分

壬寅五月 日

[題辭] 如此呼訴 應其然矣 細細查實 以爲報來向事 珍島官 廿一日 在海南

6) 1845년(헌종11) 윤 도사댁 노 성록 소지

[1845년(헌종11) 해남윤씨 연동 종가의 노奴 성록聖祿이 맹골도盟骨島 장민庄民 이병관李丙寬과의 세稅 수납 분쟁에서 이겨 수표手標를 받았으나 여전히 미수未收가 발생하자 이를 징계해달라고 청원 하는 소지.]

해남海南 백련동白蓮洞 윤 도사댁尹都事宅⁶⁴ 노奴 성록聖祿.

삼가 아뢰는 사연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 댁은 누대에 걸친 종가로 대대로 내려오는 구장舊庄이 사포 치하의 맹골도孟骨島에 있어 세를 거뒀습니다. 본 도島는 멀리 떨어진 바다에 위치해 있으므로 좋은 말로 달래어 따르도록 하는 태도로 일관해 왔습니다. 당초에 정한 세稅에서 덜어주고 또 삭감 해주다가 다시 깎아서 보리 20섬, 미역 15점, 건어 13속束, 전복 2점, 어유魚油 5말, 담배 대전代錢 5냥을 해마다 받아 왔습니다.

근래 섬의 풍속이 점점 완악해져서 해로海路가 멀리 떨어진 것을 믿고는 도민 이병관李秉寬이 경박한 무리들을 선동하고 이서吏胥들을 엮어서 감히 뒤흔들어 고칠 피를 내었습니다. 몇 해 전 진도 관가와 전라도 감영에 소장訴狀을 올려 송사를 벌였으나 도민들이 끝내 죄를 자복하고 순종하여 다시 바꾸려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수표手標를 작성해 바쳤습니다.

하오나 해로가 험난하고 멀어 내왕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도민들이 정식定式 중에 해마다 얼마간의 미수未收를 내는 것을 능사로 삼았습니다. 만약 이를 엄하게 응징하여 경계하지 않으면 예전 같은 폐해가 생길까 두려워 이에 감히 사유를 갖추어 우러러 호소합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헤아리신 후 특별히 엄한 제사題辭를 내리시되, 저희 댁 수세정식收稅定式대로 해마다 모두 납부하라는 뜻으로 남다르게 적어 주시어 해도海島의 완악한 습성을 징계하도록 해주십시오. 천만번 바라오니 분부하실 일입니다.

진도玠島 안전주案前主 처분.

을사년(1845) 10월 일.

64 윤 도사댁(尹都事宅) 윤 도사는 윤덕희(尹德熙)로 인한 택호이다. 윤덕희는 1763년 70세 이상인 자에게 내린 은전으로 도사(都事)에 제수되었다. 『승정원일기』 1763년 1월 1일 기사 재인용.) 해남 윤씨 연동 종택의 고문서 중 ‘윤 도사댁’이라는 택호를 쓴 문서는 1603년부터 1845년까지 15건이 현전한다. 특히 1620년대 토지매매명문 중에 다수가 발견된다.

[제사] 해도海島의 완악한 습성이 비록 어질지 못하다고 하나, 윤도사댁에서 수 백 년 동안 세를 받아온 땅을 동同 이병관의 간계奸計인지로 영읍營邑에 정소하여 비의호송非義好訟⁶⁵하였다. 그러다 임인년(1842)에 이르러 제 죄를 알고 자복하여 예전대로 각 항목을 거둬 납부한다는 뜻으로 수표를 바친 것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이후 만약 거짓말로 관에 송사를 제기하는 폐해가 있거나 수쇄收刷 때 추호라도 납부를 거부한다면 법정에 잡아와 우선 간계를 꾸미는 예전 버릇을 다스려 나중의 습성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2일.

진도관珍島官 [서업][인]

海南白蓮洞 尹都事宅 奴聖祿

右謹陳情由段 矣宅以累代宗家世傳舊庄 有治下孟骨島收稅 而本島居在絕海 故一以撫循爲主 當初收稅定式

減之又減 削之又削 麥爲二十石 藿爲二十五貼 乾魚十三束 全鰻二貼 魚油五斗 南草代錢五兩 逐年捧納矣 挽近

以來 島俗漸頑 恃其海路之絕遠 島民李秉寬 煽動浮薄 締結吏胥 敢生撓改之計 年前□□呈

□(營)邑

訟詰之端 □島民輩 未乃服罪歸順 更無變改之意 成手標納宅是乎乃 海路險遠 來往極難 故島民輩□

以定式中 逐年有如干未收 作爲能事 若未嚴加懲飭 則恐或有如前之弊 茲敢具由仰訴爲去乎 伏乞

叅商教是後 特下嚴題 矣宅收稅定式 逐年畢納之意 別般臚列 以懲海島頑習之地 千萬望良 爲只爲

行下向教是事

玆島案前主 處分

乙巳十月 日

[題辭] 海島頑習 雖曰不淑 尹都事宅 屢百年收稅之地 同李秉寬 有所奸計是隱喻 呈營呈邑 非■(理)義好訟是如可 至于壬寅年 自知其服 依前例各項收納之意 成手標納宅分明是如 乎 日後若有誣訴呈邑之弊是去乃 收刷之時 一毫拒納 則捉致法庭 爲先嚴治其前習之奸計 以杜後日之習 宜當事 初二日

65 비의호송(非義好訟) 비리호송(非理好訟)과 같은 말로 이치에 어긋난 송사를 일으키기 좋아한다는 뜻이다. 『속대진(續大典)』 「형전(刑典)」 소원(訴冤)조에 '비리호송죄'에 대한 처벌로 장(丈) 100, 유(流) 3000리에 처한다는 규정이 있다.

珍島官[署押][印]

5-3-7) 1848년 이병관 수표

[1848년(헌종14) 무신년에 이병관이 그간 납부하지 못한 159냥 6전을 8월에 바치기로 약속하며 작성한 한글 수표.]

미수기未收記

무신년 미납한 것을 탕감해주신 덕도 태산과 같은데, 기유년 7월에 9접 4속을 바치지 않았고, 경술庚戌년에 15속을 바치지 않았으며, 모든 종자값이 2접 4속인데, 세 가지를 합하여 값을 쳐서 159량을 6전을 8월에 바치기로 수표를 작성하여 바칩니다. 보리 미수 39되.

8월 12일 수기주 이병관(수결)

미슈기

무신연 미슈탕감ᄃᆞᆫ신 덕도 퇴산가스온디 기유연 七月 미슈九결 四束ᄃᆞᆫ고 경술연 미슈十五束ᄃᆞᆫ고 月中 싹가 二결四束이온드 三슴결가ᄃᆞᆫ오니 一百五十九兩六錢을 八月로 바치기로 슈포ᄃᆞᆫ여 바치웁니다 보리 미슈 三十九되

八月十二日 슈기주 니병관(手決)

5-3-8) 1853년 이사원·최천손·박몽치 등 고목

[1853년(철종4) 도민島民 이사원, 최천손, 박몽치가 서방님에게 지난해에 바치지 못한 미역과 전복 등을 올리면서 작성한 한글 고목.]

도민島民 등 고목告目⁶⁶

삼가 문사오니, 이때에 서방님 건강은 어떠하신지 그리는 마음 그지 없사오이다. 섬에 사는 저희

66 고목(告目) 지위가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특히 하리(下吏)가 그의 상관(上官)에게 올리는 글. “告目, 賤者告尊者之書, 稱告目.” 『古今釋林』 40, 羅麗吏讀)

들은 (서방님께서) 아래로 보살펴 주시는 은택으로 겨우겨우 (생계를) 누리고 있사오되, 올해의 살아 나갈 방도는 물이거나 섬이거나 (어렵기는) 다를 바가 없사오니, (구구한 사정을) 어찌 다 아뢰오리까? 아뢰옵건대, 올해 (바쳐 올려야 할 바의) 미역은[감곽甘藷]67 수대로 올리웁고, 지난해에 바치지 못한 것으로 두 접(더) 하웁고, 소각 미역 다섯 못이웁고, 어유魚油 한 말 두 되 다섯 홉과 지난해에 바치지 못한 한 말과 전복 한 접 다섯 관과 지난해에 바치지 못한 한 관을 바쳐 올리오니 받아 주시기를 거듭거듭 바라옵나이다. (이 밖에) 나머지 아뢰 말씀은 물길이 바빠 다 갖추어 아뢰지 못하오이다.

계축년(1853, 철종4) 칠월 십일, 이사원·최천손·박몽치 올림.

미납추봉기未納追捧記: 상어沙魚 유油 한 되[升], 또 여덟 되. 가을에 내지 못했던 것[秋等頃條]으로서, 미역[藷] 세 접[貼]68 다섯 못[束], 전복[鮑] 한 관[串]69(에 해당하는 바)인 네 접[貼] 네 못[束], 문희가 밀린 것[聞喜逋]70 두 날[片], 미역 열두 못[束].

[배면] 계축년(1853, 철종4) 7월 고목 상어[沙魚] 2못 5개

도민 등 고목

근복문시시의/ 서방임기체후어더혹옵신지 복모구구 무임하성/지지로소이다 도민등은 복몽하홀 지탁하와/ 근근지보하오다 금연싱도지스는 도육/간 달을비업스온니 엇지다양달하올니가/ 취빅 금연감곽씨는 의슈상납하웁고 거연미/납쑈二접하웁고 소각五束서웁고 어유一斗/二升五合과 거연 미늘一升와 전복一점五과과/ 거연미납쑈一곳 실상납하온니 밧즈하웁시/물 천만복망니옵니다 여는 슈로충충하야/ 불비복유하로니다

니스원

癸丑七月 초十日 최천손 등 拜上

박몽치

未納追捧記 沙魚

油一升又八升八合 秋等頃條

藷三貼五束 鮑一串 聞喜逋 二片藷十二束

在四貼四束

67 감곽(甘藷)씨는 미역은. 여기에 보이는 ‘-짜는’은 이두(吏讀)에 흔히 쓰는 ‘殿’에 ‘은’이 결합한 형태이다. 현대국어의 보조사 ‘은/는’ 정도에 해당한다.

68 접(貼) 본문에서 ‘첩’이라 적었던 단위이다.

69 곳(串) 관(貫). 편지의 본문에서 ‘곳’의 뜻으로 ‘곳’이라 적었던 것을 물목에서 다시 ‘串’이라 적었다.

70 聞喜逋 聞喜는 도민 중 하나인 李聞喜와 동일한 사람으로 추정된다. ‘逋’는 체납한 조세를 의미한다. 또는 관청의 물건을 사사로이 써버리는 ‘逋欠’과 관련될 수도 있다.

[배면] 癸丑年七月告目 沙魚二束五介

5-3-9) 계유년 장흥도호부사 첩보의 초본

[계유년에 장흥도호부사가 전라도 순찰사에게 산하 각 섬의 세금 부과 대상을 조사, 보고한 첩보의 초고 등본.]

계유년 8월 17일 순사巡使의 영문營門에 보고했던 문건의 초본

첩보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에 도부到付된 관찰사의 비감결秘甘結에 의거하여, 본 부府에 소속된 만치晩峙, 진목津木, 갈목곶木, 맹골孟骨 4개 섬의 백성들은 칼을 채워서 엄히 가두었습니다. 탈세를 조사하는 절차는 별도로 민을 만한 심복을 보내어 기어코 자세히 파헤쳐서 책자로 만들고, 다시 헤아리실 사유를 보고하겠다고 이미 첩보하였습니다.

결수結數를 조사하여 세금의 총수를 매기는 일은 각별히 신중해야 하는 것인지라, 날마다 친하여 믿을 수 있는 사람을 가려서 각 섬으로 보낼 즈음에 누누이 강조하여 창고마다 굶어모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4개 섬을 조사하여 얻은 것이 마침내 38복 6속이 되므로, 조목조목 책자로 만들어 올려 보냅니다. 해당 네 섬의 형상이 사마귀 같기도 하고 탄환 같기도 하여, 푸른 바다 속의 한 덩어리의 척박한 땅이라고 말할 만합니다.

癸酉八月十七日 報巡營門文草
爲牒報事 前矣到付使秘甘結內乙用良
本府所屬晩峙津木芻孟骨四島
民人段 着枷嚴囚 漏稅查執之節
別遣可信耳目 期於詳覈修成冊
更報計料之由 已爲牒報爲有在果 查
結執摠 審慎自別 日擇親信人 送
各島之際 十分操飭 逐庫爬櫛是乎 則
四島查得 乃爲三十八卜六束乙仍于 條
列修成冊上使是在果 同四島之爲形
如瘧如丸 可謂蒼海一塊脊薄

5-3-10) 1766년 윤생원택 노 돌쇠 명문

[1766년(영조42) 박인걸朴仁傑이 윤생원택 노 돌쇠⁷¹에게 광전⁷¹을 방매하면서 작성해 준 명문.]

건륭 31년(1766) 병술 8월 26일 윤생원택 노 돌쇠⁷¹에게 주는 명문

이 문서를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긴요하게 쓸 데가 있어 매득⁷¹한 진도군⁷¹의 불매도⁷¹ [豊邁島]⁷¹에 속해 있는 새로 만든 섬의 광전⁷¹의 강변에 있는 전부를 봉가⁷¹전⁷¹ 51냥을 수대로 받고, 위 사람에게 본문기, 소지, 불망기를 모두 넘겨주어 영구히 방매하고자 한다. 이후에 자손이나 동생 가운데 잡담⁷¹이 있다면, 이 문서를 가지고 관에 고하여 시비를 가릴 일이다.

광전주⁷¹ 朴仁傑 [착명]

증인⁷¹ 閑良 金漢水 [착명]

필⁷¹ 閑良 朴秀才 [착명]

乾隆三十一年丙戌八月二十六日 尹生員宅奴 珩

金處明文

右明文事段 要用所致 買得是在

珍島郡地豊邁島所屬新爲造

島藿田 江邊沒數捧價錢

伍拾壹兩 依數捧上爲遣 右

人處 本文記所志不忘記并以

永永放賣爲去乎 日後子孫

同生中 如有雜談是去等

持此文記告官下正事

藿田主 朴仁傑 [着名]

證人 閑良 金漢水 [着名]

筆 閑良 朴秀才 [着名]

71 불매도[豊邁島] 지금의 관매도.

5-3-11) 1670년 윤생원택 노 금복 명문

[1670년(숙종 5) 가읍손加邑孫이 윤생원택 노 금복今卜에게 선척을 만들 때 필요한 물품을 빌리면서 작성해 준 명문.]

경술년(1670) 11월 15일 윤생원택 노 금복今卜에게 주는 명문

이 문서를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긴요하게 쓸 데가 있어서 새로 배를 만들기 위하여 상목常木 12동同 8필匹, 백미白米 10두斗, 정조正租 3석石을 값으로 받기로 하고, 오는 12월 그믐날 내에 지급하지 못하면 이날부터 별도의 이자를 붙이고 이 문서를 가지고 관에 고하여 시비를 가릴 일이다.

대자貸者 가읍손加邑孫 [左寸]

증인訂人 득현得賢 [左寸]

필집筆執 이영선李英善 [着名]

庚戌十一月十五日 尹生員宅奴 今卜處 明文

右明文爲臥乎事段 要用(所)致以 新造船

隻價常木十二同八匹白米十斗正

租三石等物乙 捧上爲白遣 來十二月

晦日內以 不給則此日別利爲白乎旅

此文記告官卜正事

貸者 加邑孫 [左寸]

訂人 得賢 [左寸]

筆執 李英善 [着名]

5-3-12) 정묘년 원호택 명문

[정묘년 이춘성李春成이 원호택에 돈을 빌리면서 배 한 척을 전당잡힌다는 내용으로 작성해 준 명문.]

정묘 12월 초9일 원호택院湖宅에 주는 명문

이 문서를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위 택에 전문 47냥兩 6전錢 빌리고, 대신 배 한 척을 전당 잡힌다. 이달 20일을 기한으로 정하여 이 돈 47냥 6전을 모두 납부할 뜻으로 이 문기를 작성해 주되, 만

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배를) 방해하여 납부하고, 만약 다른 말을 한다면 이 문서를 가지고 시비를 가린다.

선주船主 이춘성李春成 [작명]

丁卯十二月初九日 院湖宅前 明文

右明文事段 右宅錢四十七

兩六錢 代船一隻典當白

去乎 今月二十日限定

以 右錢四十七兩六錢 沒

數納上是去乎 此文

記出給是乎 若不然

則放買次納上 若

有他說 以此文記辨

呈事

船主 李春成 [着名]

제6장

토지 쟁송과 부역 면제 소송

해설

자료

1. 토지 소유권 쟁송
2. 조세, 잡역 면제 소송

6장은 토지 소유권을 둘러싼 토지 쟁송 관련 문서와 해남 윤씨가에서 비호庇護하는 전장田莊, 노비, 촌락에 대해서 잡역이나 부세를 부과하는데 대해서 양반가의 수호지와 백성이라는 의미에서 면세를 요청하는 문서들이다. 1절은 토지 소유권을 둘러싼 쟁송에 관련된 문서들이다.

토지 쟁송

1) 천안天安 경주인京主人 가사家舍 점유 소송

토지 쟁송을 둘러싼 문제는 다양한 건件과 여러 가지 문서 형태로 나타난다. 토지 쟁송을 둘러싼 문제로서 제일 먼저 들 수 있는 것은 ‘1628년 박광학 소지’(1번 문서)이다. 이 문서는 포수 박광학朴光鶴이 군기시 건너편의 천안 경주인 가사에 임시로 거처하도록 허가해줄 것을 한성부에 요청한 입지 신청 소지이다. 이어서 2번 문서도 1번 문서에 이어진 문서로 같은 해에 박광학이 남부에 빈집에 잠시 살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올린 입지 신청 소지이다. ‘1630년 박광학 소지’(3번 문서)도 같은 건인데, 1630년(인조 8)에 박광학이 군기시 건너편 천안 경주인 집에 임시로 살고 있는데, 세도가를 칭하면서 자신을 쫓아내려는 데 대해 계속 살게 해달라고 남부에 올린 입지 신청 소지이다. 이 건에 대한 한성부의 판결[題音] 문서가 별도로 있다. 즉 향이香伊와 박광학 사이에 경주인 가사家舍 소유권 문제로 발생한 소송에 대한 제음이 있다(29번 문서). 이 문서가 해남윤씨가에 전해져 내려온 것은 이 가사에 대한 소유권이 해남윤씨가에 있기 때문이다. 동부에 해남윤씨의 경저가 있는 것과 관련해서 검토할 자료라고 생각된다.

2) 대흥사大興寺 의지승依止僧 자운自云 토지 소송

다음으로 재미있는 사건은 대흥사 의지승 자운과 윤경담의 토지 소송 건이다. 1648년(인조 26)(5번 문서)부터 1652년(효종 3) 8월까지(14번 문서) 9차례 이상 소지를 올리고 5년 이상에 걸쳐서 소송을 이어온 문서이다. ‘1648년 대흥사 의지승 자운 소지’(5번 문서)는 1648년 4월 대흥사 의지승依止僧 자운自云이 윤경담尹景談과 논 소유권을 두고 생긴 갈등의 해소를 위해 입지立旨를 발급해 달라고 청원한 소지이다. ‘1649년 1월 대흥사 의지승 자운 소지’(6번 문서)는 대흥사 승 자운이 윤경담의 논 도매盜買 건으로 분쟁 중에 있는 관련 문서들을 올리고 침해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청원하는 소지이다. ‘1649년 9월 대흥사 승 자운 소지’(7번 문서)는 1649년 9월 대흥사 승 자운이 남평 이 생원에게 구입한 논에 대한 소유권 문제로 판관判官 윤경담尹景聯에게 소송을 당하자 맞소송을 하였으나 윤경담이 나타나지 않자 입지를 발급해 달라고 요청하는 소지이다. ‘1650년 1월 대흥사 승 자운 소지’(8번 문서)는 대흥사 승 자운이 논 소유권 송사에서 패소한 윤경담이 패소 뒤에도 논을 점유하고 있음을 호소하는 소지이다. ‘1651년 1월 대흥사 승 자운 소지’(9번 문서)는 자운이 논 소유권 송사에서 패소한 인복이 자신을 살해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음을 호소하는 소지이다. ‘1651년 2월 대흥사 승 자운 소지’(10번 문서)는 대흥사 승 자운이 윤경담이 도매盜賣한 김인복金仁福에게 논값을 윤경담으로부터 받아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청원하는 소지이다. ‘1651년 3월 대흥사 승 자운 소지’(11번 문서)는 대흥사 승 자운이 논 9마지기를 둘러싼 윤경담과의 소유권 분쟁 중 윤경담이 관의 판결을 이행하지 않으므로 이행할 때까지 해당 논에서 경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청원하는 소지이다. ‘1651년 8월 대흥사 승 자운 소지’(12번 문서)는 1651년 8월 대흥사 승 자운이 논 소유권을 두고 송사를 벌인 인복仁福이 패소 후에도 침범을 계속하니 단속해 달라고 청원하는 소지이다. ‘1652년 1월 대흥사 승 자운 소지’(13번 문서)는 대흥사 승 자운이 인복이라는 종이 자신의 논을 빼앗기 위해 위협을 가한다고 호소하는 소지이다. ‘1652년(효종 3) 8월 대흥사 승 자운 소지’(14번 문서)는 대흥사 승 자운이 윤경담, 인복과의 논 소유권 분쟁과 관련하여 입지를 발급해 달라고 청원하는 소지이다.

이상과 같이 승 자운이 10여 차례 이상 소지를 올려 승소를 하였지만 윤경담의 강력한 힘 앞에 자신의 소유권을 행사할 수가 없고 심지어는 무력으로 자신에게 위협을 가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결국 이 일련의 문서들이 해남윤씨가에 남아 있는 것은 아마도 승 자운이 더 이상 윤경담의 힘 앞에 버티지를 못하고 해남윤씨가에 혈값에 매도를 하였거나 투탁을 함으로써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자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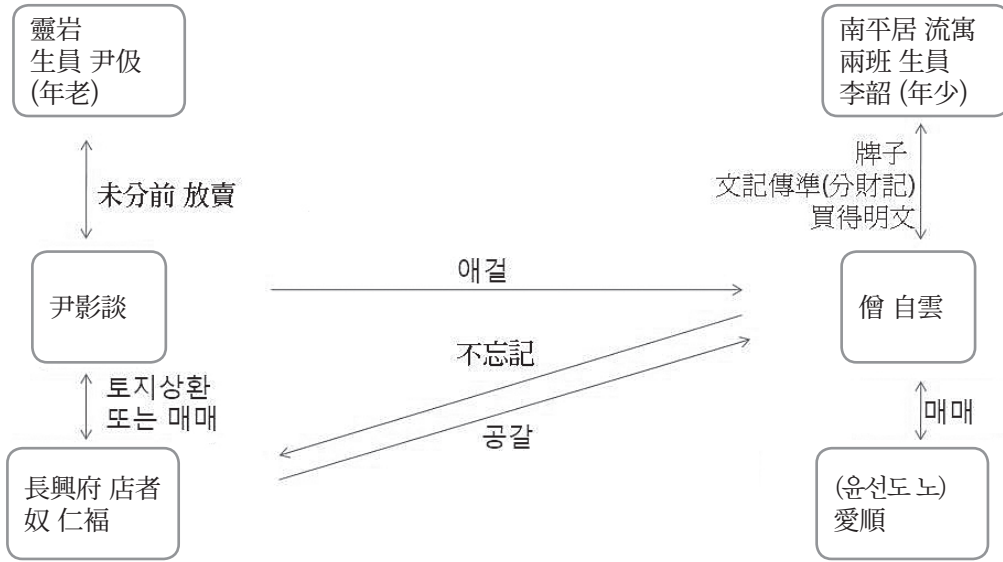
신축년(1661, 현종2) 대흥사의 승 자운이 올리려고 작성한 소지의 초고로 실제로는 올려지지 않은 문서이다. 승 자운이 매득한 해남현 녹산면의 논 9마지기를 둘러싼 분쟁은 1647년 자운이 이생원덕으로부터 매득하면서부터 비롯되었다. 이 땅은 원래 남평에 사는 이생원과 영암에 사는 윤생원이 같은 상속권을 가진 데서 비롯되었다. 영암의 생원 윤급이 분재가 되기 전의 토지를 윤경담에게 방매하

였고, 윤경담은 다시 장흥부의 점자인 노 인복에게 전매하였다. 그런데 정식으로 분재를 하였을 때에 그 논은 남평에 사는 생원 이소에게 분재되었고, 생원 이소는 그 논을 자운에게 매도하였다. 이중으로 매도된 녹산면의 논에 대해서 그 논을 전매한 윤경담은 자운에게 애걸을 하고 최종 매수자인 인복 이는 족당들과 함께 공갈, 협박을 하여 어쩔 수 없이 인복에게 8~9년 전에 자운이 인복에게 불망기를 써주었다. 이후에도 윤경담과 인복은 논값을 지불하지 않아서 분함을 이기지 못하고 자운도 (윤선도의 노인) 애순에게 전매를 하였다.

이들 문서가 모두 해남윤씨가에 있는 것으로 미루어 이 논은 최종적으로 자운의 뜻대로 해남윤씨가에 귀속된 것으로 보인다. 승 자운이 윤 별좌택 노 애순에게 매도한 토지매매 명문은 그것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아래에 자운 답 관련 문서와 소송 관련도를 참고로 제시한다.

<표> 자운自雲 답책 관련 문서 일람

번호	문서	연도	발급자	수취자	비고
①-1	명문	순치16(1659) 2월	승 자운	윤 별좌택 노 애순	
①-2	명문	순치4(1647) 12월	이생원택 호노 석경	승 자운	
①-3	패지	정해(1647) 12월	상전 이	차노 석경	
①-4	전준패지	계사(1653) 10월	상전	노 석경	
①-5	전준소지	계사(1653) 10월	동부접 사노 석경	현감	
②-1	소지	순치8(1651) 정월	자운	현감	
②-2	소지	신묘(1651) 2월	자운	현감	
②-3	소지	신묘(1651) 3월	자운	현감	
②-4	소지	경인(1650) 2월	자운	현감	
③-1	소지	임진(1652) 8월	자운	현감	
③-2	소지	임진(1652) 정월	자운	현감	
③-3	소지	신묘(1651) 8월	자운	현감	
③-4	관문	순치4(1647)	남평현감	해남현감	
③-5	소지	정해(1647) 11월	이생원택 노 석경	현감	
③-6	소지	순치6(1649) 정월 28일	자운	현감	
③-7	소지	기축(1649) 정월 26일	자운	현감	
③-8	소지	무자(1648) 4월	자운	영감	
④	소지	신축(1661)	자운	관사주	



승자운 논 매매 사건관련도

3) 박선금朴先令과 종 난절卵節 토지 소송

일련의 토지 소송 사건으로 많은 문서가 남아있는 것은 박선금 토지 소송 사건이다. (21~25번 문서) ‘1687년 3월 박선금 소지’(21번 문서)는 1687년(숙종 13) 박선금朴先令(일부 문서에는 善令으로도 기록됨)이 난절卵節에게 빼앗긴 자신의 모친 명의 논을 추심해 달라고 해남 현감에게 청원하는 소지이다. ‘1687년 3월 중순 박선금 소지’(22번 문서)는 같은 해 3월 중순에 박선금이 모친 명의 논 소유권 분쟁과 관련해 갑술양안甲戌量案에서 해당 논이 기재된 부분을 등출해 달라고 청원한 소지이다. 소송의 근거 자료를 위한 행위이다. ‘1687년 9월 박선금 소지’는 같은 해 9월에 박선금이 모친 명의 논을 점유하고 있는 난절을 심문하여 땅을 돌려달라고 해남 현감에게 청원하는 소지이다. ‘1687년 10월 박선금 소지’(24번 문서)도 역시 같은 해 10월에 박선금이 논 소유권 쟁송 대상자인 난절卵節이 관령官令을 거역하고 논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리고 처벌해 달라고 해남현감에게 청원하는 소지이다. 그러다가 갑자기 우연한 해프닝이 일어난다. ‘1687년 11월 박선금 소지’(25번 문서)는 박선금이 피고인 소송 중인 종 난절의 집에 가서 술에 취하여 해당 논 소유문서를 도둑맞고서는 그것이 난절의 소행임을 밝혀달라고 요청하는 소지이다.

토지 매매와 소송을 둘러싼 자료들로 해남윤씨가에는 많은 문서들이 남아있는데, 이 장에서는 위에 거론한 사건들 이외에 단편적이기는 하지만 그러한 정황을 이해하는데에 도움이 되는 자료들, 즉

소지, 명문, 배자 등의 자료들을 소개한다. 또한 토지 소유권과 관련해서 빼놓을 수 없는 자료가 결송입안인데, 해남윤씨가 문서에는 2건의 결송입안이 존재한다. ‘1686년 임간林揀 처 김씨金氏 결송입안’(27번 문서)와 ‘1716년 김 첨사댁金僉使宅 사내중 화골禾骨 결송입안’(28번 문서)이 그것이다. 전자는 1686년 해남현에서 임간의 처 김씨에게 현산면縣山面의 논 3마지기에 대해 결급決給해 준 결송입안이고 후자는 1716년 해남현에서 김 첨사댁 사내중 화골에게 말구원秣丘員에 있는 강자岡字 돈 시종時種 3마지기에 대해 결급해 준 결송입안이다.

매매 명문에는 토지 뿐만 아니라 가사家畝, 우마牛馬(31번 문서), 관전舊田(32번 문서), 선척船隻(33, 34번 문서) 등을 매매하는 명문도 있다.

부역 면제 소송

2절은 조세, 잡역에 대한 면제 소송이다. 부역 면제를 위한 요청은 소지라는 문서 형태로 제기된다. 그러한 면제를 허락해주는 것은 물론 소지에 결정 내용을 알려주는 제음題音으로도 그 효력을 발휘하지만, 관官이나 향청鄉廳, 작청作廳(질청이라고도 한다)에서 완문을 발급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휘하기도 한다.

‘1603년 윤 도사댁 노 복철 소지’(1번 문서)는 1603년(선조 36) 윤 도사댁 노 복철이 녹산면과 현산면의 진지陳地 과세에 대하여 어사의 처분을 첨부하여 해남현에 면세를 요청하며 올린 소지이다. ‘1625년 윤 생원댁 노 득춘 의송’(2번 문서)은 1625년(인조 3) 윤 생원댁 노 득춘이 선유어사宣諭御史인 순천부사에게 올린 면세 요청 소지이다. 어사와 해남 관의 진결 면세를 받아왔는데 새삼 과세를 받아 억울하니 면세를 해달라는 의송이다. 여기에서는 순천부사가 선유어사로서의 역할을 하였다. ‘1731년 윤현서 등 등장’(3번 문서)은 1731년(영조 7)에 윤현서 등이 어질금의 이름으로 포흠이 된 환곡을 백련동에 족징, 인정으로 징수하려는 것에 대하여 면제해줄 것을 요청하며 해남현에 올린 등장이다.

‘1833년 현일면 백련동 완문’(4번 문서)은 1833년(순조 33)에 향리들의 역소役所인 작청作廳에서 백련동의 마름에게 환분還分, 군정軍丁, 연호煙戶 등의 역을 면제해준다는 것을 인정한 완문이다. ‘1836년 현산 금쇄동 완문’(5번 문서)은 1836년에 작청에서 고산 윤선도의 뜻이 담겨 있는 금쇄동에 유민流民들이 거주하기를 원하는 자가 있으면 호역戶役과 신역身役을 면제시켜 정착을 장려할 것을 인정한 완문이다. 역시 향리들의 역소인 작청에서 발급한 완문이다. ‘1873년 연동 완문’(6번 문서)은 1873년(고종 10)에 어초은漁樵隱 윤효정尹孝貞의 묘가 있는 연동에 면제되었던 연호잡역을 다시 징수하기로 하자, 면중面中에서 매년 8냥씩을 납부하고 대신 연동 마을의 호역을 면제해 주기를 논의하는

완문이다. ‘1875년 윤종연 등 완문’(7번 문서)은 1875년(고종 12) 전라도 도순찰사가 백련동에 사는 윤종연 등의 소지에 따라 해남윤씨가에 환분還分, 군정軍丁, 연호煙戶 등의 역을 면제해달라는 청원을 허락한 완문이다. ‘1875년 을해년 연동 완문’(8번 문서)은 1875년 해남현(관, 죄수와 향리)에서 선현의 묘소가 있는 연동의 환분, 군정, 연호 등의 역을 면제해주겠다는 완문이다. 관(해남현감)과 죄수, 담당 향리들의 연명 서압이 있다. ‘1879년 윤 감역택 노 복철 소지’(9번 문서)는 1879년(고종 16) 윤 감역택 노 복철이 해남현에 상전택에 잡역세의 면세를 요청하며 올린 소지이다. 원래 연동의 해남 윤씨는 여러 잡역을 면제해준다는 완문이 있었는데 중간에 잡역 부과를 일반 백성들과 똑같이 하므로 완문을 접련하여 소지를 올린 것이다. 연동의 해남 윤씨가 잡역의 대상이 될 정도로 힘이 약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경진년(1880) 연동 이임 오준철의 소지’(10번 문서)는 1880년에 해남 연동 이임伊任 오준철吳俊哲이 마을에 부과된 죽물가竹物價 등의 역역을 면제해 달라고 요청한 소지이다. ‘1899년 청원서’(11번 문서)는 1899년(고종 36) 해남현에 연동 해남 윤씨가의 잡역의 견감을 요청하며 올린 소지이다. 원래 잡역 등을 부과하지 않았는데 근래에 부과되어 억울하다는 것이다.

‘계유년 장흥도호부사 첩보의 초본’(12번 문서)은 계유년에 장흥도호부사가 전라도 순찰사에게 산하 각 섬의 세금 부과 대상을 조사, 보고한 첩보의 초고 등본이다. 13번 문서는 보길도의 해남윤씨 집안에서 전라도 순찰사에게 소장을 올리기 위해 작성한 기초 자료이다.

참고문헌

- 문숙자, 2016, 「조선후기 兩班家系와 地域民의 관계 및 그 변화양상-해남윤씨 고문서를 중심으로-」 『고문서연구』 48.
- 문숙자, 2012, 「17~18세기 해남윤씨가의 토지 확장 방식과 사회경제적 지향」 『고문서연구』 40.
- 김현영, 2011, 「전근대 해남윤씨가의 맹골도 지배와 주민들의 稅貢 회피」 『고문서연구』 39.
- 김현영, 1999, 「호남지방 고문서를 통해 본 조선시대의 가족과 친족」 『호남지방 고문서 기초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안승준, 1990, 「16~18세기 해남윤씨 가문의 토지노비 소유 실태와 경영-해남윤씨가 고문서를 중심으로」 『청계사학』 6.

1. 토지 소유권 쟁송

6-1-1) 1628년 박광학 소지

[1628년(인조 6)에 포수 박광학이 군기시 건너편의 천안 경주인 가사에 임시로 거처하도록 허가해 줄 것을 한성부에 요청한 입지 신청 소지.]

새로 올림.

남부¹ 소천변계²에 임시로 살고 있는 포수^{砲手} 박광학^{朴光鶴} [작명^{着名}]

삼자 소지^{所志}를 올리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먼 지방의 빈한한 포수로 근년의 호란^{胡亂} 때 호종^{扈從} ... (원문결락) ... 없으므로 말미암아 이곳저곳 임시로 의탁하여 사는 것도 족인^{族人}의 집이 없어서 때로 의지할 곳이 없으니, 매우 민망합니다. ... (원문결락) ... 군기시^{軍器寺} 건너편 천안^{天安} 경주인^{京主人}의 가사^{家舍}가 빈 땅으로 있다고 하는데, 이 경주인이 상경^{上京}할 뜻이 없다고 합니다. 그 주인이 상경하여 도로 찾을 동안 집을 지어 들어가 살도록 입지^{立地}를 (성급해) 주도록 명령하실 일이라는 것을 삼가 말씀드립니다.

한성부^{漢城府}에서 처분해 주옵소서.

송정^{崇禎} 원년(1628, 인조 6) 5월 일. 소지.

[제사]

비어있는 집이 확실하거든 본 주인이 찾을 동안 잠시 들어가서 살 것. 16일. 호^戶.

1 남부(南部) 한성부 남부 중 하나로서, 관할 구역은 도성 안의 광통방·호현방·명례방·대평방·훈도방·낙선방·성명방·명철방·정십방 등 9개의 방과 성 밖의 성신방과 예성방 2개의 방이다.

2 소천변계(小川邊契) 조선시대 남부 광통방과 동부 창선방 두 곳에 있던 계로서, 계 이름은 청계천 주변에 있었던 데서 유래되었다.

新呈

南部小川邊接 砲手 朴光鶴 [著名]

右謹陳所志矣段 矣身亦 遐方貧寒砲手以 頃年胡亂時 扈從

□…□無乙仍于 處處止接 亦無族人家是如 時無依據之地 極爲悶望

□…□乎矣 軍器寺越邊 天安京主人家舍空地有之云 同京

□…□上京無意 其主人上京還推間 作家入接次以 立旨

□…□爲只爲

行下向教是事亦在 謹陳

□□(漢城)府 處分

□□(崇禎)元年五月 日 所志

[題辭]

空室的實是

去等 本主推尋

間 姑爲入接

向事

十六戶

6-1-2) 1628년 박광학 소지

[앞 문서에 이어진 문서로 1628년(인조 6)에 박광학이 남부에 빈집에 잠시 살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올린 입지 신청 소지.]

남부南部 소천변계小川邊契에 임시로 살고 있는 포수砲手 박광학朴光鶴 [작명]

삼가 소지所志를 올리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머무를 집이 없어서 한성부漢城府에 (소지를) 올렸는데, '빈 집이 확실하거든 본 주인이 찾을 동안 잠시 들어가 살라'는 제시題辭를 이미 주었습니다. 소지를 점련하니, 살펴서 입안立案을 성급해 주도록 명령하실 일이라는 것을 삼가 말씀드립니다.

남부에서 처분해 주옵소서.

송정崇禎 원년(1628, 인조 6) 6월 일.

[제사]

본 주인이 찾을 동안 들어가 살 것. 24일.

관 [서업]

南部小川邊接 砲手 朴光鶴 [着名]
右謹陳所志矣段 無止宿之家 故呈漢城府爲白乎矣 空室□(的)
實是去等 本主人推尋間 姑爲入接亦 已爲題給爲白有□
粘連所志相考 立案成給爲白只爲
行下向教是事亦在 謹陳
南部 處分
崇禎元年六月 日
[題辭]
本主推尋間 入接
向事
廿四日
官 [署押]

6-1-3) 1630년 박광학 소지

[앞 문서에 이어진 문서로 1630년(인조 8)에 박광학이 군기시 건너편 천안 경주인 집에 임시로 살고 있는데, 세도가를 칭하면서 자신을 쫓아내려는 데 대해 계속 살게 해달라고 남부에 올린 입지 신청 소지.]

후사後司 취수吹手³ 박광학朴光鶴 [착명]

삼가 소지所志를 올리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외방外方의 사람으로 입속入屬하여 종군從軍하였으며, 남부南部 소천변계小川邊契 군기시軍器寺 건너편의 천안天安 경주인京主人의 빈 터에, 지난 무진년(1628, 인조 6) 5월에 한성부와 본부本部에 (소지를) 올려 아울러 입안立案을 성급成給해 둔 후 막사幕舍를 지어 살았습니다. 저는 외방의 포수砲手로 나이가 늙고 외로운 처지인데, 세도가를 칭하면서 저의 막사를 철거하라고 서너 사람이 욕을 하였습니다. 위의 사정을 자세히 살피시어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입지立旨를 성급成給하도록 명령하실 일입니다.

부감部監께서 처분해 주옵소서.

송정崇禎 3년(1630, 인조 8) 8월 일. 소지.

3 취수(吹手) 砲手の 오자로 보임.

[제사]

잡이와서 심문할 것. 9일. 낭청(郎廳)에게.

[서업]

後司吹手 朴光鶴 [著名]

右謹陳所志矣段 矣身外方之人以 入屬從軍爲白乎旆 南部
小川邊軍器寺越邊 天安京主人空代乙 去戊辰年五月分 呈漢
城及本部並以 立案成置後 造幕居生是白去乙 矣身外方
砲手 年老孤黨爲可 勢家稱云爲白遣 矣造幕撤毀亦 三
四人叱辱爲白臥乎所 右良情 細細鑑當 仍存接居生次以 立旨成給爲白只
爲

行下向教是事

部監處分

崇禎三年八月日 所志

[題辭]

捉來推閱

初九

郎廳

[署押]

6-1-4-1) 1647년(인조 25) 11월 이생원의 사내종 석경 소지

[1647년(인조 25) 이소(李韶)가 외가로부터 상속받은 논을 둘러싸고 윤경담(尹景談)과의 사이에서 발생한 소유권 분쟁 해결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그의 종인 석경(石京)이 올린 소지(所志).]

남평(南平)에 임시로 거주하는 이생원택(李生員宅) 사내종(사내종) 석경(石京).

소지(所志)로 아뢰는 노(奴)의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縣)에 있는 저의 상전(上田) 전답은 상전(上田) 외가 쪽 물건입니다. 각(各)택(宅)들이 아직 재산을 나누어 갖기도 전에, 상전(上田) 문중 양반인 영암(靈巖)의 윤생원(尹生員)께서 상황(上田) 분별도 없이 분재(分財) 전의 허다한 전답을 전부 자기 멋대로 팔았습니다. 그러다 지난 을해년(1635, 인조 13)에 상전(上田) 문중의 사손(使孫)들이 한데 모여 위 전답과 노비들을 일일이 평균(平均) 분집(分執)⁴할 때에 해남현(海南縣) 녹산(綠山)의 옛 성(城) 방죽(防築) 내에 위치한 논 9마지기(9)가 저의 상전(上田) 몫이 되었

고, 그해 즉시 내려가 추심하여 (영암 윤생원이 판 논을) 도로 물리셨습니다.

그런데 이 논을 몰래 산 윤경담尹景談이라는 이는 이 논이 분재되기 전 산 가격을 탐내어 제 상전 문중과 상관없는 양반에게 불법적으로 구입했으니, 본 주인이 추심하면 마땅히 법전法典에 따라 말없이 돌려주고 그 본전은 흠쳐 판 쪽에서 받아내야 합니다. 허나 이 경담이는 후미진 바닷가의 무지하고 극악한 상놈으로서, 위 논을 모조리 거탈據奪⁵하려는 궁리를 하고 없는 일을 꾸며내 관에 청원서를 올리고 제 상전택 농소農所에서 수직守直하는 사내종들과 결탁하였습니다. 그 무리들이 날마다 와서는 결박하고 구타하며 쫓아내는 등 세력을 믿고 멋대로 침해하여 (자리를) 보존할 수 없도록 하니 극히 패악스럽습니다.

제 상전택의 논 추심이 설혹 옳지 않다 하더라도 정해진 법과 관官이 있으니 조용히 나와 변별하여 그 처리를 기다릴 것이지, 어찌 이치에도 맞지 않고 부당한 일을 벌이고 소지를 올려 엄정한 관가를 기망하면서 만에 하나 요행을 바라고 제멋대로 법을 짓밟으며 횡행橫行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 소행은 실로 큰 도적의 짓이니 만약 중한 형률로 다스리지 않는다면 이를 따라하는 자가 반드시 많이 생길 것입니다. (저희가) 즉시 내려가 관에 고하여 죄를 다스려야 했으나 제 상전가에 마침 병환病患이 있어 여태 나서지 못했습니다. 다만 위 논이 기록된 깃득문서袷得文書를 가지고 관에서 공증해 준 문서⁶를 올리오니 이 사연을 세세히 살피신 후 위 경담을 법에 따라 중하게 다스리시어 함부로 침범하고 방자하게 발악하는 폐단을 없애도록 분부하여 주십시오.

현감주縣監主 처분.

정해년(1647) 11월 일 소지.

[제사] 한꺼번에 처리하기 위해 소지에 기재된 사람을 잡아 올 일이다. 22일.

행관行官 [서업] [인]

南平流寓 李(生)員宅奴 石京

右所志 奴矣情由段 (矣)上典宅 縣地伏在田畝亦 奴矣上典外邊器物以 各宅未分衿前 奴矣上典

門中兩班 靈岩居(尹生)員教是 不分曲折 許多未分田畝乙 專數私自擅賣爲白有如可 去乙亥年

分 奴矣上典 門中使(孫)齊會一處 同畝田奴婢 一一平均分執之時 同縣地泉山舊城防禦內

4 평균 분집(平均分執) 균등하게 나눠 갖는 것을 말한다.

5 거탈(據奪) 불법으로 남의 재산을 빼앗는 것.

6 깃득문서~공증해준 문서 이 문서와 관련된 승 자운(自雲)의 소지들을 참고하면 이 문서는 석경의 상전 이생원의 화회문기를 베껴 낭평현에서 공증받은 문서로 사급 입안(斜給立案) 혹은 전준(傳准)을 의미한다.

畚九斗落只

亦 奴矣上典宅衿得是乎等以 其年即時 下去推尋還退爲白有去乙 同畚盜買人尹景談亦 同畚未分時 奴矣上典門中不干兩班良中 貪其價歇 暗然盜買爲白有如可 本主推尋 則例當從法典 無辭還納後 其本價 則徵於盜賣處是白去乙 同景談亦 海曲無知極惡常漢以 同畚竝爲據奪設計

誣訴呈狀 奴矣宅農所守直奴子 結黨其類 逐日來到 結縛打逐 籍勢橫侵 使不得保存爲白臥乎所 極

爲悖惡爲白在果 大概奴矣宅推畚之事 設或不可是白喻良置 自有法官 從容就下 以待其處置 豈可以無理不當之事 愚起呈狀 欺罔嚴庭 以希其萬一 而私自踐法橫行哉 其所爲 實是大賊若不

以重律治之 則效之者必多是白去乎 卽當下去 告官治罪矣 而奴矣上典家 適有病患 茲未進去 但以同畚

所付衿得文□□官斜出以呈爲白去乎 同緣由 細細 鑒當後 同景□(談) □法重治 使無橫侵恣惡之弊爲白只爲 行下向教是事 縣監主處分

丁亥十一月日所志

[題辭] 一處捉送處置次以 狀付人乙 捉來事 廿二日

6-1-4-2) 1647년(인조 25) 남평현 관

[1647년(인조 25) 남평 현감南平縣監이 관할 현 거주 이소李韶와 해남현 거주 윤경담尹景談 사이에서 발생한 논 소유권 다툼과 관련, 이소의 화회문기와會文記 내용을 확인하고 이 사실을 해남 현감에게 알리는 관문關文.]

남평 현감南平縣監이 상고相考하는 일입니다. 남평현에 거주하는 유학幼學 이소李韶의 사내중 석경石京 명의로 올린 소지所志에 “해남 녹산塚山 구성방축舊城防禦 내 논 9마지기는 제 상전이 외가에서 상속받은 논입니다. 하여 금년 봄에 상전께서 내려가시어 추심하고 종자種子를 주고 왔습니다. 이 때 해남인海南人 윤경담尹景談이라는 이가 해당 논을 제 상전 문중 양반에게서 샀다면서 거짓으로 말을 만들어 관가에 정소呈訴하여 벼와 함께 모두 빼앗으려는 계획을 세우고 동문文記⁷를 가져오라고 하였습니다. 데려온 여러 명의 자기 족속들을 믿고 함부로 침범하여 농소農所의 종들로 하여금 편히 지

낼 수 없게 하니, 동 문기를 내려 보내어 관정에 나아가 변별할 일이지만 적잖은 문기를 먼 곳으로 보내기는 어렵습니다. 하오니 동 문기를 상고相考하시고 옮겨 적은 후 관인官印을 찍어 이문移文⁸을 발급해 주시도록 소지를 올립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상고해 보니, 승정崇禎 8년(1635) 3월 21일자 이소의 화회문기와會文記 중 ‘녹산면泉山面 구성방축舊城防築 내 2작⁹ 논 9마지기를 상속받은 것이 확실하오니 상고하여 시행하십시오. 절차대로 관關¹⁰을 보내니 이 문서에 비추어 시행하되 관關대로 시행하기 바랍니다.

위 관을 해남현海南縣에 보냄.

순치順治 4년(1647) 11월 21일

상고相考에 관한 일.

행현감行縣監 [서입][관關][남평현인南平縣印]

南平縣監爲相考事 縣居幼學李韶奴石京名
呈所志內 矣上典宅 海南泉山舊城防築內畚九斗落
只亦 奴矣上典外邊衿得畚是乎等以 今年春上典下去
推尋給種子爲有如乎 節海南人尹景談稱號者亦
同畚庫乙 奴矣上典門中兩班良中 買得稱云 禾穀并
以 添飾呈官 榷奪設計爲旣 同文記持來云云 多率
族黨 憑籍橫侵 使農所奴子不得安接 同文記下送就
卞事是乎矣 不少文記 遠地勢難投送是置 同文記相考
傳書踏印 移文成給爲只爲 所志是置有亦 相考
爲乎矣 崇禎八年三月二十一日 其矣和會文記中 泉
山面舊城防築內二作畚九斗落只 衿得的實爲去乎 相考
施行事 合行移關請
照驗施行須至關者
右 關
海南縣

7 이소(李韶)의 상속문기를 지칭한다.

8 본문은 ‘전서답인이문성급(傳書踏印移文成給)’이다.

9 작(作) 작은 여러 의미로 사용되지만 여기에서는 ‘2개의 필자’ 즉 ‘두 배미(二夜味)’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10 관(關) 동급 이하의 관서에 보내는 문서.

順治四年十一月廿一日

相考

行縣監[署押][關][南平縣印]

6-1-5) 1648년(인조 26) 대흥사 의지승 자운 소지

[1648년(인조 26) 4월 대흥사 의지승依止僧 자운自云이 윤경담尹景談과 논 소유권을 두고 생긴 갈등의 해소를 위해 입지立帖를 발급해 달라고 청원한 소지所志.]

대흥사大興寺 의지승依止僧¹¹ 자운自云.

아뢰는 저의 절박하고 답답한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남평南平에 임시 거처하는 이생원李生員의 호노戶奴¹² 석경石京이 그 상전의 패자牌字¹³를 갖고 와서 ‘상전택이 상속받은 논을 사라’고 하였습니다. 그 패자의 사연을 살펴보니 ‘내가 상속받은 논, 해남현 옛 성 방죽 내에 논 9마지기를 팔아 받은 논 값을 가져오라’고 분명히 금석金石처럼 분명히 쓰여 있었습니다. 하여 동동 논 9마지기를 무명 2동 동 값을 주고 샀고 지난 해 12월에는 증필證筆을 갖추어 문서를 작성했으며 금년 3월에는 병작인并作 사람이 이미 파종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남면南面 사는 윤경담尹景談이 그 논을 ‘영암靈岩 사는 윤생원尹生員에게 샀다’고 하면서 지금에 와 피를 내어 병작하는 집에 쳐들어가 그 논에 심은 벼를 빼앗아 갔습니다. 대체로 이생원께서 정말 상속받으신 논이 아니라면 결코 팔았을 리가 없을 것이며, 위와 같은 그간의 시비是非를 확실히 통지받지 못했습니다. 위 논에는 제가 이미 파종을 했으나 저 윤경담이 다시 함부로 침범한다면 피차 논을 판 사람과 송사의 빌미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윤경담이 빼앗아간 종자벼는 그 친척인 김흥건金興健에게 단단히 도로 받아내었습니다만 장차 사실규명을 위해 입지立帖¹⁴를 작성해 주도록 분부해 주십시오.

행영감주行令鑑主 처분.

11 의지승(依止僧) 의지(依止)는 『법화경』 「방편품(方便品)」에 나오는 말로 힘과 덕이 있는 곳에 머물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출가하여 득도(得度)한 후 선배 비구들에게 의지하여 감독을 받는 것을 법으로 하는데 이 때 스승을 의지아사리(依止阿闍梨)라고 한다. 『사분율(四分律)』34권 참조.)

12 호노(戶奴) 가정을 가지고 밖에서 사는 노비. 수노(首奴)와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는 사례도 있으나 문집 등의 용례를 살펴보면 복수의 노비들을 지칭하는 경우가 많다.

13 패자(牌字) 패자(牌子), 패지(牌旨)라고도 쓰며 상전이 노비에게 주는 위임장을 말한다.

14 입지(立帖) 입안 발급의 복잡한 절차와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간략하게 관에서 공증해주는 것을 말한다.

무자년(1648) 4월 일 소지所志

[제사] 한 곳에서 심문해야 하니 네가 눈을 산 문서를 가져오고 경담京聃을 잡아 오라. 2일.
행관 [서업] [인]

大興寺依止僧 自云

右所陳僧矣切悶情理段 南平流寓李生員戶奴石京亦 其上典牌字持來 上典宅衿得畚買得亦爲白去乙 厥牌字內辭緣考覽 則宅衿得畚海南地舊城防禦築內畚九斗落只庫乙 放賣捧價納宅亦 明若金石書墳爲白有去乙 同畚九斗落只良中 價木二同准給買得 上年十二月分 具證筆成文 今三月分 并作人已爲落種爲白有如乎 南面居尹景談亦 厥畚乙 靈岩居尹生員處買得稱云 今始生謀 同畚種租乙 并作家劫擾橫侵爲白臥乎所 大概李生員教是實非衿得畚是白在如中 萬無放賣之理是白乎旡 右良其間是非段 明不通知爲白在果 同畚庫良中 僧矣身 已爲落種 而同尹景談亦 更爲橫侵 則彼此賣人 不無訟端是白在果 尹景談劫給種租段 還給其族金興健處堅授爲白有在果 將此發明條以 立旨成給爲白只爲

行下向教是事

行令鑑主處分

戊子四月 日所志

[題辭] 一處推問次以 汝矣買得文記及京聃乙 捉來事 初二日

行官[署押] [印]

6-1-6) 1649년(인조 27) 1월 대흥사 의지승 자운 소지

[1649년(인조 27) 대흥사 승僧 자운自雲이 윤경담尹景聃 논 도매盜買 건으로 분쟁 중에 관련 문서들을 올리고 침해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청원하는 소지所志.]

대흥사大興寺 승인僧人 자운自雲

삼가 소지로 아뢰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해년(1647)에 남평에 임시 거주하는 이생원李生員 덕의 사내중 석경石京이 그의 상전이 준 패자牌字와 생원덕 문중에서 미처 나누지 못했던 전답에 대한 회회문기와會文記의 등서공문贈書公文을 가지고 왔습니다. 위 회회문기에 기재되어 있는 그의 상전이 외가에서 물려받은 논인 해남현 옛 성 방죽 내 들판에 있는 9마지기를 팔자, 저는 의례히 사들여 농사

지어먹었습니다. 그런데 현의 남면南面에 사는 윤경담尹景聃이 그 논은 일찍이 영암靈岩 사는 윤급尹岾에게 사들여서 사노私奴 인복仁卜과 맞바꾼 논인데, 제가 산 것이라 하면서 소지를 올려 빼앗을 궁리를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논 주인인 이생원¹⁵ 소韶와 윤생원 급焜은 숙질叔姪간입니다. 윤생원은 연로한 이로 상속되기 전의 처갓집 땅을 제멋대로 무수히 팔았으며, 이생원은 어려서 한양 살다가 장성한 후 친족들과 합의하여 미처 못 나눈 전답을 평균분깃平均分衿하였습니다.

이 9마지기 논은 이생원 맥 뭍이라고 분명히 (문서에) 기록·시행되었습니다. 그러니 저는 이미 본 주인에게 명백하게 사들이면서 문서를 작성했고 같이 먹은 것이니, 위 윤경담이 (논을) 훔쳐 판 윤생원에게 값을 요구해야 할 일이건만, 힘없는 산승이라고 이와 같이 이치에 어긋나게 함부로 침해하니 지극히 터무니없는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논을 주인인 이생원과 그의 종 석경 등이 내려와 여러 번 추심할 때엔 외출했다면서 회피하고 나타나지 않다가 이생원님과 종 석경이 상경하고 오지 않으니 이처럼 중간에 함부로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상을 각별히 조사하고 심문하시되 본주本主의 문기文記를 등서騰書한 공문公文, 소지, 매득문기買得文記 내의 사연을 상고하시어 침해하지 못하도록 해주십시오. 엄격하고 명백하게 명령하시어 간교하고 외람된 행실이 습관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분부하여 주십시오.

행현감주행縣監主 처분.

기축년(1649) 정월 일 소지.

[제사] 소장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윤경담尹景聃의 소행은 진실로 몹시 악랄하다. 차후 다시 함부로 남의 재산을 점유하려 한다면 처벌하기 위해 잡아올 일이다. 26일.

관 [서업] [인]

大興寺僧人自雲

右謹陳所志 僧矣□丁亥年分 南平流寓 李生員宅奴石京亦 其矣上典牌字
及一門未分田畝和會文記騰書公文持是遺 同文記付其上典宅外家衿得畝
縣地舊城防築內員九斗落只庫乙 放賣爲白去乙 僧亦 依例買得耕食爲
白在果 縣地南面居尹景聃亦 同畝庫乙 靈岩居尹岾前曾已買得 私奴
仁卜果 相換之畝以 僧矣身買得是如稱云 至於謀呈所志 橫侵設計爲白臥乎所
大槩畝主李生員□(韶) 尹生員岾果 作叔姪之間以 尹生員段 年老之人以 妻
邊未分之田畝乙 私自無數放賣 而李生員段 年少在於京中爲白有如何 既以

15 1647년 남평현 관(關)에는 ‘유학’으로 표기되므로 실제 생원은 아니고 양반에 대한 존칭이다.

長成之後 親族和會未分田畝乙 平均分衿 此畝九斗落只 則李生員宅衿以
分明載錄施行爲白乎等以 僧矣身亦 既已本主處 明白買得成文耕食 則上項
尹景聃亦 所當盜賣處 尹生員前徵價事是去乙 矣身乙 無勢山僧是可向入
如是非理橫侵 卍(極)爲無據券不喻 畝主李生員及其奴石京等下來 屢度
推尋 則稱以出去回避不現爲白如可 李生員主及奴石京亦 上京不來 則如是
中間橫侵之狀乙 各別監當教矣 本主文記謄書公文及所志 買得文記內辭
緣相考 勿侵事 嚴明行下 以杜奸濫成習之弊爲白只爲

行下向教是事

行縣監主 處分

己丑正月 日所志

[題辭] 所訴果如 則尹景聃所爲 誠極痛惡 此後如有更生冒占之計是去等 治罪處置次以 捉來
事 廿六日

官[署押] [印]

6-1-7) 1649년(인조 27) 9월 대흥사 승 자운 소지

[1649년(인조 27) 9월 대흥사 승僧 자운自雲이 남평 이 생원에게 구입한 논에 대한 소유권 문제로
판관判官 윤경담尹景聃에게 소송을 당하자 맞소송을 하였으나 윤경담이 나타나지 않자 입지立旨를 받
급해 달라고 요청하는 소지.]

대둔사大菴寺 의지승依止僧 자운自雲

삼가 소지所志로 아뢰는 제 민망한 정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재작년 12월에 남평南平 사는 이
생원李生員의 호노戶奴 석경石京에게 현縣 내 옛 성터 방죽 내 9마지기 답을 관례대로 값을 주고 샀었
습니다. 그 후 해남현 거주 양반 윤 판관尹判官¹⁶ 경담景聃이란 분께서 동同 논을 이생원과 한 가문이
라 하는 윤급尹汲에게 샀다고 하면서 거탈據奪할 계획으로 거짓을 꾸며 소지를 올려 저를 찾아 잡아들
이라는 등을 운운하였습니다.

저도 즉시 들어와서 이러한 사연을 소지로 올리고 윤경담이 오기를 고대하였사오나 끝내 들어와

16 윤 판관(尹判官) 해남 윤씨 연동 종가에 전래되는 자운(自雲)의 소지 중 윤경담의 직함이 언급된 것은 이 문서가 유일하며, 존칭의 주격조사(敎是)를 쓴 사례도 유일하다.

의심의 여지없도록 변별하지 않으니, 구결하는 승인(僧人)으로서 관문(官門)에서 여러 날을 머무르며 기다리기 매우 민망합니다. 위의 사정을 헤아려보면, 제가 만일 무단히 나갈 경우 반드시 제가 잘못된 게 있어 스스로 물러나는 양으로 (상대편에서) 말을 꾸며 올릴 가능성이 없지 않으므로 관문에 머무르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원고(元告)가 나타나지 않으면 이 문제로써 그를 잡아 □□에 불과합니다.¹⁷ 동인(同人)은 제가 세력 없는 승인이 소장을 올린 것이라 생각하고 고의로 소지를 올려 침노한 것입니다. 말 한마디 못하고 물러날 거라 여기고 소지를 올려 겁을 주었다가, 제가 전후 문기(文記)가 명백하게 상존(尙存)한다는 등의 말을 하니 결코 빼앗을 수 없을 거라 생각하고 집으로 돌아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사실을) 알 수 있사오니, 후일 다시 침해를 당할 여지가 있으니만큼 나중에 상고할 증거로 삼기 위해 입지(立帖)를 발급해 주도록 분부하여 주실 일입니다.

행현감주(行縣監主) 처분.

순치(順治) 6년(1649) 정월 일 소지.

[제사] 피차 회피한다며 서로 와서 정소(呈訴)하니 그간의 곡절을 알 수 없다. 만약 다시 윤경담의 말이 있거든 이 사실에 의거해 후일의 참고로 삼도록 시행할 일이다.¹⁸ 30일.

관[서업][해남현인(海南縣印)]

大菴寺 依□□(止僧) 自雲

右謹陳所志 □□(僧矣) 悶望情由段 矣身去上年十二月分 南平居李生員 戶奴石京處 縣地古城防禦內畜九斗 依例給價買得■■後 縣居兩 班尹判官景聃教是 同畜庫乙 李生員一門是如爲在尹伋處買得 稱云 據奪之計 冒呈所志 矣身乙 推捉是如 云云爲白去乙 矣身段置 卽爲 入來 以此辭緣 呈所志 苦待尹景聃爲白矣 終不來卞無疑 丐乞 僧人以 ■累日留待官門 極爲悶望爲白良尔 右良情由分揀 矣身無端 出去 則必有理屈自退樣以 構呈無不冬是乎等以 留待官門 元告不現 以此捉之□□ 不過同人之意段 矣身無勢僧人是在向入 故爲呈狀 侵勞 則無辭□□爲乎去 呈狀劫飭爲白如可 矣身前後文記 明白 尙存是如云云 則同人決不可據奪之意 退家不現 據【據】 此可知

17 원고(元告)~불과합니다. 원문은 ‘元告不現 ■以此捉之□□不過’이다. 원문이 훼손되어 해석이 명확하지 않다. 『경국대전』 「형전(刑典)」 ‘사천(私賤)’조에 ‘노비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원고와 피고 중에서 자신이 불리하다고 여겨 나타나지 않는 경우’ 기한을 정해 소송 목적물인 노비를 법정에서 나온 이에게 주는 규정이 있다. ‘청리(聽理)’조에도 법정 출두 기한에 관한 언급이 있다. 자운은 다른 소지에서도 법전의 ‘결후영집(決後仍執)’ 조항을 언급하는 등 법전에 대한 지식을 나타낸 만큼 이 구절도 법 조항과 관련된 언급으로 추정된다.

18 입지(立帖)는 관의 간단한 공증을 의미한다. 1652년 자운의 소지도 입지를 발급해 달라는 청원내용이 있다.

是白去乎 日後如有見侵之端爲良尔 後考次立旨成給爲只爲

行下向教是事

行縣監主處分

順治六年正月日所志

[題辭] 彼此稱以退避 互相來呈爲臥乎所 未知其間曲折是在果 尹景聃 如有復言是去等 依此

後考施行事 卅日

官[署押][海南縣印]

6-1-8) 1650년(효종 1) 1월 대흥사 승 자운 소지

[1650년(효종 1) 대흥사 승僧 자운自雲이 논 소유권 송사에서 패소한 윤경담尹景談이 패소 뒤에도 논을 점유하고 있음을 호소하는 소지所志.]

대흥사大興寺¹⁹ 승僧 자운自雲

삼가 소지로 아뢰는 제 사연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남평南平에 임시로 거주하는데, 이생원택李生員宅이 외가 쪽에서 상속받은 논 9마지기를 사서 여러 해 동안 농사지어먹었습니다. 그런데 현 내에 사주는 윤경담尹景談이 그 논을 상관도 없는 윤급尹岾에게서 (자신이) 샀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런 사유를 소지로 올려 윤경담과 소송이 성립되고 피차의 문기文記를 관가에 찾아 바친 결과, 저 윤경담이 (논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에게서 산 것이고 이치에 어긋난 형세라고 하여, 제가 두 차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윤경담의 사내종이 그 논을 위력으로 빼앗아 경작하니, 이야말로 ‘결후잉집決後仍執’²⁰이 되는 것으로 잔악한 승인僧人이 발붙일 길 없으니 하늘에 닿도록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대개 모든 송사訟事에서 노비와 전답을 비롯한 중에서 패소판결 후에도 계속 차지하는 죄에 대해서는 법전法典에 환히 실려 있습니다. 하오니 동同 윤경담을 잡아다 ‘결후잉집’의 죄를 다스리도록 분부하여 주십시오.

영감주令鑑主 처분.

경인년(1650) 2월 일 소지.

19 대흥사(大興寺) 해남군에 있는 절로 대둔사(大菴寺)라고도 한다.

20 결후잉집(決後仍執) 『속대전(續大典)』 형전(刑典)의 청리(聽理)조에 ‘전지(田地)와 노비(奴婢)에 관한 소송에서 패소한 후에도 계속 차지하고 있는’ 죄를 말한다. 장(杖) 100, 도(徒) 3년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제사] '결후잉집'에 대해서는 정해진 형률이 있으니, 법에 따라 관찰사께 보고하고 처리하기 위해 소지에 적은 사람을 데려오라. 22일.

관 [서업] [인]

大興寺僧 自雲

右謹陳所志 僧矣段 南平流寓李生員宅外邊衿得畝九斗落只庫乙 買得積年耕食爲白如乎 縣地居尹景談亦 厥畝乙 亦爲不奸〔干〕 尹岌前買得稱云爲白去乙 僧矣身亦緣由呈所志 與尹景談立訟 彼此文記 官前推納 則同尹景談亦 不奸〔干〕 人處買得 而事勢無理是如 矣身處再度決給爲白有去乎 今年良中 厥畝乙 其奴子以 威力劫耕 此所以決後仍執 殘弱僧人以 接足無路 至天悶望爲白良尔 大概凡訟事 奴婢田畝中 決後仍執之罪 昭載法典是如爲白臥乎所 同尹景談乙 捉來以徵決後仍執之罪爲白只爲

行下向教是事

令鑑主 處分

庚寅二月 日所志

[題辭] 決後仍執 自有其律 依法報使處置次以 狀付人捉來事 廿二日

官[署押] [印]

6-1-9) 1651년(효종 2) 1월 대흥사 승 자운 소지

[자운自雲이 논 소유권 송사에서 패소한 인복이 자신을 살해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음을 호소하는 소지所志.]

대흥사大興寺 의지승依止僧 자운自雲

삼가 소지로 아뢰는 저의 원통 답답한 사연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 정해년(1647)에 남평南平 사는 이생원李生員이라는 이름의 양반에게 본 현縣 녹산면원泉山面員에 있는 논 9마지기를 관례대로 값을 주고 샀습니다. 윤경담尹景暉이라는 이름의 사람이 멋대로 침범하기에 (소송을 벌여) 기축년(1649) 12월 11일에 승소하였고 경인년(1650) 2월 11일에도 승소하였습니다. 동同 논을 사내중 인복仁卜이라는 사람은 윤경담에게 논을 산 자로, 동 논에 대한 소송에서 (저에게) 패소했으나, 당연히 윤경담에게 논 값을 돌려받는 것이 굳은 이치이고 법에 합당합니다. 그런데도 위 사내중 인복이란 자는 외롭고 쇠잔한 승려인 저를 조총을 놓아 죽이겠다는 등 활을 쏘아 죽

이겠다는 등 길에 숨었다가 몰래 해치겠다는 등등의 발언을 곳곳에다 하고 있습니다. 홀몸의 힘 약한 제가 곳곳에 다니다가 이 같은 변을 당한다면 슬프기 한이 없습니다.

상황이 위와 같사오니, 밝은 정사를 펼치시는 영감님께서 저간의 사정을 만분 헤아리시고 동 사내 종 인복이란 자를 후일의 발명²¹을 위해서 뿐 아니라 후세 사람들이 본받아 습성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분부하여 주십시오. 바라건데 각별히 분부해주셔서 축수하는 (저의) 원통함을 풀도록 처분하여 주실 일입니다.

행영감주행縣監主 처분.

순치順治 8년(1651) 정월 일 소지.

[제사] 훗날 참고할 수 있도록 시행하라. 3일.

관 [서업][해남현인海南縣印]

大興寺 依止僧 自雲

右謹陳所志 僧矣痛悶情理段 去丁亥年分 南平居李生員稱名

兩班亦中 本縣泉山面員畚九斗落只庫乙 依例給價買得爲白有置

尹景聃稱名人 橫侵爲白去乙 卍…卍(己)丑十二月十一日得訟 庚寅二月十一

日得訟爲白有去乙 同畚乙 奴卍…卍尹景聃亦中 買得之人以 同畚

落訟 則仁卜者所當尹景聃處 畚價還推 理固法當是白去乙 上項

奴仁卜者 處處發言 僧矣身乙 孤單殘僧是在 或云鳥銃放死

或射殺 或云假路隱伏爲白有如可 陰害云云爲白臥乎所 孤弱殘僧 處

處橫行爲白如可 如此之變乙 僧矣身被及 則罔極無涯爲白良尔 右良

令鑑主明政之下 此間情勢乙 萬分參商 同奴仁卜者乙 後日發明券不

諭 以杜後人無習無效次以 各別行下 以解容與 祝手之冤

爲白只爲

行下向教是事

行縣監主 處分

順治八年正月日 所志

[題辭] 後考施行事 初三日

官[署押][海南縣印]

21 발명(發明) 죄나 잘못 따위가 없음을 말하여 밝힘.

6-1-10) 1651년(효종 2) 2월 대흥사 승 자운 소지

[1651년(효종 2) 2월 대흥사 승僧 자운自雲이 윤경담尹景聃이 도매盜賣한 김인복金仁福의 논 값을 윤경담에게 받아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청원하는 소지所志.]

대둔사大菴寺²² 승僧 자운自雲

소지로 아뢰는 저의 민망悶望한 사연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산縣山 사는 윤경담尹景聃이 김인복金仁福의 논을 저에게 몰래 팔았다가 작년에 윤경담과 김인복이 서로 소송을 벌인 결과 흠쳐 판 것이 명백하였으므로 ‘윤경담尹景聃에게 본전을 도로 추심하라’ 분부하셨습니다. 그런데 경담은 지금까지도 마련해 줄 뜻이 없으니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지금 다시 김인복과 취송就訟 일로 경담을 찾아 데려오려 하오니, 경담이 출두하면 ‘위 논 값을 신속히 마련해 지급하라’고 특별히 명령하도록 분부하여 주십시오.

행현감주行縣監主 처분.

신묘년(1651) 2월 일 소지.

[제사] 윤경담을 시방時方 찾아 온다하니,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일시一時에 대질심문한 결과에 따라 처리할 것이다. 7일.

관 [서업] [해남현인海南縣印]

大菴寺僧 自雲

右所志 僧矣悶望情由段 縣山接尹景聃亦 金

仁福畚庫乙 矣身處盜賣爲白有如可 上年分尹景

聃與金仁福果 相訟盜賣明白乙仍于 同尹景聃處 價本

還爲推尋亦 行下爲白有乎矣 景聃亦 至今無意備給爲白臥乎

所 極爲無理券不喻 今方金仁福果 又爲就訟事 景聃推

捉爲白有去乎 景聃現身時 同畚價 斯速備給事乙 特

令行下爲白只爲

行下向教是事

行縣監主 處分

辛卯二月日所志

22 대둔사(大菴寺) 대흥사(大興寺)의 다른 명칭.

[題辭] 尹景聃 時方推掎 待其來現 一時比對 以憑處置事 初七日
官[署押] [海南縣印]

6-1-11) 1651년(효종 2) 3월 대흥사 승 자운 소지

[1651년(효종 2) 3월 대흥사 승 僧 자운 自云이 논 9마지를 둘러싼 윤경담 尹景聃과의 소유권 분쟁 중 윤경담이 관의 판결을 이행하지 않으므로 이행할 때까지 해당 논에서 경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청원하는 소지.]

대흥사 大興寺 승 자운 自云.

소지로 아뢰는 저의 민망 悶望한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남평 南平 사는 이생원 李生員에게 논 9마지를 지난 정해년(1647)에 구입하여 농사지어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논을 윤급 尹汲이라는 이가 윤경담 尹景聃에게 훔쳐 팔았고, 윤경담은 그 논을 김인복 金仁福에게 팔았습니다. 윤급 尹汲과 이생원의 재판 결과 윤급은 그 논과는 아무 상관 없었으므로 이생원이 승소했습니다. 이생원이 승소하였으니 이생원에게 논을 구입한 제가 당연히 그 논에 농사지어먹어야 합니다.

헌데 윤경담이 음모를 꾸며 소지를 올리고 의송 議送을 올리면서 삼가 관에 고하기를 ‘조상의 논이라고 거짓말을 했다’라고 하였으므로, 관장께서 분부하시길 ‘동 同 논 가목 價木²³을 옮겨 받아내고 (논은) 윤경담에게 퇴급 退給하라고 하셨습니다. 분부하신 대로 가목 價木을 마련해 지급하는 일에 대해 말하였더니, 경담이 가목을 지급하는 것은 이달 18일로 정하는 내용으로 불망기 不忘記²⁴를 작성하여 저에게 주었습니다. 그 후 가목을 마련해 줄 생각도 없이 숨어서 나타나지 않으니, 일이 극히 터무니 없게 되었습니다.

대체로 제가 값을 다 치르고 구입한 논인즉, 김인복에게 빼앗긴 가목 1필의 무명을 도로 받아내지 못한다면 두 가지 다 잃게 되는 셈²⁵이니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하오니, 동 윤경담이 가목을 준비해 제게 지급하기까지 그 논에 파종하고 농사지를 수 있도록 각별히 분부하시어 외롭고 잔악한 소송이 땅과 돈 모두를 잃는 원통함이 없도록 처리하여 주십시오.

행현감주행 縣監主 처분.

23 가목(價木) 값으로 치르는 목면 즉 무명. 관련 문서에 따르면 자운은 2동(同), 즉 100필의 값을 치렀다고 한다. 1필과 100필의 가격 차이가 크므로 김인복에게 판 논은 전체가 아니라 논 일부일 가능성이 있다.

24 불망기(不忘記) 후일의 증빙을 위해 어떤 사실을 잊지 않도록 기록해놓은 문서.

25 자기가 치른 논 값과 논을 모두 잃는다는 의미.

신묘년(1651) 3월 일 소지.

[제사] 윤경담과 담당 실무자를 함께 잡아 오너라. 27일.

관 [서업] [해남현인海南縣印]

大興寺僧 自云

右所志 僧矣悶望情理段 矣身亦 南平居 李生員處 畚九斗落只
庫乙 去丁亥年分 買得耕食爲白如乎 同畚庫乙 尹汲稱號人 尹景
聃處盜賣 尹景聃則厥畚乙 金仁福處放賣 尹汲果李生
員亦 結訟與尹汲 則厥畚皮肉不奸 得訟於李生員 而李生員
得訟 則李生員處買得人 矣身所當耕食于厥畚是白去乙 尹
景聃亦 謀呈所志及呈議送 謹告官前日虛稱祖上畚是如乙仍于
官行下內 同畚價木移捧於景聃處退給亦教是白去乙 依行下價木乙
備給事言之 則同景聃亦 價木備給事 今月十八日 以實不忘
記成給于矣身處後 價木無意備給 而隱以不見 事極無據
爲白良尔 大槩矣身准給價買得畚 則金仁福處被奪價木
一疋之木乙 不爲還捧 使之兩失 至天冤抑 同尹景聃亦 價木備給間 厥
畚落種執耕事乙 各別行下 子遺殘僧 俾無兩失之冤
爲白只爲

行下向教是事

行縣監主處分

辛卯三月 日所志

[題辭] 尹景聃色掌 一同捉來事 七七

官[署押] [海南縣印]

6-1-12) 1651년(효종 2) 8월 대흥사 승 자운 소지

[1651년(효종 2) 8월 대흥사 승僧 자운自雲이 논의 소유권을 두고 송사를 벌인 인복仁福이 패소 후
에도 침범을 계속하니 단속해 달라고 청원하는 소지.]

대흥사大興寺 승 자운自云.

삼가 소지로 아뢰는 저의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 정해년(1647)에 남평南平에 임시로 거주하

는 이 생원택李生員宅의 사내중 석경石景이 상전의 패자牌字 및 화회문기를 등서한 공문을 가지고 와서 그 문기에 붙어 있는 그의 상전이 상속받은 논인 해남현 옛 성 방죽 내에 있는 논 9마지기를 팔았습니다. 저는 예례에 따라 정목正木²⁶ 2동同으로 값을 치르고 사서 여러 해 동안 농사지어먹었습니다.

그런데 해남현 남면南面에 사는 윤경담尹景聃이가 위 논을 영암靈岩 사는 윤급尹岾에게서 구입했다고 말하다가 인복仁福에게 다시 몰래 팔았습니다. 위 사람들의 터무니없는 정상을 소지로 올려 판결을 받았고, 피차의 문기를 관가에 찾아 바쳐서 심리한 결과 제가 두 차례 승소하였는데도 지금까지 인복이 멋대로 침범하고 있습니다. 대개 윤경담은 남의 것을 훔쳐서 판 윤급에게 돈을 받아내야 하고, 인복은 또 남의 것을 훔쳐서 판 윤경담에게 값을 받아내야 일의 이치에 맞아 떨어지거늘, 끝내 멋대로 침범하니 극히 터무니없습니다.

(사정) 위와 같아서 윤경담이 저에게 애걸하기를 “논 값은 인복에게 모두 마련해 줄 터이니, 이 논은 네가 편히 갈아먹어라.”라고 금석金石과 같이 굳게 말했는데도 저 인복이란 자는 자기 편의대로 침노하니, 이는 크게 차지한 것과 다를 게 없습니다.

이생원의 깃등등서공문衫得騰書公文²⁷ 및 승소한 소지所志 등을 첨부하오니, 상세히 살피신 후 인복이 다시는 멋대로 침범하지 못하도록 각별히 엄명하게 명령하시어 비리非理를 막도록 해 주십시오.

영감주令鑑主 처분.

신묘년(1651) 8월 일 소지.

[제사] 문권文券이 이와 같으니, 위 사람들의 저지른 비리非理가 의심할 것 없이 분명하다. 이후에 쓸데없는 말을 지껄이거든 잡아와 관에 고하여 법에 따라 엄히 다스리도록 하라. 30일.

관 [서업] [인]

大興寺僧 自云

□(右)謹陳所志矣段 去丁亥年分 南平流寓李生員宅奴石景亦 其上典牌字及一
□(縣)內伏在員畚九斗落只庫乙 放賣爲白去乙 僧矣身亦 依例給價正木二同以買
□(得) 累年耕食爲白如乎 縣地南面居尹景聃亦 同畚庫乙 靈岩居尹岾處買得
稱云爲白如可 同畚庫乙 尹景聃亦仁福處又爲盜賣 右人等無據之狀乙 呈所志
結訟 彼此文記推納 官前憑閱 僧矣身 再度得訟爲白有去乙 仁福亦 至
今橫侵爲白臥乎所 大概尹景聃 則盜賣人尹岾處徵價事是白乎旆 仁福則
又爲盜賣人尹景聃處徵價事 當近理是白去乙 ■終實橫侵 極爲無據

26 정목(正木) 국가에서 공인한 품질의 무명을 말한다. 대체로 5세(1세는 80울) 무명을 지칭한다.

27 깃등등서공문(衫得騰書公文) 1661년(현종 2) 9월 자운의 소지에 '문기전준(文記傳准)'이라고 칭하는 문서로 추정된다. 즉 이 생원의 화회문기 등서에 관의 공증을 받은 '전준(傳准)'을 표현한 용어로 보인다.

爲白良尔 右良尹景聃亦 僧矣身處懇乞曰 仁福處同價乙良 一一備給 而同畚乙

良 汝易亦耕食事 堅如金石之言爲白有去乙 仁福者 便亦侵勞無異 大

倘李生員衿得騰書公文 及決得所志等粘連爲白去乎 詳細監當教是

後 仁福亦 復勿橫侵事 各別嚴明行下 以杜非理之弊爲白只爲

行下向教是事

令鑑主 處分

辛卯八月 日所志

[題辭] 文券如是 則右人等■(所)■(爲)非理之事 昭然無疑 後有雜談之事是去等 捉來告官

以法重治事 卅日

官[署押] [印]

6-1-13) 1652년(효종 3) 1월 대흥사 승 자운 소지

[1652년(효종 3) 정월 대흥사 승僧 자운自云이 인복仁福이라는 종이 자신의 논을 빼앗기 위해 위협을 가한다고 호소하는 소지.]

대흥사大興寺 ■...■ 승僧 자운自云.

삼가 소지로 아뢰는 저의 답답하고 절박한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흥부長興府에 사는 사내중 인복仁福이라는 이름의 사람이 그의 아들 2인이 본 현縣에 살고 있는 까닭으로, 현산면縣山面 사는 윤경담尹景聃에게 현산원縣山員에 있는 논 9마지기를 샀습니다. 그러다 동同 논이 진짜 본주인인 남평현南平縣 사는 이생원李生員이라는 이름의 양반이 내려와 위 논을 팔기에 관례대로 값을 주고 샀습니다.

그런데 사내중 인복仁福이라는 위인이 위 논을 제게서 탈취하고자 그의 아들 사내중 창생唱生과 입생立生등을 거느리고, 3부자가 저를 음해陰害 사살射殺하기 위해 조총鳥銃이나 활을 가지고 길가 험악한 수풀에 몰래 숨어 있기도 하고 대낮에 제가 거처하는 방에 갑자기 들이닥치기도 합니다. 분하고 억울함을 이길 수 없으나, 홀로 외로운 제 처지로 마음대로 드나들기도 어려워 크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위와 같으니, 선품을 쌓으시고 인仁을 베푸시는 영감令監²⁸님께서 외롭고 미약한 저를 가엽게 여기시고 돌보시어 지금의 분하고 답답한 형편을 만분 헤아려 주십시오. 그 사람들이 음해할 지라

28 영감(令監) 조선시대 종2품, 정3품 당상관 품계의 관인에 대한 존칭이나, 지방 수령(守令)에게도 사용되었다.

도 관아에 잡아들여 다짐²⁹을 받아내시고, 잡소리 하지 않도록 각별히 엄하게 밝히시어 □□하
심으로써 쇠잔한 승려의 만세토록 축수할 원통함을 풀도록 분부하여 주십시오.

영감주令鑑主 처분.

임진년(1652) 정월 일 소지.

[제사] 일이 이치에 닿지도 않을 뿐이거니와, 호소한 바가 이와 같다면 심문하고 진술서를 받기 위
해 잡아 올 일이다. 28일.

관 [서업] [인]

大興寺 □…□僧 白云

右謹陳□□(所志)矣悶迫情理段 長興府居奴仁福稱名人亦 其子二人段 本縣縣山面居生乙仍
于 上項奴仁福亦 縣山面居尹景聃亦中 縣山員畚玖斗落只庫乙 買得爲白有如可 同畚真是本
主南平縣居李生員稱名兩班亦 下來 同畚放賣爲白去乙 依例給價買得爲白有去乙 奴仁福
爲人 同畚庫僧矣處奪取爲白乎可 同仁福者亦 其矣子奴唱生奴立生等率良遣 或
持鳥銃 或持弓矢 三父子陰害射殺次以 僧矣身乙 或路邊驗[險]惡成林之處潛隱 或白
晝良中 僧矣居生房 不意突入 不勝憤鬱 孤單僧矣身以 所難者任意出入 至今悶慮爲
白良矣 右良積善垂仁 令鑑主教是 孤弱僧矣身 怜之恤之 此間憤悶情勢乙 萬分參
商□□ 厥人等陰害爲白乎喻良置 官前捉來捧拷音 無爲雜言次以 各別
嚴明□□ 以解殘僧萬歲祝之寃爲白只爲

行下向教□(是)事

令鑑主 處分

壬辰正月日 所志

[題辭] 事不近理爲在果 所訴如此 推問捧招次 捉來事 十八日

官[署押][印]

6-1-14) 1652년(효종 3) 8월 대흥사 승 자운 소지

[1652년(효종 3) 8월 대흥사 승僧 자운白云이 윤경담尹景談, 인복仁福과의 논 소유권 분쟁과 관련하

29 다짐(拷音) 어떤 사실의 옳음을 확인하거나 그 사실대로 실행할 것을 맹세하는 문서. 혹은 관아에서 백성에게 확
실한 대답을 받는 일을 뜻하는 이두이다.

여 입지立帖를 발급해 달라고 청원하는 소지.]

대둔사大菴寺 승僧 자운自云.

삼가 소지所志로 아뢰는 분통한 사연은 다음과 같습니다.

남평南平에 임시로 거처하는 이생원李生員이 외가 쪽에서 상속받은 논 9마지기를 (제가) 사서 여러 해 동안 경작해 왔습니다. 그런데 현산縣山 사는 윤경담尹景談이가 그 논을 아무 상관없는 사람인 윤급尹岾에게 사서 도로 인복仁福에게 팔았습니다. 동同 인복이 동 논을 거탈할 계략을 꾸미기에 이런 사연을 소지로 올려 田田 매득문기買得文記를 사또께 제출했더니 2, 3차례 판결에 제가 여러 번 승소하여 법대로 농사지어 먹었습니다.

그런데 동 인복은 저를 외롭고 힘 약한 승인僧人이라 여기고 멋대로 뺏을 궁리를 내었으므로, 전前 영감님 재직 시에 논을 도매盜賣한 윤경담과 비리자非理者 인복 등을 한 번에 심문하여 인복의 비리非理 죄상에 대해 엄명히 처분하시기를 “네가 논 값으로 치른 무명은 도매盜賣한 윤경담에게 받아내라.” 라고 하셨습니다. 윤경담 역시 모두 마련해 지급하겠다고 사또께 금석처럼 굳게 약속하였고, 저에게도 다시 명백히 말하였습니다.

하오니 차후에라도 그 억세고 모진 인복이 이치를 따지지 않고 여전히 함부로 침범할 경우를 대비해 특별히 입지立帖를 작성해 주도록 분부하여 주십시오.

영감주令鑑主 처분.

임진년(1652) 8월 일 소지.

[제사] 한 자리에서 심문해 처리할 수 있도록 인복 등을 잡아 오라. 19일.

관 [서업]

大菴寺僧 田田(自云)

右謹陳所志憤田情理段 南平流寓李生員外邊衿得畓九斗落只庫乙 買得積年耕食 爲白如乎 縣山居尹景談亦 厥畓庫 乙不奸[干]人尹岾處買得 還爲放賣于仁福處 同 仁福亦 同畓庫乙 據奪謀計爲白去乙 緣由呈所志田田田 買得文記取納官前 再三 度結訟 僧矣身 屢度得決 依法耕食爲白在果 同仁福亦 孤弱僧人是去向入 生謀橫侵爲白去乙 前令鑑主坐政之日 盜賣爲在尹景談及非理者仁福等 一時推闕 仁 福非理之狀乙 嚴明行下內 汝矣價木乙 盜賣者尹景談處徵捧亦爲白有於 尹景談段置 一一備給事 官前良中 堅如金石之約爲白遺 僧矣處 又爲口話申明爲白有在果 此 後 同仁福亦 恃其強惡 不計非理 如前橫侵爲白乎乙喻良置 各別立旨成給爲白只爲 行下向教是事

令鑑主 田田(處分)

壬辰八月 日所志

[題辭] 一處推閱處置次以 仁卜等乙 捉來事 十九日

官[署押]

6-1-15) 1657년 윤 별좌택 노 애순 명문

[1657년(효종 8) 최곤망崔坤望이 윤 별좌택 노 애순에게 백련동白蓮洞의 와가瓦家와 빈터, 집터 및 보리심은 밭을 팔면서 작성해 준 명문.]

순치 14년 정유 정월 21일 윤 별좌택 노 애순愛順에게 주는 명문

이 문서를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긴요하게 쓸 일이 있어 어머니 측에서 매득하여 물려받은 백련동白蓮洞에 소재한 와가瓦家 5칸間 및 빈터[空基], 집터家基와 보리를 심은 밭 2마지기를 목면 2동 同을 받고 위 사람의 상전택에 영구히 방해하되 동생들과 합의하여 나누어 가진 몫[衿分]을 기록한 명문明文에는 여타 전답과 노비들을 모두 기록해 두었기 때문에 넘겨 줄 수 없고, 당초 어머니 측에서 매득할 때 작성한 본문기本文記만을 넘겨준다. 이후에 쓸데없는 말이 생기거든 이 문서를 가지고 관에 고하여 바로잡을 것이다.

재주財主 유학幼學 최곤망崔坤望 [착명]

증인證人 전사과前司果 윤순길尹順吉

증보證保 유학幼學 윤시하尹時夏 [착명]

필집筆執 유학幼學 윤선겸尹善兼 [착명]

順治十四年丁酉正月二十一日 尹別坐宅奴愛順處 明文
右明文事段 要用所致以 母邊買得傳來白蓮洞伏瓦
家五間及空基家基 并牟種貳斗落庫良中 價木
貳同捧上爲遣 同人上典宅良中 永永放賣爲乎矣 同生
和會衿分明文段 他田民并付乙仍于 許與不得爲跡 當
初母邊買得本文記券 許與爲去乎 後次雜談隅有去等
將此文告官卞正事

財主 幼學 崔坤望[着名]

證人 前司果 尹順吉

證保 幼學 尹時夏[着名]

6-1-16) 1661년(현종 2) 9월 대흥사 승 자운 소지

[1661년(현종 2) 9월 대흥사 승僧 자운自雲이 윤경담尹景耽·김인복金仁福과의 논 소유권 쟁송 끝에 해남윤씨海南尹氏 연동 종가에 논을 판 뒤, 김인복의 소지로 재개된 송사에서 자신의 주장을 설파하는 내용으로 작성한 소지의 초본草本.]

승인僧人 자운自雲

소지所志로 아뢰는 하늘을 찌르도록 원통한 제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구입하여 농사지어 먹어오다가 매각한 녹산면峽山面 논을, 현재 점유하고 있는 인복仁福이 불법으로 탈취할 계획으로 소지를 올려 (저를) 찾아 잡아오도록 하셨습니다.

일의 대강은 이렇습니다. 동同 논은 현 내에 거주하는 윤경담尹景耽³⁰이라는 이름의 양반이 양반 윤급尹級에게 구입하여 인복仁福에게 도로 팔았습니다. 이후 남평南平 사는 이생원은 윤급과 같은 사손使孫이며, 선조의 전답과 노비를 분재分財할 때 위 논을 이생원 몫으로 나눈 명문明文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동 이생원이 (논을) 팔기에 제가 값을 주고 샀으며 이생원의 패자牌字와 문기 전준傳准 및 매매 계약서까지 모두 제가 확실히 가지고 있다가 사노私奴 애순愛順에게 논을 팔 때 위의 본문기本文記들 모두를 함께 넘겼습니다.

윤급이 논을 판 것은 상속재산을 나누기 전의 일이니, 자신의 물건이 아닌 것을 판 것입니다. 법적으로는 당연히 윤경담이 윤급에게 본값을 받아내고 인복은 윤경담에게 본값을 받아내야 합니다. 차례차례 논 값을 받아내는 것이 법례 상 당연하건만 윤경담이 인복에게 돈을 지급하지 않고 매번 제게 애걸하면서 그 논을 인복에게 줄 것을 청하면서 “당연히 내가 너에게 논 값을 주겠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인복도 본값을 윤경담에게 받을 의사가 없고 그의 많은 형제·자식들이 결당하여 매번 조충에 활, 검을 지니고 저를 위협하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저는 외로운 홀몸의 노승으로 버티고 당할 수가 없어서 다만 불망기不忘記를 써서 인복에게 주었습니다. 그 후 8~9년이 지나도록 인복과 윤경담은 위 논 값을 마련해 줄 생각 없이 매양 여러 방법으로 위 논을 빼앗으려고만 하오니 가슴에 맺힌 분통함을 이기지 못해 애순에게 논을 팔아버렸습니다.

30 독음은 ‘담(耽)’이나 동일인이 언급된 10여건의 소지에 ‘담(談)’ 혹은 ‘담(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해의 편의를 위해 ‘담’으로 독음하고 한자는 원문대로 부기하였다.

인복이 제출한 제 자필自筆 불망기를 관주官主³¹께서 상세히 살펴보시면 따로 증보證保³²를 두지 않은 것을 아실 터이니, 이것으로도 환히 아실 수 있습니다.

밖으신 정사 아래 자세히 살펴시어 처리하도록 분부하여 주실 일입니다.

관사주官司主 처분.

신축년(1661) 9월 일

僧人自雲

右所志極天冤痛情理段 矣身買得耕食爲白如可 放賣爲白有在 泉山面番廩店者仁福亦 據奪設

計 呈狀推捉爲白臥乎所 大槩同番庫乙 縣居尹景耽稱名兩班亦 買得於兩班尹伋處 轉賣於仁福

之後 南平居李生員亦 與尹伋同是使孫以 祖先田民分財之時 右番庫亦 李生員衿以 分去明文成置是如 同李生亦 放賣爲白去乙 矣身給價買得 至於李生員牌字及■(明)文記傳准及買得明文并以

昭在矣身處爲白有如可 矣身亦 私奴愛順處放賣時 右等本文記并以 一一許與爲白有齊 尹伋放

賣 則在於未分前 非自己之物以是白置 尹景耽法當徵只本價於尹伋 而仁福右當徵只本價於尹景耽 次次徵價 法例當然■是白去乙 尹景耽亦 不給其價於仁福處爲白遣 每每哀乞於矣身處 請給其番於仁福 則我當准價給汝云云 而仁福段置 無意徵本價於尹景耽處 而其矣同生子息 多數結黨 每持鳥銃弓劍 多般恐嚇爲白去乙 矣身孤單老僧以 不勝支當 只書不忘記 以給仁福處 而後八九年至 同番價乙 仁福及尹景耽■■(以而)亦 無意備給 而每欲百

奪右番爲白去乙 矣身不勝憤憤放賣於愛順處爲白有齊 同仁福所納矣身自筆不忘記乙 官主教是 詳細監當 別無證保爲白去乙等以 此可以昭然爲白置 明政之下 詳察處置爲白只爲行下向教是事

官司主處分

辛丑九月 日所志

31 관주(官主) 관아의 주인. 청원 접수처인 관아의 최고 책임자를 말한다. 아래 관사주(官司主)와 같은 의미.

32 증보(證保) 거래 당사자는 아니나 거래에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거래상 의무의 불이행 혹은 불안전 이행시 보증 책임과 관련된 사람을 말한다. '보인(保人)'이라고도 한다. 거래의 사실 진위 여부를 입증하는 증인(證人)과 문서로 작성하는 필집(筆執)과 함께 거래 문서에 필수적으로 함께 기재되었다.

6-1-17) 1672년 현산면 거인 등장(제5절 백야지 입안에 重出)

6-1-18) 1676년 윤 생원택 노 자산 소지

[1676년(숙종 2) 윤 생원택 노 자산이 음죽현 토지의 소유권을 둘러싸고 올린 소지.]

서울에 사는 윤 생원尹生員³³ 宅宅 노奴 자산茲山 [좌촌左寸]

삼가 소지所志를 올리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의 상전택 농장은 서면西面에 있는데, 왈자曰字 52답畝 10마지기에서 해마다 세를 받다가 신후, 임포 두 해에는 흉년이 들어 애초에 내려오지 않았 습니다.

작년에 세를 받기 위해 내려와서 경작자 소강이小江伊에게 말을 하자, 북면北面의 정생원鄭生員에게 매득買得했다고 하면서 도지賭地를 주지 않았습시다. 그리하여 밭도 붙이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와 상전택에 둔 문서를 자세히 살펴보니 저의 상전의 논임이 불을 보듯 분명하였으므로 조금도 의심치 않고 내려왔습니다. 경작자인 소강이는 역시 이렇게 정생원에게 매득한 것이라고 하면서 도지를 주 지 않았습시다. 서울에 사는 사대부택에서 비싼 값으로 산 논인데 다른 사람을 빙자하여 해마다 도지 를 바치지 않으니 매우 절통합니다.

영감께서 살피신 후, 위의 소강이를 패牌를 내어 잡아와 심문하고 엄히 다스린 뒤에 두 해 동안의 도지를 낱날이 갖추어 줄 것을 엄한 제사로 명령해 주소서. 명령하실 일입니다.

영감께서 처분해 주옵소서.

병진년(1676, 숙종 2) 11월 일. 소지.

[제사] 곡절을 심문하기 위해 소강이를 잡아올 것. 12일.

관후 [서업]

京居 尹生員宅奴 茲山[左寸]

右謹陳所志矣段 奴矣上典宅農庄 在於西面曰字五

十二畝斗落只庫乙 年年收稅是如可 至於辛壬兩

年 當值殺年 初不下來是白如可 上年良中 收稅

次以下來 作者小江伊處言給 則北面鄭生員處買得

33 윤 생원(尹生員) 윤인미(尹仁美, 1607~1674).

是如 不給賭地 故不得接足空還 上典宅所置文書
 詳細相考 則奴矣 上典番庫 明若觀火是乎等以 少
 無致疑 下來則畊食作者小江伊亦 如是憑籍鄭
 生員處買得 賭地不給爲臥乎所 京居士夫宅 重價
 買得番 憑藉他人 年年不捧賭地 極爲絶痛
 令監洞燭教是後 上項小江伊身乙 發牌捉來 推
 問重治後 兩年賭地 一一備給事 嚴題行下爲白只爲
 行下向教是事
 令監 處分
 丙辰十一月 日所志
 [題辭]
 推問曲折次
 小江身乙 捉來
 向事 十二日
 官 [署押]

6-1-19) 1677년 윤 생원댁 종 사망 의송

[1677년(숙종 3)에 윤 생원댁 사내종 사망이 상전을 대신하여 도매 당한 토지의 추급을 요청하는 의송. 매득한 음죽의 토지를 잘 수세하다가 시골로 내려가 19년 동안 수세를 못하다가 다시 수세하려고 하니 정 생원에게 이중 매매를 하여 수세를 할 수가 없었음.]

[1]

서울 어의동於義洞에 사는 윤 생원댁 사내종 사망士望 [좌촌]

삼가 아뢰는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 댁이 지난 병자년에 음죽 서면陰竹西面³⁴에 있는 왈자曰字 논 5마지기를 매득하여 해마다 아무 폐단 없이 세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계사년에 남쪽으로 내려와 있던 중, 연이어 상변喪變을 당하여 해마다 사내종을 보내 세를 거둘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19년이 지난 후에 사내종을 보내 세를 거두려는데 같은 마을에 사는 정 생원鄭生員이라는 사람이 자기

34 음죽 서면(陰竹西面) 음죽은 경기도 이천 지역의 옛 지명이다.

가 매득했다고 하면서 끝내 세를 주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감영에 의송^{議送}을 올려 처분을 받아 본 관에 접수하오니, 세세하게 통촉하신 후에 이 정생원 집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노비를 붙잡아 추열^{推閱}한 후에 이 논을 돌려받아주시고 해마다 걷는 세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천만번 바라 오니 명령하실 일.

음죽관주께서 처분하여 주십시오.

정사년 10월 일 소지

[제사]

추변^{推下}하기 위해 정생원 집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노비를 붙잡아오되, 정생원이 정말로 매득하였다면 빙고^{憑考}하기 위해 문기를 가지고 오라는 것으로 도부^{到付}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26일.

[배제^{背題}]

양측의 매득 문서를 살펴보았다. 너의 상전 집이 매득한 것은 병자년이고 정오천^{鄭五川}이 매득한 것은 을해년이니 매매한 시기에 선후가 있다. 그리고 본문서^{本文書}가 비록 너의 집에 있기는 하지만, 정가에게 방매했을 때는 다만 아래쪽 래래 자 4마지기를 팔았다가 너의 상전에게 팔 때는 10마지기를 모두 방매하였는데 정가가 사출^{斜出}³⁵을 받지 않았다. 이 때문에 중복 방매할 때에 허급하였음을 절로 미루어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한가^{韓家}는 후손이 없이 죽었기 때문에 빙고할 수가 없으며 또 40년 전의 일이라서 지금 추심^{推尋}할 수 없다. …(원문 결락)… 상고하여 시행할 일이다.

2일

관^官 [서업]

[2]

윤 생원댁 사내종 사망^{士望} 의송 [좌촌]

삼가 절통한 일을 아뢰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 댁이 지난 병자년에 매득한 음죽^{陰竹} 땅 …(원문 결락)… 산주리^{酸酒里} 전답을 해마다 아무 일 없이 세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 댁이 계사년에 …(원문 결락)… 남쪽으로 내려와 있던 중에 연이어 상변^{喪變}을 당하였는데 지역이 멀어 해마다 사내종을 보내 세를 거둘 수가 없었습니다. …(원문 결락)… 상경한 후에 차노^{差奴}를 보내 도지^{賭地}³⁶를 징수하였는데 그 가운데 월^日 자는 5마지기 …(원문 결락)… 곳을 같은 마을에 사는 정생원이 자기가 매득하였다고 하면서 끝내 세를 주지 않고 저를 물리쳐 쫓아내 다시 발붙이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35 사출^{斜出} 빗기^{斜是, 斜只}라고도 한다. 관청에서 세를 받고 증명을 해 줄 때 비스듬히 서명해주는 일을 말한다.

36 도지^{賭地} 賭租를 말하며, 경작자가 매년 추후 때에 田主에게 지급하는 정액의 토지사용료.

니다. …(원문 결락)… 그렇게 해마다 세를 주지 않은 것이 또 거의 10년에 가깝습니다. 매번 급하게 돌아오느라 변별할 수 없었고 …(원문 결락)… 지금 이렇게 우리리 호소하오니 삼가 바라건대 본현本縣에 엄중하고 분명하게 배관背關하여 …(원문 결락)… 양쪽의 문서를 명백하게 조사하신 후에 만일 위조문서가 있거든 즉시 관에서 …(원문 결락)… 불태워버리고, 해마다 납부했어야 할 도지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신 후에 정생원택의 사지노자를 …(원문 결락)… 무겁게 곤장을 쳐서 토호土戶와 호강豪強이 함부로 세력을 부리는 습관을 통렬히 징계하여 주시기를 천만번 바라오니 명령하실 일.

감영에서 처분하실 일이옵니다.

정사년 10월 일

[제사] 정가가 자기가 매득하였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근거로 하는지 …(원문 결락)… 정가의 사내증을 즉시 붙잡아오고 …(원문 결락)… 숫자대로 받아내고 …(원문 결락)… 화리禾利는 …(원문 결락)… 징수하여 바치게 할 일이다.

23일 본관本官.

京中 於義洞 尹生員宅 奴士望[左寸]

右謹陳情由段 矣宅去丙子年分 陰竹西面伏日字

畚五斗落只庫乙買得 年年無弊收稅矣 癸巳年良

中 捲下南中 連值喪變 未能逐年送奴收稅是

白如可 十九年後 送奴收稅 則同里居鄭生員 稱以

自己買得是如 終不給稅乙仍于 以此呈議送 受

題辭到付爲去乎 細細洞燭教是後 同鄭生員事知奴子 捉

來推閱後 同畚庫推給爲白遣 年年收稅 亦

爲推給事 千萬望良爲白只爲

行下向教是事

陰竹官主 處分

丁巳十月 日 所志

〈題辭〉

推下次 鄭

生員事知奴

子 捉來是

乎矣 鄭生

員果是買

則憑考次 文記持來事到付 宜當事 廿六日

〈背題〉

兩隻買得文書考見

則汝矣上典家買得 在於

丙子年 鄭五川買得 在

於乙亥 則買賣既有先後

是遣 本文書雖在於汝矣處 鄭哥處放賣時 則只

賣下來四斗落只是如可 賣

於汝矣上典時 則十斗落盡數

放賣 而鄭哥未及斜出之 故

重復放賣之時 許給小自可推知豈

不喻 韓家□無后身死 無憑可

考 而且是四十年前事 則今

不可推尋□…□相考施行事

初二日

官[押]

尹生員宅 奴士望 議送[左寸]

右謹陳絕痛事段 矣宅是亦 去丙子年分 買得陰竹地□…□

□…□酒里田畝 年年無事收稅爲白如可 矣宅是亦 癸巳年良中□…□

□…□下南中 連值喪變中 地遠未能逐年送奴收稅是白如可 十□…□

□…□後上京後 送差奴徵收賭地是乎 則其中曰字畝五斗落只□…□

□…□庫乙 同里居鄭生員是教 稱以自己買得是如 終不給稅是白遣 驅逐矣身 不得接跡是
□…□

□…□去乎 逐年不給 亦至十年將近是白乎矣 每每急忽歸來 未及辨□…□

□…□是白置 今此仰訴爲白去乎 伏望嚴明背關於本縣 取□…□

□…□兩邊文書 明白踏驗後 如有偽造文書是白去等 卽爲官□…□

□…□燒火爲白遣 備徵年年賭地□…□後 同鄭生員宅事知□…□

□…□重杖 以爲痛徵土戶毫強武斷之習 千萬望良白只爲

行下向教是事

監營處分

丁巳十月 日

〈題辭〉

鄭哥之稱以自己
買得者 有何所據□…□
喻 鄭哥奴子 卽爲捉來□…□
依數推給□…□
禾利段置□…□
懲捧向事
廿三日 本官

6-1-20) 1677년 윤 생원댁 종 일위 의송

[1677년(숙종 3)에 윤 생원댁 사내종 일위가 상전댁을 대신하여 도매한 토지를 추급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의송. 음죽 땅을 20년 가까이 수세를 못하다가 징세를 하니 다른 곳에 이종으로 매매되어 있음.]

어의동於義洞 윤 생원댁 사내종 일위一爲 의송 [좌촌]

삼가 분통스러운 사정을 아뢰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 댁이 지난 병자년에 음죽 서면陰竹西面 산주리酸酒里에 있는 땅을 매득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댁이 20년 가까이 남쪽으로 내려와 있던 까닭에 그간의 도지賭地를 해마다 거두어 쓸 수 없었고, 상경上京한 후에는 여러 해에 걸쳐 차노差奴를 보내 세를 징수하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박만길朴萬吉이라는 사람이 선善 자 밭 16마지기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먹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전지田地를 팔아먹는 죄는 본디 그 법이 있으니, 법에 따라 엄중히 다스리신 후에 본 전지를 되돌려 받거나 다른 토지로 대신 받아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본현本縣에 엄중하고 분명하게 배관背關하여 양반가에서 공연히 먼 곳에 있는 전지를 잃어버리는 폐단이 없도록 명령하실 일.

감영에서 처분하실 일입니다.

정사년 10월 일

[제사] 다른 사람의 토지를 도매盜賣하였다니 매우 터무니없는 일이다. 박만길을 즉시 잡아 가두고 조사하여 받아내 줄 일이다.

23일 본관本官에게.

겸사兼使 [서업]

於義洞 尹生員宅 奴一爲 議送[左寸]

右謹陳痛憤情由段 矣宅是亦 去丙子年良中 買得
陰竹西面酸酒里田地是白如乎 矣宅是亦 近二十年落南
之故 其間賭地乙 未得年年收用矣 上京後數年來 送差奴徵
稅是白乎 則其中朴萬吉稱名漢 善字田十六斗落只
庫乙 賣食於他人爲白乎所 買食他人田地之罪 自有其
律是白去乎 依法重治後 推給本田是白去乃 以代土徵給
是白去乃 嚴明背關於本縣 俾使兩班家 無公然
見失遠地田地之弊爲白只爲
行下向教是事
監營 處分
丁巳十月 日
〈題辭〉
他矣田盜賣之
狀 極爲無據
萬吉身 卽爲捉囚查問推給事
廿三日 本官
兼使[押]

6-1-21) 1687년(숙종 13) 3월 초 박선금 소지

[1687년(숙종 13) 박선금朴先令이 난절卵節에게 빼앗긴 자신의 모친 명의 논을 추심해 달라고 해남 현감에게 청원하는 소지.]

화산면花山面 사는 박선금朴先令³⁷

삼가 소지所志로 아뢰는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의 조상으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논이 현산면縣山面 백야지원白也只員에 있는 칭자稱字 논 9부 5속 되는 곳으로, 제 어머니 도비道非 명의로 갑술양안甲戌量案에 명백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께서 일찍 돌아가신 후, 조상의 전답 다수를 저

37 박선금(朴先令) 박선금이 동일한 내용으로 올린 소지는 모두 다섯 건이 해남윤씨 연동 종택에 전래되고 있는데, 이 문서를 제외한 다른 문서에서는 선금의 금(令)자가 모두 금(金)자로 기재되어 있다.

와 아무런 관계도 없는 백야지리에 사는 사내중 난절卵節이라는 자에게 억지로 빼앗겨 그가 공공연히 여러 해 동안 같이먹고 있습니다.

이 지경이 되자 양안의 범표犯標·자호字號·위치 등을 베껴내 저 스스로 땅의 번호와 범표, 장광長廣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위 논외 동서東西 범표와 제 논외 그것이 조금이라도 의심할 만한 꼬투리도 없이 일치하였으므로 저 난절이란 자가 주장하는 것은 말이 되질 않습니다. 같은 동네에서 오래 살고 있는 노인들을 한 자리에 모아 (확인해도) 저희 어머니 '도비' 명외의 논이 명백하여 의심할 바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미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이 전답을 억지로 빼앗아 오래도록 같이먹었지만, 그의 말은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남의 논에서 몰래 농사지어먹은 죄를 매우 다스리신 후 제 어머니 명외의 논을 추심해 주시어 같이먹고 보존할 수 있도록 분부하여 주십시오.

영감주令監主 처분.

정묘년(1687) 3월 일 소지.

[제사] 심문하여 처결할 수 있도록 너의 논이 기록된 문기文記를 가져오고, 난절을 잡아 오라. 8일. 관官[서입][해남현인海南縣印]

花山面接朴先金

右所志矣段 矣祖上流來畓庫 在於縣山面白也只員稱字畓九卜五束庫 矣母名字道非以 甲戌量案中明白載錄 而矣身段父母早死之後 祖上流來田畓數多中 皮肉不奸[干]者 所謂白也只里居奴卵節亦 公然累年被奪於耕食是白去乙 到此量案范[犯]標字號庫員膽出 私自次第范[犯]標長廣比較 則同畓庫東西 范[犯]標及矣身畓庫 少無可凝[疑]之端是乎所 同卵節者 不得成言 至於同里古老人 一時聚會 矣母名字道非畓庫 明白無凝[疑]是如爲臥乎所 既是皮肉不奸[干]人 田畓被奪於耕食者已久 而其矣所謂極爲無據 他矣畓隱耕 之罪 別樣治罪後 矣母名字畓庫推尋 已爲耕食保存之地 爲白只爲

行下向教是事

令監主 處分

丁卯三月 日 所志

[題辭] 推閱處決次以 汝矣畓所付文記持是遣 卵節乙 捉來事 初八日 官[署押] [印]

6-1-22) 1687년(숙종 13) 3월 중순 박선금 소지

[1687년(숙종 13) 3월 박선금朴善金이 모친 명의 논외의 소유권 분쟁과 관련해 갑술양안甲戌量案에서 해당 논외 기재된 부분을 등출해 달라고 청원한 소지.]

화산면花山面 거주 박선금朴善金

소지所志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의 조상으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논외 현산면縣山面 백야지 원白也只員에 있는데, 이 논외는 제 어미 도비道非 명의로 갑술양안甲戌量案에 명백히 기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어머니께서 일찍 돌아가신 후 이 논외를 아무런 상관도 없는 자가 억지로 빼앗아 농사지어먹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상으로부터 전해지는 전답이라는 근거와 제 어미 도비 명의로 기록된 문기文記의 자호字號와 위치, 결부結負수를 비교해 보았더니 위조된 문기임이 의심할 바 없이 명백합니다. 이 논외에 농사지어먹는다는 것은 말이 되질 않는 바, 남의 전답을 억지로 빼앗아 공공연히 여러 해 동안 갈아먹어온 정상이 하늘 끝까지 원통합니다. 하오니 갑술양안의 범표犯標와 양안에 기재된 명의를 아울러 등출騰出하는 일을 담당 관원에게 특별히 명령하도록 분부하여 주십시오.

영감주令監主 처분.

정묘년(1687) 3월 일 소지.

[제사] 원하는 대로 상고相考하라. 19일. 담당자에게.

관官[서업][해남현인海南縣印]

花山面接 朴善金

右所志矣段 矣祖上流來畚庫 在於縣山面白也只
員伏在畚庫 矣母道非名字甲戌量案良中 明白載
錄是如爲乎矣 矣母早死之後 同畚庫皮肉不奸[干]者 被奪
耕食爲白去乙 祖上流來田畚根因 及矣母道非名字所付
文記字號庫員結負數比較 則僞造文記明白無凝[疑] 而
此畚耕食者 不得成言爲臥乎所 他矣田畚被奪 公然
累年耕食之狀 極天冤痛是白去乎 甲戌量范[犯]標及
所付作名并以 膽出事乙 該色亦中 特令行下爲白只爲
行下向教是事

令監主 處分

丁卯三月 日所志

[題辭] 依願相考事 十九 色

官[署押] [印]

6-1-23) 1687년(숙종 13) 9월 박선금 소지

[1687년(숙종 13) 9월 박선금朴先金이 모친 명의 논을 점유하고 있는 난절을 심문하여 땅을 돌려달라고 해남 현감에게 청원하는 소지.]

화산면花山面 거주 박선금朴先金

소지所志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의 조상으로부터 전해 내려온 논이 현산면縣山面 백야지원白也只員에 있는 칭稱자 논 9부5속 되는 곳으로, 제 어미 도비道非명으로 갑술양안甲戌量案에 명백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일찍 돌아가신 후, 저와 아무 상관도 없는 현산면 백야지리에 사는 사내중 난절卵節이라는 자가 제 조상의 전답 많은 부분을 공공연히 여러 해 동안 억지로 빼앗아 농사를 지어먹었습니다.

그 논에 대한 근본 내력과 범표犯標의 실상에 대해 백야지리에 오래 산 노인들을 한 자리에 모아 제가 직접 여쭙고 조사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제 어머니 도비 명의로 (양안에) 명백히 실려 있었을 뿐 아니라 난절의 논은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였고, 이미 저에게 준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옳고 그름이 이와 같은데도 (난절은) 여전히 농사지어먹으면서 제게 내어주질 않습니다.

적선積善으로 새 정사를 펼치시는 사또님께서 이러한 사연을 세세히 분간하시어 난절을 잡아다 심문하시고 결급決給해 주십시오. 특별히 처리하도록 분부하여 주십시오.

영감주令監主 처분.

정묘년(1687) 9월 일 소지.

[제사] 심문을 위해 (난절을) 잡아 오너라. 24일.

관官[서업][해남현인海南縣印]

花山面接 朴先金

右所志矣段 矣祖上流來畚庫 在於縣山面白也只員稱字畚九卜五束
庫 矣母名字道非以 甲戌量案中 明白載錄 而矣身段 父母早
死之後 祖上田畚數多 皮肉不奸[干]者 所謂縣山白也只里居奴卵
節 公然累年被奪於耕食爲白去乙 同畚根因范[犯]標實狀 白也只
里古老人 一時聚會 私自論閱 則矣母道非名字明白載錄叱分[不喻]
卵節畚庫 皮肉不富[當]是如 既是許給於矣身處是如 是非如此

是白乎矣 仍爲耕食 不許出給爲白臥乎所 積善新政之下 以此

辭綠 細細分揀 同卵節捉來推問決給事 特爲行下爲只爲

行下向教是事

令鑑主 處分

丁卯九月 日 所志

[題辭] 推閱次捉來事 廿四

官[署押] [印]

6-1-24) 1687년(숙종 13) 10월 박선금 소지

[1687년(숙종 13) 10월 박선금朴先金이 논 소유권 쟁송 대상자인 난절卵節의 관령官令 거역 사실을 알리고 처벌해 달라고 해남현감에게 청원하는 소지.]

화산면花山面 거주 박선금朴善金

소지所志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의 조상으로부터 전해 내려온 곳인 현산면縣山面 백야지원白也只員에 있는 칭稱자 논 9부5속 되는 곳은 제 어미 도비道非 명의로 갑술양안甲戌量案에 명백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께서 일찍 돌아가신 후 조상의 전답 다수를 아무 관계도 없는 현산면縣山面 백야지白也只 사는 중 난절卵節이라는 이가 대놓고 여러 해 동안 농사지어먹고 있었습니다.

위 논은 근본 내력과 장광長廣·범표犯標 등의 실상을 백야리白也里에서 오래 산 노인들을 한 자리에 모이게 하여 저 개인적으로 조사해보니 제 어머니 도비 명의의 논이 명백하고 의심할 점이 없었을 뿐 더러 난절의 땅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하였고 이미 저에게 넘겨준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시비是非가 이와 같은데도 여전히 농사지어먹으면서 끝내 내어주지 않기에 영감님 부임 초기에 이러한 사연으로 소지를 올렸고 “심문해야 하니 잡아 오라.”라는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그의 집에 대어섯 차례 드나들면서 이야기했으나, 지금까지도 갖가지로 빠져나갈 궁리에 저에게는 근거 없는 말을 하며 대낮에 발악하면서 관官의 뜻을 거역하고 감히 피하려고 합니다. 제가 소송한 것이 아직 접수되지 않았사오나, 제멋대로 관의 뜻을 거역한 죄를 먼저 처벌하셔서 특별히 더한 관官의 위엄으로 발패發牌해 엄히 다스린 후, 송사를 시작하고 결단決斷을 내려주실 것을 우선적으로 참작고려해 주십시오. 명령하도록 분부하여 주실 일입니다.

영감주令鑑主 처분.

정묘년(1687) 10월 일 소지.

[제사] 심문을 위해 (난절을) 잡아 오되, 또다시 거역하거든 다시 와 고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

라. 18일.

관官[서입][해남현인海南縣印]

花山面接 朴先金

右所志矣段 矣祖上流來畚庫 在於縣山面白也只員稱
 畚九卜五束庫 矣母名字道非以 甲戌量案中明白載(錄)
 而矣身段 父母早死之後祖 上田畚數多皮肉不奸[干]者 所()
 縣山面白也只居 奴卵節亦 公然累年畊食爲白去()
 同畚根因 長廣犯標實狀乙 白也里古老人等 一時聚(會)
 私自論閱 則矣母道非名字 明白無疑券不喻 卵節
 庫皮肉不當是如 既是許給於矣身處是如 是非
 如此是乎矣 仍爲耕食 終不許給爲白去乙 以此辭緣
 令監主到任新政之初呈狀 則題辭內 推閱次以捉來事
 題送是白去乙 矣身其矣家五六巡親往 入來事言之 則到此
 這這謀頃 至於矣身處 以無據談白立發惡 官旨拒逆 () () (敢避)
 爲臥乎所 矣身段 相訟未爲接訟是乎乃 爲先私自官旨拒逆
 之罪 自官威 別樣發牌 痛治後 始訟決斷事乙 爲先參慮
 行下爲只爲
 行下向教是事
 令監主處分
 丁卯十月 日 所志
 [題辭] 推閱次捉來爲乎矣 又有拒逆是去等 更良來告 以爲處治之地事 十(八)
 官[署押] [印]

6-1-25) 1687년(숙종 13) 11월 박선금 소지

[1687년(숙종 13) 박선금朴先金이 난절卵節이라는 종과 모친 명의의 전답을 두고 소송하던 중 해당 논이 상속문서를 도둑맞고 난절의 소행임을 밝혀달라고 요청하는 소지.]

화산면花山面 거주 박선금朴善金

삼가 소지所志로 아뢰는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상으로부터 전래되어 제 어머니가 상속받은 현

산면縣山面 백야지원白也只員의 칭稱자 9부 5속 되는 논이 제 어미 도비道非 명의로 갑술양안甲戌量案에 명백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일찍 돌아가신 후 논의 허다한 부분을 아무 관련도 없는 난절 卵節이라는 사람이 여러 해 동안 농사지어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시작하여 소송을 접수하기 위해 여러 차례 소지를 올리고서 난절의 집에 가면 (관의 명령을) 거역하고 오지 않으며 갖가지 방법으로 피하려고 합니다. 영감님께서 새로 부임하신 초기에 소지를 올려 받은 제사題辭를 들고 난절의 집에 갔으나 줄곧 거역하고 (관아로) 오지 않는 까닭에 다시 소지를 올렸었습니다. 그저께 또다시 난절의 집에 가니 이번에는 난절이 ‘이 논을 두고 서로 송사하지 말고 우리끼리 화해한 후 논 값을 마련해 주겠다.’고 하며 지극히 대접하면서 밥까지 먹여 주었습니다. 밥을 먹고 나니 지체되어 해가 저물어서 그의 집에서 묵어가려는 때에 지극히 독한 술을 귀식饋食할 때 권했습니다. 술을 많이 마시고 취해 누워 인사불성이 된 사이에 제 어미가 동同 논을 상속받은 명문明文을 (난절이) 훔쳐냈으니, 논에 대한 송사변별이 불가하며 송사를 접수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 연유로 난절이라는 놈은 문기文記를 훔쳐낸 후 잡담 없이 송사에 응해 (관아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집에서 술과 많은 음식을 먹이고 제가 취해 쓰러져 인사불성인 틈에 문기를 훔쳐낸 뒤에라야 이처럼 송사에 응하려 올 줄은 저로서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난절의 집이 아니면 누가 훔쳐 내었겠습니까? 동同 난절을 잡아 가두고 엄중히 따져 물어 사실을 밝히고 추심하는 일을 특별히 명령하도록 분부하여 주십시오.

영감주令監主 처분.

정묘년(1687) 11월 일 소지.

[제사] 자세한 심문을 위해 잡아 오라. 1일.

관官[서업][해남현인海南縣印]

花山面居 朴先金

右謹陳所志矣段 矣祖上傳來 矣母衿得縣山面白

也只員稱字畚九卜五束庫 矣母道非名字甲戌量

案中明白載錄 而父母早死後 許多皮肉不奸[干]之人■

所謂卵節之人 累年耕食爲白去乙 自上年爲始

接訟次以 累度呈狀 歸到卵節家 則拒逆

不來■…■這這謀避爲白去乙 令鑑主新到

之初 呈狀受題辭持是遣 歸去同人家 則終始拒

逆 不來之由 又呈所志 昨之日又歸同人家 則今畚段

同卵節者言內 同畚相訟除良 私和後以 價本備給亦 遲滯極對接 至於饋飯食後日暮 其矣家

宿所之際

至至毒酒 勸於饋食爲白去乙 多飲酒醉臥 不察人事

間 矣母衿給同番明文偷出爲白有臥乎所 同番訟下 不可
 接訟無路乙仍于 同卵節者 文記偷取後 無辭雜談 接訟次
 入來爲白有置 其矣家饋酒 多食醉臥 不察人事中
 偷出文記後沙 如是訟接入來之狀 不可知叱分不喻 其
 同人家外 何許人偷出乎 同卵節捉囚窮問 現出推
 尋事 特爲行下爲白只爲
 行下向教是事
 令鑑主 處分
 丁卯十一月 日 所志
 [題辭] 推問次以捉來事 初一日
 官[署押] [印]

6-1-26) 1720년 유학 이사원 노 사남 소지

[1720년(숙종 46) 이사원의 노 사남이 해남현에 상전의 토지 소유권에 관한 내용으로 올린 소지.]

화산면花山面에 사는 유학幼學 이사원李思愿의 노奴 사남士男

삼가 소지所志를 올리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의 상전은 지난해 8월께 元伊에게 조租 15석石, 전문錢文 10냥을 갖추어 주고 현지縣地 현산면縣山面 백야지白也只 가전원家前員에 있는 원이의 어머니인 도비道非의 이름으로 양안量案에 등재된 강자薑字 밭 4마지기, 부수負數 7복卜 4속束인 곳과 칭자稱字 논 2마지기, 부수 9복 5속인 곳을 매득한 후, 즉시 양안에 저의 이름으로 기록하였습니다.

그런데, 천만 뜻밖에 현산면 백야지리에 사는 이난절李卵節이라는 자가 지난 정묘년丁卯年에 매득했다고 합니다. 전후의 문서를 세세히 살펴보니, 그 해에 승려 해인海認에게 매득한 명문明文 내용에, ‘값을 무명 세 필째로 서로 약속하고 문서를 작성함’이라고 하였고, 증인과 필집筆執 세 사람은 착명着名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논 주인인 승려에게 준 불망기不忘記 앞 부분의 내용에, ‘논 값 세 필을 갖추어 주지 못하니, 정한 기한 내에 주지 못하거든 되돌려 줄 것’이라는 문기가 명백합니다. 이 승려는 원이와 형제 사이입니다. 흥년이 더욱 흑심하더라도 논 2마지기의 값이 어찌 세 필일 리가 있겠으며, 증인과 필집 등이 어찌 착명하지 않았으며, 논 값 세 필을 얼마간이라도 주었다면 어찌 불망기를 찾아 원이에게 전해 바꾸어 주지 않았겠습니까?

여러 사리를 헤아려보니 진실로 위조문서이므로 감히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이 난절을 잡아 범대로 다스린 후 남의 전답을 몰래 갈아먹은 죄를 막아주실 것이며, 이치에 맞지 않는 것으로 어지럽게

하는 폐단을 없애도록 명령하실 일입니다.

영감님께서 처분해 주옵소서.

경자년(1720, 숙종 46) 1월 일. 소지.

[제사] 심문하여 처벌하기 위해 문서를 보낸 사람을 잡아올 일. 25일.

관학 [서업]

花山面居 幼學李思愿 奴士男

右謹言所志矣段 奴矣上典 去年八月分 元伊處 租十五石錢文十兩備給爲白遣
縣地縣山面白也 只家前員 上項元伊母道非量 薑田四斗落負數七卜四束庫果 稱畚二斗落只
負數九卜五束庫 買得之後 卽

今量案中 矣身名以載錄爲白乎 則千萬意外 縣山面白也只里居李卯節
爲名者 去丁卯年分 買得是如爲白乎矣 前後文書 細細相考 則其年良中 僧海認
處買得 明文辭意內 價折木三疋以相約成文是白乎矣 訂筆執三人 不爲着名是遣
畚主僧人處 不忘記旨內畚價三疋乙 不爲備給爲去乎 定限內若不備給是去等 還
推事 文記明白 而大盖此僧與元伊 以兄弟之間也 年兇尤酷是白良置 畚二斗落只
價折有何三疋之理是乎旡 訂筆執等 何不着名是乎旡 畚價三疋乙 多少間備給 則
何不推 不忘記傳換元伊處乎 揆諸事理 實爲僞造文記是乎等以 敢此伸訴
爲白去乎 同卯節 捉治依律後 以杜他矣田畚隱然耕食之罪爲乎旡 使無非理
紛紜之弊爲白只爲

行下向教是事

令監主 處分

庚子正月 日所志

[題辭]

推問處決次/ 狀付人捉來/ 向事 廿五日

官 [署押]

6-1-27) 1686년 임간林揀 처 김씨金氏 결송입안

[1686년(숙종 12) 해남현에서 임간林揀의 처 김씨에게 현산면縣山面の 논 3마지에 대해 결급決給해
준 결송입안.]

강희 25년(1686, 숙종 12) 병인 3월 일 해남현 입안

이 입안은 결급法給에 관한 일이다. 본현에 사는 학생學生 임간林揆의 처 김씨 이름으로 올린 관찰사의 의송議送에, ‘소지에 의거하여 실상을 조사하니 상송相訟에 관련된 사안이므로 사목에 따라 시행할 일. 본관’이라고 제음題音을 내려 보냈다. (임간의 처 김씨가 올린) 소지에, ‘지난 신유년(1681, 숙종 7) 12월에 남편의 매부인 김남위金南渭의 아들 김만두金萬斗가 그의 몫으로 받은 본현 현산면縣山南에 있는 진자珍字 논 3마지를 남편에게 방매하고 돈을 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간청하기에, 위의 논값으로 정조正租 9섬은 곧바로 마련해 주고 1섬은 후일에 마련해 지급하기로 하고 제가 직접 갈아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게 이번에 김만두가 위의 논을 본현에 사는 중 상능尙能에게 몰래 도매盜賣하여 때문에 상능이 매입했다고 하기도 하고 서로 교환한 것이라고도 하면서 온갖 거짓말을 하며 제가 논에 대해서 손을 쓸 수 없게 하였습니다. 중 상능과 만두가 농간한 죄에 대해 본현에 엄히 가두고 법에 따라 엄중하게 다스린 뒤에 위의 논을 추심하도록 명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하였다.

이러한 의송 및 소지가 있었으므로 위의 중 상능과 김만두 등을 동시에 불러 추열하였다. 김만두의 초사에, ‘몇 년 동안 화리禾利(경작권)만을 외삼촌인 임간에게 방매하고 논은 방매하지 않아 원래 매매문서가 없습니다. 그 때문에 자신의 전답을 중 상능에게 방매하고 문서를 작성할 때 외삼촌인 임간의 동생제 임률林律 및 임간의 전처소생 아들 임화영林花英 등이 사유를 분명하게 알기에 함께 증인으로 참석하였습니다.’하였다. 이에 위의 내용을 원고인 김씨에게 맞는지 추문하였더니, ‘위의 논값을 9섬으로 논의해 정한 뒤에 9섬은 즉시 마련해 주고 아직 주지 않은 1섬을 준 뒤에 명문을 작성해 주기로 숙부와 조카 사이에 금석처럼 굳게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죽은 뒤에 논값이 형편없다고 큰 소한 마리를 더 주어야 명문을 작성해 줄 수 있다고 하다가 지금 다른 곳에 중복 방매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만두가 한 짓은 참으로 몹시 흉악합니다. 특히 근거할 만한 것은 제 남편이 살아 전답을 방매할 때 남편의 동생제인 임률 등이 명백하고 자세하게 알고 있으니, 그간의 실상을 임률에게 추문하실 일입니다.’ 하였다. 김씨의 초사에 근거하여 임률을 붙잡아 와서 한 곳에서 추문하니,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공초를 들이는데, 숨기는 모습이 있는 듯하기에 태형을 약간 가하고 엄히 가두었다. 임률의 초사에, ‘저의 동생형 임간이 살아 있을 때인 지난 신유년에 매부인 김남위에게 전답 값을 정조 13섬으로 논의한 뒤에 7섬은 즉시 마련해 주고 6섬은 계속 주지 않았으므로 명문도 몇 년이 되도록 작성해 주지 않았는데 올해가 되어서야 중 상능에게 몰래 도매하였습니다.’라고 공초를 들었다.

각각 올린 공초를 가지고 보면 위의 김만두는 바로 임간의 외삼촌 조카로 외삼촌 임간이 살아 있을 때 전답을 이미 정해진 값으로 매매하였다. 비록 몇 섬의 논값을 받지 못하여 명문을 작성하지 못했지만 정해진 값을 받은 뒤에 즉시 명문을 작성해 주어야 하거늘 이렇게 하지 않고 몰래 다른 곳에 도매한 실상은 너무도 흉악할 뿐만 아니라, 삼촌과 조카 사이에 소송을 일으켜 분쟁하는 것은 강상綱常에 관계되는 사안이니 만큼 사송詞訟을 정지하는 데 구애되므로 징계하여 다스리지 않아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김만두에게 칼을 씌우고 엄히 가둔 뒤에 사유를 갖추어 첩보하니, 각별히 엄중하게 형벌을

내려 이치에 맞지 않게 농간한 죄를 징계해야 할 것이다. 임률은 인간의 동생제이고 화영(花英)은 인간의 전처소생(前處所生) 이들로 김만두가 중 상능에게 눈을 방해하고 명문을 작성할 때 모두 증인으로 참석하여 착명하였다. 임률과 화영 등은 인간의 아들과 아우로 자신의 아버지와 형이 살아 있을 때 김만두에게 전답을 매입한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으면서 임간이 죽은 뒤에 지금까지 김만두와 상통하여 형수와 계모를 속이고 중복으로 방해하게 하였으니 너무도 통탄스럽고 놀랍다. 위의 임률과 화영 등에게 모두 엄히 형벌을 가해 그들의 죄를 징계해야 한다고 첩보하였다. 관찰사의 서목에, ‘임률과 화영 등의 정상이 해괴하다. 첩보한 대로 각별히 엄중하게 형벌을 가하고 첩보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돌려보냈다.

병인년 1월 25일 유학 김만두(35세)를 형추하였다. 지난 신유년에 자신의 외삼촌인 임간에게 논 3마지기를 값을 정해 방해한 뒤에 약간 받지 못한 돈이 있기에 명문을 작성하지 않다가 임간이 죽은 뒤에 전답을 다른 곳에 중복으로 방해하였는데, 중복으로 방해한 실상은 이미 너무도 근거가 없을 뿐만이 아니고, 또 외숙모 김씨와 지금 이 논을 가지고 분쟁하여 소송의 단서를 야기한 것은 해괴하다. 이에 대해 관찰사가 내려 보낸 ‘각별히 엄중하게 형추할 것’이라는 제음에 따라 당일 김만두에게 한 차례 형추하고 신장(訊杖) 30대를 쳤다. 다시 추문하였더니, ‘아닙니다. 저는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시골에 사는 어리석은 사람으로 사리를 알지 못하고 위의 논을 외삼촌에게 이미 방해하였는데, 삼촌이 죽은 뒤에 약간의 논값을 받지 못하였기에 끝내 명문을 작성해 주지 않았으며 전답을 다른 곳에 중복으로 방해하고 외숙모 김씨와 분쟁하는 죄를 짓는데 이르렀습니다. 이제야 지만(遲晩)³⁸하니 분간하여 처치하실 일입니다.’ 하였다.

동일 임률(60세), 교생(校生) 임화영(29세)을 형추하였다. 임률은 인간의 동생제로 외삼촌 조카 김만두가 임간에게 논 3마지기를 방해한 이유를 분명하게 알고 있으면서 임간이 죽은 뒤에 과부 형수인 임간의 처를 속이고 김만두와 공모하여 위의 전답을 다른 곳에 중복으로 도매할 때 증인으로 참석하여 착명하고 형수로 하여금 눈을 잃게 만들었으니, 정상이 참으로 매우 통탄스럽고 해괴하다. 화영은 인간의 전처소생(前處所生) 이들로 외삼촌 김만두가 부친 살아 있을 때 눈을 방해한 사유를 명백하고 분명하게 알고 있으면서 부친 사후에 지금까지 김만두와 공모하여 계모를 배신하고 위 눈을 사주하여 다른 곳에 중복으로 방해하게 한 뒤에 명문을 작성할 때 증인으로 참석하여 착명함으로써 인륜과 기강을 손상시켰으니 매우 해괴하다. 이에 대해 관찰사가 내려 보낸 ‘모두 엄중하게 형추할 것’이라는 제음에 따라 당일 임률과 화영 등에게 한 차례 형추하고 신장 30대를 쳤다. 다시 추문하였더니, ‘아닙니다. 위의 김만두가 자신의 부형 임간에게 위의 논 3마지기를 값을 정해 방해한 뒤에 약간의 돈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명문을 작성하지 않은 이유를 들어서 상세하게 알고 있었지만 어리석은 소치로 전답을

38 지만(遲晩) 죄인이 벌을 받을 때에 자복(自服)하면서, 「너무 오래 속여서 미안하다」는 뜻으로 쓰여, 자기의 자복함을 이르는 말.

만두가 중복해서 방해할 때에 명문에 함께 착명한 죄를 아울러 자복하니 분간하여 처치하실 일입니다.’ 하였다. 이러한 각각의 공초가 있었기에 위의 김만두, 임률, 임화영 등을 관찰사가 내려 보낸 제음에 따라 각각 엄중하게 한 차례 형추하였다.

위의 김만두 등은 모두 임간의 아들과 동생제, 조카로 위의 만두가 논값을 이미 반이나 받고 비록 몇 섬의 돈을 아직 받지 못했지만 삼촌숙에게 이미 방해했던 논을 법으로 볼 때 중복해서 방해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임간 사후에 과부 형수를 속이고 이처럼 도매한 정상은 참으로 매우 흉측하며, 또 이어 외숙모와 소송을 제기하여 분쟁하였으니 한 차례 형신하는 것으로는 그 죄악을 징계할 수 없는 만큼 다시 엄중하게 형추하라고 하였다. 임률과 화영 등도 이미 부형이 논을 매입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만두와 동모하여 계모와 형수를 배반하고 중복으로 도매하게 만들었으니 그 또한 통탄스럽고 해괴하여 분간하지 않아서는 안 될 듯하므로 그들도 더 형추하여 후일을 경계할 것을 첩보하였다. 이에 대하여 관찰사가 서목에, ‘보고한 것이 진실로 그러하다면 모두 더 형추할 것이지 어찌 첩보하는가’라는 내용으로 처분하여 돌려보냈으므로 병인년 2월 26일 김만두, 임률, 임화영을 더 형추하였다.

김만두는 외삼촌 임간이 살아 있을 때 논 3마지기를 분명하게 방해한 뒤에 약간의 돈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명문을 작성해 주지 않았으며 임간 사후에 전답을 또 다른 곳에 방해하여 외숙모 김씨에게 소송을 제기하여 분쟁한 정상은 매우 불측한 일이다. 임률과 화영 등은 바로 임간의 동생과 아들로 만두가 논을 방해한 이유를 들어서 상세하게 알고 있으면서도 임간 사후에 위의 논을 만두와 공모하여 계모와 형수를 배반하고 중복으로 방해한 정상은 참으로 매우 통탄스럽고 해괴하다. 이에 대해 관찰사가 내려 보낸 ‘모두 더 형추할 것’이라는 제음에 따라 당일 이미 한 차례 형추를 받은 김만두와 임률, 임화영 등에게 한 차례 더 형추하고 신장 30대를 쳤다. 다시 추문하였더니, ‘아닙니다. 저희들 중에 김만두가 외삼촌에게 이미 방해한 논을 중복으로 방해한 일은 이전의 조사와 다름이 없고, 임률과 화영은 저희 부형에게 만두가 이미 방해한 논을 만두가 다른 곳에 방해하는 명문에 증인으로 참석하여 착명한 죄를 이제야 자복하니 분간하여 처치하실 일입니다.’ 하였다. 이러한 공초가 있었기에 위의 김만두, 임률, 임화영 등을 관찰사가 내려 보낸 제음에 따라 더 형추하였다. 만두 등은 함께 나쁜 짓을 하며 외삼촌에게 이미 방해한 논을 중복으로 도매하고 또 외숙모와 소송을 제기한 죄에 대해 이미 두 차례 형추를 하였으니 거의 악행을 징계할 수 있을 것인데 어떻게 처치할지 참작하여 시행해 달라고 첩보하였다. 이에 대해 관찰사가 서목에, ‘이미 두 차례 형추를 시행하였으니 지금 우선 분간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처분하여 돌려보냈으므로, 위의 논은 매입한 임간의 처 김씨에게 수록하여 결급하고 후일 상고하기 위해 이에 입안함.

현감[서업]

현산縣山 백야지白也只 당이원堂二員 진자珍字 논 3마지기 부수負數 20집

康熙二十五年丙寅三月 日 海南縣立案

右立案爲決給事 本縣居 學生林揀妻金氏名呈 使議送內 憑狀覈覆爲乎矣 事係相訟是去等 依事日施行向事 本官是如題送是齊 所志內 去幸酉年十二月分 家翁同生妹夫金南渭子金萬斗處 其矣衿得爲良是在本縣縣山南伏在珍字畚三斗落只庫乙 家翁處放賣 捧價資生爲良結 多般懇請爲去乙 同畚價正租九石段 卽爲備給是遣 一石段 從後備給次以 女矣身畚食爲如乎 不意今者 同萬斗亦 右畚庫乙 本縣居僧人尙能處 隱然盜賣乙仍于 同僧尙能 亦或稱買得 或稱相換是如 萬端橫言爲旂 使如矣身 不得下手於其間是去乎 同僧人及萬斗 弄奸之罪乙 嚴囚本縣 依法重治後 同畚庫推尋事 行下爲只爲 議送及所志是置有亦 右項僧人尙能金萬斗等 一時招來 推闕爲如乎 同金萬斗招內段 數年禾利叱分 其矣外三寸叔林揀處 放賣是遣 本畚段 不爲放賣 而元無買賣成文之事乙仍于 其矣身田畚庫乙 同僧尙能處 放賣成文時 其矣外三寸叔林揀同生弟林律 及同林揀前妻子林花英等 明知其由 並爲訂叅是如爲去乙 上項辭緣 元告女人金氏處推問 則當耶同畚價租九石以論定後 九石段 卽爲備給 而未給租一石 准給後 明文成給事 叔姪間 如金石牢約是如乎 家翁身死後 畚價零星是如 大牛一隻 添價爲良沙 乃可成文云云 是如可 到他處重復放賣之狀 同萬斗所爲 誠極不測是言乎旂 尤爲可據事段 女矣家夫生時 田畚庫放賣時 家夫同生弟林律等 明白詳知是白置 其間實狀乙 同林律處 當問施行教誨招辭據 同林律捉來 一處推問 則全以不知以納招 似有隱諱之意是去乙 畚施笞杖嚴囚 則林律招內 其矣同生兄林揀生時 去辛酉年分 其妹夫金南渭處 田畚庫乙 價本段 以正租十三石 論價後 七石段 卽其時備給爲白遣 六石段 終始不給乙仍于 明文段置 至于累年 不爲成給是白如乎 今年良中沙 同僧尙能處乎爲 隱然盜賣是如 納招是乎所 以各人等 所供觀之 則上項金萬斗段 乃以林揀之外三寸姪 而其叔林揀生時 田畚庫乙 旣以定價買賣是去如中 雖未捧數石之價 而不爲成文是乎乃 惟當准捧價本後 卽爲成文許給是去乙 不此之爲 而隱然盜賣他處之狀 極爲無據毋不喻 三寸叔姪間 起訟爭詰 事係綱常 則以其拘於詞訟停止之一端 而不可無徵治乙仍于 同金萬斗着枷嚴囚後 具由諜報爲去乎 各別嚴刑 以徵其非理弄奸之罪教矣 林律段 林揀之同生弟是遣 花英段 林揀之前妻子 而同萬斗亦 僧人尙能處畚庫 放賣成文時 俱訂叅着名爲有臥乎所 同林律花英等

以林揀之子弟 其父兄生時 萬斗處 田畝庫 既如買得之事 而林揀死後 到今與萬斗同情 欺罔其兄嫂繼母 而使之重復放賣之狀 俱極痛駭是去乎 上項林律花英等 並爲嚴刑 以徵其罪事乙 道以行下爲只爲 諜報 使書目內 林律花英等 情狀可駭 依所報各別嚴刑 諜報向事 回送是乎等乙 用良 刑推次 丙寅正月二十五日 幼學金萬斗 年三十五 白等 同亦去辛酉 年分 汝矣外三寸叔林揀處 畝三十斗落只庫乙 定價放賣後 以其若干價 未捧之故 不爲成文是如可 及其林揀身死後 田畝庫重復放賣於他處之 狀 已極無據劣不喻 又與三寸叔妻金氏 今此畝庫相爭事 若以起訟端 可駭 緣 依使回送 各別嚴刑施行教味白齊 當日 金萬斗 刑推一次 訊杖 三十度 更推 卿等 矣身避齷齪愚劣之人以 不知事理 而上項畝庫乙 矣外三寸叔前 既已放賣之後 及其三寸叔身死後 以其若干價 租米捧之 故終不成文爲旡 田畝庫乙 他處重復放賣 而以至於三寸叔妻金氏果 相 訟之罪 今於死遲晚爲白去等 分揀處置施行教味白齊 同日 林律 年六十 校生林花英 二十九 白等 林律段 以林揀之同生弟 而外三寸姪金萬斗亦 同林揀處 畝三斗落只庫乙 明知其放賣之由 而及其林揀身死後 欺罔 其寡嫂林揀之妻 而與萬斗同謀 同田畝庫 重復盜賣他處時 叅訂着名 使 兄嫂元奉等畝庫 情狀誠極痛駭是旡 花英段 乃以林揀之前妻子 其外四 寸金萬斗亦 其父生時 畝庫放賣之由乙 明白詳知 而其父身死後 到今 與萬斗同情 背繼母 同畝庫 使之指曠 重復放賣於他處 成文時 叅訂着 名 以傷倫紀之狀 俱極可駭 辭緣依使回送 並只嚴刑施行教味白齊 當日 林律花英等 各刑推一次 訊杖三十度 更推卿等 上項金萬斗亦 矣父兄林 揀前 同畝三斗落只庫乙 定價放賣後 以其若干價未捧之故 不爲成文之 由 聞之詳知 而以愚劣之致 田畝庫乙 萬斗亦 他處重復放賣時 明文中 同是着名之罪 並只遲晚爲白去乎 分揀處置施行教味 爲等如 各人等招 辭是置有亦 上項金萬斗林律花英等 依使回送 各嚴刑一次爲有去乎 同 萬斗等 俱是林揀之子弟姪是去如中 右項萬斗亦 同畝價 既捧半餘 而雖 有數石價未捧是乎乃 其三寸叔前 既賣畝庫乙 法不當重復放賣是去乙 林揀死後 欺其寡嫂 而如是盜賣之狀 誠極無據是遣 又從以與三寸叔妻 報訟爭詰是乎所 不可一次刑推 而徵其罪惡是去乎 更良嚴刑行下教矣 林律花英等段置 既知其父兄畝庫買得之事 而只與萬斗同謀 背繼母 兄嫂 而以致重復盜賣 亦甚痛駭 則似不當分揀是去乎 亦爲加刑 以警 日後事乙 道以行下爲只爲 諜報使書目內 所報誠然 並只加刑 諜報何

事回送是乎等乙用良 加刑次 丙寅二月十六日 金萬斗林律林花英等 白
 等 汝矣等金萬斗段 汝矣外三寸叔林棟生時 畚三斗落只庫乙 明日
 放賣後 以其若干價未捧之故 不爲成給明文爲旣 林棟死後 田畚庫 又
 賣他處 以至於三寸叔妻金氏起訟爭詰之狀 事極不測是旣 林律花英等
 段 乃以林棟之子弟 同萬斗亦 畚庫放賣之由乙 問詳知 而林棟死後 同
 畚庫與萬斗 同情背繼母兄嫂 而重復放賣之狀 誠極痛駭辭緣 依使回送
 並只加刑施行白齊 當日金萬斗林律花英等 已受刑一次 當日加刑一次
 訊杖三十度 更推 卿等 矣老等中 金萬斗段 外三寸叔前 已放賣畚庫 重
 復放賣事段 與前招辭無加減是白遣 林律花英等段 矣父兄前萬斗 已賣
 畚庫乙 同萬斗亦 他處放賣明文 訂叅着名之罪 今於死遲晚爲白去乎 分
 棟處置施行教味 招辭是置有亦 右項金萬斗林律花英等 依使回送加刑
 爲有去乎 同萬斗等 同惡相濟 其三寸叔處 已賣畚庫 重復盜賣爲旣 又
 與三寸叔妻 起訟之罪 已施二次之刑 則庶可徵惡是去乎 何以處之爲乎
 乙喻 道以叅商行下爲只爲 謀報使書目內 既施二次之刑 今姑分棟向事
 回送是乎等以 上項畚庫段 買得是在林棟妻金氏 收錄決給爲遣 以
 憑後考次 合行立案者

縣監(押)

縣山白也只 堂二員珍字畚 叅斗落只 負數拾貳卜

6-1-28) 1716년 김 첨사댁金僉使宅 사내중 화골禾骨 결송입안

[1716년 (숙종 42) 해남현에서 김 첨사댁金僉使宅 사내중 화골에게 말구원秣丘員에 있는 강자岡字 돈 시종時種 3마지기에 대해 결급해 준 결송입안.]

강희 55년(1716, 숙종 42) 12월 일 해남현 입안

이 입안은 결급에 관한 일이다. 영암靈巖에 사는 김 첨사댁金僉使宅 사내중 화골禾骨의 이름으로 올린 소지에, '절해節該³⁹ 저의 상전은 윤씨 문중의 외손으로 외가에서 전해 받은 전답과 노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동 전답은 죽은 사내중 득련得連의 이름으로 양안量案에 올렸기 때문에 저의 큰 상전이 살아 계실 때 이리저리 흘러들어간 것을 추심하였더니 소유하여 갈아먹기도 하고 다른 곳에 이매移買되기도 하였지만 이번 강자岡字 논 5마지기와 등자騰字 논 5마지기는 누락되어 추심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양안을 살펴보니 강자 논은 김여승金汝乘이 현재 경작 중이고 등자 논은 중 조점照占이 경작

중이며 수자水字 논문은 강원학姜元鶴이 경작 중이었지만 이미 득련에게 매입한 본문기本文記⁴⁰는 없습니다. 중간의 문기가 비록 백 장이라고는 하지만 이것을 가지고 증빙의 단서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내용으로 전임 수령께 소지를 올려 추열하였더니 강정학姜庭鶴은 스스로 이치가 딸리는 것을 알고 한 마디 말없이 다짐[拷音]을 내 주었지만, 김여승과 조점 경작지의 소유자인 김복명金福明은 시송始訟하였는데 마침 관가에 수령이 자주 교체되어 지금까지 판결이 나지 않았습니다. 각각을 붙잡아와 추열하여 찾아주기를 바랍니다.’ 하였다.

소지에 따라 각각을 붙잡아 와서 사정을 직접 아뢰게 하였다. 원고인 사내중 화골의 초사에, ‘절해. 저의 상전은 윤씨 문중의 외손으로 외가에서 전해 받은 전답과 노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동 전답을 죽은 사내중 득련의 이름으로 양안에 올렸기 때문에 저의 큰 상전이 살아 계실 때 이리저리 흘러들어간 것을 추심하였더니 그 가운데 강자 논, 수자 논, 등자 논 13마지기에서 3마지기 2다량은 이미 추심하였는데 아래쪽 한 다량이 5마지기는 추심하지 못했습니다. 그 때문에 연전에 소지를 올렸을 때 당시 경작인들을 붙잡아 추열하였더니, 수자 답의 경작인 강정학은 말없이 내주었지만 강자 답의 경작인 김여승과 등자 답의 경작인 김복명은 시송하였습니다. 당시 관가에 연달아 많은 일들이 있어 추심하지 못했으니 조사하여 처결해 주소서.’라고 하였다. 피고 김여승의 초사에, ‘절해. 저의 장모 애상愛上의 이름으로 된 강자 답<부수負數 11집 7뭇>을 강철봉姜哲奉에게 매입했는데 철봉은 사노私奴 몽동夢同에게서 그 상전인 윤 니산택尹尼山宅의 배자[牌子]에 따라 매입하였다고 하니, 상고하여 처결해 주소서.’라고 하였다.

김복명이 소유한 등자 논은 이미 방매하였기 때문에 김복명에게 처결하여 결급하되, 이번 화골이 다투는 강자 논은 바로 화골의 상전이 외가에서 상속 받은 사내중 득련의 이름으로 양안에 올린 논이다. 화골은 달리 문권은 없지만 양안에 이름이 있고 피고 김여승은 순차적으로 매입한 문권이 있으니 일반적인 예로 말한다면 이미 문권도 없는데 다만 양안에 올린 이름만으로 추심해서는 안 될 듯하다. 그러나 득련의 이름으로 양안에 올린 등자 논 50여 짐을 지난 경오년(1690, 숙종 16)에 소송하여 추심한 뒤에 방매하였고, 수자 논 6마지기도 연전에 경작자에게 추심하니 경작자인 강정학이 말없이 내 준 일에 대해 송정에서 공초를 들었다. 당초 매입한 득련에게 원래 매입 문기가 없으니, 상전이 추심하는 것은 이치상 당연하므로 김여승이 소유한 강자 논도 짐수를 뒤에 기록하여 화골에게 결급하고, 낱장의 문서를 관에 비치하여 후일 참고에 증빙으로 삼고자 이에 입안함.

39 절해(節該) 문건이나 어떤 사람의 말을 그 요지만 간추려 기재할 경우에 쓰는 용어이다. 『이문집람(吏文集覽)』에 의하면, 성지(聖旨)와 공문서에는 반드시 첫마디에 ‘절해(節該)’라는 두 글자를 덧붙이는데, 이는 곧 ‘그 구절을 간략하게 요약한 것.’이라고 하였다.

40 본문기(本文記) 토지의 권리전승의 유래를 증명하는 문서로 구문기(舊文記)라고도 한다. 본문기는 그 권리의 유래가 진정하며, 그 권리를 처분하는 자가 진정한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소위 권원증서(權原證書)라고 할 수 있다.

현감[서업]

뒤

말구원秣丘員에 있는 강자 논: 시종時種 3마지기, 부수負數 11집 7뭇. 끝.

康熙五十五年十二月 日海南縣立案

右立案爲決給事 靈巖居金僉使宅 奴禾骨名呈所志內 節該 奴矣上典 以尹門外孫 傳得於外家田民者 其數頗多 而同田畝 以故奴得連名量案 懸錄爲有等以 矣大上典在世時 流傳推尋 或執持畊食 或轉於移買是白 遣 今此岡字畝五斗落只騰字畝五斗落只段 遺漏不推是如可 量案相考 則岡字畝 則金汝乘時執是白遣 騰字畝 則僧人照占時執 水字畝 則姜元鶴 時執是乎乃 既無得連處 買得本文記 則中間文記 雖是百張是如 以此 爲憑據之端乎 以此辭緣 呈狀於前等推閱 則姜庭鶴段 自知理屈 無一 言出給捧俵音是白遣 金汝乘及照占處 資產者金福明始訟是如可 適置 官家使客疊到 到今未決是白去乎 推各人等捉來 推閱推給事 行下爲只 爲 所志是乎等乙用良 各人等捉來 使之原情現納 則元告奴禾骨招內節 該 奴矣上典 以尹門外孫 傳得於外家田民者 其數頗多 而同田畝乙 以 故奴得連名量案付爲有等以 矣大上典在世時 流傳推尋 而其中岡字畝水 字畝及騰字畝十三斗落只內 九斗落只二作段 曾已推尋是遣 下邊一作 五斗落只等段 不得推尋 故年前呈狀 時執人等推捉 則水字畝 時執姜庭 鶴段 無辭出給 而岡畝時執金汝乘 及騰畝時執金福明段 始訟是如乎 其 時連值官家多事 不得推下是白去乎 查問處決爲只爲 招辭是遣 隻金汝 乘招內節該 矣妻母愛上名字岡字畝 負數十一卜七東庫 買得於姜哲奉 而哲奉段 私奴夢同處 其上典尹尼山宅牌子導良 買得爲白有去乎 相考 處決教味 招辭是置有亦 金福明所執騰字畝段 已爲放賣乙仍于 金福明 處決給是置乎 今此禾骨所爭岡字畝 乃禾骨上典之外家衿得奴得連量 付畝也 禾骨他無文卷 而只有量名是遣 隻金汝乘段 有次次買得文卷是 乎所 以常例言之 則既無文卷 而只以量名 似不可推尋是乎乃 以其得 連之量付騰字畝五十餘卜庫 往在庚午 訟卜推尋放賣 而水字畝六斗落 只段置 年前推尋於時執 則時執是在姜庭鶴 無言出給事 納招於訟庭 是乎所 當初買得者得連處 元無買得文記 則其上典之推尋 理所當然是 乎等以 金汝乘所執岡字畝段置 庫負卜數後錄 決給於禾骨處是遣 葉作 官上 以憑後考次 合行立案者

縣監(押)

後 懸秣丘員伏在岡字畚 時種叅斗落只 負數十一卜七束

6-1-29) 한성부漢城府 제음題音

[향이香伊와 박광학朴光鶴 사이에 경주인京主人 가사家畬 소유권 문제로 발생한 소송에 대한 제음題音]

원고元告 향이香伊와 척隻⁴¹ 박광학朴光鶴 두 사람이 소지한 문권은 모두 입안立案이다. 그런데 박광학의 입안은 1628년(인조 6, 승정 원년)에 발급되었고, 향이의 입안은 1596년(선조 29, 만력 24년)에 청원한 것이다. 문서가 발급된 선후와 시기적으로 오래되고 가까운 것으로 따져보면 향이의 입안이 앞서고 오래되었으며, 박광학의 입안이 뒤에 발급되고 근래의 것이니 이것으로 그 빈주賓主를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 박광학이 소송을 시작한 날 곧바로 공초供招⁴²하기를, “경주인京主人⁴³의 집이 비어있기에 내가 관에 청원하여 입지立帖를 받아 우선 들어가 살다가, 동 향이가 동 경저京邸를 매득하여 30여 년을 들어가 살았다고 하는 바 내가 본래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집이 아닌 탓에 동 향이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운운” 이라고 하였다. 그러니 그가 도리에 어긋나서 스스로 물려난 것이 분명하여 더 이상의심할 것이 없으므로 동 경주인의 집을 원고인 향이가 들어가 사는 것을 인정한다.

향이의 입안은 이를 첨부해서 주고,
광학의 입안은 광학에게 그대로 돌려준다.

元告香伊 隻朴光鶴 兩邊所
持文券 皆是立案 而朴光鶴立
案段 崇禎元年所出 香伊立
案段 萬曆二十四年所呈 以
先後久近論之 則香伊立案先

41 척(隻) 법률 용어. 피고(被告), 피고인(被告人)이라고 하며, 재판에서 소송의 당사자를 표현한다.

42 공초(供招) 죄인이 범죄 사실을 진술한 말을 말한다.

43 경주인(京主人) 중앙과 지방 관청의 연락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지방 수령이 서울에 파견한 향리로 일명 '경저리(京邸吏)·저인(邸人)·경저인'이라고도 하며, 사주인(私主人)에 대칭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이들이 일을 보는 처소를 경저(京邸)·경제소(京在所)·경소(京所)라 했다.

而久 光鶴立案後而近 以此可
 知其賓主_{劣叱}不_諭 同光鶴
 亦始訟之日 卽爲供招曰 京主人家空
 虛爲有去_乙 矣身呈官受立旨 姑爲
 入接爲有_{如乎} 同香伊亦同京邸_乙
 買得三十餘年 入接居生是_{如爲}
 臥乎所 矣身本非祖上傳得之家
 乙仍于 同香伊處還給云云 其
 爲理屈 而自退明矣 更無可疑
 乙仍于 同京主人家_乙 元告香
 伊亦_中 許其入接
 香伊立案 則粘付給之
 光鶴立案 則還給光鶴

6-1-30) 1680년 윤 니산댁 노 홍렬 명문

[1680년(숙종 6) 강천백_{姜千白}이 윤 니산댁 노 홍렬_{洪烈}에게 자신 소유의 전답과 와가_{瓦家}를 윤 니산댁에서 경작하고 있자 이를 윤 니산댁에 판매하면서 작성해 준 명문.]

강희 19년 경신 8월 22일 윤 니산댁 노 홍렬_{洪烈}에게 주는 명문

이 문서를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아버지에게서 얻은 해남현_{海南縣} 일도면_{一道面} 죽정원_{竹井員}에 있는 자호가 옥자_{玉字}인 논 9마지기, 결부수가 15복_[卜] 4속_束인 곳과 백련동_{白蓮洞}에 있는 와가_{瓦家} 10칸_間을 수소문하여 찾아내었는데, 병자년부터 위 사람의 상전_{上田}에서 갈아먹고 있었다. 사부_{士夫家}에서 여러 해 거두어 들여 쓴 것을 하루아침에 찾아내어 가져오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논과 와가를 모두 보목_{步木} 60필을 받고 위 사람에게 영구히 방매_{放賣}하되 본문_{本文}기_記는 우리 형제가 몫을 나눈 도문기_{都文記}⁴⁴이기 때문에 내어주지 못하고, 도문기에 증인과 필집이 수촌을 찍고 말소하였으니, 이후 나와 내 자손 족류 가운데 다시 피를 내어 쓸데없는 말을 낸다면, 이 문서를 가지고 관에 고하여 바로잡을 일이다.

답가사_{主家舍主} 수군_{水軍} 강천백_{姜千白} [좌촌]

증인_{證人} 사노_{私奴} 룡이_{龍伊} [좌촌]

증보_{證保} 사노_{私奴} 애인_{愛案} [좌촌]

필집筆執 사노私奴 만리萬里 [작명]

康熙貳拾肆年丙寅貳月拾陸日 尹尼山宅 奴子洪烈處 明文
右明文爲臥乎事段 矣身亦 上典主牌字導良 海南奴子白也只里
居婢玉尙一所生奴日元年二十六辛丑生身乙 同洪烈處放賣爲乎矣 價分則
大卜馬一匹及木三疋捧上爲遣 永永放賣爲去乎 本文記段 他奴婢并付
乙仍于 始爲不許爲白置 後此良中 某宅中差奴 如有雜談 則此文
記告官下正事

楊川居 尹生員宅 差奴 亥屎[左寸]
訂人 奴 德龍[左寸]
筆執 山人 坦岑[着名]

6-1-31) 1666년 한계신 명문

[1666년(숙종7) 한계신韓戒申이 윤 정자덕 노 애순에게 말을 구입하면서 작성해 준 명문.]

강희 5년 병오 11월 22일 윤 정자덕 노 애순愛順에게 주는 명문

이 문서를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저는 역속驛屬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위 덕의 누런 빛에 털빛
이 붉은 5년산 대마禾大馬⁴⁵를 값은 본마本馬의 값으로 하니 □...□ 목면[木] 5동同 40필匹로 값을 논
하여 (그에 상응하는 값을) 주고 산다. 이후에 환퇴還退⁴⁶하는 폐단이 있다면 대마大馬 값을 삭일朔日
에 계산하여 줄 것이다. 이후에 잡담이 있다면 이 문서를 가지고 관에 고하여 시비를 가릴 일이다.

매마주買馬主⁴⁷ 한계신韓戒申 [좌촌]

증인[訂人] 이금李金 [좌촌]

필집筆執 한의립韓義立 [작명]

[배면]

44 도문기(都文記) 도문서(都文書)라고도 한다. 도문기는 분재를 통해 생성된 문서 혹은 대지주 등이 자신의 재산을 한꺼번에 하나의 문서에 병합·열기하여 작성해둔 문서를 지칭하는 용어이다.

45 대마(禾大馬) 禾는 말의 나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화대마는 나이가 많은 말을 가리킨다.

46 환퇴(還退) 구입한 매매 목적물을 되물리는 행위.

47 매마주(買馬主) 명문은 거래 목적물을 파는 사람이 작성해 주는 것인데, 이 문서를 거래 목적물, 즉 말을 파는 사람이 아닌 사는 사람이 작성한 것이 특이하다.

죽도竹島.

화도禾島 매득한 논문서 한 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는 논문서 한 건.

康熙伍年丙午十一月二十二日 尹正字宅 奴愛順處 明文

右明文爲馱乎事段 矣身驛屬使用次以 同宅

仇黃赤多禾五大馬乙 價本段 本馬價本 則□□□木五

同四十足以論價 入納買得爲白遣 後此還退之弊是

去乙等 大馬價朔日日之計入納事 此後雜談是去乙

等 此文記告官卞正向事

買馬主韓戒申[左寸]

訂人李金[左寸]

筆執韓義立[着名]

竹島

禾島買畚文一

不知某處畚文一

6-1-32) 1766년 윤 생원댁 노 돌쇠 명문

[1766년(영조 42) 박인걸朴仁傑이 윤생원댁 노 돌쇠⁸에게 관전⁹舊田을 방해하면서 작성해 준 명문.]

건륭 31년(1766) 병술 8월 26일 윤 생원댁 노 돌쇠⁸에게 주는 명문

이 문서를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긴요하게 쓸 데가 있어 매득¹⁰買得한 진도군¹¹珍島郡의 불매도¹² [惠邁島]⁴⁸에 속해 있는 새로 만든 섬의 관전⁹舊田의 강변에 있는 전부를 봉가¹³전¹⁴奉價錢 51냥을 수대로 받고, 위 사람에게 본문기, 소지, 불망기를 모두 넘겨주어 영구히 방해하고자 한다. 이후에 자손이나 동생 가운데 잡담¹⁵雜談이 있다면, 이 문서를 가지고 관에 고하여 시비를 가릴 일이다.

관전주⁹舊田主 박인걸¹⁶朴仁傑 [작명]

48 불매도[惠邁島] 지금의 관매도.

증인證人 한량閑良 김한수金漢水 [작명]

필筆 한량 박수재朴秀才 [작명]

乾隆三十一年丙戌八月二十六日 尹生員宅 奴玆金處 明文

右明文事段 要用所致 買得是在

珍島郡地 更邁島所屬 新爲造

島 藿田 江邊沒數 捧價錢

伍拾壹兩 依數捧上爲遣 右

人處 本文記所志 不忘記并以

永永放賣爲去乎 日後子孫

同生中 如有雜談是去等

持此文記 告官下正事

藿田主 朴仁傑[着名]

證人 閑良 金漢水[着名]

筆 閑良 朴秀才[着名]

6-1-33) 1670년 윤 생원덕 노 금복 명문

[1670년(숙종 5) 가읍손加邑孫이 윤 생원덕 노 금복今卜에게 선척을 만들 때 필요한 물품을 빌리면 서 작성해 준 명문.]

경술년(1670) 11월 15일 윤 생원덕 노 금복今卜에게 주는 명문

이 문서를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긴요하게 쓸 데가 있어서 새로 배를 만들기 위하여 상목常木 12동同 8필匹, 백미白米 10두斗, 정조正租 3석石을 값으로 받고, 오는 12월 그믐날 내에 갚지 못하거든 그날 별도의 이자를 지급한다. (만일 문제가 생기거든) 이 문서를 가지고 관에 고하여 시비를 가릴 일이다.

대자貸者 가읍손加邑孫 [左寸]

증인訂人 득현得賢 [左寸]

필집筆執 이영선李英善 [着名]

庚戌十一月十五日 尹生員宅 奴今卜處 明文

右明文爲臥乎事段 要用致以 新造船
隻價 常木十二同八疋白米十斗正
租三石等物乙 捧上爲白遣 來十二月
晦日內以不給 則此日別利爲白乎旅
此文記告官下正事

貸者 加邑孫[左寸]

訂人 得賢[左寸]

筆執 李英善[着名]

6-1-34) 정묘호택 명문

[정묘년 이춘성李春成이 원호택에 돈을 빌리면서 배 한 척을 전당잡힌다는 내용으로 작성해 준 명문.]

정묘 12월 초9일 원호택院湖宅에 주는 명문

이 문서를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위 택에 전문 47냥兩 6전錢 빌리고, 대신 배 한 척을 전당 잡힌다. 이달 20일을 기한으로 정하여 이 돈 47냥 6전을 모두 납부할 뜻으로 이 문기를 작성해 주되, 만약 (이 문서의 내용처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배를) 방매하여 납부하고, 만약 다른 말을 한다면 이 문서를 가지고 시비를 가린다.

선주船主 이춘성李春成 [착명]

丁卯十二月初九日 院湖宅前 明文
右明文事段 右宅錢四十七
兩六錢 代船一隻典當白
去乎 今月二十日限定
以 右錢四十七兩六錢 沒
數納上是去乎 此文
記出給是乎 若不然
則放買次納上 若
有他說 以此文記辨
呈事

船主 李春成[着名]

6-1-35) 1645년 상전이 노 고매에게 내린 배지⁴⁹

[무신년 1월 20일에 상전上典이 종 춘매春每에게 전답을 팔아올 것을 지시하며 내린 배지牌牘.]

종 춘매春每에게 준다.

다름이 아니다. 간히 사용할 곳이 있어 백야지白也只 채자菜字 논 5두락지와 채자 밭 태太 5두락지 등을 속히 팔되 준가準價대로 상납하여라.

을유년(1645, 인조 23) 1월 24일

상전上典 [착압]

奴春每付

無他 切有用處爲去乎 白也

只菜畝五斗落只同字田

太五斗落只庫等乙 斯速

放賣爲乎矣 準價上納事

乙正月二十四日

上典[署押]

6-1-36) 1650년 상전 최씨가 노 계세에게 내린 배지⁵⁰

[1650년(효종1) 1월 25일에 상전上典 최씨崔氏가 종 계세戒世에게 전답의 방매를 위임하면서 내린 배지牌牘.]

종 계세戒世에게

다름이 아니다. 외가로부터 받은 서자畧字 ㉠㉠부, 종자콩 2두 5승락지를 간히 쓸 곳이 있으니 급히 팔아서 상납하여라.

경인년(1650, 효종 1) 1월 25일

49 [1645년 1월 24일의 승 학선 토지매매명문은 이 배지에 의거하여 작성한 것이다.

50 [1650년 1월 25일 윤 생원택 호노 풍남 토지매매명문은 이 배지에 의거하여 작성한 것이다.

상전上典 최崔 [작업]

奴戒世付

無他 外邊衿得暑字□□

負種太貳斗伍升□□[落只]

庫乙 有切用處 急速放

賣納宅向事

庚寅正月二十五日

上典 崔[署押]

6-1-37) 1659년 상전 박씨가 비 덕화에게 내린 배지⁵¹

[1659년(효종 10) 12월 1일에 상전上典 박씨朴氏가 여중 덕화德花에게 전답의 방매를 허락하며 내린 배지牌牘.]

여중 덕화德花에게

다름이 아니다. 네가 늙어 병이 깊을 뿐 아니라 흥년이 들어 끼니 잇기가 어렵구나. 네가 바라는 바가 걱정되니, 너의 논을 팔도록 하여라.

기해년(1659, 효종 10) 12월 1일

상전上典 박朴[작업]

婢德花

無他 汝亦年老病深勞不喻 年

凶□腹難繼是如 汝矣所願 可

慮是置 汝矣畝庫放食向事

己亥十二月初一日

上典 朴[着名]

51 [1659년 윤 별좌덕 노 애순 토지매매명문]은 이 배지에 의거하여 작성한 것이다. 이 문서에서 사비 덕화가 자신의 땅을 윤 별좌덕 노 애순에게 팔고 있다.

6-1-38) 1659년 상전 박씨가 여중 막금에게 내린 배지

[1659년(효종 10) 11월 20일에 상전上典 박씨朴氏가 여중 막금莫今에게 전답을 팔아 네 가족의 기아를 해결하도록 지시하며 내린 배지牌牒.]

여중 막금莫今에게 준다.

다름이 아니다. 이번 흉년을 당하여 내가 많은 자녀들을 거느리고 굶어 죽을 지경인 것이 진실로 보기에 참혹한데 구제할 방법이 하나도 없구나. 갑술년(1634) 양전量田 할 때에 박정자朴亭子⁵² 아래의 묵은 논 3두락지가 계묘년(1603) 양안量案에는 주인이 없기에 상전上典 덕화德花의 명의로 등록해 두었다. 그 후 너희들에게 이미 허급許給해 주어 갈아먹게 하였으니 너의 뜻대로 팔아 굶어 죽을 근심에서 빨리 벗어나도록 하여라.

기해년(1659, 효종 10) 11월 20일

상전上典 박씨 [착업]

婢莫今付

無他 當此凶年 汝亦多率子女等 飢

死丁寧 所見慘矣 萬無救治是置

甲戌量田時 朴亭子下陳畚三斗落

只庫 癸卯量案無主是去乙 上典

德花名字置付後 汝矣等處 已爲

許給畊食是在 任意放賣救急

於飢死之患向事

己亥十一月二十日

上典 朴 [著名]

6-1-39) 1659년 상전이 노 시민에게 내린 배지

[1659년(효종 10) 12월 24일에 상전上典이 노奴 시민時民에게 전답매매를 지시하며 내린 배지牌牒.]
노 시민時民에게

52 朴亭子是 해남군 계곡면 방춘리 메물배미 아래에 있는 순천 박씨의 정자이다.

다름이 아니다. 너는 상전댁의 고노故奴(죽은 노) 박무금朴武金이 기상記上⁵³한 현산면 당산堂山에 있는 내자奈字⁵⁴ 밭 13부의 땅을 영구히 팔아 일일이 준가準價⁵⁵를 받아오되, 속이거나 숨기지 말아서 중죄를 받지 않도록 하라.

상전上典 [작업]

순치順治 16년(1659, 효종 10) 12월 24일.

奴時民付

無他 汝亦上典宅故奴朴武

金記上是在 縣山堂山伏奈

字田拾參卜庫乙 永爲放賣 一一準價捧上爲乎矣

勿爲欺隱 俾免重罪向

事

上典[署押]

順治十六年十二月二十四日

6-1-40) 1686년 윤이구 처 연안이씨가 노 일삼에게 내린 배지

[1686년(숙종 12) 윤4월 28일에 상전 이씨李氏가 종 일삼이에게 전답 매매를 위임하면서 내린 한글 배지牌牘.]

노 일삼이에게

해남현 화산 이도면花山二道面 망해도望海島 마을에 있는 구레늑자勒字 밭 콩을 파종하는 8마지기, 열매실자實字 밭 콩을 파종하는 6마지기, 두이자二字 밭 콩을 파종하는 2마지기, 등배자背字 밭 콩을 파종하는 2마지기, 거칠무지蕪字 밭 콩을 파종하는 1마지기를 팔아 들이도록 해라.

53 기상(記上) 노비가 상전에게 자신의 재산 목록을 적어 올리는 행위. 기상을 하면 상전이 기상에 적힌 내용에 대해 관리·소유권을 가지게 됨.

54 내자(奈字) 자호(字號)가 '내(奈)'자인. 조선시대 토지대장인 양안(量案)에 기록되는 땅 자호의 이름이다. 조선시대는 토지를 측량하면서 천자문의 순서에 따라 자호를 매기고 그 아래에 자호 내 순번을 입력하여 '天字 第1, 天字 第2' 등과 같이 지번을 기록하였다.

55 준가(準價) 시세에 해당하는 가격.

상전 이 [착도서 : 윤이구 처 이씨]⁵⁶

병인년(1686, 숙종 12) 윤4월 28일

히남 화산이도 망히도리
구레늑즈던 종태 여덥말디기 여
므실즈던 종태 연말디기 두
이즈던 종태 두말디기 등비
즈던 종태 두말디기 거출
무즈던 종태 훈말디기
를 프라 드리게 허라
상던니 (尹爾久妻李氏)
병인윤스월년팔일

6-1-41) 1707년 상전 송씨가 노 굿쇠에게 내린 배지⁵⁷

[1707년(숙종 33) 11월 27일에 상전上典 송씨宋氏가 종 굿쇠鐵金에게 전답의 방매를 위임하면서 내린 배지牌牘.]

차노差奴 굿쇠鐵金에게

다름이 아니다. 상전덕 노비가 해남海南 화산면花山面 안정포安正浦에 살고, 종 무쇠武金와 종 하일河日 등이 후손이 없이 죽은 뒤에 그의 전답田畠을 일찍이 순치 17년 경자년(1660)에 법에 의거하여 기상記上하였다. 이번에 상전이 기상문서를 증거삼아 그 전답을 추심推尋하였더니 그 중에 화산 판교원板橋員에 있는 약자若字 논 고종古種 4두락지 2작 13부 1속의 땅과 언자言字 논 고종古種 1두락지 4부 2속 곳과 정자定字 논 고종古種 4두락지 2작 23부 4속 곳을 현縣에 사는 고故 윤니산尹尼山덕이 매매하였다고 하기에 그 수노首奴 충경忠敬을 불러 물어보니 그의 어린 상전 윤진사덕이 서울로 이사를 가서 옛 문서를 찾기가 어렵다고 말하였다. 이는 필시 무쇠와 하일 등의 아우나 조카배들이 사사로이 마음대로 팔아먹은 것이다. 서로 아는 사대부가 사이에 소송을 일으킬 수는 없으므로 여러 사람의 의논에

56 윤이구 처 연안이씨(1631~1705), 윤이구(尹爾久, 1607~1674)는 윤의미(尹義美, 1612~1636)의 아들이다.

57 [1707년 11월 27일 윤 진사덕 노 충경 토지매매명문]은 이 배지에 의거하여 작성한 것이다.

따라 좋은 모양으로 처리하고자 한다. 위 윤진사댁 노 충경에게 정조正租 13석을 받고 위의 세 곳 논을 영구히 팔 것이니 너 역시 이 배지를 근거로 매매문서를 작성하여 주어라.

정해년(1707, 숙종 33) 11월 27일

상전上典 송宋[작업]

差奴能金處

無他 上典宅奴婢 在於海南花山面安正浦居生 而奴武金奴河日等 無後身死之後 其矣田畝乙 曾於順治十七年庚子年分 依法記上是如乎 今此上典之來 憑考記上文書 推尋其田畝 則其中花山板橋員伏在 若字畝古種四斗落只二作十三卜一束庫 及伏在言字畝古種一斗落只四卜二束庫 及伏在定字畝古種四斗落只二作二十三卜四束庫乙 縣居故尹尼山宅亦買得是乎等以 招問其首奴忠敬 則其矣少上 上典尹進士宅亦 移居于京中 故舊遠文書乙 難以搜覓云云是乎所 必是武金河日等弟姪輩 私自賣食是乎矣 相知士夫間 未可起訟仍于 從衆議好業處置 同尹進士宅奴忠敬處 正租全十三石捧上爲遣 上項三庫畝乙 永爲許賣爲去乎 汝亦據此牌成文以給向事

丁亥十一月二十七日

上典 宋[署押]

6-1-42) 1710년 주인 윤씨가 노 필신에게 내린 배지

[1710년(숙종 36) 1월 17일에 주인主人 윤씨尹氏가 종 필신必信에게 전답을 팔아올 것을 지시하며 내린 배지牌牘.]

차노差奴 필신必信에게.

다름이 아니다. 긴요하게 쓸 데가 있어 화산 일도면花山一道面 장명산長命山에 있는 용자容字 논 7두 락지를 네가 수소문하여 팔고 값을 받아서 상납하도록 하라.

주인主人 윤尹 [착업]

경인년(1710, 숙종 36)⁵⁸ 1월 17일

差奴必信
無它 要用次 花山
一道長命山員伏
容字畚漆斗落
庫乙 汝亦聞見
放賣捧價納上
向事
主 尹[著名]
庚寅正月十
七日

6-1-43) 1716년 상전 윤씨가 노 애흥에게 내린 배지

[1716년(숙종 42) 3월에 상전上典 윤씨尹氏가 노奴 애흥愛興에게 전답매매를 지시하며 내린 배지牌
牘.]

노奴 애흥愛興에게
다름이 아니다. 해남海南 백련동白蓮洞의 금자金字 논 4두락의 땅을 네가 아무개에게 팔고 이 배지牌
子를 근거로 (토지매매) 문서를 작성하여 주어라.

상전上典 윤尹 [착업]

병신년(1716, 숙종 42)⁵⁹ 3월 일노 일삼이

奴愛興
無他 海南白蓮洞

58 해남윤씨가 노(奴) 필신(必信)의 등장 시기를 고려하여 산정.

59 이 집안에 남아있는 1716년 3월 14일 승(僧) 원철(元哲) 토지매매명문은 이 배지에 의거하여 작성한 것이다.

金字畚四斗落庫乙
汝亦某處放賣爲遣
此牌子導良 成文以
給向事
上典 尹 [署押]
丙申三月日

6-1-44) 1775년 상전 윤씨가 노 돌덕에게 내린 배자

[1775(영조 51)년 2월에 상전^{上典} 윤씨^{尹氏}가 노^奴 돌덕^{돌덕}에게 전답매매를 지시하며 내린 배지^牌 특.]

노^奴 돌덕^{돌덕}에게
다름이 아니다. 긴요하게 쓸 데가 있어 현지^{縣地} 백련동^{白蓮洞} 자살원^者의^沙 조지^{調字} 논 3두락지,
부수 11부 8속 땅을 네가 수소문하여 팔아서 값을 받아 상전^{上典}에 들인 후에 이 패자^{牌子}를 근거로 (매
매) 문서를 작성하여 주어라.

상전^{上典} 윤^尹 [작업]

을미년(1775, 영조 51)⁶⁰ 2월 일

奴^奴 德^德
無他 要用次 縣地白蓮洞者沙^沙 乙^乙員
調字畚三斗落只 負數十一卜八束
庫乙 汝亦聞見放賣捧價納宅後
此牌字導良 成文以給向事
上典 尹 [着名]
乙未二月日

60 이 집안에 남아있는 1775년 2월 23일 이경 노 엇쇠 토지매매명문은 이 배자에 의거하여 작성한 것이다.

6-1-45) 1773년 상전 윤씨가 노 성재에게 내린 배지

[1773년(영조 49) 4월에 상전上典 윤씨尹氏가 종 성재成才에게 전답의 방매를 위임하면서 내린 배지牌旨.]

종 성재成才에게

다름이 아니다. 긴요하게 쓸 데가 있어 내가 매입한 현지懸地 백련동白蓮洞 자살원者訖員에 있는 여 자呂字 논 3두락지 부수 10복 2속인 곳을 내가 수소문하여 팔고 값을 받아 상전덕에 상납한 후에 이 배지牌子를 근거로 (매매) 문서를 작성하여 주도록 하여라.

상전上典 윤尹[작업]

계사년(1773, 영조 49)⁶¹ 4월 일

奴成才

無他 要用次 買得是在

縣地白蓮洞者訖員伏在

呂字畝三斗落只 負數

十卜二束庫乙 汝亦聞見放

賣 捧價納宅後 此牌子導

良 成文以給向事

上典尹[署押]

癸巳四月 日

6-1-46) 무신년 주인 윤씨가 노 덕의에게 내린 배지

[무신년 1월 20일에 주인主人 윤씨尹氏가 종 덕의德義에게 전답을 팔아올 것을 지시하며 내린 배지牌旨.]

종 덕의德義에게

61 이 집안에 남아있는 1773년 5월 14일 백련동 이정 노 엇쇠 토지매매명문은 이 배지에 의거하여 작성한 것이다.

다름이 아니다. 전걸은錢學乙畧의 41두락지 논을 아무개에게 팔아오도록 하여라.

주인主人 윤尹 [착압]

무신년 1월 20일

奴德義付

無他 錢學乙畧四十一斗

落庫畓乙 某人處

放賣施行向事

主 尹[署押]

戊申正月廿日

6-1-47) 을해년 연동에서 박춘욱에게 내린 배지

[을해년 10월 1일에 연동蓮洞에서 박춘욱朴春旭에게 어장漁場의 경작권을 주며 내린 배지牌旨.]

박춘욱朴春旭에게

다름이 아니다. 고진高津의 어장漁場은 전부터 네가 맡았었다가 중간에 다른 사람에게 경작권을 옮겨 주었으나, 네가 우리 집에 공功이 있으므로 지금부터 다시 너에게 돌려준다. 너는 반드시 착실히 생계를 꾸려서 각 항목의 세稅 등을 그 수대로 착실히 거행하여라.

많이 미치게 하지 않을 것이니.

연동蓮洞 [착압]

을해년 10월 1일

朴春旭處

無他 宅漁場高津

自前汝矣身爲之矣 中

古移給于他人 而汝既

有功於宅 故自今又爲還

給于汝矣處 汝須着實

資生 而各項稅納等物

依數着實舉行事

不多及

蓮洞 [署押]

乙亥十月初一日

2. 조세, 잡역 면제 소송

6-2-1) 1603년 윤 도사댁 노 복철 소지

[1603년(선조 36) 윤 도사댁 노 복철이 녹산면과 현산면의 진지陳地 과세에 대하여 어사의 처분을 첨부하여 해남현에 면세를 요청하며 올린 소지.]

현일면縣一面 백련동白蓮洞에 사는 윤 도사댁尹都事宅⁶² 노奴 복철卜哲

삼가 말씀드리는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의 상전댁은 누대의 종가宗家로서 묵힌 땅에 대한 납세納稅로 인하여 가세가 크게 무너졌다고 작년에 어사또께 연유를 갖추어 억울함을 호소하여 다행히 탈급頒給한다는 제사를 받았습니다. 안전주案前主⁶³께서 부임한 초기에 (어사또의 제사를) 첨부하여 호소하였는데, 또한 어사또의 제사와 같았습니다. 녹산면泉山面의 복철卜哲 명의의 1결結 30복卜 5속束과 현산면縣山面 백포리白浦里⁶⁴의 구다금九多金 명의의 82복 1속에 대해서는 관에서 면제해 준다는 분부가 있어서 처음에는 세록稅錄에 출질出秩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저의 상전댁에서는 덕의德意에 감격하여 말하기를, “백 년 된 부스럼의 뿌리가 이제야 제거되었다. 온 집안의 경사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납세가 거의 끝나갈 때 이 두 곳의 진결陳結이 변함없이 출질되어 성화와 같이 독촉하였습니다. 저의 상전댁은 놀라서 살펴보았지만 연유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감히 하소연합니다. 이는 분명 당해 면의 서원書員 무리가 처분이 이미 내려졌음을 모르는 것이거나 떠벌 생각으로 사사

62 윤 도사 윤선도.

63 안전주(案前主) ‘공부를 보는 책상 앞’이라는 뜻으로 수령을 달리 지칭하는 말. 『송남잡지(松南雜識)』 방언류(方言類)에 “세속에서는 관장(官長)을 안전(案前)이라고 하니, 관안(官案)의 앞을 대한다는 것을 말한다.”라고 하였다. 해당하는 고을의 이름을 따서 ‘어느 고을 안전주’라고 쓴다.

64 백포리(白浦里) 전라남도 해남군 현산면에 있는 리. 백방산 밑의 포구였으므로 백방포, 백포라 불리던 것에서 유래하였다.

로이 장난질치는 것이니, 살피신 후에 속히 영영 탈급한다는 제사를 내려주시기를 천만번 바라옵니다. 명령하실 일입니다.

사또님께서서 처분해 주옵소서.

계묘년(1603, 선조 36) 3월 일.

[제사]

이미 도리都吏⁶⁵에게 분부했음. 27일.

[서입]

縣一面白蓮洞居 尹都事宅 奴 卜 哲

右謹陳情由段 矣宅以屢代宗家 緣於陳地納稅 家力大敗是如乎 昨年御史道前 具由訴冤 辛蒙頃給之題 而

案前主上任之初 帖聯仰訴是乎 則亦如繡道之題是乎所 泉山面卜哲名下一結三十卜五束零及縣山面白浦九多金名下八十二卜一束

自官有頃下分付 而初不出秩於稅錄 故矣宅方感激德意 曰百年瘡根 今始祛矣 闔門慶幸是白加尼 今於納稅幾畢

之時 同二處陳結 依舊出秩 督如星火是乎尼 矣宅愕然驚顧 莫知緣由 茲敢仰訴是白齊 此必該面書員輩 不知

處分之已下是去乃 或以嘗試之計 私有盜弄是乎尼 伏乞參商教是後 快下永永頃給之題 千萬望良爲只爲

行下向教是事

使道主 處分

癸卯三月 日

[題辭] 俄已分付於都吏向事 廿七

[署押]

6-2-2) 1625년 윤 생원택 노 득춘 의승

[1625년(인조 3) 윤 생원택 노 득춘이 선유어사인 순천부사에게 올린 면세 요청 소지. 어사와 본관

65 도리(都吏) 아전의 우두머리.

의 진결 면세를 받아왔는데 새삼 과세를 받아 억울하니 면세를 해달라는 의송이다. 순천부사가 선유 어사로서의 역할을 하였다.]

해남海南 현일면縣一面 연동蓮洞 윤 생원尹生員⁶⁶ 덕宅 노奴 득춘得春

의송議送을 올리는 억울한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의 상전택에서 예전부터 진결陳結에 대해 백지白地로 납세한 것이 있는데, 녹산면泉山面⁶⁷에 있는 복철卜哲의 명의로 된 1결結 33복卜입니다. 집안의 재력이 이로 말미암아 탕진되었기에 감영에 소장을 올린 것이 여러 해입니다. 계묘년癸卯年에 비로소 암행어사로부터 탈급頃給⁶⁸한다는 시원스러운 데김[題音]을 얻고, 이어서 본관本官 성주城主가 답인踏印한 완문完文으로 세를 면제받은 것이 이제 23년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올 봄에 출질出秩⁶⁹하여 다시 ‘영문營門의 재탈災頔⁷⁰이 없어 부득이하게 억지로 징수한다.’라고 하면서 독촉하였습니다. 국결國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데 멋대로 낮추었다 높였다하여 암행어사의 데김과 관의 처결이 있는데도 어려움 없이 억지로 받아내도 되는 것입니까? 20년 동안 완문으로 탈급한 물건에 대해 하루아침에 휘획毀劃하니 또한 원통하지 않겠습니까?

이에 감히 당초 탈급한 완문을 침부하여 어질고 명철하게 살피시는 사또님께 호소하오니, 살피신 후 엄히 데김을 내리시어 다시 침해하는 폐단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천만번 바라옵니다. 명령하실 일입니다.

순천順天 사또님께서 처분해 주옵소서.

을축년(1625, 인조 3) 9월 일.

[제사]

자세히 조사하여 바로잡아서 원통함을 호소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21일. 본관本官에게.

선유사宣諭使 [서업]

海南縣一面蓮洞 尹生員宅 奴 得春

右議送冤枉情由段 矣宅有古來陳結白地納稅者 泉山面卜哲名下一結三十三卜也 家力由此蕩敗 營邑

呈訴 不知幾年 始於癸卯年分 快得繡衣道頃給題音 仍有本官城主踏印完文 蒙頃免稅者 今二十三年

66 윤 생원(尹生員) 윤인미(尹仁美, 1607~1674). 자는 자수(子壽), 아버지는 윤선도(尹善道), 부인은 전주 유씨(全州柳氏). 1630년(인조 8)에 생원시에 합격하였고, 1662년 증광시에 합격하였다.

67 녹산면(泉山面) 군의 중앙에 위치하고 녹산(鹿山) 아래에 있어서 녹산면이라 하였다.

68 탈급(頃給) 세금 등을 면제해 줌.

69 출질(出秩) 세금 목록에 넣음.

70 재탈(災頔) 재해를 입은 사람에게 조세나 부역을 면제해 줌.

也 忽於今春 出秩更督 稱以營門無災頌 不得已枉徵云云 國結何等重物 而任意低昂 不有繡題與

官決 無難勒捧可乎 二十年完頌之物 一朝毀劃 不亦冤乎 茲敢當初頌給完文粘連 仰籲於仁明按廉之

下 伏乞參商教是後 嚴降題音 俾無更侵之弊 千萬望良

行下向教是事

順天使道主 處分

乙丑九月 日

[題辭]

詳查歸正 俾無

呼冤向事

廿一日 本官

宣諭使 [署押]

6-2-3) 1731년 윤현서 등 등장

[1731년(영조 7)에 윤현서 등이 어질금의 이름으로 포함이 된 환곡을 백련동에 족징, 인징으로 징수하려는 것에 대하여 해남현에 올린 등장.]

현일면縣一面 백련동리白蓮洞里에 사는 유학幼學 윤현서尹顯緒 등

삼가 소지所志를 올려 말씀드리는 절박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제 본리本里의 검독檢督⁷¹에게 온 전령傳命을 보았습니다. 전령의 내용에, ‘엇금לט金 명의를 곡식은 어디에서 와서 이렇게 많은 것인가? 부호한 백성들이 일부러 (환곡을) 받지 않아서 엇금에게 많이 분급한 것이다. 가을에 거둘 때가 되어서 많은 석수石數를 빙자하여 사사로이 수를 불러 그 족속族屬과 상전上典에게 두루 징수하는 것이 매우 통탄스럽다.’라고 하셨습니다. 저희들은 모여서 읽고 저도 모르게 경악하며 몹시 놀랐습니다.

본리의 가난한 백성은 매번 환곡을 바치기 어려운 폐단이 있어서 윤 현감이 재임하고 있을 때 백련동은 특별히 명령을 내려 환곡을 나누는 것에서 제외시켰습니다. 따라서 지난해에는 애초에 환곡

71 검독(檢督) 본 문서의 문맥으로 보아 각 창고의 환곡을 징수하기 위하여 면리 단위로 특별히 임명한 직임으로 보인다.

을 받아먹은 호수가 없었으니, 엇금에게 분급하고자 했더라도 어찌 엇금에게 많이 줄 곡식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가령 마을 안에 환곡을 엇금에게 준 사람이 있다면, 엇금이 체납한 환곡을 곡식을 간략하게 본리 안에서 두루 징수하는 날에 본리 안에서 징수 당한 사람이 어찌 그 엇금에게 곡식을 준 사람을 적발하지 않고 한 마디 말도 없이 힘닿는 대로 도와주었겠습니까? 엇금에게 곡식을 주었다는 말은 전혀 이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년 11월 19일에 동내洞內에서 모두 모여 공회公會를 열어 동내 사람들이 거두지 못한 약간의 환곡을 일일이 조사했을 때, 엇금이 말로 진술한 내용에, ‘내가 담당한 곡식은 벼[秬] 13석, 쌀[米] 2석 12두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진술한 바에 따라서 문서를 수정하여 동내에 놓아두고 나중에 징수하여 납부할 계획이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환곡을 거두는 날, 엇금 명의의 곡식이 이와 같이 많은 것은 여기에서 나온 것이며 모곡⁷²까지 아울러 마련한 까닭입니다. 어찌 한 홉의 곡식이라도 수를 불릴 리가 있었겠습니까?

이와 같이 많은 곡식은 그 상전과 족속 된 도리로 힘닿는 대로 나누어 도와주어 모두 거두어들이는 것이 도리상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난번에 본리의 이정^正이 이러한 연유로 소장^{訴狀}을 올렸는데, 그 데김^{題音}에, ‘죽은 사람의 곡식은 지목하여 징수할 곳이 없으니, 그 상전과 가까운 족속에게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리하여 저희들은 다시 이름을 나열하여 등장^{等狀}으로 호소하고 분록기^{分錄記}를 첩으로 만든 후 징수할 것인데, ‘사사로이 수를 불려 그 족속과 상전에게 두루 징수한다.’라고 한 것이 또 어찌 매우 원통하지 않겠습니까? 엇금과 상관없는 힘없는 마을의 백성이 한 되씩, 한 말씩 밤낮으로 거두어 거의 5,6석을 갖추어 납부하는 지경에 이르렀지만, 그 나머지 7석의 벼와 3석에 가까운 쌀은 털을 긁고 가죽을 벗겨도 본리 안에서 다시 징수할 길이 전혀 없습니다. 상전과 족속인 사람이 초월^{楚越}(초나라와 월나라 같은 원수같은 사이) 같이 여기며 백방으로 피하려고 하는 때에 이 엇금 명의의 곡식을 두루 징수하는 것은 즉시 시행하지 말라는 명령이 있으니, 그 하고자 하는 바에는 딱 맞지만 이 마을의 힘없는 백성은 유독 무슨 죄입니까? 이 쌀과 벼를 그의 상전과 족속에게 징수하지 않으면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절박한 마음에 원통함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에 감히 마을 공회 때 수정한 문서 및 지난번에 올린 소지와 분록기를 모두 첨부하여 호소하니, 자세히 살피신 후 특별히 양안^{量案}에서 이 벼 7석과 쌀 3석을 그 상전과 족속에게 나누어 징수하여 가난한 집의 힘없는 백성이 홀로 그 해를 입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천만번 바라옵니다. 명령하실 일입니다.

성주城主께서 처분해 주옵소서.

신해년(1731, 영조 7) 12월 일. 유학 윤현서, 윤형서^{尹亨緒}, 김진원^{金振源}, 윤재현^{尹載賢}, 윤희원^{尹熙}

72 모곡(耗穀) 환곡을 받을 때, 축이 나거나 손실을 보충하기 위하여 이자조로 징수한 곡식.

元, 문희옥文義郁, 윤희서尹欽緒, 윤희항尹恒, 박종성朴宗成, 오성추吳聖驪 등.

[제사] 모록冒錄(허위로 기록한 것)한 많은 곡식을 족속과 상전에게 백징白徵(근거 없이 징수함)하겠는가? 두 사창社倉에 있는 곡식을 조사하여 그 상전과 부유한 족속에 나누어 징수하고, 그 밖에 모록한 수는 받아먹기를 싫어하는 본주本主에게 독촉하는 것이 마땅할 일이다. 9일.

관官 [서업]

현일면縣一面 백련동리白蓮洞里 이정里正 재태再太

삼가 소지所志를 올려 말씀드리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마을 엇금硃金이 체납한 환곡일로 소장訴狀을 올리니, 데깁[題音]에 ‘두 사창社倉에 있는 곡물穀物을 조사한 후 분록分錄할 것’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밖의 수많은 명의가 없는 곡식은 본리本里 안에서 거의 다 거두었지만 그 나머지(엇금) 명의의 곡식인 사창의 벼 1석 3두 1승 5홉은 관官의 데깁에 따라 그 상전上典의 집에 분록하여 남김없이 다 납부하도록 명령하실 일입니다.

안전주案前主께서 처분하여 주옵소서.

신해년(1731, 영조 7) 12월 일.

후後

백련동 엇금 명의의 곡식인 사창의 조租 1석 3두 1승 5홉은 해리海里 이씨의 노奴 여태汝太의 명의로 옮겨 기록함.

[제사] 전의 제사에서 이미 다하였음. 20일.

관官 [서업]

행현감行縣監이 차정差定함. 백련동白連洞의 환곡에서 진홀에 사용한 각종 곡식을 거두는 별검독別檢督에 차정한다. 이에 문서를 내리니 살펴 시행할 것.

이에 첩帖을 내림.

이상은 유학幼學 윤희원尹希元과 윤희형서尹亨緒에게 내리니 이에 따를 것.

신해년 12월 19일.

차정함.

[첩帖] 행현감 [서업]

縣一白蓮洞里居 幼學尹顯緒 等

右謹言所志切迫情由段 矣等昨伏見本里檢督處傳令是乎 則傳令辭意 硃金名下穀 從何處而來 如是多數是喻 富豪之民 故爲不受 多給硃金矣 及其秋捧之時 憑藉多石 私自濫數徧徵於其族及上典者 極爲可痛教是是如

乎矣等聚讀不覺愕爾驚悚至也
本里貧殘之民每有還上難捧之弊故尹等城主坐停時白蓮洞段特令發去於還分中故前年初
無還上受食之戶則雖欲給銚金而
有何多給銚金之穀是乎旣假使里中有以還穀給銚金之人則當此銚金通穀從略徧徵於里中
之日里中被徵之人豈不摘發其銚金給
穀之人而無一辭隨力助給乎銚金給穀之說萬無是理是白遣年前十一月十九日洞內一齊公
會洞內各人等若干未收一一查出之時銚金口
招內其矣所當穀租爲十三石是遣米爲二石十二斗是如依所招修正文書留置洞內以爲日後
徵納之計則今此還捧日銚金名下之穀如
是多數者從此中出來而并毛磨練之致也有何一合穀濫數之理乎如是許多之穀其在爲上典
爲其族之道隨力分助以爲收殺之道道理
當然是乎等以向日良中本里里正以此緣由呈訴是乎則題音內身死之穀指徵無處則其上
典及強近族屬擔當當然之意題下故
矣等又復列名等訴分錄記成帖後以爲出徵則私自濫數徧徵於其族及上典云者又豈不萬萬
冤痛乎不干銚金疲殘里氓竭心殫力升升斗斗
晝夜收合幾至五六石備納之境而其餘七石租近三石米雖刮毛剝皮自里中萬無更徵之道
而爲上典爲其族者視同楚越百端謀避之際
有此銚金名下穀徧徵段卽爲勿施之令則適中其所欲而顧此里中之疲氓獨何罪乎此米此租
不徵於其矣上典其族屬而從何出乎下情
所迫不勝冤枉茲敢以里中公會時修正文書及向日所呈所志及分錄記并以帖連仰訴爲白去
乎細細叅商教是後特垂量案以此七石租三
石米分徵於其上典其族屬俾無殘戶疲氓獨被其害之地千萬望良只爲
行下向教是事
城主處分

辛亥十二月日幼學尹顯緒

尹亨緒 朴宗成

金振源 吳聖驕 等

尹載賢

尹熙元

文義郁

尹欽緒

尹 恒

[題辭]

冒錄多石
白徵於族與上典
乎 查實其兩倉
所在穀數 分徵
於其矣上典
及富饒強近
族屬處 其外
冒錄之數 置
督于厭食本
主處 宜當事
初九日
官 [署押]

縣一面白蓮洞里 里正 再太
右謹陳所志事段 以矣里鎔金逋穀事呈狀是乎 則題
音內 查出兩倉所在穀物後分錄事 行下是乎等以 其
外許多無名之穀 自里中幾盡收殺 而其餘名下穀 司倉
租一石三斗一升五合段 依官題分錄於其上典家 俾爲無遺
畢納之地爲白只爲
行下向教是事
案前主 處分
辛亥十二月日
後
白蓮洞鎔金名下穀 司倉租一石三斗一升五合
海里李奴汝太名下移錄

[題辭]

前題已
悉事
廿日
官 [署押]

行縣監爲差定

事 白連洞還賑

各穀別檢督差定

爲遣 合下仰

照驗施行須至帖者

右 下

幼學尹希元

尹亨緒 準此

辛亥十二月十九日

差定

行縣監 [署押]

6-2-4) 1833년 현일면縣一面 백련동白蓮洞 안문

[1833년(순조 33) 기사년에 향리들의 역소인 작청作廳에서 백련동의 마름에게 환분還分, 군정軍丁, 연호煙戶 등의 역을 면제해준다는 것을 인정한 완문.]

완문 현일면縣一面 백련동白蓮洞 마름숨音

영구히 준행할 일. 저 덕음산德蔭山 아래 선현의 옛 터를 보니 후생의 감회가 어찌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겠는가. 계보와 관향, 읍호에 …(원문 결락)… 주반主班이 있음을 알겠으니, 대대로 연포蓮浦에 거주하여 사람들이 모두 사부師傅라 일컬었다. 세 차례 옥문을 열어 죄수를 풀어주니 사람들 입에 덕행이 회자되는 일이 대대로 이어졌으며, 향사鄉祠에 주벽主壁으로 모셔지니 부조不祧⁷³의 은택이 계승되었다. 우리들은 모두 의관衣冠을 갖춘 고족古族으로 비록 명분에 있어서는 현격한 차이가 있지만 어찌 자별한 세의世誼가 없겠는가. 등록膽錄을 살펴보면 호역戶役, 신역身役, 연호煙戶를 면제하여 거의 집집마다 선현을 사모하는 자취로 삼을 만하였는데 일이 오래되니 앞이 나고 가지에는 마디가 생겨 점점 무성해져서 덤불이 되었다. 반호班戶의 환자[分還]와 노속奴屬의 군정軍丁이 거의 한정이 없는 것은 바로 우리들의 수치이니, 이 어찌 증거할 만한 문적文蹟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겠

73 부조(不祧) 5대가 지나도 신주를 체천(遞遷)하지 않고 영구히 사당에 봉사하는 것을 말함.

는가. 혹 후배들이 불초해서 그런 것인가. 옛날을 회상하고 오늘을 생각하면 참으로 탄식스럽다. 중도에 잘못하였지만 지금 뒤늦게 따지지 않고 다시 옛 관례를 따라 각항의 면제 조건을 완문으로 작성하여 왼쪽에 하나하나 기록한다. 아, 우리 각 담당자들은 서로 권면함으로써 잘못하여 선현을 모욕하는 데 이르지 않게 해야 마땅할 것이다.

계사년 8월 25일

청廳	호장戶長	조성학曹聖學[서업]
	이방吏房	강석행姜錫行[서업]
	호방戶房	김서장金瑞章[서업]
	사창색司倉色	김문연金文淵[서업]
	세초색歲抄色	정지관鄭志寬[서업]
	선소색船所色	유재연柳在演[서업]

뒤

각항의 환분還分을 받지 말 것.

제읍의 군정을 침범하지 말 것.

연호잡역烟戶雜役을 일체 침범하지 말 것.

完文 縣一面白蓮洞 舍音

位永久遵行事 膽彼德蔭山下 □先賢古基 後生之懷感 烏可以地□有間
 耶 系貫邑號尺□知有主班 世居蓮浦 愚夫皆稱師傅 三開獄門 □人之
 德 世世綿綿 主壁鄉祠 不祧之澤 繼繼承承 伏惟吾儕 俱以衣冠古族
 雖有名分之懸絕 豈無世誼之自別 微考膽錄 戶底身烟役之勿侵 庶可爲
 戶戶仰慕之蹟 而事久生葉 枝上生節 轉成葛藤 班戶之分還奴履之庖
 殆無限節者 卽吾輩之所羞 此空非事蹟之無徵而然歟 抑惑後屬之不肖而
 然歟 感古懷今 良可歎也 中逢失錯 今不追究 而更遵古例 各項蠲除條
 件 成出完文一 一錄左嗟我各□掌 互相勉旃 毋至違劃忝先之地 宜當者
 癸巳八月二十五日

廳	戶長曹聖學(押)	
	吏房姜錫行(押)	各項還分不受事
	戶房金瑞章(押)	諸邑軍丁勿侵事
	司倉色金文淵(押)	烟戶雜役一併勿侵事
	歲抄色鄭志寬(押)	
	船所色柳在演(押)	

6-2-5) 1836년(헌종2) 현산縣山 금쇄동金鎖洞 완문

[1836년 병신년에 작창作廳에서 고산 윤선도의 뜻이 담겨 있는 금쇄동에 유민流民들이 거주하기를 원하는 자가 있으면 호역戶役과 신역身役을 면제시켜 정착을 장려할 것을 인정한 완문. 향리들의 역소役所인 작창에서 발급한 완문이다.]

완문[현산縣山 금쇄동金鎖洞]

이 완문을 성급함. 우리 지역이 바다 끝에 치우쳐 있는데도 문명이 열읍과 견줄 만하며 오히려 공자와 맹자의 가르침을 충실히 따르고 있는 것은 실로 향선생鄉先生의 유풍과 은택이 눈과 귀에 쟁쟁하고 피부 속 깊이 침투한 덕택이니, 이곳에 살며 이곳에서 자라 선비의 체모를 갖추고 있는 자들은 선생을 경모하지 않는 자가 없다. 생각건대, 고산孤山 윤선도尹善道(1587~1671) 선생은 집안 대대로 덕을 쌓았으며 세 차례나 옥문獄門을 열어 죄수를 놓아 보내니⁷⁴ 많은 사람들이 그 덕행을 전하고 공자와 맹자의 풍속을 숭상하는 고을로 바뀌었다. 6조條의 향약鄉約이 판목에 새겨져 아직까지 남아 있으니 선생의 높고 훌륭한 공적을 우리 고을과 함께 영원하게 할 것이다.

해남현 남쪽 금쇄동은 바로 선생의 묘소가 있는 곳인데 십 리나 되는 긴 골짜기에 멀리 떨어진 촌락으로 옛날에는 무덤을 지키는 집이 4, 5호가 있어 조역調役을 면제해 주면서 무덤을 보호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지난번 거듭 기경己庚의 흉년⁷⁵을 만나 거주하던 백성이 흩어져 촌락이 텅 비게 되니 묘소를 지키는 것이 매우 어렵게 되었고 묘소의 풀이 말아 아니다. 게다가 전토田土 또한 황무지가 되어서 백지白地에 세금을 징수하게 되었고, 가시덤불이 우거져 짐승들의 소굴이 되었다. 공의公議가 일제히 일어나 사람들을 모집하여 들어가 거주하며 묘소를 지키고 묵은 땅을 개간하고자 하였으나 그곳을 죽은 땅으로 여겨 기꺼이 들어가려는 사람이 없다. 생각건대, 백성들의 마음은 이익을 좇고 피해를 피하는 것보다 큰 것이 없다. 많은 상금을 걸어 모집한다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또한 이를 것이니, 영주永州의 뱀⁷⁶과 태산泰山의 호랑이⁷⁷는 이들을 삼대 동안 원수로 여길 것이고 이들은 오랫동안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의 신역身役을 면제시켜 이곳을 이익이 나는 곳으로

74 세 차례나 …… 놓아 보내고 해남윤씨는 고산 윤선도의 고조부인 12세조인 어초은(漁樵隱) 윤효정(尹孝貞, 1476~1543)이 강진에서 해남으로 옮겨 거주하게 된 후부터 해남을 본관으로 삼게 되었다. 그는 많은 재산을 털어 난민을 구휼하고 세금을 대납하여 죄인을 방면케 하는 이른바 개옥문(開獄門)을 세 차례나 하여 적선지가(積善之家)란 칭송을 듣게 되었다.

75 기경(己庚)의 흉년 기사년(1809, 순조9)과 경오년(1810, 순조 10)의 흉년을 이르는 것으로 보인다.

76 영주(永州)의 뱀 가혹한 세금을 피하기 위하여 목숨을 내걸고 뱀을 잡는다는 것으로, 『고문진보(古文眞寶)』 후집(後集) 포사자설(捕蛇者說)에 보인다.

77 태산(泰山)의 호랑이 가혹한 정사는 호랑이보다 사납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공자가어(孔子家語)』에 보인다.

여기게 한다면, 우리들은 지역도 작고 힘도 없어 현인을 사모하는 정성에는 조그만 효과도 없겠지만, 세금을 부과하는 신역에 대해서는 오히려 장부를 작성하는 임무를 맡을 것이다. 오늘부터 혹 유민流民 가운데 이 고을에 거주하기를 원하는 자가 있다면 일체의 호역戶役과 신역을 다 면제시켜 백성들을 장려함으로써 마을을 이루게 하여 한편으로는 현인을 사모하는 정성을 담고 한편으로는 황무지를 개간하도록 허락할 것이다. 완문을 만들어 영원히 증빙의 자료로 삼으니, 비단 고을에 할 말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이 보호하게 되어 조금이나마 다행일 뿐이다.

병신년 11월 초4일

청廳	호장戶長	정관중鄭觀重[서업]
	이방吏房	김민호金敏顯[서업]
	호방戶房	강치린姜處隣[서업]
	예방禮房	김달연金達淵[서업]
	병방兵房	강치중姜處仲[서업]
	형방刑房	김용권金龍權[서업]
	공방工房	강치륜姜處綸[서업]
	승발承發	유홍기劉洪基[서업]
	도서원都書員	강치주姜處周[서업]
	대동색大同色	이순화李順華[서업]
	사창색司倉色	김안원金安元[서업]
	해창색海倉色	김찬성金贊聲[서업]
	세초색歲抄色	김두신金斗臣[서업]
	전관색傳關色	김종건金宗健[서업]
	전선색戰船色	김금증金錦曾[서업]

完文 縣山金□洞

右完爲成給事 惟我鄉僻在海□ 衣冠文物 齒於列邑 猶爲洗泗之齷齪者
寔賴鄉先生遺風餘澤 耀目爛耳 淪肌浹髓 凡居斯長斯 冠儒服儒者 莫
不景慕 竊儒孤山尹先生 家世種德 三開獄門 口碑不泯 齊魯變俗 大條
鄉約 鑱板尙在 豐功韙蹟 與邑終始 縣南金□洞 卽先生妥魄之所也
十里長谷 村落絕遠 舊有守塚四五戶 蠲除調役 禁護樵牧矣 粵在己庚
旵經凶荒 居民離散 村址空虛 守護極難 墓樣未成 況且 田土陳荒 白
地徵稅 荊榛鬱結 虎豹攸窟 公議齊發 維欲募人入居 看護塋域 耕墾陳
地 而視之死地 肯從無人 窃念趨利避害 心民莫過 懸金重購 死士亦至

永州之蛇 泰山之虎 三世爲讎 百年安堵者 蠲其身役 猶爲利窟 凡我同
 儕 地微力□ 慕賢之誠 雖無尺寸之效 而調庸之役 猶掌簿書之任 自今
 爲始 或有流民 願居此洞 則一應戶役身役 盡爲蠲除 獎勸愚氓 俾成鄰
 比 一寓慕賢之誠 一爲墾陳之許 完成納文 永爲憑考 則非徒有辭於一
 鄉 抑亦爲吾儕 俾補之少辛云耳

丙申十一月初四日

廳	戶長	鄭觀重(押)
	吏房	金敏顯(押)
	戶房	姜處隣(押)
	禮房	金達淵(押)
	兵房	姜處仲(押)
	刑房	金龍權(押)
	工房	姜處綸(押)
	承發	劉洪基(押)
	都書員	姜處周(押)
	大同色	李順華(押)
	司倉色	金安元(押)
	海倉色	金纘聲(押)
	歲抄色	金斗臣(押)
	傳關色	金宗健(押)
	戰船色	金錦曾(押)

6-2-6) 1873년 연동蓮洞 완문

[1873년(고종 10) 계유년 어초은漁樵隱 윤효정尹孝貞의 묘가 있는 연동에 면제되었던 연호잡역을 다시 징수하기로 하자, 면중面中에서 매년 8냥씩을 납부하고 대신 연동 마을의 호역을 면제해 주기를 논의하는 완문.]

완문

영구히 준행할 일. 본면 연동蓮洞의 연호잡역烟戶雜役을 면제시켜 준 것은 본래 주호主戶인 윤씨가 면제를 도모한 것이 아니라 고을 전체의 공문이니, 대개 향선생鄕先生의 유택을 갑자기 잊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어초은漁樵隱 윤공尹公 유효정尹孝貞(1476~1543)이 적선積善한 덕과 세 차례 옥문獄門을 열어 죄수를 풀어준 은혜를 우리 해남 사람이라면 누군들 입지 않았겠는가. 이전과 고을의 논의는 영원토록 잊지 않고자 하는 것인데 선생의 묘소와 별묘別廟 또한 연동에 있으므로 관례를 따른 지 수백 년이 되었다. 지금 조정의 명령이 있어 고을 가운데 부역이 면제되던 고을도 일체 다 징수하도록 하였는데 연동에도 징수한다면 선배들이 공론으로 논의한 의도가 아니다. 그 때문에 면중面中에서 난상토의하여 매년 8냥을 봄가을에 나누어 걷고 마을의 호역戶役을 면제해 주는 내용으로 완문을 작성하여 영구히 준행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계유년 4월 초5일

면중面中

면수面首 신 중申綜

집강執綱 민인호閔仁鎬

다사多士 나석기羅錫基

민유호閔有浩

윤규칠尹圭七

윤주형尹柱亨

完文

爲永久遵行事 本面蓮洞 蠲頰烟戶之役 本非主戶尹氏之謀免也 一邑公論所歸也 盖鄉先生遺澤 不可遽忘故也 漁樵隱尹公 積善之德 有三開獄門之惠 凡我海南之人 誰不蒙其澤乎 吏鄉之論 盖欲百世不忘 而先生之邱墓別廟 在蓮洞 高遵例數百年矣 今有朝令 邑中除役之村 一併蓮徵 而渾徵於蓮洞 則有非先輩立議之意 故面中爛議 每年錢捌兩 或春秋分捧 里戶役頃給之意 著成完文 永久遵行宜當者

癸酉四月初五日

面首 申綜

執綱 閔仁鎬

多士 羅錫基

閔有浩

尹圭七

尹柱亨

6-2-7) 1875년 윤종연尹鐘淵 등 완문

[1875년(고종 12) 전라도 도순찰사가 백련동白蓮洞에 사는 윤종연尹鐘淵 등의 소지에 따라 해남 윤씨가에 환분還分, 군정軍丁, 연호煙戶 등의 역을 면제해달라는 청원을 허락한 완문.]

완문

완문을 성급함. 해남 백련동에 사는 윤종연尹鐘淵 등이 올린 소지에, ‘저희들은 유현儒賢의 후손으로 대대로 벼슬하며 이 지역에 거주하였는데 선대에서 공을 쌓고 덕을 베푼 것에 대해서는 일일이 진달하기 어렵지만, 고을의 여러 아전들이 영원토록 잊지 못하니 잡역으로 침범하지 말아달라는 뜻으로 완문과 조약을 작성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중기 이래로 자손들이 쇠락해지자 집강執綱과 면임面任들이 능멸하고 함부로 침해하는 중에 본 고을에는 원래 남아있는 속오군東伍軍의 명색名色이 없는데도 지금 6, 7명이나 되는 많은 허명을 올리기가까지 하였습니다. 기타 과부집과 낭속廊屬, 양역仰役하는 노비들까지 모두 호구로 잡아 중복으로 요역徭役을 징수하니 편호編戶한 백성들과 차이가 없어 매우 원통해 하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침해하지 말도록 특별히 완문을 작성해 주소서.’ 하였다. 이러한 이름난 선현의 후손을 백성들과 뒤섞어 역에 편제한 것은 단위 표기가 없는 잣대와 눈금이 없는 저울이라고 할 만하다. 본읍 여러 아전들의 조약에도 근거할 만한 자취가 있으니, 지금부터 각항의 환분還分과 제읍의 군정 및 연호잡역煙戶雜役은 일체 옛 규정을 따르고 모두 침해하지 말 것이며, 이 완문에 따라 영구히 바꾸는 것 없이 준행해야 마땅할 일이다.

추신: 지방관은 완문의 내용을 상고하여 시행할 것.

을해년 5월 일

도순찰사[서업]

完文

爲完文成給事 海南白蓮洞居 尹鐘淵等呈狀內 以爲生等 以儒賢後裔 簪纓古族 奠居茲土 先世之積功施德 難以枚陳 而邑中諸吏 以永世不忘 雜役勿侵之意 至成完文條約矣 中年以來 子孫零替 執綱面任輩 凌蔑橫侵之中 本洞元無生存東伍軍名色 而今以虛名案付 至爲六七名之多 其外寡婦家及廊屬與仰役單奴 一併執戶 疊徵徭役 與編戶小民 無所異同 極爲冤枉 以依前勿侵事 特爲完文成給亦爲置 以若先賢華胄之裔 混同下民 編戶之役 可謂無寸之尺 無星之稱 而本邑諸吏之稱 而本邑諸吏輩之條約 亦有可據之蹟是如乎 自今以往 各項還分 諸邑軍丁 煙戶雜役 一遵舊規 並勿侵責爲旆 依此完文 永久無替 遵行宜當向事 此

亦中 地方官段 完文內辭緣相考施行次

乙亥五月 日

都巡使 (押)

6-2-8) 1875년 을해년 연동蓮洞 완문

[1875년(고종 12) 을해년 해남현(관, 좌수와 향리)에서 선현의 묘소가 있는 연동蓮洞의 환분還分, 군정軍丁, 연호煙戶 등의 역을 면제해주겠다는 완문. 관과 좌수, 담당 향리들의 연명 서압이 있다.]

완문

영구히 준행할 일. 아, 저 연동蓮洞은 바로 선현의 묘소가 있는 곳이다. 그 자손이 대대로 이곳에 거주하여 훌륭한 명성을 잃지 않았으니 참으로 당대에 모범이 되고 영원토록 전할 만하다. 이에 높이고 보답하는 방도는 진실로 그 마을을 드러내는 것이지, 일반 백성들과 잡역에 함께 편제해서는 안 된다. 아, 말세에는 선현을 생각하지 않아 집강執綱과 면임面任은 조종하는 데에만 유의하여 호총戶總을 함부로 잡아 매번 세금을 가혹하게 징수하고 모든 노비들로 하여금 군정으로 집어넣거나 환곡을 받게 하는 일을 만들었다. 이런 말까지 하게 되니 절로 한심하다. 후일의 현자들 가운데 어찌 무성하고 어지러운 것을 없앨 자가 없다고 장담하겠는가. 여러 아전들의 구약舊約에 이미 근거가 있고 영문營門의 새로운 완문이 또 절실하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 다시 조약을 열거한다. 이것을 준행하여 영구히 바꾸지 말아야 마땅할 일이다.

을해년 2월 일

관[서압]

좌수座首	김진후金鎭扈[서압]
병교兵校	김지호金志浩[서압]
호장戶長	강성호姜成浩[서압]
이방吏房	김장옥金章郁[서압]
호방戶房	김기해金基海[서압]
사창색司倉色	김장우金章瑀[서압]
대동색大同色	안채현安採鉉[서압]
세초색歲抄色	차제순車濟順[서압]
속오색束伍色	김대홍金大洪[서압]
승발承發	정남선鄭南善[서압]

뒤

각항의 환분을 받지 말 것.

제읍의 군정을 침범하지 말 것.

연호잡역烟戶雜役을 일체 침범하지 말 것.

完文

爲永遵事 慨夫蓮洞 卽先賢之所墓也 其子孫世居于此 不失令名 眞可
調範一世 而鎔百代者也 其於崇報之道 固當以表厥宅里 不可與凡民等
頌而編之 棟役是去乙 嗚噫 末俗罔念先哲 執綱面任者之惟意操縱 濫執
戶摠 每到箕歛 而須使單奴單婢之隸 至有添丁受還之舉 與言及此 不
覺寒心 其在後賢 安知不有撤其藩而毀其墻者也 諸吏之舊約 既有所據
營門之新完 又復切至 故因之踵成 更列條約 以此遵行 永久勿替宜當者

乙亥二月 日

官 (押)

座首金鎮屋(押)

兵校金志浩(押)

後

戶長姜成浩(押)

各項還分不受事

吏房金章郁(押)

諸色軍丁勿侵事

戶房金基海(押)

烟戶雜役勿論事

司倉色金章瑀(押)

大同色安採鉉(押)

歲抄色車濟順(押)

束伍色金大洪(押)

承發鄭南善(押)

6-2-9) 1879년 윤 감역택 노 복철 소지

[1879년(고종 16) 윤 감역택 노 복철이 해남현에 상전택에 잡역세의 면세를 요청하며 올린 소지. 원래 연동의 해남 윤씨는 여러 잡역을 면제해준다는 완문이 있었는데 중간에 잡역 부과를 일반 백성들과 똑같이 하므로 완문을 점련하여 소지를 올린 것이다. 연동의 해남 윤씨가 잡역의 대상이 될 정도로 힘이 약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일면縣一面 연동리蓮洞里 윤 감역대尹監役宅⁷⁸ 노奴 복철福哲

삼가 말씀드리는 원통한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전댁이 본리本里에 정착하고 나서 지금까지 3백 여 년 동안 결역結役 외의 다른 호역戶役의 명목으로는 하나도 징수하지 않는 것이 본래 온 고을의 공론이었으며, 또한 영읍營邑의 완문完文도 있습니다.

중간에 호포와 역을 뒤섞어 출질出秩하였으므로 어쩔 수 없이 담당하였으나 억울한 마음이 없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뜻밖에 또 세초歲抄 정전情錢과 대나무·나무 등의 물건 값이라고 칭하면서 편호 소민編戶小民으로 간주하여 출질하였으므로 감히 이렇게 영읍의 완문을 첨부하여 호소합니다. 살피신 후에 특별히 엄하게 제사를 내려 즉시 탈급頒給하시어, 한편으로는 완문의 본래 뜻을 지키고 한편으로는 뒷날의 폐단을 막도록 해 주시기를 천만번 바라옵니다. 명령하실 일입니다.

사또님께서서 처분해 주옵소서.

기묘년(1879, 고종 16) 8월 일.

[제사] 완문이 이와 같이 분명하거늘 명령을 낼 때 어찌 신중하게 살피지 않아서 이렇게 혼입되었는가? 하나같이 조약條約에 따라서 다시는 횡침橫侵하지 않도록 할 것. 27일, 세초색歲抄色과 군기감관軍器監官에게.

관官 [서업]

縣一蓮洞 尹監役宅 奴福哲

右謹陳忿冤情由段 矣宅之奠居本里于今三百餘年 結役外凡他戶役名色 一不徵納者 自是一鄉公論是乎 旣且有營邑完文矣 中年以戶布役混同出秩 故不得已擔當是乎 乃不無抑鬱之心是白加尼 不意今者 又稱以歲抄情錢與竹木物價是如 看同編戶小民而出秩是乎 故敢此營邑完文帖聯仰訴爲去乎 參商教是後 特下嚴題 卽爲頒給 一以遵完文之本意 一以杜後弊之地 千萬祝手

行下向教是事

使道主 處分 己卯八月 日

[題辭]

完文如是/昭然是去乙/發令時何不/審慎 而有此/混入是喻 一/從條約 更勿橫侵向事

78 윤 감역대(尹監役宅) 윤주흥(尹柱興, 1823~1873)의 택호. 자는 석로(錫老), 아버지는 광호(光浩), 부인은 창녕 조씨(昌寧曹氏).

二十七日/ 歲抄色/ 軍器監官
官 [署押]

6-2-10) 경진년(1880) 연동 이임 오준철의 소지

[1880년에 해남 연동蓮洞 이임里任 오준철吳俊哲이 마을에 부과된 죽물가竹物價 등의 역役을 면제해 달라고 요청한 소지.]

현일면縣一面 연동蓮洞 이임里任 오준철吳俊哲.

삼가 소지所志로 아뢰는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 마을은 예전부터 본래 호역戶役으로 응납應納하는 사례가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호역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본 현과 도道에서 발급해준 완문完文까지 있습니다. 호포전戶布錢⁷⁹이야 서울과 지방 사대부 댁을 통틀어 모두 내는 것이라 저희 마을 또한 당연히 납부해 왔습니다만 그 나머지 각 항목의 호역은 모두 응납해오지 않았습니다. 뜻하지 않게 이번에 죽물竹物 값과 환약 운반비 등이 저희 마을에 부과되었는데 이는 해마다 바치던 역役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감히 우리러 호소하오니, 엎드려 바라옵건대 헤아리신 후 특별히 처분을 내리시어 이 역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천만번 축수합니다. 분부하여 주십시오.

사도주使道主 처분.

경진년[1880]⁸⁰ 7월 일

[제사] 일괄 전례에 따라 시행하라. 20일. 담당자에게. 고⁸¹ 남채민南塚琛.

관官 [서압] [인]

縣一蓮洞 里任 吳俊哲

右謹陳所志段 矣里自前本無戶役應納之例分除良 以烟戶役勿侵之意 本邑與巡營門完文自在是如 戶布錢段 通京鄉土夫宅 無不盡納 故矣里亦爲當納是在果 餘外各項

79 호포전(戶布錢) 1871년 종래의 군포(軍布)에 대한 양반들의 면세 특권을 폐지하고 신분에 관계없이 호(戶) 단위로 2냥씩 부과한 것.

80 [1880] 호포전 시행 후를 근거로 연대를 추정하였다.

81 고(告) 형리(刑吏)가 수령을 대신하여 심리한 경우 판결문 끝에 ‘고과(告課)’ 또는 ‘고(告)’라고 쓰고 담당 형리의 이름을 썼다. 즉 남채민은 수령을 대신해 심리하고 판결을 내린 형리이다. (전경목, 『소지류의 데깁에 나타나는 고과(告課)에 대하여』 『고문서연구』11, 111~141쪽 참조.)

戶役 并不應納是加尼 不意今者 以竹物價及藥丸情太錢出秩於矣里是乎矣 此非年例
所納之役 故敢此仰訴 伏乞參商教是後 特下題音 使卽蒙頌之地 千萬祝手

行下向教是事

使道主 處分

庚辰七月 日

[題辭] 一從前例爲之事 二十日 該色 告南塚玖

官[署押][印]

6-2-11) 1899년 청원서

[1899년(고종 36) 해남현에 연동 해남 윤씨가의 잡역의 견감謹勘을 요청하며 올린 소지. 원래 잡역 등을 부과하지 않았는데 근래에 부과되어 억울하다는 것이다.]

...(원문 결락)... 세 번 옥문獄門을 열어주어 쌓은 덕⁸²이 있기 때문에 온 고을의 아전과 백성이 모두 ...(원문 결락)... 흥년에 세 번 옥의 문을 열어 세금을 내지 않은 백성을 풀어주고 그 세금을 대신 납부하였으니 온 고을의 사람이 누가 그 은혜를 입지 않았겠습니까? 본리本里는 바로 이 선생의 무덤이 있는 곳이라, 우리러 추보追報하는 도리가 없을 수 없습니다. 각종 연호잡역煙戶雜役을 모두 면제하고 서원書員과 면장面掌(면임) 무리의 보수도 아울러 책임지우지 말라는 내용의 완문完文이 분명하고 자세하여 지금까지 지켜서 시행하였습니다.

신장정新章程⁸³이 시행되기 전에는 면면의 호역戶役이 많아서 본리의 동중洞中으로 하여금 논 2마 지기와 돈 15냥을 면에 납부하여 보태 쓰도록 하고, 새 규정이 시행된 후에는 사수社首(사창의 우두머리)가 의뢰하는 항목을 완전히 모를 수 없다 하여 매년 5냥씩을 보태 납부하였으니, 모두 완문 외의 별도의 부조입니다. 전임 사수는 좋은 얼굴로 받아 가더니 유독 올해 사수는 전례에 따라 분배하여 수를 채워 책봉責捧하기를 바라니, 인심의 아박함이 어찌 여기에 이르렀단 말입니까? 이에 감히 대강의 사정을 들어 호소하오니 처분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3년(1899, 고종 36) 9월 일.

82 세 번 옥문(獄門)을 열어주어 쌓은 덕 윤효정(尹孝貞)이 세금을 내지 못해 옥에 갇힌 사람을 위해 세 번에 걸쳐 대신 납부해 준 일을 가리킴.

83 신장정(新章程) 1895년(고종 32) 윤5월에 탁지부령(度支部令)으로 반포한 사환조례(社還條例)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임.

사또님께서 처분해 주십시오.

[제사]

일찍이 이와 같음을 알고 있는데, 그 사수社首의 의뢰에 대해 어찌 여러 차례 신칙하는 데 이르렀는가? 도리어 매우 개탄스럽다. 이번 가을부터 너의 동洞의 결세전結稅錢을 납부하는 것은 전적으로 너에게 맡기니, 거두기를 시작하면 즉시 지시하여 배정된 것에 따라서 수에 맞추어 와서 납부하라. 만약 약속이라도 어긴다면 처벌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것을 잘 아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12일.

행관行官

(頭缺) 有三開獄門之積德 故一鄉吏民齊□……□ 大無之年에 三開獄門^ㄱ야 放出稅逋之民^ㄴ고 代納其稅^ㄷ니 一鄉之人이 誰不被其澤이리요 本里는 卽此先生衣履之藏也라 不可無景仰追報之道라^ㄹ야 各項烟戶雜役을 一併勿侵^ㄷ고 書員面掌輩應食이라도 并勿侵責之意로 完文이 昭詳^ㄹ야 至今準的施行^ㄷ고 新章程施行之前의 面中戶役이 頗多^ㄷ기로 自本里洞中으로 番二斗落果 錢十五兩을 面中の 納^ㄷ야 以爲輔用이고 新定式施行後의 社首依賴條를 不可全然不知라^ㄹ야 每年錢五兩式輔給^ㄷ호니 皆是完文外別般扶助라 前等社首는 好面捧去^ㄷ더니 唯獨今年社首는 依例分排^ㄹ야 充數責捧을 期^ㄷ니 人心渝薄이 胡至於是이리요 茲敢學槩仰籲^ㄷ호니 處分이 何如실년지
光武三年九月 日
使道主 處分

[題辭]

早知若此 其社首依賴 豈至/屢飭乎 還切慨歎 自今秋 汝矣洞/結稅錢刷納 專任於汝 則當於 開捧/ 卽爲指飭 隨排定准數來納是矣/ 如或漫違 難免抵罪 以此知悉爲宜事
十二日
行官

6-2-12) 계유년 장흥도호부사 첩보의 초본

[계유년에 장흥도호부사가 전라도 순찰사에게 산하 각 섬의 세금 부과 대상을 조사, 보고한 첩보의 초고 등본. 계유년이 어느 해인지 확정할 수는 없으나 각 섬에 세금을 부과하기 시작한 것은 18세

기 후반 이후이므로 1813년 또는 1873년의 문서로 보인다.]

계유년 8월 17일 순찰사巡察使의 영문營門에 보고한 문건의 초본
첩보함.

전에 도부到付된 관찰사의 비밀 감결[秘甘結]에 의거하여, 본 부府에 소속된 만치晚峙, 진목津木, 갈목槲木, 맹골孟骨 4개 섬의 백성들은 칼을 채워서 엄히 가두었습니다. 탈세를 조사하는 절차는 별도로 믿을 만한 심복을 보내어 기어코 자세히 파헤쳐서 책자로 만들고, 다시 헤아리실 사유를 보고하겠다고 이미 첩보하였습니다.

결수結數를 조사하여 세금의 충수를 매기는 일은 매우 신중하게 해야 하는 것이므로 매일 친히 믿을 만한 사람을 가려서 각 섬으로 보낼 때에, 충분히 신칙하여 창고마다 굶어모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4개 섬을 조사하여 얻은 것이 마침내 38복 6속이 되므로, 조목조목 책자로 만들어 올려 보냅니다. 해당 네 섬의 형상이 사마귀 같기도 하고 탄환 같기도 하여, 푸른 바다 속의 한 덩어리의 척박한 땅이라고 말할 만합니다.

癸酉八月十七日 報巡營門文章
爲牒報事 前矣到付使秘甘結內乙用良
本府所屬晚峙津木架孟骨四島
民人段 着枷嚴囚 漏稅查執之節
別遣可信耳目 期於詳覈修成冊
更報計料之由 已爲牒報爲有在果 查
結執摠 審慎自別 日擇親信人 送
各島之際 十分操飭 逐庫爬櫛是乎 則
四島查得 乃爲三十八卜六束乙仍于 條
列修成冊上使是在果 同四島之爲形
如瘥如丸 可謂蒼海一塊脊薄

6-2-13) 보길도의 해남 윤씨 집안에서 전라도 순찰사에게 소장 올리기 위해 작성한 기초 자료

[보길도의 해남 윤씨 집안에서 수령의 횡포를 전라도 순찰사에게 보고하기 위해 일자별로 기록한 기초 자료. 본문에 나오는 애순愛順은 17세기 중반 대의 윤 별좌 덕 호노이므로 이 자료는 해남 윤씨가 처음 연해전을 개발할 때의 자료라고 생각된다.]

…(원문 결락)… 숫자에 맞게 보내니, 그 이름을 모두 친히 적고 목을 묶어 가두었다. 그리고 곧바로 그 사령을 보내어 또 금쇄동金鎖洞의 장성한 여종 15명을 잡아오게 하였다. 만약 금쇄동에 여종이 없는 이유를 말하기라도 하면 반드시 백 배나 더 노여워하므로 또 부득이 숙모님 덕 및 사과司果 집에 애걸하여, 여종으로 15명을 맞추어 보냈는데, 또 모두 가두었다.

또 즉시 이전 한 사람을 차출하여 가형방假刑房이라 이름하고, 보길도甫吉島의 장성한 여종 20명을 잡아오게 하였다. 아전이 “바다 건너에 있는 곳인지라 본래 나룻배가 없는데다, 다른 관아의 땅이기도 하다.”고 말하고 또 더욱 노하여 “선격船格은 그의 집에서 마련해 보내게 하고, 여종은 그의 집에서 잡아보내게 하라.”고 하였다. 또 할 수 없이 선격을 정비하여 공급하고 ‘성경性敬’이라는 패牌를 만들어 보냈다. 그날 저녁에 쌀 50가마니를 맞추어 실어 보냈는데, 또 받지 않고, “성복 후에 마땅히 친히 받을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13일. 창고의 아전에게 물으니 창리가 “쌀 색깔이 어떠하나? 만약 아주 하얗지 않으면 큰 곤장으로 때리고 퇴짜를 놓을 것이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부득이 줄어드는 수를 감안하여 더 준비하고, 아울러 동네의 힘을 빌려서 새로 방아를 짚었습니다.

15일. 성복한 뒤에, 친히 감독하여 쌀을 50섬을 받은 후, 굶주린 백성들을 불러서 각각 3말씩을 지급하여 13가마니를 다 나누어 주고 나니 굶주린 백성들이 더 이상 오지 않았습니다. 또 그 밖의 쌀은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매일 굶주린 백성들이 올 때마다 그때그때 바치게 하였다고 합니다. 그 괴로움을 말로 다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창고의 아전[倉吏] 및 감관監官이 좋은 말로 모두 관고官庫에 넣어 주니, 이것도 다행이었습니다. (바칠 때에는) 또 매우 높게 계량을 해서, 준비한 62섬의 쌀로 겨우 50섬만 채울 수 있었습니다. 50섬 백미를 3일 내에 준비하고, 그 명령에 따라 다시 방아를 찌어 극히 희게 만들고, 또 그 명령에 따라 성 안에 놓아두고, 사람을 시켜 지키게 하였으며, 성복이 끝난 뒤에 전체 수량을 납부하였는데도, 장을 때리고 가두어 둔 남종 1명과 여종 30명은 풀어줄 뜻이 없이, 계속해서 보길도甫吉島의 여종이 오기를 독촉하였다. 지난 이전의 처에게 函(들으니), 이전에 남종을 장을 때린 후에 순영에다 날조하여 보고한 내용 중에, “윤아무개 부자의 집에는 온갖 물건이 끝없이 늘어져 있다.”는 등의 말이 있었는데, 모두 향소鄉所 및 대동감관大同監官의 문보文報에서 인용한 것처럼 언급하였습니다. 또 “그 두 종놈을 붙잡아 물어보니, 곡식이 없다고 대답하면서, 피모皮牟 4가마니를 문서로 납부하였는데, 그 언사가 공손하지 못하고, 더러 사목事目에 없다고 칭하는 등, 관원 앞에서 행악을 부리기에, 모두 태장笞杖 60대를 때리고 쌀 50가마니를 바치게 하였습니다. 운운.”이라고 하였습니다.

17일. 형리刑吏가 보길도의 여종 7명을 잡으러 왔습니다. 또 외촌外村에 산재되어 있는 여종으로 그 20명의 수를 채워서 보냈는데, 그들을 또 모두 가두었습니다. 18일. 성귀成貴가 죽었습니다. 가련하고 슬픈 마음이 어찌 한량이 있겠습니까? 19일. 간혀 있던 15명의 여종을 먼저 풀어주게 하면서, 각각 장杖 15, 16대나 20, 30대를 때린 후 풀어주었습니다. 그 장을 때릴 때, 형판에 엎어서 포박한 뒤에 큰 장

으로 그 다리의 뒤쪽 오금 아래를 때렸습니다. 그래서 15명의 다리 살이 모두 갈라져 썩고, 정강이와 무릎이 혈관에 부딪혀 모두 손상되었으며, 허리와 등은 모두 떠버렸습니다. 그 중에 응당 두서너 명은 죽을 자가 있을 것이며, 요행히 죽지 않은 자도 또한 연말까지 결코 몸을 움직이지 못할 것입니다.

20일, 관아의 업무가 끝나고, 해가 진 뒤에 옥중에 가둔 자들을 모두 석방하게 하였습니다. 나머지 구속되었던 여종 35명을 모두 석방하였는데, 그렇게 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한 아전을 시켜 여러 여종들에게 말을 전하기를, “너희들도 또한 모두 장을 맞아야 할 것이나, 농번기라서 감해주는 것이니, 나의 마음을 너희는 알아야 할 것이다. 운운.”이라고 하였습니다.

23일, 저녁에 약장^{約長}에게 집안의 사환^{使喚} 및 이저^{籬底}의 장성한 종 20명을 초록하여 들이라고 명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즉시 눈으로 본 것을 모조리 적어 가라고 하였더니, 그가 말하기를, “집안의 사환과 이저로 20명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안 그러면 형세 상반드시 죽게 될 것이니,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운운.”라고 하였습니다. 두 종에게 장을 때리고, 50명의 여종을 잡아들일 때, 호하^{戶下}의 노비들이 놀라서 혼비백산 거의 다 도주해버렸고, 남은 자는 4,5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부득이 현재 남아 있는 수를 모두 기록하게 하고, 가까운 마을에 산재해 있는 노비를 더하여 20명의 수를 채워서 보냈습니다. 그날 밤에 노비들이 그 소식을 듣고서, 모두 즉시 도망하여 흩어졌습니다. 그 이웃, 그 일족^{一族}, 그 이웃의 이웃, 그 일족의 일족을 합하여 한 동네 100여 호가 일시에 도망쳐 흩어지니, 참으로 산이 무너지고 가둔 물이 터지는 기세와 같아 막을 길이 없었습니다. 가까운 마을의 노비들도 모두 그러하였고 그 이웃, 그 일족이 또 모두 그러하였으며 외장^{外庄}의 노비 및 그 이웃, 그 일족도 모두 또 그러하였습니다. 그 가산을 잃고, 그 농업을 버렸습니다. 우리 집의 노복 중에 경내에 있는 자는 수십 호에 불과한데, 그 이웃의 이웃, 일족의 일족까지 모두 아우르면 실업자가 거의 천여 가에 이르는 셈이니, 이것이 어찌 작은 변고이겠습니까? 다리가 썩어 움직이지 못하는 여종 15명 외에 더 이상 남은 자가 없었습니다. 혹자는 20명을 잡아들여 사령^{使令}, 문지기로 나누어 쓰려고 한다고도 하고, 혹자는 성귀^{成貴}가 죽어버리자 그 가까운 무리들이 고소장을 올릴까 염려하여 이 20명의 종들을 가두어 공갈하면서 재갈을 물려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고도 하였습니다. 그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겠으나, 가만히 생각건대 20명의 종을 잡아 바쳐서 더 이상 남은 화가 없게 될 수 있다면, 비록 호노^{戶奴}가 부족하여 다른 관원의 종까지 더하더라도 또한 감지덕지할 것이지만, 그러나 20명 뒤에 필시 또 즉시 금채동, 보길도의 여종들의 경우처럼 40, 50, 또는 60, 70명을 잡아들일 것이니, 이는 이웃이나 족속의 집안에서 빌릴 수도 없으니, 어디에서 마련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진실로 난감하거니와, 이것뿐만 아니다. 바야흐로 굶주려서 결식하며 농사도 짓지 못하는 종이 갑자기 잡아가 관역을 제공하도록 내몰린다면, 어찌 도망치지 않을 리가 있겠습니까? 도망치면 문득 주인집에 수차지^{四次知}(도망친 죄수 대신 관련자를 구속하여 당사자가 나오도록 하는 것)의 책임을 지우고 각박하게 독촉할 것이니, 이 괴로움은 더더욱 어떻게 감내할 수 있겠습니까? 하물며 홀로 빈 집에 앉아 수족이 전혀 없어지고 도망치고 흩어진 종은 추쇄할 길이 없으니,

일이 이미 이 지경에 이르게 되면 전혀 일상적인 이치로 헤아릴 수 없게 된다. 나 자신에게 화가 미쳐, 당장 눈앞에 닥치게 될까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단기單驕로 탈출하여 서울의 친정으로 향하려고 하였는데, 온 집안의 식솔들을 버리듯이 떠나게 되니, 문 밖에서 사령이 호령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집안의 양식은 비로 쓴 듯 떨어진 지 이미 오래니, 곡성이 하늘을 찌를 듯하였습니다. 생각하자면 가련하고 슬프지만 또한 더 어찌 하겠습니까? 그 후의 소식을 전해 들으니, 향소鄉所 및 하인배들을 엄히 독촉하여 내가 간 곳을 기어코 찾아내어 고하게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모두 중형에 처하였다고 합니다. 또 듣기로 관청에서 파견된 사람[官差]이 계속 이어졌는데, 잡아갈 만한 종은 없고 그저 다리가 썩은 여종만 보이므로, 버리고 갔다고 합니다.

또 듣기로 27일에 비로소 이전에 올린 보장報狀에 대한 서목書目이 이르렀는데, “윤씨 집안의 부유함은 온 나라에 이름이 나 있는데, 피모皮牟 4섬을 납부하겠다고 쓴 것은 실로 관원을 놀리는 것이다. 본관이 엄하게 징계해야 하겠다. 다만 쌀을 납부하게 하였으니, 필시 짙느라고 고생이 많을 것이다. 차라리 모牟나 조租 수백 섬을 대신 받아쓰는 것이 어떻겠는가? 운운.” 이라고 제題하였다고 합니다. 순찰사께서 무슨 수로 이런 지극히 원통한 정상을 살피실 수 있겠는가? 이것이 더욱 심히 답답한 이유입니다.

서목書目이 도착한 뒤에 간혀 있던 중 애순愛順을 더 이상 장을 때리지 않고 즉시 석방하였다고 합니다. 그가 또 죽을까봐 염려해서 인 것 같습니다만 그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또 듣기로, 우리 집의 호적을 베껴 내고, 나를 포함하는 보장報狀을 발송하였다고 하는데,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

准數而送之 并親錄其名 項封而囚之 旋送
其使令 又令捉金鎖洞壯婢十五名 若言金鎖
無婢之故 則必百倍其怒 故又不得已乞得叔母主
宅 及司果家婢子 准十五而送之 又并囚之 又卽差
一吏 名曰假刑房 令捉甫吉島壯婢二十名 吏言 係
是越海之處 本無津船 且是他官地云 則又益
怒曰 船格令渠家備送 而婢子令渠家捉給云 又不
得已整給船格 作牌性敬以送之 其日夕 准米五
十石輸進 則又不捧曰 成服後當親捧云 十三
日問於倉吏曰 米色如何 若不甚白 則當大杖而退之
云 又不得已加備應縮之數 并乞洞力改舂之 十五
日成服後 親監量捧五十石後 招飢民各給三斗

盡十三石之後 飢民不至 又令其外之米 仍逢□□
待逐日 飢民之來 旋旋納之云 其苦可勝爲□□
倉吏及監官善辭令 畢入官庫 斯亦幸矣 □
時又極高量所備六十二石之米 董充五十石也 十五
日成服後 親監量捧五十石後 招飢民各給三斗
盡十三石之後 飢民不至 又令其外之米 仍逢□□
待逐日 飢民之來 旋旋納之云 其苦可勝爲□□
倉吏及監官善辭令 畢入官庫 斯亦幸矣 □
時又極高量 所備六十二石之米 董充五十石也 五
十白米 三日內準備 依其令改舂極白 又依其令接
置城中 使人直守 待成服後畢數以納 而所囚杖
奴一名婢子三十名 無意放之 連督甫吉婢子 至□
去吏之妻 此前杖奴之後 構報巡營 有尹某父
子家 百物陳陳相因等語 而皆稱鄉所及大同監官
文報內云云 又曰 捉其兩奴而問之 以無穀爲對 書納
皮牟四石 言辭不恭 或稱無事目 官前揚惡
并笞杖六十度 令米五十石輸納云云 十七日刑
吏捉甫吉婢七名而來 又以外村散在婢子 准其
二十之數送之 又并囚之 十八日成貴致斃
憐慘何量 十九日令先出放囚十五婢 各杖十五
六或二十三十而放之 當其杖時 伏縛於刑板
以大杖杖其脚後 吾古音底 故十五名脚肉并
裂破而腐 脛膝着板并傷 腰背皆浮 其
中應有兩三死者 而幸而不死者 亦終此歲決
不得運身也 二十日罷衙日沒後 令自獄中
盡放餘囚婢三十五名 此則未知其故也 令一吏
傳語於諸婢曰 汝輩亦當盡杖 而爲農極而減之
吾情汝其知之云云 二十三日夕 令約長抄錄家內
使喚及籬底壯奴二十名以納云 卽令盡所見錄
去云云 則渠言非不知家內籬底不能滿廿 而勢
必到死 罔知所措云云 當其杖二奴捉五十婢之時 戶
下奴婢 驚怯禿魄 逃走殆盡 所存未滿四五 不

得已令盡錄現存之數 添以近村散在之奴婢 滿其廿數 以去其夜奴婢輩聞之 并卽逃散其隣其族 其隣之隣其族之族 合一洞百餘戶 一時奔散 眞如山崩水潰之勢 無計止遏 近村奴婢 亦皆如是 其隣其族 又并如是 外庄之奴婢及其隣其族 并又如此 失其家產 棄其農業 吾家奴僕之在境內者 不過數十戶 而并其隣之隣族之族 則失業者殆至千餘家 此豈小變哉 脚腐不動

之婢十五名外 更無遺類 或言欲捉二十名 分用於使令門直云 或言成貴致斃 慮其切屬告狀 因此廿奴 以爲恐喝箝制 使不得動云 未知其意何居 而窃念廿奴捉納而更無餘禍 則雖戶奴不足 而添以他官之奴亦所甘心 而廿名之後必又卽捉四五十或六七十名 有如金鎖甫吉□ 婢子之爲 則此不可乞諸隣族之家 從何辨得乎 此固難堪 而非徒此也 方飢餓乞食 不得鋤芸之奴 猝然捉致 驅供官役 則豈有不逃之理 逃則輒責於主家 囚次知 刻督童殺 此苦尤何以堪 況獨坐空家 全沒手足 逃散之奴 無計推得 而事已至此 殊不可以常理揆之 禍之及己 慮在卽目 故不得已單騎脫身 將向洛下親庭 渾家眷聚棄之如遺 門外使令 叫呼不絕 家中糧料 掃絕已久 哭聲干雲 願念憐惻 而亦復奈何 傳聞追後之音 嚴督鄉所及下輩 期覓我之去處 而告之不然 則當并重刑云 又聞官差絡繹 而無奴可捉 只見腐脚之婢而棄去云 又聞廿七日 前者報狀書目始到 題曰 尹家之富 名於一國 皮牟四石書納 實是玩弄 自本官痛徵爲可 但令納米 則必以春正爲苦 何不以牟或租數百石取用乎云云 使家何由察此至冤之狀 此尤極悶者也 書日到後 囚奴愛順 不更杖卽放 送云 盖慮其又斃耶 未知其故 又聞吾家

戶籍謄出 構我報狀發送云 而未知其措
語云何

6-2-14) 병술년 감역택 표

[병술년 감역택監役宅 김금이 현산縣山 두모포斗毛浦 소금 가마[鹽釜]의 세금에 대하여 이를 영구히
탈품한다는 것을 증명한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표.]

현산縣山 두모포斗毛浦 염부鹽釜(소금 가마)는 연동蓮洞 감역택監役宅이 관리하는 곳인데, 염분鹽盆은
(세금을) 보고한 총 수[報摠]에 들어가지 않은 것이니 영구히 빼주도록 아뢰고[頃稟], 이 표標를 증거
로 시행할 것.

병술 10월 15일 감역택監役宅 김금 [착명]

[인印]

縣山斗毛浦鹽釜段

蓮洞

監役宅所幹者 則鹽

盆不入於報摠是如

乎 永永頃稟 以此

憑標施行事

丙戌十月十五日 監役宅

金[著名]

제7장

분산墳山 수호와 산송山訟

해설

자료

1. 분산 수호와 묘위전답
2. 해남 백련동 산송
3. 강진 덕정동 산송 I
4. 강진 덕정동 산송 II
5. 19세기 분산 수호와 위선爲先 사업

유교식 상장례喪葬禮와 분묘

조선시대 사대부가에서 조상의 분산을 수호하는 일은 위선사업爲先事業의 차원에서 주요 관심의 대상이었다. 유교 이념을 기반으로 개창한 조선 왕조는 국초부터 유교식 의례를 보급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였고, 16세기를 거치며 『주자가례』에 의거한 유교식 의례가 사대부들 사이에 본격적으로 보급되어 갔다. 이에 따라 상장례에 있어서도 삼년상三年喪과 유월장殯月葬이 이전 사회의 불교식 화장 법火葬法을 대체해 갔다.

상장례의 변화는 ‘조상의 분묘 수호’라는 새로운 사회적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사대부가에서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길지를 선정하여 분묘를 조성하고 이를 수호하는 일에 정성을 쏟았다. 사대부들에게 조상의 분산을 수호하는 일은 효의 실천이라는 차원에서 살아계신 부모를 섬기는 것에 못지않은 중차대한 일이었다. 이는 개인의 차원에만 머무는 것은 아니었다. 유교 사회의 진전과 함께 진행된 부계친족질서의 형성 과정에서 부계 조상의 분묘 주위에 부계 자손들이 묘를 쓰는 경향이 두드러졌고, 조상의 분산에 부계 자손들의 분묘들이 집중하는 이른바 ‘종산宗山’이 나타났다. 종산을 수호하는 일은 종산 내에 분묘를 수호하는 족인族人들이 연대하거나 문중(또는 종중)의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그 과정에서 족인들간에 또는 문중 차원에서 합의에 근거하여 분묘 수호를 위한 규약을 만들고 묘위전墓位田을 마련하는 등의 일련의 사업들이 위선사업爲先事業의 차원에서 추진되었다.

한편에서 분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확대는 사회적 ‘경쟁’과 이른바 ‘괴열’ 현상을 초래하였다. 조상의 분묘자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길지에 대한 욕구가 타인의 분산을 침해하거나 경계가 충돌하여 분쟁으로 이어졌던 것이다. 이러한 사회 갈등 현상이 바로 ‘산송山訟’이다.¹ 조선 후기 사대부가로서 산송 한번 겪지 않은 집안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산송은 한 사회를 열풍처럼 휩쓸고 지나갔다. 특히 산송은 침해를 당한 분묘의 모든 자손들이 연관되기 때문에 한 개인의 소송에 머무는 경우는 드물

1 김경숙, 『조선 후기 산송과 사회갈등』,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02 참조

고, 해당 자손들이 연대하여 공동으로 대처하였다. 또한 조상의 분산을 수호하지 못하고 침해를 당했다는 사실은 효의 실현이라는 측면과 함께 향촌사회에서 그 집안의 '가격家格' 유지라는 측면과도 관련되었으므로 물러설 수 없는 사안이었다. 때문에 일단 산송이 발생하면 쉽사리 해결되지 못하고 집 단화하고 장기화하고 격화하는 특징을 보였다.

조선시대 사대부가에는 분산 수호 및 산송과 관련한 상당수 문서들이 생산, 보존되어 전해지고 있다. 해남윤씨가에도 이와 관련한 입의立意, 통문通文, 소지류所志類, 완문完文, 간찰簡札, 수기手記, 공문서 사본 등의 각종 문서들이 전하고 있다. 여기에는 17세기 중반에서 18세기 초에 분산 수호를 위해 묘위전墓位田을 마련하고 죽인들 간에 합의하고 규약을 정하는 문서들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18세기 중반부터 19세기 말까지 수차례의 산송을 겪으면서 관에 정소呈訴한 청원서와 관의 공문서 사본들이 전하고 있다. 그리고 19세기 중후반 분산을 수호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간찰 및 각종 잡문서들도 상당수 전하고 있다.

분산 수호와 묘위전답墓位田畝

해남윤씨가에서 수호하는 선대 분산은 주로 근거지를 중심으로 집중되어 강진, 해남 일대에 분포하였다. 『해남윤씨문헌』 및 『해남윤씨세보』²에서 확인되는 선대 분산의 위치는 다음과 같다.

<도표 1> 해남윤씨가의 분산 위치³

성명	入葬 시기	분산 위치	성명	入葬 시기	분산 위치
윤사보		강진 덕정동	윤이석	1694.3	과천 東月峙下
윤 경		강진 덕정동		1890.春	강진 德井洞 尹耕墓下 32步
윤희정	1542.2	해남 백련동 德蔭山下		1893.4	영암 松旨面 安局洞 해남 松旨面 舊銀巢安局
윤 구	1549	해남 백련동 右岡後	윤두서	1716.春	강진 白道 橘亭公墓下
		강진 白道面 幹頭里		1718	가평 朝宗面 圓通山
윤희중	1572.10	해남 백련동 右岡後		1729.夏	김포 江邊 龜伏亭
	1627	田巨里後		1746	파주 新屬面 牛尾曙

2 김경숙, 「조선후기 사대부가의 遠地墳山과 遷葬」, 『사학연구』 103, 2011에 수록된 표를 수정 보완하였음.

3 해남 입향조인 윤희정의 조부에서 18세기에 이르기까지의 해남윤씨 종손가의 분묘 위치임

성명	入葬 시기	분산 위치	성명	入葬 시기	분산 위치
윤홍중	1673	해남 縣治南30里 孔巢洞	윤두서	1782. 春	강진 덕정동
윤유기	1619. 5	양주 蘆原		1783. 春	해남 蓮洞 어초은공묘하
	1631	해남 縣西 黃原面 茅溪		1784. 4	영암 玉泉面 竹川 道林亭
윤선도	1671. 6	해남 金鎖洞		1828. 12	해남 縣山面 白浦村上
윤인미	1674. 4	해남 縣南30리 高湌山 (현산면 고담 안산마을)	윤덕희	1777. 春	영암 남쪽 達摩山 葛頭
					해남 花山面 觀仙佛 辰坐

강진 덕정동 분산은 윤사보, 윤경의 양대 분산이 형성되어 있다. 해남 입향조인 윤효정의 선대에 조성된 분산이다. 윤경의 여섯 아들 중 막내아들이었던 윤효정이 해남으로 이거하여 어초은파를 형성하고 넷째 아들은 평양으로 이거하였으나, 강진에 정착한 네 아들들은 덕정동 분산에 계좌하였다. 때문에 덕정동 분산은 윤효정 자손들뿐만 아니라 강진에 정착해서 세거하는 계파들 모두가 수호하는 선대 분산으로 해남윤씨가 이른바 ‘시원지始原地’에 해당하였다. 해남에 정착한 윤효정 대 이후에는 백련동을 비롯하여 해남 일대를 중심으로 분산이 형성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해남윤씨가에서는 이들 덕정동, 백련동 등 분산을 수호하기 위하여 자손들이 합의하여 규약과 재원을 마련하는 위선사업을 거행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16세기 이후로 분산 수호를 위한 위선사업이 활성화되는 사회적 추세 속에서 해남윤씨는 17세기 중반에 이 같은 움직임이 본격화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를 선도적으로 추진했던 인물이 윤선도尹善道(1587~1671)이다. 그는 윤유심尹唯深의 아들로 윤유기에게 입후되어 해남윤씨 종손가의 가계를 계승한 인물이다. 그에 대해서는 주로 남인의 거두로서의 정치 활동이나 가사 문학을 대표하는 문인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러한 측면 외에도 그는 가계를 계승한 종손으로서 가정家政을 운영하고 집안을 번성시키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자손들에게 남긴 ‘충헌공가훈忠憲公家訓’은 이 집안의 가정 운영의 원칙이자 기준이 되었다.

그는 선대의 분산을 정비하고 천장하는 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여 윤구·윤홍중·윤유기 3대 분묘를 천장하였다. 또한 강진 덕정동 분산의 수호와 묘제 설행을 위한 자손들 간의 협력 체제를 구축하였다. ‘1649년 파산 선조 묘위답 문권 - 참의 윤선도댁 소장 문권’은 당시의 상황을 잘 보여준다. 그는 1649년(인조 27)에 강진 파지대면 덕정동 선산의 윤사보와 윤경 분묘를 수호하고 묘제를 설행하기 위하여 내외 자손들과 합의하여 자손 각 댁에서 묘위답墓位畓을 각출하여 설정하고 정식定式을 제정하여 입의立議를 작성하였다. 이 때 동일한 내용으로 문서를 여러 건 작성하여 15댁에 나누어 보관하였는데, 윤선도, 윤선계, 윤인미, 엄정구 등 네 댁에 소장된 문서가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다.

이에 따르면, 좌통례 부군左通禮府君 윤사보와 부인 송씨 분묘, 그리고 참의 부군參議府君 윤경과 부인 이씨, 정씨 분묘가 종손가의 친진親盡으로 인하여 제사가 끊어지고 분묘를 돌보지 않아 훼손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종손가에 맡겨두지 않고 내외 자손들이 공동으로 제사 비용과 묘위답을 마련하기로 합의하였다. 제사 비용을 위한 기금은 내외 자손 중에 성인으로 제한하여 정목 1필, 정미 1두를 내

고, 묘에서 가까운 자손을 해마다 2사람씩 돌아가며 정하여 매년 9월에 묘제를 거행하였다. 묘위답은 각덕에서 유사에게 값을 받고 논을 내어 마련하였는데, 문서 뒷부분의 답록畝錄를 보면 각 덕에서 각출한 논이 위치와 규모, 지급받은 논값 등이 해당 덕의 착서着書와 함께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그 후 50여 년이 지난 후인 1702년에 이르면 윤선도의 증손 윤두서가 다시 분산 수호를 위한 내외 자손들 간의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윤유기의 내외 자손 12덕에 유통輪通한 통문 2건이 전하고 있다. 2건 모두 윤두서에 의해 작성되었는데, 그는 고조부 윤유기의 분산을 수호하고 묘제를 거행하기 위하여 내외 자손들이 묘위전을 마련하기로 논의하고 각 덕별로 형편의 차이를 고려하여 각출할 재물의 수량을 열거해서 통문을 돌렸다. 이 통문은 종가를 비롯하여 노량덕, 남산동덕, 인천덕, 심침판덕, 이생원덕, 용인가, 학관가, 양서방가, 모산가, 종남가, 침지가, 도정가 등 총 12덕에 유통되었다. (7-1-2, 1702년 윤두서 통문) 그런데 이 통문만으로는 각출 진행 상황이 원활하지 못하였는지, 이듬해 1703년 4월에 동일 내용으로 다시 동일한 각 덕에 통문을 돌리고 있다. 이 때는 전 해에 분정했던 각덕의 각출 수량을 절반 정도로 줄여서 분정한 모습이 인상적이다. (7-1-3, 1703년 윤두서 통문)

이들 문서는 해남윤씨가에서 17세기를 전후하여 윤선도 및 윤두서 대에 내외 자손들의 합의를 바탕으로 덕정동 및 백련동의 분산 수호와 묘제 설행을 위한 묘위전답을 마련해 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특히 참여 범위가 해당 분산의 내외 자손을 망라하고 있고, 지역적으로도 해남에 국한되지 않고 경향京鄕을 아울러 연대하고 있으며, 각출 방식에 있어서도 각 덕에 일률적으로 분정分定하지 않고 빈부에 따라 차등을 두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또한 윤선도가는 윤희정 대에 이미 해남으로 이거하여 수대 동안 정착하고 있었지만 원래의 근거지인 강진의 5, 6대 선조의 분산을 강진 계파에 맡겨두지 않고 주도적으로 내외 자손의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모습도 분산 수호와 위선사업의 연대 범위를 보여 주고 있어 주목되는 부분이다.

해남 백련동 산송

해남 백련동은 어초은漁樵隱 윤희정尹孝貞이 강진에서 이거하여 정착한 곳으로 현재까지 후손들이 세거하고 있다. 윤희정이 해남에 입향한 것은 해남의 대부호였던 호장 정귀영鄭貴暉의 사위가 된 것이 계기가 되었다. 그는 처음에는 해남 미암산 아래 성북 처가에 살다가 덕음산德音山 자락의 백련동으로 옮겨 정착하였다. 그는 세상을 떠난 후에도 집 뒤쪽의 숲속에 입장入葬하여 분묘를 조성하였다. 이에 따라 백련동은 종가 녹우당을 중심으로 어초은공의 분묘와 사당 및 재실 추원당이 모여 있는 해

남윤씨의 요람지라 할 수 있다.⁴

백련동의 윤희정 분산은 바로 산 아래 지척에 증가가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수호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조선후기 산송은 이처럼 지척의 분산도 비켜가지 못하였다. 백련동 분산의 분쟁과 관련하여 두 건의 문서가 전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1714년 무렵에 종인인 윤이순(尹爾循)이 분산을 침경(侵耕)한 사건이다. 사건의 진행과정은 알 수 없지만 화해 과정에서 윤이순이 종종 침회(會)에게 작성해 준 불망기를 통해 그 대체적인 내용을 짐작할 수 있다. (7-2-1, 1714년 윤이순 불망기(不忘記)).

이에 따르면, 백련동 어초은공 분산 근처 입암(立巖) 아래에 윤이순의 옛집이 있었는데 오래되어 집은 허물어지고 빈터만 남아 있었다. 그는 이 빈터에 경작을 시작한 이후로 한해 두해 갈수록 점차 어초은공 분산을 침범하였다. 이에 따라 윤씨 종중에서는 분산의 사산(四山) 국가가 민동산이 되어감을 우려하여 종인들이 모두 모여 경작을 금지하였다. 윤이순은 결국 그동안 침범하여 밭을 일구었던 백일홍나무 밭 5승락지, 분산의 동쪽 길 아래의 계곡 남쪽에 있는 3단짜리 밭 1두락지, 계곡 북쪽의 밭 3승락지 등 모두 1두 8승락지의 밭을 포기하는 불망기를 종중에 작성해 준다. 종중에서는 불망기를 받고 해당 자리에 모였던 6인이 서명하였고, 윤두서가 문서 말미에 해당 사실을 기록하고 서명함으로써 훗날 분쟁의 재발 가능성을 차단하였다.

윤이순의 침경 사건은 종중과 화해함으로써 해결되었으나, 이로부터 40여 년 후인 1753년에 이르러서는 산송이 발생하여 마을 전체가 산송에 휩쓸리게 된다. (7-2-2, 윤탁 등이 해남현에 올린 등장), (7-2-3, 1755년 백련동 상하 민인들의 등장) 사건은 1752년(영조 28)에 영암 사는 백사휴(白思休)가 그 부친을 백련동에서 마주보이는 안산에 투장(偷葬)하면서 시작되었다. 윤씨가에서는 종손이었던 윤덕희가 나서서 투장묘는 백련동 분산에서 대충(對沖) 지점으로 금장의 대상임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백사휴 측에서는 대충에 해당되지 않으며, 또한 부친 묘 뒤에 같은 방향의 고총(古塚)이 있는데 자신만 금장함은 부당하다고 맞섰다. 소송은 해남에서 끝나지 못하고 관찰사에게 의송 정소하는 단계까지 발전하였다. 특히 백사휴 측에서는 윤덕희에 대하여 호강하고 부유함을 믿고 부친 묘를 사굴하려 한다고 주장하여 득송하였다. 이에 따라 1753년 정월에 윤덕희의 아들 윤탁 등이 연명으로 해남현에 등장을 올려 투장묘가 대충 지점에 있으며, 부친을 호강과 사굴로 엮은 것은 무함이라고 항변하였다. 나아가 백가의 투장 이후로 마을에 줄초상이 나서 마을 사람들이 모두 흩어지는 상황임을 호소하였다. (7-2-2, 윤탁 등이 해남현에 올린 등장)

소송은 쉽사리 해결되지 못하고 수년 동안 계속되면서 백련동 마을 전체의 소송으로 확대되었다. 특히 전임관이었던 조아무개 관찰사 시절에 백가와 백련동 민인들을 한자리에서 심문하는 과정에서

4 해남윤씨 굴정공파 종친회, 『해남윤씨 5백년 요람지 녹우당』, 도서출판 정미문화, 2007 참조

고충이 정 함평의 묘라는 주장이 제기되어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고, 결국 윤씨측과 백련동 민인들은 낙승하게 되었다. 그러나 윤씨측과 백련동 민인들은 이에 승복하지 않고 관찰사가 교체되기를 기다렸다가 신임 관찰사가 부임한 이후에 다시 정소활동을 전개한다. 1755년 8월에 백련동 상하민인들이 연명으로 전라도 관찰사에게 올린 의송은 이러한 상황에서 나온 것이었다. (7-2-3, 1755년 백련동 상하 민인들의 등장)

이 문서에서 백련동 민인들은 소송의 쟁점이 되었던 문제 즉, 고충이 정 함평의 분묘인지 여부와 고충과 백사휴 부친 분묘가 같은 방향으로 백련동에 대충 지점인가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주장을 펼쳤다. 그리고 백가의 투장 이후로 마을에 변고가 계속 이어져서 인민들이 거의 반이나 흩어지고 소말들이 죽어나가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수백호의 큰 마을이 파산하는 지경에 이르지 않도록 호소하였다. 이에 대하여 관찰사는 ‘적간한 후에 파내는 것이 마땅하면 백가를 옥에 가두어 금장하고 독축해 파내라’는 내용으로 산재관인 해남 현감에게 명하는 제사題辭를 내리고 있다.

소송의 결말과는 별개로 본 산송은 백련동 상하민인이 모두 나서서 마을 전체의 소송으로 전개되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투장묘가 백련동에서 마주보이는 안산案山에 위치하여 윤씨가 분산뿐만 아니라 마을 전체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끼치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윤씨가와 마을 상하민들이 연대하여 대처하였다. 이는 조선시대 사대부가와 마을 민인들이 어떤 방식으로 협력 관계를 형성하였는지 그 구체적인 실상을 보여주며, 그 저변에는 Moral Economy의 호혜적 관계에서 형성된 사대부가와 민인들의 상호 이해에 기초한 연대 의식이 깔려있다고 본다.

강진 덕정동 산송⁵

해남윤씨가에서는 17세기 중반 윤선도 대에 죽인들의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주도적으로 강진 덕정동 분산 수호를 추진하였다. 그런데 18, 19세기에 이르러 윤씨가에서는 윤이석尹爾錫(1626~1694), 윤두서尹斗緒(1668~1715) 양대의 분묘를 덕정동 분산으로 천장遷葬하는 과정에서 일부 계파의 저항에 부딪쳐 두 차례의 산송을 겪게 된다. 산송이 조선후기 사회를 휩쓸었던 시대적 상황을 배경으로 부계 친족 집단 내의 계파 간의 대립과 갈등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윤이석, 윤두서 분묘를 덕정동 분산으로 천장하게 된 계기는 이 집안의 활동 범위가 도성과 해남에

5 이 부분은 줄고, 「조선후기 사대부가의 遠地墳山과 遷葬」, 『사학연구』 103의 내용을 요약하였음.

걸쳐있고 나아가 근거지를 서울로 옮기려고 시도했던 데서 연유하였다. 즉, 윤이석은 1694년에 도성에서 사망하여 과천에 분묘를 썼고, 윤두서는 1715년에 해남에서 사망하였으나 서울로 돌아갈 것을 희망하여 강진에 임시로 묘를 썼다가 1718년에 경기도 가평으로 옮겨갔다. 윤두서의 아들 윤덕희尹德熙(1685~1776) 대에는 아예 서울로 이주를 시도하였다. 그는 부모 및 누대의 선대 선산이 모두 경기도에 있어 선산을 수호할 필요성과 혼인망을 확보한다는 명분을 앞세워 1731년 봄에 가솔들을 모두 거느리고 서울로 옮겨갔다. 그러나 끝내 서울에 정착하지 못하고 20여 년이 지난 1752년에 그는 다시 해남으로 돌아오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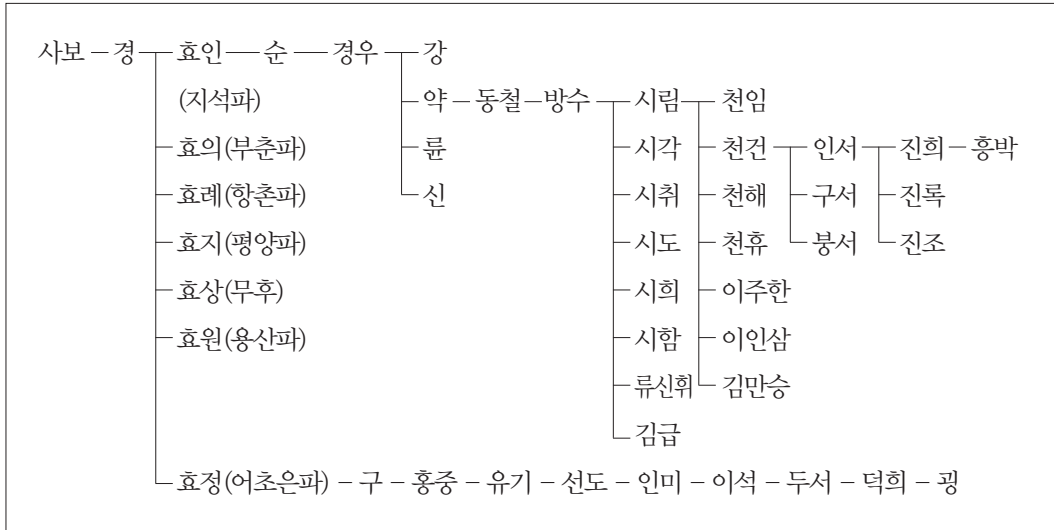
윤덕희가 다시 해남에 돌아온 이후로 이 집안은 경기도의 선대 분산을 수호하는 문제에 다시 봉착하게 된다. 천리 먼 곳의 묘제를 때 맞추어 봉행하지도 못하고 분묘를 침범하여 훼손하고 분산의 나무를 작별하는 침해를 당하는 데도 막을 방도가 없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18세기 후반과 19세기 후반 두 차례에 걸쳐 윤두서와 윤이석의 분묘를 경기도에서 강진 덕정동 선산으로 천장을 시도하였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강진 계과의 일부 족인들이 강하게 저항하며 금장禁葬하고 나서 결국 두차례의 산송에 휘말리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해남윤씨 측에서 강진현 및 전라도 관찰사에게 제출했던 소지, 등장 및 의송 등 상당수의 청원서들과 공문서 사본들이 남아 전하고 있다.

첫 산송은 1782년 봄에 윤두서의 손자 윤굉尹愷(1728~1793)이 주도하여 조부모인 윤두서와 두 부인의 분묘를 천장하는 과정에서 윤흥박 부자와 발생한 소송이다. 1782년 12월에 윤굉 등 48명이 연명으로 전라도 관찰사에게 정소한 의송議送에 따르면, 그해 봄에 윤씨가에서는 윤두서 부부 분묘를 덕정동에 천장하기 이전에 이미 다른 두 곳을 택산擇山하여 역사役事를 추진하였다. 그러나 묘자리를 파는 과정에서 두 곳 모두 바위가 나와 세 번째 묘자리로 선정한 곳이 덕정동이었다.

공교롭게도 덕정동의 묘자리는 족인들 사이에 역장逆葬의 혐의가 있는 곳으로 이전에도 이미 종중의 두 집안에서 서로 입장하려고 충돌한 적이 있었다. 당시 윤굉의 고조부 헌납공[윤이석]이 문장으로 있으면서 두 집안을 설득하여 묘자리를 쓰지 않고 비워두기로 정했던 그 자리였다. 이러한 이유로 윤굉가에서는 천장하기 전에 문중에 애걸하여 문장 및 장로들의 허락을 받았다. 그러나 막상 역사를 시작하자 문중 일파인 윤흥박과 윤효원 부자가 일파 족인들을 거느리고 와서 역장을 명분으로 금장하였다. 이에 윤굉측에서는 다시 윤흥박 측에 여러 날을 애걸한 결과 허락을 얻어 장례를 치를 수 있었으나, 5개월이 지난 9월에 윤흥박 부자 및 윤덕찬이 주도하여 강진현에 정소하면서 결국 산송으로 발전하였다. (7-3-3, 1782년에 윤굉 등이 전라도 관찰사에게 올린 의송)

윤흥박은 윤경의 장자인 효인孝仁의 후손으로 강진에 세거하는 집안이었다.⁶ 다음의 세계도는 윤

6 윤흥박(尹興亳)은 줄고, 『조선후기 사대부가의 遠地墳山과 遷葬』, 『사학연구』 103에서 윤흥호(尹興毫)로 파악하였으나, 한국고문서자료관 홈페이지에서 웹서비스하는 탈초 및 원문 사진에 의거하여 윤흥박임을 확인하였고 이를 근거로 『해남윤씨 대동보』에서 그의 세계를 확인할 수 있었음을 밝혀둔다.



<도표 2> 윤경 후손들의 계파⁷

경 자손들의 계파와 윤흥박의 가계상 위치를 잘 보여준다.

윤경의 일곱 아들 중에 효상은 자손이 단절되었고, 나머지 여섯 아들 중에 넷째아들 효지는 평양, 막내아들 효정은 해남으로 이주하였다. 그 외의 나머지 네 아들은 덕정동 분산에 계장하였고, 그 후손들이 강진에 정착하여 세거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해남윤씨 대동보』에 따르면, 흥박은 장자 효인의 후손으로 경우景佑대 이후부터는 분산이 강진 도암면 지식리 및 동령東嶺 뒷산에 집중되어 있으나, 효인의 분묘가 덕정동에 있고, 그의 아들 순 또한 처음에는 도암면 강성江城 풍동楓洞에 입장하였다가 후에 덕정동 부친묘 오른쪽 언덕으로 이장하였다. 흥박은 윤경의 장파長派 후손으로 덕정동에 원대 분산을 수호하는 상황이었음을 알 수 있다.

소송의 쟁점은 역장에 모아졌는데, 현장을 조사한 결과 덕정동 분산에는 이전에도 이미 역장의 사례들이 있다는 점이 지적되어 윤굉측이 득송하였다. 당시 결송 직전에 입장을 허락하며 관의 처벌을 기다린다는 내용의 다짐拷音이 남아있는데, 장두狀頭 윤덕찬尹德贊, 문장 윤도서尹道緒의 이름으로 작성되어 있다. 소송은 윤흥박이 직접 나서지 않고 해남에 거주하는 윤덕찬을 장두로 내세웠음을 알 수 있다. (7-3-4, 1782년 문장 윤도서, 장두 윤덕찬의 다짐)

윤굉 측이 득송하자 윤흥박 측에서는 이에 승복하지 않고 전라도 관찰사에게 정소하였다. 그러나

7 한국학중앙연구원, 『고문서집성』 3- 해남윤씨편 해제 및 해남윤씨 중앙종친회 홈페이지에 웹서비스하는 『해남윤씨 대동보』에 근거하여 작성함. (<http://www.dmook.co.kr/genealogy/?seq=295599>)

결과는 뒤집히지 않았다. 결국 윤흥박 측에서는 그해 11월에 천장한 윤두서 부부 분묘를 사적으로 파내버리는 사굴私掘을 감행하고, 윤재흥이 스스로 관에 나가 사굴하였다고 자수하였다. 강진관의 명으로 11월 14일 유흥소에서 사굴 현장을 적간하고 분묘가 훼손된 상황을 확인하여 강진관에 보고하였고, (7-3-5, 1782년 윤굉 조부모총 사굴처 적간기) 강진관에서는 20일에 사굴 상황을 전라도 관찰사에게 보고하였다. (7-3-6, 강진현감 첩보 사본)

한편, 선대 분묘가 파헤쳐지는 변을 당한 윤굉 측에서는 강진현에 등장을 올려 윤재흥이 사굴한 것이 아니며 주범은 윤흥박 부자인데 유리 걸식하는 얼속孽屬 윤재흥을 백금으로 유인하여 사굴죄를 담당하게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7-3-1, 1782년에 윤굉 등이 강진현감에 올린 등장)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12월 28일에는 전라도 관찰사에 의송을 제출하여 윤흥박 부자가 윤재흥을 사주하여 사굴한 죄를 엄히 다스려 줄 것을 요구하였다. 관찰사는 이에 대하여 엄히 조율照律할 것이니 번거롭게 정소하지 말라는 처분을 하였다. (7-3-2, 1782년에 윤굉 등이 전라도 관찰사에게 올린 의송) 그러나 바로 다음날 윤굉 측에서는 다시 관찰사에게 의송을 올려 윤흥박 부자의 사굴죄를 처벌해 줄 것을 독촉하여 ‘금방 엄히 조사하여 처단할 것’이라는 처분을 받아냈다. (7-3-3, 1782년에 윤굉 등이 전라도 관찰사에게 올린 의송)

본 소송과 관련된 문서는 여기까지이다. 윤굉측의 정소활동 결과 윤흥박 부자는 유배형에 처해졌으나 몇 달이 지나도 유배길에 오르지 않자 윤굉 측에서 다시 윤흥박의 처벌을 요구하는 소지를 올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결국 윤굉측은 산송에서 득송하였으나 파헤쳐진 윤두서 분묘는 끝내 제자리도 회복되지 못하고 해남 백련동 윤희정 분묘 아래로 이장하였다가 영암을 거쳐 현재는 해남 백포리 윤두서 고택 옆에 있다. 1828년 12월에 백포리에 윤두서 묘를 이장하고 사산 국내에 자손들이 범장하지 않도록 완문을 작성한 사실은 이러한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7-5-6, 1828년 문중의 분산수호 완문). 윤흥박은 소송에서 패소하고 스스로는 유배 죄인이 되었지만 윤두서 분묘를 덕정동 선산에 입장하지 못하게 하는 데는 뜻을 이루었다.

19세기 말에 이르러서 윤씨가는 다시 한번 덕정동 산송에 휘말리게 된다. 1890년에 윤관하 등이 윤이석의 분묘를 강진에서 덕정동 선산으로 천장하는 과정에서 일부 종인들이 금장하고 나섰던 것이다. 소송은 윤기하, 윤경조, 윤계원 등이 강진관에 정소하면서 시작되었다. 윤관하 측에서는 덕정동 선산은 종족 4파가 계장繼葬한 것이 27총에 이르는데, 같은 선조의 자손인 자신들만 금장하는 것은 부당함을 주장하였다. 강진관에서는 현장을 조사하고 산도를 그렸는데, 그 과정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하였고 윤관하 측의 윤주태가 관에서 파견한 장차將差를 구타한 죄목으로 옥에 갇히는 상황으로 치달았다. 윤관하 측에서 소송 양측이 모두 모여야 하지만 자신들을 기다리지 않고 윤기하 측만 참여하여 일방적으로 산도山圖를 그렸다고 주장하였다. (7-4-1, 1890년 윤관하 등이 강진현에 올린 단자) 사건은 무력 충돌의 상황까지 전개되면서 치열하게 대결하였으나 10여 일 만에 극적으로 타결되었다. 윤관하 측에서 윤이석 묘를 다른 곳으로 천장하기로 합의하고 해남 윤씨가 5개파가 모두 모여

회복할 것을 다짐하였는데, 당시 작성된 합의문서가 전하고 있다. (7-4-8, 1890년 문회소 합의문서)

이로써 산송은 일단락되는 듯하였으나 3년 후인 1893년 1월에 윤관하 측에서 다시 강진현에 정소함으로써 소송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정소 내용은 덕정동 선산에 이장한 윤이석 분묘를 종인 윤봉거가 사굴하였다는 것이다. 윤관하 측에서 윤이석 분묘를 이장하기로 문중과 합의하였으나 1893년에 이르기까지 수년 동안 차일피일 미루자 상대측에서 윤봉거가 나서서 분묘를 사굴하고 관에 자수하였던 것이다. (7-4-2, 1893년 윤관하 등이 강진현에 올린 단자) 윤관하 측에서는 윤봉거의 처벌을 요구하며 강진현 및 전라도 관찰사에게 수차례 정소활동을 전개하였다. (7-4-3~7-4-6) 그 과정에서 강진 현감이 자리를 떠서 공관空官인 때에는 겸임兼任인 해남현에 정소하였으며, 윤봉거가 사굴을 빙자하여 옥바라지 비용이며 유배 비용 등의 명목을 문중에서 징수하여 개인 주머니를 채운 사정을 호소하기도 하였다. (7-4-6, 1893년 윤관하 등이 해남현에 올린 단자) 이와 함께 지인을 통해 강진 현감에게 간찰을 보내 소송의 전후 사정을 설명하고 잘 처리해 줄 것을 부탁하기도 하였다. (7-4-12, 1893년 잡문기) 이처럼 적극적으로 정소 활동을 전개한 결과 사굴한 윤봉거는 유배형에 처해졌으나, 사굴당한 윤이석의 분묘는 결국 덕정동 선산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다른 이장처를 찾아야 했다.

이듬해 1894년에 윤관하 측에서는 영암 송지면 안국동安局洞에서 새로운 이장처를 찾아 윤이석 묘를 이장하였다. 그런데 이번에는 진도에 사는 이문옥이 자신의 금양 구역임을 주장하며 금장하고 나서 또다시 산송에 휘말리게 된다. 윤씨측에서는 윤관하 등 15인이 연명으로 영암 군수에게 정소하는 등장을 작성하였다. 해당 묘자리를 친척 할아버지 윤응호가 친산을 이장하고 매표埋標한 곳으로 산 아래 사는 임도순에게서 구입하여 입장하였음을 주장하는 내용이었다. (7-4-7, 1894년 윤관하 등이 영암 군수에게 올리기 위해 작성한 등장)

현재 전하는 이 등장은 관의 테깁, 착관着官 및 관인이 찍혀있지 않은 백문기로 남아있다. 정소할 때 사본을 만들어 두었는지, 아니면 아예 제출하지 못한 것인지는 현재로서는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이 외에도 영암 산송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는 간찰 단편들이 남아 전하고 있다. 윤관하의 친구로 추정되는 인물이 영암 군수에게 윤관하의 산송 전말을 설명하면서 잘 처리해 줄 것을 당부하는 내용이다. (7-4-9, 1894년 잡문기), (7-4-10, 1894년 잡문기), (7-4-11, 1894년 잡문기) 그러나 산송의 결말을 알려주는 내용은 문서 어디에도 찾을 수 없다. 다만 『해남윤씨 대동보』에 따르면 현재 윤이석의 분묘가 해남 송지면 군곡리의 구은소안국舊銀巢安局에 위치하고 있어, 그 결말을 짐작해 볼 수 있다.⁸

이상의 덕정동 두 산송은 매우 닮아있다. 해남으로 이거한 어초은과 후손들이 입장하는 것을 강진

8 해남 송지면은 조선시대에 영암 송지면에 해당하고, '예전의 은소 안국'이라 하여 안국동 명칭이 남아있는 점으로 볼 때, 『해남윤씨 대동보』에 기록된 윤이석의 분묘 위치는 영암 송지면 안국동으로 파악된다.

계파가 금장하는 상황이다. 특히 윤두서와 윤이석 분묘 모두 사굴이라는 극단적인 저항에 부딪쳐 소송의 결과와는 관계없이 결국 덕정동에 입산하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이장한 점이 주목된다. 이와 함께 족산의 수호 및 산송에서 문중의 역할이 주목된다. 족산에는 후손들이 계장한 묘들이 즐비하여 법전의 보수 규정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문중의 논의와 합의에 따라 결정하였다. 윤굉 가에서도 덕정동에 입산하기 전에 미리 문중의 허락을 받았고 이는 소송 과정에서 정당성을 확보하는 근거로 작용하였다. 또한 족인 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문중은 양측을 중재하고 화해(和會)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 조선후기 문중은 친족 간의 갈등 한복판에서 양자의 이해를 조정하고 갈등을 완화시켜 가족 친족의 관계성을 회복하고 유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19세기 분산 수호와 묘위전답 운영

조선후기 산송이 성행하는 사회적 상황 속에서 해남윤씨가에서도 18세기 중반부터 19세기 말에 이르기까지 해남 백련동 및 강진 덕정동 선산에서 수차례에 걸쳐 산송을 겪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해남윤씨가에서는 한편으로는 이들 산송에 적극 대응하는 동시에 다른 한편에서는 종가 및 문중 차원에서 분산 수호를 위해 관에서 부세 혜택을 확보하고, 묘위전답을 경영하고, 산 아래의 재실이나 추모당을 보수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그 과정에서 배자(配子), 완문(完文), 수기(手記), 통문(通文) 등 다양한 문서들이 생산되어 전해오고 있다.

(7-5-1), (7-5-2), (7-5-3) 문서는 백도 산소[굴정공 윤구 분산] 수호를 위한 묘위전답 운영의 구체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경오년에 연동택에서 대천 사는 서흥주에게 묘위전답의 경작을 맡기는 배자(配子)는 묘위전답의 경작 문제를 잘 보여준다. 이에 따르면 묘위전답의 규모는 9두락지로 영암 옥천면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착실하게 경작하여 풍년을 기약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7-5-1, 경오년 연동택이 서흥주에게 주는 배자) 병술년에 연포(蓮浦) 종중에서 백도 분산 아래에 사는 종인 윤종율이 경작하던 묘위전답을 환수하는 문서는 종인들 중에 묘위전답을 차지하려는 이들의 존재를 알려준다. 가세가 넉넉하지 못했던 윤종율은 묘위전답을 갈아먹고 있었는데, 매년 제향 때마다 문중에서 추심하자는 논의가 일다가 급기야 관에 소송을 제기하려는 움직임으로 발전하였다. 결국 윤종율은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자신의 처지를 호소하며 자신이 집안 일을 담당하게 되면 즉시 돌려주어 산지기가 경작하게 할 것을 약속하는 수표를 문중에 작성해 주었다. (7-5-2, 병술년 윤종율이 연포 종중에 주는 수기) 또 한편에서는 문중의 묘위전답을 문중에 알리지도 않고 몇몇 종인이 몰래 팔아먹는 사건도 발생하였다. (7-5-3, 1897년 윤종연 등이 영암군에 올린 단자) 이들은 분산을 수호하기 위해

설정된 묘위답의 운영 실상을 보여준다. 문중에서는 종인보다는 산지기를 통한 운영을 지향하였으며, 종인이 묘위전답을 경작하는 경우에는 문중에서 상당히 견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분산 수호를 위해 관에서 부세를 면제받는 모습들도 확인된다. 계유년에는 어촌은공 윤희정의 분묘와 별묘가 있는 연동의 연호잡역을 조정의 정책이 바뀐에 따라 다시 징수 대상이 되었으나, 면중面中에서 매년 춘추로 8냥씩 대신 징수하고 계속 면제하도록 완문을 발급해 주었다.(7-5-4, 계유년 면중에서 연동에 발급한 완문) 해남현에서도 올해년에 연동의 환분, 군정, 연호잡역을 면제하는 완문을 관련 이항吏鄕들이 모두 서명해서 발급하였다.(7-5-5, 올해년 해남관에서 연동에 발급한 완문)

또한 분산 아래 건립한 묘우 및 추원당을 보수하는 역사를 추진하면서 문중 각파에 통문을 보내 협조를 요청하기도 하였다. 1840년에는 윤희정 분묘의 추원당을 건립한지 12년이 지나 처마 서까래에 누수가 발생한 부분을 수리하면서 문중 각파에 의연금을 모으기 위하여 통문을 발송하였다.(7-5-8, 추원당 회석에서 문중 각파에 보낸 회문) 갑진년에는 윤선도 묘우墓宇의 중문이 썩어 무너지자 연동과 백포 문중에서 나서서 보수하고 빚을 갚기 위하여 방계 족친 문중에 통문을 돌려 보조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7-5-7, 갑진년 방친 문중에 보내는 회문) 이들 통문은 각 계파의 문중들이 연대하여 분산 수호를 위한 위선사업을 추진하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19세기를 거치며 해남윤씨가에서는 분산 수호를 위하여 묘위전답을 운영하고, 관에 부세를 면제받기 위해 완문을 발급받고, 재실을 보수하는 역사를 진행하는 등 여러 방면으로 위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이들 사업은 백련동 종가와 연포 문중을 중심으로 경향涼鄕을 아우르는 자손들의 협력과 연대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그 바탕에는 각 파 문중들을 긴밀하게 연결시키는 관계망이 작동하고 있었다.

참고문헌

한국학중앙연구원, 『고문서집성』3 - 해남윤씨편 정서본

해남윤씨 중앙종친회 홈페이지(<http://www.haenamyun.com>)

한국학자료포털, 한국고문서자료관 홈페이지(<http://archive.aks.ac.kr>)

문숙자, 「17세기 해남윤씨가의 墓位土 설치와 墓祭 설행 양상 : 친족결합 장치와 宗家의 역할에 대한 고찰」, 『역사와 현실』 87, 2013.

김경숙, 「조선후기 사대부가의 遠地墳山과 遷葬」, 『사학연구』 103, 2011.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조선 양반의 일생』, 글항아리, 2009.

해남윤씨 굴정공파 종친회, 『해남윤씨 5백년 요람지 녹우당』, 도서출판 정미문화, 2007.

김경숙, 「조선후기 산송과 사회갈등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02.

안승준, 「16~18세기 海南尹氏家門의 土地·奴婢所有實態와 經營: 海南 尹氏古文書를 中心으로」, 『청계사학』 6, 1989.

1. 분산 수호와 묘위전담

7-1-1) 1649년 파산 선조 묘위담 문권(참의 윤선도댁 소장 문권)

[1649년(효종 즉위) 윤선도를 중심으로 해남윤씨가 자손들이 파산^{파산} 즉 강진 파지대면 덕정동에 위치한 6대조 윤사보 부부, 5대조 윤경 부부 분산의 수호를 위하여 묘위담을 마련하고 분산 수호 및 묘제에 관하여 합의한 입의^{立議} 문서이다. 같은 내용으로 15통의 문권을 만들어 여러 자손가에 나누어 전쟁이나 문서가 유실될 것을 대비하였는데, 이 문서는 윤선도댁에 소장된 문권이다. 이 외에도 같은 내용으로 윤선계, 윤인미, 엄정구 등 세 자손가에 소장되었던 문권이 현재까지 남아 전하고 있다. (1649년 윤생원선계댁소장문권^{尹生員善繼宅所藏文券}, 1649년 윤별좌인미댁소장문권^{尹別坐仁美宅所藏文券}, 1649년 엄승지정구댁소장문권^{嚴承旨鼎壽宅所藏文券} 참조)⁹

참의 윤선도댁 소장 문권

기축년(1649) 5월 29일 파산^{파산} 선조 묘위담 문권

파산 6대조 증 통훈대부 통례원 좌통례^{通禮院 左通禮} 부군[윤사보] 묘와 조모 증 숙인 송씨묘, 5대조 증 통정대부 병조 참의 부군[윤경] 묘와 조모 증 숙부인 이씨묘 및 조모 증 숙부인 정씨묘는 종가가 친진^{親盡}하여 주사자^{主祀者}가 없다. 내외 자손들이 거의 천여 명이 넘지만 제사가 영원히 단절되고 나뭇꾼과 목동들의 침범을 금하지 않고 분묘가 무너지고 훼손되어 사라지는 것을 좌시하고 있으니 어찌 인정이며 천리이겠는가?

이 때문에 여러 자손들이 상의하여 의리로 일어나^{義起} : 예법은 아니지만 의리로서 행하는 예법 내외 자손들 중에 성인으로 한정하여 각각 정목 1필, 정미 1두씩 각출하여 분묘 근처에 사는 성손^{姓孫}

⁹ 자료 부분에 수록된 문서들은 한국학자료센터 한국고문서자료관(<http://archive.aks.ac.kr>)에서 웹서비스하고 있는 탈초 및 역주를 바탕으로 하였음을 밝혀둔다.

을 해마다 2사람씩 돌아가며 정하여 미포를 주관하게 한다. 매해 9월 15일에 제사를 설행하는데, 6대 조 묘 앞에 조모 한 분을 합사^{合祀}하여 함께 한 상 및 산신 한 상, 5대조 묘 앞에 조모 두 분을 합사하여 함께 한 상 및 산신 한 상을 규칙으로 정한다. 이는 대개 고례^{古禮}의 ‘해마다 종인을 거느리고 제사를 한 번 지낸다’는 뜻을 본뜨고, 또한 우리나라 명가들의 근례^{近例}에 의거하였다.

당초에는 매해 주관하는 유사로 하여금(미포를)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 그 일[제사]를 영구히 지내려고 하였으나 또한 해가 오래되면 폐단이 생길 것을 우려하였다. 또 제위답을 분묘 가까운 곳에 사들 것을 도모하였으나 땅이 귀하고 값이 치솟아 끝내 뜻대로 하기 힘들었다. 이에 부득이 여러 자손들이 상의하여 마땅함을 헤아려 유사에게 값을 받고 좋은 논 약간 두락을 각출해 내었다. 답록^{答錄}은 각각 자필로 쓰고 서압^{書押}하여 같은 모양으로 문권 15통을 만들어 여러 주요 자손가에 나누어 보내 전쟁과 서실^{喪失}에 대비하고, 오래 지난 후에 논 주인의 자손들 중에서 혹시라도 잡담이 있으면 현재 여러 자손들이 서로 함께 관에 고하여 무거운 죄로 논할 것.

一. 뒤에 기록한 묘위답은 매해 주관하는 유사가 직접 원수^{元數}를 감수해서 장부에 올린다. 제사에 쓰고난 후에 남은 것을 장부에 올린다. 요역과 종자는 다음해 유사와 교체할 때에 마땅함을 헤아려 의논해서 제외한다. 영구히 천추의 향식으로 삼을 것.

입의에 증참한 여러 자손

통훈대부 전 행 세자시강원 문학 윤선도[착서], 전 행 병조 정랑 이재, 통훈대부 전 행 이조 정랑 엄정구[착서], 유학 윤선계[착서]

유학 윤선각[착서], 윤준경[착서], 윤응경[착서], 윤동로[착서], 윤방수[착서]

유학 이영인[착서], 윤일우[착서], 윤재우[착서], 백명헌[착서], 윤회천[착서]

문기를 나누어 소장한 여러 자손가

전 문학 윤선도가 1도

전 정랑 이재가 1도

전 정랑 엄정구가 1도

유학 윤선계가 1도

윤선창가 1도

유학 윤선각가 1도

윤준경가 1도

윤동로가 1도

윤방수가 1도

생원 윤인미가 1도

유학 이영인가 1도

유학 윤일우가 1도

윤재우가 1도

백명헌가 1도

윤희천가 1도

답록畵錄

파지대면 묘아래 시목원에 있는 지자답 정종_{正種} 5두락 16복 5속 곳. 6대손 통훈대부 전 행 세자시강원 문학 윤선도[작명][착서]

6대조 및 5대조 양대의 봉사조 전답이 필시 많을 것이나 종손 윤치경이 대진하여 사당의 제사가 오래 단절되었으니 그 봉사조 전답은 이치상 모두 추심해 내서 묘제에 쓰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그러나 윤치경은 이미 사망하였고 그의 손자인 7살짜리 아이만 있는데 종적을 물을 데가 없다. 따라서 부득이 수소문하여 윤치경가의 봉사조를 윤철성에게 방해한 논 5두락만 추심해 내서 묘제에 쓰는 것을 보태기로 입의_{立議}한 여러 자손들이 동의하여 결정하였다. 번거롭게 여러 사람들이 착서_{着書}하지 않아 문권을 간략하게 한다.

필집 유학 윤선징[착서]

영암 필마리 돌모로에 있는 함자답 4야미 정종 6두락 19복 9속, 양안 이름은 필산<동쪽은 상백의 논, 남쪽은 개천, 서쪽은 박 판관의 논, 북쪽은 산>. 같은 들, 같은 자호의 논 3야미 정종 5두락 17복 8속, 양안 이름은 필산<동쪽은 수양의 논, 남쪽은 득, 서쪽과 북쪽은 필산의 논>. 가작동 담자답 5야미 정종 9두락 곳 중에서 2작 10복 4속, 18복 3속을 합하여 28복 7속, 양안 이름은 필산, 동쪽은 주질개의 논, 남쪽과 서쪽은 득, 북쪽은 필산의 묵은 논[_{陳畵}]. 이상을 합하면 정종 20두락. (윤)선도의 가업_{家業}이 여러 족인들보다 넉넉하므로 값을 받지 않음. 답주 6대손 통훈대부 전 행 세자시강원 문학 윤선도[작명][착서], 필집 아들 생원 인미[착서]

강진 파지대면 귀출리 점동에 있는 봉자답 8야미, 정종 8두락 2작 22복, 양안 이름은 이춘<동쪽은 중봉의 논, 남쪽은 산, 서쪽은 팔세의 논, 북쪽은 도랑>, 값으로 정목 80필을 받음. 답주 자필 6대손 종사랑 윤선각[작명][착서]

강진 파지대면 지식리 아래에 있는 오자답 6야미 6두락 4복 2속 2작 4복 4속, 3작 6부 8속, 1복 5속, 또 5속. 양안 이름은 세옥<동쪽은 득노의 논, 북쪽은 산, 남쪽은 득, 서쪽은 승려 행순의 논>. 값으로 정목 55필을 받음. 답주 자필 6대손 유학 윤선창[착서]

강진 파지대면 중산_{中山} 아래에 있는 남자답 7야미 정종 6두락 2작을 아울러 14복 5속, 양안 이름

은 순희 <동쪽은 같은 사람의 눈, 남쪽은 후봉의 눈, 북쪽은 태동의 눈, 서쪽은 길>. 값으로 정목 40필을 받음. 답주 자필 8대손 유학 윤희천[작서]

강진 파지대면 병치兵峙 아래에 있는 대자답 3야미 정종 3두락 8복, 양안 이름은 정립 <동쪽은 성복의 눈, 남쪽은 남금의 눈, 서쪽은 어둔금의 눈, 북쪽은 산>. 값으로 정목 30필을 받음. 답주 자필 7대손 유학 윤방수[작서]

영암 종자평種子坪에 있는 꺾자답 6두락 내에 아래쪽 3두락 3야미 12복 내에 6복, 양안 이름은 덕금 <동쪽과 서쪽은 동일인의 눈, 남쪽과 북쪽은 막난의 눈>. 값으로 정목 30필을 받음. 답주 7대손 유학 윤응경[작서], 필집 유학 윤상필[작서]

영암 옥천면 신교평薪橋坪에 있는 대자답 2야미 정종 5두락 18복 9속, 양안 이름은 매남 <동쪽은 가질금의 눈, 남쪽은 신남의 눈, 서쪽은 득, 북쪽은 동일인의 눈>. 값으로 정목 30필을 받음. 답주 7대손 유학 윤일우[작서], 필집 전 사과 윤선양[작서][작서]

영암 옥천면 소을산동원所乙山洞園에 있는 성자답 5야미 정종 5두락 2작을 아울러 10복 7속, 양안 이름은 귀금 <동쪽과 남쪽은 큰 길, 서쪽은 태일의 눈, 북쪽은 매남의 밭>. 값으로 정목 40필을 받음. 답주 자필 7대손 유학 윤백우[작서]

영암 옥천면 대신代山 아래에 있는 동자답 2야미 정종 3두락 2작을 아울러 9복, 양안 이름은 마입리 <동쪽은 돌시의 눈, 남쪽은 선복의 눈, 서쪽은 돌시의 눈, 북쪽은 예산의 눈>. 값으로 정목 30필을 받음. 6대손 유학 윤조[작서], 필집 유학 윤백우[작서]

강진 파지대면에 있는 휘자답 정종 3두 5승락지 2작을 아울러 10복, 두 방향은 천복의 눈, 서쪽은 동일인의 눈, 북쪽은 도량>. 양안 이름은 막근. 값으로 정목 22필을 받음. 답주 자필 7대손 유학 윤반로[작서]

강진 파지대면에 있는 급자답 3두락지 <동쪽은 득, 서쪽은 상전의 눈, 남쪽은 동일인의 눈, 북쪽은 금박의 눈>. 양안 이름. 값으로 정목 30필을 받음. 답주 7대손 유학 윤의철[작서], 필집 8대손 유학 윤시매[작서]

값으로 정목 50필을 주고 정형도에게서 영암 옥천 쟁강동원爭江洞員에 있는 개자답 정종 6두락지

25복 3속 곳을 매득함. 문기는 유사가 궤에 소장함. 필집 유학 윤백우[작성]

값으로 정목 1동 5필을 주고 최옥에게서 정유년 4월 18일에 영암 옥천 혁등원(革登園)에 있는 윤자담 4두락 9복 7속 곳을 매득함. 문기는 유사가 궤에 소장함. 계축년 10월 12일에 추록함. 필집 유학 윤천후[작성]

값으로 정목 2동 30필을 주고 윤시망에게서 을미년 4월 3일에 영암 옥천 후동원(後洞員) <논은 들에 있는데 문기는 후동(後洞)으로 써있어 오서(誤書)일지 모르겠다>에 있는 수자담 9두락 27복 1속 곳을 매득함. 문기는 유사가 궤에 소장함. 계축년 10월 12일에 추록함. 필집 유학 윤천후[작성]

尹參議善道宅 所藏文券

己丑年 五月 二十九日 坡山先祖墓位畚 立券

坡山 六代祖考 贈通訓大夫通禮院左通禮府君墓 祖妣贈淑人宋氏墓 五代祖考 贈通政大夫兵曹參議府君墓 祖妣贈淑夫人李氏墓 祖妣贈淑夫人鄭氏墓 宗家親盡 主祀無人 內外諸孫 幾過千餘人 而香火永絕 樵牧不禁 坐視墳墓 頽毀漫滅 則豈人情天理也哉 是以諸孫 相議義起 限內外孫成人者 各出正木一疋正米一斗 輪定近墓姓孫 歲二人主管米布 每歲九月十五日 設祭六代祖考墓前 附妣一位共一卓 山神一卓 五代祖考墓前 附妣兩位共一卓 山神一卓 定規 此蓋做古禮歲率宗人一祭之意 亦依我國名家近例也 當初欲令每歲主管 有司 給貸取息 以永其事 而亦恐歲久則弊生 又謀買置祭位畚於近墓之處 而地貴價踊 卒難如意 不得已諸孫相議 量宜受價於有司 各出好畚若干斗 而畚錄則各自筆書之 署 一樣爲券十五道 分送表表諸孫家 以備兵火闕失 久後畚主子孫 或有雜言 則現在諸孫 相率告官重論事

一 左錄墓位畚 每歲主管有司 親自監收元數上冊 祭用後遺在上冊 徭役種子 則與翌年有司 交遞時 量宜議除 永爲千秋恒式事

證參立議諸孫

通訓大夫 前行世子侍講院文學 尹善道[着署], 前行兵曹正郎 李埜, 通訓大夫 前行吏曹正郎 嚴鼎耆[着署], 幼學 尹善繼[着署]

幼學 尹善覺[着署], 尹俊慶[着署], 尹應慶[着署], 尹東老[着署], 尹邦壽[着署]

幼學 李榮仁[着署], 尹一遇[着署], 尹再遇[着署], 白明憲[着署], 尹回天[着署]

文記分藏諸孫家

前文學 尹善道家 一道, 前正郎 李埜家 一道, 前正郎 嚴鼎耆家 一道, 幼學 尹善繼家 一道, 尹善昌家 一道

幼學 尹善覺家 一道, 尹俊慶家 一道, 尹東老家 一道, 尹邦壽家 一道, 生員 尹仁美家 一道,
幼學 李榮仁家 一道

幼學 尹一遇家 一道, 尹再遇家 一道, 白明憲家 一道, 尹回天家 一道

畚錄 坡之大墓下柿木員伏 知字畚 正種五斗落 十六卜五束庫 六代孫 通訓大夫 前行世子
侍講院文學 尹善道[着名][着署] <六代祖五代祖 兩代奉祀條 田畚必多 而宗孫尹致敬代
盡 祠堂香火久絕 則其奉祀田畚 理當沒數推出 以爲墓祭/ 之用 而尹致敬既歿 只有其孫
七歲兒 無蹤可問 故不得已隨所聞 尹致敬家奉祀條 尹哲成處放賣畚 五斗落_劣/ 推出 以
補墓祭之用 立議諸子孫 同議定奪 而煩不衆署 以簡文券> 筆執 幼學 尹善徵[着署]

靈巖 八馬里 芑毛老 鹹字畚 四夜未 正種陸斗落 拾玖卜玖束 量必山 <東尚白畚 南川 西朴判
官畚 北山> 同員 同字畚 參夜未 正種伍斗落 拾柒卜捌束 量必山 <東守陽畚 南吐 西北必
山畚> 可作洞 淡字畚 伍夜未 正種玖斗落 一庫中 二作 拾卜四束 拾捌卜參

束 合貳拾捌卜柒束 量必山 <東注叱介畚 南西吐 北必山陳畚> 已上 正種貳拾斗落 <善道家
業 優於諸族 故不受價> 畚主 六代孫 通訓大夫 前行世子侍講院文學 尹善道[着名][着署]
筆執 子 生員 仁美[着署]

康津 波之大面 貴出里 店洞 鳳字畚 八夜未 正種捌斗落 二作并貳拾貳卜 量李春 <東中峯畚
南山 西八世畚 北渠> 價正木捌拾貳受 畚主 自筆 六代孫 從仕郎 尹善覺[着名][着署]

康津 波之大 支石下 五字畚 六夜未 陸斗落 肆負貳束 二作肆負肆束 三作陸負捌束 壹負伍
束 又伍束 量玉世 <東得老畚 北山 南吐 西僧幸順畚> 價正木伍拾伍貳受 畚主 自筆 六代
孫 幼學 尹善昌[着署]

康津 波之大 中山下 男字畚 七夜未 正種陸斗落 二作并拾肆負伍束 量順喜 <東同人畚 南厚
奉畚 北太同畚 西道> 價正木肆拾貳受 畚主 自筆 八代孫 幼學 尹回天[着署]

康津 波之大 兵峙下 大字畚 參夜未 正種參斗落 捌卜 量丁立 <東成卜畚 南男金畚
西於屯金畚 北山> 價正木參拾貳受 畚主 自筆 七代孫 幼學 尹邦壽[着署]

靈岩 種子坪 闕字畚 陸斗落內 下邊 參斗落 三夜未 拾貳卜內陸卜 量德金 <東西同人畚 南北
莫難畚> 價正木參拾貳受 畚主 七代孫 幼學 尹應慶[着署] 筆執 幼學 尹商弼[着署]

靈岩 玉泉面 薪橋坪 大字畚 二夜未 正種伍斗落 拾捌卜玖束 量每男 <東靛金畚 南信男畚 西
吐 北同人畚> 價正木參拾貳受 畚主 七代孫 幼學 尹一遇[着署] 筆執 前司果 尹善養[着名]
[着署]

靈巖 玉泉面 所乙山洞員 成字畚 五夜未 正種伍斗落 二作并拾卜柒束 量貴金 <東南大道 西
太日畚 北每男田> 價正木肆拾貳受 畚主 自筆 七代孫 幼學 尹百遇[着署]

靈巖 玉泉面 代山下 冬字畚 二夜未 正種參斗落 二作并玖卜 量个入里 <東芑屎畚 南善卜畚
西芑屎畚 北禮山畚> 價正木參拾貳受 畚主 六代孫 幼學 尹遭[着署] 筆執 幼學 尹百遇[着

署]

康津 波之大伏在 毀字畚 正種參斗伍升落只 二作竝拾卜 二方千卜畚 西同人畚 北渠 量莫斤
價正木貳拾貳疋受 畚主 自筆 七代孫 幼學 尹礪老[着署]

康津 波之大伏在 及字畚 參斗落只 東吐 西祥錢畚 南同人畚 北金朴畚 量 價正木參拾疋受
畚主 七代孫 幼學 尹義哲[着署] 筆 八代孫 幼學 尹時邁[着署]

給價正木伍拾疋 鄭亨道處買得 靈岩 玉泉 爭江洞員伏在 芥字畚 正種陸斗落 貳拾伍卜參束
庫 文記有司櫃藏 筆執 幼學 尹百遇[着署]

給價正木一同五疋 崔沃處 丁酉四月十八日買得 靈岩 玉泉 革登員伏在 潤字畚 四斗落 九卜
七束庫 文記有司櫃藏 癸丑十月十二日追錄 筆執 幼學 尹天厚[着署]

給價正木二同三十疋 尹時望處 乙未四月初三日買得 靈岩 玉泉 後洞員<畚在於坪 而文記以
後洞書之 未知誤書也>伏在 水字畚 九斗落 二十七卜一束庫 文記有司櫃藏 癸丑十月十二
日追錄 筆執 幼學 尹天厚[着署]

7-1-2) 1702년 윤두서의 통문

[1702년(숙종 28) 4월에 해남윤씨가의 종손 윤두서尹斗緒가 여러 자손가에 보낸 통문. 관찰사를 역
임한 고조부 윤유기尹唯幾의 묘제 비용을 위한 묘위전 마련을 위하여 각 대 별로 액수를 분정分定하여
통지하고 있다.]

통문

이 통문을 하는 일은, 고조부 관찰공觀察公 윤유기尹唯幾(1554~1619)의 묘제를 여러 자손들이 돌
아가며 설행한 것이 오래되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하니 세대가 점차 멀어지고 자손들이 더욱 빈한해
져서 제사를 봉행하는 것이 혹시라도 그 정성을 다할 수 없게될까 우려됩니다. 이제 제사를 돌아가
며 지내고 있는 여러 내외 자손들과 재력을 각출하여 묘위전 약간을 마련하여 제사를 봉행하기로 의
논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 자손들의 빈부가 균등하지 않아서 만약 똑같이 재물을 내게 되면 일이 성
사될 날이 없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에 종가 이하를 모두 그 재력에 어울리게 많고 적음을 분정分定
하여 나열해 써서 통지합니다. 이제 받을 구입한 이후로는 밭에서 나는 소출로 제사를 받들고 대수가
다한 후에는 매해 한 번씩 분묘를 성묘할 때에 분묘 앞에 제사상 차리는[澆奠] 비용으로 합니다.

아! 무릇 자손된 자는 누가 선조를 받드는 정성이 없겠는가마는 뜻을 펼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재력이 넉넉하지 못한 경우도 있으니, 어찌 백대 후에도 분묘를 수호하고 묘제를 지낼 계책을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의논하는 것은 대개 지금 제사를 받드는 데 편하고 먼 훗날에도 분묘

를 수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여러분들께서 각각 먼 곳에 계셔서 직접 만나 약속할 수 없고 가계의 풍족하고 궁핍함을 상세히 헤아릴 수 없어서 걱정만 액수가 혹 경중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엇드려 바라건대, 여러분들께서 각 집에 맞는지 여부를 살펴 헤아려서 별록別錄 아래에 써주시기 바랍니다.

중가 20석	모산가 5석
노량댁 5석	중남가 5석
남산동댁 15석	침지가 25석
인천댁 5석	도정가 10석
심참판댁 10석	
이생원댁 10석	
용인가 4석	
학관가 8석	
양서방가 5석	

임오년(1702) 4월 일 종손 두서 [착서]
유사 동미

通文

右文爲 高祖考觀察公墓祭 諸子孫輪次行之久矣 竊
恐世代漸遠 子孫愈貧 香火之奉 或不能自盡其誠 今議
內外諸孫之輪次行祭者 各出財力 備若干墓田 以爲奉祭
之地 而第慮諸子孫貧富不等 若待其平均出物 則事成無日
自宗家以下 皆稱其力 分定多寡 列錄通諭 自今買田之後 以田
所出 奉祭代盡之後 則以爲歲一省掃時 澆奠之需 嗚呼 凡
爲子孫者 孰無奉先之誠 而情有所不能申 力有所不能
贍 百代以往 安能保守護拜奠之計 故爲此議者 盖爲卽今
奉祭之便 他日守護之地 但列位各在遠地 不能面約
家計之饒乏 有不能詳度 酌定之數 或不能無輕重之
不稱 伏望列位 審度各家稱停與否 懸書於別錄
之下 幸甚

宗家 二十石	茅山家 五石
鷺梁宅 五石	終南家 五石

南山洞宅 十五石	僉知家 二十五石
仁川宅 五石	都正家 十石
沈叅判宅 十石	
李生員宅 十石	
龍仁家 四石	
學官家 八石	
楊書房家 五石	

壬午 四月 日 宗孫 斗緒[着署]

有司 東美

7-1-3) 1703년 윤두서 통문

[1703년(숙종 29) 12월에 윤두서가 고조부의 내외 자손 각 댁에 보낸 통문. 관찰사를 지낸 고조부의 묘전을 마련하기 위해 각 댁에 분정分定한 재물 수량을 열거하여 통지하고 있다. ‘1702년 윤두서 통문’과 대부분 같은 내용이며 유통輪通하는 각 댁도 일치하는데, 다만 각댁에 분정된 수량만 절반 정도로 축소되어 있다. 1702년 의 각출 진행 상황이 원활하지 못하여 이듬해에 분정 수량을 축소해서 다시 통문을 돌리는 상황으로 추정된다.]

통문

이 통문을 하는 일은, 묘전은 비단 제사를 받들기 위함만이 아니라 묘지기를 보존하고 묘산墓山을 수호하는 것이 실로 묘전에 의지합니다. 그런데 고조부 관찰공觀察公 윤유기尹唯幾(1554~1619)의 묘소에 아직도 묘전이 없습니다. 이제 내외 자손들이 재력을 각출하여 묘전 약간을 마련하기로 의논하였는데, 다만 제 자손들의 빈부가 균등하지 않아서 만약 똑같이 재물을 내게 되면 일이 성사될 날이 없을까 우려됩니다. 이에 종가 이하를 모두 그 재력에 어울리게 차등있게 분정分定하여 나열해 써서 통지합니다. 다만 여러분들께서 각각 멀리 계셔서 직접 만나 의논하지 못하여 가계의 풍족하고 궁핍함을 상세히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분정한 수가 혹 경중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엿드려 바라건대, 여러분들께서 각 집에 합당한지 여부를 살펴 헤아려서 열록列錄한 아래에 써주시기 바랍니다.

- | | |
|---------------|---------------|
| ○종가 11석 갑신 봄 | ○양서방가 2석 갑신 봄 |
| ○노량댁 2석 을유 겨울 | ○모산가 2석 |

- 남산동택 8석 정해 봄 ○종남가 2석
- 인천택 2석 정해 봄 ○침지가 12석 병술 가을
- 심삼판택 5석 갑신 봄 ○도정가 5석 임진 봄
- 이생원택 5석 무자 봄
- 용인가 2석
- 학관가 4석 갑신 봄
- 계미년(1703) 12월 일 종손 두서[착서]
- 유사 동미[착서]

通文

右文爲 墓田非但爲奉香火 所以保存墓戶守護墓
 山者 實賴有田 而高祖考察公墓所 尙無
 墓田 今議內外子孫 各出財力 以備畧干田 而第慮諸
 子孫貧富不等 若待其平均出物 則事成無日 自宗家
 以下 皆稱其力 分定有差 列錄通諭 但列位各在
 遠地 不能面議 家計之饒乏 有不能詳度 所定之
 數 或不能無輕重之不稱 伏望列位審度各家
 稱當與否 縣書於列錄之下 幸甚

- 宗家 十一石 甲申春 ○楊書房家 二石 甲申春
- 鷺梁宅 二石 乙酉冬 ○茅山家 二石
- 南山洞宅 八石 丁亥春 ○終南家 二石
- 仁川宅 二石 丁亥春 ○僉知家 十二石 丙戌秋
- 沈叅判宅 五石 甲申春 ○都正家 五石 壬辰春
- 李生員宅 五石 戊子春
- 龍仁家 二石
- 學官家 四石 甲申春 有司 東美[着署]
- 癸未 十二月 日 宗孫 斗緒[着署]

2. 해남 백련동 산송

7-2-1) 1714년 윤이순 불망기¹⁰

[1714년(숙종 40)에 윤이순이 종중 침회^會에게 작성해 준 불망기. 그는 입암 아래의 옛 집터에 시작하여 백련동 윤효정 분산까지 침범하여 경작한 것을 스스로 폐지할 것을 다짐하는 내용이다. 그 자리에 모인 종중의 여러 윤씨들이 그 사실을 확인하는 서명을 하고, 말미에는 윤두서가 경작을 금지하게 된 사정을 기록하였다.]

〈2-1〉

갑오년(1714) 10월 15일 종중 침회^會에게 주는 불망기

이 문서를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백련동은 선조 어초은공[윤효정, 1476~1543]의 묘소이므로 평지의 원전^{元田} 외에 □…□ 산기슭 이상은 수목을 기르지 않은 곳이 없고 이미 □…□백년이 되었습니다. 이순의 집이 예전에 입암 아래에 있었는데 가사는 폐기되고 빈터에 경작한 후에 또 □…□(중가가) 멀리 있어서 한해 두해 점차 침범해 경작하였으니 참으로 부당한 일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모인 때에 스스로 돌아보아 □…□폐지하여 후일의 무궁한 폐단을 막는 일.

백일홍 나무를 심은 밭 5승락

동편 길 아래 계곡 남쪽의 편전^{片田} 3단 1두락

계곡 북쪽의 밭 3승락

전주 윤이순 [작성]

필집 윤덕희 [작성]

〈2-2〉

[작성]¹⁰

윤선적 [작성]

윤남미 [작성]

윤이송 [작성]

윤이보 [작성]

10 점려된 부분에 윤덕희의 작서가 있음

윤세헌 [작서]

윤이정 [작서]

지금 이 이순의 밭이 침범하여 경작했는지 여부는 손익이 심하지 않다. 그러나 사산(四山)이 날로 민둥산이 되어가는 때를 당하여 이를 그대로 두면 차후에 혹은 밭두둑으로 인하고 혹은 집 뒤라 하여 점차 침입하는 폐단이 없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지금 여러 종인들이 모두 모인 때에 함께 이 문서를 작성하여 후일의 무궁한 폐단을 막는다.

갑오년(1714) 10월 15일 윤두서 [작서]

<2-1>

甲午十月十五日 宗中僉會前 不忘記

右文爲 白蓮洞是

先祖漁樵隱公墓所 故平地元田之外□…□

山脚以上 無非樹木長養之地 已□…□

百年 而爾循家舊在立岩下 故□(家)

舍廢棄 空基耕作之後 且值宗□(家)…□

在遠 一年二年 漸次侵耕 則固爲

不當爲之事 今此僉會時 自顧□…□

廢 以杜後日無窮之弊事

百日紅樹田 五升落

東邊路下礪 南片田 三段一斗落

礪北田 三升落

田主 尹爾循[着署]

筆執 尹德熙[着署]

.....
<2-2>

<着署¹¹>

尹善積[着署]

尹南美[着署]

11 윤덕희의 着押과 동일 형태임

尹爾松[着署]

尹爾保[着署]

尹世憲[着署]

尹爾鼎[着署]

今此爾循之田 其侵
耕與否 無甚損益
而當此四山 日就濯
濯之日 此而置之 則
此後或因田畔 或因
家後 不無稍漸侵
入之弊 故今此諸
宗僉會時 同立此文
以杜後日無窮之
弊

甲午十月十五日 尹斗緒[着署]

7-2-2) 1753년 윤탁 등이 해남현에 올린 등장

[1753년(영조 29) 정월에 해남 백련동에 사는 윤덕희의 아들 윤탁(1718~1756) 등이 해남현에 올린 산송 관련 등장. 소송 상대자인 백가白哥가 윤탁의 부친이 호강함을 믿고 사굴을 시도했다고 영문에 정소한 것은 무고임을 주장하며 그 이유를 조목조목 들고 있다. 이에 대해 같은 달 24일에 해남관에서는 모든 것은 산도에 있으니 소견에 따라 영문에 보고할 것이고 처분은 영문에서 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처분하였다.]

백련동에 사는 민 윤탁, 윤수, 윤저 등

이렇게 삼가 소지로 말씀드리는 지극히 원통한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백가가 입장한 곳은 이미 성주님의 적간을 거쳤으니, 피차의 승패는 마땅히 처분을 기다려야 합니다. 다만 피척彼隻이 의송을 올려 제 부친을 얽어 무함하는 데 여력이 없으니, 사람의 자식된 자로 원통하고 분한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그 말의 허실과 진위를 비록 성주께서는 통촉하셨으나 영문에서는 이미 저들이 먼저 들인 말을 들었으니 필시 저의 집을 과연 호강한 일이 있다고 생각하여 끝내 그의 무함하는 실상을 살피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대강을 들어 성주님께서 □…□ 통촉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대개 호강하다는 말은 원래 근거할 사실이 없으므로 또 다시 두 무덤을 사굴했다는 말을 지어내서 얹어 무함하는 말을 채웠습니다. 아! 심합니다. 사람이 하는 말이 어찌 이 지경에 이른단 말입니까? 당초 저의 집이 다만 백가의 분산이 대충_{對中}이 되는 것만 알았지 다른 사람의 무덤과 □…□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백가와 변론할 때에 백가가 저에게 말하기를, “이곳에 경좌갑향¹²의 분산도 있는데, □…□(그것은 그대로 두고) 유독 우리 분산만 금장하는 것은 왜인가?”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만약 과연 있다면 어찌 금장하지 않을 이치가 있겠는가 라고 생각하여 그대로 그 곳을 가르쳐 주기를 청하여 자세히 살펴보았더니 □…□ 과연 저의 집 선산과 대충하는 것이 확실하였습니다. 그래서 즉시 분산 주인을 불러서 말하기를, “네가 입장한 곳이 우리 집 선산과 대충한다. 네가 만약 파서 옮기지 않으면 나는 마땅히 관에 정소하여 너와 상송_{相訟}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분산 주인이 과연 대충이 확실하면 하필 상송 □…□ 마땅히 파서 옮기겠다고 하고, 그로 인하여 날짜를 정해 파서 옮기겠다는 뜻으로 수기_{手記}를 써 주었습니다. 저의 집에서는 즉시 이 뜻으로 수기를 점련하여 입지_{立地}를 내 줄 것을 정소하였습니다. 성주께서 ‘□…□ 성급하는 일’로 데김을 내리셨는데, 오히려 저의 집에서는 입장한지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 유해를 움직이면 참으로 □…□할까 걱정하여, 일부러 가노_{家奴}를 보내 분산 주인에게 멀리 이장하지 말고 곧 그 자리에서 방향만 바꾸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피척이 많은 군인을 동원하여 주인 없는 두 무덤을 사굴하였다'고 영문에 포함하여 정소하고는, 그 또한 자신이 무함하였다는 것을 알아서 죽음촌_{竹蔭村}에 사는 백산이라는 놈을 불러서 제가 □…□ 사굴했다는 뜻으로 수기를 억지로 받아냈습니다. 그러나 백산이라는 자가 죽어도 백가를 따르지 않자 달리 나올 계책이 없어서 또 그 분산 주인인 점한_{店漢}의 집에 가서 하루종일 달래고 으르니 그 위령_{威命}에 겁먹어서 부득이 파서 옮긴 것처럼 억지로 수기를 받았습니다. 저의 집에서 그 일을 전해 듣고 어제 적간할 때에 비로소 그 단서를 □…□ 하였습니다. 성주께서 즉시 분산 주인을 불러 물으니 분산 주인이 과연 백가가 억지로 받아낸 것이 사실임을 바른 대로 고하였습니다. 성주께서 그 수기를 추심해 받아서 분산 주인에게 도로 주었습니다. 그런즉, 백가가 계략을 꾸며 사람을 모함한 실상은 이미 성주께서 밝게 살피시는 데서 도망갈 수 없고, 기타 무함한 □…□ 이로써 가히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백가의 의송에서는 제 부친이 호강하고 부유함을 믿고서 장차 그의 부친 무덤을 사굴하려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가 비록 남을 무함하여 얹는 데 급하여 말을 가려서 내뱉을 겨를이 없었다해도 어찌 그가 말하는 것이 위험하기가 이 지경에 이른단 말입니까? 사대부의 상송_{相訟}은 마땅히 옳고 그름으로 서로 다투고 관가의 처분을 기다릴 따름입니다. 저의 집은 원래 사족으로 대충 의리를 아는 데, 어찌 상한_{常漢}도 하지 않는 일을 하겠습니까? 그 말은 한번 웃음거리에도 차지 않으니 그와 더불어

12 경좌갑향(庚坐甲向) 묘자리가 서남쪽 자리에서 동북쪽을 바라보는 위치

어 쟁변하고 싶지 않습니다. 대저 피척이 입장한 곳은 보수가 다소 멀고 또 그의 집에서 대대로 전해 오는 땅이니, 저의 집에서 처음부터 어찌 금단할 뜻이 있었겠습니까? 다만 생각건대 묘문墓門이 서로 마주침을 꺼리는 것은 고금이나 경향京鄕을 막론하고 사람들마다 반드시 금지하는 바입니다. 백가가 입장한 이후로 저의 집과 같은 중중의 각파에서 줄초상의 변고는 말할 것도 없고, 저의 집만 하더라도 작년과 금년 중에 삼 시촌의 초상의 변고가 무려 17인이나 많기에 이르렀습니다. 어찌 묘문이 서로 마주치는 데서 말미암은 해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의 집은 다만 그 좌향을 조금 고치게 하려했을 뿐이지 원래 그 땅을 탈취하려는 계획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소장의 내용에서는 저의 집이 마치 금강하면 안되는 곳을 금강하여 자기 땅에 입장할 수 없게 한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 또한 무함한 한 단서입니다. 그의 의송에서 이른바 ‘묘 하나와 대충인 묘가 어찌 이렇게 많은가?’라고 한 것은 더욱 어불성설입니다. 묘 아래에 사당이 있고 사당 옆에 집이 있고 집 앞에 큰 마을이 나열해 있으니, 선산과 사우, 가사 및 큰 마을이 대충한다는 말이 과연 저희들의 억설입니까? 그가 이른바 ‘같은 좌향의 묘가 한 둘에 그치지 않는데, 어찌 일찍이 그들은 금하지 않고 유독 내 부친 묘만 방해하는가?’ 라고 하였습니다. 이른바 같은 좌향의 묘라는 것은 백가의 분묘 위에 또 무덤 하나가 있는데, 어제 성주께서 이미 하리를 보내 살펴보게 하여 하리가 고한 내용에, ‘이미 고충이고 또 대충이 아닙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 자손들이 있는지 없는지와 입장한 지가 오래되었는지 아닌지를 모두 알 수 없으니 이를 금단할 것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의 소장의 내용에는 또 ‘만약 금강할 수 있는 땅이라면 제가 부친을 입장한 지 이미 5년인데, 5년 내에 어찌 말 한마디 없다가 이제야 비로소 방해를 하는가?’라고 하였습니다. 저의 집이 수십 년 동안 서울에 살다가 작년 10월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 비로소 이와 같은 상황을 알게 되어 동짓달에 소송을 시작하였으니, 이것으로 말꼬리 잡을 단서를 삼을 수 있겠습니까? 또한 백가는 윤씨 외손입니다. 지금은 비록 멀어졌지만 저의 집 선조 분묘에서 보면 모두 같은 자손입니다. 하물며 그들이 사는 집터, 토지, 노복들도 우리 집 선조에서 분파된 재물입니다. 그가 출자를 생각하지 않고 제멋대로 선산과 상충하는 곳에 도점圖占하니 근본을 망각한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또 수령과 백성의 분수에 군신의 의리가 있는데, 그는 저의 집을 얻어 무함하기에 급급하여 관사를 기망하고도 조금도 거리낌이 없으니, 위를 기망한 것 또한 더 이상 말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은 장황하게 말하고 싶지 않지만 부친을 위하여 억울함을 소송하는 데 급하여 번거로움도 깨닫지 못하고 이에 이르렀습니다. 엇드려 바라건대 상세히 살피시어 □…□ 실상을 영문에 하나하나 보고할 때에 그 곡절을 모두 아뢰어 저의 부친이 악명을 당하는 것을 면하게 해주시기를 천번만번 매우 간절히 기원합니다.

처분하실 일

성주 처분

계유년(1753) 정월 일

[제사] 이른바 사굴이라는 말을 들으니 심히 경악스럽다. 적간하는 날에 두 무덤의 주인을 불러 물었더니 아된 바가 피척이 호소한 것과는 크게 다르고, 이 밖의 두 분산 사이의 거리 원근과 대충對沖여부는 모두 산도에 있다. 하나같이 소견에 따라 막 논보하고자 하니, 오직 영문에서 처분할 일이다.
24일

관 [작서]

□(白)蓮洞居民 尹恠愴悵 等

右謹言所志 至冤情由段 白哥入葬之處 既經 城主摘奸 則彼此立落 固當恭俟 處分 而第
彼隻議送 構捏矣父 不遺餘力 爲人子者 痛悶憤□…□
心爲如何哉 其言之虛實眞僞 城主雖或洞燭 而營門既聽彼輩先入之言 則必以矣家 果有豪
强之事 而終無以察其誣罔之狀 故略舉梗槩 以冀 二天之□…□
鑑燭焉 大槩豪强之說 元無事實之可據 故又做爲私掘二塚之說 以實其構捏之言 噫其甚矣
人之爲言 胡至於此 當初矣家 只知白山之爲對冲 而不知更□…□
他塚與白哥辨詰之際 白哥謂矣身曰 此處又有庚坐甲向之山 而曾□…□彼獨禁吾山 何也 矣
身以爲果若有之 則豈有不禁之理乎 仍請指示其處 仔細看審 則□…□
果與矣家先山 對冲的實 故卽招山主謂之曰 汝之所葬 與吾家先山對冲 汝若不爲掘移 則吾
當呈官 與之相訟云爾 則山主以爲果是對冲的實 則何必相訟□…□
當掘移矣 因以定日掘移之意 書納手記 矣家卽以此意 粘連手記 呈出立旨 城主以□…□給
事題下矣 矣家猶以爲年久之葬 動搖遺骸 誠爲□…□
愍 委送家奴 言于山主 使勿遠移 卽其地改其向而已 彼隻乃以多發軍人 私掘無主二塚 誣訴
營門 而彼亦自知其誣罔 故招致竹蔭村居白山爲名漢 欲以矣□…□
私掘之意 勒捧手記 則白山者抵死不從 白哥計無所出 又往其山主店漢之家 終日誘脅 以恟
於威令 不得已掘移樣 勒捧手記 矣家傳聞其事 昨日摘奸時 始發□…□
其端 城主卽招山主而問之 則山主果以白哥勒捧之事 從實直告 城主推納其手記 還給山主
則白哥設計陷人之狀 已不逃於 城主明鑑之下 其它誣罔之□…□
此可知矣 且白哥議送 以爲矣父恃其豪富 將欲私掘其父塚 彼雖急於構人 不暇擇發 何其爲
言之危險至此哉 士夫相訟 惟當以曲直相爭 以待 官家之處分
而已 矣家自是士族 而略知義理 則豈可爲常漢所不爲之事乎 其言不滿一哂 不欲與之爭卞也
大抵彼隻入葬之處 步數稍遠 且是彼家世傳之地 則矣家初豈有
禁斷之意也 第念墓門相冲之忌 無論古今京鄉 人人之所必禁 而自白哥入葬之後 矣家同宗中
各派 變喪之稠疊 姑勿言 只以矣家言之 昨今年內 三四寸喪變 至
於十七人之多 則安知不由於墓門相冲之害耶 矣家只欲使稍改其坐向而已 元無奪取其地之

計而彼之狀辭則有若矣家禁其不當禁之地使不得入葬於自己之地者然此亦誣罔之一端也彼議送所謂一墓對沖何如是衆多云云者尤不成說墓之下有祠祠之側有家家之前有大村羅列則先山與祠宇家舍及大村對沖之說果是矣等之抑說乎彼所謂同坐向之墓不止一二曾何不彼之禁而獨於矣父墓作梗云云所謂同坐向墓者白家墳上又有一塚昨者城主已遣下吏看審則吏之所告內既是古塚又非對沖云而其子孫之有無入葬之久近皆不可知則其可爲禁斷之計乎彼之狀辭又以爲若是可禁之地則矣之葬父已至五年五年之內何無一言半辭而今始作梗乎云矣家僑居洛下數十年昨年十月復歸故鄉始知其如此以至月始訟則其可以此爲執言之端乎且白哥乃是尹氏外裔今雖疏遠自矣家先墓視之則均是子孫况渠輩所居家基田土奴僕多是矣家祖先分派之物而渠乃不念其所自出肆然圖占於先山相沖之地則其忘本不可言且城化之分有君臣之義而彼以構捏矣家爲急欺罔官司少無顧忌則其罔上又不可言矣等不欲爲張皇之說而急於爲父訟冤不自覺煩縷之至此伏願詳察□…□事狀枚報營門之際備陳其曲折俾矣父得免橫被惡名之地千萬切祝祈懇之至行下向教是事

城主處分

癸酉正月日

[題辭] 所謂私掘之說聞甚驚駭其摘奸之日招問其兩塚之主則所告如彼隻之所訴大相不同是遣此外兩山之相距遠近對沖與否皆在山圖一從所見方欲論報惟在營門處分向事廿四日

官 [着署]

7-2-3) 1755년 백련동 상하 민인들의 등장

[1755년(숙종 45) 8월에 해남 백련동의 상하 민인들이 새로 부임하여 순행 중에 있던 전라도 관찰 사에게 올린 산송 관련 등장. 영암 사는 백사휴가 백련동의 대충對沖 지점에 투장하자 촌민들이 금장 하면서 산송이 발생하여 해남과 영문을 오가며 변론하였으나 끝내 낙송한 사정을 설명하며, 투장묘를 파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특히 소송의 쟁점이 되었던 고총古塚은 백사휴의 무함과는 달리 정함평의 분묘가 아니고 대충 지점도 아님을 주장하고 있다.]

병자년 10월 초10일 도부

이렇게 삼가 아뢰는 소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마을은 임신년에 영암 사는 백사휴가 그 부친을 우리 마을에서 마주보이는 안산(案山)으로 서로 충돌(相沖)하는 지점에 투장한 때부터 촌민들이 사망하고 흠어지기가 나날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관찰사께서 순력하실 때에 그와 상송(相訟)하였는데, 그 때 사도께서 우리들이 풍수에 미혹되었다고 생각하여 시비를 분별하지 않아서 (우리는) 끝내 패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지난해 조아무개 관찰사께서 임기 중에 순력 □□□ 또 억울하고 원통한 사정을 다시 의송으로 정소하니, 본관으로 하여금 상세히 □□□ 보고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관께서 대충(對沖)이 확실하다는 사유를 상세히 회보(回報)하오니, 전임 사도께서 백가와 우리 촌의 민인들을 불러서 분부하시기를, “백가의 분산이 마을에서 대충하는 지점임이 확실한즉, 한사람의 입장(入葬)으로 온 마을 민인들이 흠어지는 것은 불가하다. 속히 파서 옮기는 것이 마땅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백가가 핑계를 댈 말이 없자 이에 말하기를, “우리 부친 무덤 위에도 정 함평의 묘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경좌갑향(庚坐甲向)¹³입니다. 그런데 저것은 금장하지 않고 유독 우리 부친만 금장하니 극히 원통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때 관찰사께서 본관으로 하여금 조사해 보고하게 하고, 관문에 이르기를, ‘이 소송의 핵심은 다만 정 함평의 분묘의 방향이 같은가 다른가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마을에서 소송에 대응하는 □□□ 어두워 당시에 논변하여 격파하지 못하고 재조사를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본관께서 회보하신 내용에, ‘백가의 부친 묘 위로 20보쯤 되는 곳에 고층 한 개가 있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정 함평의 분산이므로 직접 나침반으로 짚어보니 경좌갑향 묘분금(卯分金)이었습니다.¹⁴ 이 고층은 금별한 적이 없고 □□□ 자손이 없으니 언제 입장했는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백가가 말한 정 함평의 묘라는 것은 무슨 근거인지, 그가 무함한 죄는 참으로 논할 것도 없이 그의 낙송이 명백하여 의심없습니다. 그러나 혹자는 그때 관찰사께서 많은 업무로 바빴던 연유로 빠뜨리고 있었던 단서가 있었는지 (의심해서), 도리어 우리 마을이 영문에 무고하였다고 해서 촌놈을 형추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들이 지극히 억울하고 원통함을 이기지 못하였으나 붙잡고 호소할 곳이 없어 지금까지 속으로 참고 있었습니다. 이제 관찰사께서 순행하시는 날을 맞이하여 지극히 공정하고 밝게 정사를 펴시는 데에 다시 이렇게 호소하옵니다. 엇드려 바라건대, 관찰사께서 굽어 살펴주십시오.

대개 백가의 아버 묘는 경좌갑향이고 우리 마을은 갑자경향(甲子庚向)¹⁵으로 대충이 확실함은 이미

13 경좌갑향(庚坐甲向) 묘자리가 서남쪽 자리에서 동북쪽을 바라보는 위치

14 묘분금(卯分金) 하관한 관의 방위가 묘 즉, 동쪽임을 말한다.

15 갑자경향(甲子庚向) 동북쪽 자리에서 서남쪽을 바라보는 방위.

본관의 전후 보장^{鞏狀} 및 영문의 추열 문서에 상세히 있으므로 지금 다시 분별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백가가 정 함평이라고 칭하는 분묘도 마찬가지로 경좌갑향[동북향]이라고 하므로 우리들이 연달아 낙송하는 억울함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정산^{鄕山} 한 항목에 대하여만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당초에 소송을 제기할 때에 본관께서 백가의 분묘 위에 나침반을 놓고 자세히 살펴보고, 양척^{兩隻}(원고와 피고)에게 말하기를, “대충이 명백하여 의심없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백가가 말하기를, “이곳에 또 무덤 하나가 있는데, 역시 경좌갑향[동북향]입니다. 그러나 이전부터 그것은 금하지 않고 유독 우리 부친 묘만 금장하였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본관이 즉시 형리를 보내서 나침반을 놓고 살펴계 하니, 형리는 그 분묘 형태가 무너지고 수목이 거칠고 무성한 것을 목도하고 주인 없는 고총으로 빙협하기에 부족하고 또 대충하는 지점이 아니라는 뜻으로 회보^{回報}하였습니다. 그때 본관께서도 이 뜻으로 엄한 제사^{題辭}를 내려 퇴척하였습니다. 그때의 형리가 아직 있으니 추문할 수 있고, 본관에게 올렸던 소지에도 이 일이 매우 상세하게 실려 있습니다. 이는 관을 거친 문서이니 죽히 그의 말을 변파^{辯破}할 수 있는 하나의 증거가 됩니다.

대저 정 함평의 것이라는 분묘가 이 산에 있는 것을 애초에 모르지 않았지만, 황폐한 무덤 하나가 있고 없고는 우리 마을에 이해^{利害}가 되기에 부족하였으므로 처음부터 거론하지 않았으니 그 형세가 그러했습니다. 만약 이 산이 새로 입장하여 주인 있는 무덤이고 백가의 산과 동일한 좌향^{坐向}이라면, 우리들이 백가와 조금도 혐의나 원한이 없는데 무슨 억하심정으로 이것을 금하지 않고 유독 그만 금하겠습니까?

또한 백가가 처음 소송을 접수했을 때는 누구의 분묘인지 말하지 않고 무덤 하나라고 범칭하다가 지금에 와서 이치가 풀린 후에야 정 함평의 분산이라고 일컬으니, 그가 임시로 꾸며낸 상황이 분명하여 덮을 수 없습니다. 이미 정 함평의 분산이라고 말했으니 이에 관작 있는 사대부의 산입니다. 만약 삼척동자라도 묘의 주인이 있다면 백가가 비록 하늘을 진동하는 세력이 있다 해도 결코 마음대로 수십 보되는 가까운 지점에 감히 묘를 입장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가 오직 도점^{圖占}에만 마음을 두어 돌아보고 거리낌이 없었으니, 주인 없는 고총임은 이에 근거해도 분명합니다. 이미 고총인 즉, 그 입장한 연도가 오래인지 가까운지, 분묘가 먼저이고 집이 뒤인지 아니면 분묘가 뒤이고 집이 먼저인지는 이미 분명히 알 수 없습니다. 하물며 정 함평의 분산이 과연 진짜라면 백가가 소송을 접수한 초기에 어찌 칭호를 곧바로 말하지 않고 다만 고총이라고 칭하다가 영문에서 대변하는 때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정 함평의 분묘라고 말했겠습니까? 그런즉, 그가 임시로 급히 창조해 내서 교묘하게 거짓으로 꾸민 상황이 이 하나의 단서만 들어도 탄로나서 덮기 어려운 것이 첫째입니다.

우리들이 일찍이 향중의 연로하고 고사를 잘 아는 사람을 방문하여 물었는데, 연세가 100세에 가까운 사람도 정 함평의 묘임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어찌 본 마을의 연로한 노인들이 누구의 분묘인지 모르는데 연소한 백가만 알 이치가 있겠습니까? 그가 교묘하게 꾸민 것을 덮기 어려

운 둘째입니다.

또한 본관이 ‘경좌갑향 묘분금’이라고 조사하여 보고했으니, 대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대충이라고 한다면 유좌묘향西坐卯向 갑분금甲分金¹⁶의 산도 대충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리가 명백함이 이와 같으니 백가가 교묘하게 꾸며낸 것이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을 민인들이 도리어 무고했다고 죄를 받아 끝내 낙송하였으니 어찌 원통하고 억울함이 심하지 않겠습니까? 설령 이 고충이 실제로 우리 마을에서 대충이라고 하여도 이미 어느 대의 무덤인지도 모르고 자손도 없으니 어찌 이 일개 고충을 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말꼬리를 잡는 단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 고충 때문에 마을에서 대충하는 지점에 새로 입장하는 무덤을 금할 수 없다면, 장래에 대충하는 무덤들이 무한정 있어도 모두 금할 수 없는 것입니까? 고금 천하에 어찌 이런 이치가 있단 말입니까?

하물며 백가의 무덤이 대충하는 지점에 입정한 이후로 수삼년 동안 상하민들의 초상 번고가 계속 이어져서 인민들이 거의 반은 흩어졌고 소, 말이 죽은 것은 거의 셀수 없습니다. 대충하는 지점에 묘를 쓴 피해가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 그 금단하는 것에 어찌 수수방관하여 그 피해를 앓아서 당하겠습니까? 백가가 이미 이치에 끌리는데 스스로 반성할 것을 생각하지 않고 기필코 힘껏 싸우려고 하여,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논의를 죽기로 막아서 이기려고 도모하였습니다. 여러 차례 소송에 나가 무함하고 속이는 말이 아닌 것이 없고, 터무니없는 고충을 억지로 끌어다가 말도 안 되는 증거로 삼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설계가 엉성하고 언사는 치우치고 회피하여 도리어 한번 웃음거리도 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누누이 변론해 아뢰는 까닭은 정세가 절박하여 부득이해서 그렇습니다.

엿드려 바라건대 이와 같은 사연을 세세히 잘 헤아리신 후에 피차의 옳고 그름을 이치로 논하여 엄제嚴題해 주십시오. 동 백가의 새 분묘를 즉시 파서 옮기도록 명하시고 투장 죄를 분명히 정해서 수백호의 큰 마을이 파산하는 지경이 없도록 천변만변 바라옵니다.

처분하실 일

사도주 처분

을해년(1755) 8월 일 의송

유학 윤이정[착서], 김항석[착서], 윤명서[착서], 윤이돈[착서], 윤이사[착서], 이검득[착서], 김정일[착서], 오연겸, 김육, 정내동[착서], 윤준화 등

하인 명□, 청강, 덕돌이, □동, 등학, 아을선, 차걸, 무금, 세귀, 재귀, 석태, 독재, 명산, 마음산, 파회, 석벽, 세필, 수언, 순원, 중태, 점금, 모질개, 신필, 준태, 강태, 해남금

16 유좌묘향 갑분금(西坐卯向 甲分金) 묘자리는 서쪽을 등지고 동쪽을 바라보는 자리이고, 하관한 관은 동북향인 자리

세중, 세태, 시정, □돌이, 순사, 귀학, 소재, 산석, 귀이, 연추 등

[제사] 적간 후에 과연 파내는 것이 마땅한 곳이면 옥에 가두어 금장하고 독촉해 파낼 것. 산재관
30일

순사[작서]

海南縣一面白蓮洞上下民人等狀 丙子十月初十日 到付
右謹言所志矣段 矣村自壬申□ 以靈岩居白思休 偷□(葬)其父於矣村對案相冲之地 村民之
死亡渙散 日日爲甚 故余等使道巡按之時 與之相訟 而其時使道以爲 矣等惑
於風水是如 不辯是非 竟致落訟之科 前年趙等使道巡□(致)…□ 又以冤枉之狀 更呈議送是
乎則 令本官詳□□(報)是乎等以 本官以對冲的實之由 詳實回報是乎則 前
使道招致白哥及矣村民人 分付曰 白哥墳山 對冲於村中的實 則不可爲一人之葬 而令一村之
民離散 汝矣墳山 斯速掘移 宜當是如教是乎則 白哥無辭可托 乃曰 矣父塚上 又有鄭
咸平墓 亦一庚坐甲向 而不禁於彼 而獨禁於矣父之葬 極爲冤痛是如是乎則 其時使道 使之
查報 而關文內 以爲此訟肯緊 只在鄭墳向背之異同是如是乎所 矣村對訟之□…□
迷特□未能辯破於當時 至有更查之境是乎矣 本官回報內 白哥父葬之上二十步許 有一古塚
云 是鄭咸平墳山 故親自按鐵 則庚坐甲向卯分金 而乃是古塚 無有禁伐之□…□
無子孫 則不知何年入葬是如是乎則 白哥所謂鄭咸平墓者 有何所據是噲 其所誣訴之罪 固不
可論 而其爲落訟 明白無疑是乎矣 或者其時使道 緣於衆務之倥傯 有所遺忘之端是乎
噲 反以矣村之誣告營門是如 至於村漢刑推之境是乎等以 矣等不勝至冤極痛 無處控訴 含忍
到今矣 今當 使道巡宣之日 更此呼訴於至公明政之下爲白去乎 伏願 使道垂察
焉 盖白哥父葬 則庚坐甲向 而矣村則甲坐庚向 其爲對冲之的實 已悉於本官前後報狀 及營
門推閱文書 今不必更辨 而只以白哥所稱鄭咸平墓 亦一庚坐甲向云 故致有矣等連次
落訟之冤 今只就鄭山一款 詳細臚列爲去乎 當初起訟時 本官泛鐵於白哥墳上 仔細看審 言
于兩隻曰 對冲明白無疑云爾 則白哥乃曰 此處又有一塚 亦是庚坐甲向 而曾不禁彼 獨禁
矣
父葬云 故本官卽遣刑吏 使之泛鐵看審 則刑吏目覩 其墳形之堆圯 樹草之荒茂 以無主古塚
不足憑驗 又非對冲之意回報 則其時本官 亦以此意 嚴辭退斥 其時刑吏尙存 可以推問 而
呈本官
所志 亦載此事 極爲詳盡 此是經官文書 則足爲辯破彼說之一證耳 大抵所謂鄭墳之在此山
初非不知 而一杯荒壠之有無 不足爲矣村之利害 則初不舉論 其勢固然 若使此山 亦是新
葬
有主之塚 而與白山同一坐向 則矣等與白哥 小無嫌怨 亦何心腸 不此之禁 而獨禁於彼哉 且

白哥之初接訟也 不言其誰某之墳 泛稱一塚是如可 到今理屈之後 稱爲鄭咸平墳山 則其臨時粧撰之

狀 昭不可掩是白遣 既曰鄭咸平墳山 則乃是有官爵士夫之山 若有三尺童子主墓者 則白哥雖有熏天勢力 決不敢肆然入葬於近墓數十步之地 而彼乃惟意圖占 無所顧忌 則其爲無主古塚 據此分明 而既是古塚 則其入葬年紀之久近 與先墳後宅 後墳先宅 既不可明知是旣 況鄭咸平墳山 果是真的 則白哥接訟之初 何不直言稱號 而只稱古塚是如可 及至營門對辯之時始乃

言鄭咸平墓 則其臨急創造 巧自僞飾之狀 舉此一端 綻露難掩者 一也 矣等亦嘗訪問於鄉中耆舊頗解古事之人 則雖年近百歲者 亦無有知其爲鄭咸平墓者 則豈有本村耆老 不知其爲某葬 而年少白哥 獨知之理乎 其巧飾之難掩 二也 且本官以庚坐甲向卯分金查報 則其可謂對冲乎 此爲對冲 則西坐卯向甲分金之山 亦可謂之對冲乎 事理之明白若此 則白哥之巧飾無疑 而矣

村民人 反以謾告受罪 終至落訟 則豈非冤枉之甚者乎 設此古塚 實爲對冲於矣村是良置 既不知何代之塚 又無子孫 則何可以未能禁此一介古塚之故 爲執言之端乎 以此古塚 而不能禁新葬之

對冲 則將來對冲之葬 雖至於無限 而皆不得禁乎 古今天下 寧有是理 況自白塚對冲之後 數三年間 上下之喪變相繼 人民之流散居半 牛馬之致斃 殆不可數 對冲之害 至於如此 則其於禁斷 豈

可袖手而坐受其禍乎 白哥既是理屈 則不思自反 口欲力戰 千萬人通同之論 爲抵死角勝之圖 累度就訟 無非誣罔之語 而至於強引無稽之古塚 欲爲不可成之證 其設計之疏闊 言辭之詖遁 還不滿一

笑 而矣等所以縷縷陳辯者 口由情勢之切迫 不得口口 伏願右良辭緣 細細叅商教是後 彼此曲直論理嚴題 同白哥新墳 卽命掘移 明定偷葬之罪 俾數百戶大村 得無破散之境 千萬望良只爲

行下向教是事

使道主 處分

己亥 八月 日 議送

幼學 尹爾鼎[着署] 金恒錫[着署] 尹明緒[着署] 尹爾敦[着署] 尹爾師[着署] 李儉得[着署] 金精一[着署] 吳彥謙 金鎬 鄭來東[着署] 尹俊華 等

下人 命口 青强 德夏伊 口東 等鶴 野乙先 次乞 無金 勢貴 再貴 石太 亨才 命山 卞音山 破回 石壁 世必 水言 順元 仲太 占金 毛疾介 信必 俊太 姜太 海南金

世中 世太 時正 口夏伊 順已 貴鶴 小才 山石 貴伊 然秋 等

[題辭] 摘奸後 果是當掘之地 則囚禁督掘向事 山在官 卅
巡使 [着署]

3. 강진 덕정동 산송 I

7-3-1) 1782년에 윤굉 등이 강진현감에게 올린 등장等狀

[1782년(정조 6) 11월에 윤굉 등 32인이 연명으로 강진현에게 올린 산송 관련 등장. 조부모 윤두서 부부의 분묘를 사굴私掘한 윤흥박 부자가 서얼 족속인 윤재흥을 백금으로 약속하고 사굴죄를 담당하게 했음을 주장하며 관찰사에게 보고하여 엄히 다스릴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7-3-2) 1782년에 윤굉 등이 전라도 관찰사에게 올린 의송議送, 7-3-3) 1782년에 윤굉 등이 전라도 관찰사에게 올린 의송議送과 점련되어 있음.]

해남 민 윤굉 등

이렇게 삼가 소지所志를 아뢰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들이 불초무상하여 홀연히 조부모 분묘가 발굴당하는 변고를 만났습니다.¹⁷ 끝없는 세상천지에 어찌 이런 참변이 있겠습니까? 외관의 횡대橫臺¹⁸를 조각조각 도끼로 부수고 내관內棺의 도끼자국 및 뚫은 자국과 6~7곳의 벗겨지고 상한 모습에 이르러서는 이미 유향소의 적간기摘奸記에 다하였으므로 여기에서 번거로이 호소하지 않겠습니다.

윤흥박 부자가 변고를 일으킨 괴수라는 것은 성주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입니다. 대저 흥박은 저에게 사소한 원망과 분노가 있을 뿐 아니라 이번에 누차 관가에서 죄를 받은 후 더욱 독을 품고 덕찬, 상채 등과 한패거리로 모의하여 이처럼 극히 흉악하고 참혹한 변고를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모면할 계책을 내어 그의 얼속으로 부모도 없고 처자식도 없이 행상으로 유리걸식하는 윤재흥을 수 소문해 얻어서 먼저 백금으로 약속하고 그로 하여금 자수하여 담당하게 하였습니다. 흥박이 계책을 낸 것이 어찌 교묘하고도 참혹하지 않습니까?

이른바 재흥이라는 자는 처음에 입장할 때부터 송사를 일으키고 의송을 올릴 때까지 전혀 그림자

17 조부모 윤두서(尹斗緒, 1668~1715)와 前後妻 등 3인의 분묘

18 횡대(橫帶) 하관 후에 관 위에 가로로 걸쳐 놓는 띠 모양의 나무판.

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문족門族 중에도 얼굴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튀어 나와 스스로 묘를 파낸 자라고 자칭하니 흥박이 돈을 먹여서 몰래 스스로 벗어나려고 도모한 상황이 분명하여 가릴 수가 없습니다. 이에 감히 우리러 호소하오니 잘 헤아리신 후에 재흥을 엄히 형장을 쳐서 신문하여 실정을 얻기를 기약하시고, 흥박, 효원과 덕찬, 상채 등을 감사에게 보고하여 법조문에 비추어 엄히 벌하여 지극한 원통함을 씻을 수 있도록 천번만번 바라옵니다.

처분 하실 일

강진 성주 처분

임인년(1782) 11월 일 소지

윤탄, 윤굉, 윤변, 윤징

윤일, 윤저, 윤조, 윤항, 윤형, 윤현, 윤소, 윤항

윤서, 윤채, 윤지명, 윤지성, 윤지경, 윤지상, 윤지온, 윤지묵

윤지범, 윤지공, 윤지운, 윤지홍, 윤지화, 윤지충, 윤지회, 윤지수

윤지초, 윤지각, 윤지눌, 윤지현 등

[제사] …〈결락〉… 비단 흥박 부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변고를 일으킨 상황은 관에서 …〈결락〉… 이 거니와 이미 무덤을 파내어 내관內棺…〈결락〉…

강진관 관인을 봉함 [착서]

海南民尹愷等

右謹言所志矣段 民等不肖無狀 忽遭祖父母墳墓發掘之變 窮天地□…□寧有如許慘變耶 至於外棺橫臺

之片片斧碎 內棺之斧痕鑿痕與六七處剝傷之狀 已悉於鄉所摘奸記 茲不煩訴是乎 尹興毫 父子之爲作變魁首

城主之所洞燭 而大抵興毫之於民 不但有些少怨怒之事 今番累次受罪於官家之後 倍加含毒 與德贊相采等 網繆謀議

作此極凶極慘之變 反生圖免之計 募得渠之孽屬 無父母無妻子 行商流乞之尹再興 先以 百金相約 使之自首擔當 興

毫之設計 豈不巧且憐哉 所謂再興者 自初頭入葬時 及起訟呈議送時 俱無形影盆不喻 門 族中 絕無知面之人 而忽地

突出 自稱掘主 則興毫之陷之以利 暗圖自脫之狀 昭不可掩是乎所 茲敢仰訴爲白去乎

叅商教是後 同再興嚴加杖訊 期於得情是遣 興毫孝源與德贊相采等 一並報使 照律痛繩 以雪至冤極

毫之地 千萬望良爲只爲

行下 向教 是事

康津城主 處分

壬寅 十一月 日 所志

尹愾 尹愾 尹怵 尹愷

尹忼 尹慄 尹恇 尹惇 尹愧 尹髓 尹惇 尹愷

尹持默 尹持溫 尹持常 尹持敬 尹持誠 尹持明 尹慄 尹愷

尹持秀 尹持誨 尹持忠 尹持和 尹持弘 尹持運 尹持恭 尹持範

尹持初 尹持珏 尹持訥 尹持憲等

[題辭] 非但□…□ 興毫父子 終始作孽之狀 官□…□是在果 既已掘塚 內棺 □…□

康津官 封印 [着署]

7-3-2) 1782년에 윤굉 등이 전라도 관찰사에게 올린 의송議送

[1782년(정조 6) 12월에 윤굉 등 48명이 연명으로 전라도 관찰사에게 올린 의송. 조부모 묘를 사굴한 윤흥박 부자의 처벌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금년 봄에 조부모 분묘를 덕정동 세장산世葬山으로 천장할 때 문중과 윤흥박 부자에게 허락을 받고 5월에 문중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입장하였다. 9월에 윤흥박 부자가 강진현 및 전라도 관찰사에게 정소하였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자 11월 19일 밤에 조부모 내외 3층을 사굴하였다. 윤재홍이 사굴하였다고 지수하였으나 이는 윤흥박 부자가 사주한 것이 확실하므로 윤흥박 부자를 엄히 다스려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하여 관찰사는 엄형으로 조율하니 번거롭게 정소할 필요 없다는 처분을 내리고 있다. 7-3-1) 1782년에 윤굉 등이 강진현감에게 올린 등장等狀, 7-3-3) 1782년에 윤굉 등이 전라도 관찰사에게 올린 의송議送과 점련되어 있음.]

해남에 사는 유학 윤굉 등

이렇게 삼가 소지를 아뢰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생들의 (11대조 분묘가) □…□ 덕정동 □…□ 윗 산록의 입수처에 있고 11대조모 묘는 아래 산록의 땅이 다하고 아래로 폭 꺼진 곳에 있습니다. □…□ 사이의 거리가 겨우 60보 떨어져있는데 중간에 빈 곳이 □…□ 생들의 조부모 □…□ 영평 永甯한 곳 □…□ 좌우 산록에는 전부터 문족門族으로 입장한 자가 수십 총뿐만이 아니니 족장族葬임을 가히 알 수 있습니다. 하물며 생들의 11대조 묘위에 생들의 10대조모 묘가 있고, 또 그 위에 생들의 방계 9대조 묘가 있습니다. □…□는 전부터 이미 도장倒葬이었습니다. 생들의 고조부 헌납공께서 문장門長이 되었을 때 문중에서 묘를 쓰려는 집에 편지를 보내서 생들이 이번엔 새로 입장한 곳을 가리키며 말하시기를, “두 묘 사이의 거리가 이미 멀리 떨어져 있고 앞으 서나 보이지 않지만 □…□

자손이 입장하는 것이 □…□불안한 단서가 있다”고 말을 갖추어 은근히 권하기를 되풀이하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종종 두 집에서 서로 입장하려고 하여 분쟁의 단서가 없지 않았는데, 결국에는 모두 쓰지 못하였습니다. 그 당시의 문적이 지금까지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금년 봄에 생들이 조부모의 이장을 도모하여 □…□ 산지를 점지하였으나 연달아 분묘터에서 바위가 나오는 근심[石患]을 만나 두 차례나 낭패를 당했습니다. 계책은 궁하고 형세가 위축되어 비로소 덕정동 선산에 부장[附葬]할 계책을 내었는데, 이 산은 선조 묘에서 비록 앞아도 서도 보이지 않는 자리이고, 또한 조금 동쪽이고 조금 서쪽으로 차이가 있었으나 상하의 혐의가 없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생들이 여러 날 문중에 애걸하니 문장 및 여러 장로[長老]들이 모두 흔쾌히 허락하였습니다. 그래서 막역[役事]을 시작하려고 할 때 문중의 일파인 윤흥박과 그 아들 효원이 홀로 금단할 계책을 내어 그와 같은 일파 약간 명을 거느리고 □…□할 때에 금단합니다. 생들은 비록 저들의 심술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았지만 우리의 도리로는 쟁할 수 없으므로 밤마다 울며 애걸하니, 흥박과 연로한 여러 문족들이 감동하여 불쌍히 여기는 뜻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 아들 조카 및 연소배들을 이끌고 일제히 흩어져 가며 말하기를, ‘사람이 목석이 아닌데 이런 상황을 보고도 어찌 한결같이 금단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이제 가니 모름지기 안장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생들은 5월 몇 일에 편안히 하관하는 예를 거행하였는데, 장례를 치를 때 와서 모인 여러 종인들이 거의 100여 명이나 되었으니 같은 목소리로 입장[入葬]을 허락하였음을 미루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9월 열흘 후에 당초 남보다 앞서 입장을 허락한 자인 윤흥박 부자가 갑자기 장사를 지내지 다섯 달이나 지난 후에 도리어 쟁송할 계책을 내어 본 현[강진현]에 청소하였습니다. 심지어 위로 계체[階砌]에 미치고 아래는 용미[龍尾]를 누른다고 하며 백반으로 모함을 엮어서 본 현 성주께서 친히 적간하온 바 생들 및 피척[彼隻] 흥박 부자와 덕찬[德贊] 무리들이 함께 대령하였습니다. 본관께서 □…□ 입장한 곳을 □…□(가리키며) 흥박 등에게 일러 말하기를, ‘이 산 아래는 상하의 혐의가 없지 않으니 지금 이 입장은 비록 아름다운 일은 아니지만 이미 맥脈을 누른 것이 아니고 또 앉거나 서서 모두 보이지 않는 곳이다.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입장할 때에 금단하지 못하다가 지금 다섯 달이나 지난 후에 비로소 소송을 일으키니 이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또 너희들이 이른바 도장[倒葬]이라고 하는 것은 □…□ 가법[家法]이니 어떤 근거가 있어서 금단하는가?’라고 운운하였습니다. 인하여 형리로 하여금 산형[山形]을 그려내고 각파에서 도장한 곳을 자세히 기록하게 하였습니다. 또 생들의 문장에게 □…□ 입장을 (허락하는) 다짐과 피척의 장두[狀頭]인 윤흥박과 덕찬 등에게도 낙송[落訟] 다짐을 받았습니니다.

흥박 무리들이 또 의송을 올리니 관찰사도 □…□ 적간하여 공결[公決]하신 바 흥박 부자가 스스로 이치에 맞지 않아 쟁송하여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11월 19일 밤 도당[徒黨]을 다수 거느리고 몰래 무덤을 파헤쳐 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생들의 조부 관을 6, 7보 되는 곳에 꺼내 두었는데, 외관의 횡대는 조각조각 □…□(도끼로 부수고) 내관에 □…□ 자국이 낭자하였으며, 또 벗겨지고 상한 곳

이 예닐곱 곳이 있었습니다. 생들의 전후 조모 두 분의 관은 아래에서 거꾸로 꺼냈는데, 외관의 횡대를 도끼로 남김없이 부수었습니다. 한 삼머리에 남의 관 셋을 찢으니 그 참혹함이 극에 달하여 여지가 없습니다. 생들이 그들에게 무슨 □…□ 천지에 없는 변고입니까? 흥박 부자는 이미 이렇게 망측한 변고를 일으키고 나서 몰래 스스로 벗어날 계책을 내었습니다. 얼속으로 의지할 데 없이 걸식하는 윤재흥이라는 자를 모집해 구해서 백 냥으로 약속을 하여 오십 냥을 먼저 주고 그로 하여금 자수하여(사굴죄를) 담당하게 하였으니 그 계획이 □…□합니다.

재흥이라는 자는 처음에 입장할 때와 중간에 송사를 제기하고 의송을 올릴 때까지 모두 그림자도 비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문족 중에도 얼굴을 아는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튀어 나와 묘를 판 사람이라고 자칭하니 흥박이 돈을 먹여서 몰래 스스로 벗어나기를 도모하는 상황이 분명하여(감출 수) 없습니다. □…□ 또한 이런 뜻으로 영문營門에 논보하니, 데김[題音]에 ‘□…□ 무덤은 전에 들어보지 못했다. 동 재흥과 흥박은 각각 한차례 엄형한 후에 수종首從(주범과 종범)을 나누어 자복을 받아 첩보하라’고 하셨습니다. 무릇 당초 입장할 때 앞장서서 금단한 자는 흥박 부자이고 중간에 저희들이 울며 애걸할 때 앞장서서 입장을 허락한 자도 □…□(흥박) 부자입니다. 그 후 본관에 정소하고 영문에 정소하여 끝내 이 참변을 일으킨 자는 흥박 부자입니다. 그러하니 이제 감율勘律하는 마당에 어찌 수종을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변고를 일으킨 괴수는 흥박이니 어찌 고용해서 세운 재흥이 이 원죄元罪를 당하겠습니까? 무덤을 파내는 변고가 세상에 혹 있기도 하지만 생들이 당한 일은 전에 들어보지 못한 일이니, 만약 보통의 굴충과 마찬가지로 의례적으로 처단하면 생들의 하늘에 사무치는 억울하고 분함은 이미 말할 것이 없습니다. 하물며 생들의 조부는 이미 2품에 증직贈職되어 일반 서인[凡庶]들과는 다르니 흥박의 죄가 어찌 더욱 중차대하지 않겠습니까? 이에 감히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우러러 호소하오니 엎드려 바라옵건대 잘 헤아리신 후에 동 흥박과 그 아들 효원에게 엄히 중률을 가하여 생들의 억울하고 분함을 만분지일이라도 씻어주시기를 천변만변 바라옵니다.

처분하실 일

순사도 처분

□□(임인) 12월 일 의송

윤탄, 윤굉, 윤변, 윤징, 윤일, 윤저, 윤조, 윤황, 윤형, 윤현, 윤소, 윤항, 윤서, 윤채

윤지명, 윤지성, 윤지경, 윤지상, 윤지온, 윤지묵, 윤지범, 윤지욱, 윤지운, 윤지박, 윤지흥, 윤지화, 윤지충, 윤지회

윤지초, 윤지각, 윤지눌, 윤지현, 윤지효, 윤지행, 윤지영, 윤지익, 윤지섬, 윤지하, 윤지건, 윤지철, 윤지신, 윤지엽

윤종악, 윤종영, 윤종규, 윤종벽, 윤종경, 윤종찬, 윤종익 등

[제사] 금방 엄형을 가하고 조율照律할 것이니 번거롭게 호소할 필요가 없는 일. 28일

순사 [작성]

海南居 幼學 尹□恠 等

右謹言所志矣段 生等□…□於□…□德井洞□…□ 在於上麓入首處是遣 妣位墓在於下麓
地盡低陷處是如 □…□間相距
殆六十步 而中間有間曠□…□ 生等祖父母□…□窆處□…□與左右麓 從前門族之入葬者
不啻數十塚 則其爲族葬可知矣 況於生等
十一代祖墓上 有生等十代祖妣墓 又其上有生等九□…□祖墓 而其□…□近 則自前亦已倒
葬矣 生等之高祖獻納公爲門長□(時) 抵書於門中營窆之家 指生等今
番新葬之地曰 兩墓相距 既甚夔絕 □是坐立不見□…□ 子孫入葬□…□安之端 費辭懇勸
娓娓不已 故其時宗中兩家 互欲入葬 而不無爭端 俱未得用 其時文蹟 至
今尚在矣 今年春 生等營祖父母緬禮□…□占山地 連值石患 二次狼狽 計窮勢蹙 始生德井
洞先壟耐葬之計 而此山於先墓 雖是坐立不見之地 亦有差東差
西之別是乎乃 不無上下之嫌 故生等累日哀乞於門中 則門長及諸長老 皆爲快許 故方欲始役
之際 門中一派尹興毫及其子孝□(元) 獨生禁斷之計 率其同派若□…□時禁斷
是去乙 生等雖知渠輩心術之有在 而在我之道 不可爭詰 故連夜泣乞 則興毫及年老諸族 不
無感動矜惻之意 率其子姪及年少輩 一齊散去曰 人非木□…□目見此狀 而一向
禁斷乎 吾今去矣 須安葬云云 故生等果於五月日 安行窆禮 而葬時諸宗之來會者 殆近百餘
員 則其同聲許葬 推可知矣 不意九月旬後 當初首先許葬者 尹興毫父子
忽於過葬五朔之後 反生爭訟之計 呈訴於本縣 至謂之上及階砌 下壓龍尾 百般構誣是如乎
本縣城主 親自摘奸是乎所 生等及彼隻興毫父子與德贊輩 同待□是
如乎 本官□…□下葬處 謂興毫等曰 此山下不無上下之□ 則今此入葬 雖非美事 而既非壓
脉 又是坐立俱不見之地 益不喻 汝輩不能禁斷於入葬之時是如可 到今五
朔之後 始乃起訟 則是爲理屈是遣 且汝輩所謂□…□者 自是□…□家法 則何所□而禁斷乎
云云 仍令刑吏 圖出山形 細錄各派倒葬處是遣 且於生等門長
□…□葬傍音 彼隻狀頭尹興毫德贊等處 亦受落訟傍音矣 興毫輩又呈議送是乎則
使道□…□摘奸公決教是乎所 興毫父子 自知理屈 不可以爭訟得捷是遣 十一月十九日夜 多
率徒黨 暗地掘塚 罔有紀極 生等之祖父棺柩 發置於六七步之地 外棺橫帶片□…□
□…□痕狼藉於內棺 且有六七剝傷處是遣 生等之前後祖母兩棺柩 自下倒拔 外棺橫帶 斧破
無餘 一錘之頭 掘人三棺 極其慘酷 無復餘地 生等之於渠輩 有何□…□
□…□窮天地所無之變乎 興毫父子既作此罔測之變 暗生自脫之計 募得渠之孽屬無依乞食
尹再興爲名人 以百金相約 先給五十金 使之自首擔當 其所設計□…□
□…□再興者 當初入葬時及中間起訟呈議送時 俱無形影益不喻 門族中絕無知面之人 而忽
地突出 自稱掘主 則興毫之陷之以利 暗自圖脫之狀 昭不□…□

이 원통한 산변(山變)과 세 무덤을 파헤친 윤흥박과 그 이들 효원의 전에 없는 극악무도한 죄를 어제 우러러 호소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데깁 내에, ‘금방 엄형을 가하고 조율(照律)할 것이니 번거롭게 호소할 필요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지금 자세히 아될 필요는 없으되, 생들의 뼈를 깎는 억울하고 절박한 사정은 어디에 날날이 양소(養所)하겠습니까? 이에 감히 한번 죽음을 무릅쓰고 □…□하오니 특별히 불쌍히 여겨 살펴 조사해 주십시오. 무릇 심히 중한 죄를 저지른 자는 죄를 면할 수 없습니다. 이익으로 사람을 꺾어 몰래 스스로 벗어나기를 도모한 자가 흥박과 효원입니다. 이익을 달게 여겨 자수하여(사굴죄를) 담당하겠다고 무릅쓰고 돌출한 자는 윤재흥입니다. 흥박□…□ 고금(에 없는) 망측한 변고 □…□ 백냥을 그의 죽인으로 걸식하는 자인 재흥에게 은밀히 주고 그로 하여금 튀어나와 담당하게 하였으니 그 으뜸 죄(元罪)를 따지면 죄가 흥박과 효원에게 있습니다. 그러한바 각별히 □…□ 하신 후에 동 흥박과 효원을 수죄의 율로서 더욱 엄형하여 조율하시고, 재흥은 값을 받고(대신) 지수한 율로 아울러 엄형하고 실정을 찾아내어 조율해 주실 뜻으로 본관에게 배관(背關)¹⁹하여 주십시오. 저희들로 하여금 분하고 한스러운 일을 만분의 일이라도 씻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처분하실 일

순사도 처분

임인년 12월 일 의송

윤탄, 윤굉, 윤변, 윤징, 윤일, 윤저, 윤조, 윤황, 윤형, 윤현, 윤소, 윤항

윤서, 윤채, 윤지범 등

[제사] 금방 엄형하여 조율할 일. 29일

순사 [작성]

海南 居 幼學 尹愷等

右謹言節節冤痛事段 生等之前古所無 窮天極□(地)之山變 三塚掘去人 尹興毫及其子孝元 之前古所無 極凶負犯之罪乙 昨日仰訴□…□

□…□則 題音內 今方嚴刑照律 不必煩訴教是乎□ 今不必翻縷是白乎矣 生等之刻骨冤迫情 私 這這仰訴於何處乎 茲敢冒萬死□…□

19 배관(背關) 문서 뒷면에 쓰는 공문서 ‘관(關)’. 여기에서는 정소자가 자신이 제출하는 소지 뒷면에 강진현감에게 보내는 ‘관(關)’을 써서 명령해 줄 것을 관찰사에게 요청하는 내용이다. 원래 관은 상급관청에서 동급 또는 하급관청에 보내는 공문서로 관의 행이(行移) 시스템에 기초한 연락망으로 발급수신해야 하는 문서이다. 그러나 이 사례를 통해 볼 때, 공문서 관(關)이 관의 연락망으로만 발급수신된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정소자의 소지 뒷면에 관을 써서 주면, 정소자가 해당 관청에 도부(到付)하여 처분 내용을 시행하는 방식이 병행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707년 구례현 소송(김경숙, 「결승입안과 소송 현장, 그리고 노비의 삶」 참조)에서도 이와 동일한 형태가 확인되고 있어, 조선시대 행이(行移) 방식의 특성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諭 矣身以年老門長 居在山下 而矣先
世若無倒葬之事 則恠之此事 果是
妄舉是白乎矣 自先世既有倒葬於
一麓之上 故矣身亦爲許葬是白如乎
于今五朔之後 門末輩不有先世遺
戒 又不顧門長之許與 更聚營葬
時 曰可曰否之族 鬧起爭端 至於訟官
之境 以班爲名者 實無舉顏之處
而從來事實 不過如斯而已 惟埃官
家處決是白去乎 以此侑音 相考處
之教事

行官 [着署] 白

.....
同日 狀頭 海南花山居 尹德贊 年
六十五

白等 矣同宗恠祖父私葬處 卽矣
先山倒葬之側下也 恠之營葬時 矣
身不叅禁葬之論是白遣 矣從弟德
曄來到是白乎乃 以倒葬論之 則矣
身數三代倒葬 決非常論是白遣 以義
理言之 則雖有先祖遺戒 憑藉先代
輪次 過葬於先墓塚後 事極不當是白乎
矣 矣身諸族 或可或否 而門長既已許
與 登時不禁之事 敢生起鬧 以至於
官卜之境 五朔後起訟 果爲稽忽是
白乎等以 如是納招爲白去乎 相考處之
教事

行官 [着署] 白

7-3-5) 1782년 윤굉 조부모총 사굴처 적간기

[1782년 11월 24일에 유향소에서 사굴당한 윤굉의 조부모 내외 세 분묘를 적간하여 훼손된 상태를 기록한 적간기.]

임인년(1782) 11월 24일 윤굉 조부모 무덤의 사굴당한 곳의 적간기

윤굉의 조부 증 참판 진사[윤두서]

외관의 횡대 하변이 도끼로 파손되었고, 상변은 그대로 보존됨.
아래로부터 관을 들어내어 북쪽 계체 안쪽 7보되는 곳에 옮겨둠.
내관은 상변 방판方板에 도끼 흔적이 1곳. <길이 1촌 넓이 3푼>
천판은 상변에 박탈이 1곳 있음. <길이 3촌 5푼 넓이 8푼>
좌변판에 박탈이 1곳 있음. <길이 1촌 넓이 4촌>
좌변판 하변에 몽둥이로 찍어 상처난 곳이 있음. <길이 1촌 넓이 2푼>
우변 지판地板에 박삭剝削이 1곳 있음. <길이 8촌 넓이 1촌 2푼>

왼쪽 곤위[윤두서 처]. 관이 노출된 곳이 3척 7촌, 그 중에서 아래가 뽑힌 것이 1척 4촌.

외관 횡대의 반 이하는 조각조각 도끼로 파손되었고, 내관은 상한 곳이 없음.

오른쪽 곤위[윤두서 처]. 관이 노출된 곳이 3척 2촌, 그 중에서 아래가 뽑힌 것이 1척 4촌.

외관 횡대는 반 이하가 조각조각 도끼로 파손되었고, 내관은 상한 곳이 없음.

흙을 파낸 곳은 길이 4보 반, 넓이 5보, 깊이 4척 5촌

내계內壙에 묻은 지석은 파쇄되어 남아있지 않음

<나무자로 측정함>

壬寅十一月二十四日 尹愾祖父母塚見

掘處摘奸記

尹愾祖父 贈參判進士

外棺橫帶下邊斧破 上邊依存

自下拔棺 移置于北邊壙內七步

之地是齊

內棺上邊方板 有斧痕一處 <長一寸 廣三分>

天板上邊 有剝脫一處 <長三寸五分 廣八分>

左邊板有剝脫一處 <長一寸 廣四寸>

左邊板下邊 有椎鑿傷處 <長一寸 廣二分>

右邊地板 有剝削一處 <長八寸 廣一寸二分> 木尺量之
 左坤位 露棺三尺七寸內 下拔一尺四寸
 外棺橫帶半以下 片片斧破 內棺無

傷處

右坤位 露棺三尺二寸內 下拔一尺四寸
 外棺橫帶半以下 片片斧破 內

棺無傷處

掘土處 長四步半廣五步

深四尺五寸

內壻所埋誌石 破碎無餘

7-3-6) 1782년 강진 현감의 첩보 사본

[1782년 11월 20일에 강진 현감이 전라도 순찰사에게 첩보한 문서 사본. 윤두서 내외 세 분묘가 사굴당한 상황과 관곽의 파손 상태에 관해 보고하는 내용이다.]

첩보하는 일. 지난 11월 20일에 현감

첩보하는 일. 지난 11월 20일에 현감이 영암군 이진창 앞바다에서 선박을 점고할 때에 해남현에 사는 유학 윤○[굉]이 발괄한 내용에, “[윤굉]의 조부와 전후실 조모 세분을 치하[강진] 파하대면[파지대면] 덕정리에 있는 그[윤굉]의 11대조 선산 남은 기슭에 합장하였습니다. 천만 뜻밖에 강진에 사는 동종同宗 윤흥박이 지난 밤에 저[윤굉]의 조부모 무덤을 사굴하여 세 관이 노출되고 도끼 흔적이 남자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듣기에 무척 놀라고 해괴하여 현감이 선박을 점고하는 곳에서 적간하기 위하여 출발하려는 때에 본현[강진현]의 유향소에서 보낸 문장文狀의 내용에, “영암면에 사는 윤재흥이 나서서 와 고하기를, 윤○의 조부 무덤을 그가 사굴하였다고 하였습니다”라고 하나하나 들어 첩보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굴한 원범元犯 윤재흥을 그가 사굴한 분산에 잡아 대령하도록 하고, 양척兩隻이 보는 곳에서 현감이 친히 살펴 적간摘奸하니 윤○의 조부인 진사 증 참판[윤두서]의 묘는 외관의 횡대 아래쪽이 도끼로 부서져있었습니다.

그날 관을 들어내어 북쪽 계체 안쪽 7보되는 곳에 옮겨 두고 (살펴보니), 내관은 상변 방판方板에 도끼 흔적이 1곳으로 길이 1촌 넓이 3푼이고, 천관의 왼쪽 상변에 박탈이 1곳 있는데 길이 3촌 5푼 넓이 8푼이고, 좌변판에 박탈이 1곳 있는데 길이 1촌 넓이 4촌이고, 좌변판 하변에 몽둥이로 찍어 상처 난 곳이 있는데 길이 1촌 넓이 2푼이고, 우변 지판地板에 박삭剝削이 1곳 있는데 길이 8촌 넓이 1촌 2

편이었습니다. 왼쪽의 전실 조모는 관이 노출된 것이 3척 7촌이고, 그 중에서 아래가 뽑힌 것이 1척 4촌이었습니다. 외관 횡대는 반 이하가 조각조각 도끼로 파손되었습니다. 오른쪽의 후실 조모는 관이 노출된 것이 3척 2촌이고, 그 중에서 아래가 뽑힌 것이 1척 4촌이었습니다. 외관 횡대는 반 이하가 조각조각 도끼로 파손되었습니다. 흙을 파낸 곳은 길이 4보 반, 넓이 5보, 깊이 4척 5촌입니다. 내계內壙에 묻은 지석은 남김없이 부서졌는 바 그 모습이 극히 참혹하였습니다.

재흥이 사굴한 죄는 이미 해당하는 울[대명률의 범조항]이 있으니 달리 논단할 일이 없지만, 대저 이 소송은 곡절이 있습니다. 지난 9월 일에 해남현에 사는 윤덕찬 등이 올린 소지 내용에, 윤○가 그의 조부모를 그[윤덕찬]의 10대 조부와 조모 두 무덤 사이에 이장하였다면서 적간해서 파내 이장해 달라고 소지를 올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감이 친히 가서 적간하니 윤○가 접지한 새 이장처가 과연 덕찬의 10대조모 무덤에서 30보 위쪽이고, 윤○에게는 11대조모 무덤이었습니다. 대개 이 산은 골짜기 전체가 윤○의 11대조부터 입장하여 그대로 세장산世葬山이 되었습니다. 윤○의 9대조모 분묘가 그의 10대조모 무덤 위에 압장壓葬하고 있고, 윤○의 10대조모가 또 11대조모 무덤 위에 압장하였습니다. 아들이 어미 분묘를 누르고 있고, 며느리가 시어머니 분묘를 누르고 있어 그 도장倒葬이 이미 가문의 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윤○의 10대와 9대는 곧 덕찬의 9대와 8대입니다.

윤○가 새로 입장한 것은 지난 5월 일인데, 그 때 그의 문장 윤도서가 선대부터 이미 도장하였기 때문에 윤○에게 허장許葬하였습니다. 그 밖의 여러 윤씨들은 같은 자손으로 받은 허장하고 받은 금장하다가 그 장례일에 윤덕찬 등이 또 모두 모여서 윤○가 애걸하여 모두 허장하기로 의논한 후에 함께 역사役事를 보살피고 장례식을 호위하였습니다. 그런데 9월 일에 이르러 갑자기 의송을 올린 것은 일이 매우 의혹스럽습니다. 동 윤도서와 덕찬 등에게 허장한 여부를 처음부터 끝까지 물으니 도서와 덕찬 등은 과연 윤○의 애걸로 인하여 허장한 것이 확실하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종종에서 이미 허장하여 장례를 지냈으니 일의 형세로 살피건대 실로 파서 이장하는 것이 어렵고, 또 이 도장이 한두 번에 그치지 않고 이미 가문의 법을 이루었으니 이것으로 탈을 잡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파내서 이장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뜻으로 결급한 바가 있습니다.

달포 전에 윤희박이 갑자기 의송을 올려 관찰사의 데김 내용에, ‘적간하여 공결할 것. 산재관에게 라고 데김을 보내셨습니다. 지금 이 산송은 이미 친심적간을 거쳐서 처결하였으므로 전후의 곡절을 곧 논보하려 하였는데, 윤희박 등이 이렇게 사굴하는 행위가 터졌습니다. 무덤을 파냈다고 담당한 윤재흥은 의송의 연명한 열거 이름 중에는 들어있지 않으니 그가 주모자가 아닌 것은 명약관화합니다. 그래서 여러 방면으로 탐문을 해보니 과연 윤희박이 그의 종종에서 (비용을) 거두어 재흥과 100냥으로 약속한 후에 우선 50냥을 주었다는 말이 사람들 사이에 낭자하게 전파되어 길에 가득합니다. 이로써 보면 재흥이 뇌물을 받은 것이 분명하여 감출 수 없습니다. 재흥이 본래 의지할 데 없는 무뢰배로 100금의 뇌물에 욕심을 내서 이렇게 사굴을 담당하는 행위를 하였지만, 이는 재흥이 설계한 것이 아니고 실은 흥박이 주모하여 지휘하였습니다. 재흥이 만약 뇌물을 받지 않았다면 그 수많은 자손들

중에 유독 무슨 위선의 정성이 있다고 이렇게 사람으로서는 차마 하지 못할 행위를 했겠습니까?

애초에 이미 허장하였는데 다섯 달이 지난 후에 끝내 묘를 파내니, 그 심사를 아무리 해도 헤아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한 삼 아래에 세 사람의 관을 파내고 도끼로 외관을 부수고 내관까지 도끼 흔적이 남자합니다. 이는 보통의 사굴로 보아 예에 따라 처단해서는 안되므로 동 윤재흥과 윤흥박 등을 아울러 칼을 씌워 엄히 가둔 후에 전후의 대강을 하나하나 들어 첩보하오니 그 죄상은 엄히 다스릴 일입니다. 사도께서 잘 헤아려 처분하여 명령하도록 (명령해 주십시오)

임인년(1782) 12월 초9일 순영에 보고함.

爲牒報事 去十一月廿日 縣監
靈岩郡梨津倉前洋 點船
時 海南縣居 幼學尹○白活內 其
矣祖父與前後室祖母 三合葬於治
下波下大面德井里所在 其矣十
一代祖先山餘麓矣 千萬不意
治下居 同宗尹興毫 去夜 矣身
祖父母塚 私自掘塚 露出三棺
斧痕狼藉是如乙仍于 聞甚驚駭 縣
監自點船所 摘奸次 將欲發行之際
本縣留鄉所文狀內 寶岩面居 尹
再興挺身來告內 以爲尹○祖父
塚 其矣身私自掘出是如 枚舉牒
報如爲等以 同掘塚元犯是在 尹再
興 使之捉待於其矣所掘山處 兩
隻所見處 縣監親審摘奸 則尹
○祖父進士贈參判墓 外棺橫
坨下邊斧破 日下方拔棺 移置于北
邊塔內七步之地是遣 內棺上邊方
板 斧痕一處 長一寸廣三分 天板
左邊上 有剝脫一處 長三寸五分廣
八分 左邊板有剝脫一處 長一寸廣
四寸 左邊板下邊 有椎鑿傷處 長
一寸廣二分 右邊地板 有剝削一處

長八寸廣一寸二分 左前室 露棺三
尺七寸內 下拔一尺四寸 外棺橫帶
半以下 片片斧破 右後室 露棺
三尺二寸內 下拔一尺四寸 外棺橫
帶半以下 片片斧破 掘土處 長
四步半廣五步 深四尺五寸 內階
所埋誌石 破碎無餘是乎所 其在
所見 極爲慘愕 再興私掘之罪
既有當律 則別無論斷之事是乎
矣 大抵此訟段 自有委折 去九月
日 海南縣居尹德贊等呈狀內 尹
○移葬其祖父母 於其矣十代祖與
妣兩塚之間是如 摘奸掘移亦 有所呈
狀乙仍于 縣監親往摘奸 則尹○所占
新葬處 果是德贊十代祖母塚三十
步之上 而於尹○爲十一代祖母塚是如乎
盖此山一洞 自尹○十一代祖入葬 而
仍爲世葬之山 尹○之九代祖母墳
壓葬於其十代祖母塚上 尹○十代祖
母 又爲壓葬於其十一代祖母塚上 子
壓母墳 婦壓姑墳 其爲倒葬 已
成其門法 而尹○之十代九代 卽德贊
之九代八代是乎旡 尹○之新葬 在於去
五月日 而其時其矣門長尹道緒 以
自先世倒葬之致 許葬於尹○是遣
其外諸尹 同是子孫 半許半禁是
如可 其葬日尹德贊等 又爲齊會
因尹○之哀乞 咸議許葬之後 同爲看
役護葬爲有如乎 至於九月日 卒然呈
議者 事甚訝惑 同尹道緒與德贊
等處 許葬與否 舉首尾發問 則道
緒德贊等 果因尹○之哀乞 許葬的

實是如 有所納招是乎所 其矣宗中
既已許與過葬 則揆以事勢 實難掘
移是遣 且是倒葬非止一再 已成其
門法 則不必以此執頃乙仍于 不可掘
移之意 有所決給矣 月前尹興毫
忽呈議送 使題音內 摘奸公決
事 山在官是如 題送教是乎所 今此
山訟 既經親審摘奸處決 故前後
委折 方欲論報矣 尹興毫等 有
此私掘之舉 而掘塚擔當是在 尹
再興段 不入於議送列名之中 則其非
首倡 明若觀火 故多般探問 則果是
興毫收斂於其矣宗中 與再興約
以一百兩後 先給五十兩之說 人皆傳
播狼藉載路 以此觀之 再興之
捧賂 昭難可掩是乎旡 再興本以無
依無賴之類 貪其百金之賂 而有此私
掘擔當之舉是乎乃 此非再興之設
計 實是興毫之首倡指揮是遣
再興若不受賂 則其麗不億之子孫
獨何有爲先之誠 而作此人所不忍爲
之舉乎 初既許葬 則過五朔後 未乃
發掘 究其心腸 萬萬回測旡不喻
一錘之頭 掘人三棺 斧破外棺 至及
於內棺 斧痕狼藉 此則不可以尋常
掘移 循例處斷是乎等以 同尹再
興尹興毫等乙 並只着枷嚴囚後 前
後大略 枚舉牒報爲去乎 其罪狀別
加嚴勘事 道教是 參商處分行下
爲只爲

壬寅 十二月初九日 報巡營

4. 강진 덕정동 산송 II

7-4-1) 1890년 윤관하 등이 강진현에 올린 단자

[1890년(고종 27) 10월에 윤관하 등이 강진현에 올린 산송 관련 단자. 5대조 윤이석 분묘를 과천에서 강진 덕정동德井洞 세장지에 천장하는 과정에서 윤기하 등이 금장하여 산송이 발생하였다. 현장 조사하여 산도山圖를 작성할 때 윤관하 측의 윤주태가 장차將差를 구타한 죄목으로 옥에 갇히자 윤관하 등은 종인들이 허장許葬하였음을 주장하고 산도를 작성할 때 부당함이 있었음을 호소하는 내용이다. 당시 강진 현감은 10월 16일에 영암 남창에서 이 단자를 받고, 산송의 처결과는 별개로 윤주태가 양반임을 빙자하여 관속을 구타한 죄를 조사하겠다고 처분하였다.]

단자

삼가 살펴주십시오. 엇드려 생각건대, 동중간의 산송은 세간에 간혹 있지만 대체로 부득이한 일에서 나오므로 마땅히 금할 것은 금하고 금할 수 없는 것은 허락하여 일의 형세를 판단하여 행합니다. 따라서 선대를 위하는 것과 종족 간의 정의情誼를 병행하여 어그러지지 않는 것이 참으로 이 때문입니다. 민들[저희들은] 지금 윤기하, 윤경조, 윤계원이 정소한 일로 산도를 그리기에 이르렀는데, 민의[저의] 족질인 윤주태가 옥에 갇혀있어 민들은 당황스럽고 두려움을 이길 길 없어 감히 이렇게 함께 나아가 우러러 호소합니다. 일에는 까닭이 있고 말은 장황합니다만 엇드려 바라건대 세세히 살펴주십시오.

대저 민의 13대조 통례공과 12대조 참의공 양대의 묘소가 치하의 파지대면 덕정동에 동쪽과 서쪽 두 언덕에 있습니다. 그 사이에 좌우로 10보, 20보 거리 내에 강진의 여러 종족 4파의 선대 산소가 누누이 계장繼葬한 것이 모두 27총이 있습니다. 이들을 전부터 금장하지 않았던 것은 대개 누가 선조들의 자손이 아니겠으며 선조의 자손으로 선대 무덤에 계장한 것은 생전에 무릎 아래에 나열한 것과 같아서 누우라고 만든 긴 평상에 남이 낮잠을 자도록 허용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내버려두고 금장하지 않아서 문득 일문의 족산을 이루었는데, 오직 민들만 계장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올 봄에 민들이 5대조 전부공의 면례緡禮를²² 추진하여 과천으로부터 덕정동에 있는 참의공 묘소 아래로 반장返葬하였는데, 산에 들어갈 때에 민들이 직접 각 파를 일일이 찾아가 협조를 요청하고 일일이 허락을 얻어 입장入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뜻밖에 저 윤기하가 자기[우리] 선산에 계장한

22 면례(緡禮) 분묘를 옮겨 장사를 다시 지냄

다는 사실을 생각지 않고 여러 종인들을 선동하여 물의를 일으키고 소장까지 내었습니다. 선산으로 말할 것 같으면 누가 선산이 아니라고 할 것이며, 원근으로 따져도 다른 계과의 선산이 민의 선산보다 가까이 있는데 어찌 유독 민들만 계장할 수 없다고 하겠습니까? 이것이 이른바 등잔 밑이 어둡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산도를 그릴 때에는 양척兩隻이 함께 모여 도형을 살피는 것이 법례인데, 어찌 저 윤기하는 민들이 함께 나오는 것을 기다리지 않고 임의로 조종하여 홀로 도형을 그렸으니,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들은 필시 모함하여 말하길, “관령을 따르지 않고 청해도 오지 않았다”고 뜯 말을 지어내어 성주 합하의 진노를 유도하여 그 욕심을 채우려 하였을 것입니다. 비록 백방으로 간계를 쓴다고 해도 이치의 곡직은 생각하옵건대 합하의 밝게 살피시는 데서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에 감히 사유를 갖추어 우러러 호소하오니, 앞드려 바라옵건대 잘 헤아려 처분하시어 민들만 홀로 억울함을 품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천번만번 축수합니다.

처분 하실 일

강진 성주 합하 처분 경인년(1890) 10월 일

해남 민 윤관하(1841~1926), 윤종연, 윤진호, 윤규호, 윤성호, 윤대호, 윤정호, 윤치호, 윤원호, 윤장호, 윤방호

윤경호, 윤경호, 윤득호, 윤천호, 윤주학, 윤주승, 윤주성, 윤주철, 윤주현, 윤주홍, 윤주성
윤주범, 윤주용, 윤주상, 윤주형, 윤주형, 윤주성, 윤주옥, 윤주창, 윤주성, 윤주환, 윤주련
윤주국, 윤주원, 윤주익, 윤주겸, 윤주홍, 윤익하, 윤태하, 윤돈하, 윤재하, 윤철하, 윤두하, 윤계하
윤광하, 윤성하, 윤응하, 윤재형, 윤재직, 윤재설, 윤재두, 윤재룡 등

[제사] 산송은 내일 마땅히 친심親審한 후에 처결할 것이다. 우선 처분을 기다리고, 윤주태가 양반의 이름을 빙자하여 관령을 받든 장차將差를 구타했다고 들으니 극히 해괴하고 통악스럽다. 우선 사실을 조사하는 것을 기다릴 것. 16일, 영암 남창에서.

[착서]

單子

恐

鑑伏以 同宗間山訟 世或有之 而蓋出於不得已之事 故當禁者禁之 不當禁者許之 審度事勢而行之 故爲先與宗誼并行而不悖者 良以

此也 民等今以尹基夏尹景祚尹季元呈訴事 至於圖形 而民之族孫尹柱台 方在囚禁 民等不勝惶凜 敢此齊進仰籲 而事有苗脈語涉張

皇 伏乞細細垂察焉 大抵民之十三代祖通禮公 十二代祖叅議公 兩代墓所 在於治下坡之大面德井洞 東西兩崗 而其間於左於右 十步二十步之內 康津諸宗四派

先山之纍纍繼葬者 合爲二十七塚 而自前不禁者 蓋以爲孰非先祖之子孫 而以先祖之子孫 繼葬於先壟者 便同生前之羅列膝下 非如臥榻之內 容他人軒睡之類 故寘之不當禁之科 便成一門之族山 而唯獨民等無繼葬之事矣 今春民等營五代祖典簿公緬禮 自果川返葬於德井洞叅議公墓所之下 而入山之時 民等躬往各派 面面懇乞 面面受諾 而入葬矣 不意今者 噫彼基夏等 不思自己先山之繼葬 扇動諸宗 惹起爻象 至於舉狀 以言乎先山 則夫孰非先山 以言乎遠近 則他派先山 有近於民之先山者 而何獨必禁於民等之繼葬乎 此所謂燈下不明者也 且圖形之時 兩隻共會 看審圖形 自是法例 噫彼基夏 不待民等之共進 任意操縱 獨自圖形者 是豈法例乎 彼必誣訴曰 不遵官令 請之不來 胥動浮言 動起城主之震怒 欲逞其欲 而雖百鬼做奸 理之曲直 恐莫逃於 明鑑之下 故敢此具由仰籲 伏乞 叅商處分 俾民等無至獨抱冤枉 千萬祝手 行下向教是事

康津 城主 閣下 處分 庚寅 十月 日

海南 民 尹觀夏 尹鍾淵 尹振浩 尹珪浩 尹晟浩 尹岱浩 尹廷浩 尹致浩 尹元浩 尹璋浩 尹芳浩 尹敬浩 尹(敬+衣)浩 尹得浩 尹天浩 尹柱鶴 尹柱承 尹柱晟 尹柱鐵 尹柱憲 尹柱鴻 尹柱星 尹柱範 尹柱瑢 尹柱尙 尹柱珩 尹柱亨 尹柱成 尹柱玉 尹柱昌 尹柱聖 尹柱煥 尹柱璉 尹柱國 尹柱元 尹柱益 尹柱謙 尹柱洪 尹益夏 尹泰夏 尹敦夏 尹在夏 尹喆夏 尹斗夏 尹啓夏 尹光夏 尹聖夏 尹應夏 尹在衡 尹在稷 尹在高 尹在斗 尹在龍 等

[題辭] 山訟則明當親審後 決處矣 姑俟處分 而尹柱台之憑藉班名 歐打奉官令之將差 聞極駭惡 姑俟查實向事 十六日 在靈巖 南倉 [着署]

7-4-2) 1893년 윤관하 등이 강진현에 올린 단자

[1893(고종 30) 1월에 윤관하 등이 강진현에 올린 산송관련 단자. 1890년 2월에 과천에 있는 8대 조 전부공典籍公(윤이석) 분묘를 강진 덕정동 15대조 분묘 아래로 이장하였는데, 종인 윤봉거가 사굴私掘하였음을 호소하며 율에 따라 정배定配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당시 강진 현감은 감영에 가고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현감이 돌아온 후에 다시 정소할 것을 처분하였다.]

해남 민 윤관하, 윤종연, 윤장호 등

삼가 살펴주십시오. 없드려 생각건대, 민들은 막 망극한 번고를 당하여 참통하고 분하여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민들의 8대조 전부공[尹爾錫]의 묘소가 경기 과천에 있는데, 자손들이 멀리 살아서 제사를 올리기 어려워서 지난 경인년(1890) 3월에 치하의 파지대면 덕정동의 15대조 선산 계체階砌 아래 32보 지점으로 이장하였습니다. 이제 뜻하지 않게 종인 윤봉거라는 사람이 법을 업신여기는 줄도 모르고 밤에 몰래 사굴하여 관이 거의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어찌 이러한 변괴가 있단 말입니까? 민들은 분하고 절박함을 이기지 못하고 이에 감히 밝게 다스리는 성주님 앞에 우러러 호소하오니, 엎드려 바라건대 잘 헤아리신 후에 올[대명률]에 따라 정배하도록 천번 만번 울며 비읍니다.

처분 하실 일

강진 성주 처분 계사(1893) 정월 일 윤진호, 윤근호, 윤원호, 윤천호, 윤계호, 윤주학, 윤주승, 윤철주, 윤옥주, 윤주성

[제사] 윤민尹民이 이미 자수하였으므로 어제 이미 잡아 가두었다. 관宦(강진 현감)께서 감영에 가셨으니 돌아오시기를 기다려서 다시 정소하면 마땅히 법에 따라 심문하여 처리할 일. 20일

행관 관인을 봉함[작성]

海南民尹觀夏尹種淵尹璋浩等

恐

鑑伏以 民等方遭罔極之變 慘痛憤迫 不知攸裁是白齊 民等之八代祖典簿公墓所 在於京畿果川 而子孫遠居 香火難薦 故去庚寅三月分 移

葬於 治下波之大面德井洞 十五代祖先山階下三十二步之地 而不意今者 宗人尹奉巨爲名人 不知蔑法 暗夜潛掘 幾至露棺 世豈有如許變怪乎 民等不勝

憤迫 茲敢仰籲於 明庭之前 伏乞 叅商教是後 依律定配之地 千萬泣祝 行下向教是事

康津城主 處分

癸巳正月 日 尹振浩 尹崑浩 尹元浩 尹天浩 尹桂浩 尹柱鶴 尹柱承 尹鐵柱 尹玉柱 尹柱星

[題辭] 尹民既爲自現 故昨已捉囚 官之營行 待還官更呈 則當依法勘處事 廿日 行官 印封 [着署]

7-4-3) 1893년 윤관하 등이 강진현에 올린 단자

[1893년(고종 30) 2월에 윤관하 등이 강진현에 올린 산송 관련 단자. 같은 해 1월에 윤관하 등이 강

진현에 정소하였을 때에 현감이 영문에 가고 없었기 때문에 환관還官한 후에 다시 정소하라는 처분에 따라 재차 정소한 문서이다. 윤봉거는 문중계의 부조扶助에 불만을 품고 변고를 일으켰음을 호소하며 결탁한 자를 밝히고 유배형에 처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강진관에서는 직접 조사한 후에 영문에 첩보하여 감처勘處하겠다는 처분을 내렸다.]

해남 민 윤관하

삼가 살펴주십시오. 엎드려 생각건대, 민들은 지난달에 선산이 사굴당한 일로 호소하였는데, 제음題音 내에 (성주께서) 관에 돌아오시기를 기다려서 다시 정소하면 마땅히 법에 따라 심문하여 처리할 일이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에 전후의 문서를 접련하여 다시 호소합니다. 대저 무덤을 사굴하는 습속은 대체로 무뢰배들의 법 밖의 일이기 때문에 금장이 마땅한지 부당한지를 논하지 않고 사굴하면 모두 법에 따라 유배형에 처하는 것이 본래 법전에 실려 있습니다. 어찌 윤봉거처럼 유감을 품고 음해하는 자가 있겠습니까?

봉거 놔 본래 광패하고 보잘 것 없는 행실로 온 문중에서[一門]에서 버린 자입니다. 그는 선달 명색으로 작년 선달에 민들의 다섯 계파 대동계에 부조를 청하였는데, 그 때 계임稔任이 곧 민의 계파 중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계의 조약이 전부터 선달에게는 부조하는 일이 없어서 다만 5냥 전을 내주었습니다. 이 놈이 적게 준 것에 노하여 지난달 17일 밤에 이처럼 해괴한 변고를 일으켰습니다. 민들이 산에 입장한 후에 온 문중 사람들이 모두 모여 이름에 권점을 찍어 합의한 수표가 있고, 또 그 계파에서 별도로 수표를 만들어 소송을 그치고 죽인들 간에 돈목하겠다는 약속을 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누구이길래 유독 혼자만 선조를 위한단 말입니까? 이는 남을 해치려는 마음을 몰래 쌓았다가 때를 틈타 원한을 갚은 것에 불과하니, 또한 필시 몰래 사주하고 결탁한 자가 있을 것입니다.

민들의 선산은 그에게도 방계 조상이 되고, 또 관작이 있는 산소이니 이는 보통의 사굴죄로 다스려서는 안됩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잘 헤아리신 후에 엄히 형장을 쳐서 문초하여 사주한 사람을 조사해내서 모두 영문에 첩보하여 통렬히 다스려 멀리 정배해 주실 것을 천번 만번 손모아 비읍니다.

처분하실 일

강진 성주 처분

계사년(1893) 2월 일 민 윤종연, 윤근호, 윤진호, 윤원호, 윤장호, 윤주학, 윤주승, 윤철주, 윤주현, 윤주홍, 윤주성

윤주성, 윤주성, 윤주형, 윤주형, 윤주창, 윤주범, 윤익하, 윤태하, 윤돈하, 윤재하, 윤길하 등

[제사] 마땅히 내일 직접 조사한 후에 영문에 첩보하여 감처勘處할 일. 13일.

행 강진관 [작성]

海南民尹觀夏

恐

鑑伏以 民等去月以先山遭掘事 有所號訴 而 題音內 待還官後更呈 則當依法勘處教是 故茲
 前後文蹟 帖聯更籲爲白齊 大抵掘塚之習 率
 是無賴輩法外之事 故勿論當禁與不當禁 一爲犯掘 則依法刑配 自在法典是白去[在]果 豈有
 如尹奉巨之挾憾陰害者乎 奉巨漢素以狂悖無行 爲一門所棄之人
 也 渠以先達名色 昨年臘月 請扶於民等之五派大同稷 其時稷任 卽民派中人也 以爲此稷條
 約 自前無先達扶給之事 只以五兩錢出給矣 此漢怒其少給 去月十七日
 夜 作此駭變是白齊 民等入山之後 一門齊會 有圈名和同之標是白遣 又自渠派爲別標止訟
 睦族之約 不啻申復是去乙 渠以何人 獨自爲先乎 此不過陰蓄害人之
 心 乘時逞憾 而亦必有喉屬符同者矣 民等之先山 於渠亦爲傍先 而又是官爵山所 則此不
 可以尋常掘塚之律治之矣 伏乞 叅商教是後 嚴刑問招 查得喉
 囑之人 一切報 營 痛繩遠配之地 千萬祝手爲只爲
 行下向教是事

康津城主 處分

癸巳二月 日 民 尹鍾淵 尹崑浩 尹振浩 尹元浩 尹璋浩 尹柱鶴 尹柱承 尹
 鐵柱 尹柱憲 尹柱鴻 尹柱星
 尹柱成 尹柱聖 尹柱珩 尹柱亨 尹柱昌 尹柱範 尹益夏 尹泰夏 尹敦夏 尹載夏 尹吉夏 等
 [題辭] 當明日親審後 報營門 勘處向事 十三日
 行康津官 [着署]

7-4-4) 1893년 윤관하 등이 강진현에 올린 단자

[1893년(고종 30) 2월에 윤관하 등이 강진현에 올린 산송 관련 단자. 덕정동에 이장한 8대조 전부
 公典簿公 분묘를 사굴한 윤봉거尹奉巨와 사주한 자를 조사해내서 모두 정배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강진관에서는 2월 21일에 영문에 보고하여 각별히 조치할 것이며 윤봉거도 엄치할 것이라는 처
 분을 하였다.]

단자

삼가 살펴주십시오. 엇드려 생각건대, 치하治下의 덕정동에 있는 민들의 8대조 전부공[윤이석]의
 묘소가 윤봉거에게 사굴당한 일은 이미 친심親審 중에 있습니다. 대제 민의 16대조 통례공[윤사보],

15대조 참의공[윤경] 양대의 산소가 모두 덕정동의 동쪽과 서쪽 두 산록에 있는데, 그 나머지 각파의 사선산私先山이 좌우에 계장한 것이 합하면 27층이니 곧 세장한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인년(1890) 봄에 과천에서 8대조 묘소를 15대조 묘아래 30보되는 지점으로 이장하였는데, 각 파의 여러 죽인들이 한 사람도 트집을 잡아 다투는 자가 없었습니다. 선산 아래에 후손을 계장하는 것은 곧 각 문의 통전通典이기 때문입니다. 그 후에 유기하가 관에 정소한 일이 있었는데 온 문중이 불가하다고 여겨서 화회문서를 작성하기에 이르니, 전후의 일들이 이미 바른 데로 귀결되고 잘 해결되었습니다. 아! 저 봉거가 이러한 변괴를 일으킨 것은 무슨 믿는 바가 있어서 그러한 것입니까? 사주를 받아서 그러한 것입니까? 남의 무덤을 사굴하고 관에 스스로 자수하였으니 믿는 바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는 말이 없다가 뒤에서 변고를 일으켰으니 사주를 받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민들의 두렵고 억울함은 이미 할 말이 없지만 유해를 모신 관은 이미 해남 땅으로 임시로 천장하였습니다. 전의 소지를 점련하여 다시 호소하오니 잘 헤아리신 후에 동 윤봉거를 엄형 문초하여 사주한 사람을 조사해내서 모두 아울러 엄히 다스리고 영문에 보고하여 멀리 정배해 주시기를 천번 만번 손 모아 비읍니다.

처분하실 일

강진 성주 처분 계사년(1893) 2월 일. 해남 민 윤관하, 윤종연, 윤응호, 윤진호, 윤성호, 윤규호, 윤근호, 윤장호, 윤원호, 윤경호, 윤치호, 윤관호, 윤원호

윤주학, 윤주승, 윤주현, 윤철주, 윤주홍, 윤주성, 윤주창, 윤옥주, 윤주형, 윤주형, 윤주성, 윤주성, 윤주현

윤익하, 윤태하, 윤돈하, 윤장하, 윤계하, 윤필하, 윤재하, 윤창하, 윤광하, 윤봉하, 윤영하, 윤철하, 윤용하

윤재형, 윤재직, 윤재두, 윤재설, 윤재성 등

[제사] 막 영문에 첩보하려 한다. 회제回題를 기다려 각별히 조치할 것이거니와 윤봉거도 마땅히 특별히 엄히 다스릴 일. 21일.

행 강진관 [착서]

單子

恐

鑑伏以 治下德井洞 民等之八代祖典簿公墓所 遭掘於尹奉巨之事 已在親審中是齊 大抵民之十六代祖通禮公 十五代祖

叅議公 兩代山所 俱在德井洞東西二麓 而其餘各派私先山之係葬於左右者 合爲二十七塚 則即可謂世葬之地也 故庚寅春

自果川 移葬八代祖墓所 于十五代祖墓下三十步之地 而各派諸族 一無爭執者 先山下 係葬

後孫 卽是各門之通典故也 其後有
 尹基夏之呈官事 一門以爲不可 至有和會文蹟 則前後之事 已爲歸正妥貼 而噫彼奉巨者 作
 此變怪者 有何恃援而然耶 有
 聽指囑而然耶 掘人之塚而自見於官 恃援可知 無言於前而作變於後 聽囑可知 民等之惶悶憤
 迫 已無可言 而骸柩則已爲遷
 厝于海南地 前狀帖聯更籲爲去乎 叅商教是後 同尹奉巨嚴刑問招 查得喉囑之人 一併嚴治報
 營 遠配之地 千萬
 祝手爲只爲
 行下向教是事
 康津城主 處分 癸巳二月 日 海南民 尹觀夏 尹鍾淵 尹應浩 尹振浩 尹晟浩 尹珪浩
 尹崑浩 尹璋浩 尹元浩 尹褻浩 尹致浩 尹寬浩 尹原浩
 尹柱鶴 尹柱承 尹柱憲 尹鐵柱 尹柱鴻 尹柱星 尹柱昌 尹玉柱 尹柱亨 尹柱珩 尹柱聖 尹柱成
 尹柱賢
 尹益夏 尹泰夏 尹敦夏 尹章夏 尹啓夏 尹弼夏 尹載夏 尹昌夏 尹光夏 尹鳳夏 尹永夏 尹喆夏
 尹龍夏
 尹在衡 尹在稷 尹在斗 尹在高 尹在誠 等
 [題辭] 方欲報營 待回題 各別措處是在果 尹奉巨亦當別般嚴勘事 廿一日
 行康津官 [着署]

7-4-5) 1893년 윤관하 등이 전라도 관찰사에게 올린 의송

[1893년(고종 30) 5월 윤관하 등이 전라도 관찰사에게 올린 산송 관련 의송. 윤봉거가 8대조 묘를 사굴한지 여러 달이 지나도록 아직 형신(刑訊) 한 차례도 없음을 호소하며, 윤봉거를 다른 고을로 이송하여 엄히 문초하고 결탁한 자를 조사하여 함께 징배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하여 관찰사는 5월 2일에 ‘이미 조율(照律)한 일’이라고 처분하였다.]

해남 생 윤관하, 윤종연, 윤응호, 윤주학

이 의송을 올리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들의 선조 참의공[윤경]의 묘소가 강진 땅에 있는데, 참의공의 후손 중에 각 파의 사사로운 선산이 오래되고 가까운 것을 막론하고 좌우에 계장한 것이 모두 27총이니 가히 일문의 세장산이라고 할 만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생들의 8대조 전부공[윤이석] 묘를 참의공 묘 아래 32보 되는 지점으로 천장하였습니다. 그 후에 윤기하라는 자가 유독 혼자 소송

을 일으켰는데, 각파의 사람들이 모두 그가 그르다는 것을 알아서 회회문적을 작성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뜻하지 않게 금년 정월에 기와와 같은 계파 사람인 윤봉거라는 자가 밤을 틈타 몰래 사굴하였습니다. 만약 마땅히 금장할 곳이라면 산에 입장할 때에 어찌 제파에서 금단하지 않았겠으며, 소송을 일으킨 날에는 도리어 회회하는 문서가 있었습니까? 무덤을 사굴한 죄는 [대명]를 법전에서 중죄인데 잡아 가둔지 여러 달인데도 아직까지 형장으로 심문한 것이 한 차례도 없습니다. 과연 법의 의리 상 당연한 것이며 혹 생들의 억울함은 없겠습니까?

고을 아전과 결탁하여 죄를 짓고 면하려고 도모하니 법을 장차 어디에 베풀며 억울함을 장차 어디에 고하겠습니까? 이에 감히 새로 부임하신 합하게 우러러 호소하옵니다. 없드려 바라건대 잘 헤아리신 후에 동 윤봉거를 다른 고을로 이송하여 가두고 엄형 문초하여 결탁한 사람을 기필코 조사해 내서 모두 아울러 형배하여 억울함을 만의 하나라도 풀어주시기를 천번만번 손모아 비옵니다.

처분하실 일

순상 합하 처분 계사년(1893) 5월 일 윤진호, 윤근호, 윤원호, 윤경호, 윤득호, 윤정호, 윤성호, 윤경호, 윤장호, 윤권호, 윤천호, 윤주승, 윤철주, 윤주현

윤주홍, 윤주성, 윤주성, 윤옥주, 윤주성, 윤주희, 윤주창, 윤주환, 윤주현, 윤주홍, 윤주익, 윤주악, 윤주방, 윤주국

윤주형, 윤주련, 윤주겸, 윤익하, 윤태하, 윤돈하, 윤장하, 윤계하, 윤필하, 윤광하, 윤응하, 윤영하, 윤조하, 윤용하

윤재형, 윤재두, 윤재직, 윤재설, 윤재신, 윤재룡 등

[제사] 이미 조을照律한 일, 초2일.

도순사 [착서]

海南生尹觀夏尹鍾淵尹應浩尹柱鶴

右議送事段 生等之先祖叅議公之墓所 在於康津地 而叅議公後孫中 各派私先山之無論久近 系葬於左右者 合爲二十七塚

則可謂一門之世葬山也 故中年緬葬生等之八代祖典簿公墓 于叅議公墓下三十二步之地矣 其後有尹基夏者 獨自起訟 各派

之人 舉知其非 至成和會文蹟是白加尼 不意今年正月分 基夏之同派人尹奉巨者 乘夜暗掘是白齋 如其當禁之地 則入山之時 何無

諸派之禁執 而起訟之日 反有和同之文蹟乎 掘塚之罪 律典重科 而捉囚多月 尙無一場刑訊者 果豈法義之當然 而儻無生等之冤鬱

乎 締結邑邸 作罪而圖免 則法將何施 而冤將何告 茲敢仰籲於 新政之下 伏乞 叅商教是後 同尹奉巨移囚他邑 嚴形問招

符同之人 期於查得 一并刑配 以雪萬一之冤 千萬祝手爲只爲

行下向教是事

巡相閣下 處分 癸巳五月日 尹振浩 尹崑浩 尹元浩 尹璽浩 尹得浩 尹廷浩 尹晟浩 尹

敬浩 尹璋浩 尹權浩 尹天浩 尹柱承 尹鐵柱 尹柱憲

尹柱鴻 尹柱星 尹柱成 尹玉柱 尹柱聖 尹柱會 尹柱昌 尹柱煥 尹柱賢 尹柱洪 尹柱益 尹柱岳

尹柱邦 尹柱國

尹柱珩 尹柱璉 尹柱謙 尹益夏 尹泰夏 尹敦夏 尹章夏 尹啓夏 尹弼夏 尹光夏 尹應夏 尹永夏

尹助夏 尹用夏

尹在衡 尹在斗 尹在稷 尹在高 尹在莘 尹在龍 等

[題辭] 已爲照律向事 初二日

都巡使 [着署]

7-4-6) 1893년 윤관하 등이 해남현에 올린 단자

[1893년(고종 30) 8월 윤관하 등이 해남현에 올린 산송 관련 단자. 소송은 문중에서 화해하고 그의 계파에서 소송 비용 200냥을 담당하였는데, 윤봉거가 소송 비용 및 옥바라지, 이배 수속收贖 등 각종 명목을 빙자하여 문중과 윤씨들에게 피해를 입힌 상황을 호소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해남 현감은 8월 17일에 송관인 강진관이 공관인 때에 검관이 자기고을 백성의 소송을 편든다는 혐의가 있으므로 본관이 돌아온 후에 정소하라는 처분을 하였다.]

단자

삼가 살펴주십시오. 앞서 생각건대, 세상에는 종횡으로 남을 속이고 음흉하고 간특한 자가 원래 많지만, 어찌 강진 지식리의 선달 윤기하와 같은 자가 있겠습니까? 온갖 악을 구비하여 일일이 들 수 없지만, 다만 민들의 오래 쌓인 울분을 이전 소지를 점련하여 대략적으로 우러러 호소합니다. 대저 민들의 15대조 참의공[윤경] 묘가 강진 파지대면 덕정동 뒷 산록에 있습니다. 민들이 8대조 전부 공[윤이석]을 천장할 때에 여러 계파들에게 간청하여 참의공 묘의 계체 아래 32보 지점으로 이땀移遷 하였습니다. 동 기하가 여러 분들이 허락한 것을 무시하고 유독 혼자 소송을 제기하였으니, 겉으로는 선조를 위한다고 칭탁하였으나 속으로는 사적인 이득을 도모한 것입니다.

여러 계파 사람들이 이미 그 속마음을 알았으므로 모두들 불가하다고 말하고, 모여 의논하여 화해하고 소송을 멈추고 죽인들 간에 돈목한다는 뜻으로 수표를 작성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소송 비용 200냥은 민의 계파에서 마련해 갚았는데, 이것을 기하가 혼자 차지하고 자기 맘대로 소송 비용을 도 문중都門中에서 출질出秩하였습니다. 이것으로도 부족하여 금년 정월에 그의 계파의 가까운 죽인인

윤봉거라는 자로 하여금 밤을 틈타 은밀히 사굴하고 지수하여 옥에 갇히게 하고, 걸핏하면 옥바라지 비용이라고 칭하면서 여러 윤씨들에게서 억지로 징수하여 자기 개인 주머니를 채웠습니다. 도문종의 문권과 돈을 모두 빼앗아가고 논 팔고 곡식 팔아 탕진하기를 기약하였습니다. 이제 또 이배移配에 대한 인정전이라고 하면서 600냥전을 여러 윤씨들에게 억지로 배정하여 으뜸장을 놓으며 성난 눈으로 노려보니 어느 누구도 어찌하지 못하였습니다.

아! 민의 선조 묘는 그에게도 방계 선조 분산인데, 무덤을 사굴할 계획을 이익을 꾀하는 마음에서 내어 부를 쌓는 주머니로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이는 이익 때문에 동릉에서 죽은 무리와 어찌 다르겠습니까?²³ 모두 무덤을 사굴한 유배 죄인으로 한 차례도 형추를 받지 않고 편안히 집에 있으며, 이배와 수속收贖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자는 영문에는 결코 없는 법인데 기하 혼자만이 조종할 수 있는 자입니다. 그의 무서운 기세가 이 같으니 민들의 분하고 억울함을 어찌하겠습니까?

엿드려 바라건대, 잘 헤아리신 후에 윤봉거를 다시 영문에 첩보하여 엄히 형추하고 정배해 주십시오. 윤기하를 범정에 잡아들여 그 전후로 종횡무진 남을 속인 죄를 통렬히 다스리고, 민의 계파 중에서 담당한 소송 비용조 200냥과 도문종의 곡식을 팔아먹은 조목 19석 15두에 해당하는 값 276냥 5전, 팔아먹은 논 19두락의 문권을 즉시 추심해 준 후에 한 가지 예례로 영문에 첩보하여 멀리 유배해 주시도록 천변만변 손모아 비읍니다.

처분하실 일

성주전 처분

계사년(1893) 8월 일 현일면 연동 민 윤관하, 윤종연, 윤응호, 윤진호, 윤근호, 윤장호, 윤주학, 윤주승, 윤주현, 윤주성, 윤익하, 윤돈하, 윤장하, 윤재두, 윤재직 등

[제사] 윤봉거와 윤기하가 범한 죄상은 마땅히 영문에 보고해야 할 일이되, 이 고을 백성의 소송을 겸읍兼邑(해남)에서 보고하면 윤척尹隻이 아마 이쪽을 아끼고 저쪽을 미워한다고 혐의를 둘 수도 있다. 본관[강진관]이 관아에 돌아오기를 기다려 가서 정소하여 분하고 억울함을 풀어주게 할 일. 17일 관[착서]

單子

恐

鑑伏以 世之橫譎陰惡者 固多有之 而豈有如康津支石里尹先達基夏者乎 百惡俱備 不可枚舉 而只以民等積鬱之憤 帖聯前狀 舉槩仰籲是

23 『장자』 변무, “백이는 명분 때문에 수양산 아래에서 죽었고, 도척은 이익 때문에 동릉 위에서 죽었다(伯夷死名於首陽之下 盜跖死利於東陵之上)”

白齊 大抵民等之十五代祖叅議公墓 在於康津坡之大面德井洞後麓 而民等營八代祖典簿公
 緬禮時 懇乞於諸派 移窆於叅議公墓階下三十二步之地矣
 同基夏者 不有衆諾 獨自起訟 蓋陽託爲先 而陰懷營私者也 諸派之人 已知其心 故皆曰不可
 會議和同止訟睦族之意 至有成標 而訟費二百兩 自民派中劃報矣 此則
 基夏獨吞 而訟費則肆然出秩於都門中是乎旒 此猶不足 今年正月分 使其派近族尹奉巨者 乘
 夜暗掘 自現囚獄 而動稱獄費 勒徵諸尹 以爲私橐 而都門中文券與庫
 金 盡爲奪去 賣畚賣谷[穀] 期於蕩盡是白遣 今又稱以移配情錢是多爲遣 六百兩錢 勒排於諸
 尹 愆然怒視 莫敢誰何 噫民之先墓 於渠亦爲傍先山 而掘塚之計 迺出於牟
 利之心 要作致富之囊橐 此與死利東陵之類 何以異哉 具以掘塚定配罪人 而不受一次刑推
 晏然在家 移配收贖 唯意所欲者 此 營門必無之理 而基夏之獨能操縱者也 其氣
 勢之可畏 有如是者 而民等之忿冤 爲如何哉 伏乞 叅商教是後 尹奉巨更爲報 營 嚴刑赴配
 而尹基夏捉致 法庭 痛治其前後橫譎之罪是白遣 民派中所當
 訟費條二百兩 都門谷[穀]賣食條 十九石十五斗價二百七十陸兩五錢 賣食畚十九斗落文券
 卽爲推給後 一例報 營 使至遠配之地 千萬祝手爲只爲
 行下向教是事
 城主前 處分

癸巳八月 日 縣一 蓮洞 民 尹觀夏 尹鍾淵 尹應浩 尹振浩 尹崑浩 尹璋浩 尹柱鶴
 尹柱承 尹柱憲 尹柱成 尹益夏 尹敦夏 尹章夏 尹在斗 尹在稷 等

[題辭] 尹奉巨尹基夏所犯罪狀 事當報 營是矣 以此邑民訟報兼邑 尹隻似近於愛此
 憎彼之嫌 以待本官家還衙 往訴 俾雪忿冤事 十七日
 官 [着署]

7-4-7) 1894년 윤관하 등이 영암 군수에게 올리기 위해 작성한 등장

[1894년(고종 31) 4월에 해남 사는 유관하 등 10인이 연명으로 영암군에 올리기 위해 작성한 산송
 관련 등장. 8대조 전부공 분묘를 윤응호가 대표한 곳에 입장하였는데, 이문옥이 산등성이 두 개를 넘
 어 외백호에서 수백 보나 떨어진 묘를 근거로 금장하는 것은 부당함을 호소하는 내용이다. 영암관의
 데김[題音] 및 착관[着官], 착서[着署], 관인이 없는 것으로 보아 초고이거나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해남 민 윤관하

이렇게 삼가 말씀드리는 분하고 억울한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들이 지금 8대조 전부공 묘의

산송일로 진도 삼촌면 이문옥의 모함하는 소장 중에 들어갔는데, 데깁 내에, '자세히 조사하기 위해 (상대를) 데리고 와서 대령할 것'이라 하셨습니다. 민들은 황공하고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이에 감히 다함께 나아가 우러러 호소하옵니다. 대저 민들이 산에 입장한 곳은 곧 민의 친척 할아버지 윤응호가 그의 친산을 입장하였다가 중간에 이장한 후에 그대로 매표埋標하였습니다. 해당 구역의 주인은 곧 산 아래의 안국동에 사는 임도순이 금양禁養합니다. 그래서 민들이 산에 입장할 때에 그 묘혈을 열어서 매표를 파내고 사용하였으며, 땅 값은 임도순에게 지급하였습니다. 민들의 선산에서 이민李民(이문옥)의 묘까지의 거리는 산등성이 두 개를 넘어 외백호에서 수백 보나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땅 주인은 임가가 엄연히 있거늘 무슨 연유로 이민이 탈을 잡아 분쟁을 야기하여 정소하기에 이르렀는지 모르겠습니다. 윤응호가 매표했던 도자기와 임도순에게 매득한 문기를 아울러 바치오니, 하나하나 잘 헤아리신 후에 엄히 밝히고 공정하게 판결해 주시기를 천번만번 손모아 비읍니다.

처분하실 일

영암 성주 처분

갑오년(1894) 4월 일 윤종연, 윤응호, 윤주학, 윤주승, 윤익하, 윤돈하, 윤봉하, 윤재두, 윤재직, 윤재설 등

海南民尹觀夏

右謹言忿冤情由段民等今以八代祖典簿公墓山訟事入於珍島三寸面李文玉誣訴中 題教內查悉次率待教是故民

等不勝惶凜茲敢齊進仰籲是白齊大抵民等入山之地即民之族大父尹應浩舊葬其親山是多可中年移葬之後仍爲埋標而當

局地主即山下安局洞林道順禁養也故民等入山之時掘開埋標用之而地價則出給林道順處是乎所自民等先山距李民之墓則越二

燈外白虎數百步之遠也地主則林哥自在焉是去乙不知李民緣何執頃而惹起交象至於呈訴乎尹應浩之標器與林道順處買得

文記并爲呈上爲去乎一一叅商教是後嚴明公決之地千萬祝手爲只爲行下向教是事

靈巖城主處分

甲午四月日尹鍾淵尹應浩尹柱鶴尹柱承尹益夏尹敦夏尹鳳夏尹在斗尹在稷尹在高等

7-4-8) 1890년 문회소 합의문서

[1890년(고종 27) 10월 27일에 윤관하가 윤이석 분묘를 천장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산송을 죽인들과 합의하면서 작성한 문서. 제5파였던 윤관하가 분묘를 다른 곳으로 천장하기로 다짐한 후에 4파 종인들이 다함께 모여 영구히 화목할 것을 합의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본 합의 문서를 작성하고 몇 년 지나지 않아 1893년 1월에 윤관하 등이 정소하면서 분쟁은 재발하였다.]

경인년(1890) 10월 27일 문회소

우리 참의공[윤경]의 묘 아래에 제5파 윤관하가 그의 8대조 전부공[윤이석] 산을 천장하여 우리 네 계파가 소송장에 모여 대질하는 자리에서 천장해 옮기겠다는 다짐을 받기에 이르렀다. 일의 발단을 돌이켜 생각해보면, 일이 이 지경에 이르러 화목함을 잃고 정의情誼를 상실함이 선조를 위하는 뜻에서 나왔으나 도리어 선조에게 누를 끼치는 단서가 되었다. 그래서 다함께 모인 자리에서 모두 함께 논의하고 동의하여 영구히 서로 화목하지는 뜻으로 이렇게 문적을 작성하니, 모든 종인들은 그대로 준수하기를 바란다.

- 윤중협 4파 ○ 윤주철 1파 ○ 윤창일 3파 ○ 윤주영 4파
- 윤중학 4파 ○ 윤삼하 1파 ○ 윤중현 1파 ○ 윤규하 3파
- 윤봉식 1파 ○ 윤정태 3파 ○ 윤인하 1파 ○ 윤주선 2파
- 윤석병 2파 ○ 윤찬하 2파 ○ 윤상하 1파 ○ 윤주룡 5파
- 윤주언 2파 ○ 윤정기 3파 ○ 윤영하 1파 ○ 윤용순 2파
- 윤정고 3파 ○ 윤중신 2파 ○ 윤대하 1파 ○ 윤주덕 1파
- 윤정팔 3파 ○ 윤주는 3파 ○ 윤면흙 3파 ○ 윤기하 1파
- 윤약호 5파 ○ 윤석황 1파 ○ 윤창하 3파
- 윤석룡 2파 ○ 윤규호 1파

庚寅 十月 二十七日 門會所

惟我參議公墓下 第五派尹觀夏 緬襄其八代祖典簿公山 故自吾
四派 聚訟對質之場 至捧遷移之俦矣 反揆事機 事竟至極 則
失和傷誼 出於爲先之事 反有忝先之端 故齊會之席 群議僉同
永相和睦之意 如是成籍 則諸宗一遵 幸甚

- 尹鍾浹 四派 ○尹柱鐵 一派 ○尹昌一 三派 ○尹柱英 四派
- 尹鍾學 四派 ○尹三夏 一派 ○尹鍾玄 一派 ○尹圭夏 三派
- 尹鵬植 一派 ○尹廷泰 三派 ○尹寅夏 一派 ○尹柱宣 二派

- 尹錫秉 二派 ○尹纘夏 二派 ○尹庠夏 一派 ○尹柱龍 五派
- 尹柱彦 二派 ○尹廷夔 三派 ○尹永夏 一派 ○尹龍淳 二派
- 尹廷高 三派 ○尹鍾臣 二派 ○尹大夏 一派 ○尹柱德 一派
- 尹廷八 三派 ○尹柱殷 三派 ○尹勉欽 三派 ○尹基夏 一派
- 尹若浩 五派 ○尹錫璜 一派 ○尹昌夏 三派
- 尹錫龍 二派 ○尹圭浩 一派

7-4-9) 1894년 잡문기

[윤관하가 8대조 윤이석 묘를 영암 송지면 안국동으로 이장할 때 이문옥이 금장禁葬하면서 발생한 산송의 전말을 기록한 문서 단편. '7-4-10) 1894년 잡문기'의 내용을 고려할 때, 윤관하의 친구가 영암 군수에게 보내는 간찰로 파악된다. 간찰을 작성한 시기는 이장한 때가 1893년인데 문서의 내용 중에 '작년 4월'에 영암에 이장하였다는 기록으로 보아 1894년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해남 연동에 사는 윤관하 석사는 곧 선현의 후예입니다. 그의 8대조 전부공(윤이석)의 산소가 과천 땅에 있는데, 자손이 멀리 살아 제사를 계속하기가 어려워서 결국 작년 4월에 치하(영암군) 송지면 안국동 산록으로 이장하였습니다. 이 땅은 일찍이 그의 족인이 부모를 묻은 옛 분묘 자리였는데, 중간에 이장한 후 매표埋標하고 산지기를 정해 수호한 것이 이미 여러 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산지기 또한 그 아비와 할아버지를 대표한 지점의 좌우에 묘를 써서 마침내 그의 땅이 되었습니다. 좌청룡 수백 보 바깥에 또한 진도 삼촌면 금산에 사는 이문옥의 부모산이 있는데, 불과 수년 전에 매득하여 새로 입장한 곳입니다.

海南 蓮洞 居 尹碩士觀夏 卽先賢
 之後裔 而其八代祖典簿公山所 在於
 果川地 子孫居遠 香火難繼 故果於
 昨年四月分 移緬於 治下松之面安
 局洞山麓 而此地曾是其族人親葬
 舊壙也 中間移葬後 因爲埋標而
 定山直守護者 已爲多年 故山直亦
 爲葬其父與祖於埋標左右 遂爲其
 地 而靑龍數百步之外 亦有珍島三

寸面琴山居李文玉親山 而不過數年
前買得新葬之地也

7-4-10) 1894년 잡문기

[윤관하가 8대조 윤이석 묘를 영암 송지면 안국동으로 이장할 때 이문옥이 금장禁葬하면서 발생한 산송의 전말을 기록한 문서 단편. 문서의 내용 및 윤우尹友(윤관하)라는 칭호를 통해 볼 때, 윤관하의 친구가 영암 군수에게 보내는 간찰로 파악된다.]

해남 연동에 사는 윤관하 석사는 곧 선현의 후예입니다. 그의 8대조 전부공(윤이석)의 산소가 과천 땅에 있는데, 자손이 먼 곳에 살아 제사를 계속하기가 어려워서 작년 4월에 치하(영암군) 송지면 안국동 산록으로 이장하였습니다. 이 땅은 일찍이 그의 죽인이 부모님을 묻은 옛 분묘 자리였는데, 중간에 이장한 후에 매표埋標하고 산지기를 정해 수호한 것이 이미 여러 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산지기 놈도 그 아버와 조부를 매표처의 구역 내에 입장하여 마침내 그 집의 금양禁養을 이루었습니다. 청룡 수백 보 바깥에 또한 진도 삼촌면 금산에 사는 이문옥의 부모 분산이 있는데, 불과 수년 전에 매득하여 새로 묘를 쓴 곳입니다. 윤우尹友(윤관하)가 천장을 할 때에 그 죽인이 매표한 옛 터를 뒷자리로 정하고, 땅값은 옛 산지기인 임도순에게 출급하였으니 이반李班(이문옥)이 금양하는 분산과 윤우尹友(윤관하)가 금양하는 분산은 경계가 분명합니다.

아! 저 이반은 그의 호강함을 믿고서 금장할 수 없는 구역을 금장하여, 장례를 치르는 날에 칼을 뽑아 행패를 부리고 하지 않은 짓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소장을 올려 엄한 데김을 받기에 이르니 윤우가 두렵고 송구한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바라건대, (소송장에서) 대변하는 날에 양쪽 상대방의 매매문기와 윤우의 죽인이 묻은 표기標器를 하나하나 잘 살핀 후에 이민李民(이문옥)의 간사한 실상을 적발하여 호강함을 믿고 금장할 수 없는 곳을 금장하는 못된 습속을 통렬히 다스려주십시오. 그래서 말하는 제가 생색나게 해주시고 유명간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탄식이 없게 해주시는 것이 어떨겠습니까? 천번만번 간절히 바랍니다.

海南 蓮洞 居 尹碩士觀夏 卽先賢後
裔 而其八代祖典簿公山所 在於果川地
子孫居遠 香火難繼 故果於昨年四月
分 移葬於 治下松之面安局洞山麓 而
此是 曾是其族人親葬舊壙也 中間移

葬後 仍爲埋標 定山直守護者 己爲多年 故山直漢 亦葬其父與祖於當局內 遂成渠家禁養 而青龍數百步之外 亦有珍島三寸面琴山居李文玉親山 而不過數年前買得新葬之地也 尹友之緬奉時 裁穴於其族人埋標舊地 而地價則出給舊山直林道順 則李班之禁養 尹友之禁養 界限昭然 噫彼李班 恃其豪強 欲禁不當之禁之地²⁴ 及其葬日 拔劔行悖 無所不至 今又呈訴 至承嚴題 尹友悚惶之心 當如何哉 幸須對下之日 兩隻賣買文記與尹友之族人埋標器 一一考審後 摘拔李民之奸狀 痛治其徒 恃豪強 欲禁不當禁之悖習 使言者生紫 俾無幽明間呼冤之歎 如何如何 千萬切仰

7-4-11) 1894년 잡문기

[윤관하가 8대조 윤이석 묘를 영암 송지면 안국동으로 이장할 때 이문옥이 금장禁葬하면서 발생한 산송의 전말을 기록한 문서 단편. '7-4-10) 1894년 잡문기'의 내용을 고려할 때, 윤관하의 친구가 영암 군수에게 보내는 간찰로 파악된다.]

해남 연동에 사는 윤관하 석사는 곧 선현의 후예입니다. 지난 4월에 그의 8대조 전부공 분묘를 영암 송지면 안국동 산록으로 이장하였습니다. 이 땅은 윤관하의 족인 윤응호가 예전에 그의 부모산을 입장하였다가 중간에 이장한 후에 그대로 매표埋標하였습니다. 매표한 근처에 산아래 사는 민 임도순의 선산이 있었으므로 윤응호가 이장한 후에 비록 매표는 있었지만 금양은 임도순의 땅이 된 것이 지

24 欲禁不當之禁之地 뒤쪽의 '欲禁不當禁之悖習' 구절과 문맥을 고려할 때 앞의 '지(之)'자가 잘못 들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금 20여 년입니다. 두 산등성이 너머 외청룡 수백 보의 땅에 진도 삼촌면 금산에 사는 이문옥의 부모 산이 있는데 3, 4년 전에 매득하여 새로 입장한 곳입니다. 윤관하가 선산을 입장할 때에 윤응호의 매표를 파내고 사용하였고, 금양禁養 값은 임도순에게 출급하였으니 처사가 분명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윤관하가 새로 입장한 선조의 묘는 윤응호에게도 선조가 되니 내가 매표한 곳에 내 선조를 입장하는 것이 어찌 불가함이 있겠습니까?

아! 저 이아李雅²⁵는 금장할 수 없는 곳에 망녕된 뜻을 두어 안장安葬하는 날에 칼을 뽑아 행패를 부리고 한 없이 괴이한 행동을 하였습니다. 들으니 이제 또 영암에 정소呈訴하였는데, 그 데김 내에 “자세히 조사하여 파내기 위하여 잡아 대령하되, 만약 완강하게 와서 대령하지 않으면 마땅히 관에서 파울길 것이다”고 하였다고 합니다. 아! 이곳은 비록 궁벽진 먼 고을이지만 경향京鄕에 이름 있는 분이 문헌 곳인데, 데김이 이처럼 신중하지 않고 경솔합니까? 이에 기록하여 올립니다. 운운

海南 士人 尹觀夏 卽先賢後裔也 去年四月 移葬其八代祖典簿公墓 於靈岩松之面安局里右麓 此地乃觀夏之族人尹應浩舊葬其親山 中年移葬後 仍爲埋標 而埋標近地 有山下居民林道順之先山 故尹應浩移葬之後 埋標雖存 禁養則爲林道順之地者 今二十餘年也 越二嶴外青龍數百步之地 有珍島三寸面琴山居李文玉親山 三四年前 買得新葬之地也 尹觀夏葬其先山之時 掘開尹應浩之埋標用之 而禁養之價 出給林道順 可謂處事分明者也 且尹觀夏新葬之先墓 於尹應浩亦爲先祖 則吾所埋標之地 葬吾先山 有何不可 而噫彼李雅 妄意於不當禁之地 安葬之日 發劔行悖 作無限怪舉 聞今又呈訴於靈岩 其題語內 查悉掘移次 捉待是矣 若頑不來待 則當自官掘移云 噫此處雖僻在遐鄉 乃京鄉知名之處也 而題音如是其率爾乎 茲以錄呈

25 이아(李雅) 아(雅)는 성씨 뒤에 붙이는 호칭. 고상한 선비를 일컫는 아사(雅士).

云云

7-4-12) 1893년 잡문기

[윤관하 산송 관련 문서. 문중 소송비용을 차지하고 사굴을 사주한 윤기하의 처벌과 소송비용 징출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윤관하의 소송과 관련하여 강진 현감에게 전후사정을 설명하는 간찰 단편으로 보인다. 내용 중에 금년(1893) 정월에 윤봉거가 사굴하였다는 기록을 볼 때, 1893년에 작성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해남 사인 윤관하는 즉 윤고산의 봉사손으로 경향에 이름난 선비입니다. 그의 15대조 참의공 분묘가 강진 파지대면 덕정동 뒷산에 있는데, 계장한 각파의 선산을 합하면 27총이 됩니다. 경인년 봄에 윤관하가 그의 8대조 전부공[윤이석] 분묘를 참의공 분묘 아래 32보되는 곳에 이장하였는데, 입장사葬하기 전에 각파의 자손들에게 의논[합의]을 받아 소란 없이 안장하였습니다. 그런데 그해 10월에 강진 지석리에 사는 선달 윤기하가 홀로 관에 정소呈訴하였으니, 그의 의도는 대개 겉으로 선조를 핑계로 삼았지만 속으로는 사적인 이득을 피하려는 마음을 품은 것입니다. 각파 사람들이 모두 그의 속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온 문중이 모두 모여서 ‘한 구역 내에 각파 선산들이 계장하지 않음이 없는데 어찌 유독 막내 계파에게만 금장禁葬하겠는가?’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연명으로 권점圈點하여 회회문적을 작성하기에 이르고, 문중의 소송비용 200냥은 윤관하 계파에서 마련해 갚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윤기하가 독차지하고, 이것으로도 부족하여 금년 정월에 몰래 같은 문파門派 사람인 윤봉거라는 자를 사주하여 밤을 틈타 은밀히 묘를 파냈습니다. 영문營門에서 유배지를 정한 지가 지금 4, 5개월이나 되는 데도 아직 유배길을 떠나지 않으며 옥바라지 비용이라 칭하면서 각파에서 돈을 뜯어냈습니다. 기하가 또 문계門穢의 창고 자물쇠를 부수고 문중 곡식 20여 석을 탈취하였고, 또 논문서를 탈취하여 1석락지를 팔아 먹었습니다. 이런데도 징치하지 않으면 윤씨 문중의 여간한 재물들은 모두 기하의 개인 주머니가 될 것입니다. 이른바 남의 분묘를 파낸 죄인이 범법한 이후로 형추刑推 한 차례도 받지 않고, 정배된 지 반년이나 되었는데 아직도 유배지로 출발하지 않고 있으니, 어찌 저와 같은 도리가 있단 말입니까? 이는 모두 기하가 조종하는 것이며, 그 행역行臆이 이와 같은 자입니다. 영문에서 윤기하를 잡아들여 윤관하가 담당한 소송 비용조 200냥, 문중 곡식 20석 값인 280냥을 징출하여 엄히 다스려 독촉해 받아내고, 윤관하의 장례 비용 1,200냥은 전례대로 추급推給해 주십시오.

海南士人尹觀夏 卽尹孤山奉祀孫 而
京鄉知名之士也 其十五代祖參議公墓

在於康津坡之大面德後麓 而各派
 先山系葬者 合爲二十七塚 庚寅春
 尹觀夏移葬其八代祖典簿公墓於
 參議公墓下三十二步之地 入葬之前 受
 議於各派子孫 無鬧安葬矣 其年十月
 康津支石里居尹先達基夏 獨自呈
 官 其意蓋陽託爲先 而陰懷營私者也
 各派之人 舉知其心情 故一門齊會 以爲一局之
 內 各派先山 無不系葬 則何獨禁於末派乎 乃有
 聯名圈點 至成和會文蹟 而門中訟費二百兩 自
 觀夏派辦報矣 此則爲基夏所獨吞 此猶不足 今年
 正月 暗噉其門派人尹奉巨者 乘夜暗掘 自營門定
 配所 于今四五朔 尙不發行 而稱以獄費漁獵各派 基
 夏又打破門楔庫鎖 奪取門谷[穀]二十石 又奪取畚
 券 賣食一石土落 此而不懲 則尹門之如干財物
 盡爲基夏之私橐 而所謂掘塚罪人 犯科
 以後 不受一次刑推 定配半年 尙不赴謫所者 豈有如
 許道理乎 此皆基夏之所操縱 而其行臆有如是者
 矣 自營門捉致尹基夏 徵出尹觀夏之所當訟費條
 二百兩 門谷[穀]二十石價二百八十兩 嚴治督捧 而尹觀
 夏之葬費一千二百兩 於例亦當推給矣

7-4-13) 잡문기

[문서 단편. 전부공 윤이석의 신주를 매안埋安하고 묘제를 세일제歲一祭로 실행하는 문제에 대하여 논의하는 내용이다.]

전부공의 신주는 지난 5월 14일에 이미 매안埋安하였으니, 예법상 이번 가을부터 세일제를 실행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금년 봄에 이미 묘에 올라가보니 비록 금년 가을의 추향秋享은 세일제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번 가을부터 술 과일을 차려서 제사지내고 10월 25일로 제향일을 완성完定하여 축문고사祝文告辭를 세일제처럼 하였습니다. 내년 가을부터 이날로 세일제를 지내고 문중의 힘이 조금 나아

지기를 기다려 풍성한 제물로 설행하겠다는 뜻을 산지기에게 분부하고 규정을 새로 만드는 것이 사체에 맞을 듯합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이 이러하여 이로써 걱정합니다. 오로지 믿고 …

典簿公神主 去五月十四日 既以
埋安 則禮當自今秋歲一祭設
行 而今春已爲上墓 則雖今秋
秋享 不可謂歲一祭矣 然自今秋
酒果設享 以十月二十五日 完定
享日 以歲一祭樣 祝文告辭 自明
秋 以此日歲祭 而稍待門力 以爲
殷奠設行之意 分付於山直 以爲
勑規之地 似爲得體 僉議如是
以此酌定 專恃…

7-4-14) 1893년 이후 윤옥주 간찰

[윤옥주가 큰댁 형제들에게 보낸 간찰. 덕정동 산송에 관하여 수령이 부재하여 산에 오르는 것을 우선 중지함을 알리며, 제수에 관한 여러 사항들을 부탁하는 내용이다.]

[피봉] 큰댁 형제들 자리에 들임

삼가 여쭙오니 며칠 사이에 형제들 안부는 좋으시고 식구들 모두 별일 없으십니까? 우러러 그리운 마음 간절합니다. 덕정동 산송은 끝내 틀어지게되어 심히 우려됩니다. 어제 다함께 가기로 했다는데, 본 고을 수령이 완도에 들어가 황장산을 간봉看封한 후에 그 길로 사슴 피를 마신다고 합니다. 필시 며칠 머물 것이고 오고 가는 데도 시간을 허비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산에 오르는 것은 마땅히 만사를 제쳐놓고 함께 가야겠지만, 이미 본관이 부재하다는 것을 알았으니 우선 중지할 따름입니다.

이곳의 제수 범절은 서로 같등하여 들어간 비용은 크지만 성과는 작으니 한탄스럽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우선 소란스러움 없이 얹게 행차하였으나 왕래하는 사이에 기운이 빠져서 또한 폐를 끼칠까 염려됩니다. 이에 사적으로 잘못 헤아렸음을 알겠습니다.

쇠고기 4냥을 덕정동의 제수로 보냈고, 큰댁은 1냥을 내려 보냈습니다. 마을 중에서 혹시라도 그것을 쓸 집이 있으면 기별해 알려주심이 어떻겠습니까? 아이들에게 분부하여 참기름을 사서 보내주시고, 대나무를 2, 3 마디 길이로 한 묶음 정도를 창을 엮을 재료로 쓸 수 있도록 보내주심이 어떻겠

습니까? 문범文範은 13일에 보내주심이 어떻겠습니까? 탕국용 미역은 돌려보내지 않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곳의 범절은 관여觀汝가 미리 준비하였습니다. 참으로 긴요하고 가히 쓸 만한 사람입니다. 준비하여 그럭저럭 모양새를 갖추어 행하였으나 들어간 비용은 엄청납니다. 미리 헤아리심이 어떻겠습니까? 등불 아래에서 종이가 짧아 예를 갖추지 못합니다.

그날 새벽 재중 옥주 올림

[괴봉] 大宅 棣座 入納

伏問 日間

棣體萬衛 渾節無頃耶 漆仰

區區 德井山訟 竟至爻象 甚可慮也

昨日齊進云 而本倅入莞島 看封

黃腸後 仍飲鹿血云 必留連幾日 想

虛費來往矣 登山當除百共進 既

知本官不在 故姑停耳 此處祭需

凡節葛藤 費大成小 可歎 慈主

姑爲無擾行次 而來往之間 恐費

神氣 亦不無貽弊 乃知當私錯料

也 黃肉四兩 送于德井祭需 而大宅

下送一兩耳 自村中 或有用之之家 則

寄示如何 分付兒輩 眞油買送 而

竹節二三節長可一把許 用爲構櫨

之資 送之如何 文範十三日 送之如

何 湯藿勿還如何 此處凡節 觀汝

預備眞緊着可使之人也 草草成樣爲

之 而所費則浩大 預諒如何 燈下紙短

不備禮

卽曉 再從 玉柱 拜

5. 19세기 분산 수호와 위선爲先 사업

7-5-1) 경오년 연동댁이 서홍주에게 주는 배자

[경오년 연동댁에서 대천 사는 서홍주에게 위답 경작을 맡기면서 작성한 배자[牌子]. 영암 옥천면에 있는 백도 산소 위답을 착실하게 경작하여 풍년을 기약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대천 서홍주에게

다름이 아니라, 댁의 백도 산소의 묘위답 9두락이 (영암) 옥천면(오늘날의 해남군 소속) 시목정 대천리 연평에 있다. 내년부터 시작해서 네가 착실하게 경작하여 가을철 풍년의 효험이 있기를 기약하는 것이 지극히 옳고 지극히 옳다. 많이 언급하지 않는다.

경오년 12월 20일 연동 씬[착서]

大川 徐洪疇處

無它 宅白道山所位畓

九斗落 在玉泉面 柿木丁

於大川里 連坪 自明年爲

始 汝須着實耕作 期

有望秋之效 至可至可 不多

及 庚午十二月二十日 蓮洞 書[着署]

7-5-2) 병술년 윤종율이 연포 종중에 주는 手記

[병술년 2월 12일에 족제 윤종율이 연포 종중에 묘위전답을 환납할 것을 약속하며 작성해 준 수기. 종율은 굴정공 묘 아래에 세거하고 있는데 가세가 넉넉하지 못하여 묘위답을 여러 해 갈아먹고 있었다. 그런데 종중의 추심 요구가 분분하게 일어나 관에 정소하려는 움직임까지 나오게 되자, 자신이 집안일을 주관하게 되면 즉시 환납하겠다고 약속하는 내용이다.]

연포 종중에 주는 수기

이 수기는, 족제가 굴정공 묘 아래에 세거하는데 가세가 넉넉지 못한 이유로 묘 앞들에 있는 묘위

답 2두락과 논 위의 밭 8두락을 여러 해 갈아 먹었다. 문중에서 누차 추심하자는 논의가 있어서 매년 제향 때마다 소란스러운 단서가 없지 않았다. 가까운 족친이라는 안면과 정리에 구애되어 여러 해 동안 결정하지 못한 것 또한 종종 의 두터운 정의情誼임을 알겠다. 금년은 죽인 희원, 종후 등이 바야흐로 관에 정소하여 추심하려 하고 있다. 그 위선爲先의 도리에 있어서는 옳지 않다고 감히 말할 수 있지만,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 일이 마음대로 할 수 없으므로 좋은 모양새를 갖추는 도리로 문중에 간청해 고하였다. 족제가 집안 일을 담당하는 바로 그해에 밭과 논을 문중에 돌려주고 산지기로 하여금 예전대로 경작하게 한다는 뜻으로 수기를 작성해서 바친다. 훗날 이 문기로 책임 지을 것.

병술년 2월 12일 족제 중을[작서]

蓮浦 宗中前 手記

右手記事 族弟世居 橘亭公墓下 而
 家勢不贍之致 墓位畚墓前坪二斗落
 畚上田八斗落 屢年耕食矣 自門中 累
 有推尋之議 每於 祭亭時 不無紛紜之
 端 而拘於至親顏情 積年未決者 亦知
 宗中之厚誼也 今年則族人熙元鍾厚等
 方欲呈官推尋 其在爲 先之道 敢曰不
 可 而待下人事 不得自擅 以好樣之誼
 懇告門中 族弟當家之卽年 田與
 畚還納于 門中 使山直 依舊耕作之
 意 成手記以納 日後以此文 下責事
 丙戌 二月 十二日 族弟 鍾律[着署]

7-5-3) 1897년 윤종연 등이 영암군에 올린 단자

[1897년(고종 34) 4월에 윤종연 등 5인이 연명으로 영암관에 올린 단자. 문중의 논의 없이 투매한 강진 덕정동 선산의 제전을 환퇴해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하여 영암관은 21일에 환퇴할 것을 처분하였다.]

해남 유생 윤종연, 윤근호 등의 단자

삼가 살펴주십시오. 엇드려 생각건대, 주자가 선조 분묘를 수호하는 범절凡節에 대해 논하기를, ‘제

전을 두고 계권契券을 세운다. 무슨 일이 있으면 관에 알려 바로잡는다'라고 하였습니다. 어찌 후손들이 마땅히 준수해야 할 바가 아니겠습니까? 생들의 선산이 강전 덕정동에 있는데 제전 약간이 있습니다. 만약 문중의 재물이 넉넉하지 않아서 일이 있어 논을 팔게 되면 문임門任이 주관해서 일문이 모두 모여 문서를 작성했습니다.

지난 봄에 문중에 보태 쓴다면서 한 두 사람이 은밀하게 사사로이 의논하여 문임에게 고하지 않고 문중 여러분들의 논의도 있지 않았는데, 사적으로 천단해서 치하 옥천면에 있는 몇 석락지 논을 각 사람들에게 투매偷賣하였습니다. 관 자가 문중의 의논도 묻지 않고 임의로 간사함을 부린 것은 이미 말할 것도 없으며, 매득한 자가 체면을 돌아보지 않고 경솔하게 남의 문중의 투매하는 논을 매득하였으니 이 무슨 의리입니까?

사적으로 환회하지 못하고 이에 감히 우리리 호소하오니, 잘 헤아리신 후에 후록한 각 사람들을 법정에 잡아들여 도매한 논을 하나하나 환회하여 거짓으로 속이고 미루는 폐단이 없게 해 주십시오. 삼가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간절하게 청합니다. 몽매함을 무릅쓰고 아뢰니다.

주관 합하 처분

정유년(1897) 4월 일 윤종연, 윤근호, 윤주학, 윤주현, 윤관하 등

후

과천평 11두락 정백춘

창전평 4두락 정성민

문춘평 10두락 윤경좌

용안평 8두락 윤성빈

윤명언

[제사] 타인의 위답을 투매하는 것은 본래 법으로 금하는데, 하물며 이렇게 관작 있는 묘위답은 어떠하겠는가? 일이 마땅히 잡아들여 나쁜 습속을 징치해야 하되, 특별히 용서하는 데김으로 신칙한다. 하나하나 환회해 주어 다시 호소하여 벌을 받는 폐단이 없게 할 것. 21일. 피척 등에게.

영암관 [착서]

海南 儒生 尹鍾淵尹崑浩等 單子

恐

鑑伏以 朱夫子論守護先墓之節曰 寘祭田立契卷 有故則聞 官規正 豈非後生之所當遵守乎 生等之先山 在於康津德亭洞 而

有如干祭田 若以門財不贍 有事賣畚 則門任爲主 而一門會同成文是去乙 去春稱以門中補用 一二人暗自私議 不告門任 不有門中之僉議 而

私自擅斷 治下玉泉面所在 數石畚土 偷賣於各人處 賣之者之不詢門議 任意作奸 已無可言

是去果 買得者之不顧體面 輕買他門中
偷賣之畚 是何義理乎 不得私相還退 茲敢仰籲爲去乎
叅燭教是後 後錄各人 捉致法庭 盜買之畚 一一還退 俾無飾詐遷就之弊 不勝伏祝屏營祈懇
之至 謹冒昧以達

主官閣下 處分

丁酉 四月 日 尹鍾淵 尹崑浩 尹柱鶴 尹柱憲 尹觀夏 等

後

果川坪 十一斗落 鄭伯春

倉前坪 四斗落 鄭成民

文村坪 十斗落 尹慶佐

龍安坪 八斗落 尹成彬

尹明彦

[題辭] 偷買他人之位畚 自有法禁 況此有官爵之墓畚乎 事當捉致懲習是矣 特恕題飭 一一還
退以給 俾無更訴抵罪之弊向事 廿一日 彼隻等

靈岩官 [着署]

7-5-4) 계유년 면증面中에서 연동에 발급한 완문

[계유년에 면에서 연동의 호역을 탈급嶺給해 준 완문. 어초은공 윤효정의 분묘와 별묘가 있는 연동
의 연호잡역은 이향吏鄉의 논의로 수백 년 면제되었는데, 조정에서 다시 징수하라는 명령이 있게 되
자 면에서 논의한 결과 매년 춘추로 8냥씩 징수하고 계속 면제한다는 내용이다.]

완문

영구히 준행할 일. 본면 연동의 연호잡역을 견탈嶺嶺한 것은 본래 주호인 윤씨가 면제받고자 도모
한 것이 아니고 온 고을의 공론이 귀결되었다. 대개 향선생이 남기신 은택을 갑자기 망각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어초은 윤공[윤효정]의 적선한 은덕과 옥문을 세 번 열었던 은혜는 무릇 우리 해남 사
람들이 누가 그 은택을 입지 않았겠는가? 이향吏鄉의 논의는 대개 백세토록 잊지 않고자 함이었으며,
선생의 분묘와 별묘別廟가 연동에 있어서 예례에 따른 것이 수백 년이다. 이제 조정의 명령이 있어 고
을 가운데 역을 면제했던 마을들도 모두 징수하게 했지만, 연동이 징수하는 데에 혼입된다면 선배들
이 입의立議한 뜻이 아니다. 따라서 면증에서 충분히 논의하여 매년 전 8냥씩 봄가을로 나누어 받고
해당 마을의 호역戶役을 탈급할 뜻으로 완문을 작성하니 영구히 준행함이 마땅할 것.

면중

계유년 4월 초5일

면수신 중

집강 민인호

다사 나석기

민유호

윤규철

윤주형

完文

爲永久遵行事 本面

蓮洞 蠲頃烟戶之役 本

非主戶尹氏之謀免也

一邑公論所歸也 盖鄉先

生遺澤 不可遽忘故也

漁樵隱尹公積善之德 有

三開獄門之惠 凡我海

南之人 誰不蒙其澤

乎 吏鄉之論 盖欲百世

不忘 而先生之邱墓別

廟 亦在蓮洞 故遵例數

百年矣 今有朝令 邑中

除役之村 一併渾徵 而

渾徵於蓮洞 則有非先

輩立議之意 故面中爛

議 每年錢捌兩式 春秋

分捧 該里戶役頃給之

意 著成完文 永久遵

行 宜當者

癸酉 四月 初五日

面中 面首 申 綜

執綱 閔仁鎬

多士 羅錫基

閔有浩

尹圭七

尹柱亨

7-5-5) 올해년 해남관에서 연동에 발급한 완문

[올해년 6월에 해남현에서 연동의 환분, 군정, 연호잡역을 면제하는 완문. 해남현의 관련 향임 및 아전들이 착서하고 있다.]

완문

영구히 준행할 일. 아! 연동은 곧 선현의 묘소가 있다. 그 자손들이 여기에 세거하면서 영명(命名)을 잃지 않았으니 참으로 한 시대에 모범이 되고 백대에 전할 만하다. 그 숭배하고 보답하는 도리는 참으로 그 집과 마을을 표시하고 범민들과 함께 잡역을 편성해서는 안되거늘, 슬프다! 말세의 풍속이 선철(先哲)을 생각하지 않고, 집강과 면약들은 오직 호총(戶總)을 조정하여 남집(濫執)하는 것만 생각하여 매번 와서 싹쓸어 거두어가고, 모름지기 단노(單奴)²⁶와 단비(單婢)²⁷같은 종들도 군정에 첨가하고 환자를 받게 하는 행위들이 있기에 이르렀다. 말이 이에 미치니 저절로 한심스럽다. 훗날의 현자들이 그 번잡함을 철거하고 어지러움을 덜어낼 자가 없다고 어찌 알겠는가? 여러 아전들의 예전 입약이 이미 근거가 있고, 영문의 신규 완문도 다시 절실하므로 그대로 따라서 완성하여 다시 조약을 열거하니 이로써 준행하여 영구히 바꾸지 않는 것이 마땅할 일.

올해년 6월 일

관[착서]

좌수 김진후[착서]

병교 김지호[착서]

호장 강성호[착서]

이방 김장욱[착서]

호방 김기해[착서]

사창색 김장우[착서]

26 단노(單奴) 한 집에서 부리는 유일한 남종

27 단비(單婢) 한 집에서 부리는 유일한 여종

대동색 안채현[작서]
세초색 차제순[작서]
속오색 김대홍[작서]
승발 정남선[작서]

후

각향 환분還分을 받지 말 것
제읍 군정을 침해하지 말 것
연호잡역을 논하지 말 것

完文

爲永遵事 慨夫
蓮洞 卽先賢
之所墓也 其子
孫 世居于此 不失
令名 眞可謂範
一世 而鎔百代者也
其於崇報之道 固
當以表厥宅里 不
可與凡民等 而編
之襍役是去乙 嗚噫
末俗罔念先哲 執
綱面約者之惟意
操縱濫執戶摠
每到箕歛 而須使
單奴單婢之隸 至
有添丁受還之舉
興言及此 不覺寒
心 其在後賢 安知
不有撤其藩 而毀
其慢者耶 諸吏
之舊約 既有所據
營門之新完 又復

切至 故因之踵成
更列條約 以此遵
行 永久勿替 宜當
者

乙亥六月 日

官 [着署]

座首 金鎮屋[着署]
兵校 金志浩[着署]
戶長 姜成浩[着署]
吏房 金章郁[着署]
戶房 金基海[着署]
司倉色 金章瑀[着署]
大同色 安採鉉[着署]
歲抄色 車濟順[着署]
束伍色 金大洪[着署]
承發 鄭南善[着署]

後

各項還分不受事
諸色軍丁勿侵事
烟戶雜役勿論事

7-5-6) 1828년 문중의 분산수호 완문

[1828년(순조 28) 12월 21일에 윤씨 문중에서 윤두서 분묘 수호를 위하여 작성한 완문. 죽천竹川에 있던 윤두서 분묘를 백포白浦로 이장한 후에 후손들이 사산 국내에 범장하지 않도록 합의하는 내용이 다. 문서 2건을 작성하여 연동과 백포에 나누어 보관한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완문

이 완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우리 증조고 공재공[윤두서]의 죽천 묘소는 모든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마음에 이롭지 못하고 끝내 미안함이 있다고 말하므로 금년 12월 20일에 백포 집 뒤로 옮겨 이장하였다. 백포는 비록 각 집이 세거하지만 □…□ 중요하여 부득이 이렇게 거행하였다. 일

후에 제 자손들 중에 혹시라도 사산 국내에 범장하는 자가 있으면, 선조를 받들고 죽인들과 화목하는 의리가 아니다. 별도로 완문 2건을 작성하여 연동과 백포에 나누어 둔다. 비록 후대에 이르러도 영구히 이 임의를 지켜 선조를 욕보이지 않게 하기를 천번만번 지극히 바란다.

도광 8년(1828) 무자 12월 21일

문장 규동[작서], 규성[작서], 종한[작서], 종태[작서], 종정[작서], 종문[작서], 종청[작서], 종회[상불차], 종영[작서], 종직[작서], 종석[작서], 필집 종민[작서], 종표[작서], 종면[작서], 종익[작서], 병흙[작서], 종풍[작서]

종로[작서], 종룡[작서], 필호[작서], 직호[작서], 철호[작서], 벽호[작서], 창호[작서]

종준[작서], 종심[작서]

完文

右完文事 我

曾祖考恭齋公竹川墓所 萬口一談皆云 不利於心 終有未安 故以今年十二月二十日 移窆于白浦家 後 白浦雖是各家世居 □有所重 不得已爲此舉 日後諸子孫中 若或有犯葬於四山局內者 則有非奉 先睦族之義 茲爲完文二件 分置于蓮浦 雖至雲仍 永守此議 無至忝先 至望千萬者

道光八年 戊子 十二月 二十一日

門長 奎東[着署] 奎聖[着署] 鍾漢[着署] 鍾泰[着署] 鍾晶[着署] 鍾文[着署] 鍾淸[着署] 鍾禮 喪不着 鍾英[着署] 鍾直[着署] 鍾爽[着署] 筆 鍾敏[着署] 鍾豹[着署] 鍾冕[着署] 鍾益 [着署] 秉欽[着署] 鍾豐[着署]

鍾魯[着署] 鍾龍[着署] 弼浩[着署] 直浩[着署] 喆浩[着署] 壁浩[着署] 昌浩[着署] 鍾濬[着署] 鍾深[着署]

7-5-7) 갑진년 방친榜親 문중에 보내는 회문回文

[갑진년에 해남윤씨 종가에서 방계 족친 문중에 돌린 통문. 연포 문중에서 충헌공 윤선도 사당의 중문을 보수하였는데 비용이 과다하여 보조해 줄 것을 청하는 내용이다.]

회문

우리 충헌공[윤선도] 묘우墓宇의 중문이 오래되어 썩어서 무너지기에 이르렀습니다. 자손들이 우려리 사모하는 마음에 누군들 두려워 어쩔 줄 모르지 않겠습니까? 사당 아래에 사는 사람이 더욱 편치 않은 것은 이치와 형세가 그러한 것입니다. 작년 겨울에 연동과 백포[蓮浦] 문중에서 논의를 내어 공사를 벌인지 4개월 만에 모두 마쳤는데, 옛 형태는 그대로이면서 사당의 모습은 새로워졌습니다. 들어간 비용을 모두 계산하면 800냥이나 거액에 달하여 약간씩 수합한 것으로는 태반이 부족합니다. 근래에 종가의 집안 힘이 부치는 것은 일문이 모두 익히 알고 있습니다. 빛을 내어 임시로 미봉하였으나 이자가 원금보다 많습니다. 자손들이 각처에 흩어져 있어 혹은 미처 보고 듣지도 못하고 한 편에서는 듣고도 응답하지 않고 진척秦瘡처럼²⁸ 무관심하게 보는데, 방계 족친의 문중에 이르러서는 보조하는 것이 마땅할 것 같습니다. 이에 글을 내어 돌려가며 고합니다. 바라건대 여러 종인들께서는 모두 자손되는 자는 이미 논할 것도 없고, 비록 방계 족친의 자손이라도 존모하는 입장에 있어서 형편에 따라 보조해 도와서 빛을 청산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천만 다행이겠습니다.

갑진년 10월 일

이중에서, 보조전은 해당 문중에서 거행할 사람을 정해 연동 종가에 보내주시고 통문을 돌리고 다니는 유사 식비는 각각 형편에 따라 도와주실 것.

回文

惟我

忠憲公墓宇中門 年久朽敗 至于頽圯 子孫瞻慕 孰無惶懼 居廟下者 尤不敢安 理勢然也
昨年冬 自蓮浦門中 發論設役 四朔告訖 仍其舊貫 廟貌維新 而總計所入 將至八百兩之夥 收合若干者 不足太半 年來宗家 家力不贍 一門之所稔悉也 出債彌縫 尾過於身 子孫散在各處 或有未及見聞 一有聞之不應 視之秦瘡 至於 旁親門中 似當有助 茲以發書輪告 惟願 僉宗之凡爲子孫者 已無可論 而雖旁親子孫 其在尊慕之地 隨力補助 以清債帳之地 千萬幸甚

28 진척(秦瘡) 진나라 사람이 살찌는지 아위는지에 대해 멀리 떨어진 월나라 사람은 전혀 관심없다는 뜻. 관계없이 무관심하다는 의미.

甲辰十月日

此亦中 補助錢 自該門中
定學員 送納于蓮洞宗
家 而輸行有司飯費 各其
隨宜助給事

7-5-8) 1840년 추원당 회석에서 문중 각파에 보낸 회문

[무자년(1840) 10월 3일에 해남윤씨 추원당 회석會席에서 문중 각파에 보낸 통문. 윤희정의 추원당을 빚을 내어 보수한 후에 비용을 보조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회문

이 문서를 보내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초은[윤희정] 선조의 추원당을 창건한 지가 어언 12년이 되었습니다. 작년 여름의 폭우 때에 동쪽 처마의 서까래 다수가 물이 새서 기와 약간을 종종 수리하였습니다. 그런데 올 여름 비바람에 한층 더 물이 새서 목재가 변색되어 그대로 시간을 끌어가면 필시 썩어 무너질 우려가 있습니다. 주먹돌로 막을 일을 장차 태산으로 막는 공사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재와 서재 두 방의 구들이 오래된 까닭에 연기가 방으로 새서 형세가 심히 위급합니다. 그래서 문임門任이 와서 보고 물가가 높이 뿔 것을 따지지 않고 빚을 내어 수선하였는데, 비용이 만여 원에 이릅니다. 이 비용은 급히 빚을 갚지 않으면 이율이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속히 갚아서 처리해야 한다는 뜻으로 문원門員 전체에 통문을 돌려 알렸으니, 귀파貴派에서도 정성을 다해 최대한의 의연금을 내어 보태주시면 천만 다행이겠습니다.

무자년(1840) 10월 3일

추원당 회석會席
종손 윤정현
문임 윤광호
문원 윤정하
윤명하
윤상하

回文

右文事 漁樵隱先祖追遠堂

創建於焉爲十有二年 而昨夏暴
雨時 東檐夫椽 多數漏濕 略干張
瓦 種種修改 然今夏風雨 一層漏洩 木
材滷色 連拖以去 則必至朽頹之
慮 拳石所補 將不免泰山之役 而且
東西齋兩房烟埃 年久之致 煮
烟漏房 勢甚危急 故門任臨見 不計
物價之騰高 出債改繕 而費金至
爲萬餘円也 此費金如不急速報償
利率太重 故以速卽報償處理之
意 門員全爲輪告 則貴派亦殫
誠 從長出義 以補之地 千萬幸甚

戊子 十月 初三日

追遠堂會席 [印]

宗孫 尹定鉉

門任 尹光浩

門員 尹貞夏

尹明夏

尹相夏

번역자 소개

김현영 | 한국고문서학회 명예회장

김경숙 | 서울대 부교수

문숙자 | 전 서울대 법학연구소 연구원

박 경 | 연세대 법학연구원 연구교수

박한남 | 전 국사편찬위원회 편사기획실장

양진석 |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편사연구관

호남한국학자료총서3

해남윤씨 녹우당 문서

인쇄 2019년 1월 24일

발행 2019년 1월 31일

발행처 (재)한국학호남진흥원(원장 이종범)

주소 62383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촌로 152번길 53-27, 4층

전화 062-603-9600 팩스 062-941-6705

홈페이지 <http://hiks.or.kr>

번역자 김현영, 김경숙, 문숙자, 박경, 박한남, 양진석

편집·제작 플러스 AD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전당로 18-1

전화 062-655-4558 팩스 062-655-4559

<비매품>

ISBN 979-11-9661-132-3(93910)

본 도서는 문화체육관광부 2018년 호남한국학진흥 사업의 지원으로 발간되었으며, 이 책에 실린 글과 사진은 (재)한국학호남진흥원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전재할 수 없습니다.